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고속도로 제32호선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일 반 보 고 서 (부록)
(준 공)

2018. 01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부 록

1. 관 련 공 문
2.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서
3.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4.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결과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
7. 사전재해영향평가심의 조치결과
8.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심의 조치계획
9. 설계자문회의 조치결과
10. 실시계획 승인관련 관계기관 협의내용 조치계획

1. 관 련 공 문

발 송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2013-51호 2013.10.02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옥산-오창) 청원군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공사과-4169(2013.9.3)호 "청원군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지시(옥산-오창)"과 관련하여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및 옥산면 장남리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 및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당사는 본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귀 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청원군 민원 해소방안 및 조치계획 1부. -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석

1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결과

구 분	계	반 영	시공중 조치	협의 조치	미반영	비고
합 계	115	107	-	-	8	
국토교통부	1	1	-	-	-	경부선 남이-천안 확장계획 반영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	4	-	-	-	병천천 등 하천기본계획 확정시 실시계획 보완 등
보은국토관리사무소	3	3	-	-	-	주요도로 횡단구간 낙하물방지시설 설치 등
국방부	4	4	-	-	-	청주 제17전비 고도제한구역 저촉여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3	3	-	-	-	농지전용협의 절차 안내 및 지자체 업무협조 등
산림청	1	1	-	-	-	산지전용협의 절차안내
문화재청	2	2	-	-	-	문화재지표조사결과 이행 등
충청북도	25	25	-	-	-	도로구역 결정고시 관련 협의사항 등
청원군	46	40	-	-	6	도로구역 결정고시 관련 협의사항 및 지자체내 기 발생민원 해소 요청 등
한국도로공사	26	24	-	-	2	경부선 남이-천안 확장계획 반영, 요금체계 및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세부검토사항 등

2 미반영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구 분	관계기관 협의내용	실시계획상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청원군 건설과	○오창읍 소재지 주변 주민은 소재지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옥산면 주민은 돛대산 구간을 터널로 시공하여 달라며 현 노선을 반대. ○계획노선이 오창읍 오창1,2과학단지 및 오창소재지를 감싸고 도는 형상으로 읍소재지 주거지역과 근접하여 주민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향후 오창읍 소재지 확장 등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창읍 소재지를 우회하여 산악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주고, 옥산면 장남리 돛대산이 지역 명산으로 터널 설치로 사업계획 수정 필요함.	○돛대산 구간을 터널로 통과할 경우 옥산 JCT~터널간 차로변경을 위한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하며, 지형여건상 터널 입출구 설치로 인한 녹지훼손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터널통과는 곤란함. -노선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마을과 고속도로 사이에 자연지형에 의한 차단공간을 확보하고, 노출구간에는 방음벽을 계획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개착구간에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상부 복토 및 녹화를 계획하여 녹지훼손을 최소화 하고, 기존 등산로를 연결하는 등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였음. ○오창읍 통과구간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으로 오창제2지방산업단지로 인하여 오창읍 도시계획 경계지역으로 노선계획을 우회하였음. -오창읍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노선 종단을 최대한 낮추고,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을 계획하였으며, -오창읍 도시발전을 저해 주장에 대하여는 오창읍 도시계획구간을 최대한 우회하여 성암천과 병렬로 통과하도록 계획하고, 오창읍과 외부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17호선, 지방도 508호선 및 화북로 등을 횡단하는 교량은 장래 도로확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하였음.	○돛대산 구간 민원 해소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민원들을 방문하여 노선계획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확정된 계획을 설명하여 현재는 민원이 다소 진정된 실정임. -향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돛대산(상장남마을) 구간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을 시행할 계획이며, 민원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음. ○오창읍구간 노선변경 요구 민원은 최근 발생된 민원으로 노선 변경시 상대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선변경은 불가한 실정임. -향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민원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음.

구 분	관계기관 협의내용	실시계획상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청원군 오창읍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였고, 국토계획에 불필요한 도로임.	○본 사업은 국가 상위계획인 국토간선도로망계획중 동서5축에 해당되며, 노선계획은 청원군, 충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였음 -본 사업은 충청내륙(청원·청주)과 경기 서남부(천안·당진)을 연결하여 지역간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함.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설명회('12.10.29)와 공고·공람 등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오창읍구간 노선변경 민원과 동일한 민원으로 오창읍사무소에서 기 발생된 민원을 취합하여 상위기관인 청원군에 제출한 민원임. ○실시계획이 확정되어 승인을 신청한 단계에서 노선변경은 수용이 불가한 실정으로,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만원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음.
	○현 노선대로 고속도로 개설시 오창읍 소재지 발전에 저해 요인이며, 주민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주민의 의견보다 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도로는 불필요함.	○오창읍 도시계획 외곽으로 노선을 계획하여 오창읍 개발계획 저촉을 최소화 하였으며, 본 사업 개통시 경기 서남부 천안·당진 지역과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청원군 옥산면	○2012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일부개정)의 예외규정을 반영할 것.	○예외규정 적용은 적절한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돛대산 구간은 적절한 통과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예외규정 : 부득이한 경우 충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터널내 제한적인 차로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	○돛대산구간 터널통과 민원과 동일한 민원으로 옥산면사무소에서 기 발생된 민원을 취합하여 상위기관인 청원군에 제출한 민원임.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민원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음.
	○곡선을 직선으로, 돛대산구간을 터널로 고속도로 개설할 것.	○돛대산 구간을 터널로 통과할 경우 옥산JCT~터널간 차로변경을 위한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하며, 지형여건상 터널 입출구 설치로 인한 녹지훼손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터널통과는 곤란함.	

구 분	관계기관 협의내용	실시계획상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청원군 옥산면	○ 마을과 70m안에 고속도로 개설시 주민과 협의 하여야하는 규정을 지킬 것.	○ 마을과 이격거리 70m 주민협의 규정은 대기환경 관리목표 수립시 근접된 마을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고려하라는 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해당 지역은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모두 대기환경 관리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돗대산구간 터널통과 민원과 동일한 민원으로 옥산면사무소에서 기 발생된 민원을 취합하여 상위기관인 청원군에 제출한 민원임. ○ 실시계획 승인 후 환경영형평가 협의 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강유역 환경청과 협의하여 이행할 계획임.
한국 도로 공사	○ 옥산~오창 → 경부선 이용차량은 청원 휴게소 이용 불가로 민원 예상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시 운전자의 혼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방향 연결로상 청원휴게소 진입로 삭제 의결	○ 한국도로공사와 청원휴게소 진출입로 미설치 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음.
	○ 청원휴게소 진출로(서울방향) 이설로 인해 발생되는 폐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가 환경복원 시행 필요	○ 환경복원계획 미반영 -병천천 유지관리 기관인 충청북도(치수방재과)는 현 청원휴게소 진출로(서울방향)는 병천천 하천관리 도로로 활용할 수 있어 존치가 필요하며, 수목식재 등은 제방을 약화시킬 수 있어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	○ 장래 병천천 하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병천천교 설치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 제방고 조정 등이 필요한 실정임. ○ 향후 충청북도(치수방재과) 및 한국도로공사와 추가 협의하여 청원휴게소 진출로(서울방향) 보완계획을 확정하겠음.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2013-46호 2013.08.26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옥산-오창) 관계기관 협의결과 조치계획 제출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공사과-2747(2013.7.9), 도로공사과-2805(2013.7.10), 도로공사과-2974(2013.7.16) 및 도로공사과-3807(2013.8.20)호와 관련하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결과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기계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1부. -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illegible]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협의

1. 우리부는 국토간선도로망(7×9) 동서5축의 선도사업으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옥산오창고속도로㈜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귀 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오니 '13.7.5(금)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1부(별도송부). 끝.

광역도시도로과장

수신자 극방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능지과장), 산림청장(산지관리과장), 특부지방산림청장(운영과장), 문화재청장(발굴제도과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지사(균형개발과장), 충청북도지사(도로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물류과장), 충청북도지사(치수방재과장), 충청북도지사(자연환경지원과장), 충청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충청북도지사(관광항공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청원군수, 청원군수(건설과장), 청원군수(도시과장), 청원군수(농정과장), 청원군수(문화체육과장), 청원군수(축산과장), 청원군수(재난안전과장), 청원군수(산림과장), 청원군수(환경과장), 청원군수(사회복지과장), 청원군상수도사업소장, 한국도로공사사장,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 건설경제과장, 기술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 교통정책조정과장, 물류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간선도로과장, 도로운영과장, 첨단도로환경과장, 철도정책과장, 공공주택총괄과장, 기획총괄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공사과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기타 관계기관 등

사무관대우	민인흥	시설사무관	이강녕	과장	전결 2013. 6. 14. 김영국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806 (2013. 6. 14.)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등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비공개(5)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2013-38호 2013.06.05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제18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1식 (별도송부). -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석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3-39호 2013. 05. 30

수 신 : 한국산지보전협회장

참 조 :

제 목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면적 변경에 따른 신청서 보완제출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지보전 2013-173(2013.5.15)호 및 옥산오창 제2013-34(2013.5.21)호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신청하였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면적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보완하여 제출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서 1식. 끝.

No. 발↑송
2013. 5. 30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 울 서 초 구 강 남 대 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3-35호 2013. 05. 28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설계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공사과-1326(2013.5.16)호와 관련입니다.

3.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계자문 조치결과 1부. 끝.

발송 No. 2013. 5. 28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옥 산 ~ 오 창 고 속 도 로 민 간 투 자 사 업

설 계 자 문 회 의 조 치 결 과

2013. 05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총괄표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분 야	자문위원	자문(심의) 의견수	조 치 결 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도 로	이 태 옥	10	10	-	-
	박 용 성	7	7	-	-
지 반	조 영 삼	6	6	-	-
	정 대 석	6	5	-	1
교 통	정 일 호	4	4	-	-
구 조	방 명 석	6	6	-	-
	정 찬 묵	5	5	-	-
시 공	피 태 희	6	6	-	-
	고 현 길	8	8	-	-
도로안전	김 택 천	4	3	-	1
환 경	배 병 욱	3	3	-	-
	김 정 곤	11	11	-	-
계		76	74	-	2

도로분야 이태옥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도로분야 이태옥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10	10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선계도상 설계기준(5) 포장 편에 AASHTO 설계법과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03.10)로 명기되었으나 도로 포장 통합 지침, 도로 포장 구조 설계 요령(2011.11 국토교통부)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람.	1. 설계도상 해당내용을 수정하였음	반영	별첨#1

확인자 : 도로분야 이태옥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2. 본 노선의 시점부 옥산 JCT는 기존 경부 고속도로의 2중 S커브 곡선 구간에 접속되는 지점에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 시 관련기관과 협의는 하였으나 실시설계 최종단계에서의 변경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하고, 또한 곡선부 주행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수 있도록 부대안전시설 (미끄럼방지포장, 속도규제, 추락방지시설 등)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보완하시기 바람.	2. 옥산 JCT 사업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확장(남이~천안간)을 고려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후 실시설계를 수행하였고, 경부고속도로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유출입부 접속단 위치를 변경하였음. 추후 남이~천안 확장사업의 실시설계(2013년 3월 착수)와 관련한 상세 협의 후 필요시 부대안전시설을 수정, 보완 하겠음	반영	
3. STA.0+320, STA 8+440 생태이동 통로는 절취지역 파형강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골간격이 크므로 -복토 후 기초 옹벽 배면 외측에 종방향으로 배수계획이 없어, 향후 지표수에 의한 붕괴위험이 많이 발생되므로 배수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며, -뒷채움 재료 및 다짐은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시방서" 배수공편에 노상다짐이 아닌 SB-1 다짐으로 시공되도록 되어 있어, -도면 및 시방서를 수정 보완하시기 바람.	3. 파형강판 배면으로 유도배수층 (모래, T=20cm) 을 설치하고, 옹벽 배면의 종방향으로 아연도 유공관(D200)을 배치하여 지표수에 대한 배수처리를 하였으며, 뒷채움 재료를 노상다짐에서 SB-1으로 변경하여 도면 및 시방서를 수정하였음	반영	별첨#2

확인자 : 도로분야 이태옥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 결과	
4. STA.0+500~0+780 외 2개소의 높은 쌓기 구간 본선 선형이 곡선 구간에 설계되었으므로 외측부와 내측부 도수로 계획을 동일한 간격으로 설계하였으나, 내·외측 구간 간격을 집수 형태 및 집수량에 따라 간격이 조정되도록 수정하시기 바람.	4. 본선 STA.0+500~0+780 및 STA.10+600~10+900 지점에 설치된 도수로 중 곡선부 외측에 설치한 도수로 STA.0+685(좌), 0+735(좌) 2개소를 삭제하였음	반영	별첨#3
5. STA.3+860 대철취 구간 소단측구에서 유도된 물은 산마루 측구나 도수로 등으로 유도되도록 하여야 하나, 본 구간은 비탈면으로 자연처리 되로록 계획되어 유출부 배수계획을 연장시켜 비탈면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수정하시기 바람.	5. 소단측구에서 발생되는 유량을 기존 계곡부 쪽으로의 원활한 유출이 가능토록, 소단측구 연장을 추가로 계획 하였음	반영	별첨#4

확인자 : 도로분야 이태옥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6. STA 4+720, STA 5+100 구간 높은 2단 쌓기(H=10m이상) 지역으로 차량 충돌 시 낙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고려하여 1단 가드레일보다 설계기준에 의거 2단 가드레일 형식으로 수정 보완하시기 바람.	6. 충돌 시 낙하위험을 사전 방지토록 2단 가드레일을 수정 보완하였음	반영	별첨#5
7. STA 8+600~10+220 구간 본선 종단경사가 S=2.98%, S=3.98%로 급한 내리막 경사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운전자의 안정성 및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그루빙 및 교통안전시설, 속도 규제 등으로 설계되도록 부대시설도에 보완 수정하시기 바람.	7. 운전자의 안정성 및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그루빙을 계획하였으며 차간거리 및 속도규제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수정하였음	반영	별첨#6
8. 옥산 JCT R-A지점 리도202호선 대절취구간에 이설도로를 계획하였으나 종단경사가 10%로 급경사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마을 주민이 이용시 안전하게 주행할수 있도록 난간 및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시기 바람.	8. 급경사 종단구간 마을주민의 안전 주행을 위해 급경사 표지판 2개소, 서행표지 1개소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였음	반영	별첨#7

확인자 : 도로분야 이태옥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 결과	
9. STA.9+560, STA.9+890지점 횡배수관 Ø1,000m/m 계획 하였으나, 경사가 급해 유출부 침식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침식 방지 및 월류되지 않도록 수정 보완하시기 바람	9. STA.9+560, 9+890은 V형 측구와 접속됨으로 침식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STA. 9+890은 기존 소하천으로 직접 합류됨으로 월류 방지시설은 불필요하고 STA.9+560지점은 수로보호공을 설치하여 월류를 방지하였음	반영	별첨#8
10. 옥산JCT 및 STA.11+030 외 2개소 구간의 보강토 옹벽 설치 높이가 H=7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어, 설계 및 시공 지침에 의거 옹벽 배면 상단 U형 측구 설계가 반영되도록 보완하시기 바람.	10. 옥산JCT 및 STA.11+030 을 포함하여, 보강토 옹벽 상단의 배면에는 U형측구를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9

도로분야 박용성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도로분야 박용성 위원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7	7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사업노선의 일부구간에 산마루측구 설치시 동물유도휀스 및 비탈면점검로 등의 후속공종에 의하여 측구 터파기시 원지반 훼손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속도로 개통초기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절토비탈면 배수시설 개선방안(2012.9한국도로공사)」에 의거 배수 종평면도 상에 산마루측구 형식(V형 및 L형)을 구분하여 표기하기 바랍니다.	1. 산마루측구 설치시 지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V형 및 L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였고, 배수 종평면도에 산마루측구 형식을 V형 및 L형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반영	별첨#1
2. 서오창IC 영업소 하부 요금징수원들을 위한 통로박스 집수정에 최종 배수가 연결되지 않아 배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수처리 계획을 추가 검토 바랍니다.	2. 집수정에서 발생한 유량을 외부로 유출하기 위한 배수관을(D600)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처리 하였음	반영	별첨#2

확인자 : 도로분야 박용성 위원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3. 부체도로 #14 시점부(본선 STA.4+060)가 상당히 큰 침전조(13×7)와 근접하고 있어 도로이용자의 안전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전시설을 추가 검토 바랍니다.	3. 부체도로 #14 시점부에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드레일을 추가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3
4. 생태통로(본선 STA. 8+440) 설치시 생태통로 쌓기부 사면이 깎기부 L5 측구와 중첩되는 바 깎기부 L5 측구가 단절되지 않도록 배수처리 검토를 바랍니다.	4. 소단측구와 생태통로 쌓기부 사면이 중첩되는 지점에 종배수관을 설치하여 원활한 소단 배수가 가능토록 배수처리 하였음	반영	별첨#4
5. 옥산JCT Ramp-A,D 하부 덕수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통로박스와 연결되는 부체도로 #1, #2 좌우측으로 회전시 사각지대가 형성되므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바랍니다.	5.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5

확인자 : 도로분야 박용성 위원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6. 오창JCT 옥산→진천방향 직결로 통행안전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계획 - 본선 주행차로 연결로 직접접속으로 급격한 설계속도 및 선형조건변화(V=100 → 60km/hr, R=160m)로 통행안전이 우려되므로 운전자로 하여금 사전인지와 안전한 정도로 운행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계획하기 바람.	6. 오창JCT Ramp-A 시점부 통행안전성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음 - 설계속도 변경 및 선형조건변화에 대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고려한 속도규제 및 서행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6
- 본선주행차로 축소구간(장래 청주방향 연결로접속 단절)은 안전한 정도의 차로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이구간을 계획하고, 이탈차량이 안전한 정도로 감속정지 또는 차로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계획하기 바람. (특히 야간주행 시 교통안전사고 위험성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가로조명 시설 및 전광표지, LED 조명 시선유도시설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 (설계도면 부대시설도 R-B-017)	- 본선 주행차로 축소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가 설치하였으며, 다만 LED 조명설치는 초기 투자비 측면에서 불리하여 추가 설치는 곤란하였고, 야간주행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및 가로 조명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하였음		

확인자 : 도로분야 박용성 위원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7. 서오창IC Ramp-G, H 기존사면(지방도) 절토구간은 사면보강계획과 절토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 (기존도로와 접하여 대규모 및 일반발파로 계획되어 발파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제어발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횡단면도 P. 83~95)	7. 서오창IC Ramp-G, H 기존사면(지방도540호선)의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절토구간의 횡단을 수정하였으며, 일부 대규모 및 일반발파 계획은 암석굴착(착암기) 계획으로 변경하고, 지방도540호선 주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암파쇄방호시설을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7

토질분야 조영삼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토질분야 조영삼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6	6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설계지반정수 산정시 적용된 지반정수 값은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보고서에 명기바람(시험값인지? 문헌 및 기존 적용사례의 평균값인지?)	1. 항목별 설계지반정수 산정방법과 근거를 보완하여 지반조사보고서에 명기하였음	반영	별첨#1
2. 비탈면 보호 공법 적용시 깎기비탈면중 토사 보강구간(적용구배 1:1.2~1.5)식생기반재취부의 두께를 5cm로 적용한바 이는 적용구배 및 인접 보강 풍화암에 적용한 식생기반재취부의 두께(5cm)등을 고려할 경우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 바람.	2. Soil Nailing 으로 보강한 토사 및 풍화암 비탈면은 보강재의 노출을 방지하고 조속한 녹화를 위하여 식생기반재 취부공법(t=5cm)를 적용하였으나, 토사 보강구간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식생기반재의 취부두께를 3cm로 하향 적용하였음	반영	별첨#2
3.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대한 Data 및 영구앵커의 안정성 검토에 대한 Data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 바람.	3.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대한 Data 및 영구앵커의 안정성 검토에 대한 Data를 추가하였음	반영	별첨#3

확인자 : 토질분야 조영삼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4. 옥산 JCT Ramp-A교, C교, 병천천교, 상장남교, 서오창 IC Ramp-A2교, 복현2교의 경우 동일 교량내에서 지지기반이 동일하나 지지기반내 근입된 말뚝의 길이가 서로 상이한 바 확인바람.	4. 동일한 지지 기반내 말뚝의 근입깊이가 서로 상이한 교량은 근입 깊이의 적정성을 추가검토 하여 말뚝길이를 최적화 하였음	반영	별첨#4
5. 용두천교 P1 및 호죽2교의 경우 지지기반이 상당한 깊이로 말뚝이 근입되어 있어 지지력은 충분한바 근입깊이 또는 말뚝의 수량 등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용두천교 P1 및 호죽2교는 지지력은 충분하나 말뚝 본체의 전단응력과 휨응력의 안전율이 90% 수준으로 수량 축소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고, 말뚝길이는 수평방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beta L>2.5$) 계획하였음	반영	별첨#5
6. 오창 JCT RAMP -A교 교대2의 경우 지지력은 풍화암으로 검토되었으나, 도면(지질주상도(1))의 경우 풍화암에 근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확인바람.	6. 도면(지질주상도) 작성 오류로 수정, 보완하였음	반영	별첨#6

토질분야 정대석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토질분야 정대석 위원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6	5	-	1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교량기초 오창 JCT R-D교의 P1과 P4는 직접기초로 계획되어 가시설 굴착깊이가 8.74m~10.0m로 매우 깊으므로, 말뚝기초로 변경하고 가시설 굴착 깊이를 최소화 하여 시공 중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바람.	1. 오창 JCT R-D교의 P1과 P4는 교량기초와 가시설 계획을 변경하여 시공중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반영하였음	반영	별첨#1
2. 지반조사 본선 STA.8+000~9+000 약 1Km 구간은, 깎기 높이가 높고 연장이 긴 구간이나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시공 시 지층조건과 비탈면경사 등 설계 유효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대책공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확인조사 및 비탈면 안정성 검토 비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바람.	2. 토지소유주의 민원으로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본선 STA. 8+000~9+000 구간은 탄성파탐사를 실시하여 지층을 구분하고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반영하였음. 또한 시공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절취시 비탈면 안정성을 재분석하여 설계경사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관련내용을 설계도서에 보완하여 명기하였음	반영	별첨#2

확인자 : 토질분야 정대석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3. 비탈면 STA.8+780 에 계획된 깎기부 옹벽은 미관이 불량하고 운전자에게 위압감을 형성하므로, 다양한 대책공법들을 비교, 검토하기 바람.	3. STA.8+780 에 계획된 깎기부 옹벽은 비탈면 인근 문화재(충비삼월의 비)와 이격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으며, 대책공법 비교,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보완하였음	반영	별첨#3
4. 기타구조물 파형강판 구조물 (생태이동통로, 통로, 수로)의 구조계산서가 누락되었으므로 추가하여 기초의 지지력 및 침하량 등 안정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대책공법을 추가하기 바람	4. 파형강판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수록하였고 기초의 지지력과 침하량 등 안정성을 검토하여, 필요 구간에 기초지반 치환 등 대책공법을 반영하였음	반영	별첨#4
5 기타 지반조사 및 실내·외 토질시험 등 조사자의 실명제 도입	5. 지반조사 및 실내·외 토질시험 결과에 조사자의 실명을 기입하여 지반조사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였음	반영	별첨#5
6. 서오창 IC 영업소 인근 폐합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태양열광판 설치로 향후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검토 (자문시 추가의견)	6. 서오창IC 주변 부지는 자생수목 본 이식장으로서 공사 후 원상복구 녹지공간 대상이며 환경영향평가시 자생수목 활용률을 높여 식재하라는 협의의견이 있어 녹지공간 외 다른 용도의 부지활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등) 미적용 대상임	원안적용	별첨#6

교통분야 정일호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교통분야 정일호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4	4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교통안전법 제34조에 의거 5km이상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임. 경과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인 경우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할 것	1. 개정된 교통안전법(2012.9) 시행에 관하여 경과규정 등을 고려한 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여부를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와 협의한 결과, 본 사업은 교통안전법 개정 전 실시설계 착수사업으로 분류되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으로 대체하였음	반영	별첨#1
2. 옥산JCT 서울 및 대전방향 램프(Ramp-D, C)의 진출 방식이 도로이용자의 일반적인 통행습관과 다르게 좌진출 형식으로 되어있어, 이용자의 혼선이 우려되므로 진출방식 적정성을 재검토 바람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시 옥산JCT를 이용하는 교통량의 서울방향 교통량 비율이 9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방향 교통량을 본선 개념으로 계획하였으며, 주교통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전방향 연결로를 고속도로 기본원칙인 우방향 연결체계로 계획하였음 진출방식 변경관련과 관하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와 재협의 후 최종 형식을 선정하겠음	반영	별첨#2

확인자 : 교통분야 정일호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3. 오창JCT는 서울방향 연결로만 계획되어 있고 대전방향은 장래에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동서5축과 연계하여 전방향 연결에 대하여 검토바람.	3. 기본설계시 대전방향 연결로가 계획되었으나, 대전방향 이용교통량의 경우 50대/시(2033년) 수준으로 매우 적은 수준인 바, 기본설계VE(2009. 12) 수행 및 실시협약 협의 과정에서 대전방향 연결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 되었음 또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시 장래 본 과업노선과 연계되는 동서5축 계획고속도로의 접속위치가 현재 불확실하여 대전방향 연결로를 본 계획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추후 동서5축 접속위치 및 장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전방향 연결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사항으로 전방향 연결로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실시계획승인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와 재협의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겠음	반영	별첨#3
4. 부대시설도(15) 옥산JCT Ramp-A STA.0+120 통로BOX의 경우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의 추가가 필요하므로 검토바람.	4. 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4

구조분야 방명석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구조분야 방명석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6	6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HD박스교량 ; 슬래브 타설 전 상태, 즉 세그멘트 조립 후 연속거더 상태에서 정모멘트부(Half Deck 콘크리트 상부플렌지)는 일반 강박스연속거더보다 자중이 커져서 정모멘트가 커지고 이에 따라서 박스크기가 커져서 오히려 비경제적이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	1. 슬래브 타설 전 상태에서의 정모멘트부 단면의 경우 일반 강박스거더에 비하여 자중은 크지만, Half Deck과 강재거더의 합성으로 추가 강성을 확보하므로 박스의 크기가 커지지는 않으나,일반 강박스와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였음	반영	별첨#1
2. HD박스교량 ; 곡선부에서 Half Deck과 박스복부연결부에 작용하는 수평력 및 연결방법 검토 필요	2. Half Deck과 박스와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비틀림에 의한 수평전단력을 구하여 두 부재를 연결하는 전단연결재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였음	반영	별첨#2

확인자 : 구조분야 방명석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3. 개량형 BH거더 ; 복부두께가 작은 중간정착구의 할열/파열 파괴 및 정착구 후방의 인장파괴의 위험성에 비하여 중간 정착 및 긴장은 그 효과가 한정된 것 아닌가 검토 필요	3. 중간정착구의 할열/파열에 대한 보강은 시방규정에 따라 보강철근을 배치하였으며, 중간정착구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중간정착구 후방부분의 인장파괴 위험성에 대한 3D 해석을 실시하여 계산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별첨#3
4. 개량형 BH거더 ; 단부정착과 중간정착의 긴장순서에 따라서 중간긴장력 손실이 없는지와, 중간긴장재 긴장 시 좌우 불균형 때문에 복부균열을 방지할 대책을 시방서에 검토 필요	4. 단부의 3개소 긴장작업 후 중간정착부 2개소의 긴장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긴장순서에 따른 손실에 대해 구조계산시 검토하였으며, 긴장작업중 2개의 잭을 이용하여 좌우정착구를 동시긴장하는 방법으로 긴장시 좌우불균형을 최소화하고 관련내용을 설계도서에 추가하였음	반영	별첨#4
5. BiCon 교량 ; 보고서에 제시된 Post-Compression에 의한 압축력은 없는 것 아닌지 검토 필요	5. 강연선과 강봉이 동시에 긴장되는 일체 긴장 정착 시스템으로 강연선 및 강봉에 도입되는 힘에 대한 성능실험을 하였으며, 실제 시공시 계측을 통하여 강봉에 도입되는 압축력을 관리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하였음	반영	별첨#5
6. BiCon 교량 ; Post-Compression에서 축력 없이 편심모멘트만 도입하면 보 하연에 Post-Compression 효과 없이 인장응력 만 커지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6. 일체긴장정착시스템의 적용을 통하여 강연선 및 강봉에 도입되는 힘에 대한 성능실험결과를 제시하고, 실제 시공시 도입되는 압축력에 대한 계측을 통하여 인장응력 발생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하였음	반영	별첨#6

구조분야 정찬묵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구조분야 정찬묵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5	5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설계보고서의 허용응력등 제설계기준은 최근의 도로교 설계기준 2010에 맞추어 수정필요	1. 강재의 허용응력등 제설계 기준을 도로교 설계기준 2010에 맞추어 수정하였음	반영	별첨#1
2. 병천천교는 교량내 폭원의 변화가 있으므로 빔교량으로 설계시 세밀한 구조검토 필요	2. 교량폭원의 변화를 고려하여 구조해석 격자모델을 방사형 배치로 검토하여 계산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별첨#2
3. 곡선반경이 적은 교량에서 강박스로 설계시 부반력발생 가능성에 대한 확인 필요하고, 오창JCT 램프-D교의 경우 유지관리목적의 잭업을 위한 잭업보강재와 수직보강재의 간섭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바람	3. 곡선반경이 적은 교량에서의 시공중 및 완공후 부반력 발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계산서에 수록하였으며, 오창JCT 램프-D교 시종점측에 있는 잭업보강재는 용접거리 확보 및 수직보강재와 간섭이 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였음	반영	별첨#3

확인자 : 구조분야 정찬묵 위원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4. 새터마을의 경우 성토체에 의한 조망권에 대한 민원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검토바람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 성토사면에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여 상세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5. 본 과업에 적용되는 BH거더교는 실적이 충분치 않으므로 시공시 세심한 공사관리 필요	5. BH거더교의 시공시 주의사항을 관련 설계도서에 명기하여 세심한 공사관리를 수행토록 하였음	반영	별첨#4

시공분야 피태희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시공분야 피태희 위원 (서명) 피태희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6	6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 횡단교량은 단계별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안전대책을 검토바람	1. 고속도로 횡단교량의 상부가설 단계별 시공계획 및 교통 안전대책을 공사관리계획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별첨#1
2. 하천 횡단교량은 하부시공 및 상부 빔 가설 시 가축도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계획을 제시바람	2. 하천횡단교량의 가축도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별첨#2
3. 옥산JCT 램프교는 곡선교이므로 콘크리트 타설순서에 따라 시공 중 및 완공 후 부반력 발생 여부 검토 바람	3. 옥산JCT 램프교의 시공 중 및 완공 후 부반력 발생 여부를 검토하여 계산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별첨#3

확인자 : 시공분야 피태희 위원 (서명) 피태희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4. 가설 시 사용장비 및 인양하중으로 인한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반보강 및 지침을 명기하기 바람	4. 가설시 크레인 및 인양중량을 고려하여 부등침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하였음	반영	별첨#4
5. PSC 빔 제작장 계획과 빔 보관 및 가설 시 전도방지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명기바람	5. 빔 제작장 부지확보와 빔 가설시 전도방지에 대한 대책을 설계도서에 명기하였음	반영	별첨#5
6.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도로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자동세륜시설 설치등 환경관리 계획을 반영바람.	6.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공사시에는 살수차 운행, 세륜세차시설(7개소), 가설방진망 설치, 방진덮개, 차속규제(20km/h제한), 유지목표농도 설정, 도로청소차 운행 등 환경관리계획을 반영하였음	반영	

시공분야 고현길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시공분야 고현길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8	8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비교노선검토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 비교노선 중 검토1안으로 적용하였음	반영	
2. 세부선형검토 대안노선의 종단선형이 다소 주행쾌적성 측면에서 불리하나, 순성 및 깎기사면고 최소화에 의한 검토안의 사업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세부선형 중 검토안으로 추진하였음	반영	
3. 돛대산 통과구간 비교검토 생태통로 설치로 돛대산 등산로 복원, 추가 이격에 의한 상장남마을 소음 민원 완화, 자연환경훼손 최소화가 가능한 검토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비교안 중 검토1안으로 적용하였음	반영	

확인자 : 시공분야 고현길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4. 옥산JCT검토 공사비 측면에서는 불리하나 관계기관협의가 용이하며, 경부고속도로 교통안전성 확보 및 청원휴게소 이용자 혼란 완화를 고려하여 검토 안이 우수함.	4. 비교안 중 검토안으로 적용하였음	반영	
5. 서오창IC검토 공사비는 다소 고가이나 산지훼손이 적고 관계기관 기협의 및 상대민원, 환경훼손 최소화 측면에서 유리한 검토1안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5. 비교안 중 검토1안으로 적용하였음	반영	
6. 오창JCT검토 검토 안은 주방향 교통안전성이 양호하고 중부고속도로 성암천교 구간 장래 6차로 양측 확장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경제적, 환경적측면에서 유리한 검토안이 우수함.	6. 비교안 중 검토안으로 적용하였음	반영	
7. 영업소 영업체계 비교검토 사회경제적측면을 고려하고 관리재정적측면에서 유리한 폐쇄식 영업체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사회·경제적 및 관리재정 측면을 고려하여 폐쇄식 영업체계를 적용하였음	반영	

확인자 : 시공분야 고현길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8. 비탈면 보강공법 검토 암질 및 여건에 따라 각 보강공법을 구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8. 비탈면 보강공법은 상세지표지질조사와 시추조사,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지형조건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으나, 조사 및 시험의 한계성과 지층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시공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위치 확인조사 및 Face Mapping을 실시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재검토하고, 설계경사 및 보강공법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시공시 확인조사 계획을 설계도서에 보완하겠음	반영	

도로안전분야 김택천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계획

확인자 : 도로안전분야 김택천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4	3	-	1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옥산JCT • 도면 : 부대시설도 [15] • 위치 : 청원휴게소 유출부 STA.0+245~0+330 • 내용 : 변속차로(가속차로) 길이에 대한 설계기준 검토 및 보완필요(보완내용 : 변속차로 길이 조정 및 관련 차로의 속도관련 부대시설 등)	1. 청원휴게소 진출로(40km/h)와 옥산JCT Ramp-D(60km/h)의 변속차로의 길이는 설계기준에 부합하게 적용되어 길이조정이 불필요하나,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속도규제 관련 교통안전시설 1개소(STA.0+060, 우)를 추가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1
2. 청원휴게소 이설 진출로 • 도면 : 평면 및 종평면도 [15] • 위치 : 청원휴게소 유출부 STA.0+000 • 내용 : 청원휴게소 진출로의 평면선형의 곡선완화를 위해 기존 유출부 근처(현재)가 아닌, 본선 인접지역에 대한 검토 여부	2. 경부고속도로 인접지역으로 휴게소 유출부를 설치할 경우, 현재의 휴게소 동선체계에 혼란을 가중 시킬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현 위치로 계획되었음	원안적용	별첨#2

확인자 : 도로안전분야 김택천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3. 서오창IC • 도면 : 부대시설도[16] • 위치 : Ramp-B 0+080 인근 Ramp-C 0+660 인근 Ramp-D 0+100 인근, 0+260 인근 • 내용 : 각 지점별 평면곡선의 반지름에 맞는 속도규제관련 교통안전시설 보강 필요	3. 각각의 위치에 속도규제관련 교통안전시설 총 4개소를 보강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3
4. 오창JCT • 도면 : 부대시설도 [17], 부대시설도 [14] • 위치 : 부대시설도 [17] Ramp-D 0+000 이전 본선구간 중 부대시설도 [14] STA.11+000~11+100중 위 두 지점은 동일지점임. • 내용 : 본선 차로중 2차로중 1차로가 없어짐에 대한 도로정보를 사전 인지하여,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완료하고 Ramp-D에 진입할 수 있는 시설 보강 필요	4.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속도규제 및 서행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4

환경분야 배병욱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분야 배병욱 위원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3	3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노선 주변에 축사시설이 산재되어 있는바, 공사 중 및 운영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1.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축사시설의 환경목표기준은 70→60dB(A)로 강화 설정하여 목표기준 달성을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공사시 및 운영시 가설방음판넬, 방음벽설치 및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목표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하였음 - 또한,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시 대표정온시설에 소음자동측정망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계획이며, 민원 발생시 추가 모니터링 계획, 방음판넬 제원조정, 환경관리인원 운영, 축사 임시이동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확인자 : 환경분야 배병욱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2. 적극적인 토사유출 방지대책이 필요함. 특히 하천 횡단구간에 적절한 비점오염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하천 횡단구간 공사시 부유토사의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물막이, Sheet Pile, 오탁방지막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3. 도로 구간 내 초기우수 등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필요함	3.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도로, 교량, 영업소 등 불투수층 전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하였음, 시설의 유지관리와 LID(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여 저감시설은 자연형시설(침투도랑)을 선정하였음 - 또한, 본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으로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반영	

환경분야 김정곤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분야 김정곤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11	11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동식물 서식 보호를 위해 형질 변경, 절토 시 기존 토양의 활용방안 검토 (5-702 이하)	1.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유기물 함양이 높은 임야지역의 비옥토(표토 약 0.15m) 약 3만㎡을 확보하여 보관후 가이식장 및 녹지 조성시 활용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2. 기존 수종의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재계획 수립 시 반영 검토 (이식이 용이하고 지역환경에 적합한 경관수종(5-699이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우선적으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적 가치(비오톱 보호)측면에서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자생수종 중 생존율을 고려하여 중·소형(흉고직경 15㎝ 이하)의 상수리나무, 소나무 등을 이식 계획하였으며, 가이식장을 조성하여 관리후 식재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확인자 : 환경분야 김정곤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3.특히 생태통로 조성시 경관적 식재보다는 기존 식재현환을 반영하여 동식물의 지형,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할 것	3.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생태통로 상부식재는 자연성이 높은 자연수종을 선발하여 다층구조(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층)로 식재 계획하였으며, 교목은 현지 자생수종인 이식수목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4. 녹지가 단절되는 부분(교량 등)에 도로 측면에 인공지반 녹지 조성 검토	4.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인공지반녹지 조성은 교량의 설계변경 및 구조검토를 요하며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반영	
5. 수목 선정시 지역적 경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탄소흡수력이 높은 수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 및 보완	5.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이산화탄소 저장과 흡수능력이 우수한 은행나무, 느티나무등을 선정하여 배식계획 하였음	반영	
6. 여름철 폭염, 홍수, 가뭄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계획시 LID(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한 설계 및 시설 설치를 권장 함 (도로변 투수시설, 불투수 면적 최소화, 빗물활용 시설 등)	6.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LID(저영향개발)기법의 최대한 고려하여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도로, 교량, 영업소 등 불투수층 전역을 대상으로 자연형시설(침투도랑)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7. 갑작스런 폭우 등 최근 기상이변 피해사례 등을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도로계획 수립	7.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폭우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낙석방지망 설치구간에 등나무를 식재조치 하였음	반영	

확인자 : 환경분야 김정곤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8. 수종선정 및 배치 계획 시 계절별 색채를 고려하여 도로변 녹지색채경관을 검토	8.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계절별 경관을 연출하기 위하여 여름철 녹음경관을 위해 느티나무와 방음벽설치구간에는 담쟁이덩굴을 식재하였고, IC주변에 가을철 대표적 경관수종이며 환경정화수종인 은행나무를 식재하여 경관성과 환경정화능력을 도모하였음	반영	
9. 가로수는 여름철 그림자를 형성하고, 반대로 겨울철엔 그림자 형성을 통해 도로가 얼거나, 얼어있는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선정 및 배치할 것	9.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배식계획에 있어 그림자 형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낙엽성 수종을 주로 식재하였으며 식재간격 또한 이격하여 그늘로 인한 결빙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식계획 하였음	반영	
10. 도로 주변에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10.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재생에너지의 경우 운영 및 유지관리측면에서 불리하여 배제하였으나 서오창IC 부근에 LED를 적용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추구하였음	반영	
11. 경부고속도로와 접속하는 구간은 곡선부에 위치하므로 주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부대시설의 추가설치 검토 (자문시 추가의견)	11. 옥산 JCT 사업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확장(남이~천안간)을 고려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후 실시설계를 수행하였고, 추후 남이~천안 확장사업의 실시설계(2013년 3월 착수)와 관련한 상세 협의 후 필요시 부대안전시설을 수정, 보완 하겠음	반영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3-32호 2013. 05.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청원군 협조요청 검토지시(교량설치 요청)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공사과-482(2013.4.15)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3.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측점 3+860지점의 농어촌도로 확장예정구간의 교량설치 요청에 대한 검토지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계획을 제출합니다.

붙임 : 협조요청에 대한 조치계획(청원군 건설과) 1부. 끝.

서 울 서 초 구 강 남 대 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충청북도 청원군 건설과]

2013. 5

국 토 교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 -11479, '13.04.11)	【건설과】 o 장래 도로확포장 관련 -고속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STA. 3+860 지점 기존도로 통과 부분에 대하여 교량설치	o 세부계획 수립 후 재협의 -귀 군의 협의의견(건설과-12359, '12.05.08)을 반영하여 STA. 4+200 위치에 통로암거(4.5×4.5)를 계획하였음 -본 사업은 2013년 6월내 실시계획승인신청 예정으로서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귀 군의 화산도로 확포장공사 반영시 일정지연이 불가피함으로 현 단계에서 반영은 곤란함 -따라서, 귀 군의 협의의견은 화산도로 확 포장공사 세부계획 수립 후 재협의 필요 ■ 방문 확인결과(2013.04.22) • 실제 위치 : STA. 4+200 • 사업명 : 화산도로 확포장공사 (L=1.5km, 왕복2차로) • 화산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일정 -2013. 05 : 실시설계 착수 -2013. 09 : 실시설계 완료 -2014. : 보상 완료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3-33호 2013. 05. 24

수 신 :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장

참 조 : 도로팀장

제 목 : 설계심의 결과(옥산JCT교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팀-1071(2013.5.09)호와 관련입니다.

3.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경부선 316.6k 및 중부선 264.8k 상부횡단 교량에 대한 성과품 및 디자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심의 조치계획 1부. 끝.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석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설계자문위원 선정 및 위원회 개최계획 알림(옥산-오창)

1. 우리 청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설계자문(마무리단계)을 위해 귀하를 당해 안건의 위원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사전 심의의견을 작성하여 2013.5.8.(수) 14:00까지 전자우편(ms_kim@korea.kr)과 팩스(042-670-348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개최되는 회의에 꼭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설계자문위원회 개최계획 1부.
2. 심의의견 작성양식 1부.
3. 심의자료 1부.(별도송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신자 이태옥 귀하, 박용성 귀하, 조영삼 귀하, 정대석 귀하, 정일호 귀하, 방명석 귀하, 정찬묵 귀하, 피태희 귀하, 고현길 귀하, 김택천 귀하, 배병욱 귀하, 김정곤 귀하

주무관	김민수	사무관대우	박창순	사무관대우	강승일	시설사무관	이재호
실장	전결 04/30 김성수						

협조자

시행 건설관리실-398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 042-670-3414 전송 042-670-3488 / mskim@molit.go.kr /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 소방방재청장(재해영향분석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조치계획 송부

1.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1099호('13.3.29)의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요청하신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 조치계획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민인홍	시설사무관	이강녕	과장	전결 2013. 4. 25. 김영국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328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조치계획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추가 의견 제시	○ 노선선정 -노선선정 검토시 재해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추가 검토하기 바람	○ 반영 -재해적 측면으로 하천재해, 호우재해, 사면재해 등에 대해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노선을 선정 ■ 하천재해 : 하천횡단 및 하천내 시설물설치 최소화 방안으로 노선을 선정 ■ 호우재해 : 토사유출량 최소화 노선 선정 후 임시침사지 계획 ■ 사면재해 : 산사태위험지구 통과 최소화로 사면재해 저감	p1-15
	○ 소하천 이설 선형계획 -소하천 이설2개소에 대해서는 수충부(직각으로 꺾이는 부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형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 부분반영 -선형 재검토 결과 당초 직각인 수충부를 둔각으로 처리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 측면으로 유속 및 소류력 검토를 통하여 호안의 안정성을 확보. 【 성산천 】 ■ 당초 직각인 유로를 둔각으로 선형개량 하였으며 수충부 발생구간은 소류력 검토결과 12kg/㎡ 이하로 산정되어 허용소류력 16kg/㎡인 자연형 식생블럭으로 계획하였음. 【 양지천 】 ■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은 없으며 기존 직강하천과 곡률반경이 작은 구간을 개량하여 완만한 곡률과 자연스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형계획을 수립하였음.	p4-31
	○ 양지천 -양지천 직상류에 저수지가 있고 여수로가 양지천으로 연결되어 있는바, 양지천 선형변경에 따른 도수처리(감쇄공설치)와 하상 및 법면 세굴방지 대책을 포함한 선형변경을 시키지 않는 방안은 없는지 추가 검토할 것	○ 반영 -기존유로를 유지할 경우 도로횡단암거 계획연장(L=165m), 유·출입부 단차(H=13m) 과다 발생으로 유지관리 및 유출부 세굴에 취약하여 유로 이설이 불가피하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03.7, 청원군)을 반영하여 계획하폭 및 통수단면 확보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 -기존 양지소류지 여수로 시설물(도수로, 감쇄공, 방수로)은 저촉되지 않으며, 여수로 끝단은 하상 세굴방지를 위한 바닥보호공을 추가 설치하였음.	p4-31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추가 의견 제시	○ 하천기본계획 -하천내 교각설치에 따른 수리검토는 주변 상.하류 수위 영향인자(윤변, 경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증가하는 수위는 현재 수립중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 하천관리청과 협의 공문을 수록하기 바람	○ 반영 -하천내 교각설치에 따른 수리검토는 상·하류 수위 영향인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였고, 증가하는 수위(병천천 최대 5cm, 용두천·성암천 28cm)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천관리청과 협의함. ■ 협의 공문 첨부	p8-10~ p8-12
	○ 배수관 유속 -배수관 유속은 적정유속(0.8~3.0m/s)을 지키고, 초과되는 경우는 유입구 및 유출구에 감쇄공 등을 설치하여 유속을 저감시킬 것	○ 반영 -협의의견에 따라 배수관 적정유속이 요구되는 28개소에 대하여 유속 저감시설을 계획하였음. ■ 수로보호공 : 14개소 ■ 감쇄공 : 10개소 ■ 침전조 : 4개소	p8-177~ p8-193
	○ 개발후 홍수량산정 -개발후 홍수량 감소하였는바, 홍수량 산정을 재검토 하기바람	○ 반영 -개발후 홍수량은 적정하게 산정되었음 ※ 개발전 토지이용현황은 농경지 및 급경사 산지로 유출계수가 높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개발중에는 나지로 변경됨에 따라 유출계수가 감소하였고, 개발후에 절·성토 사면에 대한 녹화를 실시하여 녹지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치되어 유출계수가 감소	p8-28~ p8-36
	○ K값 적용 -토사유출량 산정시 현장 위치별로 지층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위치별 현장의 지층조건을 고려하여 K값을 적용할 것	○ 반영 -토사유출량 산정시 현장 위치별 지층조건을 고려하여 K(토양침식인자)값을 적용하였음.	p8-37~ p8-42
	○ 산사태 위험지구 계측관리 -산사태 위험지구 계측관리는 개발중.후 철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측하기 바람	○ 반영 -산사태 위험지구 계측관리에 있어 개발중·후에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 개발중 : 계측시설 15개소 운영관리 · 지중계 : 5개소 · 지하수위계 : 5개소 · 프리즘타켓 : 5개소 ■ 개발후 : 운영 및 유지관리 수립계획서에 따라 관리	p8-195~ p8-202
	○ 생태통로 위치 -생태통로 BOX 위치를 명확히 제시할 것(도면)	○ 반영 -생태통로(2개소) 위치를 도면에 제시하였음. (본선 STA. 0+320, 본선 STA. 8+440)	p8-173~ p8-175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미호천권역 하천통과 관련 협의 요청(옥산-오창)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노선이 미호천권역 지방하천(병천천, 용두천, 성암천) 구간을 통과하여 귀 과에서 용역중인 「미호천권역(2)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협의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협의 자료 1부(별도송부). 끝.

도 로 시 설 

주무관	박준식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3. 4. 19. 서용옥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621 (2013. 4. 19.)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554 팩스번호 042-670-3485 / mjjs98@molit.go.kr / 비공개(5)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2013-27호 2013.04.18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방하천 통과계획 협의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노선이 지방하천(병천천, 용두천, 성암천)을 통과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방하천 통과 계획에 대하여 귀 청 하천계획과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합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청 하천계획과에서 계획중인 미호천권역(2)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계기관 협의서(지방하천 통과) 1부. -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3-21호 2013. 04. 10

수 신 :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장

참 조 : 지역개발팀장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용·배수로 상세협의 요청

1. 귀 공사(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귀공사(지사)에서 관리 중인 호죽1호선 용수관로(STA. 2+100~2+250(좌), 300mm GR관)이설 및 수로터널(Ø1,000 소로간선 No.70~72)횡단계획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상세협의를 요청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계기관협의서 - 용수관로 통과협의 1부. 끝.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의서-용수관로 통과협의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2013. 04

옥산오창고속도로

목 차

❑ 위 치 도

1. 사업목적

2. 사업범위

3. 추진경위 및 계획

4. 협의내용

5. 용수관로 현황

❑ 노선도

❑ 호죽1지선 이설계획

❑ 통과구간 종평면도

(소로간선 No.70~72)

❑ 소로간선 관거 안정성 검토서

위 치 도

OKSAN-O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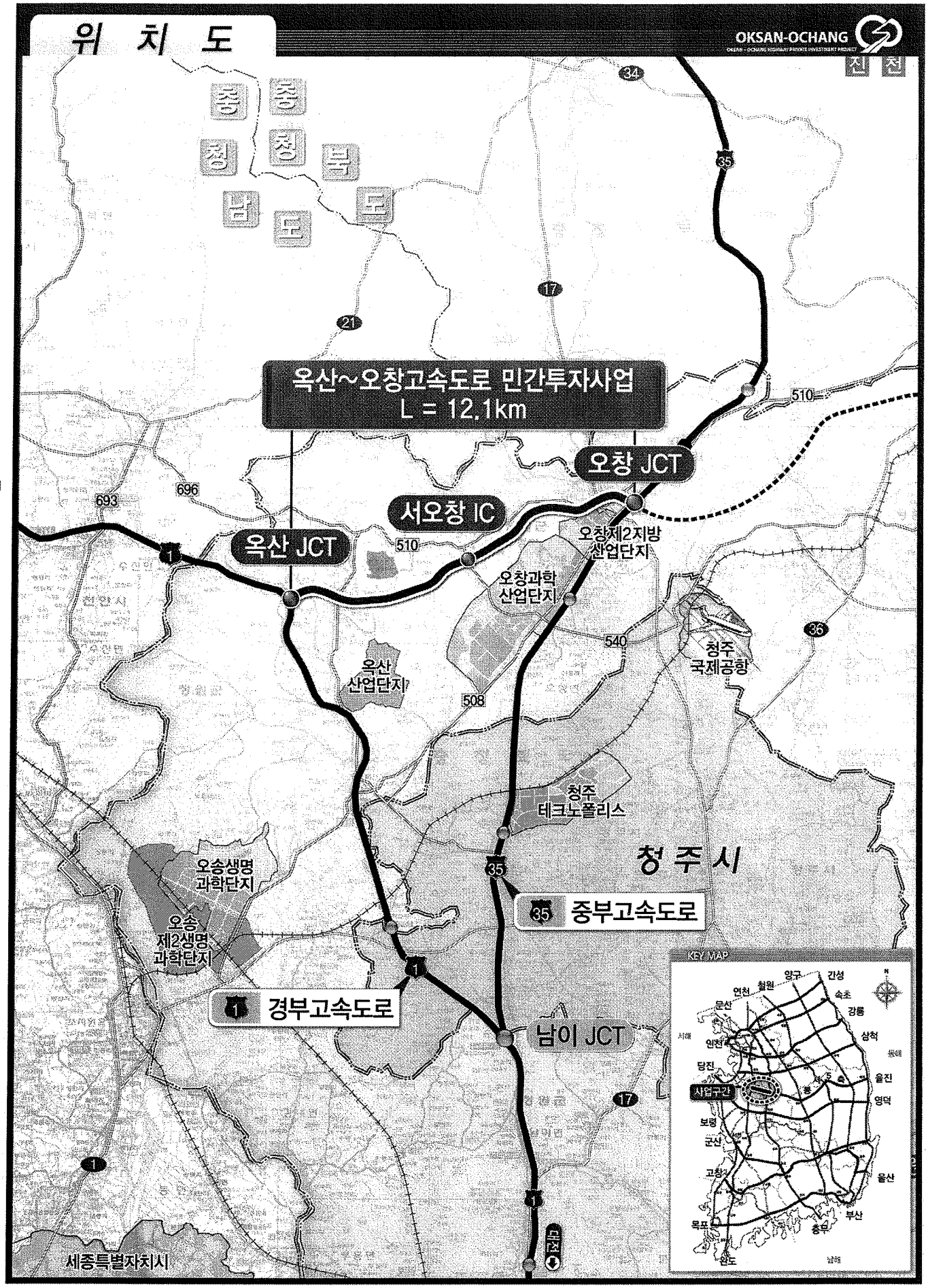

1. 사업목적

- ❍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 동서 5축(당진~천안~옥산~오창~영주~울진)의 구축
- ❍ 동서5축의 조기건설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지역의 중추공항(Hub-Airport)으로 육성
- ❍ 아산만권과 대전·청주권간 생산, 물류, 교류 기반조성 확대로 지역간 균형 발전
-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

2. 사업범위

사 업 명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출입시설	JCT 2개소 / IC 1개소
도로구분	지방지역 고속도로(100km/hr)	영업소	서오창본선영업소 /서오창IC영업청원군소
연 장	12.1km (왕복 4차로)	공사기간	4년(착공일로부터 48개월)
시설현황	교량 : 22개소/2,414m	주무관청	국토해양부
총사업비	1,894억원 (2004. 9 불변금액, 보상비 제외)	사업시행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

3. 추진경위 및 계획

- 2004.11. :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지에스건설 컨소시엄 → 국토해양부)
- 2007.06. : 사업제안서 검토(적격성조사 등) 완료(PIMAC)
- 2008.05. :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국토해양부)
- 2008.1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12.01. : 실시협약체결(국토해양부 광역도시과)
- 2012.03. : 실시설계 착수
- **2012.04.12 : 관계기관 노선협의 요청(대전청 도로계획과-3404)**
- **2012.04.24 : 노선협의의견 제출(청원지역-1417)**
- 2012.10.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 2013.01. : 환경영향평가(본안)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제출
- 2013.06 : 인허가 완료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 (예정)
- 2013.09. :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착공 (예정)

4. 협의내용

- ❍ **호죽1지선 용수관(STA.2+100~2+300, 좌)로 중첩에 따른 이설협의**
- ❍ **소로간선(No.70~72, 보강흄관 Φ1000) 횡단협의**

5. 용수관로 현황

구분	호죽1지선	소로간선	비 고
위치	본선 STA.2+100~2+00(좌) : 옥산면 호죽리 122전 일원	본선 STA.3+580(중) : 옥산면 호죽리 48답 일원	
규격	유리섬유복합관(φ300)	보강흄관(φ1000)	
기능	• 오창저수지에서 발원한 농업용수를 오창읍 백현리 일원 공급	• 오창저수지에서 발원한 농업용수를 옥산면 소로리 일원 공급	
본 사업과의 관계	• 공기변 맨홀(No.31+00) ~ 이토변 맨홀(No.27+40) 중첩 : L=160m • 분수공(No.30+00), 공기변 맨홀(No.28+30) 저촉	• No.70~72 토공횡단	
처리현황	• 공기변 맨홀(No.28+30) 특성을 고려하여 정점부에 용수관로 이설 • 분수공 No.30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본 사업노선의 우측으로 분기된 별도의 이설관로 및 분수공 설치	• 보강흄관으로서 별도처리 불필요 : 2013.02.22 방문 협의결과 반영	

□ 노 선 도

□ 호죽1지선 이설계획

□ 통과구간 종평면도

(No.70 ~ 72)

□ 소로간선 관거 안정성 검토서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 국 도 로 공 사

수신자 : 충청본부장
(경유)
참 조 : 충청지역 도로팀
제 목 : 설계심의 계획 통보[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1. 기술심사처-745(2013.04.09), 도로처-1160(2013.03.28) 및 충청본부 도로팀-626(2013.03.25)호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고속도로(주)에서 시행중인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경부선 316.6k 및 중부선 264.8k 상부 횡단 교량에 대한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에 대한 설계심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다 음 -

가. 심의안건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1호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2호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나. 심의방법 : 소집심의
다. 심의일시 : 2013. 4. 23(화), 14:00
라. 심의장소 : 본사 제1별관 4층 세미나실
마. 심의위원 : "설계심의 계획" 참조
바. 협조사항 : 심의 소요 비용 - 사업시행기관 지급

붙 임 : 1. 설계심의 계획 1부.
2. 심의 소요비용 산출내역 1부.
3. 통장사본(별도송부) 1부.
4. 사업자등록사본(별도송부) 1부.
5. 전자세금계산서 1부(별도송부). 끝.

한 국 도 로 공 사

기술심의팀 손혁기　　기술심의팀 유준석　　팀장 전결 정연권

시행 기술심사처-753 (2013.04.09.)　　접수 도로팀-794/3534 (2013.04.09.)

우 461-7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 http://www.ex.co.kr/

전화 031-779-5493 전송 031-779-4199 / littleprince79@ex.co.kr / 공개

공람　　도로팀 김영남　　도로팀 김기현　　팀장 김낙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의의견 조치결과 송부

1.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2012.04.27), 청원군 건설과-12359(2012.05.08), 보병제37사단 작전참모처-917(2012.05.01)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귀 기관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협의의견 조치결과 1부(별도송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신자 충청북도지사(균형개발과장), 청원군수(건설과장), 보병 제37사단장(작전참모처장)

사무관대 우 한형동	사무관대 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3. 4. 4. 서용옥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255 (2013. 4. 4.)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564 팩스번호 042-670-3485 / hanhd@mltm.go.kr / 비공개(5)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실시설계 상세협의 요약

2013. 04

옥산오창고속도로

목 차

❑ 위 치 도

1. 사업목적

2. 사업범위

3. 추진경위 및 계획

4. 협의내용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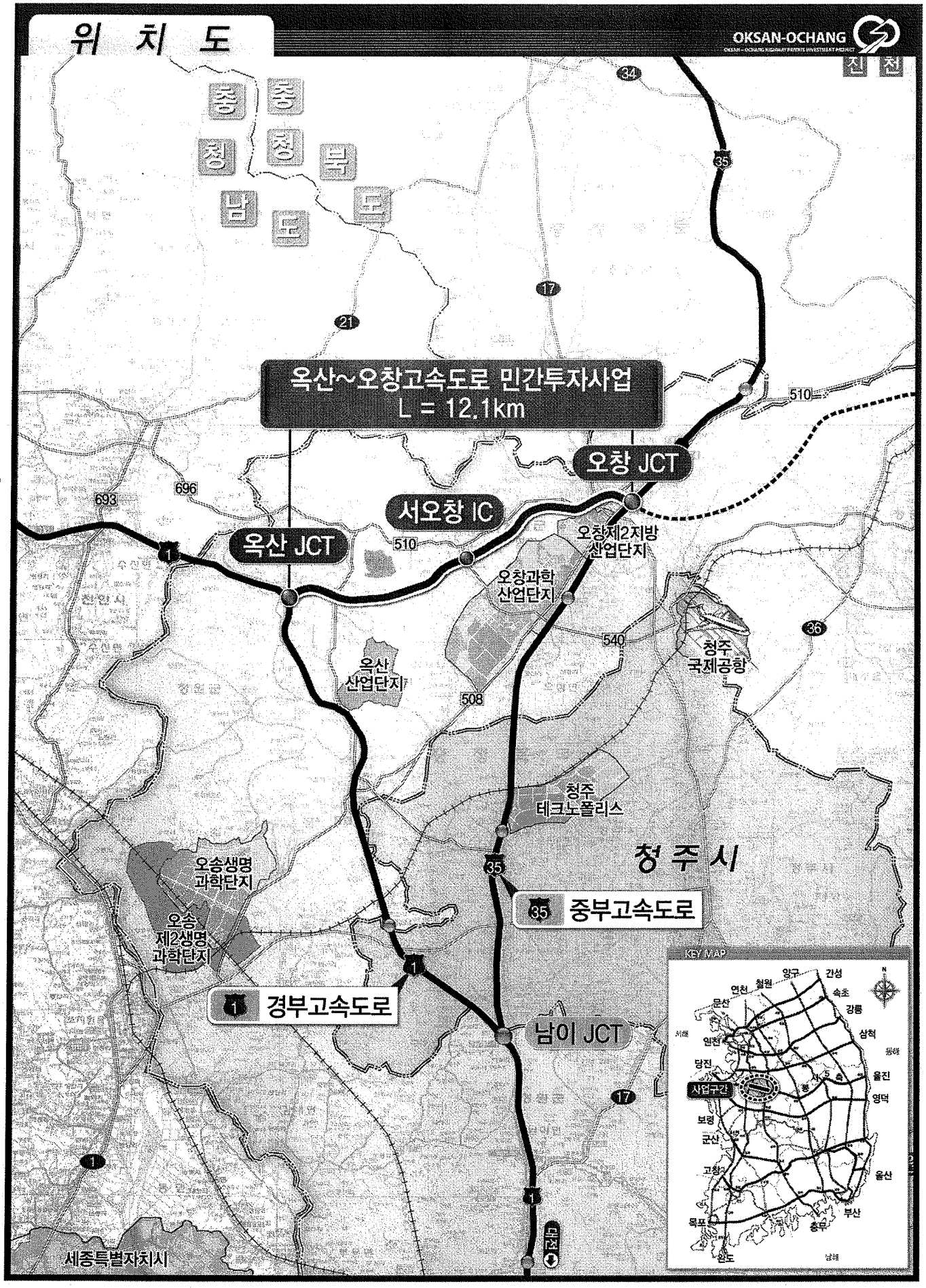
OKSAN-OCHANG
충청남도
충청북도
진천
34
35
17
21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L = 12.1km
오창 JCT
510
693
696
서오창 IC
옥산 JCT
오창제2지방
산업단지
오창과학
산업단지
540
청주
국제공항
옥산
산업단지
508
청주
테크노폴리스
청 주 시
오송생명
과학단지
오송
제2생명
과학단지
35 중부고속도로
1 경부고속도로
남이 JCT
세종특별자치시
KEY MAP
양구
간성
철원
연천
속초
문산
강릉
삼척
파주
동해
당진
울진
사업구간
영덕
보령
군산
울산
고창
부산
목포
충무
완도
남해

1. 사업목적

-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 동서 5축(당진~천안~옥산~오창~영주~울진)의 구축
- 동서5축의 조기건설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지역의 중추공항(Hub-Airport)으로 육성
- 아산만권과 대전·청주권간 생산, 물류, 교류 기반조성 확대로 지역간 균형 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

2. 사업범위

사 업 명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출입시설	JCT 2개소 / IC 1개소
도로구분	지방지역 고속도로(100km/hr)	영업소	서오창본선영업소 /서오창IC영업청원군소
연 장	12.1km (왕복 4차로)	공사기간	4년(착공일로부터 48개월)
시설현황	교량 : 22개소/2,414m	주무관청	국토해양부
총사업비	1,894억원 (2004. 9 불변금액, 보상비 제외)	사업시행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

3. 추진경위 및 계획

- 2004.11. :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지에스건설 컨소시엄 → 국토해양부)
- 2007.06. : 사업제안서 검토(적격성조사 등) 완료(PIMAC)
- 2008.05. :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국토해양부)
- 2008.1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12.01. : 실시협약체결(국토해양부 광역도시과)
- 2012.03. : 실시설계 착수
- **2012.04.12 : 관계기관 노선협의 요청(대전청 도로계획과-3404)**
- 2012.10.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 2013.01. : 환경영향평가(본안)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제출
- 2013.04. :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완료(예정)
- 2013.06 : 인허가 완료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 (예정)
- 2013.09. :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착공 (예정)

4. 협의내용

관 련 기 관	부서	담당자	사전 협의일자	상세 협의내용	비고
충 청 북 도 (균형개발과 - 5 1 4 4 , 2012.04.27)	도로과	음치헌 주무관 (043-220-4223)	2월20일 3월06일	•지방도 횡단계획	원안적용
	치수 방재과	박종완 주무관 (043-220-4342)	2월26일	•지방하천 횡단계획	원안적용
청 원 군 (건 설 과 - 1 2 3 5 9 , 2012.05.08)	건설과	박상갑 주무관 (043-251-3503)	2월20일	•농어촌도로 횡단계획 •리도202호선 이설계획	원안적용
	도시과	신성호 주무관 (043-251-3595)	2월20일	•오창읍 도시계획구간 통과계획	원안적용
	재난 안전과	김주봉 주무관 (043-251-3665)	2월22일	•소하천횡단 •성산천 및 양지천 이설계획	원안적용
	상수도 사업소	조영호 주무관 (043-251-4414)	2월20일	•지방도540호선 상수도 이설 •학소마을 상수관거 이설 •11+100 근처 상수도 폐쇄관로 관련 •10+360 근처 상수관로 저촉	반영
	하수도 사업소	이준삼 주무관	2월20일	•학소마을 하수관거 이설 •10+360 근처 하수관로 저촉	반영
한 국 농어촌공사	미호천 사업소	장웅희 과장 (043-218-0390)	2월22일	•STA.2+100~STA.2+250(좌) 용수관로(GR관, 300㎜) 저촉 •수로터널(φ1,000) 횡단계획 (소로간선 No.70~72)	반영
국방부 제37보병사단 (작전참모처 - 9 1 7 , 2012.05.01)	작전처	이기운 대위 (043-835-6304)	3월14일	•목진지 등 군시설물 저촉 및 추가 시설물 계획 여부	협의의견 수령 후 조치예정

※ 상세 설계내용 별도 방문후 제출 예정

"미래를 여는길, 더불어 만드는 삼보기술단"

주 식 회 사 삼 보 기 술 단

우:138-834 /서울시 송파구 방이1동 200-2 / 전화(070)7487-8686 / 전송(02)3447-0902/담당자:문정용

선결			지시			
접수	일자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문서번호: 삼보 2013-396 호

시행일자: 2013 . 03. 28

수 신: 옥산~오창고속도로 주식회사

참 조: 사업관리책임자

제 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설계감리 설계도서 검토의견 2차조치계획서 제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설계감리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2차분」에 대한 설계사의견 및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계감리 설계도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서 1부. 끝



(주) 삼 보 기 술

대표이사 이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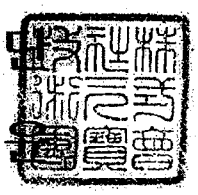

"미래를 여는길, 더불어 만드는 삼보기술단"

주 식 회 사 삼 보 기 술 단

우:138-834 /서울시 송파구 방이1동 200-2 / 전화(070)7487-8686 / 전송*3433-3191 /담당자: 문정용

문서번호: 삼보 2013 - 368 호

시행일자: 2013 . 03. 25

수 신: 옥산~오창고속도로 주식회사

참 조: 사업관리책임자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설계감리 설계도서 검토의견 1차조치계획서 제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설계감리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1차분」에 대한 설계사의견 및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계감리 설계도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서 1부. 끝

발송 No 368 2013. 03. 25 (수)삼보기술단

(주) 삼 보 기 술 단

대표이사 이 창 윤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2013-14호 2013.03.18

수 신 :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장

참 조 : 도로팀장

제 목 :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횡단교량 설계 및 공공디자인심의 요청.

1. 귀 본부의 무한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1715(2012.05.18)호와 관련하여 본 사업 시설물중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설계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계 및 공공디자인 심의 설명서 1부. -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석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2013-7호 2013.01. 24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한국도로공사 재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공사과-7113('2012.10.29)호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재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한국도로공사) 1부. 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석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한국도로공사)

2013. 1

국 토 해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3611, '12.10.25)	【도로조사팀】 □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 접속위치 관련 ○ 천안방면 연결로 - 휴게소 진출로와 합류 후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협의(안)에 동의 ○ 남이방면 연결로 - 접속위치가 곡선(R=600) 구간으로 분기점 설치 기준에 위배되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연결로가 휴게소 진입로와 근접하여 이용객 혼란 발생이 우려되므로 협의(안)에 부동의 ☞교통안전 및 이용객 혼란 방지를 위하여 곡선구간을 벗어나서 연결로 접속 및 휴게소 진입부와 이격거리 확보 필요	○ 이행 ○ 수용 - 대전방향 연결로와 청원휴게소 진입로간 이격거리를 당초 410m에서 이용객 혼선 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상 직선부까지 대전방향 연결로 연장 설치 - 본 사업 연결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공사비는 사업자가 부담할 것이며, 세부사항은 남이~천안 확장공사 실시설계시 재협의를 요청함 ※ 사업추진 관련 - 본 사업은 '13년 하반기 착공하여 '17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사업으로, (공사기간 48개월) - 사업기간 차이로 인한 재시공 또는 보완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를 막기 위해 본 사업 옥산 JCT 접속구간은 남이~천안 확장공사 선 시공 후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므로 사업추진시 협조 요청 -만약,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지연으로 옥산JCT가 현 경부고속도로에 6차로 구간에 접속되는 경우 단계건설이 불가피하므로 접속방안, 공사시기, 공사비 분담방안 등에 대하여는 재논의	별첨#1 참조 별첨#2 참조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2)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3611, '12.10.25)	【도로조사팀】 □ 영업시설 설치 관련 ○ 재정~민자 연계 이용시 최저요금 또는 기본요금의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금제 검토 필요	○ 개통전 재검토 - 본 사업의 최초통행료 및 통합운영에 따른 요금체계 변경 등은 주무관청 승인사항으로 한국도로공사 요금체계 개선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무관청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임 - 참고로, 협약 요금체계는 단거리 구간임을 감안 기본요금을 400원으로 할인(50%)하였음 ☞요금산출근거(1종기준, '04년 9월 불변) -옥산JCT~서오창IC(경부선 이용차량) (400원+6.5km×39.1)×1.4=916원 -서오창IC~오창JCT(중부선 이용차량) (400원+5.6km×39.1)×1.4=867원 -옥산JCT~오창JCT(전구간) (400원+12.1km×39.1)×1.4=1,222원	
	○ 서오창IC 차로 미분리(경부선 및 중부선방향)에 따라 향후 연결되는 노선 실제 이용구간 식별 불가로 민원 등 통행료 수납시 문제 소지 있음	○ 개통전 재검토 - 경부선/중부선 연결로에 차량번호 인식시설을 계획하여 도공구간 실제 이용거리에 따라 통행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 향후, 도로공사의 통행요금 부과체계 연구용역에 따른 요금체계가 변경될 경우, 요금징수시설 변경을 검토할 계획임 -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행요금 부과체계 연구용역에 본 사업의 반영을 요청함	※이용 방향별 최단거리 요금 적용
	○ 향후 위 사항에 대한 제반 문제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민자법인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별 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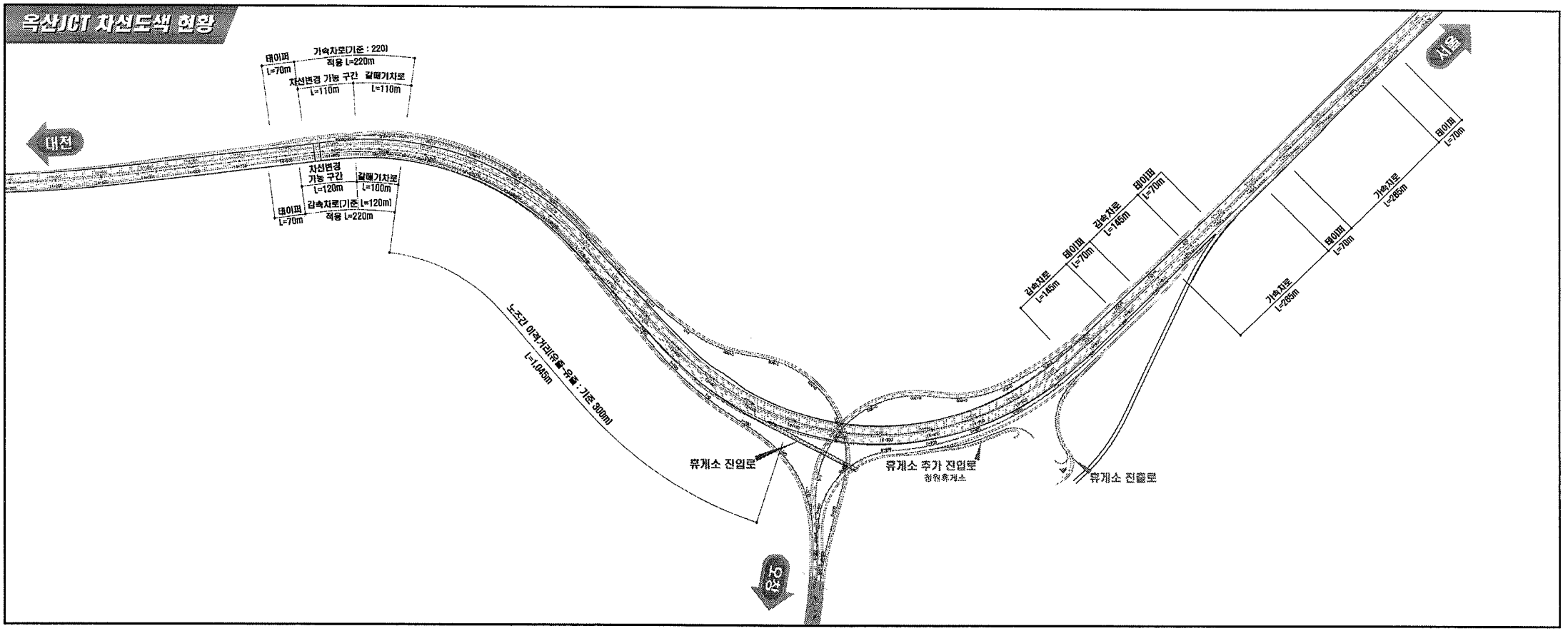
옥산JCT 차선도색 현황
대전
서울
청주
테이퍼 L=70m
가속차로(기준 : 220)
적용 L=220m
차선변경 가능 구간 L=110m
감속차로 L=110m
차선변경 가능 구간 L=120m
감속차로 L=100m
감속차로(기준 L=120m)
적용 L=220m
노즈간 이격거리(유출 : 기준 900m)
L=1,045m
휴게소 진입로
휴게소 추가 진입로
청원휴게소
휴게소 진출로
감속차로 L=145m
테이퍼 L=70m
가속차로 L=285m

별 첨 #2

■ 주요 공사량 비교

구 분	한국도로공사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전제조건	• 남이~천안확장 선 시공 후 옥산JCT 연결로 접속 • 옥산JCT 접속에 따른 남이~천안확장 변경선형 실시설계시 수용	
남이~천안 기본설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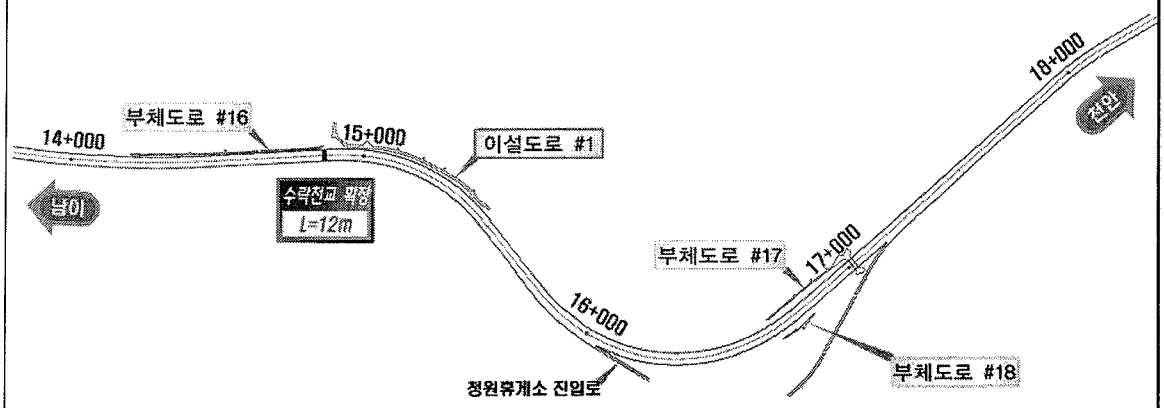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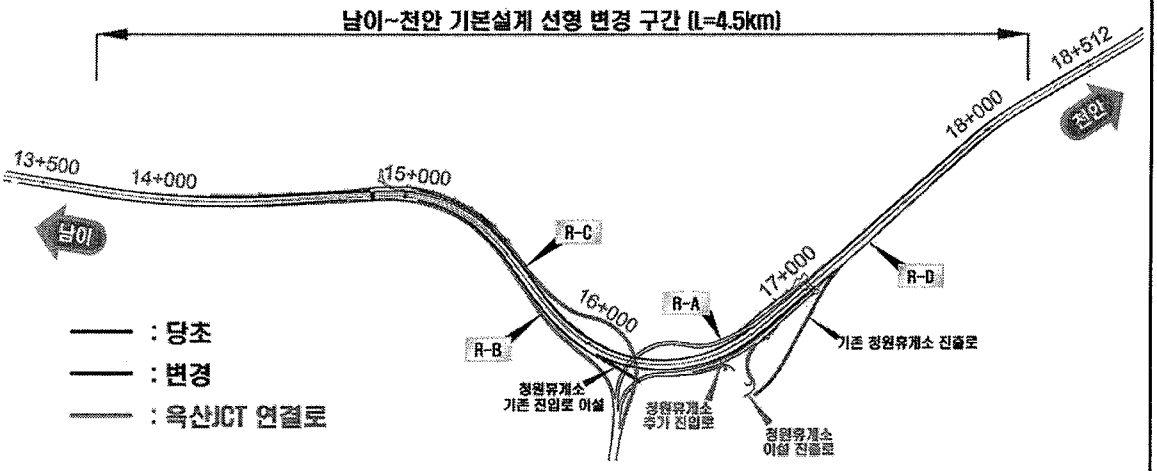	
주 요 공사량	• 남이~천안확장 : L=4.50km(왕복8차로) -본선 부대시설 : 1식 • 청원휴게소 기존 진입로 이설 • 남이~천안 8차로 수락천교 확장 • 남이~천안확장 기본설계시(2010. 12) 이설도로#1(리도202호선), 부체도로 #16, #17, #18 및 확장 배수구조물 • 남이~천안확장 공사시 교통처리	• 옥산JCT 연결로 가감속차로 -연결로 접속부 부대시설 : 1식 • 청원휴게소 추가 진입로 • 옥산JCT 연결로 설치에 따른 수락천교 확장 • 옥산JCT 연결로 설치에 따른 추가 배수구조물 확장 • 옥산JCT 연결로 접속부 교통안전시설
기 타	※남이~천안 확장공사 지연시 옥산JCT 연결로 접속은 단계건설(현 6차로→장래 8차로)이 불가피 하므로, 추후 옥산JCT 접속관련 세부협의 필요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2013-ㅎ-호 2013.01.14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수립관련입니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영향평가서 1식. 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2013- 4. 호 2013.01.14

수 신 : 청원군수

참 조 : 환경과장

제 목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의 건.

1.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조치계획 1부. 끝.

No. 발13 송
2013. 1. 14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redacted]

[redacted] 조치사항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2013- 2 호 2013.01.08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 연장 요청

2012년 1월 11일 국토해양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민원처리 등으로 실시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 연장이 필요한 바,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 연장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 연장 요청서 1부. "끝".

No. 발송
2013. 1. 08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2012-48호 2012.12.21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소방방재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관련 협의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3.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으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사 착공전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4. 소방방재청(재해영향분석과)과 실시계획 승인 요청 전 사전재해영향성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귀 청에 협조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1부. 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2012-47호 2012.12.21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청원군 수질오염총량 관련 협의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3. 본 사업 예정지인 청원군 옥산면, 오창읍 일원은 "금강오염총량관리지역 미호B" 지역으로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청원군으로 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4. 충청북도 청원군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전 수질오염총량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귀 청에 협조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수질오염총량검토서 1부. 끝.

발송 No. 64
2012. 12. 21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석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 수질오염총량검토서 -

2012. 12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계획노선은 1992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전국 국토간선도로망계획(동서9축, 남북 7축) 중 동서5축에 해당함

○ 동·서축 국가기간망의 구축을 통해 대전·청주권 지역에의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주국제공항과의 원활한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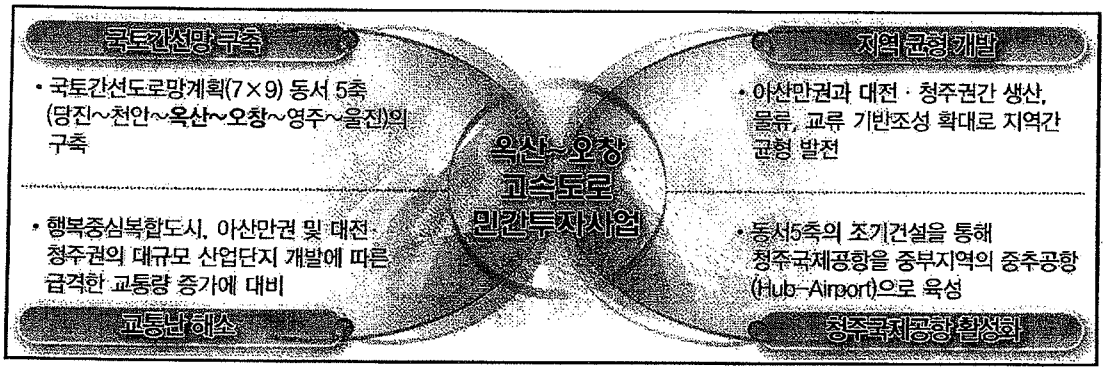

2) 사업의 추진경위

○ 2004. 11. :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GS건설 컨소시엄 → 국토해양부)

○ 2007. 06. : 사업제안서 검토(적격성조사 등) 완료(PIMAC)

○ 2008. 05. :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국토해양부)

○ 2008. 1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대표자 : GS건설)

○ 2012. 0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2. 05. 07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2012. 05. 14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결과 회신(국토해양부 → 사업자)

○ 2012. 0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12. 09 ~ 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 2013. 0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예정)

○ 2013. 01. : 실시계획 승인 신청(예정)

○ 2013. : 공사착공(예정)

○ 2016. : 공사준공(예정)

3)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 ~ 오창읍(중부고속도로)

다) 사 업 기 간 : 2013년 ~ 2016년(공용개시년도 2017년)

라) 사업시행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마) 승 인 기 관 : 국토해양부

바) 사 업 비 : 약 2,300억

사) 사업의 내용

○ 행정구역별 연장

구 분	총연장	청 원 군		비 고
		옥산면	오창읍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2.1㎞	3.9㎞	8.2㎞	

○ 주요 시설물 현황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도 로 구 분	지방지역 고속도로	
연 장	12.1㎞	
차 로 수	4차로(본선 23.4m/연결로 7.6~29.1)	
설 계 속 도	본선 : 100㎞/h, 연결로 : 40~60㎞/h	
주 요 구 조 물	교량 : 22개소/2,305m	
출 입 시 설	JCT 2개소 / IC 1개소	
영 업 소	2개소(서오창본선영업소, 서오창IC영업소)	
유지관리사무소	1개소	서오창IC영업소 통합

○ 도로 횡단구성 계획

구 분		단위	본 선 (2방향 4차로)	연 결 로		
				JCT (1방향1차로)	JCT (1방향2차로)	IC (양방향2(3)(6)차로)
총 폭 원		m	23.4	8.1(7.6)	11.7(11.2)	14.7(18.3)(29.1)
차 도		m	4×3.6 = 14.4	3.6	2×3.6 = 7.2	2×3.6 = 7.2 (3×3.6 = 10.8) (6×3.6 = 21.6)
중앙분리대		m	3.0	-	-	2.5
길어깨	좌측	m	3.0	1.5	1.5	2.5
	우측	m	3.0	3.0(2.5)	3.0(2.5)	2.5

주) 1, 연결로 JCT구간 길어깨 3.0m, 그 외 구간 2.5m 적용
2. ( )는 JCT 외 구간 폭원 및 길어깨, 양방향 3차로 및 6차로 도로제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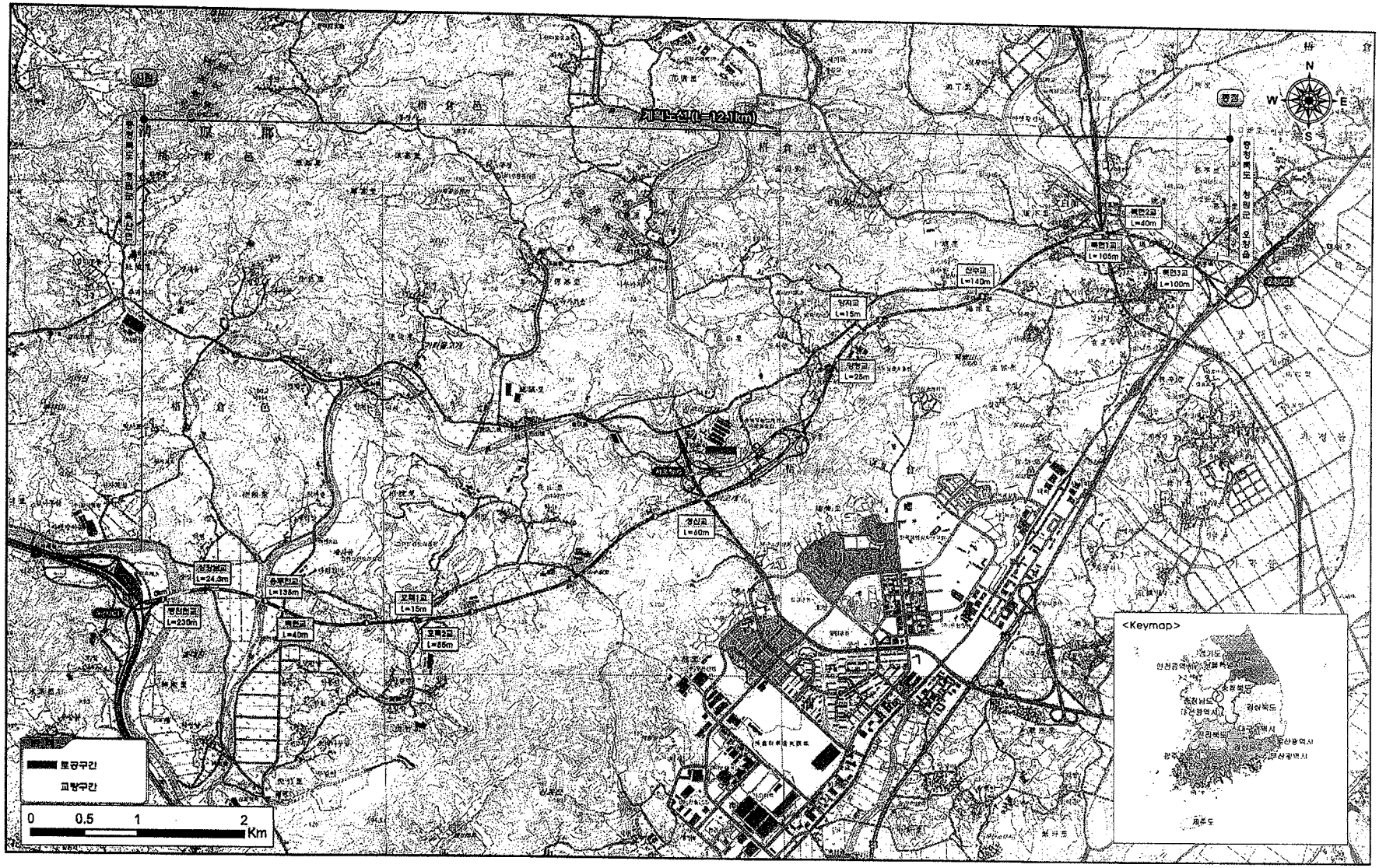

(그림 1) 계획노선 위치도



(그림 2) 계획노선 주변현황(위성)

나.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현황

(1)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체계

○ 본 계획노선은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오창읍 일원" 으로 금강수계 미호B 유역에 해당함

(2) 충청북도 제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09.12, 충청북도)

(가) 개요

○ 계획의 시간적 범위 : 2011.01.01 ~ 2015.12.31

○ 수립주체 : 충청북도

○ 관리대상 : 5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_5)

(나) 계획노선 해당 단위유역 및 목표수질

○ 계획노선은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충청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미호B 유역에 해당되며, 제3단계('16~'25)에 반영하여야 함

○ 미호B 유역의 측정수질(평균)은 3.6㎎/L이며, 목표수질(BOD_5) 4.3㎎/L임

<표 1> 청원군 관리유역

단위유역	유역정보		청원군 관할면적(㎢)
	면적(㎢)	소유역 수	
미호B	665.98	29	311.68

자료 : 충청북도 제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009.12, 충청북도

<표 2> BOD 할당부하량(㎏/일)

광역시도	시군	단위 유역	할당부하량	
			점배출부하량	비점배출부하량
충청북도	청원군	미호B	1,173.7	5,033.5

자료 : 충청북도 제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009.12, 충청북도

<표 3> 목표수질(2010년) 및 수질현황

유역명	측정지점	수질(BOD_5, ㎎/L)		총량관리제 시행지역
		측정수질(평균)	목표수질	
미호B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병천천(미호천 합류전)	3.6	4.3	○

자료 : 충청북도 제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009.12, 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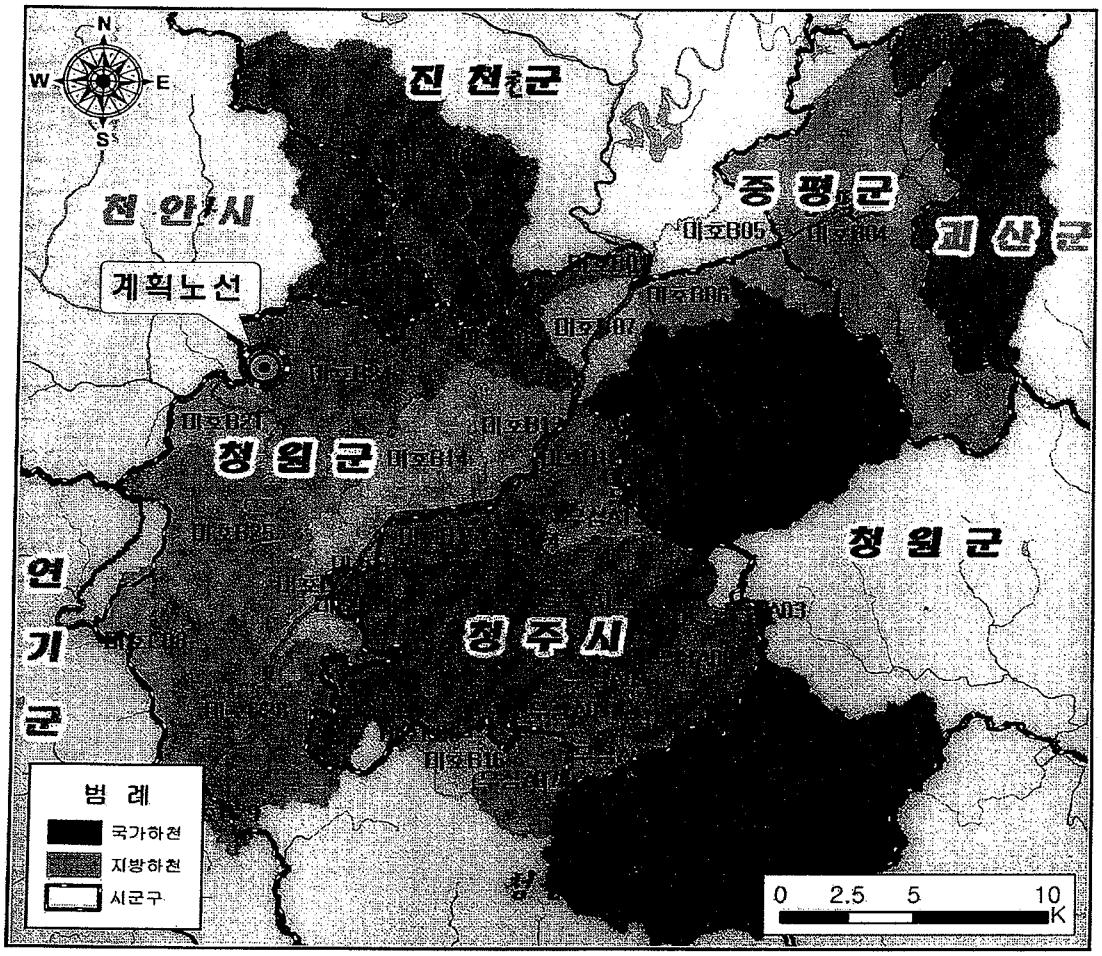

(그림 3) 청원군 단위유역도(미호B)

나) 수질오염총량 산정

ㅇ 본 계획노선 운영시 영업소 및 유지관리소 등(이하 "영업소 등")에서 생활용수의 공급이 필요하고 용수사용에 따른 오수 발생이 예상되며, 초기강우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저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영업소 등 운영에 따른 오수발생량 및 용수량

ㅇ 본 계획노선에 계획된 영업소 등에 대해 「환경부고시 제2012-144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012.7」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오수전환율을 고려하여 용수량을 역산정한 결과, 오수발생량은 25.85㎥/일, 용수량은 29.38㎥/일로 산정됨

<표 4> 운영시 오수발생량

구 분	건물용도별	면적 (㎡)	오수발생 원단위 (L/㎡)	오수발생량 (㎥/일)	비 고
1) 영업소/법인동					
지하 1층	기계,발전기실	169.29	-		
지상 1층	부대급식	141.26	30L/인	2.70	
	여자기숙사	7.98	7.5	0.06	
	샤워실	7.98	46	0.37	
	창고	57.31	-		
	화장실	42.66	170	7.25	
	휴게실	53.87	15	0.81	방문객많은사무소
	사무실	223.25	15	3.35	방문객많은사무소
	캐노피,필로티	141.11	-		
지상 2층	남자기숙사	21.73	7.5	0.16	
	샤워실	26.76	46	1.23	
	휴게실	52.93	15	0.79	방문객많은사무소
	창고	77.17	-		
	사무실	437.83	15	6.57	방문객많은사무소
소 계		1,461.13			
2) 정비창고동					
지상 1층	위험물,전기실창고	81.03	-		
	보일러실	23.76	-		
	정비실	255.83	5	1.28	정비공장,작업소
지상 2층	숙소	95.13	7.5	0.71	
	휴게실	37.84	15	0.57	방문객많은사무소
소 계		493.59			
3) 월동자재 보관소					
지상 1층	보관소	306.53	-		
4) 폐토사 보관창고동					
지상 1층	창고	72.00	-		
소 계		2,333.25		25.85	

주) 1. 영업소 및 유지관리사무소 근무인원은 30명으로 계획
2. 부대급식은 근무인원에 대해 1일 3식을 기준으로 적용함

<표 5> 운영시 용수 소요량

구 분	근무인원(인)	오수발생량(㎥/일)	오수전환율(%)	용수 소요량(㎥/일)	비 고
영업소 등	30	25.85	88	29.38	-

(2) 오염(발생·배출) 부하량

○ 사업시행 전·후 오염(발생·배출) 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을 근거로 산정함

(가) 사업시행 전

○ 사업시행에 따른 철거대상 기존 오염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집계된 지장물에 대해 각 개별법에 의해 신고, 허가 및 등록된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오염배출시설을 결정하고 배출현황을 적용함

○ 사업시행에 따른 철거대상 지장물 중 오염원은 가옥 17개호, 공장 2개 사업장, 상가 3개동, 사무실 2개동, 축사 2개동으로 조사되어 사업시행 전 점오염원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를 산정함

- 가옥은 생활계 가정인구 부하량, 공장은 생활계 영업인구 부하량 및 산업계 부하량, 상가는 생활계 영업인구 부하량, 축사는 축산계를 산정함

○ 사업시행전 비점오염원은 토지계를 산정함

<표 6> 철거대상 오염원 현황

구 분		계		청원군 옥산면		청원군 오창읍		비 고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건 물	가옥(호수)	17	2,716	-	-	17	2,716	
	공장(사업장수)	2	4,267	-	-	2	4,267	
	상가(동수)	3	265	-	-	3	265	
	사무실(동수)	2	483	-	-	2	483	
	축사(동수)	2	4,322	2	4,322	-	-	
계		26	12,053	2	4,322	24	7,731	

주) 조사된 지장물 중 폐가, 미운영 시설 및 무허가 시설물 등은 오염원 현황에서 제외하였음

① 생활계

㉮ 오수 발생유량

○ 사업시행 전 생활계 오염원은 가정인구(가옥)와 영업인구(공장, 상가, 사무실)로 구분하여 산정함

- 사업시행 전 가정인구 오수 발생유량은 가정인구 분뇨 발생유량비 및 잡배수 오수전환율을 비시가지화로 적용한 결과, 8.3㎥/일로 산정됨
- 사업시행 전 영업인구 오수 발생유량은 「환경부고시 제2012-144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오수발생 원단위를 적용한 결과 39.7㎥/일로 산정됨

▪ 가정인구 오수 발생유량
가정인구 오수 발생유량 = 가정인구 분뇨 발생유량 + 가정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가정인구 분뇨 발생유량 = 가정인구수 × 가정인구 분뇨 발생유량 원단위
가정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 잡배수 오수전환율 × (가정인구 사용유량 -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

▪ 영업인구 오수 발생유량
영업인구 오수 발생유량 = 영업인구 분뇨 발생유량 + 영업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영업인구 분뇨 발생유량 = 영업인구사용유량 × 영업인구 분뇨 발생유량비
영업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 잡배수 오수전환율 × (영업인구 사용유량 -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

<표 7> 생활계 분뇨발생유량원단위, 분뇨발생유량비 및 잡배수오수전환율

구 분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원단위 (㎥/인/일)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비 (-)	잡배수오수전환율 (-)
시 가 화	0.00115	0.006	0.88
비시가화	0.00134	0.006	0.88

<표 8> 사업시행 전 가정인구 오수발생량

구 분	가정인구수 (인)	가정인구 사용유량 (㎥/일)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 (㎥/일)	가정인구 잡배수발생유량 (㎥/일)	가정인구 오수발생유량 (㎥/일)
가 옥	47	9.4	0.1	8.2	8.3

주) 1. 가정인구수는 「통계연보, 2011, 청원군」의 농가당 인구수(2.77명)를 적용
2. 가정인구 사용유량은 가구당 급수량 200L/일을 적용

<표 9> 사업시행 전 영업인구 오수발생량

구 분	건축면적 (㎡)	1일오수발생 원단위 (L/㎡)	영업인구 오수발생량 (㎥/일)	비 고
공장	4,267	5	21.3	'공업시설'의 '공장' 적용
상가(상점)	134	15	2.0	'판매 및 영업시설'의 '상점' 적용
상가(식당)	131	70	9.2	'음식점'의 '일반음식점' 적용
사무실	483	15	7.2	'업무시설'의 '일반사무소' 적용
계	5,015	-	39.7	-

<표 10> 사업시행 전 생활계 오수발생량

구 분	가정인구 오수발생량 (㎥/일)	영업인구 오수발생량 (㎥/일)	생활계 오수발생량 (㎥/일)
생활계	8.3	39.7	48.0

㉯ 발생부하량

○ 사업시행 전 생활계 발생부하량은 BOD 7.566kg/일(가정인구 2.284kg/일, 영업인구 5.282kg/일), T-P 0.225kg/일(가정인구 0.068kg/일, 영업인구 0.157kg/일)로 산정됨

- 생활계 가정인구 발생부하원단위 및 영업인구 오수발생 표준농도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을 적용하여 산정함

▪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수 ×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
가정인구 분뇨 발생부하량 = 분뇨 발생부하비 ×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가정인구 잡배수 발생부하량 = (1-분뇨발생부하비) ×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 × 영업인구 오수발생 농도
영업인구 분뇨 발생부하량 = 분뇨 발생부하비 ×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영업인구 잡배수 발생부하량 = (1-분뇨발생부하비) ×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표 11> 생활계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 및 분뇨발생부하비

구 분	가정인구 발생부하원단위(g/인/일)			분뇨 발생부하비		
	BOD	T-N	T-P	BOD	T-N	T-P
시 가 화	50.7	10.6	1.24	0.45	0.8	0.8
비시가화	48.6	13.0	1.45			

<표 12> 생활계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구 분	가옥수 (동)	주거인구 (인)	분뇨 발생부하량 (kg/일)		잡배수 발생부하량 (kg/일)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kg/일)	
			BOD	T-P	BOD	T-P	BOD	T-P
가 옥	17	47	1.028	37.6	1.256	0.014	2.284	0.068

<표 13> 생활계 영업장 오수발생 표준농도

구 분	건축물 용도 (업종코드)	BOD (g/㎥)	T-N (g/㎥)	T-P (g/㎥)	비고
공 장	공장, 발전소, 작업소(1201)	100	30	3	-
상가(상점)	시장, 상점(601)	250	80	8	-
상가(식당)	일반음식점(1106)	210	70	6	-
사무실	일반사무소(1001)	100	30	3	-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

<표 14> 생활계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구 분	오수발생량 (㎥/일)	오수발생농도 (g/㎥)		발생부하량 (kg/일)	
		BOD	T-P	BOD	T-P
공 장	21.3	100	3	2.130	0.064
상가(상점)	2.0	250	8	0.500	0.016
상가(식당)	9.2	210	6	1.932	0.055
사무실	7.2	100	3	0.720	0.022
계	39.7	-	-	5.282	0.157

<표 15> 사업시행 전 생활계 발생부하량

구 분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kg/일)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kg/일)		생활계 발생부하량 (kg/일)	
	BOD	T-P	BOD	T-P	BOD	T-P
생활계	2.284	0.068	5.282	0.157	7.566	0.225

㉰ 방류부하량

○ 사업시행 전 생활계 산정대상 시설물은 '하수처리구역 외'로 가옥은 정화조를 적용하고 공장은 폐수처리현황 조사결과를 적용하여 산정함

- 가옥의 단독정화조 개별삭감비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라 미처리구역 정화조의 BOD 개별삭감비 0.25(25%)를 적용
- 공장 및 상가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의 방류수질 기준(BOD, SS 각각 20㎎/L)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T-P는 기준 외 항목이나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2㎎/L을 적용함

○ 가정인구 방류부하량은 BOD 1.713kg/일, T-P 0.068kg/일, 영업인구 방류부하량은 BOD 0.794kg/일, T-P 0.079kg/일로 산정됨

<표 16> 생활계 가정인구 방류부하량(단독정화조)

구 분	발생부하량 (kg/일)		개별삭감비		방류부하량 (kg/일)	
	BOD	T-P	BOD	T-P	BOD	T-P
가정인구	2.284	0.068	0.25	-	1.713	0.068

<표 17> 생활계 영업인구 방류부하량(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오수발생량 (㎥/일)	방류수질 (㎎/L)		방류부하량 (kg/일)	
			BOD	T-P	BOD	T-P
영업인구	공 장	21.3	20	2	0.426	0.043
	상가(상점)	2.0	20	2	0.040	0.004
	상가(식당)	9.2	20	2	0.184	0.018
	사무실	7.2	20	2	0.144	0.014
계		39.7	-	-	0.794	0.079

㈑ 배출부하량

○ 생활계 배출부하량은 BOD 2.507kg/일, T-P 0.147kg/일로 산정됨

<표 18> 생활계 배출부하량

구 분	방류부하량 (kg/일)		삭감부하량 (kg/일)		배출부하량 (kg/일)	
	BOD	T-P	BOD	T-P	BOD	T-P
가정인구	1.713	0.068	-	-	1.713	0.068
영업인구	0.794	0.079	-	-	0.794	0.079
계	2.507	0.147	-	-	2.507	0.147

② 축산계

㈎ 발생유량

○ 사업시행 전 편입부지내 축사 2개동(한(육)우 : 1개동, 닭 : 1개동)의 축산계 발생유량은 2.0㎥/일로 산정됨

- 한(육)우의 사육두수는 축산법에 따라 청원군에 등록된 사육두수를 적용하고, 닭의 사육수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61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의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기준에 따라 적정 사육수를 산정하여 적용함(양계장 면적(2,619㎡), 산란계 평사 기준(0.11㎡/수) 적용시 약 2만수로 산정됨)

• 축산계 발생유량

축산계 발생유량 = 축산폐수 발생유량 + 축산고형물 발생유량

축산폐수 발생유량 = Σ(축종별사육두수 × 축종별 축산폐수 발생유량 원단위)

축산고형물 발생유량 = Σ(축종별사육두수 × 축종별 축산고형물 발생유량 원단위)

<표 19> 축종별 발생유량 원단위(단위 : ㎥/두/일)

구분	젖소	한(육)우	말	돼지	양·사슴	개	닭
계	0.0456	0.0456	0.0097	0.0086	0.0007	0.0011	0.00008
폐수발생유량	0.0259	0.0259	0.0043	0.0074	0.0005	0.0008	
고형물발생유량	0.0197	0.0197	0.0054	0.0012	0.0002	0.0003	0.00008

<표 20> 닭 사육두수 산정 기준(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구 분	시설형태		소요면적	비 고
산란계	케이지		0.042㎡/수	
	평사		0.11㎡/수	
산란육성계	케이지		0.25㎡/수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무창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61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표 21> 사업시행 전 축산폐수 발생유량

구 분	축사수 (동)	가축수 (두)	축산폐수 발생유량 (㎥/일)	축산고형물 발생유량 (㎥/일)	축산계 발생유량 (㎥/일)
한(육)우	1	30	0.2	0.2	0.4
닭	1	20,000	-	1.6	1.6
계	2	20,030	0.2	1.8	2.0

주) 가축수는 「통계연보, 2011, 청원군」의 사육호수당 가축수(한(육)우 : 24.9두, 닭 : 4,011두)를 적용

㉯ 발생부하량

○ 축산계 발생부하량은 BOD 119.84kg/일, T-P 9.188kg/일로 산정됨

▪ 축산계 발생부하량
축산계 발생부하량 = 축산폐수 발생부하량 + 축산고형물 발생부하량
축산폐수 발생부하량 = Σ(축종별사육두수 × 축종별 축산폐수 발생부하 원단위)
축산고형물 발생부하량 = Σ(축종별사육두수 × 축종별 축산고형물 발생부하 원단위)

<표 22> 축산분뇨 발생부하 원단위(단위 : g/두/일)

항목	구분	젖소	한(육)우	말	돼지	양·사슴	개	닭
BOD	계	556	[illegible]	259	109	10	18	[illegible]
	폐수	117	[illegible]	30	32	3	4	[illegible]
	고형물	439	[illegible]	229	77	7	14	[illegible]
T-N	계	161.8	116.8	77.6	27.7	5.8	8.4	1.1
	폐수	63.5	40.0	26.7	14.9	4.2	5.4	0
	고형물	98.3	76.8	50.9	12.8	1.6	3.0	1.1
T-P	계	56.7	[illegible]	24.0	12.2	0.9	1.6	[illegible]
	폐수	10.7	[illegible]	2.3	3.3	0.2	0.3	[illegible]
	고형물	46.0	[illegible]	21.7	8.9	0.7	1.3	[illegible]

<표 23> 축산분뇨 발생부하량

구 분		가축수 (두)	축산계 발생부하량(kg/일)	
			BOD	T-P
한(육)우	계	30	15.84	1.188
	폐수		2.010	1.083
	고형물		13.83	0.105
닭	계	20,000	104.000	8.000
	폐수		-	-
	고형물		104.000	8.000
합 계	계	20,030	119.84	9.188
	폐수		2.010	1.083
	고형물		117.83	8.105

㉯ 배출부하량

○ 축산계 오염원의 배출경로는 개별축사로부터 자원화 처리되므로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염원그룹별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구분표'에 의거 비점오염원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 축산계 오염원의 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의 '축산폐수처리, 자원화 및 농지유출비'를 적용하여 자원화개별삭감량, 녹지삭감량 및 배출부하량을 산정함

- 축산계 배출부하량은 BOD 10.786kg/일, T-P 0.689kg/일로 산정됨

<표 24> 자원화 개별삭감량

구분		비점오염원		비 고
		BOD	T-P	
축산계	폐수직접이송비	0	0	
	폐수자원화비	1	1	
	폐수발생량	2.01	1.083	
	폐수자원화량	2.01	1.083	
	고형직접이송비	0	0	
	고형물발생량	117.83	8.105	
	자원화개별삭감대상량	119.84	9.188	
	자원화처리비	0.4	0	
	자원화개별삭감량	47.936	0	

<표 25> 축산폐수처리, 자원화 및 농지유출비

법적규제내역	폐수처리내역	고형물처리내역	폐수자원화비	유량				BOD				T-N				T-P			
				폐수처리비	농지환원비	자원화처리비	농지유출비	폐수처리비	농지환원비	자원화처리비	농지유출비	폐수처리비	농지환원비	자원화처리비	농지유출비	폐수처리비	농지환원비	자원화처리비	농지유출비
허가	폐수처리	자원화	0	0	0	0	1	기준[1]	0.20	0.40	0.10	기준[1]	0.80	0.20	0.20	기준[1]	1.0	0	0.050
	자원화	자원화	1	0	0	0	1	0	0	0.40	0.15	0	0	0.20	0.30	0	0	0	0.075
신고	폐수처리	자원화	0	0	0	0	1	기준[1]	0.35	0.40	0.10	0.50[1]	0.80	0.20	0.20	0.70[1]	1.0	0	0.050
	자원화	자원화	1	0	0	0	1	0	0	0.40	0.15	0	0	0.20	0.30	0	0	0	0.075
신고미만	폐수처리	자원화	0	0	0	0	1	기준[1]	0.50	0.40	0.10	0.50	0.80	0.20	0.20	0.70	1.0	0	0.050
	자원화	자원화	1	0	0	0	1	0	0	0.40	0.15	0	0	0.20	0.20	0	0	0	0.050
	무처리		0	0	0	0	1	0	0	0	0.25	0	0	0	0.50	0	0	0	0.150

[1] 방류수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기준초과율 등으로 산정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폐수자원화비는 0, 폐수처리비는 1이며, 자원화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 자원화처리비는 1(해양투기의 경우 또한 같다)
고형물이 폐수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함께 처리될 경우에는 고형물처리비는 적용하지 않고 폐수처리비만을 적용하여 폐수량으로 산정

<표 26> 농지삭감량

구분		비점오염원		비 고
		BOD	T-P	
축산계	농지전환비	1	1	
	자원화개별삭감대상량 - 자원화개별삭감량	71.904	9.188	
	폐수처리농지환원량	0	0	
	농지전환량	71.904	9.188	
	농지삭감비	0.85	0.925	
	농지삭감량	61.118	8.499	

<표 27> 배출부하량

구분		비점오염원		비 고
		BOD	T-P	
축산계	자원화개별삭감대상량	119.84	9.188	
	자원화개별삭감량	47.936	0	
	농지삭감량	61.118	8.499	
	강우배출비	1	1	
	배출부하량	10.786	0.689	

③ 산업계

○ 산업계 오염원인 공장 2개 사업장중 1개 사업장((주)선일 ; 오창읍 성산리 27-1 소재)은 발생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 배출이 없으며, 1개 사업장((주)디에스이에스)은 폐수량이 미미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방지시설 면제승인을 득한 사업장이므로 산업계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은 산정에서 제외함

④ 토지계

㉮ 발생부하량

○ 토지계 발생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음

• 토지계 발생부하량 = Σ(지목별면적 × 지목별연평균발생부하원단위 × 강우배출비)

<표 28> 토지계 지목별 연평균발생부하원단위 (단위 : kg/㎢·일)

지 목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BOD	1.59	2.30	0.93	85.90	0.960
T-N	9.44	6.56	2.20	13.69	0.759
T-P	0.24	0.61	0.14	2.10	0.027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시행 전 지목별 편입지목은 전, 답, 임야, 대지, 하천,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 창고용지, 도로, 제방, 구거, 유지, 잡종지 및 무지번으로 구분되며 총 편입면적은 1,324,239㎡로 산정됨

○ 토지계 지목별 연평균 발생부하원단위를 적용하여 발생부하량을 산정한 결과, BOD 15.031kg/일, T-P 0.646kg/일로 산정됨

<표 29> 계획노선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편입면적(㎡)	구분	전	답	임 야	대 지	하 천	과수원	목장용지	공 장
	면적(㎡)	104,550	360,902	478,842	11,292	35,133	4,051	129,182	39,717
1,324,239	구분	창고용지	도 로	제 방	구 거	유 지	잡종지	무지번	-
	면적(㎡)	978	103,683	5,340	46,974	1,410	194	1,991	-

<표 30> 토지계 발생부하량 산정

적용지목	면적(㎡)	원단위(kg/㎢ · 일)		발생부하량(kg/일)	
		BOD	T-P	BOD	T-P
전	108,601	1.59	0.24	0.173	0.026
답	360,902	2.3	0.61	0.83	0.22
임 야	478,842	0.93	0.14	0.445	0.067
대 지	155,670	85.9	2.1	13.372	0.327
기 타	220,224	0.96	0.027	0.211	0.006
합 계	1,324,239	-	-	15.031	0.646

주) 강우배출비는 "1"을 적용

㉯ 배출부하량

○ 사업시행 전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시 삭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저감시설이 없으므로 토지계 배출부하량은 발생부하량과 동일함

<표 31> 배출부하량 산정

구 분	적용지목	면 적(㎡)	발생부하량(kg/일)		배출부하량(kg/일)	
			BOD	T-P	BOD	T-P
전	전	108,601	0.173	0.026	0.173	0.026
답	답	360,902	0.830	0.220	0.830	0.220
임 야	임 야	478,842	0.445	0.067	0.445	0.067
대 지	대 지	155,670	13.372	0.327	13.372	0.327
기 타	기 타	220,224	0.211	0.006	0.211	0.006
합 계		1,324,239	15.031	0.646	15.031	0.646

③ 사업시행 전 총 배출부하량

○ 사업시행 전 배출부하량은 BOD 28.324kg/일(점오염원 2.507kg/일, 비점오염원 25.817kg/일), T-P 1.482kg/일(점오염원 0.147kg/일, 비점오염원 1.335kg/일)로 산정됨

<표 32> 사업시행 전 배출부하량

구 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계
		소 계	생활계	산업계	소계	축산계	토지계	
사업시행 전 배출부하량	BOD	2.507	2.507	-	25.817	10.786	15.031	28.324
	T-P	0.147	0.147	-	1.335	0.689	0.646	1.482

(나) 사업시행 후

① 생활계

㉮ 발생부하량

○ 사업시행 후 영업인구에 의한 발생부하량은 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에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활계 영업장 오수발생 표준농도'의 업종별 오수발생 표준농도를 적용하며, BOD 발생부하량은 4.460kg/일, T-P 발생부하량은 0.136kg/일로 산정됨

<표 33> 생활계 발생부하량 산정

구 분	건물용도별	면 적 (㎡)	오수량 (㎥)	표준농도(g/㎥)		발생부하량(kg/일)		업종코드
				BOD	T-N	BOD	T-N	
1) 영업소/법인동								
지하1층	기계,발전기실	169.29	-	-	-	-	-	-
지상1층	부대급식(3회)	141.26	2.70	330	10	0.891	0.027	1601
	여자기숙사	7.98	0.06	200	6	0.012	0.000	201
	샤워실	7.98	0.37	100	3	0.037	0.001	1103
	창고	57.31	-	-	-	-	-	-
	화장실	42.66	7.25	260	8	1.886	0.058	1104
	휴게실	53.87	0.81	100	3	0.081	0.002	1002
	사무실	223.25	3.35	100	3	0.335	0.010	1002
	캐노피,필로티	141.11	-	-	-	-	-	-
지상2층	남자기숙사	21.73	0.16	200	6	0.033	0.001	201
	샤워실	26.76	1.23	100	3	0.123	0.004	1103
	휴게실	52.93	0.79	100	3	0.079	0.002	1002
	창고	77.17	-	-	-	-	-	-
	사무실	437.83	6.57	100	3	0.657	0.020	1002
2) 정비창고동								
지상1층	위험물,전기실창고	81.03	-	-	-	-	-	-
	보일러실	23.76	-	-	-	-	-	-
	정비실	255.83	1.28	100	3	0.128	0.004	1201
지상2층	숙소	95.13	0.71	200	6	0.143	0.004	201
	휴게실	37.84	0.57	100	3	0.057	0.002	1002
3) 월동자재 보관소								
지상1층	보관소	306.53	-	-	-	-	-	-
4) 폐토사 보관창고동								
지상1층	창고	72.00	-	-	-	-	-	-
합 계		2,333.25	25.85	-	-	4.460	0.136	-

㈏ 방류부하량

○ 영업소/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규모 : 30㎥/일)을 신설하여 관로를 통해 전량 이송하여 처리후 방류할 계획임

○ 신설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은 BOD 20㎎/L, T-P 2㎎/L로 계획함

▪ 오수처리시설 방류부하량 = 오수량 × 방류농도

<표 34> 생활계 방류부하량(오·폐수처리시설)

구 분	오수량 (㎥/일)	방류농도(㎎/L)		방류부하량(kg/일)	
		BOD	T-P	BOD	T-P
영업소 등	25.85	20	2	0.517	0.052

주) 신설되는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농도(BOD)는 20㎎/L임

㈐ 배출부하량

○ 생활계 배출부하량은 BOD 0.517kg/일, T-P 0.052kg/일로 나타남

<표 35> 생활계 배출부하량

구 분	방류부하량(kg/일)		삭감부하량(kg/일)		배출부하량(kg/일)	
	BOD	T-P	BOD	T-P	BOD	T-P
영업소 등	0.517	0.052	-	-	0.517	0.052

② 토지계

㈎ 발생부하량

○ 사업시행 후 도로 및 영업소 등 불투수포장구간은 '대지'로 적용하고 그 외 사면 등은 '기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발생부하량은 BOD 47.309 kg/일, T-P 1.159kg/일로 산정됨

<표 36> 사업시행 후 토지이용

구 분	적용지목	면 적(㎡)	비율(%)	비 고
도로 외	대 지	542,007	40.9	
도로법면	기 타	782,232	59.1	
계		1,324,239	100.0	

<표 37> 토지계 지목별 연평균발생부하원단위 (단위 : kg/㎢·일)

지 목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BOD	1.59	2.30	0.93	85.90	0.960
T-N	9.44	6.56	2.20	13.69	0.759
T-P	0.24	0.61	0.14	2.10	0.027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

<표 38> 토지계 발생부하량

구 분	적용지목	면 적(㎡)	발생부하량(kg/일)	
			BOD	T-P
도로 외	대 지	542,007	46.558	1.138
도로법면	기 타	782,232	0.751	0.021
계		1,324,239	47.309	1.159

㈏ 삭감부하량

- ㅇ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은 도로 및 영업소 등 불투수포장 지역에 대해 침투형(침투도랑)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ㅇ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에 의하여 사업지구의 토지계 배출부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삭감대상부하비 및 저감효율을 고려하여 삭감부하량을 산정한 후 배출부하량을 산정함

ㄱ. 삭감대상부하비 산정

- ㅇ 삭감대상부하비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계수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ㅇ 삭감대상부하비는 강우량 기준 설계시 BOD 0.3066, T-P 0.2717로 산정됨

$$\text{강우처리비} = a \cdot \ln(\text{설계기준강우}) + b$$

$$\text{삭감대상부하비} = e^{[a \cdot \{\ln(\text{강우처리비})\}^2 + b \cdot \ln(\text{강우처리비})]}$$

<표 39> 설계기준에 따른 강우처리비 산정시 적용계수 및 산정결과

구 분	a	b	설계강우	강우처리비
강우량(㎜) 기준 설계시설	0.2716	-0.2425	5㎜	0.1946
강우강도(㎜/hr) 기준 설계시설	0.2445	0.3174	5㎜/hr	0.7109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

<표 40> 강우처리비에 따른 삭감대상부하비 산정시 적용계수

구 분	BOD	T-N	T-P
a	-0.0184	-0.0030	0.0018
b	0.6922	0.7509	0.7931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

<표 41> 삭감대상부하비

구 분	BOD	T-N	T-P
강우량 적용	0.3066	0.2902	0.2717
강우강도 적용	0.7879	0.7737	0.7627

주) 강우처리비 0.1946 적용

ㄴ. 삭감대상부하량 산정

○ 삭감대상부하량은 삭감대상부하비와 발생부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도로 및 영업소 등의 불투수 포장지역에 대한 저감시설로 침투도랑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삭감대상부하비 산정시 적용계수는 강우량을 적용함

▪ 삭감대상부하량 = 삭감대상부하비 × 발생부하량

<표 42> 삭감대상부하량

구 분	적용 저감시설	면적(㎡)	발생부하량(kg/일)		삭감대상부하비		삭감대상부하량(kg/일)	
			BOD	T-P	BOD	T-P	BOD	T-P
도로 외	침투도랑	542,007	46.558	1.138	0.3066	0.2717	14.275	0.309
도로법면	-	782,232	0.751	0.021	-	-	-	-
계		1,324,239	47.309	1.159	-	-	14.275	0.309

주) '도로 외' 구역의 저감시설 적용대상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비에 편입면적을 적용함

ㄷ. 삭감부하량 산정

○ 삭감부하량은 삭감대상부하량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감효율을 곱하여 산정함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삭감부하량 = 삭감대상부하량 × 저감효율

<표 43>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감효율

구분		BOD(%)	T-N(%)	T-P(%)
저류형	저류지	34	28	36
	지하저류조	25	24	20
	인공습지	53	37	60
침투형	투수성포장	75	83	65
	침투저류지	69	58	69
	침투도랑	77	62	75
	침투통 침투관 침투측구	53	72	46
여과형	식생여과대	44	42	42
	식생수로	34	45	51
	모래여과시설 제조 여과시스템	50	46	54
생태저류형	침투화분	75	73	72
	빗물정원 통로화분 수목여과박스	54	49	65
와류형 시설		16	11	22
스크린형 시설		15	9	19
시설형(초고속응집,침전법)		80	20	85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8, 국립환경과학원

<표 44> 삭감부하량 산정결과

구분	적용 저감시설	삭감대상부하량(kg/일)		저감시설 저감효율(%)		삭감부하량(kg/일)	
		BOD	T-P	BOD	T-P	BOD	T-P
도로 외	침투도랑	14.275	0.309	77	73	10.992	0.226
도로법면	-	-	-	-	-	-	-
계		14.275	0.309	-	-	10.992	0.226

㉯ 배출부하량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계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5>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결과

구분	적용 저감시설	발생부하량(kg/일)		삭감부하량(kg/일)		배출부하량(kg/일)	
		BOD	T-P	BOD	T-P	BOD	T-P
도로 외	침투도랑	46.558	1.138	10.992	0.226	35.566	0.912
도로법면	-	0.751	0.021	-	-	0.751	0.021
계		47.309	1.159	10.992	0.226	36.317	0.933

(다) 추가 배출부하량

○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배출부하량은 BOD 8.510kg/일(점오염원 ▼1.990kg/일, 비점오염원 10.500kg/일), T-P ▼0.497kg/일(점오염원 ▼0.095kg/일, 비점오염원 ▼0.402kg/일)로 산정됨

<표 46> 추가배출부하량 (단위 : kg/일)

구 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합 계	
		BOD	T-P	BOD	T-P	BOD	T-P
추가배출부하량	사업시행 전	2.507	0.147	25.817	1.335	28.324	1.482
	사업시행 후	0.517	0.052	36.317	0.933	36.834	0.985
	추가배출부하량	▼1.990	▼0.095	10.500	▼0.402	8.510	▼0.49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46호 2012. 12. 07

수 신 :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장

참 조 : 도로차장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반조사 협조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2012.01.11. 실시협약을 체결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3. 본 사업의 과업구간에 포함되는 경부고속도로 및 청원휴게소 지역에 대하여 지반공학적 자료의 수집을 위한 지반조사 및 확인시추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반조사 계획서 1부. 끝.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 반 조 사 계 획

2012. 12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 동서 5축(당진～천안～옥산～오창～영주～울진)의 구축

◦ 안산만권과 대전·청주권간 생산, 물류, 교류 기반조성 확대로 지역간 균형 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

◦ 동서5축의 조기건설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지역의 중추공항(Hub-Airport)으로 육성

1.2 사업의 추진경위

◦ 2004.11. :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지에스건설 컨소시엄 → 국토해양부)

◦ 2007.06. : 사업제안서 검토(적격성조사 등) 완료(PIMAC)

◦ 2008.05. :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국토해양부)

◦ 2008.1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대표사:GS건설)

◦ 2012.0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2. : 실시계획 승인 신청(예정)

◦ 2013. : 공사착공 및 금융약정 체결(예정)

1.3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출입시설	JCT 2개소 / IC 1개소
도로구분	지방지역 고속도로(100km/hr)	영업소	서오창본선영업소/서오창IC영업소
연 장	12.1km (왕복 4차로)	공사기간	4년(착공일로부터 48개월)
시설현황	교량 : 29개소/3,115m	주무관청	국토해양부
공사비	2,000.23억원(설계가)	사업시행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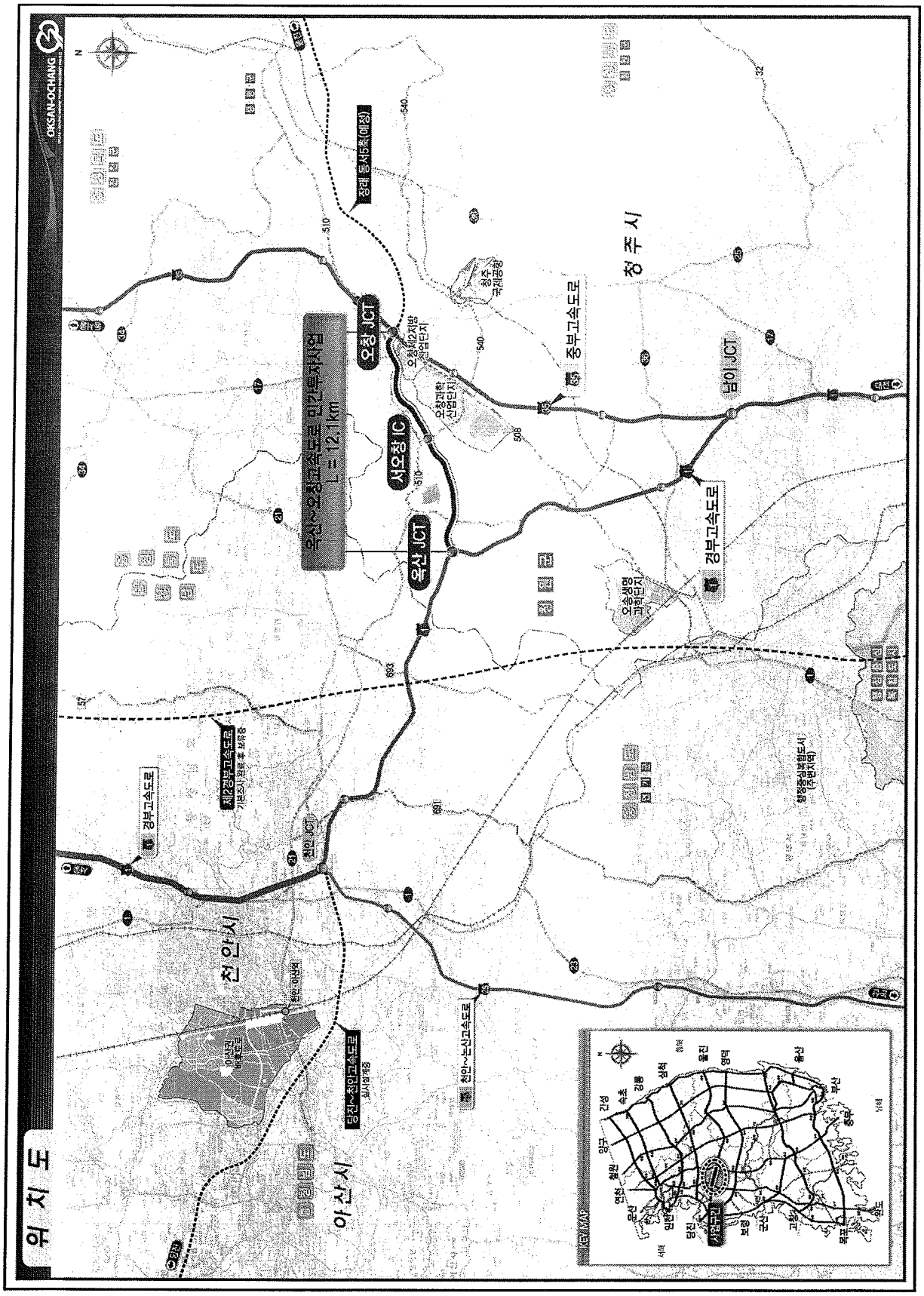

(그림 1-1) 계획노선 위치도

제2장 지반조사

2.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지반조사로 사업구간에 분포하는 지반의 상태 및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및 각종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 조사구간

◦ 시　　점 : 충북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

◦ 종　　점 : 충북 청원군 오창읍(중부고속도로)

◦ 조사 연장 : L=12.1 km

2.3 조사위치세부현황

가. 청원휴게소 부지(옥산 JCT RAMP교 :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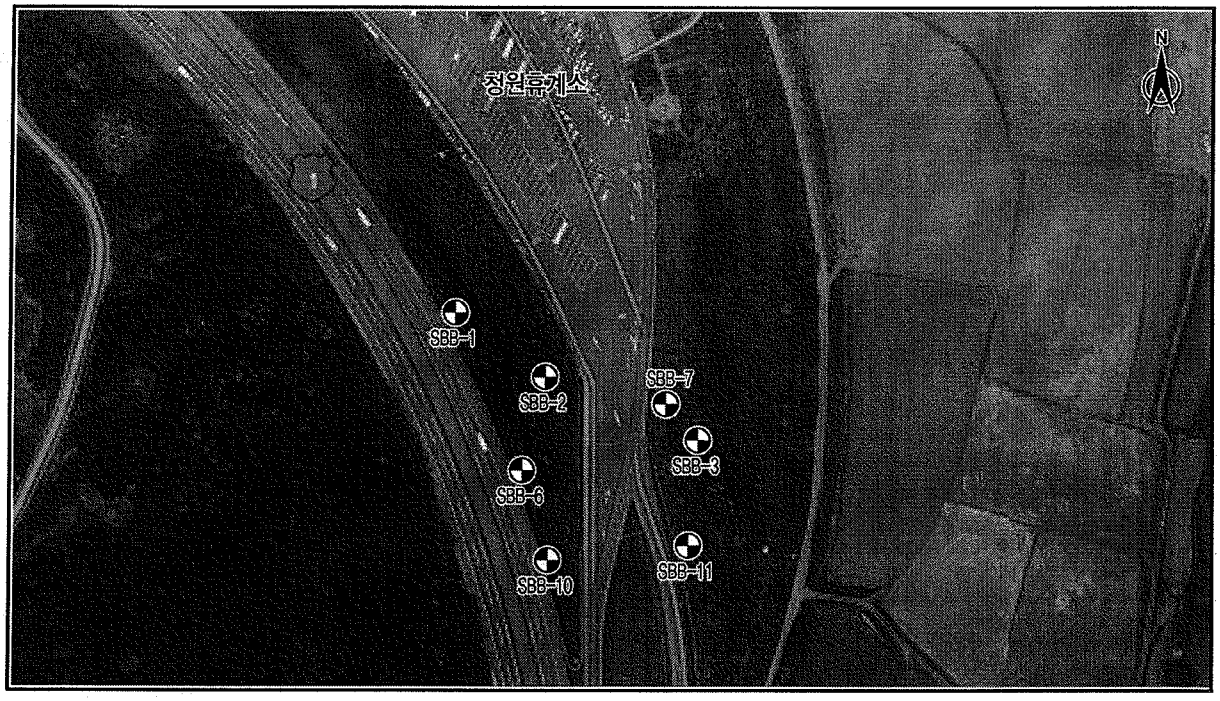

2.4 굴착위치 개요표

가. 청원휴게소 부지(옥산 JCT RAMP교 :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공 번	좌표	
	X	Y
SBB-1	457371.63	231151.49
SBB-2	457342.49	231192.53
SBB-3	457313.98	231261.92
SBB-6	457300.31	231179.57
SBB-7	457330.09	231243.35
SBB-10	457260.19	231193.3
SBB-11	457266.31	23125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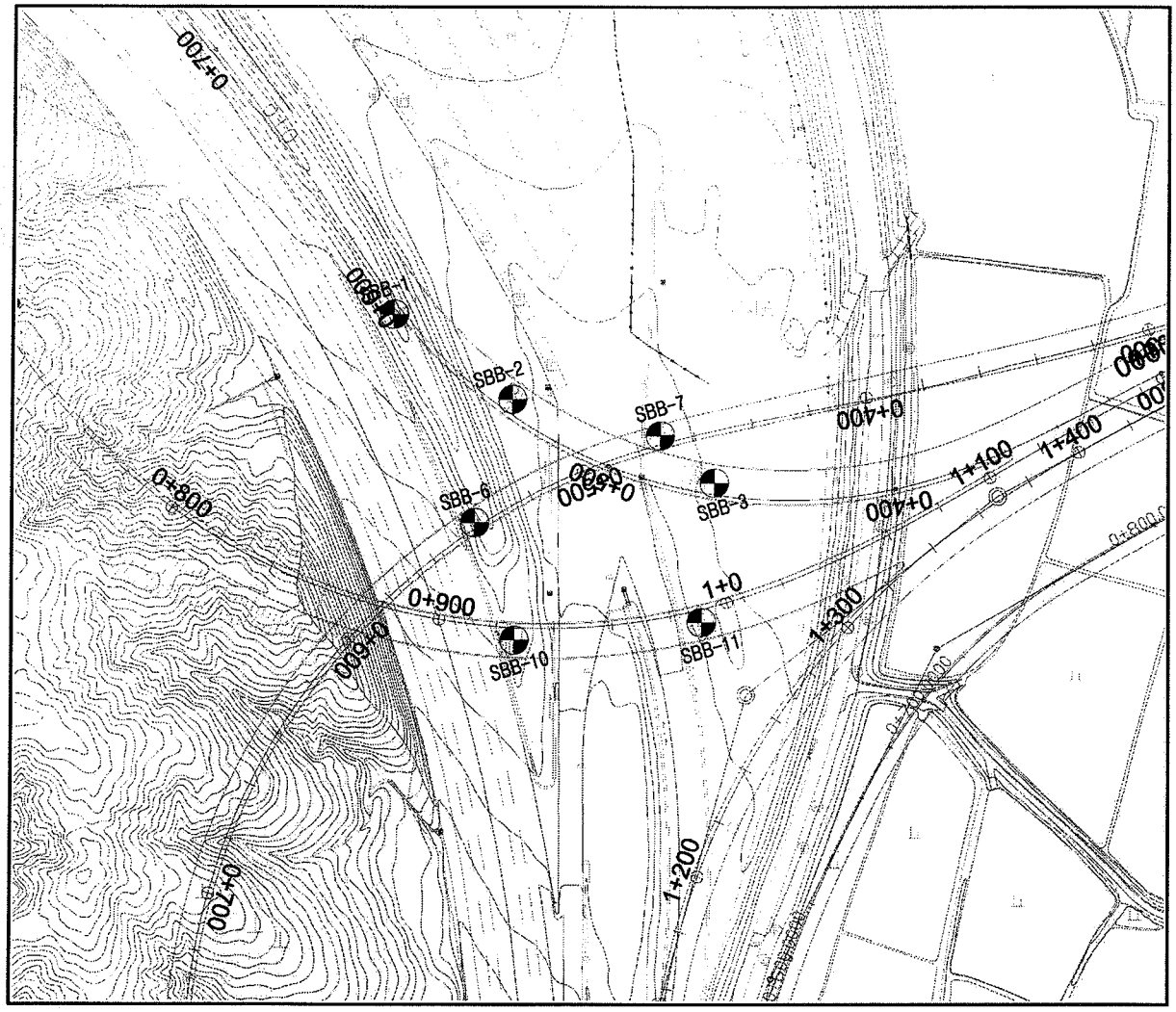

제3장 폐공 및 원상복구 계획서

3.1 폐공 및 원상복구 계획

가. 개요

- 각종 조사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남게 되는 시추공을 폐공이라 하는데, 최근 들어 폐공을 통한 오수의 유입으로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추조사 등에 의한 시추공은 조사완료 후 폐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 폐공처리를 통하여

1) 폐공 내로 유입되는 지표 오염원 차단

2) 오염원의 수직적 이동 통로 제거

3) 오염유발시설(케이싱 등)제거 등의 지하수 오염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폐공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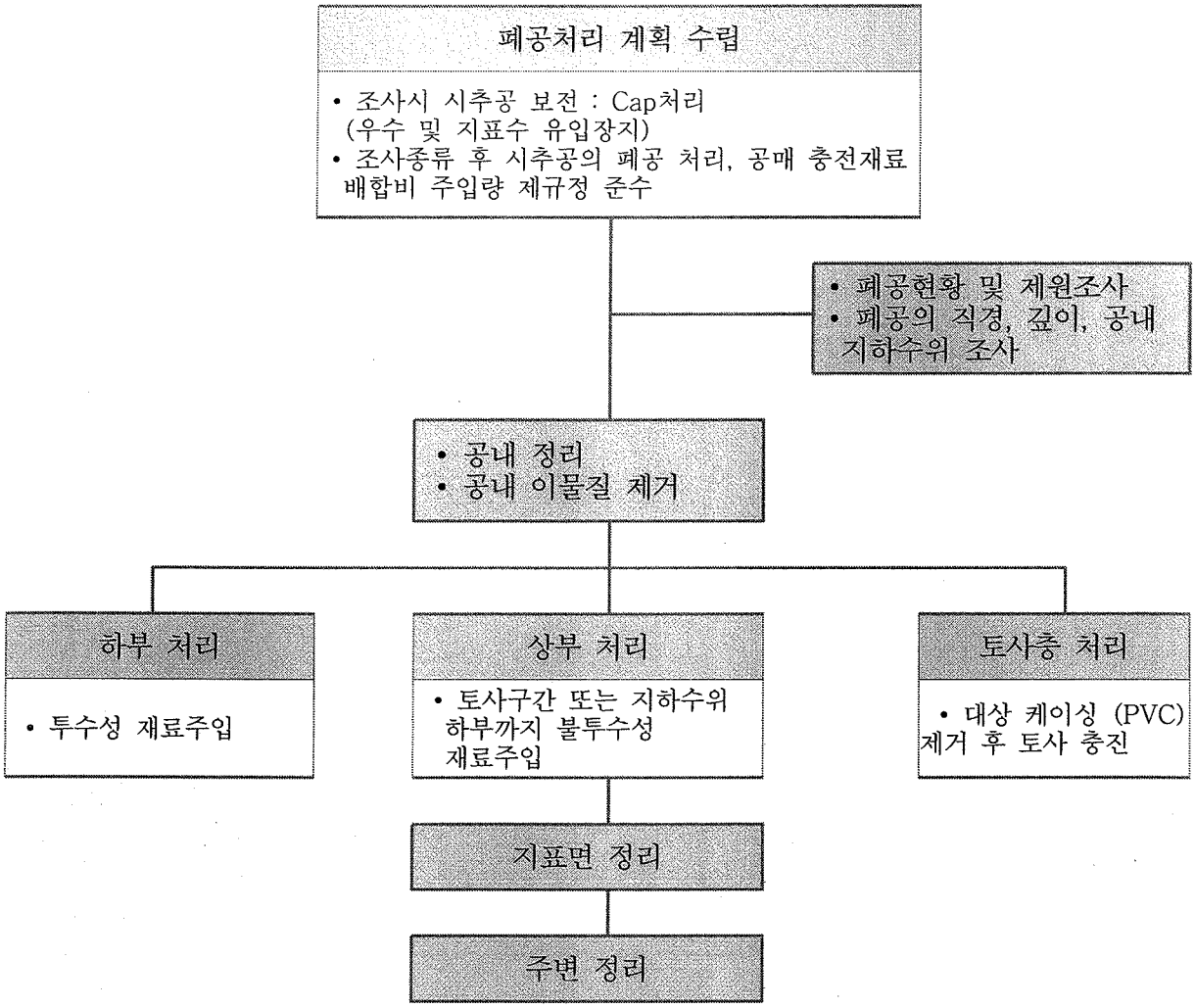

다. 관련법규

폐공의 정의	• 현재 또는 미래에 이용 할 계획이 없고 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는 지층을 굴착한 모든 공(건설교통부)
원상복구 명령 (지하수법 제15조)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또는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않고,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 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처 리 대 책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	• 지표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굴착깊이까지 불투수성재료 (시멘트, 슬러리 등)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공매작업) • 지표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지 않고 보호벽(케이싱)이나 유공관(파이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이를 제거한 후 토지 굴착깊이까지 불투수성 재료(시멘트슬러리 등)를 다짐하면서 되메움 (공매작업)

라. 폐공처리 방법

• 폐공처리방안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의 적정 처리방안」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폐공조치 하였으며 폐공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폐공의 직경, 깊이, 지하수의 측정과 공매재료량 산정 : 공매자료의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정의 직경과 깊이를 측정하고 필요시 공매재료의 주입압을 결정키 위하여 지하수위를 측정한다.
- 관정내 정리 : 관정이 막혔거나 펌프 또는 시설장비가 관정내에 설치되어 있을 때는 이를 사전에 제거하고 케이싱등 관정내 자재를 가능한 한 인양 제거한다.
- 공매재료 충전 : 공매재료는 트레미 파이프나 호스를 설치한 후 공매재료를 공내로 충전한다. 충전시 파이프나 호스를 서서히 끌어 올리면서 심도별로 단계적으로 공매재료를 공내에 부설한다.
- 상부구간 마무리 :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그 하부 1~1.5m 지점까지는 영농과 식생을 고려하여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한다. 만약 상부·관정자재의 인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1~1.5m 지점까지 터파기를 하고, 노후된 관정자재를 제거한 후 지표 하 1~1.5m 지점까지는 상술한 공매재료를 부설하고 0~1m 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한다.

폐공처리 전	폐공처리 중	폐공처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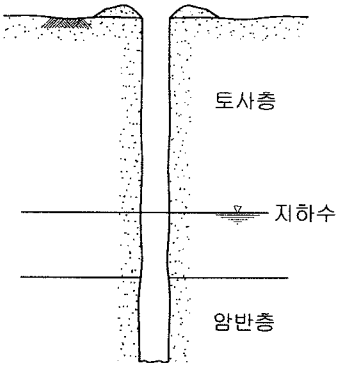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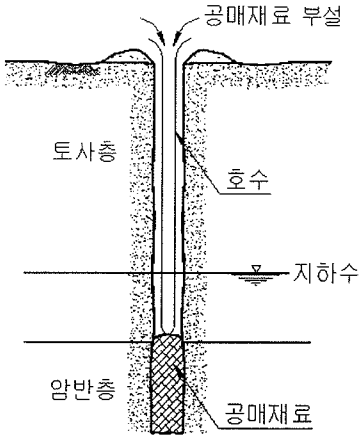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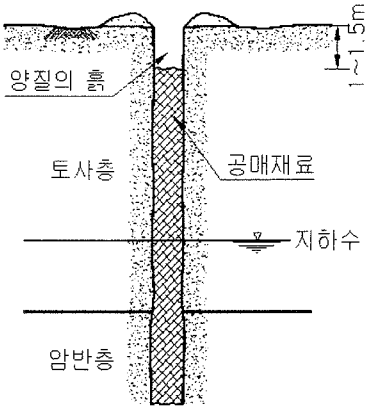
• 공매재료의 양 결정 • 직경, 깊이, 지하수위 파악 • 시추공내 접지, Casing 및 P.V.C Pipe 제거	• 공매재료의 충전 : 시멘트 물호스설치후 공매재료 충전 • 충전시 호스를 올리면서 공매재료 부설	• 상부구간 마무리 공매재료를 지표면 1~1.5m까지 충전 후 양질의 흙으로 되메움

마. 폐공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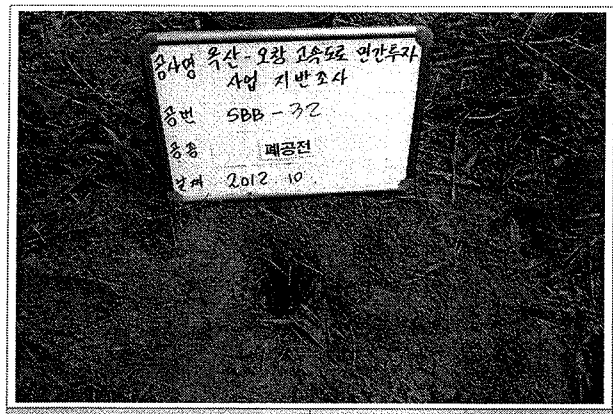

작업내용 | 폐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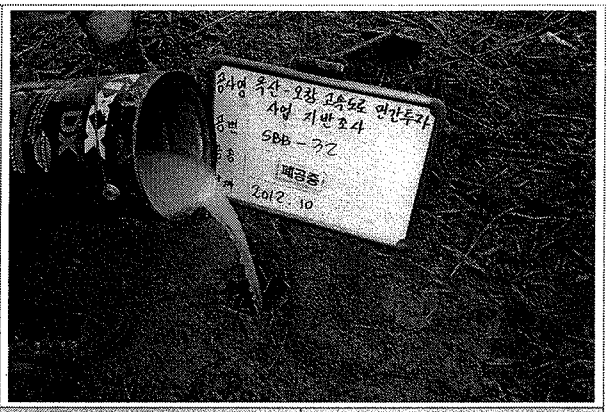

작업내용 | 폐공중(토사 되메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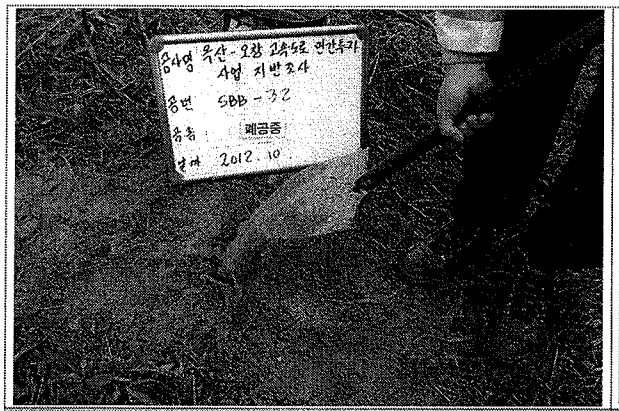

작업내용 | 폐공중(불투수성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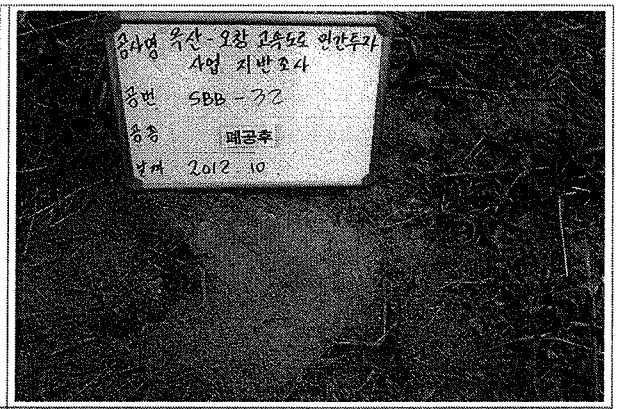

작업내용 | 폐공후

제4장 안전관리대책

4.1 교통안전관리대책

1)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휴게소 도로 옆 공터등에서 7개소의 시추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2) 시추조사는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점용면적은 개소당 8㎡임
3) 시추조사는 작업공간을 최소화하여 차량 및 보행인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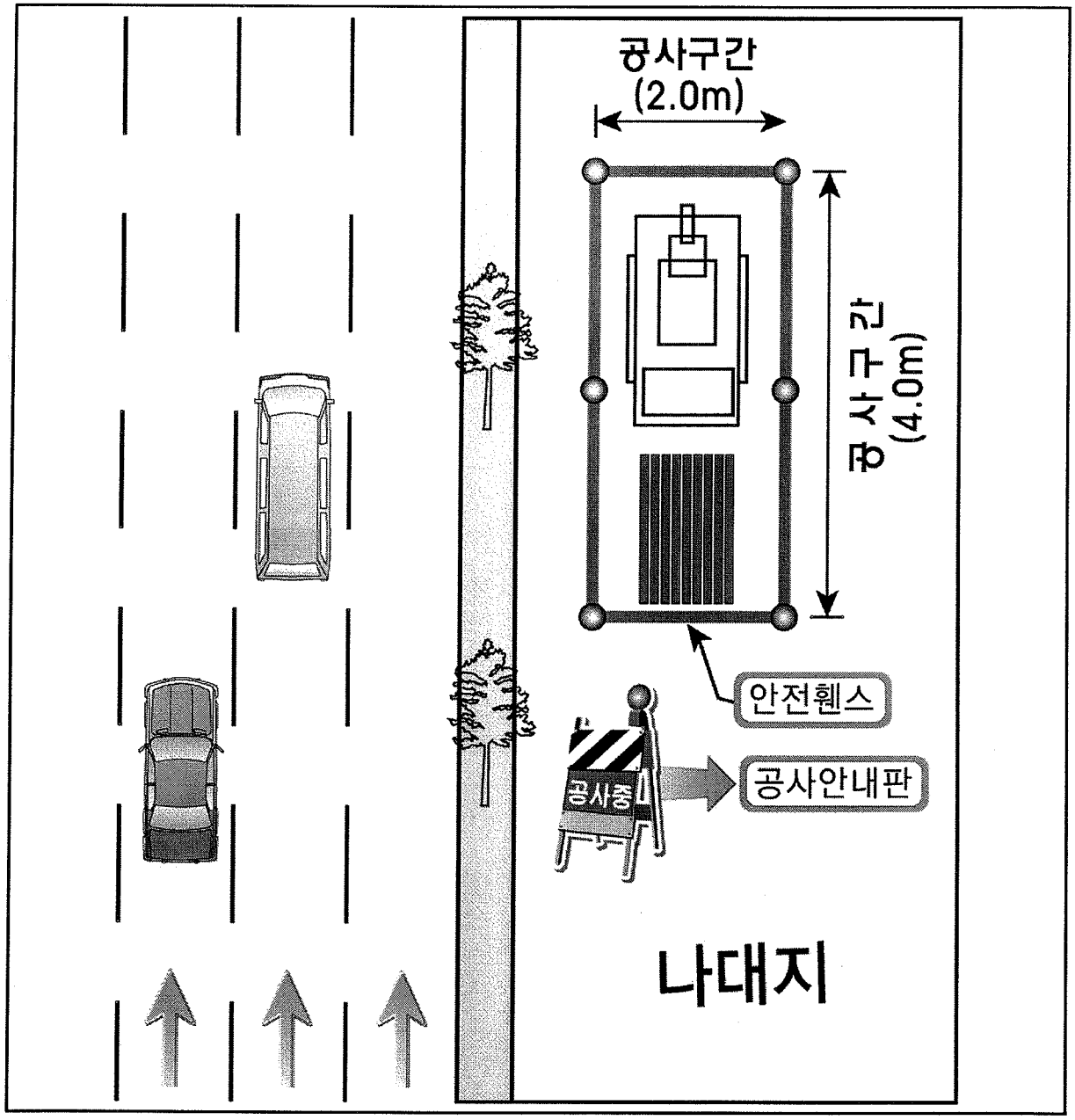

4.2 공사관리대책

· 굴착공사는 도로유지시설이 없는 곳을 사전조사하여 시행한다.

· 굴착구간에 도로유지시설이 예상될 경우 관리청(회사)에 통보한 후 입회하여 인력굴착 한다.

· 도로유지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관리청(회사)의 준공검사를 득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한다.

1) 착공전

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 하겠음.

나) 공사 착공전에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와의 현장협의를 통하여 공사장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상호 확인하겠음.

다)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하겠음.

2) 시 공

가) 본 공사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공터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나) 도로의 일시적인 점용은 장비의 반출입시에만 부분적인 통제를 할 예정임

3) 안전대책

시추작업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감안하여 안전 Fence를 설치한 후 아래와 같이 안전대책을 실시한다.

가) 공사를 알리는 작업 안내판을 설치하여 통행인으로 하여금 작업중임을 인지시킨다.

나) 장비주변에 안전 Fence를 설치하여 작업시 발생할 안전사고에 위험으로부터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해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다) 야간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구간임을 알리는 점멸등 또는 경광등을 설치한다.

제5장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대책

5.1 비산먼지 방지대책

◦ 시추조사는 주요지하매설물이 없는 곳을 사전 조사하여 시행한다.

◦ 시추조사 작업 전 지하매설물(도시가스, 통신, 전력선, 상수도등) 예상지역의 확인을 위하여 인력 터파기 실시할 경우 지질조사 완료 후 즉시 복구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① 인력 터파기 작업 시 발생한 잔토는 먼지의 비산을 막기 위해 마대에 넣어 보관처리함.

② 공터에서 작업 시 시추공의 복구는 조사 완료 후 즉시 시행하며, 시멘트, 모래 및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폐공처리를 완료한다.

◦ 회전 수세식(Rotary Wash Type)시추기 사용으로 비산먼지를 최소화하여 시행한다.

5.2 소음 방지대책

◦ 대상지역 청원휴계소와 충분한 이격거리(최소 반경 약 100m이상) 확보를 통해 소음을 최소화하여 시행한다.

◦ 저소음 시추기(유압식)의 사용 및 주간(07:00~18:00) 작업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하여 시행한다.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청원군수(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충북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제출

우리 청에서 실시계획 수립중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노선내 충비삼월의비(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가 확인되어 붙임과 같이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1부(별도송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

주무관	사무관대우	과장	전결 2012. 11. 15.
박준식	송창원		서용옥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7626 (2012. 11. 15.)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54 팩스번호 042-670-3485 / mjjs98@mltm.go.kr / 비공개(5)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table>
<tr><td colspan="7">충청북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td><td>처리기간
20 일</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명</td><td>옥산오창
고속도로
주식회사</td><td>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110111-4120971</td></tr>
<tr><td>주소</td><td colspan="5">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전화:070-4421-8690)</td></tr>
<tr><td rowspan="3">대 상 문 화 재</td><td>명칭</td><td colspan="5">충비삼월의비</td></tr>
<tr><td>종별</td><td>문화재자료</td><td>지정번호</td><td>제14호</td><td>수 량</td><td>1기</td></tr>
<tr><td>소재지 (보관장소)</td><td colspan="4">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산16</td></tr>
<tr><td>보호구역 · 보호물</td><td colspan="6">현상변경허가 현상유지구역</td></tr>
<tr><td>신 청 사 유</td><td colspan="6">보호구역내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원형 변경</td></tr>
<tr><td>현상변경등의 부분</td><td colspan="2">고속도로 건설</td><td colspan="2">현상변경 등의 내용</td><td colspan="2">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현상변경</td></tr>
<tr><td rowspan="2">현상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td><td>성명</td><td>옥산오창
고속도로
주식회사</td><td>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110111-4120971</td></tr>
<tr><td>주소</td><td colspan="5">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전화:070-4421-8690)</td></tr>
<tr><td rowspan="2">공 사 담 당 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 colspan="2">기술자 · 기능자 · 수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td><td>착공</td><td colspan="5">2013년 7월</td></tr>
<tr><td>준공</td><td colspan="5">2017년 6월</td></tr>
<tr><td>소 요 경 비</td><td colspan="2">2,302.02억원</td><td>재 원</td><td colspan="3">정부 : 625.25억원
민간사업자 : 1,679.77억원</td></tr>
<tr><td>기 타 사 항</td><td colspan="6">소요경비 및 재원의 경우 2004년 9월 불변가 기준임</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제3호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일

신 청 인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td></tr>
<tr><td colspan="6">구비서류 1. 설계도서, 현장사진
2.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mm×296mm
(인쇄용지(2급) 60g/㎡)

목 차

1. 사 업 계 획 서

2. 위 치 도

3. 현 상 변 경 허 용 기 준

4. 전 체 노 선 도

1. 사 업 계 획 서

1.1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

1.2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일원

1.3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 및 산림지역 외 다수

1.4 사업의 목적

○ 국토간선도로망계획 7×9중 동서5축 옥산~오창구간 구축

○ 아산만권과 청원•청주권간 생산, 물류, 교류 기반조성 확대로 지역간 균형 발전 및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물류비용 절감

1.5 문화재 현황

○ 문화재명 : 충비 삼월의 비

○ 문화재 지정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14호 (지정일 : 1995. 06. 30)

○ 문화재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산16

○ 관리자 : 청풍김씨 종중

1.6 사업규모

○ 구 간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 연장 및 차로수 : 12.1km, 왕복4차로(폭원 23.4m)

○ 설계속도 : 100km/h

2.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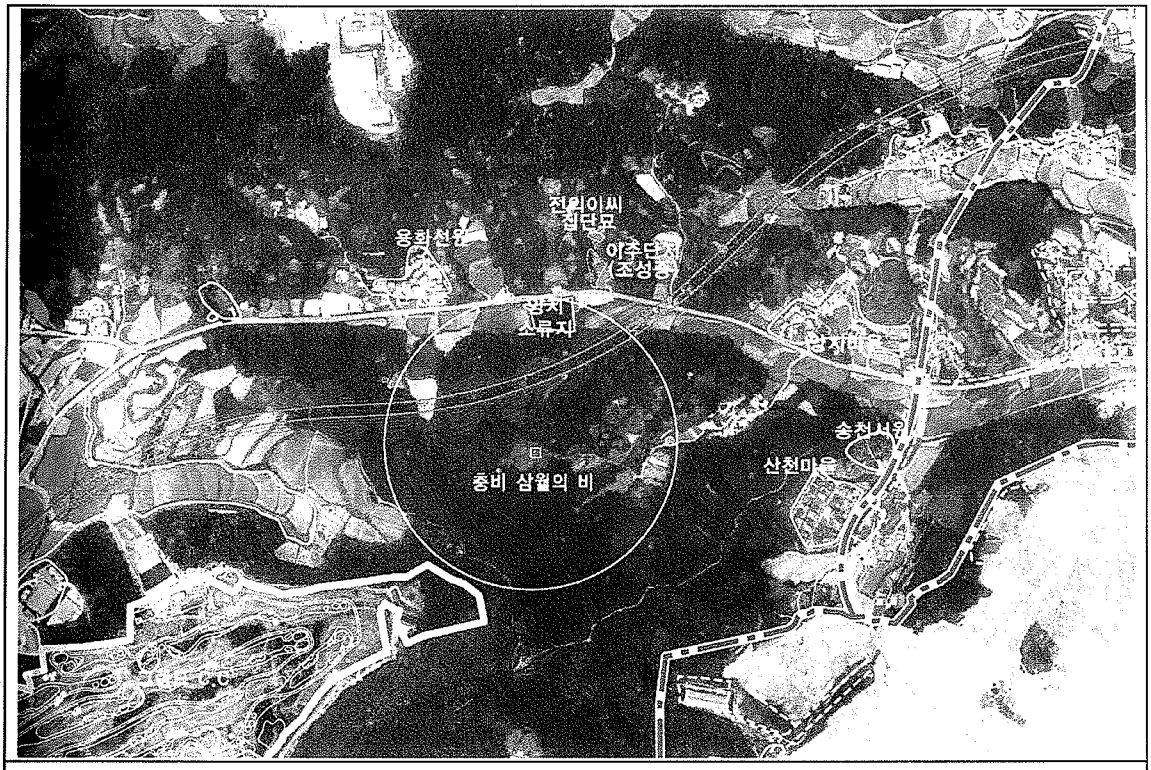

위 성 사 진 (원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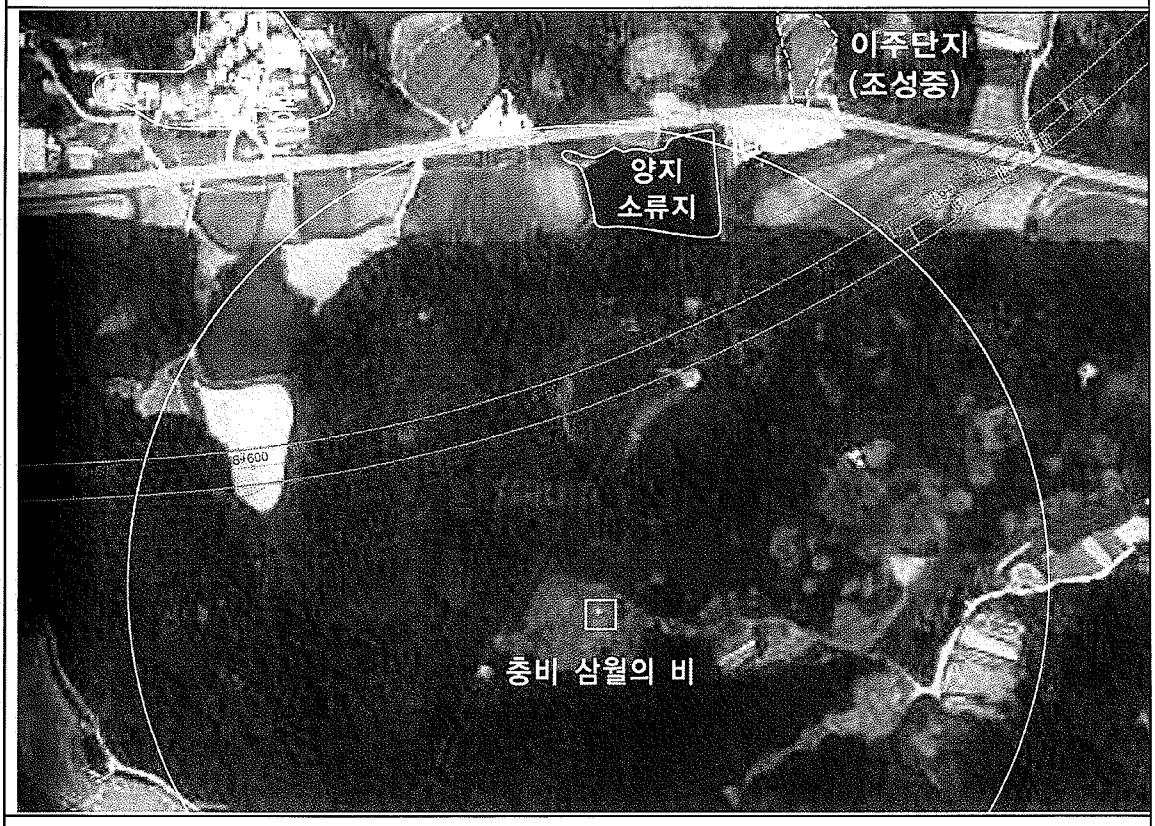

위 성 사 진 (근 경)

3. 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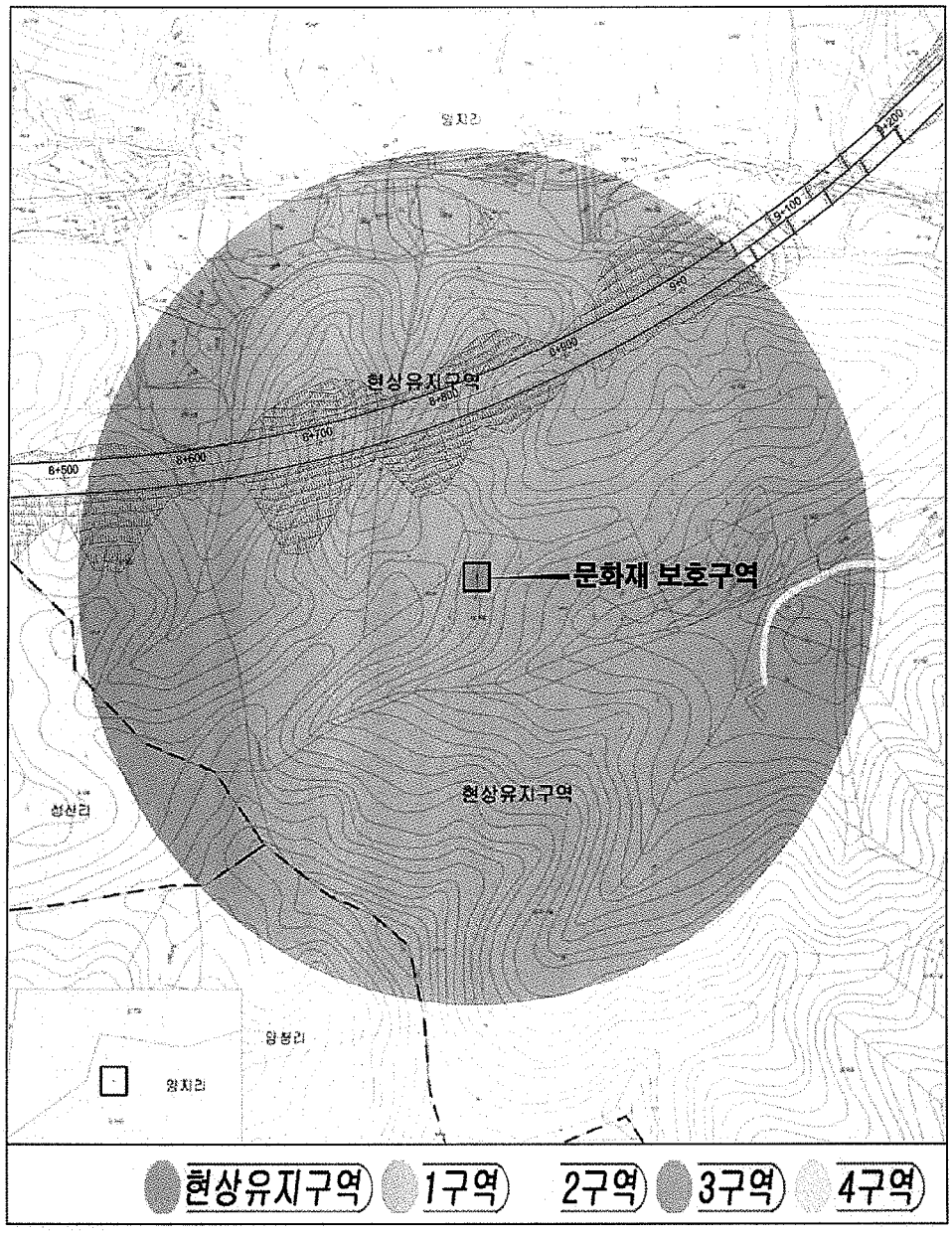

[그림4-26] 충비삼월의비주변 허용기준 구역구분

[표4-28] 충비삼월의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 3:10 이상)	
현상유지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동일 규모 내 에서 개☒수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별도 심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및 분뇨처리 시설 별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별도 심의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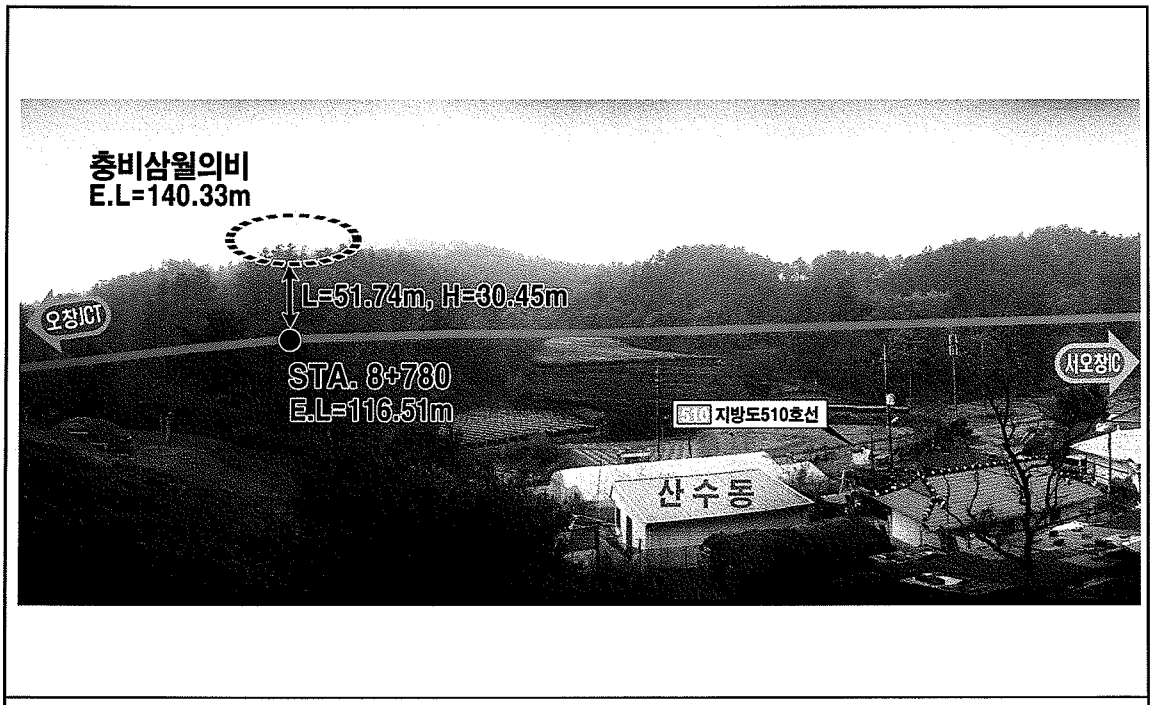

주 변 의 도 로 및 건 물 : 산수동마을, 지방도510호선 (STA. 8+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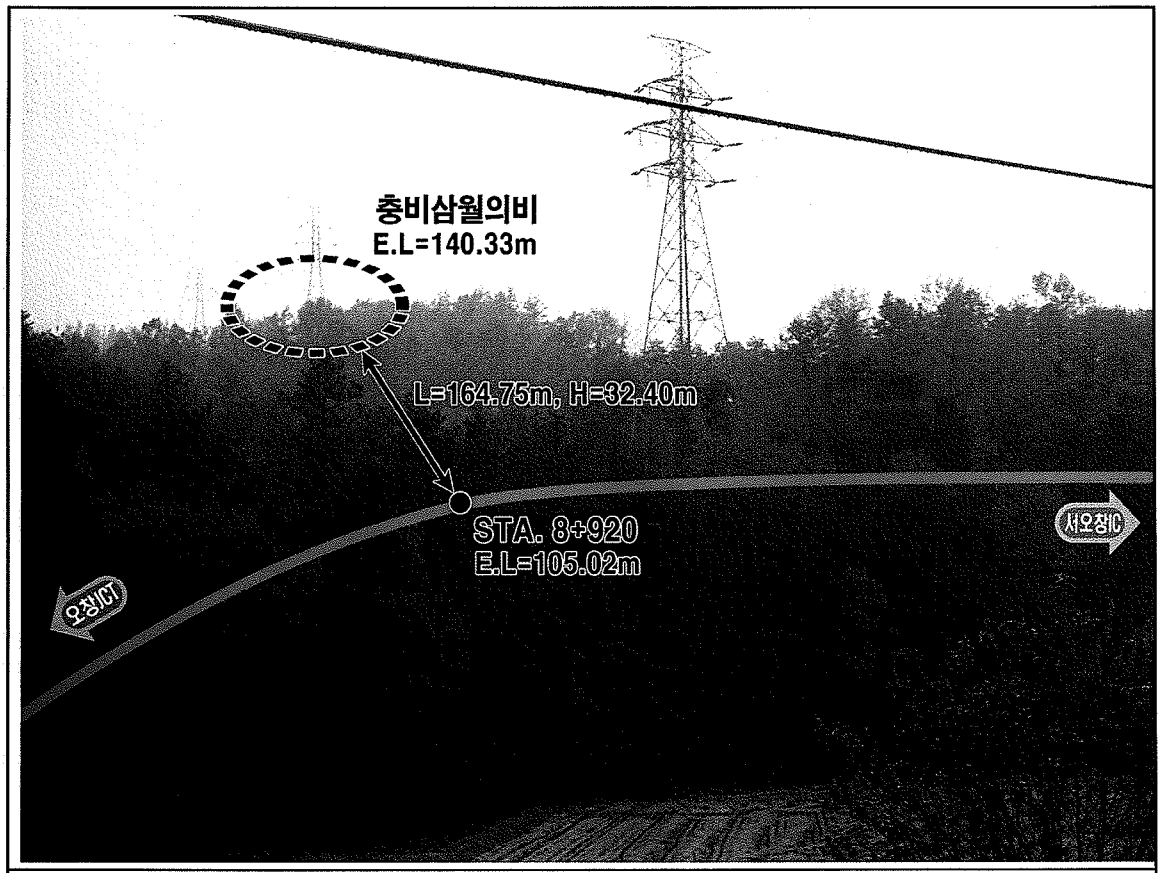

주 변 의 도 로 및 건 물 : 송전철탑-154kV (STA. 8+920)

○ 전경사진

전경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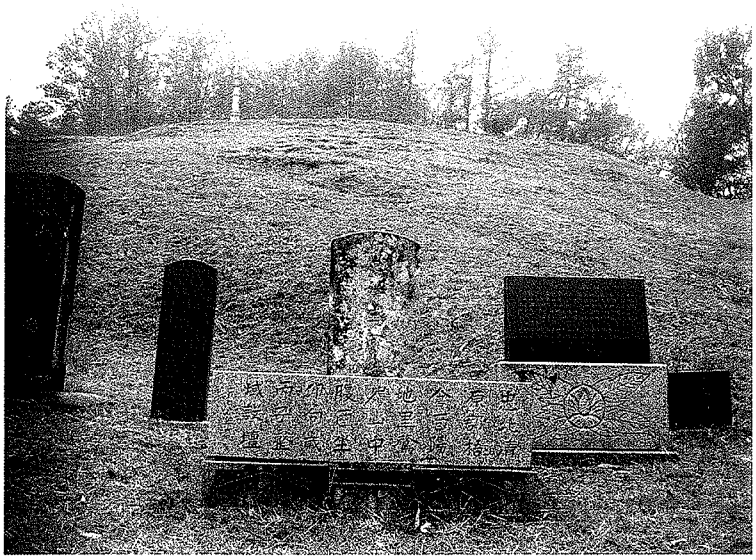
전경 (좌측)	
전경 (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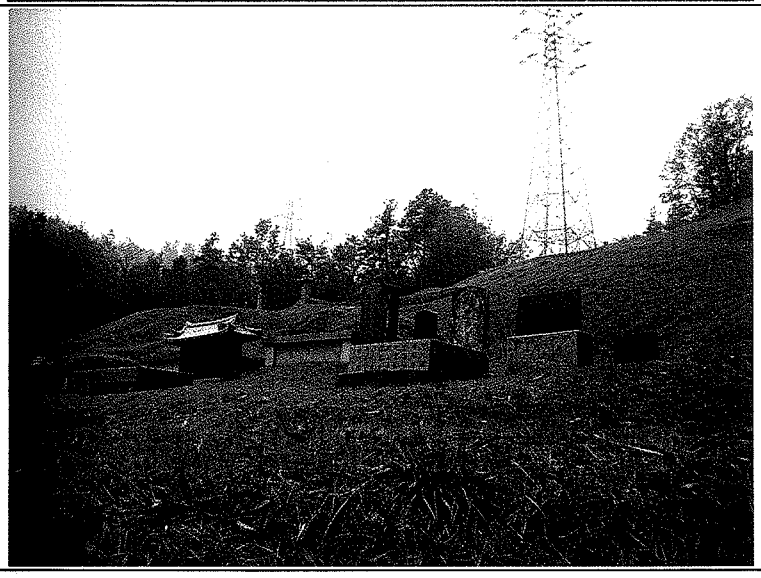

4. 전체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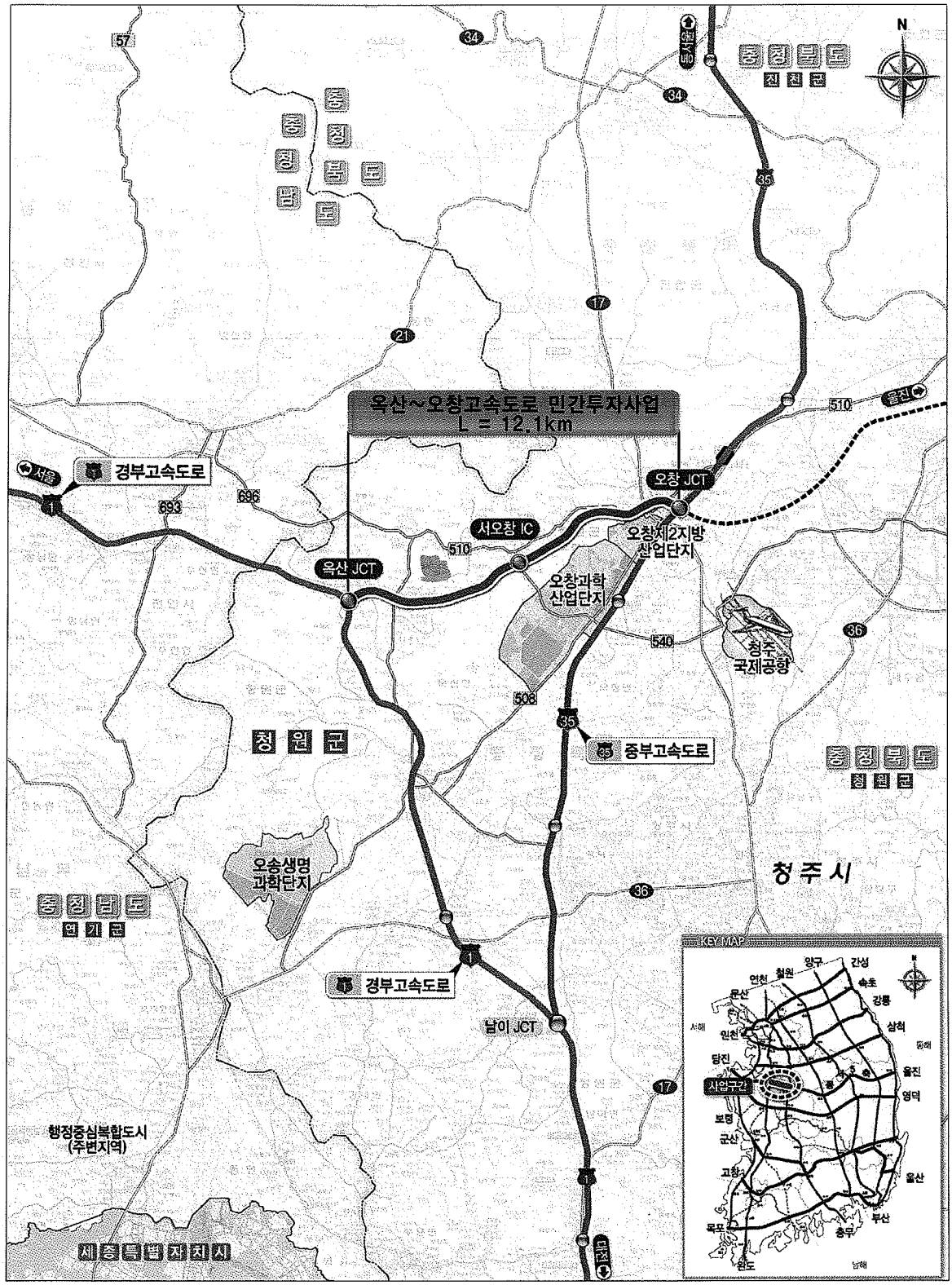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L = 12.1km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오창 JCT
서오창 IC
오창제2지방
산업단지
옥산 JCT
오창과학
산업단지
청주
국제공항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충청북도
청원군
청주시
오송생명
과학단지
충청남도
연기군
경부고속도로
남이 JCT
행정중심복합도시
(추변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
KEY MAP
사업구간
N

<table>
<tr><th>구 분</th><th>횡 단 면 도</th></tr>
<tr><td>단면 A</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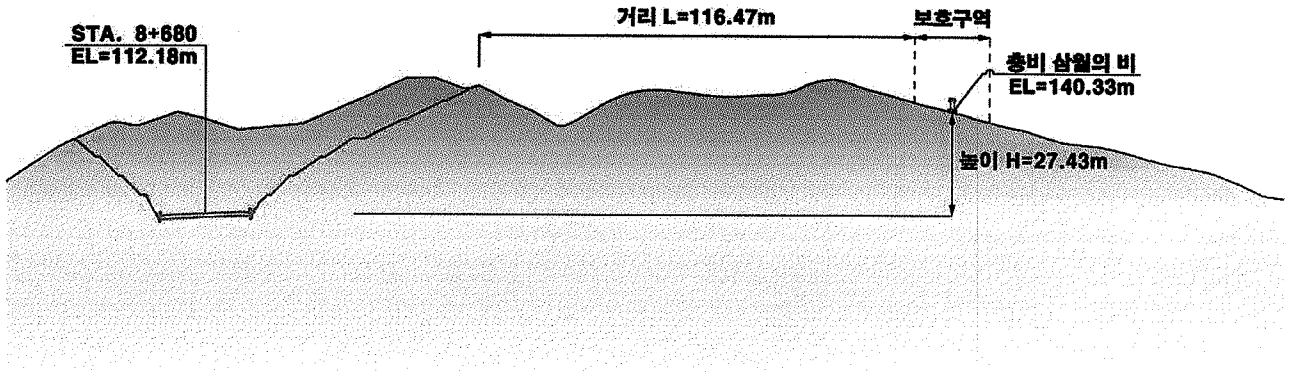

• 지형상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고속도로 조망 안됨</td></tr>
<tr><td>단면 B</td><td>■ 당 초(설계기준 적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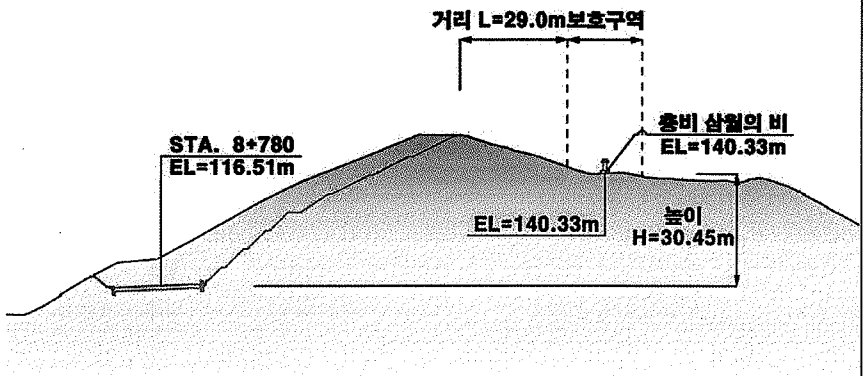

• 지형상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고속도로 조망 안됨</td><td>■ 설계 변경(사면 보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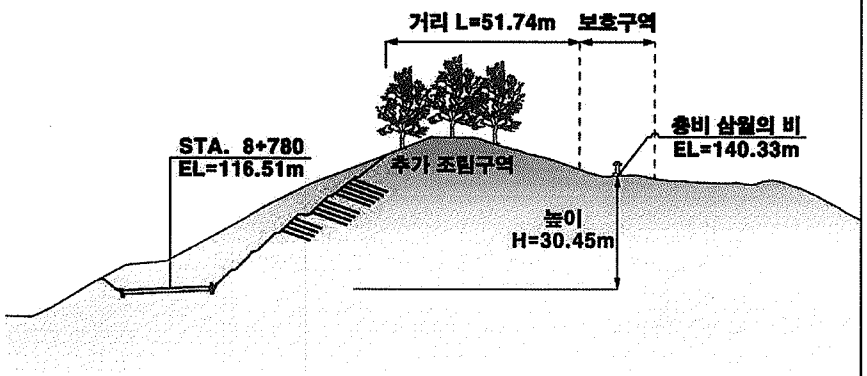

• 지형상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고속도로 조망 안됨
• 사면 보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최대 이격거리 확보
• 문화재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추가 조림구역 반영</td></tr>
</table>

구 분	횡 단 면 도
단면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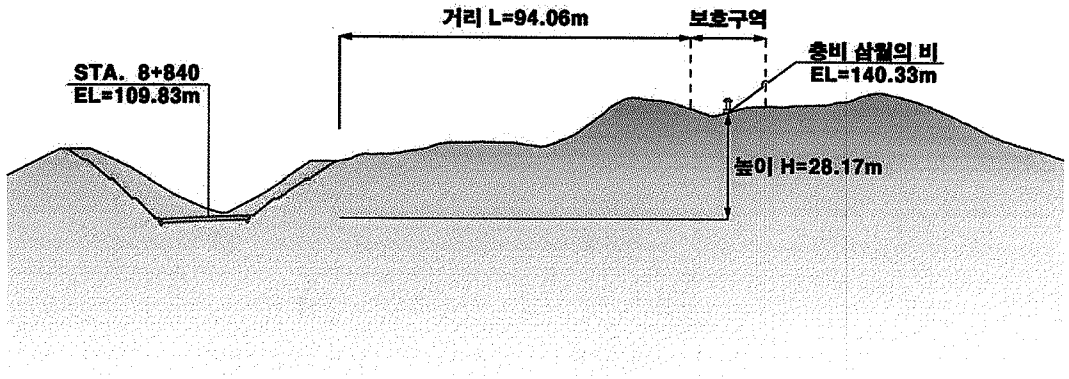 • 지형상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고속도로 조망 안됨
단면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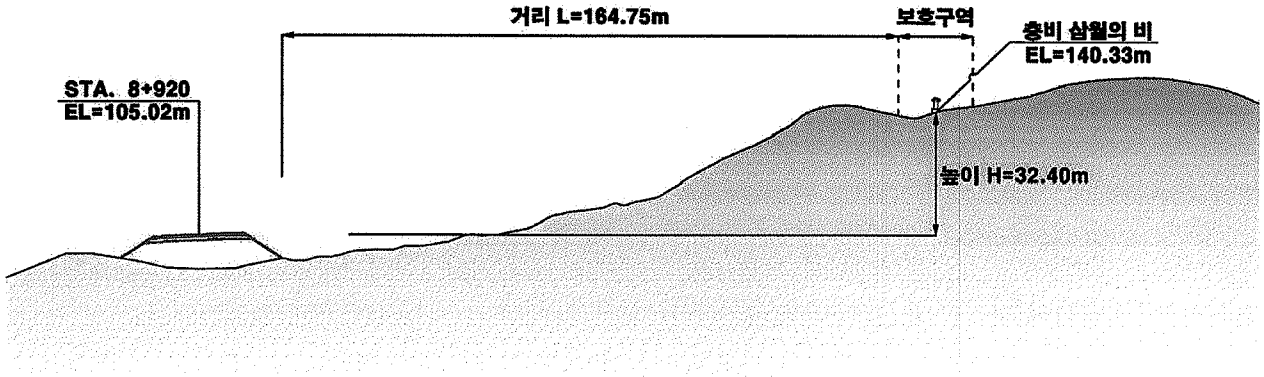 • 지형상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고속도로 조망 안됨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37-80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TEL 070-4421-8690, FAX 02-512-3480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44호 2012. 11. 12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제출 관련 협의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2012.01.1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수립중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입니다.

3.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 충비삼월의비(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가 추가로 확인되어, 관련법규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충청북도 청원군(문화체육과)에 제출하려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1부. -끝-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두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 37 호 2012. 9. 11.

수 신 : 충청북도지사

참 조 : 환경정책과장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1.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하오니 검토의견을 주관 행정기관(청원군)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구간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 ~ 오창면(중부고속도로)

다. 사업내용 : 연장(12.1km), 차로수(4차로)

라. 주관행정기관 : 청원군청(환경과 043-251-3441)

붙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식. -끝-

서 울 중 구 남 대 문 로 5 가 5 3 7
옥 산 오 창 고 속 도 로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박 정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 36 호 2012. 9. 11.

수 신 : 금강유역환경청장

참 조 : 환경평가과장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하오니 검토의견을 주관 행정기관(청원군)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구간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 ~ 오창면(중부고속도로)

다. 사업내용 : 연장(12.1km), 차로수(4차로)

라. 주관행정기관 : 청원군청(환경과 043-251-3441)

붙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식. -끝-

서 울 중 구 남 대 문 로 5 가 5 3 7

옥 산 오 창 고 속 도 로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박 정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 35 호 2012. 9. 11.

수 신 : 환경부장관

참 조 : 국토환경평가과장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하오니 검토의견을 주관 행정기관(청원군)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구간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 ~ 오창면(중부고속도로)

다. 사업내용 : 연장(12.1km), 차로수(4차로)

라. 주관행정기관 : 청원군청(환경과 043-251-3441)

붙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식.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 34 호 2012. 9. 11.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하오니 검토의견을 주관 행정기관(청원군)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구간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 ~ 오창면(중부고속도로)

다. 사업내용 : 연장(12.1km), 차로수(4차로)

라. 주관행정기관 : 청원군청(환경과 043-251-3441)

붙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식.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서번호 : 옥산오창 제 2012- 32 호 2012. 9. 10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민원사항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옥산~오창, 유재준 외 146인)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5917(2012.9.6) 「민원 조치요청(옥산~오창, 유재준 외 146인)」과 관련하여 민원인 노선변경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돛대산 통과관련 민원검토서 1부.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돛대산 통과관련 민원검토서

☐ 민원 개요

- ㅇ 2012. 9. 3 : 민원 이첩(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ㅇ 2012. 9. 6 : 민원 조치 요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옥산오창고속도로(주))
- ㅇ 민원인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4 유재준 외 146인
- ㅇ 내 용 : **돛대산 통과구간 직선터널 설계변경 요청**(아래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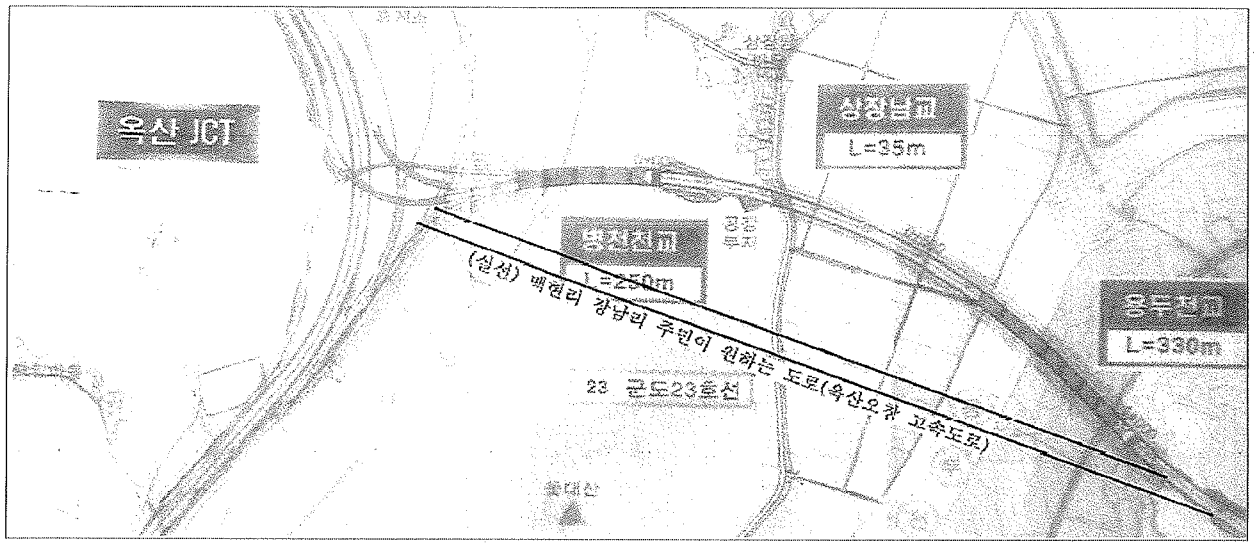

☐ 민원경위

- ㅇ 2012. 7. 17 : 이재식 청원·청주 통합발전 협의회장, 유재준 상장남리장, 박재규 백현리장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방문⇒돛대산 통과구간 터널계획 요청
- ㅇ 2012. 7. 26 ~ 2012. 8. 13 : 돛대산 통과방안 검토결과 보고(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ㅇ 2012. 8. 21 : 민원 회신(도로시설 설치관련 기준상 민원요청안은 터널시공 곤란)
- ㅇ 2012. 8. 27 : 민원인(이재식 회장, 유재준 이장, 박재규 이장) 방문설명

☐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ㅇ **관련기준 검토**[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2009, P.491) 및 터널과 출입시설간 이격거리 기준 보완방안 검토(한국도로공사, 2002. 11)]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간 **최소 설계기준 이격거리 미확보**로 터널계획 곤란

구 분	설계기준	설치	검토의견
옥산JCT→돛대터널 이격거리	171.7m	90.0m	기준 미확보(81.7m 부족)
돛대터널→옥산JCT 이격거리	480.0m	135.0m	기준 미확보(345.0m 부족)

- ㅇ 상기 사항에 대한 **민원인 방문설명을 시행**(2012. 9. 7) 하였으며, **향후 보완설명** 및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협의를 시행**토록 조치하겠음.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충청북도교육감(재무과장)
(경유)
제목 협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오창~옥산 고속도로)

1. 재무과-12400(2012.05.25.)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협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계기관 협의의견 검토결과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무관	박웅구	사무관 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2. 8. 29. 정상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5687 (2012. 8. 29.)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63 팩스번호 042-670-3485 / sendpark@mltm.go.kr / 비공개(5)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12. 8

국 토 해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4)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교육청 (재무과-12400, '12.05.25)	【관재담당】 ○ 대체 교육시설부지 필요 -농업계특성화고 교육과정의 공백 없는 교육활동을 위한 대체 교육시설부지 필요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교육시설 이전부지 선정의 어려움 -현대적인 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목초지 330,000㎡,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물 1일 30톤 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 선정의 어려움, 농업계특성화고 교육과정의 공백 없는 교육활동을 위한 대체 교육시설 부지 필요 -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 정보 제공 희망	○ 부지 정보제공 곤란 -사업관리청과 사업시행자는 교육시설 이전이 가능한 인근지역 부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교육시설에 대한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의 인지 부족으로 정보제공이 불가함.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5)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교육청 (재무과-12400, '12.05.25)	○ 적정한 보상 이행 -귀 청의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 계획(안)으로 노선 확정시 잔여지로는 부지가 협소하여 교육시설부지(공동 목장 운영 및 농업교육)로 활용할 수 없으며, 특히 공사 및 차량 소음으로 인한 각종 동물들의 성장 및 발육 저하 등으로 농업계 교육연구 시설부지(공동 목장)로 기능을 상실하여 교육 연구시설 부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연구시설(공동 목장 운영) 부지 중 도로 편입 학교용지와 건물, 공작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건을 부함	○ 적법한 보상 -관련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입되는 토지와 시설에 대하여는 적법한 감정평가와 보상 실시. -옥산~오창 고속도로 편입 예정 면적은 약 116천㎡이며, 교육시설 15개동과 관정 2개소 등이 포함됨. -본 사업은 2013년 상반기 착공 및 2017년 개통 예정인 사업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교육 시설이 2015년 8월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한국도로공사사장(기획조정실장)
(경유)
제목 협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오창~옥산 고속도로)

1. 기획조정실-1715(2012.05.18.)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과 관련하여 귀 사 협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협의의견 검토 결과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무관	박웅구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2. 8. 29. 정상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5688 (2012. 8. 29.)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63 팩스번호 042-670-3485 / sendpark@mltm.go.kr / 비공개(5)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한국도로공사)

2012. 8

국 토 해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table>
<tr><th>관계기관</th><th>협 의 의 견</th><th>조 치 계 획</th><th>비 고</th></tr>
<tr>
<td>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1715,
'12.05.18)</td>
<td>【도로조사팀】

□ 기존 고속도로 교통영향 측면
○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 확장을 고려하여 민자사업 시행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재검토 필요

□ 고속도로 접속 및 실시설계 측면
○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 접속 위치 재검토 필요
-분기점 평면곡선반경 기준 및 출입시설~휴게소간 이격거리 기준에 위배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휴게소 이용객 혼란·교통 지정체 등이 우려되므로 현 위치 접속은 곤란
- 분기점 설치기준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 국토부」
<table>
<tr><th>구분</th><th>기준</th><th>설계(안)</th></tr>
<tr><td>분기점
평면곡선반경</td><td>700m</td><td>600m</td></tr>
<tr><td>출입시설-휴게소간
이격거리</td><td>2km</td><td>0km</td></tr>
</table>
</td>
<td>○ 이행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행시 재검토하겠음

○ 수용불가
-부득이하게 옥산분기점이 경부선 평면곡선반경 R=600m 지점에 설치되나 유출입부는 직선부에 설치하여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였음.
-출입시설~휴게소간 이격거리는 유입-유출에 따른 엇갈림을 감안 산정하나, 본 계획은 유입-유입 또는 유출-유출 형태로 계획하여 출입시설~휴게소간 이격거리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별첨#1 유사 설치사례 참조)
-다만 휴게소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본 사업의 연결로상에서 분·합류 후 경부고속도로에 진·출입 하도록 보완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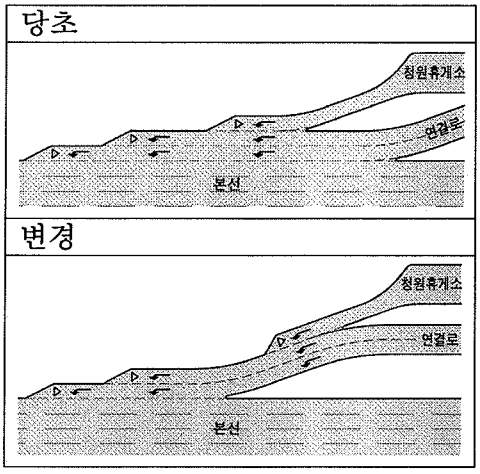

</td>
<td></td>
</tr>
</table>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2)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1715, '12.05.18)	○ 금년 실시설계 착수 예정인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6→8차로)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상세 실시설계 사항은 추후 재협의 필요	○ 이행 -남이~천안 확장(6→8차로)실시설계를 고려하여 설계반영 및 재협의토록 하겠음.	
	○ 횡단교량 설계는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형하고를 5.0m 이상 유지하고, 설계시 우리공사 경관디자인 심의 및 설계 심의 이행	○ 이행 -횡단교량 형하고 5.0m 이상유지 및 경관디자인 심의 및 설계 심의를 이행토록 하겠음.	
	□ 영업시설 측면 ○ 국고 및 민자 구간 기본요금 중복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금제 재검토 필요 -민자 구간 요금제를 이부요금제에서 거리비례 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	○ 협의 후 결정 -운영 개시전 관계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후 조치하겠음.	
	○ 서오창TG(IC)의 경우 경부선 및 중부선 진·출입 차로를 분리하여 영업시설 설치 필요 -본선 영업소는 이용차량 경로 확인이 가능하나 IC 영업소는 확인이 불가하여 본선 및 IC 영업소간 통행요금 비등가 발생으로 민원 및 우리공사 요금체계 혼란 등 문제점 예상	○ 수용불가 -불필요한 통행료 징수시설 추가 설치로 건설비 및 운영비 과다 증가(6차로->10차로 이상) -진·출입 영업소간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산출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음.	
	○ 서오창TG(본선)는 향후 영업체계 연계방식(경유지 인식) 결정에 따라 추가 검토 필요 ☞향후 기본요금 중복 등 통행료 관련 민원 발생 시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조치	○ 검토후 결정 -실시계획 수립시 주무관청과 협의 후 결정하겠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3)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1715, '12.05.18)	□ 유지관리 및 기타 측면 ○ 통합유지관리방안은 추후 별도협의 필요	○ 이행 -'11.03월 한국도로공사와 관리운영 위·수탁 양해각서 체결하였으며, 운영 개시전 별도 협의하겠음.	
	○ 민자 고속도로 서울방향 이용차량의 기존 청원휴게소 이용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휴게소를 이용가능 하도록 조치	○ 협의 후 결정 -실시계획 수립시 옥산JCT R-D에서 청원휴게소 진입을 위한 연결로를 추가 반영하겠음. -다만 곡선 교량구간 차로 변경 등으로 휴게소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어 설계자문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별첨 #2 도면참조) 옥산JCT Ramp-D에서 직결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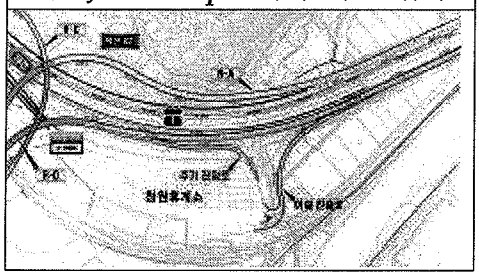	
	○ 고속도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고구간과 연계한 교통정보 연계체계 구축 필요 [연계정보:CCTV영상, VDS(실시간 30초), TCS(실시간)]	○ 이행 -CCTV 11개소, VDS 14개소, TCS 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실시계획 수립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겠음.	
	○ 민자 구간 내 교통량 조사장비(AVC) 설치 필요	○ VDS와 비교 후 결정	
	○ 실시설계 후 접속부 공사 시행은 우리공사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등과 협의 후 시행	○ 이행	

별 첨 #1

추풍령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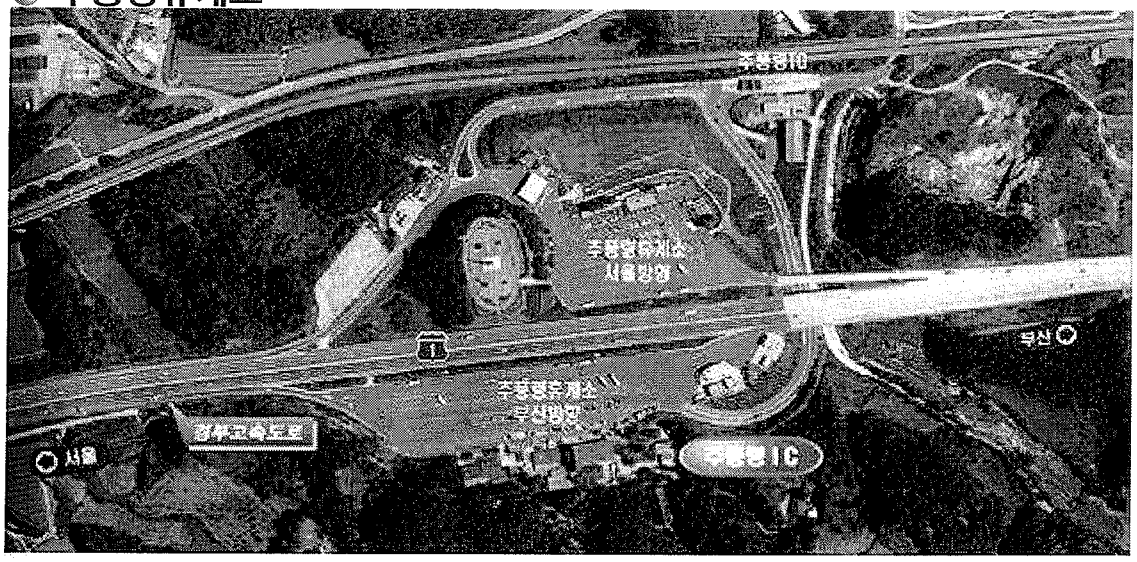

진주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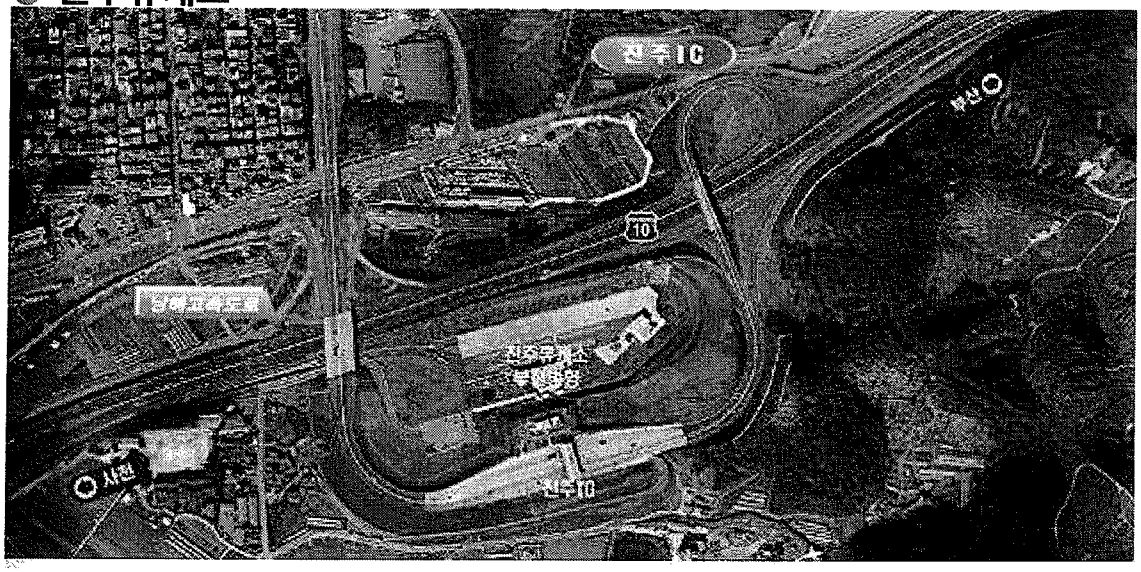

함안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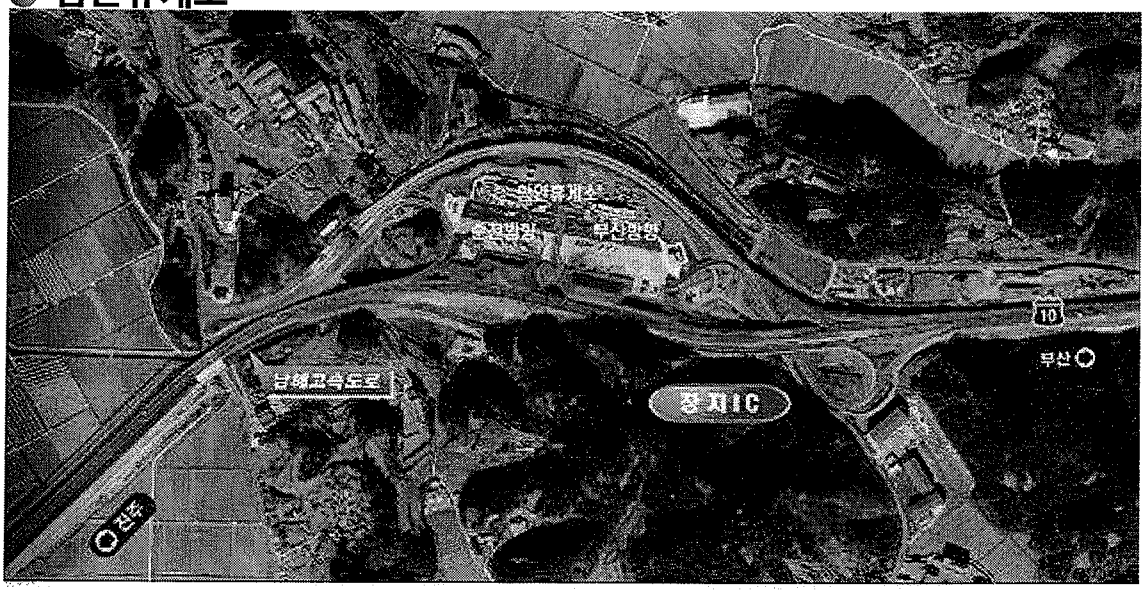

별 첨 #2

청원휴게소 진입로 설치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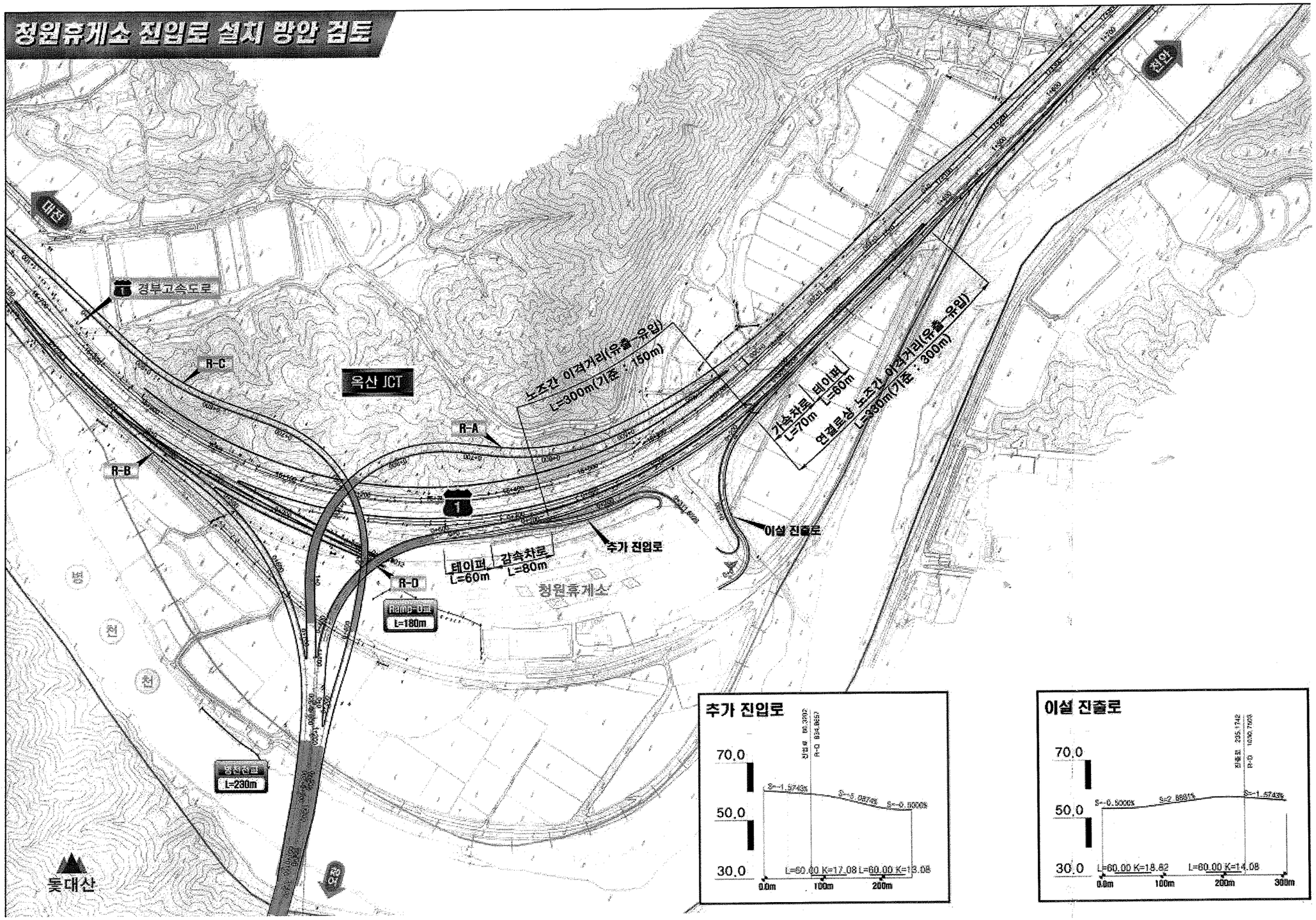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서번호 : 옥산오창 제 2012- 30 호 2012. 8. 21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청원군 건설과 농지계 지반(시추)조사 협조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01.11 실시협약을 체결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3. 본 사업의 과업구간에 포함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지반공학적 자료의 수집을 위한 지반조사 및 확인시추 등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권자인 청원군 건설과 농지계의 협조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반조사계획 1부.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서번호 : 옥산오창 제 2012- 29 호 2012. 8. 21

수 신 :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장

참 조 : 도로차장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반조사 협조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01.11 실시협약을 체결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3. 본 사업의 과업구간에 포함되는 경부고속도로 및 청원휴게소 지역에 대하여 지반공학적 자료의 수집을 위한 지반조사 및 확인시추 등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반조사 계획서 1부.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 반 조 사 계 획

2012. 8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 동서 5축(당진~천안~옥산~오창~영주~울진)의 구축

◦ 안산만권과 대전·청주권간 생산, 물류, 교류 기반조성 확대로 지역간 균형 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

◦ 동서5축의 조기건설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지역의 중추공항(Hub-Airport)으로 육성

1.2 사업의 추진경위

◦ 2004.11. :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GS건설 컨소시엄 → 국토해양부)

◦ 2007.06. : 사업제안서 검토(적격성조사 등) 완료(PIMAC)

◦ 2008.05. :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국토해양부)

◦ 2008.1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대표사:GS건설)

◦ 2012.0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2. : 실시계획 승인 신청(예정)

◦ 2013. : 공사착공 및 금융약정 체결(예정)

1.3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출입시설	JCT 2개소 / IC 1개소
도로구분	지방지역 고속도로(100km/hr)	영업소	서오창본선영업소/서오창IC영업소
연 장	12.1km (왕복 4차로)	공사기간	4년(착공일로부터 48개월)
시설현황	교량 : 29개소/3,115m	주무관청	국토해양부

◦ 계획노선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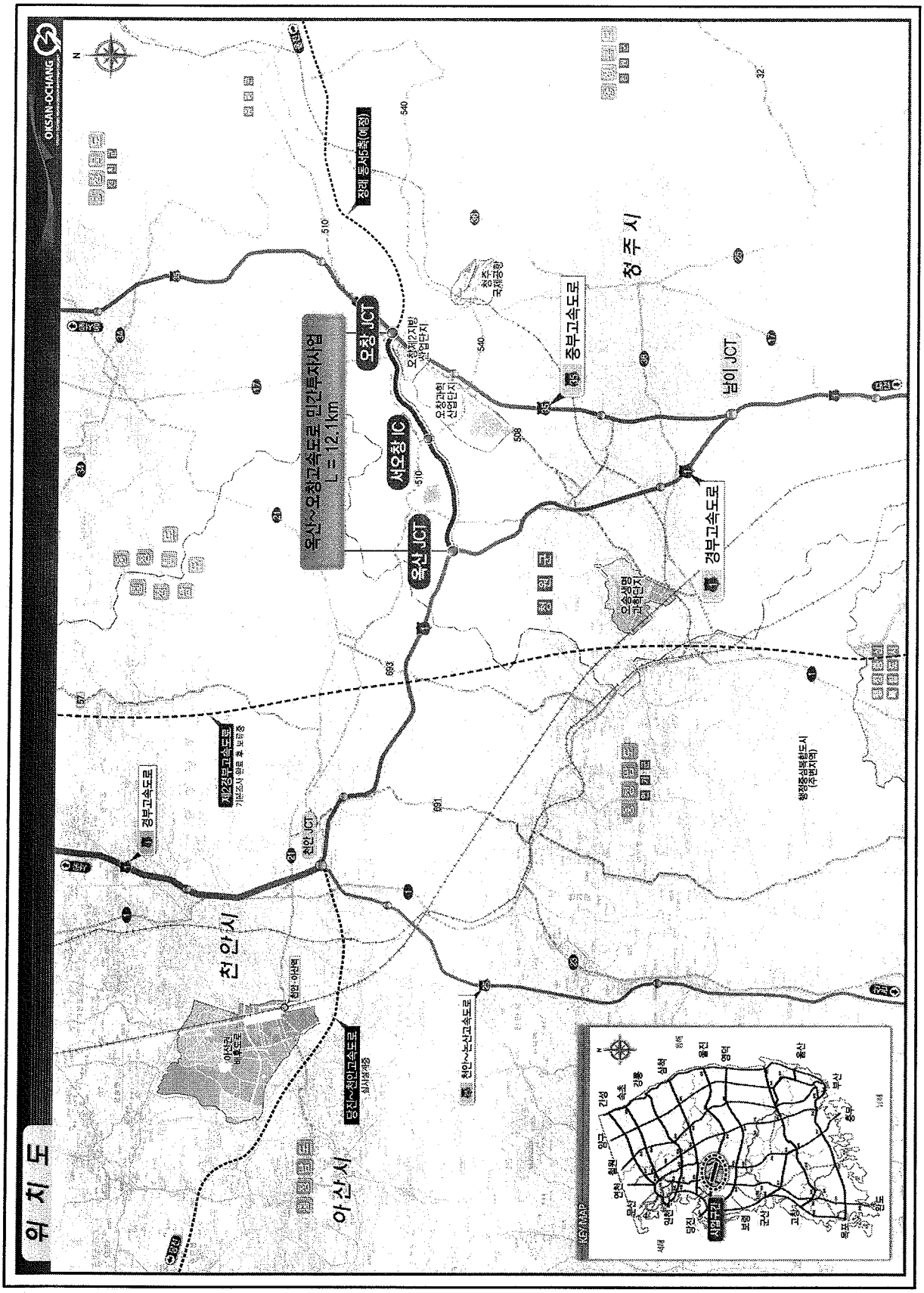
위치도
OKSAN-OCHANG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L = 12.1km
오창 JCT
서오창 IC
옥산 JCT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청주시
남이 JCT
천안시
아산시
경부고속도로
천안 JCT
제2경부고속도로
당진~천안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KEY MAP

제2장 지반조사

2.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지반조사로 사업구간에 분포하는 지반의 상태 및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및 각종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 조사구간

◦ 시　　점 : 충북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

◦ 종　　점 : 충북 청원군 오창읍(중부고속도로)

◦ 조사 연장 : L=12.1 km

2.3 지반조사위치도

◦ 조사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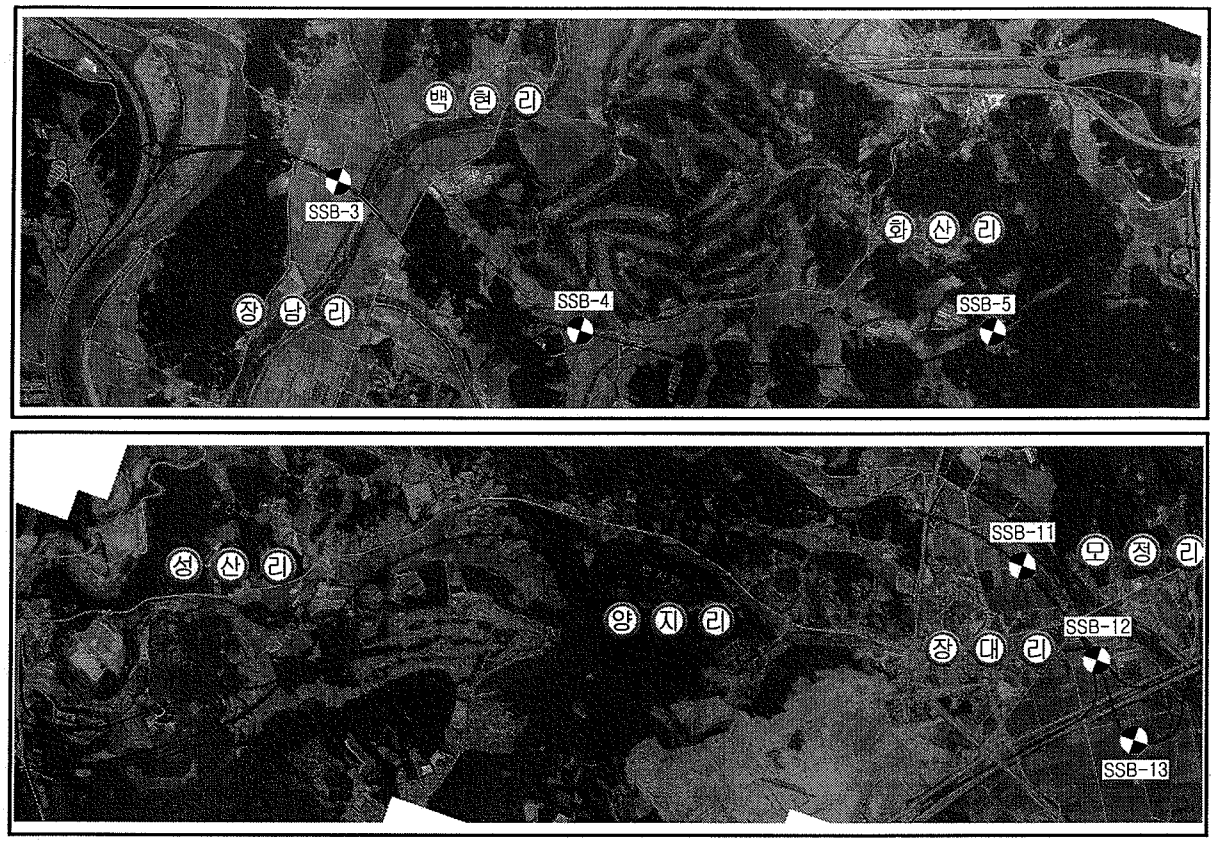

2.4 조사위치세부현황

가. 농수산부 소유지 관리

① SSB-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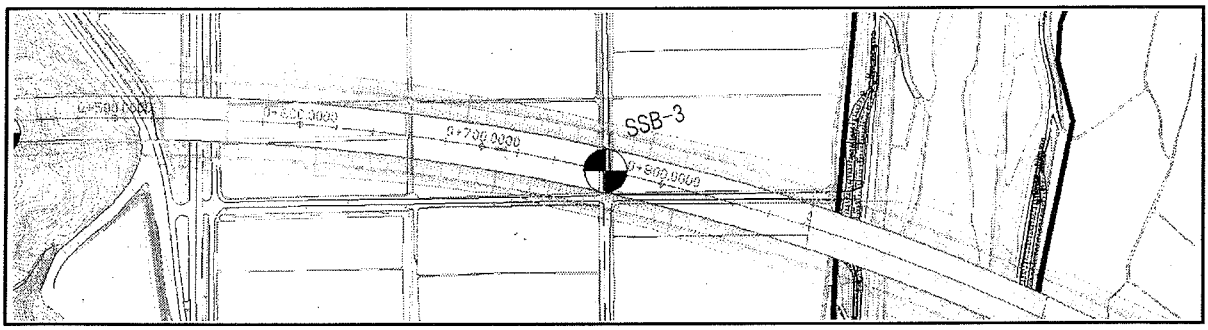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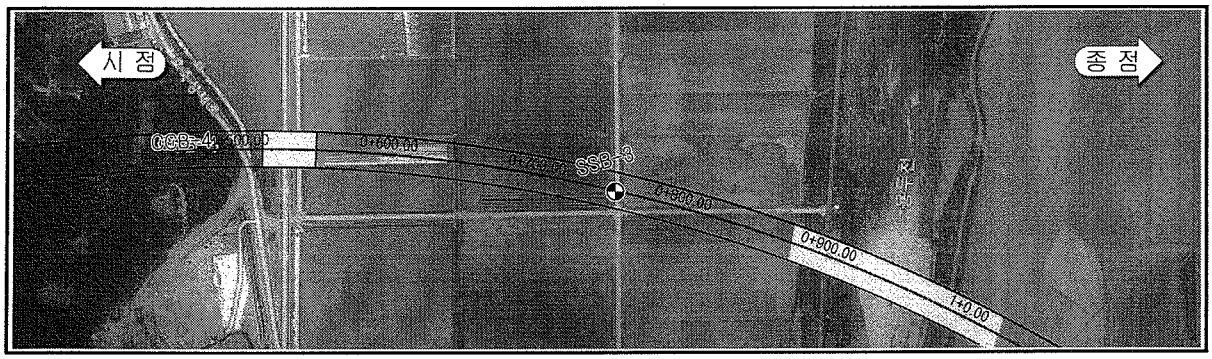

② SSB-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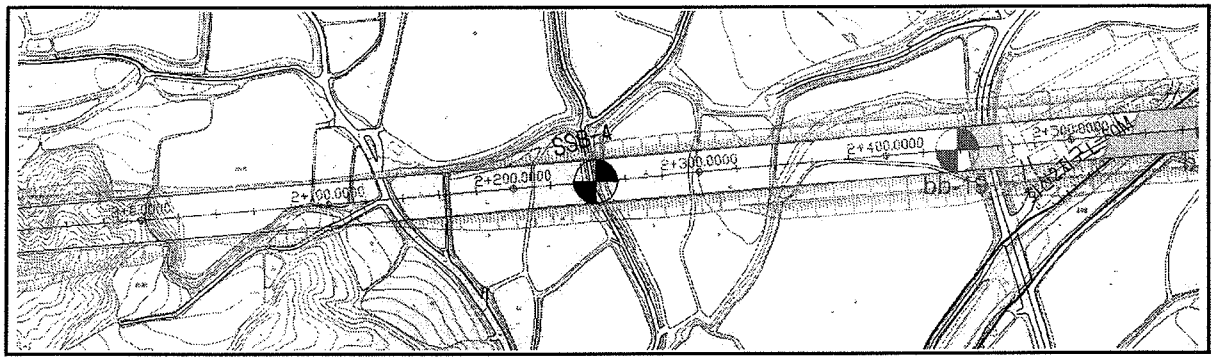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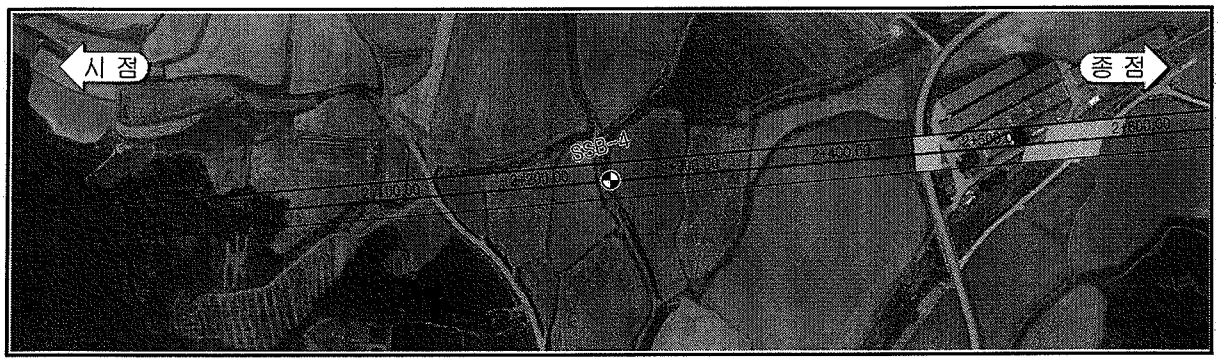

③ SSB-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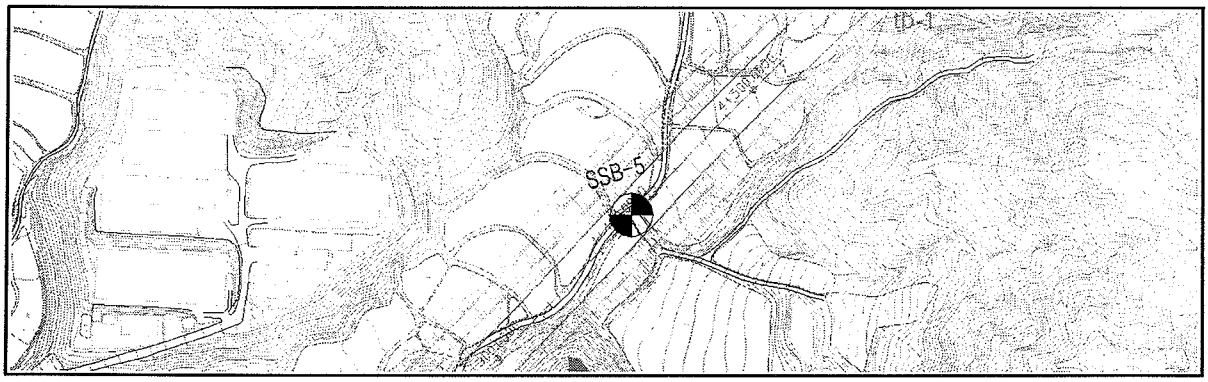



④ SSB-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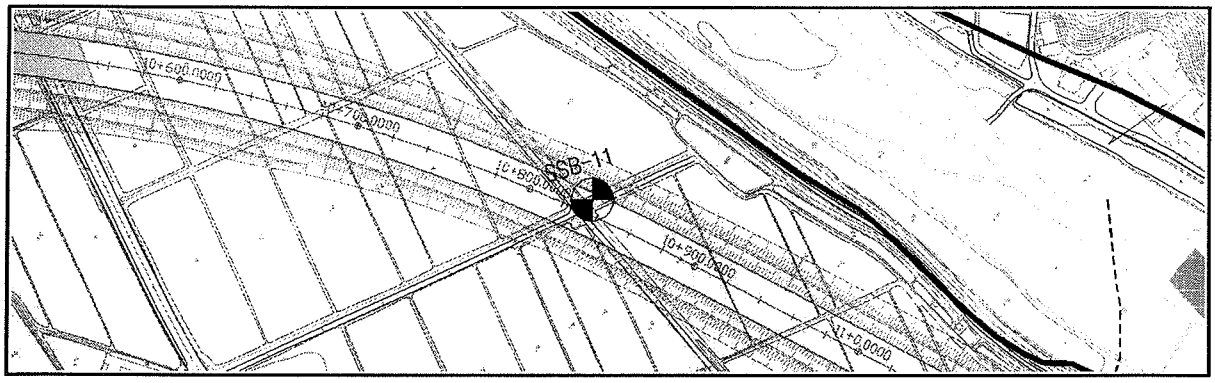



⑤ SSB-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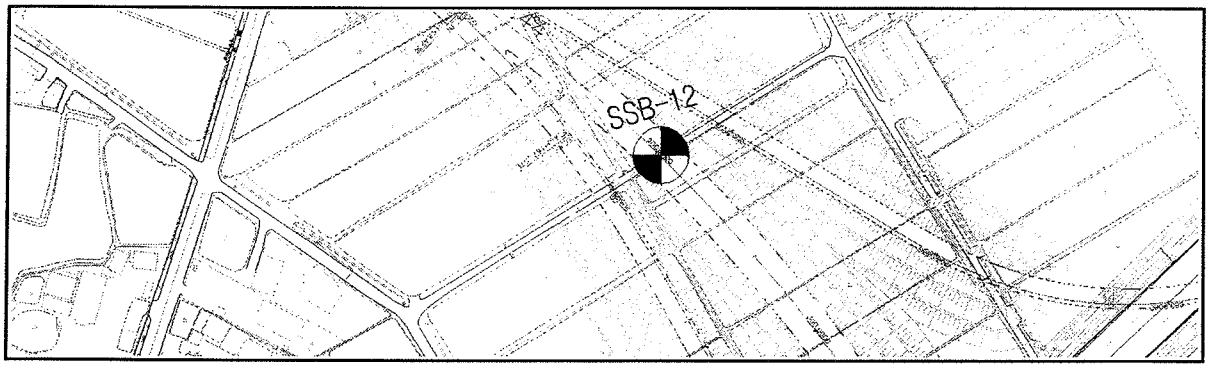



⑥ SSB-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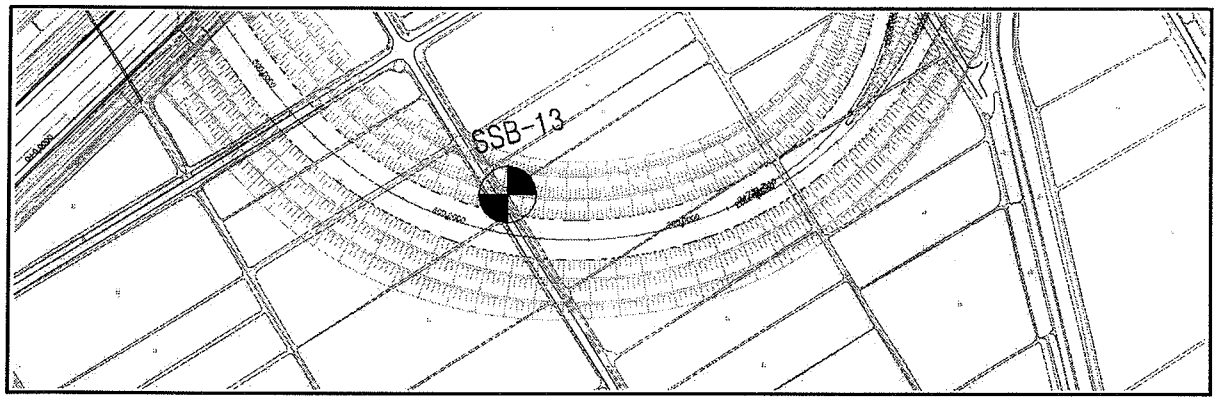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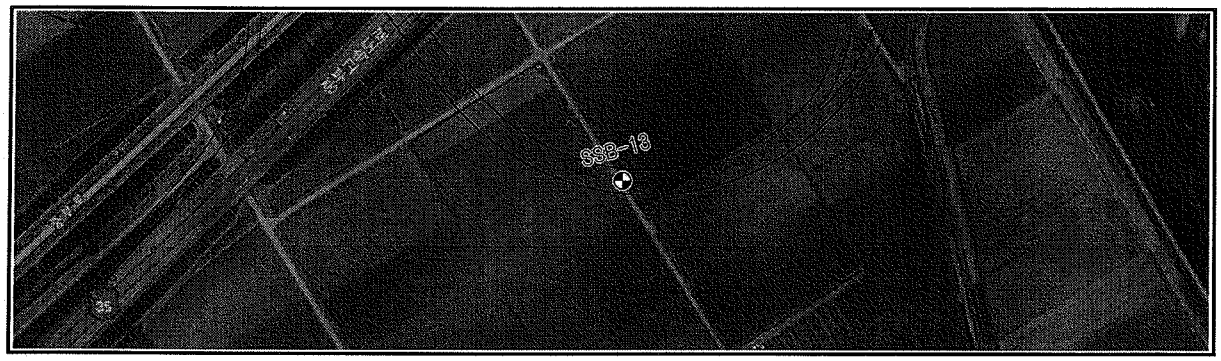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서번호 : 옥산오창 제 2012- 27 호 2012. 8. 7.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의 건(도로공사 및 충청북도교육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3809(2012.06.12)호 "관계기관 협의 의견 알림(한국도로공사, 옥산~오창)"과 관련입니다.

3. 한국도로공사 및 충청북도교육청(청주농업고등학교)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한국도로공사)

2012. 8

국 토 해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table>
<tr><th>관계기관</th><th>협 의 의 견</th><th>조 치 계 획</th><th>비 고</th></tr>
<tr>
<td>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1715,
'12.05.18)</td>
<td>【도로조사팀】

□ 기존 고속도로 교통영향 측면
○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 확장을 고려하여 민자사업 시행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재검토 필요

□ 고속도로 접속 및 실시설계 측면
○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 접속 위치 재검토 필요
- 분기점 평면곡선반경 기준 및 출입시설~휴게소간 이격거리 기준에 위배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휴게소 이용객 혼란·교통 지정체 등이 우려되므로 현 위치 접속은 곤란
- 분기점 설치기준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 국토부」

<table>
<tr><th>구분</th><th>기준</th><th>설계(안)</th></tr>
<tr><td>분기점
평면곡선반경</td><td>700m</td><td>600m</td></tr>
<tr><td>출입시설-휴게소간
이격거리</td><td>2km</td><td>0km</td></tr>
</table>
</td>
<td>

○ 이행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행시 재검토하겠음

○ 수용불가
- 부득이하게 옥산분기점이 경부선 평면곡선반경 R=600m 지점에 설치되나 유출입부는 직선부에 설치하여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였음.
- 출입시설~휴게소간 이격거리는 유입-유출에 따른 엇갈림을 감안 산정하나, 본 계획은 유입-유입 또는 유출-유출 형태로 계획하여 출입시설~휴게소간 이격거리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별첨#1 유사 설치사례 참조)
- 다만 휴게소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본 사업의 연결로 상에서 분·합류 후 경부고속도로에 진·출입 하도록 보완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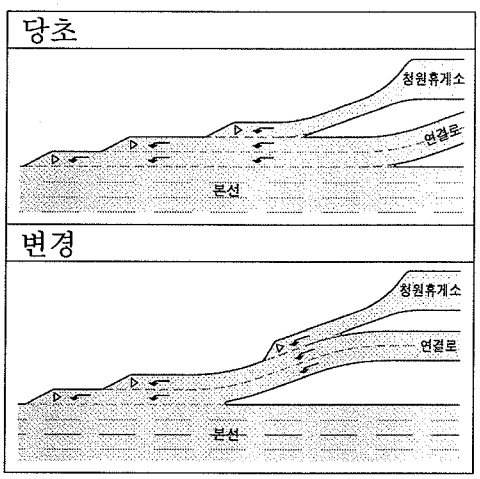

</td>
<td></td>
</tr>
</table>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2)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1715, '12.05.18)	○ 금년 실시설계 착수 예정인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6→8차로)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상세 실시설계 사항은 추후 재협의 필요	○ 이행 - 남이~천안 확장(6→8차로)실시설계를 고려하여 설계반영 및 재협의토록 하겠음.	
	○ 횡단교량 설계는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형하고를 5.0m 이상 유지하고, 설계시 우리공사 경관디자인 심의 및 설계 심의 이행	○ 이행 - 횡단교량 형하고 5.0m 이상유지 및 경관디자인 심의 및 설계 심의를 이행토록 하겠음.	
	□ 영업시설 측면 ○ 국고 및 민자 구간 기본요금 중복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금제 재검토 필요 - 민자 구간 요금제를 이부요금제에서 거리비례 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	○ 협의 후 결정 - 운영 개시전 관계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후 조치하겠음.	
	○ 서오창TG(IC)의 경우 경부선 및 중부선 진·출입 차로를 분리하여 영업시설 설치 필요 - 본선 영업소는 이용차량 경로 확인이 가능하나 IC 영업소는 확인이 불가하여 본선 및 IC 영업소간 통행요금 비등가 발생으로 민원 및 우리공사 요금체계 혼란 등 문제점 예상	○ 수용불가 - 불필요한 통행료 징수시설 추가 설치로 건설비 및 운영비 과다 증가(6차로->10차로 이상) - 진·출입 영업소간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산출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음.	
	○ 서오창TG(본선)는 향후 영업체계 연계방식(경유지 인식) 결정에 따라 추가 검토 필요 ☞향후 기본요금 중복 등 통행료 관련 민원 발생 시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조치	○ 검토후 결정 - 실시계획 수립시 주무관청과 협의 후 결정하겠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3)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1715, '12.05.18)	□ 유지관리 및 기타 측면 ○ 통합유지관리방안은 추후 별도협의 필요	○ 이행 - '11.03월 한국도로공사와 관리운영위·수탁 양해각서 체결하였으며, 운영 개시전 별도 협의하겠음.	
	○ 민자 고속도로 서울방향 이용차량의 기존 청원휴게소 이용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휴게소를 이용가능 하도록 조치	○ 협의 후 결정 - 실시계획 수립시 옥산JCT R-D에서 청원휴게소 진입을 위한 연결로를 추가 반영하겠음. - 다만 곡선 교량구간 차로 변경 등으로 휴게소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어 설계자문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별첨 #2 도면참조) 옥산JCT Ramp-D에서 직결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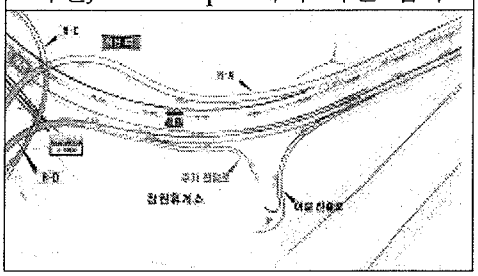	
	○ 고속도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고구간과 연계한 교통정보 연계체계 구축 필요 [연계정보:CCTV영상, VDS(실시간 30초), TCS(실시간)]	○ 이행 - CCTV 11개소, VDS 14개소, TCS 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실시계획 수립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겠음.	
	○ 민자 구간 내 교통량 조사장비(AVC) 설치 필요	○ VDS와 비교 후 결정	
	○ 실시설계 후 접속부 공사 시행은 우리공사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등과 협의 후 시행	○ 이행	

별 첨 #1

추풍령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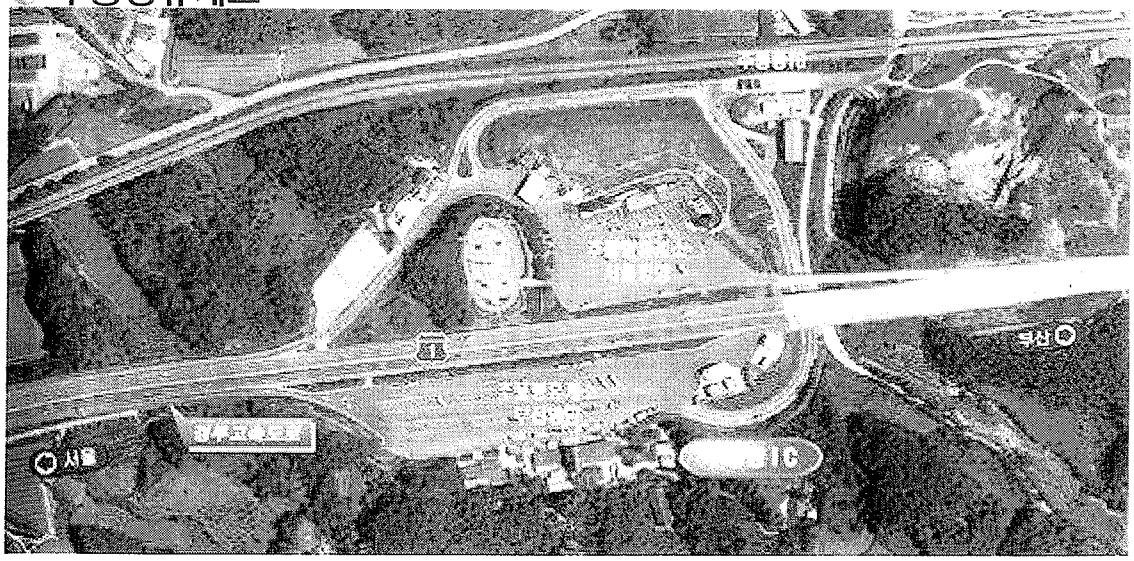

진주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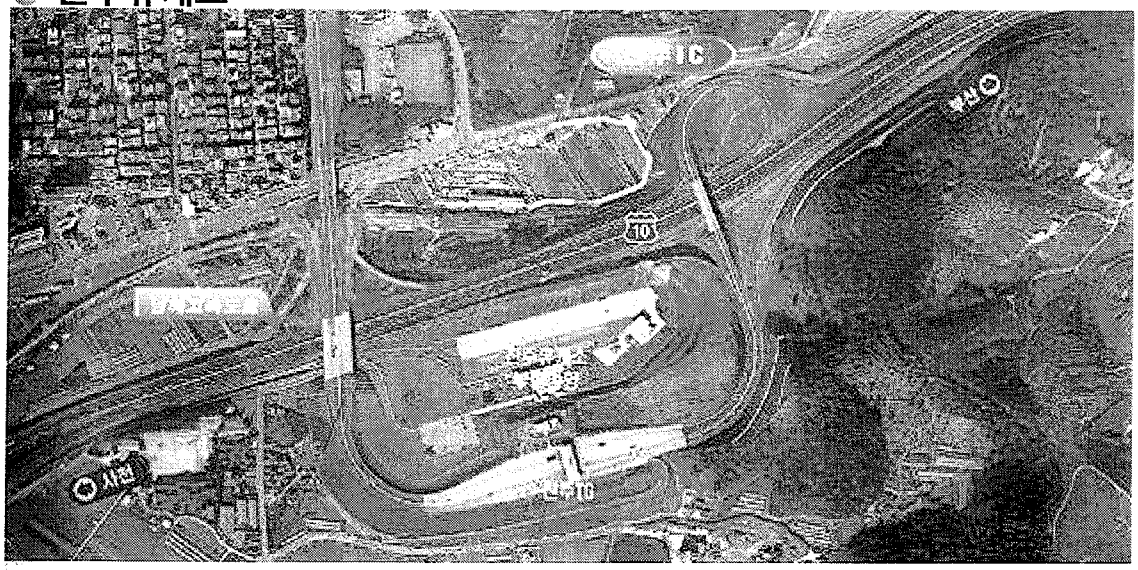

함안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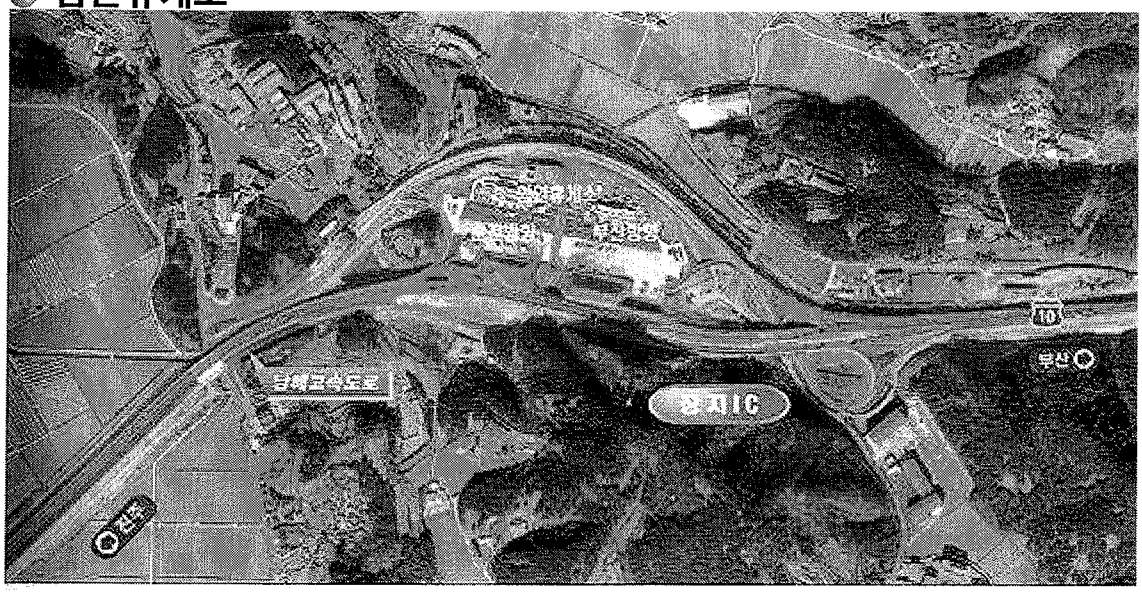

별 첨 #2

청원휴게소 진입로 설치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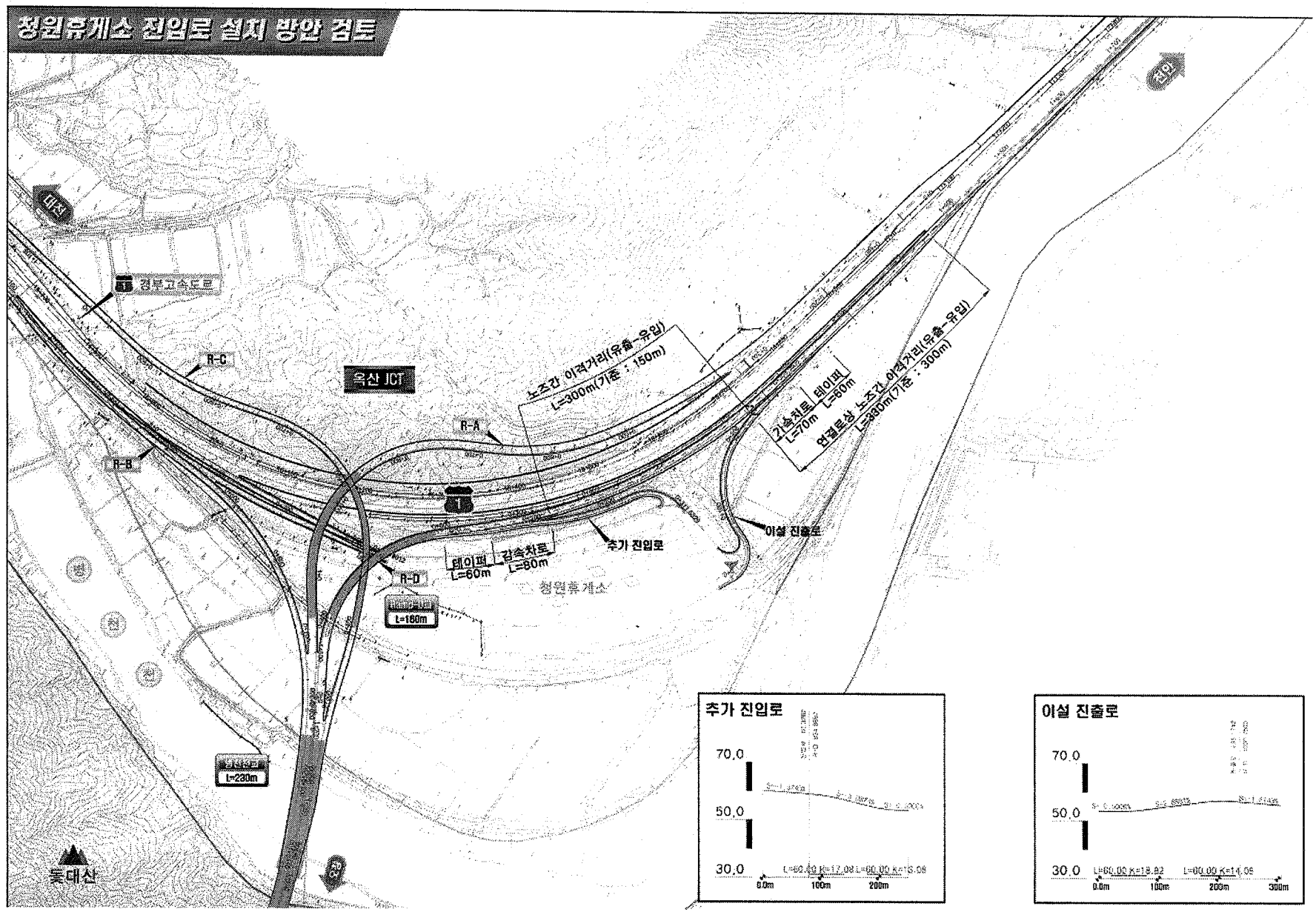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12. 8

국 토 해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4)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교육청 (재무과-12400, '12.05.25)	【관재담당】 ○ 대체 교육시설부지 필요 - 농업계특성화고 교육과정의 공백 없는 교육활동을 위한 대체 교육시설부지 필요 -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교육시설 이전부지 선정의 어려움 - 현대적인 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목초지 330,000㎡,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물 1일 30톤 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 선정의 어려움, 농업계특성화고 교육과정의 공백 없는 교육활동을 위한 대체 교육시설부지 필요 - 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 정보 제공 희망	○ 부지 정보제공 곤란 - 사업관리청과 사업시행자는 교육시설 이전이 가능한 인근지역 부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교육시설에 대한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의 인지 부족으로 정보제공이 불가함.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5)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교육청 (재무과-12400, '12.05.25)	ㅇ 적정한 보상 이행 - 귀 청의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 계획(안)으로 노선 확정시 잔여지로는 부지가 협소하여 교육시설부지(공동 목장 운영 및 농업교육)로 활용할 수 없으며, 특히 공사 및 차량 소음으로 인한 각종 동물들의 성장 및 발육 저하 등으로 농업계 교육연구 시설부지(공동 목장)로 기능을 상실하여 교육 연구시설 부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연구시설(공동 목장 운영) 부지 중 도로 편입 학교용지와 건물, 공작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건을 부함	ㅇ 적법한 보상 - 관련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입되는 토지와 시설에 대하여는 적법한 감정평가와 보상 실시. - 옥산~오창 고속도로 편입 예정 면적은 약 116천㎡이며, 교육시설 15개동과 관정 2개소 등이 포함됨. - 본 사업은 2013년 상반기 착공 및 2017년 개통 예정인 사업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이 2015년 8월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서번호 : 옥산오창 제 2012- 025 호 2012. 7. 16.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청원군 전산자료 발급을 위한 협조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3.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도로구역 및 지형고시 절차 이행을 위하여 청원군내 사업부지에 대한 전산자료(연속지적 및 연속주제도) 발급 의뢰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료제공요청서(청원군 제출용) 1부.

2. 보안각서(청원군 제출용) 1부.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 024 호 2012. 7. 18.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공사과장

제 목 : 청원군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조사 협조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3. 청원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리중인 지하매설물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도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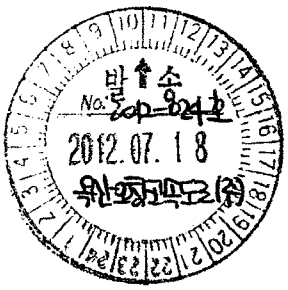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국 토 해 양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민원이송 알림(옥산-오창)

1. 민원인(이종호님)이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노선변경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한 서면민원(접수번호 DAA-1204-004524, '12.4.17)에 대해 동 사업의 사업관리기관인 귀 청에 이송하오니, 민원인의 요구대로 노선 변경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고 민원인에게 회신한 결과를 우리부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은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반복민원으로서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해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원서류 1식. 끝.

국토해양부장관

사무관대우 김대현 기술서기관 전근배 과장 전결 2012. 5. 21. 어명소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1210 접수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광역도시도로과 / http://www.mltm.go.kr

전화번호 02-2110-6449 팩스번호 02-504-9056 /portkdh@mltm.go.kr /비공개(6)

국토해양부 장관께

2012년 05월 15일
수신: 국토해양부 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판문로 47
정부 과천 청사 4동 국토해양부
427-712
제목: 옥산-오창 민자 도로
발신: 이종호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8-7
우편번호 363-881
연락처: 이철한 (발신자의 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20-5 201호
우편번호 560-900
휴대전화: 010-4657-3693

국정을 돌보기에 바쁘신 중에도 회신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2년 04월 12일 민원 회신 (동봉)에서 본인이 제안했던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 중 오창 과학단지에서 오창 읍 구간에 대한 세 가지 후보 노선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한 회신에서 오창 도시계획 및 장래 이용계획과 지역단절 그리고 경제성 (동봉 참조)의 이유로 후보노선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1) 오창 도시계획 및 미래 이용계획의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도 오창에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도시계획이 세워져서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읍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계획이 있고 미래를 위한 설계가 있을진대 이 또한 읍의 계획에 밀려 무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헌법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 사업이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무턱대고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점유해서 개인의 재산을 위협하고 개인의 미래 계획을 망쳐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협상을 하자면 개인과 타협을 하기에 앞서 공공기관 간에 타협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개인과 타협을 하기 전에 말이죠? 더우기 제가 추천한 지역은 국유지역이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국토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인은 거듭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행정을 하시려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만드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공공 기관 만 강건 건재하고 한 가족 국민은 불행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2) 도시계획이 진행된 곳으로 고속도로가 지난다 해서 반드시 흠이 되지는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속도로의 선진국들에서 보면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속도로가 뻗어나 있어서 멋진 도시 경관을 연출해 도시 발전의 표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현대 건물과 현대식 고속도로의 모습이 어우러지는 예술적인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국토를 동서로 횡단 축으로 해서 경부와 중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부와 중부 고속도로의 분기점인 남이 지역은 오창과 옥산에서 동일하게 각각 약 12km씩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속도로 건설은 큰 의미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토 동서횡단 축을 남이지역으로 통과하게 해서 남이 지역에서 국토 어느 방향으로든지 갈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부 고속도로의 남이 천안 간의 3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할 것입니다. 이미 그 지점은 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부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오창 지역을 위하여 옥산의 경부 고속도로와 연결한다면 오히려 제한속도 80km/hr.인 고속화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 문제, 경제성, 지질학적인 문제를 거절의 이유로 들었지만 현 설계팀이 주장한 그 어떤 이유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환경성의 문제는 오히려 개인 임야를 희손시키는 것이 더 피해가 클 것입니다. 경제성은 국가기관 간에 잘 협력하시면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남이 지역에서 운전자들이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선택하게 한다면 쓸데없는 고속도로 구간의 건설로 재정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한 노선 지역이 산기슭으로 지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질학적으로 단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 천 km 고속도로를 건설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지질학적인 문제를 극복 못할 정도로 기술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기에 지질학적인 이유는 바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제안을 습관적으로 배척하지 마시고 재고하시기 바라며 더욱이 국토 동서 횡단 고속도로가 남이지역에서 사통팔달하게 하시어 동서 축 건설에 대한 전면 새로운 계획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대전청 도로계획과 설계팀 김희룡 님께서 2012년 4월 26일 전화(042-670-3521)로 "만나서 설명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했던 답변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격무에 노고가 크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원했던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이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저의 개인에 지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업이기에 조금도 협조할 수 없고 그래서 노선 변경을 제안했던 것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봉: 민원회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3977 (2012. 4. 27.)
추신: 발신자 이종호의 자 이철한이 본 서류를 관리하오니 회신은 이철한의 주소로 발송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철환 귀하 (우560-2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0-5, 201

수신 참조)

(경유)

제목 민원회신(목산-오창 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 이철환)

이철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주신 경으로 이송된 목산-오창 고속도로 선형변경 요구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고속도로 계획노선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 등 불편에 따라 원주구간의 선형 변경을 요구하면서 우회 노선대를 제시하신데 대하여는

본지어관상 선형변경의 어려움과 향후 세부설계 등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회노선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해 드린바 있습니다.

목산-오창 고속도로는 국토간선도로망계획 중 동서축의 일부로써 경부고속도로(목산)와 중부고속도로(오창)를 연결하는 고규격 도로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현재의 계획 선형으로 기초설계를 수행하였고, 향후 세부 설계 단계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초설계 당시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우회노선대 주변은 '오창 제2 지방산업단지 계획', '충북대학교 이전부지', '오창 도시계획' 등 광범 도시이용계획과

자연환경 등 환경영향, 경제성 등 요소가 선형계획 상 다소 불리한 계곡부를

[illegible]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후보노선대의 주변현황 및 장래 토지이용계획, 기술적 측면 등 제반내용을 사업시행자(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로 하여금 고객님을 방문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담당 김희환, 042-670-[illegible])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지방국토관[redacted]

[illegible] 김희환 [illegible] 김희환

[illegible]

시행 도로계획과-[illegible] (2012. 4. 27.) 접수

우 300-723 대전 동구 [illegible] / http://[illegible]

[illegible] 042-670-[illegible] [illegible] 042-670-[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 23 호 2012. 5. 15.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참 조 : 도로계획과장

제 목 :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4147(2012.05.03)호 "노선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의견 알림(옥산~오창 고속도로)"과 관련입니다.

3. 2012년 5월 15일 현재까지 회신받은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2012. 5

국 토 해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기관 협의의견 회신현황

관 계 기 관		회신	담 당 자	비고
1	국 토 해 양 부	○ (4/17)	산업입지정책과/ 김남철 주무관 02-2110-8181	
2	국 방 부		국방부장관	
		○ (5/1)	37사단 작전처/ 한현덕대위 043-835-6304/010-5076-1105	
3	환 경 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 최동호 02-2110-6704	
4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4/27)	농지과/ 안재록 사무관 02-500-1629	
5	산 림 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원동복 주사 042-481-4128	
		○ (4/27)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백운형 주무관 043-540-7051	
6	문 화 재 청	○ (4/26)	발굴제도과/ 김동대 사무관 042-481-4957	
7	지 식 경 제 부	○ (4/24)	광업등록사무소/ 황명주 주무관 02-2110-4930	
8	충 청 북 도	○ (4/27)	균형개발과/ 최민규 043-220-4131	
9	청 원 군	○ (5/08)	건설과/박인규 043-251-3501 박상갑 043-251-3503	
10	한 국 도 로 공 사	○ (4/23)	기획조정실 도로조사팀/ 전준태 차장 02-2230-4286	중간 회신
			천안지사/ 박경린 과장 041-590-0332	
			진천지사/ 안영찬 과장 043-531-3342	
			충청본부 도로팀/ 김기우 과장 042-630-7262	추가 협의
11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충청지역본부 개발사업부/ 이동수 과장 043-290-3536	
12	한 국 농 어 촌 공 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4/24)	청원지사 지역개발팀/ 김계범 과장 043-290-0531	

관계기관		회신	담당자	비고
13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사장	
			충북본부장	
		○ (4/18)	대전충남본부 시설처/ 조창목 차장 042-259-2348	추가 협의
14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 녹색사업전략처/ 고병찬 부장 042-607-3142	
15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사장	
		○ (5/03)	충북지역본부 배전운영팀/ 김석재 010-3477-2415	
		○ (4/27)	충북지역본부 송전운영팀/ 임명규 사원 043-251-2542	
			서청주지사 배전운영팀/ 장명봉 043-230-8385	
1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충청지역본부 통합운영팀/ 이상석 대리 043-230-4307	
17	한국가스공사	○ (4/25)	충청지사 안전환경팀/ 고일주 과장 042-229-3562	
18	대한송유관공사	○ (4/24)	충청지사 시설부/ 정관희 대리 041-565-0201	
19	충북개발공사	○ (4/20)	개발사업부/ 임노열 부장, 엄재국 차장 043-210-9174	
20	청주농업고등학교공동실습소		행정실/ 유재선 실장 043-256-4901/010-5206-8439	
21	주식회사 케이티	○ (4/27)	서청주지사 가경지점/ 서항석 043-231-0060	
22	주식회사 LG유플러스	○ (4/26)	서부운영담당 청주네트워크팀장/ 박국진 부장 010-8080-6780	
23	SK텔레콤		중부네트워크본부 엑세스2팀/ 김춘식 과장 010-5468-0003	
24	KTF		충청무선네트워크 운용단/ 조재호 매니저 010-3451-6528	
25	세종텔레콤		중부운영팀/ 김대기 대리 010-9400-1550	
26	SK브로드밴드		청주지사 중부운영팀/이경민 팀장 043-904-2400/010-7179-8433	
27	충청에너지서비스		안전공급2팀/ 장경순 과장 043-261-4551/010-5465-4117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981, '12.04.17)	【산업입지정책과】 ○ 노선계획에 대한 산업단지 관련 -오창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 계획에 일부 저촉될 것으로 예상되니 충청북도와 별도 협의 필요.	○ 이행	
국방부	【본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제37보병사단 (작전참모처-917, '12.05.01)	【작전참모처】 ○ 공사계획 확정시 재협의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며 군사기지 및 군시설은 없으나 고속도로 신설 후 방호대책으로 목진지 구축이 요망되므로, 공사계획 변경 및 확정시 재협의가 필요함.	○ 이행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협의 요청하겠음	
환경부	【본부-국토환경평가과】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2075, '12.04.27)	【농지과】 ○ 농지편입 및 자투리 농지발생 최소화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설계노선에 대하여는 계획안으로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다만, 농지를 성토로 통과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농로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용수간·지선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등을 감안하여 전체 도로노선의 높이를 계획하고 농지편입면적 및 자투리 농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야 함.	○ 수용검토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2)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산림청	【산림관리과】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2473, '12.04.27)	【보은국유림관리소】 ○ 산림청 소관 국유림 편입여부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설계노선계획(안)에 대한 검토 요청 건에 대하여는 상세도면이 첨부되지 않아 산림청 소관국유림이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검토의견 제시가 지난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행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협의 요청하겠음	
문화재청 (발굴제도과-4586, '12.04.26)	【발굴제도과】 ○ 관련법령 적용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행 시 검토노선안에 대해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현 시점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곤란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당 지역 문화유적분포지도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 문화재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개발과 문화재보존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선안을 검토하도록 함. ○ 관련법령 적용 -사업지역(확정 노선안)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청에 동시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문화재지표조사는 당해 사업지역과 동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표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도 조사면적에 포함.	○ 이행 -문화재지표조사 수행 예정 ○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3)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문화재청 (발굴제도과-4586, '12.04.26)	【발굴제도과】 ○ 관련법령 적용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74조(준용규정)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우선 이행하여야 함. ○ 관련법령 적용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 행정기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당해 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 보호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이행 ○ 이행	
지식경제부 (등록팀-1168, '12.04.24)	【광업등록사무소】 ○ 관련법령 적용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계획」 지역(해당광업지적:신지적:병천 26,27,36,46,47,57,58,67,68,78,88,97,98호/구지적:병천26,27,36,46,47,57,58,67,68,78,88,97,98호)에는 위 도로사업 시행자인 (주)삼보기술단에서 방문하여 광업권 설정여부를 확인한바, 2012.04.23. 현재 광업권 설정등록 및 출원신청이 없음을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4)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 '12.04.27)	【균형개발과】 ㅇ 노선계획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일부 구간이 오창읍 소재지 도시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청원군수와 협의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도시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ㅇ 이행	
	ㅇ 도시관리계획 저촉여부 -노선계획(안)이 입안절차가 진행중인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청원군수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ㅇ 이행	
	ㅇ 관련법령 적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받으려면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실시설계 승인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도로, 완충녹지, 교통광장에 대하여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 처리되오니 그 이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인 청원군수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람.	ㅇ 이행	
	【도로과】 ㅇ 관련 법령적용 -지방도 540호선 서오창IC 진출입로 접속구간은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도로 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하므로 추후 세부도면으로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ㅇ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5)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 '12.04.27)	【도로과】		
	ㅇ 장래 도로확포장 여유부지 고려 -지방도 통과하는 용두천교, 상산1교, 산수교 구간은 향후 도로 확포장을 고려하여 상·하행 1차로 이상의 여유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함.	ㅇ 수용검토	
	ㅇ 기존도로 활용 -기업 활동이나 영농을 위해 이용하던 기존도로 동선이 본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한계 및 2차로 이상 폭을 확보하여야 함.	ㅇ 수용검토 -영농 및 주민이용에 지장 없도록 기존도로 시설한계 및 폭원을 검토 후 확보하겠음.	
	ㅇ 민원발생 예방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ㅇ 적극반영	
	【교통물류과】 -별도 의견 없음.		
	【치수방재과】		
	ㅇ 하천설계기준 적용 -지방하천 성암천(충청북도 제1994-12호'94.01.14), 병천(충청북도 제1993-19호'93.01.29), 용두천(충청북도 제2003-121호'03.09.19) 하천기본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횡단하는 구조물(교량 등)은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	ㅇ 이행	
	ㅇ 하천편입 관련 -도로 폭 확장으로 인한 하천편입은 불가하며, 부득이 편입시는 하폭 확장 등 대체시설 강구.(하폭 확장시는 재협의)	ㅇ 수용검토 -부득이 편입시는 협의절차를 수행하겠음.	
	ㅇ 소하천 관련 -소하천(화산천, 성산천)은 관리청인 청원군과 사전 협의.	ㅇ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6)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 '12.04.27)	【기업유치 지원과】 ㅇ 추진계획 -산업단지 추진계획과 저촉사항 없음. 【농업정책과】 ㅇ 관련법령 적용 -사업예정지에 농지 편입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별표1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전용협의 요청하기 바람. ㅇ 농지편입 및 자투리 농지발생 최소화 -사업시행시 공사에 따른 경작지 분리 및 자투리 농지 발생, 우량농지 잠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인 타당성안 검토. ㅇ 농업경영 피해방지계획 -사업시행시 토사유출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산림녹지과】 ㅇ 관련법령 적용 -사업구역내 포함되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산지전용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함.(한국산지보전협회)	 ㅇ 이행 ㅇ 이행 ㅇ 이행 ㅇ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7)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 '12.04.27)	【산림녹지과】 ㅇ 야생 동식물 보호 -개체 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ㅇ 비탈면훼손 최소화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할 것. ㅇ 장대비탈면 저감방안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교량 설치 등 저감방안 마련 할 것. ㅇ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ㅇ 주변 산림 단절 방지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ㅇ 관련법령 적용 -산림청 소관 국유림 편입 시에는 보은국유림관리소와 협의.	ㅇ 이행 ㅇ 이행 ㅇ 이행 ㅇ 이행 ㅇ 이행 ㅇ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8)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 '12.04.27)	【산림녹지과】 ○ 관련법령 적용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산지전용 협의권자가 50만㎡ 미만(보전산지 3만㎡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 50만㎡~200만㎡(보전산지 3만㎡~100만㎡)인 경우 도지사, 200만㎡ 이상(보전산지 100만㎡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임.	○ 이행	
	○ 관련법령 적용 -기타 청원군 산림부서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도 설계 및 산지전용 협의 신청시 반영하고, 기타 타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의하여 절차 이행.	○ 이행	
	【문화예술과】 ○ 관련법령 적용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주변에 지정문화재는 없음.	○ 이행	
	○ 관련법령 적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의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으로 공사 전 전문기관의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이행	
	○ 관련법령 적용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굴착 등 공사시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이행	
	【관광항공과】 -의견 없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9)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 '12.04.27)	【환경정책과】 ○ 관련법령 적용 -본 사업은「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 하여야 하며,「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1] 5. 도로의 건설사업에 해당되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관할 지방환경청장(금강유역환경청장)과 하여야 함.	○ 부분이행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에 의에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나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2 제1호 가목(7)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의한 민간부문제안사업은 '05.9.8 시행령 개정당시 부칙 제2항에 '05.11.1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본 사업 최초제안 : '04.11 -본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1] 5. 도로의 건설사업에 해당되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관할 지방환경청장(금강유역환경청장)과 이행하겠음	
	○ 관련법령 적용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인 영향을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환경부 고시 제2008-180호, 2008. 12.08)" 및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내용에는 대안의 제시 및 대안에 대한 환경적인 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개발이 되도록 하는 사전검토제도임. -따라서, 옥산~오창 간 고속도로 노선계획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함.	○ 미반영 -해당사항 없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0)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12359, '12.05.08)	【건설과】 ㅇ 농어촌도로 횡단 -사업구간과 교차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별도 협의할 것.	ㅇ 이행	
	ㅇ 부체도로 및 농경지 배수처리 -실시설계시 기존도로 편입부 부체도로 설치 및 노면수 처리시 농경지로의 배수처리를 지양할 것.	ㅇ 이행	
	ㅇ 관련 법령적용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전환(또는 무상귀속)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협의할 것.	ㅇ 이행	
	ㅇ 노면수 처리 -고속도로 노면수 처리시 인근 농경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ㅇ 이행	
	【도시과】 ㅇ 도시계획도로 반영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량 등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ㅇ 이행	
	ㅇ 시설물 저촉 -도시계획시설을 훼손시 원상복구할 것 -버스승강장 및 가로(보안)등 관련 시설물 저촉 시 별도 협의할 것.	ㅇ 이행	
	ㅇ 관련 법령적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계획(안) 협의사항은 검토결과 동춘산업에서 제안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추진 부지와 저촉됨으로 해당 민원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며, 테크노빌 골프장과 저촉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교통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노선을 결정함이 타당함.	ㅇ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1)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12359, '12.05.08)	【도시과】 o 관련 법령적용 -향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자할 경우 미리 군관리계획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및 청원군 도시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o 이행	
	【농정과】 o 관련법령 적용 -농지법 제34조및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의거 농지전용협의(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 할 것.	o 이행	
	【문화체육과】 o 관련법령 적용 -사업신청지 주변에 지정문화재가 없어 문화재 보호법상 저촉사항 없음.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 건설공사는 매장 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6조,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전에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보존대책을 통보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함.	o 이행	
	o 관련법령 적용 -사업시행중 미확인된 매장문화재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 신고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o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2)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12359, '12.05.08)	【재난안전과】 o 재난담당:사전재해 영향검토 시행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축 및 개축에 한함)시 그 연장이 2km이상일 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 대상임.	o 이행	
	o 하천담당:하천 횡단 계획 - 하천 및 소하천에 구조물등을 설치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유수단면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기정비된 하천 및 소하천구간은 기존 시설물이 손상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 구조물 설치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터널식 및 고가차도 등을 고려하여야하고 보상협의시 기득하천 점용허가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o 이행	
	o 하천담당:하천 정비 계획 -하천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충청북도와 별도 협의 할 것. -실시설계시 재협의 할 것.	o 이행	
	【산림과】 o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보전산지 면적이 3ha이상이 사업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 허가 사항임. -임야가 포함될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항임. -가급적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임야에 대하여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득할 것. -사업구역내에 있는 이식가능한 유용 수목에 대하여는 전량 이식 조치하여야 함.	o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3)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12359, '12.05.08)	【산림과】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부지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편입시 관련 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함.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점용사유가 불가피하여야 함.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구조는 지상의 경우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의 경우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함.	○ 이행	
	○ 녹지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함.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녹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함.	○ 이행	
	【환경과】 ○ 관련법령 적용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할 때 사전환경서검토 협의를 이행하여야 함. -도로구역의 결정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여야 함.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공사시행 허가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임. -공사시 장비(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를 5일이상 사용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	○ 부분이행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에 의에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나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2 제1호 가목(7)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의한 민간부문제안사업은 '05.9.8 시행령 개정당시 부칙 제2항에 '05.11.1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본 사업 최초제안 : '04.11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4)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12359, '12.05.08)	【환경과】 o 관련법령 적용 -입목폐기물 5톤이상 발생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임. -건설폐기물 5톤이상 발생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수도 급수구역인 경우 인입사용하고 비급수구역인 경우 지하수 개발 이용시 신고해야함. -공사구간중 사용종료 된 지하수가 있는 경우 폐공 및 종료 신고하여야 함. -개발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상 미호B 단위유역에 해당되며 2015년까지 준공 예정인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 제2단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2016년 이후 준공 예정인 경우 3단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 o 오염물질배출 부하량 -우리군은 자연오염원증가(인구증가, 토지대지화 등)에 의한 배출부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오염물질배출 부하량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이 어려워짐으로 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자연형 및 장치형 비점저감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계획 수립하여 재협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으로 할당해야하는 부하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청원군 일대의 기존 비점오염원 발생원도 병행하여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 주기 바람. 【경제투자과】 -저촉사항 없음.	o 부분이행 -본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1] 5. 도로의 건설사업에 해당되며,「도로법」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시행의 허가 전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이행하겠음 -본 사업은 2014년 준공 예정으로 제2단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o 수용검토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하량의 발생을 최소화토록 실시설계시 자연형 및 장치형 비점 저감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수질오염총량 협의시 계획노선 인근의 기존 비점오염원을 병행하여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겠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5)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12359, '12.05.08)	【하수도사업소】 ○ 하수도시설 저촉 협의 -오창JCT 부근 노선계획도가 실제현황과 불일치함에 따라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산수교~오창JCT 구간은 하수관로 매설지역으로 실시설계 시 간섭되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사업소와 사전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상수도사업소】 ○ 송배수관로 저촉 협의 -기매설한관로 및 향후 급수를 위한 송배수관로에 대하여 별도 협의 할 것.	○ 이행 ○ 이행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1434, '12.04.23)	【본사-기획조정실】 ○ 중간회신 -노선계획(안)이 4.20 우리공사에 제출된 점과 옥산JCT가 당초 협의한 위치와 다르게 선형이 불량한 경부고속도로 청원휴게소에 접속됨에 따라 교통안전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요청한 4.27 회신이 어려움을 통보함.	○ 이행 -협의의견 회신시 추가 조치계획을 이행하겠음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6)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청지역본부-개발사업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농어촌공사(청원지역-1417, '12.04.24)	【청원지사-지역개발팀】 ○ 오창JCT 중부고속도로 하부램프 -용배수로 농로의 단절이 없도록 연결하여야 합니다. -편입되는 용·배수로의 대체시설은 도로 측구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도로의 우수가 용·배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공전 세부계획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이행	
한국철도공사	【본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철도공사(시설처-3504, '12.04.18)	【대전충남본부-시설처】 -실시설계 노선계획 도로건설에 따른 철도시설물과의 저촉은 없음.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전력공사	【본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7)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전력공사 (충북본(전)84 106-781, '12.05.03)	【충북지역본부-배전운영팀】 ○ 배선전로(전주) 저촉협의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으로 사업노선(오창읍) 건설에 따른 시설물(전주) 저촉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당사 배선전로(전주) 이설이 수반되므로 공구별 이설이 필요한 시기로부터 3개월 전에 이설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선전로(전주) 이설공사비는 고속도로 건설 시행주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	
한국전력공사 (충북본(운)76 208-760, '12.04.27)	【충북지역본부-송전운영팀】 ○ 송전철탑 협의 -지장설비 및 도로계획구간 1) 354kV청원-신진천 송전선로 54~55호선 [도로계획 3+100지점 통과]. 2) 154kV신진천-오창 송전선로 36~38호선 [도로계획 8+700지점 지장]. -도로 구간별 지장내용 1) 3+100구간 : 철탑이 도로공사 절토지역에 근접하여 철탑이설 또는 고속도로 노선조정이 필요함. 2) 8+700구간 : 철탑1기가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철탑이설 필요. -기타 1) 철탑이설은 우리회사에서 시공하거나 요청자께서 시공하실 수 있으며, 우리 회사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예산배정 등 업무처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이설 전년도 9월까지는 이설요청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행	
한국전력공사	【서청주지사 배전운영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8)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 수자원공사	【본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 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통합운영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 본부-2593, '12.04.25)	【충청지사-안전환경팀】 ○ 천연가스 배관 매설 및 저촉여부 -해당사항 없음.		
대한 송유관공사 (충청지사 2012-756, '12.04.24)	【충청지사-시설부】 ○ 고압송유관 매설구간 노선협의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구간에 위험시설인 고압송유관(16,18", 복선)이 매설되어 있는바, 송유관 안전을 위하여 당사와 협의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	
충북개발공사 (개발사업부- 304, 12.04.20)	【개발사업부】 -의견 없음.		
청주농업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행정실】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주식회사 케이티 (충북마 2012-1252, '12.04.27)	【서청주지사】 ○ 지하매설물 노선협의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구간에 KT광, 동케이블이 시설되어 있어 공사 착공후 공동 현장실사가 필요하며, 부득이 KT선로시설 지장이전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이설 및 철거공사비 부담됨을 알려드리오며, 위 노선은 2개의 전화국을 경유하는 곳이라 KT서청주자사 가경전화국, KT청주지사 상당전화국 시설부서와 협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9)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청주NW팀 1204-0283, '12.04.26)	【서부운영담당】 ○ 관련법령 적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관련으로 당사 검토의견 및 사업구간내에 운용중인 당사 통신시설 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시설내역 : 사업 구간내 광케이블 11개소 저촉 2)요청사항 : 향후 지장물 조사시 공동실사 요청 할 것 3)통신설비 이설비용 : 현장 실사 및 설계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자 부당으로 시행 4)이설비용 원인자부담관련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설비의 이전 등) - 정보화촉진기본법 32조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 이행	
SK텔레콤	【중부네트워크본부 엑세스2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KTF	【충청무선네트워크 운용단】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세종텔레콤	【중부운영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SK 브로드밴드	【청주지사 중부운영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충청 에너지 서비스	【안정공급2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서번호 : 옥산오창 제 2012- 22 호 2012. 5. 15.

수 신 : 한국도로공사

참 조 : 천안지사, 진천지사

제 목 : **측량 관련 협조 요청의 건.**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와 실시협약을 체결(2012.01.11)하고 실시계획 수립중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입니다.

3. 본 사업과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청원휴게소 부근과 중부고속도로 성암천 부근을 붙임과 같이 측량하고자 고속도로 출입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오니 검토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측량계획서 1부.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측 량 계 획 서

2012. 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1. 사 업 현 황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도로구분 : 지방지역 고속도로(100km/hr)
- 과업연장 : 12.1km(왕복 4차로)
- 출입시설 : JCT 2개소 / IC 1개소

○ 추 진 경 위

- 2004. 11. :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8. 1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12. 0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2. 12. : 실시계획 승인신청(예정)
- 2013. 01. : 공사착공(예정)

2. 측 량 개 요

○ 목 적

- 옥산JCT(경부고속도로) 및 오창JCT(중부고속도로) 접속부 세부 설계측량 자료 취득

○ 측량위치

- 경부고속도로 청원휴게소 부근(측량위치도 #1)
- 중부고속도로 성암천 부근(측량위치도 #2)

○ 측량내용

- 고속도로 갓길주변에 대한 인공구조물, 자연배수로, 옹벽 등에 대한 측량 및 조사(고속도로 갓길 출입, 교통차단 불필요)
- 갓길주변 측량을 위해 안전장비 자체 구비(안전봉, 안전조끼, 안전화 등)
- 고속도로 갓길 출입 시 고속도로상황실에 선보고후 출입

○ 측량기간 : 2012. 05. 16 ~ 2012. 05. 25

○ 담 당 자 : 안창혁 과장(010-2626-5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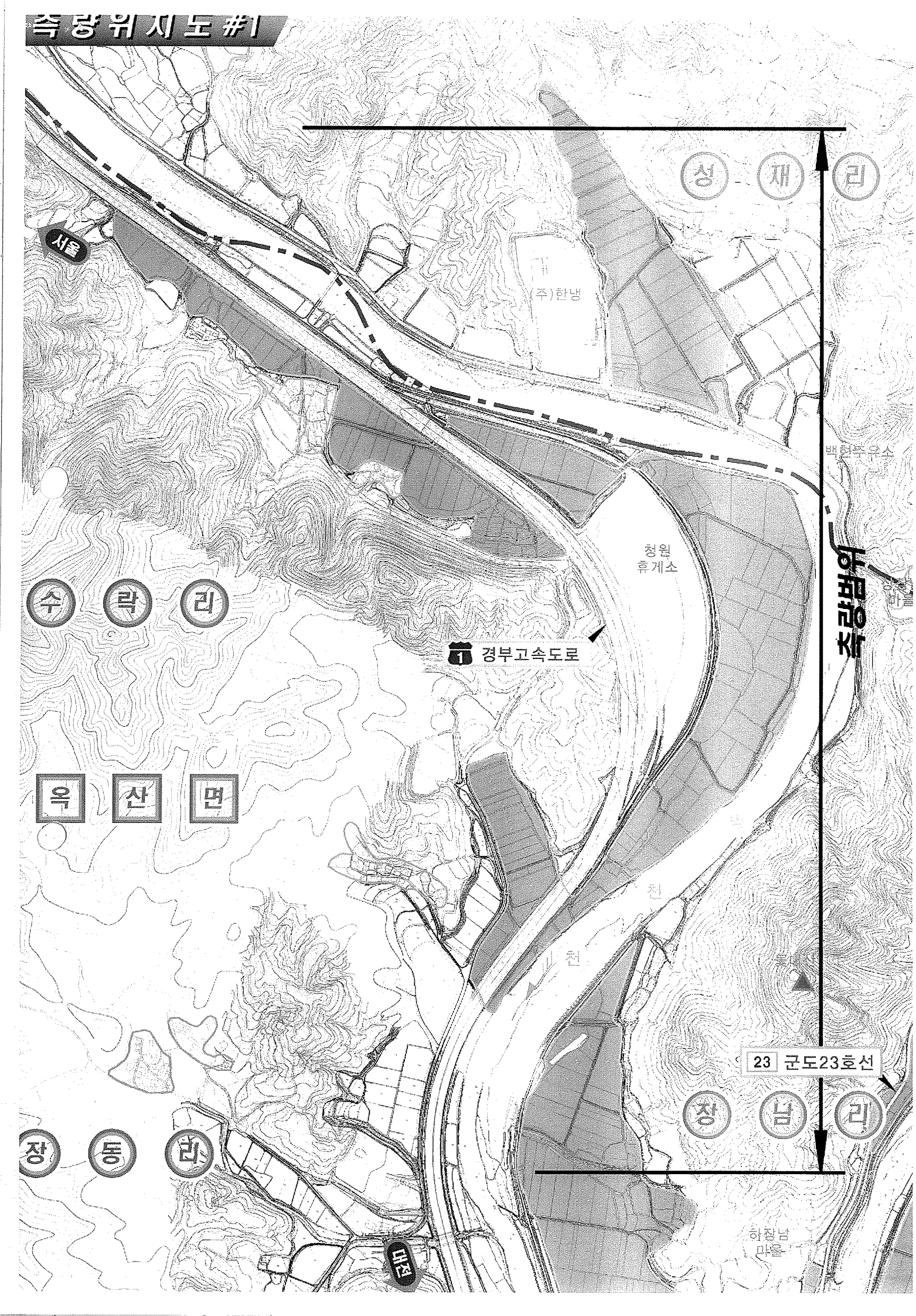
측량위치도#1
성 재 리
서울
(주)한냉
백천우체국
청원
휴게소
수 락 리
경부고속도로
읍 산 면
천
천
23 군도23호선
장 남 리
장 동 리
하장남
마을
도전

측량위치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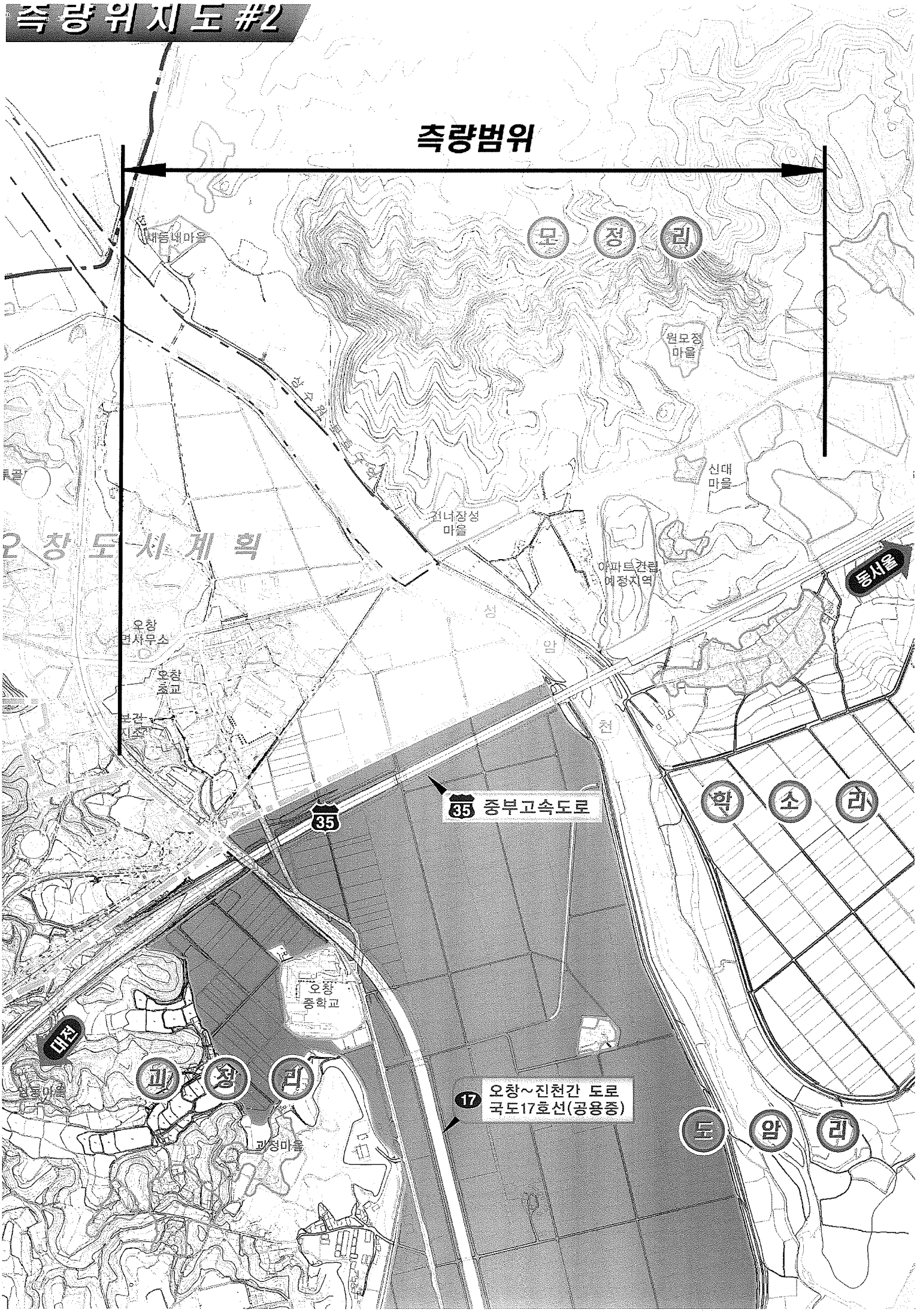

측량범위
모정리
새동네마을
원모정 마을
신대 마을
건너장성 마을
오창도시계획
아파트건립 예정지역
동서울
오창 면사무소
오창 초교
성
암
천
35 중부고속도로
35
학소리
오창 중학교
대전
과정리
17 오창~진천간 도로 국도17호선(공용중)
도암리
과정마을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21호 2012.5.10.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참 조 : 도로계획과장

제 목 : **민원인 설명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의 건.(옥산~오창 이철한)**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4042(2012.4.30) 「민원회신 결과 알림(옥산~오창, 이철한)」 관련하여 민원인 설명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민원인 설명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1부.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민원인 설명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이철한)

2012. 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1.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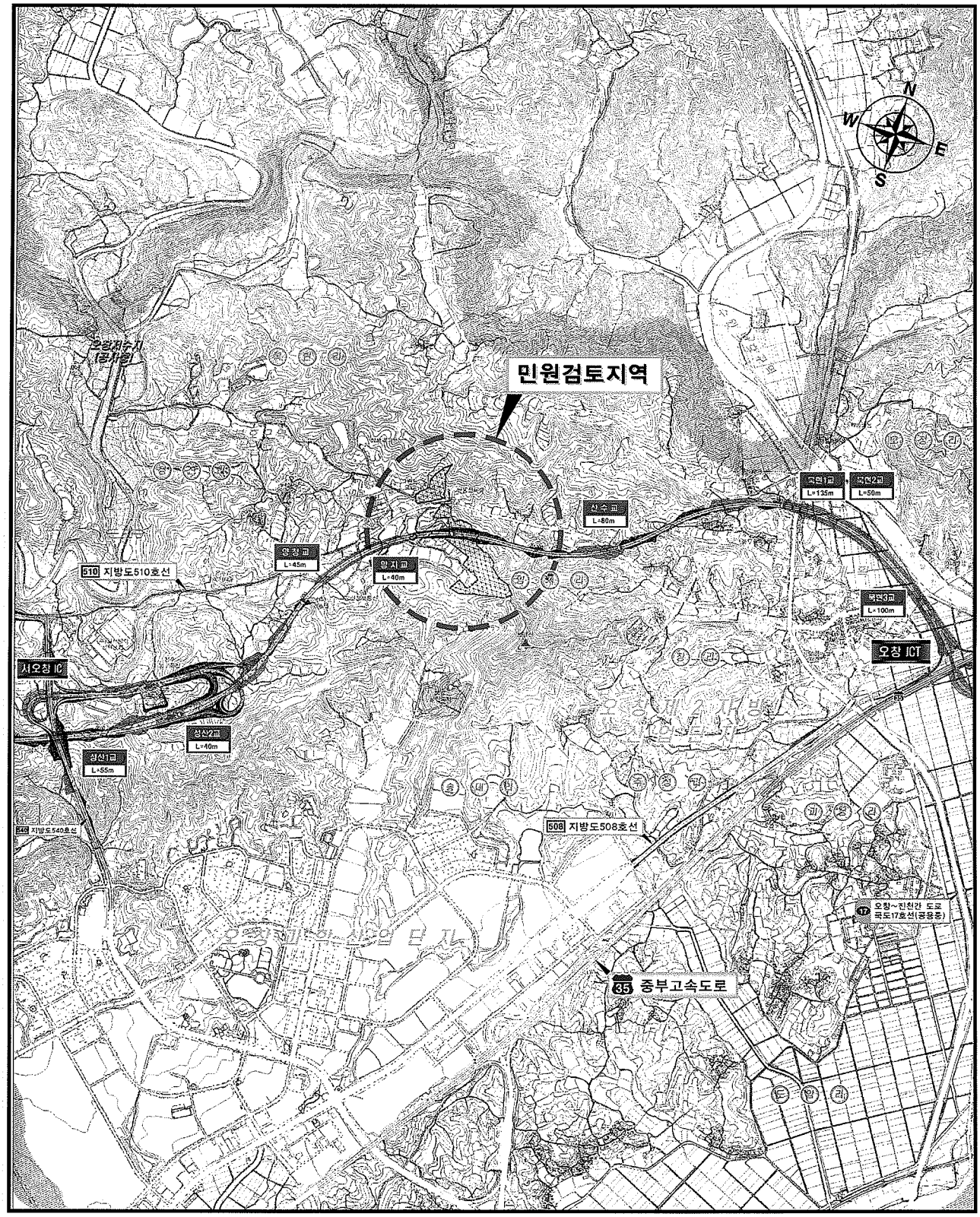

N
W
E
S
민원검토지역
오창제수지
(공사중)
국민1교
L=135m
국민2교
L=50m
산수교
L=80m
양정교
L=45m
양지교
L=40m
510 지방도510호선
국민3교
L=100m
오창 JCT
서오창 IC
상산2교
L=40m
상산1교
L=55m
540 지방도540호선
508 지방도508호선
17 오창~진천간 도로
국도17호선(공용중)
35 중부고속도로

2. 민원개요

1) 민 원 인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이종호(子 이철한)

2) 민원원인 : 민원인 소유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8-2(목)외 총 5개 필지를 옥산~오창 고속도로가 양분하게 되어 기존 지방도 접근성 및 토지 활용도 저하.

3) 요구사항

① 민원인 토지 인근 국유지로 우회하여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 변경. (3개 대안노선 제시)

② 만약 노선변경이 불가할 경우 서오창IC~오창JCT 구간을 지방도 또는 국도와 연결하는 일반도로로 변경 (고속도로(100km/hr)→고속화도로(80km/hr))

4) 현 황 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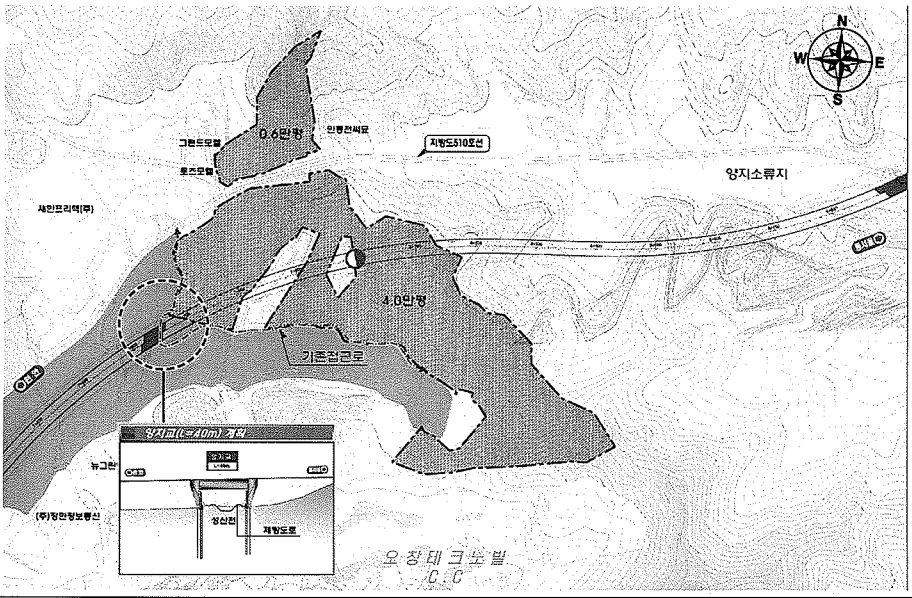
위성사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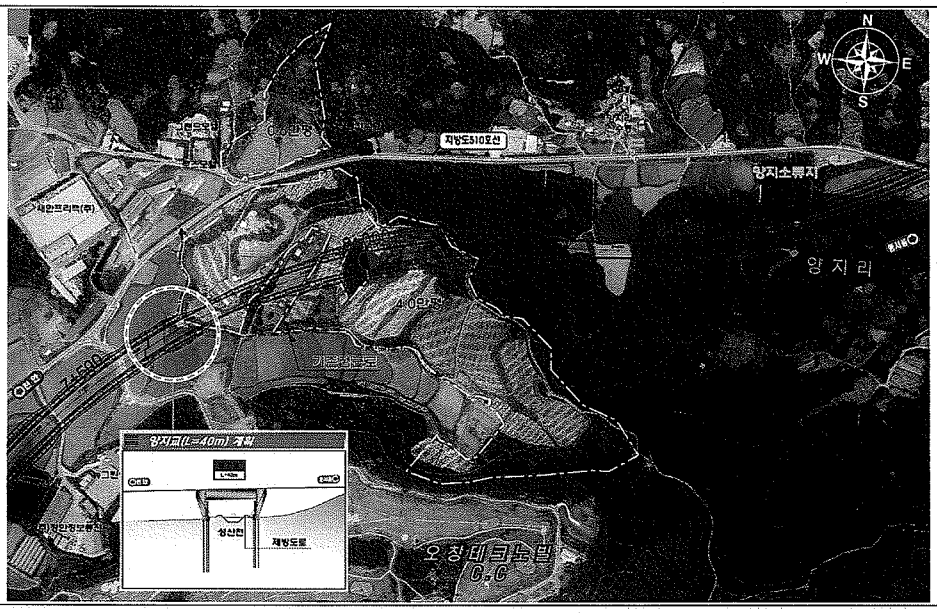

3. 민원 협의경위

1) 민원인 소유 토지 저촉여부 문의(2011.10.15, 10.28)

회신 : 민원인 확인요청 7개 필 지중 5필지 부분편입 확인 및 통보 (국토부, 2011.10.28, 11.09)

2) 민원인 소유 토지 이격 노선 요구(2011. 11. 25)

요구 : 토지 단절에 따른 이용 불편, 맹지 발생으로 가치 하락, 자동차 전용도로 주변은 소음피해로 활용 불가.
민원인 소유 토지와 오창과학단지 사이 국유지로 노선 변경

회신 : 확정된 노선이 아니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임. (사업자, 2011. 12. 16)

3) 도로등급 조정 또는 노선변경 요구(2012.02.01)

요구 : 고속도로(100km/hr)에서 고속화도로(80km/hr)로 속도 하향조정 또는 민원인 토지를 우회하는 국유지 통과 대안노선 3개안 제시

회신 : 도로 주행속도 하향 조정은 본 사업이 포함된 상위계획인 국토간선도로망계획에 부적합하여 수용 곤란.
선형변경 요구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임. (사업자, 2012.03.13)

4) 도로등급 조정 또는 노선변경 재요구(2012.03.29)

회신 : 현지여건상 노선변경 곤란, 세부설계 등 실시설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설명드릴 예정임. (대전청, 2012.04.04)

5) 노선변경 불가사유에 대한 세부설명 요구(2012.04.12)

회신 :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국토간선도로망계획중 동서축의 일부로써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를 연결하는 계획으로 민원인이 제시한 후보노선은 이미 오창제2지방산업단지, 충북대학교 이전부지, 오창 도시계획 등 장래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자세한 사항은 사업자로 하여금 방문하여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음. (대전청, 2012.04.30)

4. 민원인 접촉 및 설명결과

1) 민원인과 대면설명을 위해 유선협의 4회 시행(2012.05.04~05.07)
2) 민원인과 방문일정을 협의하였으나 추후 연락을 주겠다는 입장이며 직접 대면을 피하고 있음.
3) 민원인이 주장하는 설계속도 하향조정 및 노선 변경에 대하여 곤란한 사유를 유선으로 설명하였고 일부 수긍하였으나 계속 오창제2산업단지 통과를 주장함.

5. 향후 처리대책

1) 민원인 소유 토지는 낮은 야산 구릉지로 절토(H=10~15m)하여 통과할 계획이며 노선 북쪽으로 지방도 510호선(2차로, 6m)이 있고, 남쪽으로는 오창테크노빌CC, 오창공원묘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지방산업단지 등 위치하고 있음.
2) 민원인 토지는 지목이 목장지이나 현재는 인삼을 재배하고 있음. 지방도와 연결되는 별도의 진입로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경작지는 기존 농로를 함께 이용하여야 접근이 가능함.
3) 민원인이 주장하는 도로 단절에 따른 맹지는 본 고속도로 건설 이후 다소 우회하나 인접 농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므로 맹지로 볼 수 없고, 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 주장은 민원인 소유 토지에 가축 사육시설이 없으므로 부적절한 주장으로 사료됨.
4) 민원인의 소유 토지가 남북으로 위치하여 완전 우회는 곤란한 실정이며, 민원인이 제시한 노선(안)은 기존 개발계획과 상충 및 환경피해 증가 등이 예상되어 수용하기 곤란하므로 민원인 소유 토지의 저촉을 최소화 하고 토지 이용에 유리한 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설득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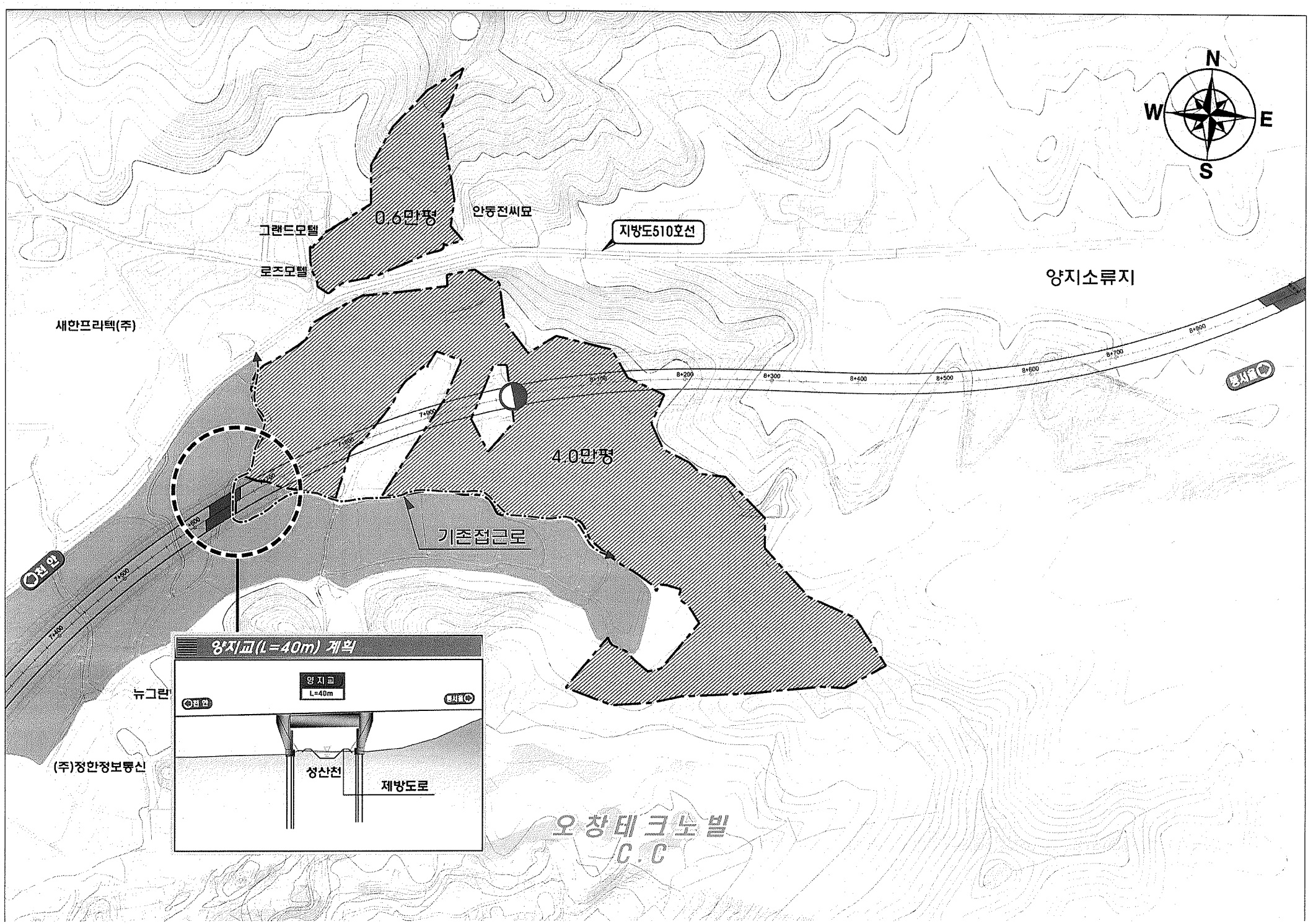
N
W
E
S
0.6만평
그랜드모텔
로즈모텔
안동전씨묘
지방도510호선
양지소류지
새한프리텍(주)
4.0만평
기존접근로
양지교(L=40m) 계획
양지교
L=40m
성산천
제방도로
뉴그린
(주)정한정보통신
오창테크노밸
C.C


N
W
E
S
그랜드모텔
0.6만평
양촌전씨묘
지방도510호선
양지리
산수동
로즈모텔
양지소류지
새한프라텍(주)
8+500
양 지 리
4.0만평
기존접근로
7+500
뉴그린
(주)정한정보통신
양지교
L=40m
성산천
제방도로
오창테크노빌
C.C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020 호 2012. 5. 9.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참 조 : 도로계획과장

제 목 : 청원군 수질오염총량 관련 협의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입니다.

3. 상기 사업의 예정지인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창읍 일원은 "금강오염총량관리지역 미호B지역"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청원군으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 받아야 하기에 붙임과 같이 수질오염총량 검토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질오염총량 검토서 1부.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수 질 오 염 총 량 검 토 서

2012. 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 동서 5축(당진~천안~옥산~오창~영주~울진)의 구축

○ 안산만권과 대전·청주권간 생산, 물류, 교류 기반조성 확대로 지역간 균형 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

○ 동서5축의 조기건설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지역의 중추공항(Hub-Airport)으로 육성

1.2 사업의 추진경위

○ 2004.11. :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지에스건설 컨소시엄 → 국토해양부)

○ 2007.06. : 사업제안서 검토(적격성조사 등) 완료(PIMAC)

○ 2008.05. :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국토해양부)

○ 2008.1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대표사:GS건설)

○ 2012.0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2. : 실시계획 승인 신청(예정)

○ 2013. : 공사착공 및 금융약정 체결(예정)

1.3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출입시설	JCT 2개소 / IC 1개소
도로구분	지방지역 고속도로(100km/hr)	영업소	서오창본선영업소/서오창IC영업소
연 장	12.1km (왕복 4차로)	공사기간	4년(착공일로부터 48개월)
시설현황	교량 : 29개소/3,115m	주무관청	국토해양부
공사비	2,000.23억원(설계가)	사업시행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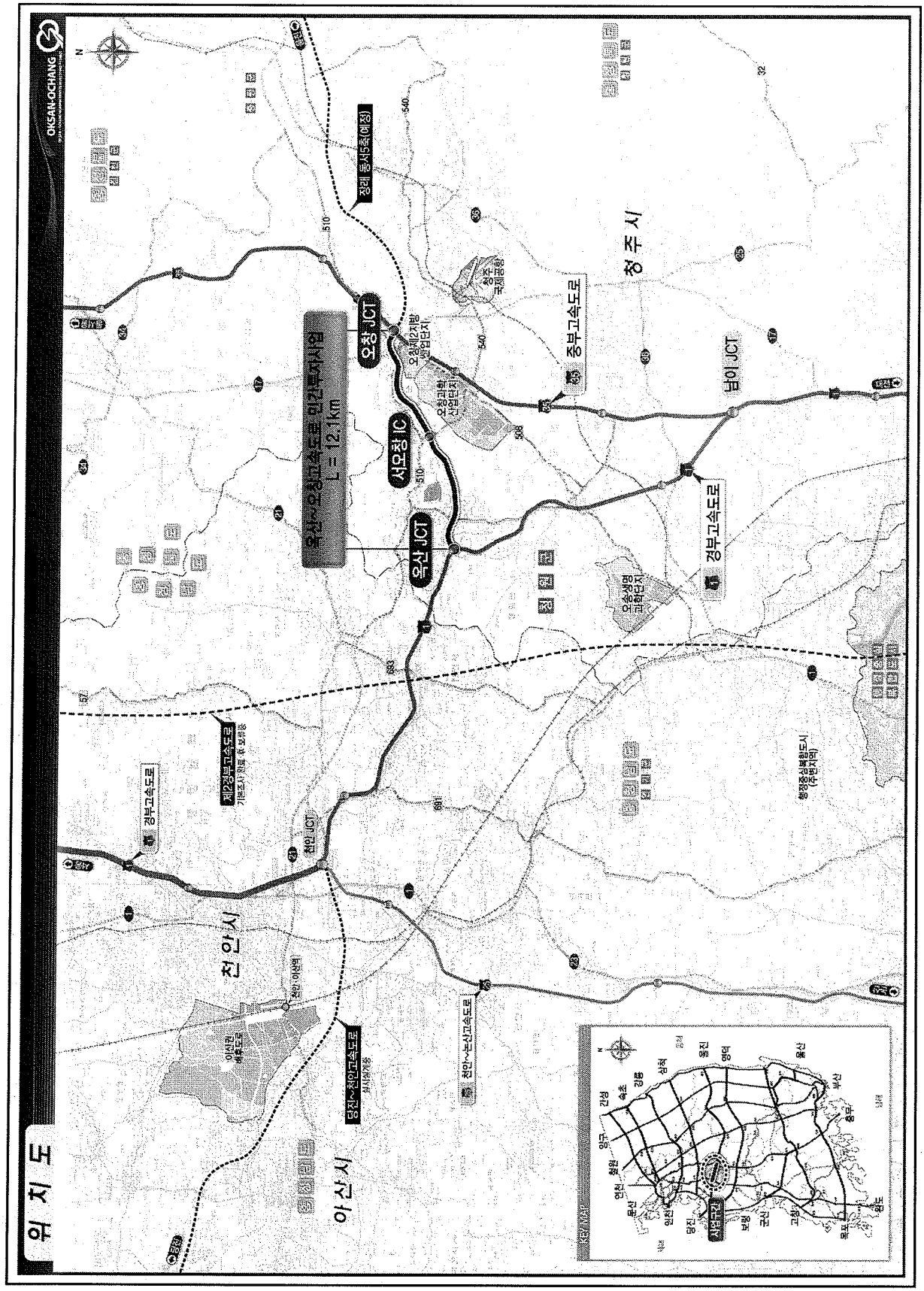

(그림 1-1) 계획노선 위치도

제2장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가. 수질오염총량 검토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임

1)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현황

○ 본 사업지구는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창읍 일원」으로 금강수계 미호B 유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오염총량관리 현황은 「충청북도 제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009.12, 충청북도」를 근거로 분석·제시하였음

가) 충청북도 제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09.12, 충청북도)

(1) 개요

○ 계획의 시간적 범위 : 2011.01.01 ~ 2015.12.31

○ 수립주체 : 충청북도

○ 관리대상 : 5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_5)

(2) 사업지구 해당 단위유역 및 목표수질

○ 본 사업지구는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조사한 결과, 충청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미호B 유역에 해당됨

○ 미호B 유역의 측정수질(평균)은 3.6㎎/L이며, 목표수질(BOD5)은 4.3㎎/L임

<표 2-1> 청원군 관리유역

단위유역	유역정보		청원군 관할면적(㎢)
	면적(㎢)	소유역 수	
미호B	665.98	29	311.68

자료 : 충청북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009.12, 충청북도

<표 2-2> BOD 할당부하량

광역시도	시군	단위 유역	할당부하량(kg/일)	
			점배출부하량	비점배출부하량
충청북도	청원군	미호B	1,173.7	5,033.5

자료 : 충청북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009.12, 충청북도

<표 2-3> 목표수질(2010년) 및 수질현황

유역명	측정지점	수질 (BOD_5, mg/L)		총량관리제 시행지역
		측정수질(평균)	목표수질	
미호B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병천천 (미호천 합류전)	3.6	4.3	○

자료 : 충청북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009.12, 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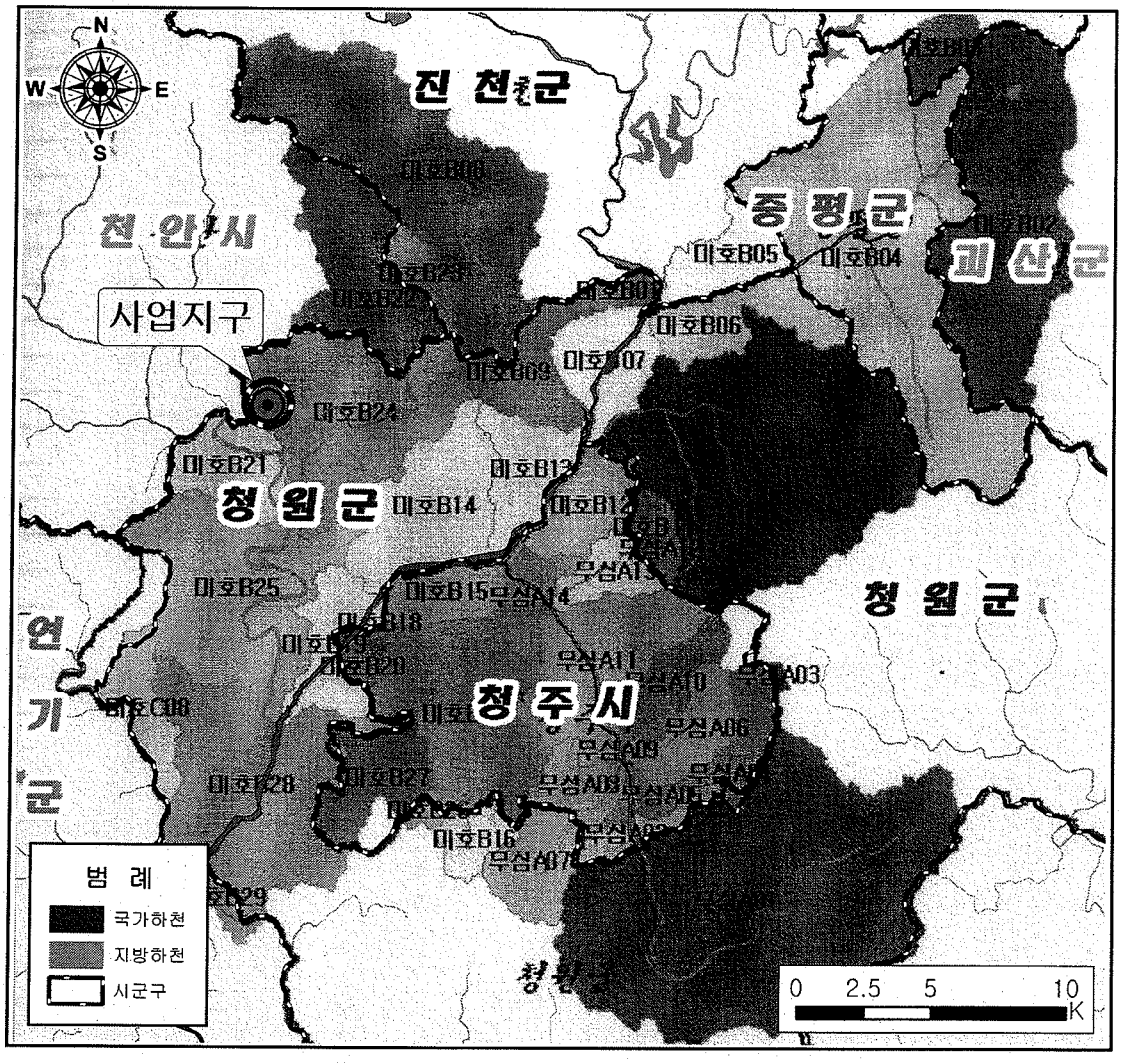

(그림 1.1-1) 청원군 단위유역도(미호B)

2) 수질오염총량 산정

○ 본 사업의 시행시 영업소운영으로 인해 영업인구에 의한 오수발생으로 인한 점오염원(생활계)이 발생하며, 사업시행전후 토지이용의 변경으로 인해 비점오염원(토지계)의 발생이 예상됨

가) 용수수요량 산정

○ 본 사업노선에서의 생활계 오염원은 영업소 및 유지관리사무소 근무자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영업소의 근무인원은 46명으로 계획함

<표 2-4> 인구계획

건 물 명 칭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근무인원(인)	비 고
서오창IC영업소/ 유지관리사무소	12,600.00	1,708.78	2,432.25	46	오창읍 소재

○ 급수소요량 산정을 위한 급수원단위는 청원군 통계연보에 제시된 영업용 1종의 급수량으로 서오창IC영업소 / 유지관리사업소가 위치한 오창읍 급수인구를 적용하여 189.0L/인 · 일을 산정

<표 2-5> 생활용수소요량

건 물 명 칭	근무인원 (인)	1일 1인당급수량 (L/인 · 일)	급수소요량 (㎥/일)	비 고
서오창IC영업소/ 유지관리사무소	46	189.0	8.69	미호B

나) 오수발생량 산정

○ 영업소/유지관리사무소 오수발생량은 "제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8.9, 환경부"에서 제시한 생활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준하여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비 및 잡배수오수전환율을 고려하여 산정

- 영업인구분뇨발생유량 = 영업인구사용유량 × 영업인구분뇨발생유량비
- 영업인구잡배수발생유량 = 잡배수오수전환율 × (영업인구사용유량 - 영업인구분뇨발생유량)
- 영업인구오수발생유량 = 영업인구분뇨발생유량 + 영업인구잡배수발생유량

<표 2-6> 생활계 분뇨발생유량원단위, 분뇨발생유량비 및 잡배수오수전환율

구 분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원단위 (㎥/인/일)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비 (-)	잡배수오수전환율 (-)
시 가 화	0.00115	0.006	0.88
비시가화	0.00134	0.006	0.88

<표 2-7> 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

구 분	영업인구분뇨발생유량 (㎥/일)	영업인구잡배수발생유량 (㎥/일)	영업인구오수발생유량 (㎥/일)
영업인구	0.05	7.66	7.70

다) 오염(발생,배출) 부하량

(1) 사업시행 전

(가) 생활계

○ 구체적인 발생원 조사시행 후 재산정 계획임

(나) 토지계

① 발생부하량

○ 토지계 발생부하량은 「제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8.9, 환경부」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음

<산정방법>
▪ 토지계 발생부하량 = Σ(지목별면적 × 지목별연평균발생부하원단위 × 강우배출비)

<표 2-8> 토지계 지목별 연평균발생부하원단위 (단위 : kg/㎢·일)

지 목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BOD	1.59	2.30	0.93	85.90	0.960
T-N	9.44	6.56	2.20	13.69	0.759
T-P	0.24	0.61	0.14	2.10	0.027

자료 : 제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8.9, 환경부

○ 사업시행 전 지목별 편입면적을 살펴보면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하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생부하량 산정은 편입면적에 발생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함

○ 토지계 발생부하량 산정결과, BOD 2.444kg/일, T-P 0.340kg/일로 산정됨

<표 2-9> 사업지구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하 천
청원군	옥산면(㎡)	363,067	21,980	111,085	181,146	292	27,116	21,448
	오창읍(㎡)	838,089	62,163	266,279	280,288	8,493	205,587	15,279
계		1,201,156	84,143	377,364	461,434	8,785	232,703	36,727

<표 2-10> 토지계 발생부하량 산정

구 분	적용지목	면적(㎡)	원단위(kg/㎢ · 일)			발생부하량(kg/일)		
			BOD	T-N	T-P	BOD	T-N	T-P
전	전	84,143	1.59	9.44	0.24	0.134	0.794	0.020
답	답	377,364	2.30	6.56	0.61	0.868	2.476	0.230
임 야	임 야	461,434	0.93	2.20	0.14	0.429	1.015	0.065
대 지	대 지	8,785	85.90	13.69	2.10	0.755	0.120	0.018
기 타	기 타	232,703	0.960	0.759	0.027	0.223	0.177	0.006
하 천	기 타	36,727	0.960	0.759	0.027	0.035	0.028	0.001
합 계		1,201,156	-	-	-	2.444	4.610	0.340

주) 강우배출비는 "1"을 적용

② 배출부하량

○ 사업시행 전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시 삭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저감시설이 없으므로 토지계 배출부하량은 발생부하량과 동일함

<산정방법>
- 토지계 배출부하량 = 토지계 발생부하량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표 2-11> 배출부하량 산정

구 분	적용지목	면적(㎡)	발생부하량(kg/일)			배출부하량(kg/일)		
			BOD	T-N	T-P	BOD	T-N	T-P
전	전	84,143	0.134	0.794	0.020	0.134	0.794	0.020
답	답	377,364	0.868	2.476	0.230	0.868	2.476	0.230
임 야	임 야	461,434	0.429	1.015	0.065	0.429	1.015	0.065
대 지	대 지	8,785	0.755	0.120	0.018	0.755	0.120	0.018
기 타	기 타	232,703	0.223	0.177	0.006	0.223	0.177	0.006
하 천	기 타	36,727	0.035	0.028	0.001	0.035	0.028	0.001
합 계		1,201,156	2.444	4.610	0.340	2.444	4.610	0.340

(다) 사업시행 전 총 배출부하량

○ 사업시행 전 배출부하량은 BOD 2.444kg/일, T-P 0.340kg/일로 산정됨

<표 2-12> 사업시행 전 배출부하량

구 분		점오염원(생활계)	비점오염원(토지계)	계
사업시행 전 배출부하량	BOD	-	2.444	2.444
	T-P	-	0.340	0.340

(2) 사업시행 후

(가) 생활계

① 발생부하량

○ 사업시행 후 영업인구에 의한 발생부하량은 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에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8.9,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시된 '업무시설 중 일반사무소'의 오수발생 표준농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BOD 발생부하량은 0.770kg/일, T-P 발생부하량은 0.023kg/일로 산정됨

<표 2-13> 생활계 영업장 오수발생 표준농도

구 분	건축물 용도 (업종코드)	BOD (g/㎥)	T-N (g/㎥)	T-P (g/㎥)	비고
영업소/유지관리사무소	일반사무소 (1001)	100	30	3	업무시설 (1000)

자료 : 제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8.9, 국립환경과학원

<표 2-14> 생활계 발생부하량 산정

구 분	오수발생량 (㎥/일)	오수발생농도 (g/㎥)		발생부하량 (kg/일)	
		BOD	T-P	BOD	T-P
영업소/유지관리사무소	7.70	100	3	0.770	0.023

② 방류부하량

○ 영업소/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관로를 통해 전량 이송하여 처리후 방류할 계획임

○ 신설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은 BOD 20㎎/L, T-P 2㎎/L로 계획함

○ 방류부하량은 BOD 0.154kg/일, T-P 0.015kg/일로 산정됨

<산정방법>
▪ 오수처리시설 방류부하량 = 오수량 × 방류농도

<표 2-15> 생활계 방류부하량(오·폐수처리시설)

구 분	오수량 (㎥/일)	방류농도 (㎎/L)		방류부하량 (kg/일)	
		BOD	T-P	BOD	T-P
생활계	7.70	20	2	0.154	0.015

주) 신설되는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농도(BOD)는 20㎎/L임

③ 배출부하량

○ 생활계 배출부하량은 BOD 0.154kg/일, T-P 0.015kg/일로 나타남

<산정방법>
▪ 배출부하량 = 오수처리시설 방류부하량 - 삭감부하량

<표 2-16> 생활계 배출부하량

구 분	방류부하량 (kg/일)		삭감부하량 (kg/일)		배출부하량 (kg/일)	
	BOD	T-P	BOD	T-P	BOD	T-P
생활계	0.154	0.015	-	-	0.154	0.015

(나) 토지계

① 발생부하량

○ 사업시행 후 도로 및 영업소 등 불투수포장구간은 '대지'로 적용하고 그 외 사면 등은 '기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발생부하량은 BOD 36.066 kg/일, T-P 0.884kg/일로 산정됨

<표 2-17> 사업시행 후 토지이용

구 분	적용지목	면 적(㎡)	비율(%)	비 고
도로 외	대 지	411,021	34.2	
기 타	기 타	790,135	65.8	
계		1,201,156	100.0	

<표 2-18> 토지계 지목별 연평균발생부하원단위 (단위 : kg/㎢·일)

지 목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BOD	1.59	2.30	0.93	85.90	0.960
T-N	9.44	6.56	2.20	13.69	0.759
T-P	0.24	0.61	0.14	2.10	0.027

자료 : 제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8.9, 환경부

<표 2-19> 토지계 발생부하량

구 분	적용지목	면 적(㎡)	발생부하량(kg/일)		
			BOD	T-N	T-P
도로 외	대 지	411,021	35.307	5.627	0.863
기 타	기 타	790,135	0.759	0.600	0.021
계		1,201,156	36.066	6.227	0.884

② 삭감부하량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은 도로 및 영업소 등 불투수포장지역에 대해 식생형(식생수로)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에 의하여 사업지구의 토지계 배출부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삭감대상부하비 및 저감효율을 고려하여 삭감부하량을 산정한 후 배출부하량을 산정함

㉮ 삭감대상부하비 산정

○ 삭감대상부하비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계수는 「제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8.9. 국립환경과학원」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강우처리비를 적용하여 삭감대상부하비 산정한 결과 BOD 0.3066, T-P 0.2717로 산정됨

$$\text{강우처리비} = a \cdot \ln(\text{설계기준강우}) + b$$

$$\text{삭감대상부하비} = e^{[a \cdot \{\ln(\text{강우처리비})\}^2 + b \cdot \ln(\text{강우처리비})]}$$

<표 2-20> 설계기준에 따른 강우처리비 산정시 적용계수 및 산정결과

구 분	a	b	설계강우	강우처리비
강우량(㎜) 기준 설계시설	0.2716	-0.2425	5㎜	0.1946
강우강도(㎜/hr) 기준 설계시설	0.2445	0.3174	5㎜/hr	0.7109

자료 : 제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8.9, 환경부

<표 2-21> 강우처리비에 따른 삭감대상부하비 산정시 적용계수

구 분	BOD	T-N	T-P
a	-0.0184	-0.0030	-0.0018
b	0.6922	0.7509	0.7931

자료 : 제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8.9, 환경부

<표 2-22> 강우처리비에 따른 삭감대상부하비 산정시 적용계수 산정결과

구 분	BOD	T-N	T-P
강우량 적용	0.3066	0.2902	0.2717
강우강도 적용	0.7879	0.7737	0.7627

주) 강우처리비 0.1946 적용

㈏ 삭감대상부하량 산정

○ 삭감대상부하량은 삭감대상부하비와 발생부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산정결과 BOD 10.825kg/일, T-P 0.234kg/일로 산정됨

<산정방법>
▪ 삭감대상부하량 = 삭감대상부하비 × 발생부하량

<표 2-23> 삭감대상부하량

구 분	면 적(㎡)	발생부하량(kg/일)			삭감대상부하비			삭감대상부하량(kg/일)		
		BOD	T-N	T-P	BOD	T-N	T-P	BOD	T-N	T-P
도로 외	411,021	35.307	5.627	0.863	0.3066	0.2902	0.2717	10.825	1.633	0.234
기 타	790,135	0.759	0.600	0.021	-	-	-	-	-	-
계	1,201,156	36.066	6.227	0.884	-	-	-	10.825	1.633	0.234

㈐ 삭감부하량 산정

○ 삭감부하량은 삭감대상부하량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감효율를 곱하여 산정하며, 산정결과 BOD 16.702kg/일로 산정됨

<산정방법>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삭감부하량 = 삭감대상부하량 × 저감효율

<표 2-24>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감효율

구분		BOD(%)	T-N(%)	T-P(%)
저류형	습식연못	43	31	52
	저류조	25	24	20
	인공습지	18	24	48
침투형	유공성포장	60~90(75)	83	65
	침투저류지	50~80(65)	55~60(58)	60~70(65)
	침투도랑	50~90(70)	42	50~90(70)
식생형	식생여과대	0~50(25)	0~27(14)	0~40(20)
	식생수로	25	38	29
장치형	여과형	54	32	59
	와류형	5~10(8)	5~10(8)	5~10(8)
	스크린형	20	10	20
시설형	하수처리형 (초고속응집·침전법)	80	20	85

주) 괄호안의 숫자는 저감효율 범위의 평균값임
자료 : 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8.9, 국립환경과학원

<표 2-25> 삭감부하량 산정결과

구 분	삭감대상부하량(kg/일)			저감시설 저감효율(%)			삭감부하량(kg/일)		
	BOD	T-N	T-P	BOD	T-N	T-P	BOD	T-N	T-P
도로 외	10.825	1.633	0.234	25	38	29	2.706	0.621	0.068
기 타	-	-	-	-	-	-	-	-	-
계	10.825	1.633	0.234	-	-	-	2.706	0.621	0.068

③ 배출부하량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계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결과, BOD 33.360kg/일, T-P 0.816kg/일로 산정되었음

<표 2-26>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결과

구분	발생부하량(kg/일)			삭감부하량(kg/일)			배출부하량(kg/일)		
	BOD	T-N	T-P	BOD	T-N	T-P	BOD	T-N	T-P
사업지구	36.066	6.227	0.884	2.706	0.621	0.068	33.360	5.606	0.816

라) 사업시행 후 배출부하량

○ 사업시행 후 배출부하량은 BOD 33.360kg/일, T-P 0.816kg/일로 산정됨

<표 2-27> 사업시행 후 배출부하량 (단위 : kg/일)

구 분		점오염원(생활계)	비점오염원(토지계)	계
사업시행 후 배출부하량	BOD	0.154	33.360	
	T-P	0.015	0.816	

(다) 추가배출부하량

○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배출부하량은 BOD 기준 점오염원 0.154kg/일, 비점오염원 30.916kg/일, T-P 기준 점오염원 0.015kg/일, 비점오염원 0.476kg/일로 산정됨

<표 2-28> 사업시행 전·후 배출부하량 (단위 : kg/일)

구 분	점오염원(생활계)		비점오염원(토지계)		비 고	
	BOD	T-P	BOD	T-P	BOD	T-P
사업시행 전	-	-	2.444	0.340	2.444	0.340
사업시행 후	0.154	0.015	33.360	0.816	33.514	0.831
추가배출부하량	0.154	0.015	30.916	0.476	31.070	0.491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 019 호 2012. 5. 9.

수 신 : 국토해양부장관

참 조 : 광역도시도로과장

제 목 :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 건**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제28조(사업이행보증금)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서번호 : 옥산오창 제 2012- 017 호 2012. 5. 1.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참 조 : 도로계획과장

제 목 : 민원사항 검토결과 제출.(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철한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3816(2012.4.24) 「민원사항 알림(옥산~오창, 이종호)」 관련하여 민원인 노선변경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민원검토서(오창면 성산리 이종호) 1부.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민원검토서(오창면 성산리 이중호)

2012. 5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Ⅰ.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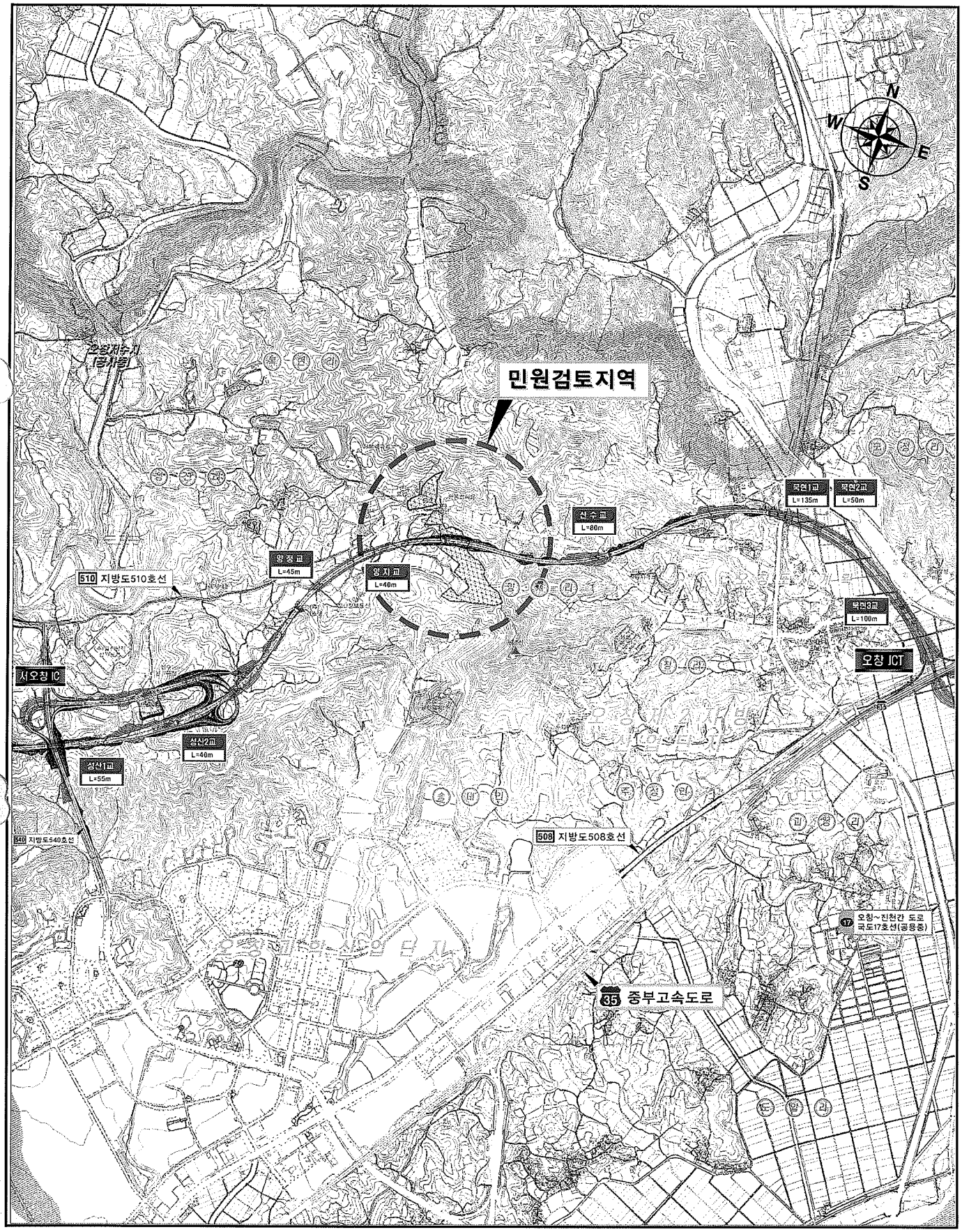
N
W
E
S
오창저수지
(공사중)
민원검토지역
산수교
L=80m
목천1교
L=135m
목천2교
L=50m
왕정교
L=45m
왕지교
L=40m
510 지방도510호선
목천3교
L=100m
오창 JCT
서오창 IC
성산2교
L=40m
성산1교
L=55m
540 지방도540호선
508 지방도508호선
오창~진천간 도로
국도17호선(공용중)
35 중부고속도로

Ⅱ.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1. 민원요지

1) 민 원 인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이종호(자 이철한)

2) 민원내용 : 민원인 소유의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8-2(목)외 3필지를 옥산~오창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선형 변경을 요구.

3) 세부내용

① 오창과학단지(서오창IC) ~ 오창 읍내(오창JCT) 구간 100km/hr 고속도로가 아닌 80km/hr 고속화도로 변경 제안

②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면 민원인 소유 토지 인근 국유지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계획

2. 민원발생 원인 및 경위

1) 민원발생 원인

① 2011년 11월 민원인 소유 토지를 옥산~오창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됨에 따라 토지활용도 저하를 우려 오창제2산업단지를 통과하는 노선 변경을 요구

2) 경 위

① 민원인 소유 토지 저촉여부 문의(2011. 11. 4)

⇒ 회신 : 민원이 소유 토지 일부 저촉 확인(2011. 11. 9)

② 민원인 소유 토지 이격 노선 요구(2011. 11. 25)

⇒ 회신 : 본사업의 계획노선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2011. 12. 16)

③ 100km/hr 고속도로에서 80km/hr 고속화도로로 변경 또는 민원인 소유 토지 이격 노선 요구 및 3개안 제시(2012. 2. 1)

3. 민원발생 지역 현황(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8-2(목)일대)

1) 민원발생 지역은 낮은 야산 구릉지로 토공 통과 계획.

2) 노선 북쪽으로 지방도 510호선(2차로, 6m)이 있고, 남쪽으로는 오창테크노빌 CC, 오창공원묘지, 봉령산, 만뢰지맥, 오창산업단지 등이 위치.

4. 검토의견 및 처리대책

1) 옥산~오창고속도로는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 중 동서5축(당진~천안~옥산~오창~영주~울진)의 일부분으로 경부고속도로(남북2축)와 중부고속도로(남북3축)를 연결하는 100km/hr의 고속도로로 계획되었음.
민원인의 의견대로 지방도510호선에 연결하는 80km/hr의 도로계획은 국토간선도로망계획에 부적합하게 되므로 불가함.

2) 민원인이 제시한 3가지 노선(민원1~3안)의 경우는
① 오창제2지방산업단지를 관통하게 되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불가하고,
② 만뢰지맥을 단절하게 되어 환경부 및 환경단체와의 협의가 어려우며,
③ 민원인이 통과하길 원하는 소유토지 뒤쪽의 국유지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충북대학교 이전부지로써 협의가 불가함.

3) 현재 계획된 옥산~오창고속도로 노선에서 민원인의 소유 토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형을 변경할 경우 상대 민원인들의 민원이 예상됨.

4) 민원인의 소유 토지가 본노선의 북에서 남쪽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어서 민원인 소유 토지를 완전히 우회하는 노선계획은 어려우나, 추후 실시설계시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노선을 계획할 것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노선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

주변도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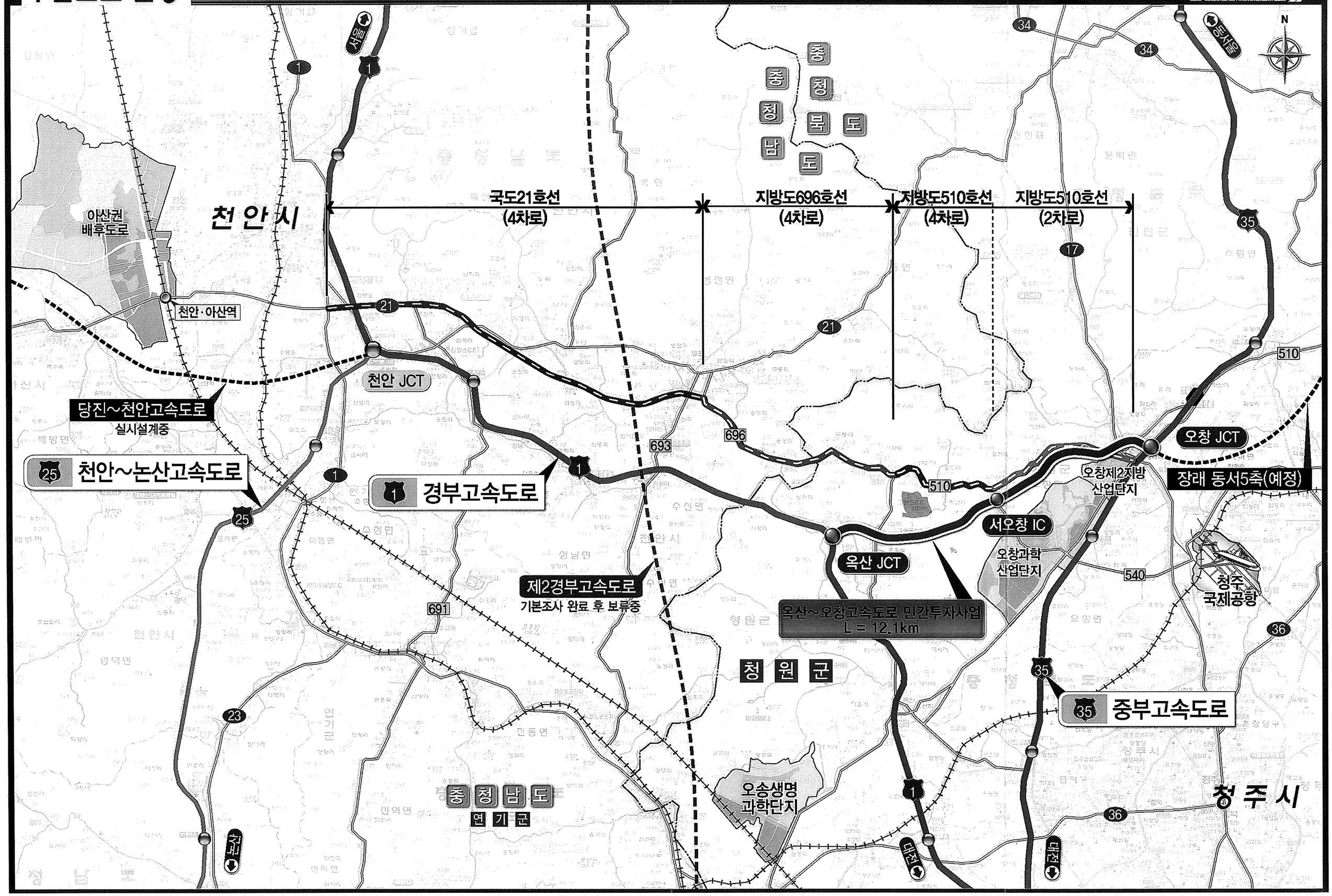

OKSAN-OCHANG
N
천안시
아산권 배후도로
천안·아산역
국도21호선 (4차로)
지방도696호선 (4차로)
지방도510호선 (4차로)
지방도510호선 (2차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울
동서울
천안 JCT
당진~천안고속도로
실시설계중
천안~논산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기본조사 완료 후 보류중
옥산 JCT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L = 12.1km
서오창 IC
오창과학 산업단지
오창제2지방 산업단지
오창 JCT
장래 동서5축(예정)
청주 국제공항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송생명 과학단지
충청남도
연기군
청주시
대전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경유)
제목 민원회신 결과 알림(옥산~오창, 이철한)

1. 도로계획과-3816호(2012.04.24.)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20-5, 201호 이철한 님으로부터 선형변경 요구 민원이 제출되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사에서 기본설계 계획노선 및 민원인이 제시한 후보노선대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한 내용 등을 민원인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민원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12.05.10.까지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회신 공문사본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전결 2012. 4. 30.

사무관대우 김회룡 과장 강호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042 (2012. 4. 30.) 접수

우 300-723 대전 동구 계족로 447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21 팩스번호 042-670-3484 / log0923@mltm.go.kr / 비공개(5)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이철한 귀하 (우560-2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0-5, 201호)

(경유)

제목 민원회신(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 이철한)

이철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우리 청으로 이송된 옥산~오창 고속도로 선형변경 요구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고속도로 계획노선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 등 불편에 따라 일부구간의 선형변경을 요구하면서 후보 노선대를 제시하신데 대하여는

현지여건 상 선형변경의 어려움과 향후 세부설계 등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후보노선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해 드린바 있습니다.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국토간선도로망계획 중 동서축의 일부로써 경부고속도로(옥산)와 중부고속도로(오창)를 연결하는 고규격 도로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현재의 계획 선형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하였고, 향후 세부설계 단계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본설계 당시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후보노선대 주변은 '오창 제2 지방산업단지 계획', '충북대학교 이전부지', '오창 도시계획' 등 장래 토지이용계획과

지맥단절 등 환경영향, 경제성 등 요소가 선형계획 상 다소 불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후보노선대의 주변현황 및 장래 토지이용계획, 기술적 측면 등 세부내용을 사업시행자(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로 하여금 고객님을 방문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담당 김회룡, 042-670-352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무관대우 과장 전결 2012. 4. 27.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977 접수

우 300-723 대전 동구 계족로 447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21 팩스번호 042-670-3484 / log0923@mltm.go.kr /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회신바람 청부.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국 토 해 양 부

의땅 가슴의 바다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 선정 요청

1. 옥산오창 제2012-15('12.4.20)호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옥산오창고속도로(주)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를 우리부에 요청하여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귀 기관에 심의위원 위촉을 요청하오니, '12.4.26까지 위원을 선정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영향평가서계획서 심의위원회 구성(안) 1부.
2.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위원 위촉 양식. 1부.
3. 옥산-오창고속도로 사업현황(참고). 1부. 끝.

국토해양부장관

수신자 환경부장관(국토환경평가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청원군수(환경과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사무관대우 김대현 기술서기관 전근배 과장 어명소 전결 2012. 4. 23.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946 접수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광역도시도로과 / http://www.mltm.go.kr

전화번호 02-2110-6449 팩스번호 02-504-9056 /portkdh@mltm.go.kr /비공개(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서번호 : 옥산오창 제 2012- 15 호 2012. 4. 20.

수 신 : 국토해양부장관

참 조 : 광역도시도로과장

제 목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승인 요청의 건**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구간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 ~ 오창면(중부고속도로)

다. 사업내용 : 연장(12.1km), 차로수(4차로)

붙임 : 1. 환경영향평가계획서 1식.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

1. 우리 청에서 사업관리 중인「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협의하오니 검토의견을 '12.4.2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기한 내 회신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설계업체 : ㈜삼보기술단)로 하여금 귀 기관을 방문하여 노선계획(안)을 설명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협의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구간에 대한 각종 인·허가 검토 시 본 노선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관별 협의내용 1부.
2. 오창~옥산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1부.(별도송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신자 국토해양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국토해양부장관(수도권정책과장),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37사단장), 환경부장관(국토환경평가과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 산림청장(산지관리과장), 보은국유림관리소장, 운화재청장(발굴제도과장), 광업등록사무소장, 충청북도지사(균형개발과장), 청원군수(건설과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천안지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진천지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충북지역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청원지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충북본부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한국전력공사사장, 한국전력공사사장(충북지역본부장), 한국전력공사사장(서청주지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충청지역본부), 한국가스공사 사장, 대한송유관공사(충청지사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청주농업고등학교공동실습소, KT 대표이사(가경지점장), LG유플러스 대표이사, SK텔레콤 대표이사(중부네트워크본부장), KTF 대표이사(충청무선네트워크운용단장), 세종텔레콤 대표이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청주지사장), 충청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주무관	사무관대우	과장
유소영	김회룡	강호택

전결 2012. 4. 12.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404 (2012. 4. 12.) 접수

우 300-723 대전 동구 용전동 계족로 447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24 팩스번호 042-670-3484 / syyooii@mltm.go.kr / 비공개(5,6)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기관별 협의내용

구분		협 의 내 용	비 고
기관	부서		
국토 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	민자고속도로 노선 협의	
	산업입지정책과	오창 제2지방 산업단지 관련 협의	
국방부	37사단 작전처	도로건설에 따른 관할구역 군시설물 저촉 협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농림수산 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농지통과계획 및 농업진흥지역 협의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산림저촉에 따른 업무협의	
	보은국유림 관리소	산림저촉에 따른 업무협의	
문화 재청	발굴제도과	문화재 보존법에 관련된 노선 협의	
지식 경제부	광업등록 사무소	노선주변 광업권 및 장래 예정사업 관련 협의	

구분			협의내용	비고
기관	부서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	도시계획 관련 협의	
		도로과	국지도, 지방도 관련업무 협의 도로구역결정, 지방도 사업 추진상황 관련 협의	
		교통물류과	청주공항과 연계한 노선계획 관련 협의	
		치수방재과	하천통과에 따른 관련 협의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		산업단지 관련 협의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지통과계획을 고려한 노선 협의	
		산림녹지과	산지이용계획 협의	
	문화관광환경국	환경정책과	계획노선 주변 동식물상 및 환경영향 관련 협의	
		관광항공과	통과노선 주변 관광개발계획 관련 협의	
		문화예술과	문화재 관련 노선 협의	

구분			협의내용	비고
기관	부서			
청원군	건설과		도로건설에 따른 노선 협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련 협의	
	도시과		도시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관련 협의	
	경제투자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제2지방산업단지 관련 협의	
	농정과		농경지 통과구간 및 시설물 관련 협의	
	산림과		산지통과구간 노선계획 관련 협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시설 관련 협의	
	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시설 관련 협의	
	재난안전과		하천(소하천) 관련 협의	
	환경과	환경 담당	계획노선 주변 동식물상 및 환경관련 협의	
		수질 담당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협의	
	문화체육과		문화재(지방문화재 및 향토유적) 관련 노선 협의	

구분		협의내용	비고
기관	부서		
한국 도로공사	도로사업처 사업계획팀	유지관리 및 통합운영계획 등의 업무 협의	
	기획처 도로조사팀	시·종점 접속에 따른 노선협의(경부, 중부고속도로)	
	천안지사	경부고속도로 선형자료 입수 유지관리 등의 업무 협의	
	진천지사	경부고속도로 선형자료 입수 유지관리 등의 업무 협의	
한국토지 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개발사업부	도로건설에 따른 노선 및 관련계획 현황 협의	
한국 농어촌 공사	청원지사 지역개발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한국 철도공사	충북본부 시설처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한국철도 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도로건설에 따른 철도 건설계획 및 시설물 저촉 협의	
한국 전력 공사	충북 지역 본부 / 배전 운영팀	사업노선(오창읍) 건설에 따른 시설물(전신주) 저촉 협의	
	충북 지역 본부 / 송전 운영팀	사업노선 건설에 따른 시설물(철탑) 저촉 협의	
	서청주지사 배전운영팀	사업노선(옥산면) 건설에 따른 시설물(전신주) 저촉 협의	
한국 수자원 공사	충청지역본부 통합운영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구분		협 의 내 용	비 고
기관	부서		
대한 송유관 공사	충청지사 시설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한국 가스 공사	충청지사 안전환경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충북 개발 공사	사업개발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청주 농고 공동 실습소	행정실	서오창IC 노선계획에 따른 노선 협의	
한국 통신 (KT)	서청주지사 가경지점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LG U PLUS	대전센터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SK 텔레콤	중부네트웍본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KTF	대전네트웍본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세종 텔레콤	대전운용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SK 브로드밴드	청주지사 중부운영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충청 에너지 서비스	안전공급2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OKSAN ~ OCHANG
HIGH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사 업 현 황

옥산~오창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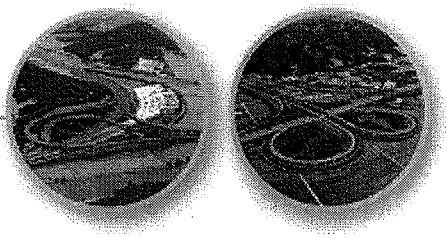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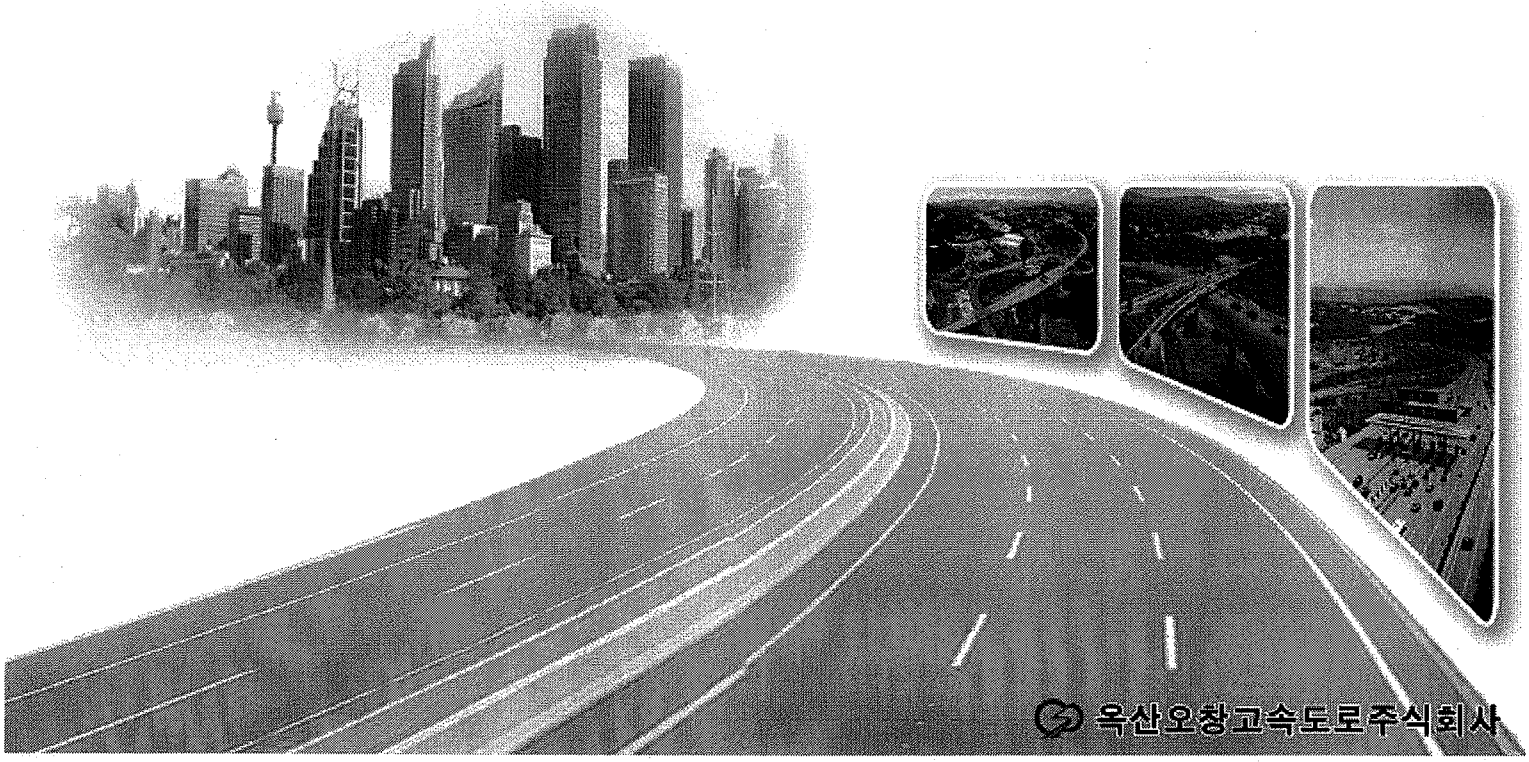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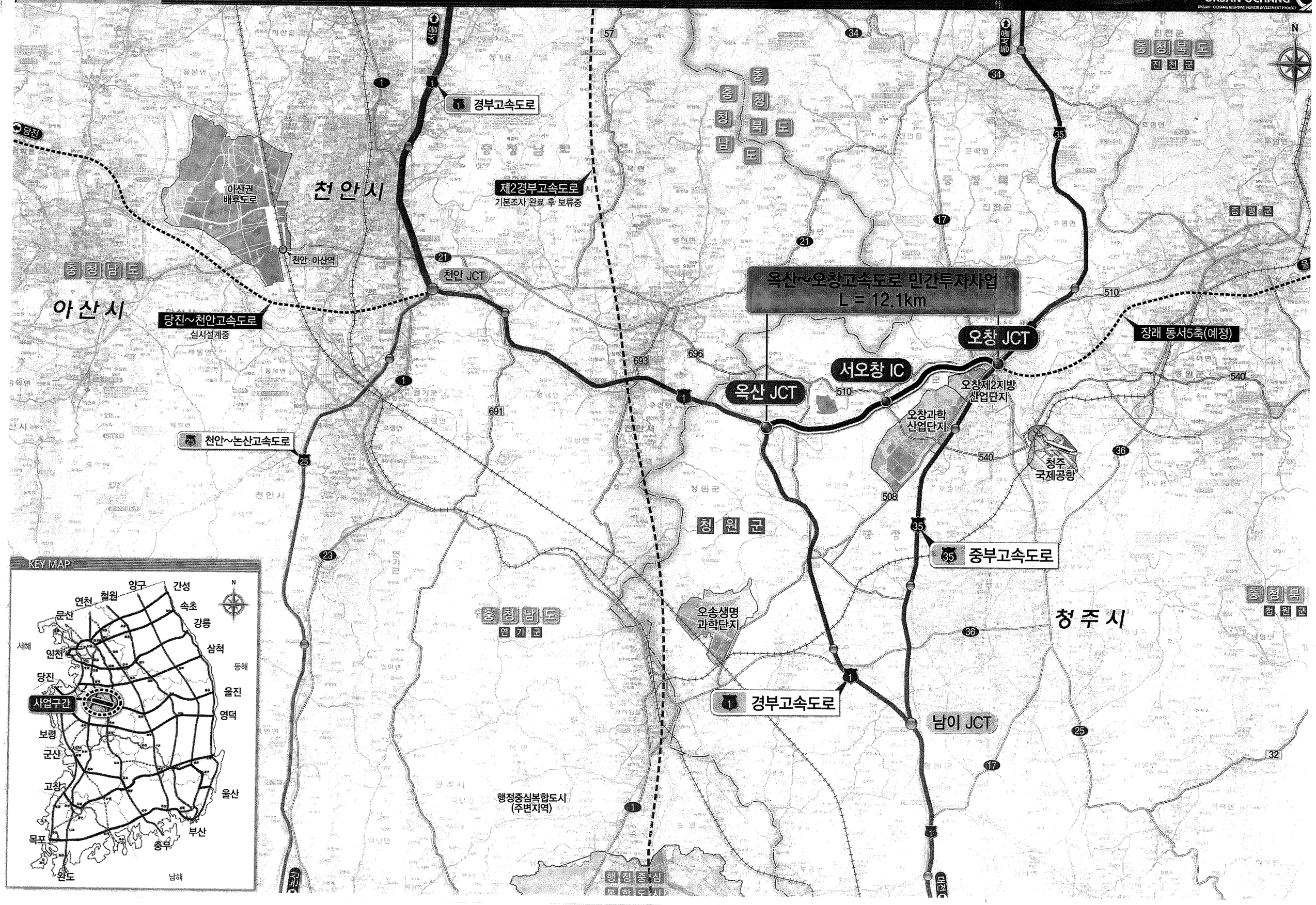
OKSAN-OCHANG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L = 12.1km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기본조사 완료 후 보류중
천안 JCT
아산권 배후도로
천안·아산역
당진~천안고속도로
실시설계중
천안~논산고속도로
옥산 JCT
서오창 IC
오창 JCT
오창제2지방 산업단지
오창과학 산업단지
청주 국제공항
장래 동서5축(예정)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이 JCT
오송생명 과학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청원군
연기군
KEY MAP
양구
간성
철원
연천
속초
문산
강릉
삼척
인천
당진
울진
사업구간
영덕
보령
군산
고창
울산
부산
목포
충무
완도
서해
동해
남해

사 업 개 요

-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 동서 5축(당진~천안~옥산~오창~영주~울진)의 구축
- 안산만권과 대전·청주권간 생산, 물류, 교류 기반조성 확대로 지역간 균형 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
- 동서5축의 조기건설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지역의 중추공항(Hub-Airport)으로 육성

사 업 범 위

사 업 명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출입시설	JCT 2개소 / IC 1개소
도로구분	지방지역 고속도로(100km/hr)	영 업 소	서오창본선영업소/서오창IC영업소
연 장	12.1km (왕복 4차로)	공사기간	4년(착공일로부터 48개월)
시설현황	교량 : 29개소/3,115m	주무관청	국토해양부
총사업비	2,356억원(2004. 9 불변가 기준)	사업시행자	GS건설 외 5개사(설계:(주)삼보기술단)

교통수요 예측결과

(단위 : 대/일)

구 간	거 리	2014년	2026년	2036년	2043년
옥산JCT~서오창IC	6.5km	16,495	44,129	47,244	49,402
서오창IC~오창JCT	5.6km	9,022	32,907	35,419	36,817
거리가중평균	12.1km	13,036	38,935	41,771	43,578

추진경위 및 계획

- 2004.11. :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지에스건설 컨소시엄 → 국토해양부)
- 2007.06. : 사업제안서 검토(적격성조사 등) 완료(PIMAC)
- 2008.05. :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국토해양부)
- 2008.1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대표사:GS건설)
- 2012.0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3. : 실시계획 승인 신청(예정)
- 2013. : 공사착공 및 금융약정 체결(예정)

(별첨) 노선계획도<별도송부>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TEL 070-7487-8676, FAX 02-3447-0507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 013 호 2012. 4. 12.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계획과장

제 목 : **관계기관 노선협의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2012.01.1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수립중인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입니다.

3.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를 귀 청에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의대상 관계기관 및 협의내용 붙임 참고)

붙 임 : 1. 협의대상 관계기관 및 협의내용 1부.
2. 옥산-오창고속도로 사업현황 1부. -끝-

서 울 중 구 남 대 문 로 5 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붙임1. 협의대상 관계기관 및 협의내용

구분		협 의 내 용	비 고
기관	부서		
국토 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	민자고속도로 노선 협의	
	산업입지정책과	오창 제2지방 산업단지 관련 협의	
국방부	37사단 작전처	도로건설에 따른 관할구역 군시설물 저촉 협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농림수산 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농지통과계획 및 농업진흥지역 협의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산림저촉에 따른 업무협의	
	보은국유림 관리소	산림저촉에 따른 업무협의	
문화 재청	발굴제도과	문화재 보존법에 관련된 노선 협의	
지식 경제부	광업등록 사무소	노선주변 광업권 및 장래 예정사업 관련 협의	

구분		협 의 내 용	비 고
기관	부서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	도시계획 관련 협의	
	균형건설국 도로과	국지도, 지방도 관련업무 협의 도로구역결정, 지방도 사업 추진상황 관련 협의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	청주공항과 연계한 노선계획 관련 협의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	하천통과에 따른 관련 협의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	산업단지 관련 협의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지통과계획을 고려한 노선 협의	
	농정국 산림녹지과	산지이용계획 협의	
	문화관광환경국 환경정책과	계획노선 주변 동식물상 및 환경영향 관련 협의	
	문화관광환경국 관광항공과	통과노선 주변 관광개발계획 관련 협의	
	문화관광환경국 문화예술과	문화재 관련 노선 협의	

구분		협 의 내 용	비 고
기관	부서		
청원군	건설과	도로건설에 따른 노선 협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련 협의	
	도시과	도시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관련 협의	
	경제투자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제2지방산업단지 관련 협의	
	농정과	농경지 통과구간 및 시설물 관련 협의	
	산림과	산지통과구간 노선계획 관련 협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시설 관련 협의	
	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시설 관련 협의	
	재난안전과	하천(소하천) 관련 협의	
	환경과 환경담당	계획노선 주변 동식물상 및 환경관련 협의	
	환경과 수질담당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협의	
	문화체육과	문화재(지방문화재 및 향토유적) 관련 노선 협의	

구분		협 의 내 용	비 고
기관	부서		
한국 도로공사	도로사업처 사업계획팀	유지관리 및 통합운영계획 등의 업무 협의	
	기획처 도로조사팀	시·종점 접속에 따른 노선협의(경부, 중부고속도로)	
	천안지사	경부고속도로 선형자료 입수 유지관리 등의 업무 협의	
	진천지사	경부고속도로 선형자료 입수 유지관리 등의 업무 협의	
한국토지 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개발사업부	도로건설에 따른 노선 및 관련계획 현황 협의	
한국 농어촌 공사	청원지사 지역개발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한국 철도공사	충북본부 시설처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한국철도 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도로건설에 따른 철도 건설계획 및 시설물 저촉 협의	
한국 전력 공사	충북지역본부 배전운영팀	사업노선(오창읍) 건설에 따른 시설물(전신주) 저촉 협의	
	충북지역본부 송전운영팀	사업노선 건설에 따른 시설물(철탑) 저촉 협의	
	서청주지사 배전운영팀	사업노선(옥산면) 건설에 따른 시설물(전신주) 저촉 협의	
한국 수자원 공사	충청지역본부 통합운영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구분		협 의 내 용	비 고
기관	부서		
대한 송유관 공사	충청지사 시설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한국 가스 공사	충청지사 안전환경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충북 개발 공사	사업개발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청주 농고 공동 실습소	행정실	서오창IC 노선계획에 따른 노선 협의	
한국 통신 (KT)	서청주지사 가경지점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LG U PLUS	대전센터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SK 텔레콤	중부네트웍본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KTF	대전네트웍본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세종 텔레콤	대전운용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SK 브로드밴드	청주지사 중부운영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충청 에너지 서비스	안전공급2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OKSAN ~ OCHANG
HIGH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사 업 현 황

옥산~오창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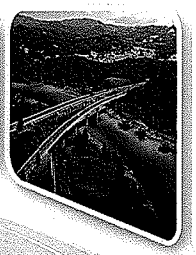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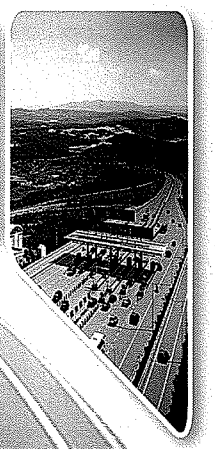

(가칭)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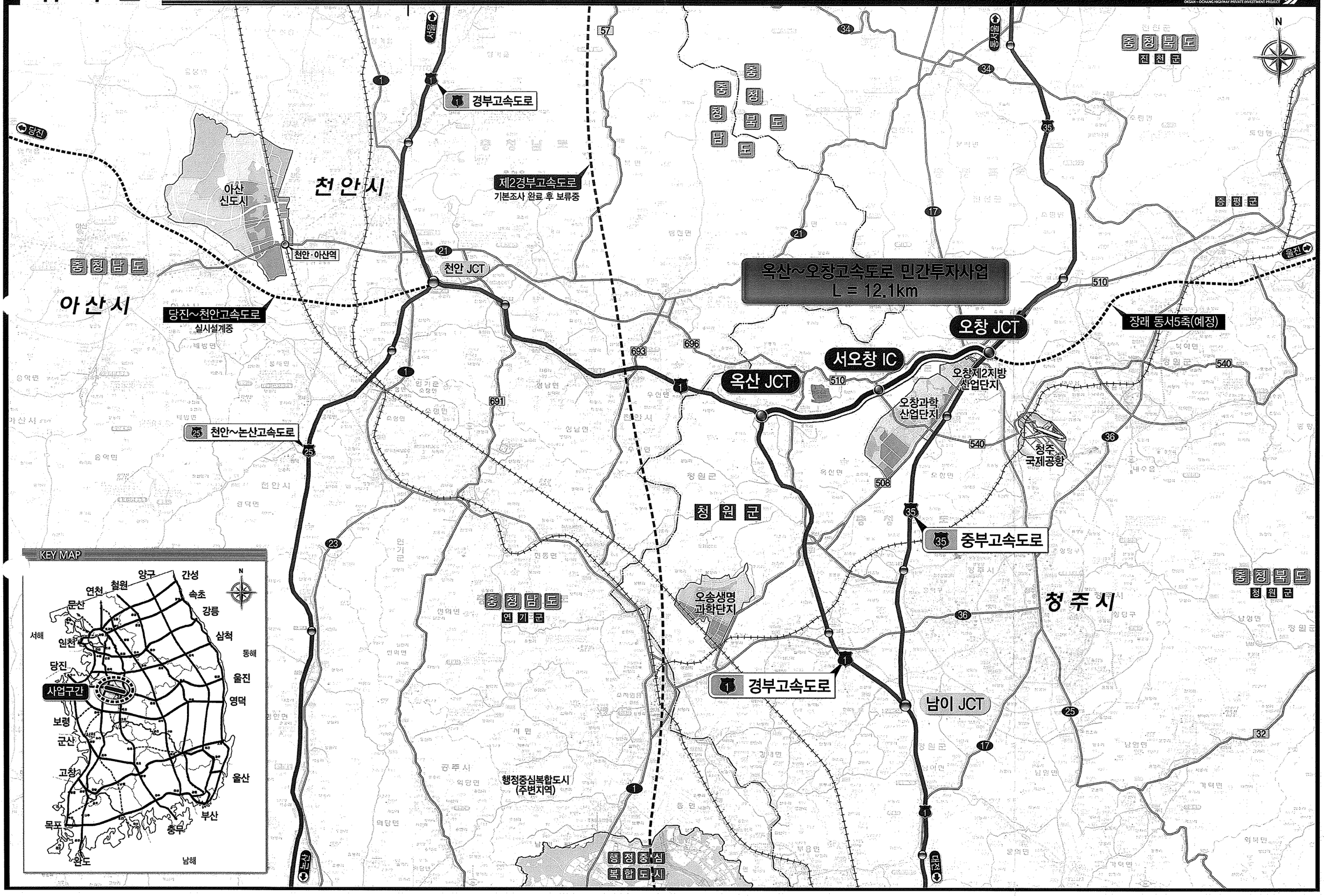
OKSAN-OCHANG
OKSAN – OCHANG HIGH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N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기본조사 완료 후 보류중
아산 신도시
천안·아산역
천안 JCT
천안시
아산시
중청남도
당진~천안고속도로
실시설계중
천안~논산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L = 12.1km
오창 JCT
서오창 IC
옥산 JCT
오창제2지방 산업단지
오창과학 산업단지
청주 국제공항
장래 동서5축(예정)
중부고속도로
청주시
중청북도
청원군
오송생명 과학단지
경부고속도로
남이 JCT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KEY MAP
양구
간성
철원
연천
속초
문산
강릉
서해
인천
삼척
동해
당진
울진
사업구간
영덕
보령
군산
고창
울산
부산
목포
충무
완도
남해

사 업 개 요

-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 동서 5축(당진~천안~옥산~오창~영주~울진)의 구축
- 안산만권과 대전·청주권간 생산, 물류, 교류 기반조성 확대로 지역간 균형 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
- 동서5축의 조기건설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지역의 중추공항(Hub-Airport)으로 육성

사 업 범 위

사 업 명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출입시설	JCT 2개소 / IC 1개소
도로구분	지방지역 고속도로(100km/hr)	영 업 소	서오창본선영업소/서오창IC영업소
연 장	12.1km (왕복 4차로)	공사기간	4년(착공일로부터 48개월)
시설현황	교량 : 29개소/3,115m	주무관청	국토해양부
총사업비	2,356억원(2004. 9 불변가 기준)	사업시행자	GS건설 외 5개사(설계:(주)삼보기술단)

교통수요 예측결과

【단 위 : 대/일】

구 간	거 리	2014년	2026년	2036년	2043년
옥산JCT~서오창IC	6.5km	16,495	44,129	47,244	49,402
서오창IC~오창JCT	5.6km	9,022	32,907	35,419	36,817
거리가중평균	12.1km	13,036	38,935	41,771	43,578

추진경위 및 계획

- 2004.11. :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지에스건설 컨소시엄 → 국토해양부)
- 2007.06. : 사업제안서 검토(적격성조사 등) 완료(PIMAC)
- 2008.05. :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국토해양부)
- 2008.1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대표사:GS건설)
- 2012.0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3. : 실시계획 승인 신청(예정)
- 2013. : 공사착공 및 금융약정 체결(예정)

공문 Fax 수신처

구분		Fax 번호	비 고
기관	수신처		
국방부	37사단 작전처	043 - 835 - 6091	
한국 도로공사	천안지사	041 - 590 - 0308	
	진천지사	043 - 531 - 3307	
한국토지 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043 - 298 - 2845	
한국 농어촌 공사	충북본부 청원지사	043 - 294 - 4193	
한국 철도공사	충북본부	02 - 361 - 8470	
한국철도 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042 - 607 - 3899	
한국 전력 공사	충북지역본부 배전운영팀	043 - 251 - 2281	
	충북지역본부 송전운영팀	043 - 251 - 2529	
	서청주지사 배전운영팀	043 - 230 - 8224	
한국 수자원 공사	충청지역본부 통합운영팀	043 - 230 - 4329	

구분		Fax 번호	비 고
기관	수신처		
대한 송유관 공사	충청지사 시설부	041 - 565 - 5077	
한국 가스 공사	충청지사 안전환경팀	042 - 229 - 34479	
충북 개발 공사	사업개발팀	043 - 210 - 9159	
청주 농고 공동 실습소	행정실	043 - 255 - 0548	공공기관 전자공문 가능함
한국 통신 (KT)	가경지점	043 - 235 - 0060	
LG U PLUS	서부운영담당 참조:청주네트 웍팀장	043 - 711 - 3709	
SK 텔레콤	중부네트웍본부	043 - 270 - 0911	
KTF	충청무선네트워 크운용단	042 - 600 - 0138	수신불량시 042 - 600 - 0132
세종 텔레콤	중부운용팀	070 - 7300 - 5119	
SK 브로드밴드	청주지사 중부운영팀	043 - 904 - 2419	
충청 에너지 서비스		043 - 261 - 4910	

관계기관협의 LIST (1)

○ : 협의완료
△ : 협의중
- : 미시행

관계기관					협의내용	공문협의	수신자/담당자	공문발송		회신접수		방문협의(유선협의 포함)					협의경과	중요도	비고
구분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정부부처 국토부 外 6개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	전근배	02-2110-6448	민자고속도로 노선 협의														
			이강녕 김대현	02-2110-8730 02-2110-6449	민자고속도로 노선 협의														
		산업입지정책과	김성수 주무관	02-2110-8178	오창 제2지방 산업단지 관련협의														
	국방부	37사단 작전처	한현덕 대위	043-835-6304 010-5076-1105	도로건설에 따른 관할구역 군시설물 저촉협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	최동호	02-2110-6704	환경영향평가 관련협의														
			전종철	02-2110-6716	환경영향평가 관련협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남기헌	02-550-1724	농지통과계획 및 농업진흥지역 협의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윤종혁	042-481-4126	산림저촉에 따른 업무협의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리계	이우성	043-540-7030	산림저촉에 따른 업무협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김순철	04-481-4946	문화재 보존법에 관련된 노선협의														
	지식경제부	광업등록 사무소	진동인 주무관	02-2110-4925	노선주변 광업권 및 장래 예정사업 관련 협의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	우상명	043-220-4131	도시계획 관련 협의														
		균형건설국 도로과	신경원 연종흠	043-220-4221 043-220-4224	국지도, 지방도 관련업무협의 도로구역결정, 지방도사업 추진상황관련 협의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	나기성	043-220-4251	청주공항과 연계한 노선계획관련 협의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	허 규 박영규	043-220-4344 043-220-4351	하천통과에 따른 관련 협의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	임헌동	043-220-3242	산업단지 관련 협의														
		농정국 농업정책과	연성일	043-220-3543	농지통과계획을 고려한 노선 협의														
		농정국 산림녹지과	박수찬	043-220-3794	산지이용계획 협의														
		문화환경관광국 환경정책과	박재신	043-220-4022	계획노선 주변 동식물상 및 환경영향 관련 협의														
		문화환경관광국 관광항공과	이병로	043-220-3981	통과노선 주변 관광개발계획 관련 협의														

2012-04-10

관계기관협의 LIST (2)

○ : 협의완료
△ : 협의중
- : 미시행

관계기관					협의내용	공문협의	수신자/담당자	공문발송		회신접수		방문협의(유선협의 포함)					협의경과	중요도	비고
구분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지자체(시/도)		문화환경관광국 문화예술과	박준순	043-220-3831	문화재 관련 노선 협의														
충청북도 外 1개	청원군	건설과	유재청 과장 박인규 박상갑	043-251-3490 043-251-3501 043-251-3503	도로건설에 따른 노선 협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련 협의														
		도시과	신문수 최용락	043-251-3591 043-251-3595	도시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관련협의														
		경제투자과	정광호	043-251-3233	오창과학산업단지, 제2지방산업단지 관련 협의														
		농정과 농지담당	조정희 정미영	043-251-3351 043-251-3352	농경지 통과구간 및 시설물 관련 협의														
		산림과 산지개발담당	배성호	043-251-3432	산지통과구간 노선계획 관련 협의														
		상하수도사업소 시설담당	이원표 신성호	043-254-4431 043-251-4451	상수도 시설관련 협의 하수도 시설관련 협의														
		재난안전과 하천담당	송충헌	043-251-3665	하천(소하천) 관련 협의														
		환경과 환경담당	박명옥	043-251-3441	계획노선 주변 동식물상 및 환경 관련 협의														
		환경과 수질담당	장미수	043-251-3472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협의														
		문화체육과 관광시설담당	이나경	04-251-3283	문화재(지방문화재 및 향토유적) 관련 노선 협의														
정부 투자기관 도로공사 外 9개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 사업계획팀	정동희 과장 이진만 차장	02-2230-4972	유지관리 및 통합운영계획 등의 업무협의														
		기획처 도로조사팀	전준태 차장	02-2230-4286	시 종점 접속에 따른 노선협의(경부,중부 고속도로)														
		천안지사	박경린 과장	041-590-0332	경부고속도로 선형자료 유지관리 등의 업무 협의														
		진천지사	권현수 과장	043-531-3332	중부고속도로 선형자료 유지관리 등의 업무 협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개발사업부	이동수 과장	043-290-3536	도로건설에 따른 노선 및 관련계획 현황 협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청원지사)	지역개발팀	김계범 과장	043-290-0531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시설처	홍기정 주임	043-641-2283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권진수 부장	042-607-3872	도로건설에 따른 철도 건설계획 및 시설물 저촉 협의														
		충북지역본부 배전운영팀	조현웅 과장	043-251-2216	사업노선(오창읍) 건설에 따른 시설물(전신주) 저촉 협의														

2012-04-10

관계기관협의 LIST (3)

○ : 협의완료
△ : 협의중
- : 미시행

관 계 기 관					협 의 내 용	공문협의	수신자/담당자	공문발송		회신접수		방문협의(유선협의 포함)					협의경과	중요도	비 고
구분	기관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한 국 전 력 공 사	서청주지사 배전운영팀	최의락 과장	043-230-8382	사업노선(옥산면) 건설에 따른 시설물(전신주) 저촉 협의														
		충북지역본부 송전운영팀	임명규 사원	043-251-2542	사업노선 건설에 따른 시설물(철탑) 저촉 협의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충청지역본부 통합운영팀	이상석 대리	043-230-4307	도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대 한 송 유 관 공 사	충 청 지 사 시 설 부	정관희 대리	041-565-0201	도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한 국 가 스 공 사	충청지사 안전환경팀	고일주 과장	042-229-3562	도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충 북 개 발 공 사	사업개발팀	엄재국 차장	043-210-9174	도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교육기관	청주 농고 공동실습소 (서오창 IC)	행 정 실	유재선 실장	043-256-4901	서오창 IC 노선계획에 따른 노선협의														
민간기업 KT 外 6개	한국통신(KT)	서청주지사 가경지점	최성일 과장	043-231-0060 010-3456-4999	도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LG U PLUS	서부운영담당 청주네트웍팀장	박국진 부장	010-8080-6780	도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SK 텔레콤	중부네트웍본부 엑세스 2팀 전송망 운용팀	김춘식 과장	010-5468-0003	도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KTF	충청무선네트워크운용단 엔지니어링팀 1파트	조재호 매니저	010-3451-6528	도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세종텔레콤	중부운용팀	김대기 대리	010-9400-1550	도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SK 브로드밴드	청주지사 중부운영팀	이경민 팀장	043-904-2400 010-7179-8433	도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충청에너지서비스	안전공급2팀	최현동 과장	043-261-4513	도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저촉 협의														

2012-04-10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경유)
제목 민원회신 내용 알림(옥산~오창)

1.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이종호님께서 제출한 민원사항(노선변경 요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민원에게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세부설계 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과 민원인이 제시한 후보노선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향후 노선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검토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인에게 회신한 문서(사본)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무관	사무관대우	과장	전결 2012. 4. 9.
유소영	김회룡		강호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181 (2012. 4. 9.) 접수

우 300-723 대전 동구 용전동 계족로 447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24 팩스번호 042-670-3484 / syyooii@mltm.go.kr / 비공개(5.6)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이종호 귀하 (우363-885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8-7)
(경유)
제목 민원회신(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변경 요구)

이종호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우리 청으로 이송된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께서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으로 인한 토지분할 등 불편을 말씀하시면서 후보노선을 제시하셨으나 현지여건상 노선을 변경하기는 곤란한 실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하게 될 세부설계 등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객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신 노선 등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 설명해 드릴 예정이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담당 유소영 ☎042-670-352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무관	사무관대우	과장	전결 2012. 4. 4.
유소영	김회룡		강호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048 (2012. 4. 4.) 접수

우 300-723 대전 동구 용전동 계족로 447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24 팩스번호 042-670-3484 / syyooii@mltm.go.kr / 비공개(5.6)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옥 산 오 창 고 속 도 로 주 식 회 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GS역전타워 7층, TEL 02-728-1742, FAX 02-728-1209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8 호 2012. 3.13.

수 신 : 국토해양부장관

참 조 : 광역도시도로과장

제 목 :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 관련 민원사항(노선 우회) 회신결과 송부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 광역도시도로과-334('12.2.8)호 관련입니다.

3.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접수된 민원(계획노선 우회 등의 요구사항_'11.11.25)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기에 송부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끝.

붙 임 : 민원회신 공문 사본 각 1부.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 산 오 창 고 속 도 로 주 식 회 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GS역전타워 7층, TEL 02-728-1742, FAX 02-728-1209

문서번호 : 옥산오창 제 2012-7호 2012.3.13.

수 신 : 이철한 님(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20-5 201호, 우편번호 363-881)

참 조 :

제 목 :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 계획노선 우회 제의에 대한 의견 회신

1. 귀 댁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토해양부장관께 제의한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 계획노선 우회 등의 요구사항('11.11.25)" 관련입니다.

3. 당사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귀하께서 제안내용을 검토한 바, 동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남북2축)와 중부고속도로(남북3축)를 연결하는 고속도로(100km/h)로서 귀하의 의견대로 지방도 510호선에 연결된 고속화도로(80km/h)로 계획하는 것은 본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계획인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에 부적합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4. 다만, 귀하 소유토지의 본 고속도로 통과에 따른 선형변경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 과정에서 귀하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노선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사업인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수

이 우편물은 2012-03-13
제 3102801013283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역전우체국장

옥 산 오 창 고 속 도 로 주 식 회 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GS역전타워 7층, TEL 02-728-1742, FAX 02-728-1209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2-016호 2012. 3 . 5.

수 신 : 국토해양부장관

참 조 : 광역도시도로과장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 선지급금 변제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 광역도시도로과-127('12.1.13)호 관련입니다.

3. 당사는 위 민원 해소방안으로 귀 부의 토지보상 이전에 민원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자금 10억원을 민원인에게 지급하되, 당사는 민원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4. 따라서, 귀 부에서는 향후 토지보상시 이를 감안하여 당사가 취득한 채권(10억원)을 민원인에게 지급할 토지보상비에서 공제 후 당사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당사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주)동춘산업개발 및 토지소유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히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본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귀 부에 알려드립니다.

첨 부 : 동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각 1부. -끝-

서 울 중 구 남 대 문 로 5 가 5 3 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 산 오 창 고 속 도 로 주 식 회 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GS역전타워 7층, TEL 02-728-1742, FAX 02-728-1209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1-009호 2011.12.16.

수 신 : 국토해양부장관

참 조 : 광역도시도로과장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원 이송건에 대한 회신결과 송부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 광역도시도로과-2100(2011. 12. 02) 관련입니다.

3.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편입 토지 민원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회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옥산~오창 고속도로 관련 토지편입 민원 회신 공문 사본 1부.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옥 산 오 창 고 속 도 로 주 식 회 사

우) 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GS역전타워 7층, TEL 02-728-1742, FAX 02-728-1209

문 서 번 호 : 옥산오창 제 2011-008호 2011년 12. 16.

수 신 : 이철한 님(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8-7, 우편번호 363-881)

참 조 :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관련 토지편입 민원 회신

1. 고객님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하여 고객님의 민원이 국토해양부에 접수되어 당사로 이송(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2100, 2011. 12. 02)된 "옥산오창 고속도로 편입토지 민원(이철한 님, 2011. 11. 25)" 관련입니다.

3. 당사는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당사가 제안한 본 사업의 계획노선은 현재 확정된 노선이 아니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확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사업인 옥산~오창 고속도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이철한 귀하 (우560-2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0-5)
(경유)
제목 민원회신(옥산-오창, 이철한님)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서면민원(접수번호 1110-007014, '11.10.27)에 대해 우리부에서 회신해드린 문서(광역도시도로과-1805, '11.10.28)와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고객님 소유토지 편입 여부와 편입되지 않을 경우 노선과 고객님 소유토지와의 이격거리 및 고객님 소유토지를 지적도에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동 사업 제안자인 (가칭)옥산오창고속도로(주)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으며 고객님 토지 편입 현황도를 붙임과 같이 송부해드립니다.

- 아 래 - (本表錯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편입	
오창읍 성산리	8-7	목	48,066㎡	8,935㎡	

※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에 대한 편입현황이며, 동 사업은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므로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붙 임 : 옥산-오창 민원인 토지편입 현황도 1부. 끝.

五山-梧倉間高速道路造成 編入土地現況 (2011-11-16 現在)

所在地, 地番, 地目, 地籍面積 編入面積, 備考

梧倉邑里2里, 8-2 — 牧 — 81.966㎡ — 10.285㎡ 考證諸所有

〃 8-7 — 〃 — 48.066 〃 — 8.935 〃 〃

〃 8 — 田 — 840 〃 — 588 〃 〃

計 130.872㎡ — 19.808㎡

(39.658 坪) (6002 坪) 墓地面積 痛落

2011-11-16 考證諸所正 [signature] 11-11-16

Generated by CamScanner from intsig.com

2011-11-16 [illegible]

60029

국토해양부

사무관대구	김대현	지방사무관	진근배	과장	전결 11:09 김태방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1915 (2011. 11. 09) 접수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광역도시도로과 / http://www.mltm.go.kr

전화 02-2110-6449 전송 02-504-9056 / portkdh@mltm.go.kr / 비공개(6)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Generated by CamScanner from intsig.com

국토해양부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이철한 귀하 (우560-2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0-5)
(경유)
제목 민원회신(옥산-오창, 이철한님)

국토해양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지로 고객님 소유 토지가 편입되는지 여부와 편입되지 않을 경우 노선과 고객님 소유 토지와의 이격거리 등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 사업 제안자인 (가칭)옥산오창고속도로(주)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편입	
1	오창읍 성산리	8	전	840	588	
2	오창읍 성산리	8-2	묵	81,966	10,285	
3	오창읍 성산리	산137-9	임	132	132	
4	오창읍 성산리	산137-8	임	159	159	
5	오창읍 성산리	8-1	목	20,712	미편입	도로구역선에서 약 138m 이격
6	오창읍 성산리	8-9	목	10	미편입	

※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에 대한 편입현황이며, 동 사업은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으로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

Generated by CamScanner from intsig.com

국토해양

사무관대우	김대현	지방사무관	전근배	과장	전결 10/28 김태병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1805 (2011 10 28.) 접수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68(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교통 정책실 도로정책관 광역도시도로과 / http://www.mltm.go.kr

전화 02-2110-6449 전송 02-504-9056 / portkdh@mltm.go.kr / 비공개(6)

Ma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Generated by CamScanner from intsig.com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위기 다함

수신자 청원군수(건설과장)

(경유)

제목 오창-옥산 고속도로 노선 및 일정 회신

1. [redacted] 관련입니다.

2. 귀 군에서 요청한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가.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7×9)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으로 동서 5축의 일부구간으로 당초 경부고속도로 옥산JCT에서 오창과학산단과 오창지방산단을 통과하여 중부고속도로 오창JCT을 연결하는 노선을 계획하였으나,

나. 귀 군의 요청으로 오창과학산단과 오창지방산단의 단절 방지를 위하여 오창읍 외곽을 통과하여 중부고속도로 오창JCT 를 연결하는 수정노선으로 귀 군과 협의하여 확정하였으며, 수정노선은 2009년 12월에 설계 VE까지 마쳤습니다.

다. [redacted] 공문으로 이미 회신한 내용으로 노선이 사업범위 밖의 지역이며 사업비 증가 및 교통량 감소 등으로 수용이 곤란함을 널리 이해 바랍니다.

라. 더불어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1년에 협약체결 및 실시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2012년 이전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옥산-오창 고속도로가 충청권 지역의 발전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중인 국가중요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귀 군

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국토해양부장관

주무관 김상철 행정사무관 이종현 과장 전결 11/05 강희업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2784 (2010.11.05.) 접수 건설과-@N ( )

우 42742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광역도시도로과 / http://www.mltm.go.kr

전화 02-2110-6452 /전송 02-504-9056 / prolence@mltm.go.kr / 비공개

GS건설

GS건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5가
GS 역전타워 7층
전화 : 02)756-1937 FAX : 02)728-1966
http://www.gsconst.co.kr

문서번호 : GS건 SOC 09-103 2009. 7. 16

수 신 : 청원군수

참 조 : 건설과장, 도시과장

제 목 :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 관련 회신

1.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군에서 발송한 공문 건설과 - 12744 호('09. 5. 27) 및 - 14679 호('09. 6. 8)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 관련입니다.

3. 옥산~오창간 고속도로사업(이하 본 사업)의 노선대는 '천안~오창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예산처, '03. 7) 및 타당성조사(건설교통부, '06. 6)' 에서 노선의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중앙정부와 귀 군을 포함한 관련 지자체의 협의결과로 결정된 노선입니다.

4. 더불어, 본 사업 제3자 제안공고(국토해양부 제2008-182 호, '08. 5. 30)에 명기된 사업노선의 범위가 시점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 및 종점 청원군 오창면 (중부고속도로)으로 고시되었는바, 귀 군에서 건의한 노선은 본 사업의 범위에 벗어나므로 노선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또한, 귀 군이 건의한 노선은 도로의 기능성, 환경성에 불리하며 사업비의 추가 증가 및 교통량 감소로 인한 막대한 경제성 및 사업성 저하가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귀 군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변경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끝으로, 본 사업 노선은 GS건 SOC-91('09. 6. 3)호로 기 발송한 바와 같이 귀 군, 충청북도, 국토해양 부 등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된 노선임을 재차 밝혀드리며, 귀 군을 포함한 충청권의 균형발전 및 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해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청원군 노선변경 건의」 검토 자료 1부. 끝.

(가칭)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 표 회 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 가 537
지 에 스 건 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허 명 수

擔當	管理者	任員	合議	本部長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변경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1. 청원군 건설과-12744호('09.5.27) -14679호('09.6.18) 및 도시과-11793호('09.5.28)와 관련입니다.

2. 귀 군에서 협의요청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및 옥산~오창 노선변경 재건의 사항에 대하여 우리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가. 옥산~옥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광역도시도로과-1567호('09.5.11)로 이미 회신 한 바와 같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7×8)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동서 5축의 일부구간인 옥산~오창 고속도로사업의 현 노선은 "천안~오창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귀 군과 협의결과로 결정된 노선 임

다. 또한, 제3자 제안공고에 명기된 사업노선의 범위가 시점부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 및 종점부 청원군 오창면(중부고속도로)으로 고시되어, 귀 군에서 건의한 노선은 사업범위 외 지역으로 국가기간망 계획인 동서5축 노선에 저촉되며, 사업비 증가 및 교통량 감소 등으로 수용이 곤란한 노선으로 판단됨

3. 옥산~오창 고속도로 사업은 충청권의 균형발전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계획기간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해양부장관

수신자 청원군수(건설과장), 청원군수(도시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전결 07/08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2097 접수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http://www.mltm.go.kr

전화 2110-6456 전송 504-9056 / nyj9896@mltm.go.kr / 대국민공개

GS 건설

GS 건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5 가
GS 역전타워 7 층
전화 : 02)756-1937 FAX : 02)728-1966
http://www.gsconst.co.kr

문서번호 : GS 건 SOC 09-91 2009. 06. 3

수 신 : 청원군수

참 조 : 건설과장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의견 통보」 관련 회신

1.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군에서 발송한 청원군 건설과-10663 호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의견통보」 ('09. 5. 6) 관련입니다.

3.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의 계획노선은 교통시설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7×9)중 동서 5 축으로 당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08. 12. 9)된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에서 이미 귀 군, 충청북도 국토해양부 등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된 노선입니다.

4. 또한, 본 사업 제 3 자 제안공고(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182 호, '08. 5. 30)후에도 귀 군 및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확정한 노선입니다.

5. 따라서, 금번 「민원처리 요청(청원군 건설과-8400, '09. 4. 1)」 은 귀 군의 행정력을 발휘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귀 군을 포함한 충청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비한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 부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노선 협의자료 1 부. 끝.

(가칭)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 표 회 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 가 537
지 에 스 건 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허 명 수

SOC팀장

擔當	管理者	任員	合議	本部長
[illegible]	[illegible]			

국토부와 협의 완료

GS 건설

GS 건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5가
GS 역전타워 7층
전화 : 02)766-1287 FAX : 02)728-1986
http://www.gsconst.co.kr

문서번호 : GS건 SOC 09-98 2009. 04. 27

수 신 : 청원군수

참 조 : 건설과장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서」 관련 회신

1.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군에서 국토해양부에 발송한 청원군 건설과-8400 호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서」('09. 4. 10) 관련입니다.

3.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의 계획노선은 교통시설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7×9)중 동서 5 축으로 당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08. 12. 9) 이전 충청북도 도로과(도로과 - 2072, '06. 3 .27), 청원군 건설과(건설과 - 4811, '06. 3. 24), 청원군 혁신팀(혁신팀-1631, '07. 11. 5)과 기 협의하여 확정한 노선입니다.

4. GS 컨소시엄은 2004 년 11 월 최초제안 이후 2008 년 9 월 수정제안시, 귀 군의 개발계획에 따른 오창 제2산업단지 우회 및 제반 민원사항을 수용하여 막대한 사업비 증액(약 400 억원)과 더불어 현저한 사업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한 바, 금번 귀 군의 건의에 의한 노선계획 변경시 사업비가 추가 증액(약 1,100 억원)되어야 하므로, [redacted]임을 알려드립니다.

5. 끝으로, 귀 군을 포함한 충청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간 균형발전,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 부 : 옥산~오창 고속도로 관계기관 사전협의 사항 1 부. 끝.

선 결	군수		결재(공람)	부군수	
접수일시	2009.4.28 시 분	번호	10093	과장	
처리과	건설과 도로담당	전정현		담당	

※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illegible] 통보하고 [illegible] 사업추진이 만드었었는 추지

(가칭)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 표 회 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 가 537
지 에 스 건 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허 명 수

수　　신

충청북도교육청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기한 연기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3404(2012.4.12)호

3. 옥산- 오창간 민자고속도록 개설에 따른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기한 및 사유 ○

장소	당초 이전	변경 기한	사 유
오창읍 성산리 산145 - 21번지 일원	2015. 8. 31. 까지	2016.08.31 까지	통합목장을 보은군 산외면 보은자영고 목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와 상수원 보호시설에 따른 신축의 어려움으로, 현 목장 잔여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목장 시설 신축에 따른 공사기간이 1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끝.

충청북도교육감

★장학사 **김일환** 직업교육담당 장학관 **박영철** 과학직업교육 전결 2013. 10. 21. 과장 **오윤석**

협조자

시행 과학직업교육과-16349 (2013. 10. 21.) 접수 도로계획과-6473 (2013. 10. 21.)

우 361-70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산남동,충청북도교육청) / http://www.cbe.go.kr

전화번호 043-290-2212 팩스번호 043-290-2737 / hil7180@cbe.go.kr / 대국민 공개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 토 교 통 부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 대표이사
(경유)
제목 (옥산-오창)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알림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2077호('13.6.12)·도로공사과-4880호('13.10.7) 및 옥산오창고속도로㈜ 옥산오창 제2013-38호('13.6.5)의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제출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와 실시협약 제1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함을 알려 드리니,

3.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등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관리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금융약정 체결 및 공사 착수 등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내용을 관보 게재할 예정이니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및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공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시계획 승인조건 1부.
2. 고시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인

사무관대우	민인홍	기술서기관	유병수	과장	전결 2013. 10. 16. 김영국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2015 (2013. 10. 16.)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등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조건

Ⅰ. 일반조건

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상의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상의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착수하고 착공보고서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서에 포함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승인한 이후의 실시계획의 시행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는다.

5.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방안 중 부분수용 및 미수용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는다.

6. 실시계획의 승인사항(조건)이 반영된 실시계획 승인서(10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특별조건

1. 경부고속도로 접속을 위한 옥산JCT 설치계획은 관계기관 회의결과(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1387호, '13.8.8)에 따른다.

2. 돛대산 및 오창읍 도시계획구간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민원 해결 지연에 따른 보상 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아니한다.

3. 본 공사 하도급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 준수 및 우리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하도급 낙찰비율'에 대한 배점한도의 하향 조정에 따른 저가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우리부가 고시한 심사기준이 가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하도급 관련 내역을 즉시 감리자 검토를 거쳐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 또는 사업관리자의 하도급 내역 적정여부 검토 결과 저가하도급 또는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 요구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 시에는 발파,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에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기타 노선통과구간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해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619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 도 로 명 : 고속국도 제32호선(아산~울산선)

○ 위 치 : (시점)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경부선 316.6km)
(종점) 충북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중부선 264.8km)

○ 연 장 : 12.1㎞

○ 차 로 수 : 왕복 4차로

○ 출입시설 : JCT 2개소, IC 1개소

○ 영업시설 : 2개소(본선 1개소, IC 1개소)

○ 휴게시설 : 없음

○ 공 사 비 : 1,629억원 (2004.9.1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 출자자 및 지분율

계	이머징인프라 투융자	발해인프라 투융자	교보 생명보험	지에스 건설	대선 건설	케이알 산업
100%	70%	10%	10%	5%	4%	1%

※ 향후 금융약정 결과에 따라 출자자 및 출자지분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관리기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에 따라 용지보상, 사업관리 등 주무관청의 일부 업무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 2,305억원
(2004.9.1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포함)

○ 총투자비 : 3,306억원
(경상가격 기준, 보상비 미포함)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비 고
3,306	456	382	817	1,063	588	

※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5. 공사시행방법

○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를 시행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소요토지는 주무관청이 매입하여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

7. 부속시설 사업계획 : "없음"

8. 부대사업 시행계획 : "없음"

9.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고시 이후 별도 고시

10. 관계서류 열람 등 기타사항

○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옥산오창고속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

※ 옥산오창고속도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22-21, ☎ 070-4421-869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 042-670-3214

○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열람

- 상기와 같이 열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수신자 청원군수(농정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견 회신

---

1. 관련 : 농정과-20226(2013. 08. 22)호.

2. 옥산-오창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건에 대해 우리지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협의사항

- 본선 STA.2+100~2+00(좌) : 호죽1지선(옥산면 호죽리 122전 일원)

⇒ 공기변맨홀(No.28+30)특성을 고려 정점부에 용수관로 이설

⇒ 분수공(No.30)은 우측으로 분기된 별도의 이설관로 및 분수공 설치

- 본선 STA.3+580(중) : 소로간선(옥산면 호죽리 48답 일원)

⇒ 보강흄관으로 별도처리 불필요

- 오창 RAMP-C STA.0+440 : 청미우간선 학소잠관 토구

⇒ 오창읍 도암리 42-1번지 구거는 편입토지에서 제외

나. 공통사항

- 용?배수로 및 농로의 단절이 없도록 연결하고, 편입되는 용?배수로의 대체시설은 도로 측구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 하여야 합니다.

- 도로의 우수가 용?배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시공전 세부계획으로 협의 하여야 합니다. 끝.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

과장	박상구	차장	휴가	지역개발팀장	김일환	청원지사장	08/29 조성우

협조자

시행 청원지역-3723 (2013.08.29.) 접수 농정과-20826 (2013.08.29.)

우 360-8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

전화 043-290-0582 /전송 043-294-4193 / vlzkcb@ekr.or.kr / 공개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

청 원 군

수신자 충청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협의 심사의견서 제출

1. 도 농업정책과-7843(2013.07.09.)호와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협의 심사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농지전용심사의견서 1부(원본별송). 끝.

청 원 군수

★농지담당 우동환 농정과장 전결 08/21 이인수

협조자

시행 농정과-20041 (2013.08.21.) 접수 ( )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북문로1가 17-3번지)/ http://www.dhwoo@korea.kr
전화 043)251-3351 /전송 043)251-4008 / test@puru.net / 공개

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

신청사항	성 명	국토교통부장관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신청토지	소 재 지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403-7번지 외 986필지(비 농지포함)					
		면 적 (㎡)	답	전	농지개량	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면적
			370,965	115,201	57,558	543,724	772,289	1,316,013
		진흥지역안토지	255,222	23,672	41,378	320,272		320,272
	사업계획	전용목적 (용 도)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 사 계 획	착공일 : 승인일로부터, 준공예정 : 2017년 12월 일					

심 사 사 항			의 견			의견결정 이 유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	용도구역 행위제한	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가능행위
		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해당없음
	농지전용의 적 정 성	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사업계획에 의거 적합
		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적정		부적정	전용목적실현에 적합
	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	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일부정비		정비	일부미정비
		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분산		집단화	일부미집단화
		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낮음		높음	없음
		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	낮음		높음	없음
		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	낮음		높음	없음
		종 합 의 견	불필요		필요	적정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통풍·통작에 영향등)	※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피해방지계획에 의함
		※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피해방지계획에 의함
		※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적정
		종 합 의 견	적정		부적정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낮음
		※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낮음

종 합 의 견		
	적합(일부적합)	-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활성화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므로 농지전용협의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부 적 합	

2013년 월 일

청 원 군 수

조 사 자 직급 : 지방농업주사 성명: 우 동 환

농정과장 확인 직급: 지방농업사무관 성명: 이 인 수

충청북도지사 귀 하

기재요령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 글자를 음영으로 처리 합니다., 전자결재로 시행시 「직인생략」 가능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토 지 편 입 현 황

가. 토지편입현황 (단위 : ㎡)

용도구역별	합계	농 지				비농지
		계	답	전(과수원)	농지개량	
합 계	1,316,013	543,724	370,965	115,201	57,558	772,289
농업진흥지역	320,272	320,272	255,222	23,672	41,378	0.0
진흥구역	257,635	257,635	212,318	13,017	32,300	0.0
보호구역	62,637	62,637	42,904	10,655	9,078	0.0
농업진흥지역밖	995,741	223,452	115,743	91,529	16,180	772,289

위농지전용 면적은 농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별지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 심사 의견서상의 농지면적과 일치하며 (전용대상농지의 지목별 면적이 정확히 산출되어 있음)신청부지 내 누락된 농지(사실상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부지 포함)가 없음을 확인함.

2013년 월 일

조사자 : 지방농업6급 정 미 영 (인)

확인자 : 농 지 담 당 우 동 환 (인)

청 원 군

충청북도지사 귀하

사실농지 편입조서

□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승인

□ 시 행 자 : ~~국토교통부장관~~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농지생명 정 대 [illegible]

□ 편입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해	당	없	음		

2013년 7월 일

조사자 : 지방농업6급 정 미 영 (인)

확인자 : 농 지 담 당 우 동 환 (인)

청 원 군 [illegible]

충청북도지사 귀하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에 따른 의견

□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승인

□ 사업시행자 성명(명칭) : ~~국토교통부장관~~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농지생명 정대

□ 편입 조서

따로 붙임

□ 협의의견

○ 편입되는 농수산식품부 국유 재산 및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등)이 사업부지 내 편입 시 인근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한국농촌공사 시행 경지정리 내에 대하여는 농촌공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편입되어 기능을 상실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전환 등을 충청북도와 협의 할 것

상기 협의조건의 의견으로 협의코자 함.

2013. 7. .

농림부 국유재산담당자 : 代 박광필 황 금 빛 (인)

확인자 : 농업기반담당 : 김 성 국 (인)

청 원 군 수

충청북도지사 귀하

편 입 조 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비고
1	옥산면 사정리	504	구	36	36	농업진흥구역	36	
2	옥산면 사정리	499-2	도	614	448	농업진흥구역	448	
3	옥산면 사정리	498-3	구	750	545	농업진흥구역	545	
4	옥산면 사정리	500	구	236	8	농업진흥구역	8	
5	옥산면 사정리	498	구	796	104	농업진흥구역	104	
6	옥산면 사정리	499-3	도	492	21	농업진흥구역	21	
7	옥산면 사정리	499	도	779	167	농업진흥구역	167	
8	옥산면 사정리	456-16	구	340	237	농업진흥지역밖	237	
9	옥산면 사정리	503	도	175	11	농업진흥구역	11	
10	옥산면 수락리	527-1	구	87	38	농업진흥구역	38	
11	옥산면 수락리	489-5	구	43	1	농업진흥구역	1	
12	옥산면 수락리	489-1	구	10,000	185	농업진흥구역	185	
13	옥산면 수락리	524	도	1,103	55	농업진흥구역	55	
14	옥산면 수락리	487-1	구	3,660	1,253	농업진흥지역밖	1,253	
15	옥산면 수락리	484-5	구	124	124	농업진흥지역밖	124	
16	옥산면 수락리	487-3	구	81	81	농업진흥구역	81	
17	옥산면 수락리	487-6	구	217	217	농업진흥구역	217	
18	옥산면 수락리	484-6	구	4,558	819	농업진흥구역	819	
19	옥산면 수락리	500-2	구	23	23	농업진흥지역밖	23	
20	옥산면 수락리	530	구	774	26	농업진흥구역	26	
21	옥산면 수락리	498-1	구	3,441	107	농업진흥구역	107	
22	옥산면 수락리	528	구	776	105	농업진흥구역	105	
23	옥산면 수락리	491	구	481	56	농업진흥지역밖	56	
24	옥산면 수락리	498-7	구	165	165	농업진흥구역	165	
25	옥산면 수락리	494-3	구	56	24	농업진흥지역밖	24	
26	옥산면 수락리	150-6	구	215	44	농업진흥지역밖	44	
27	옥산면 수락리	494-1	구	7,789	151	농업진흥구역	151	
28	옥산면 수락리	150-11	구	33	33	농업진흥구역	33	
29	옥산면 수락리	527	구	542	37	농업진흥구역	37	
30	옥산면 장남리	262-6	구	268	72	농업진흥구역	72	
31	옥산면 장남리	398	구	2,187	304	농업진흥구역	304	
32	옥산면 장남리	400	구	1,746	359	농업진흥구역	359	
33	옥산면 장남리	402	구	2,206	202	농업진흥구역	202	
34	옥산면 장남리	399	도	12,102	1,563	농업진흥구역	1,563	
35	옥산면 장남리	403	구	10,202	389	농업진흥구역	389	
36	옥산면 호죽리	835	구	4,645	243	농업진흥구역	243	
37	옥산면 호죽리	812	구	3,260	49	농업진흥구역	49	
38	옥산면 호죽리	808	구	4,605	1,222	농업진흥구역	1,222	
39	옥산면 호죽리	807	구	906	557	농업진흥구역	557	
40	옥산면 호죽리	803	구	1,977	288	농업진흥지역밖	288	

代 [illegible]

농림부 국유재산담당자 : 황 금 빛 (인)

확인자 : 농업기반담당자 : 김 성 국 (인)

편 입 조 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비고
41	옥산면 호죽리	798	구	8,195	334	농업진흥지역밖	334	
42	옥산면 호죽리	804	구	3,646	1,868	농업진흥구역	1,868	
43	옥산면 호죽리	802	구	3,874	524	농업진흥지역밖	524	
44	옥산면 호죽리	797	구	7,084	1,060	농업진흥구역	1,060	
45	옥산면 호죽리	792	구	9,762	1,062	농업진흥지역밖	1,062	
46	옥산면 호죽리	787	구	12,734	1,220	농업보호구역	1,220	
47	오창읍 화산리	226	구	2,140	17	농업진흥지역밖	17	
48	오창읍 화산리	202-1	구	1,174	104	농업보호구역	104	
49	오창읍 화산리	202	구	6,853	4,231	농업보호구역	4,231	
50	오창읍 성산리	703	구	5,746	1,165	농업진흥지역밖	1,165	
51	오창읍 성산리	702	구	1,124	390	농업진흥구역	390	
52	오창읍 성산리	668	구	3,765	2,481	농업진흥지역밖	2,481	
53	오창읍 성산리	643-2	구	55,132	12,338	농업진흥구역	12,338	
54	오창읍 양지리	204	구	1,408	136	농업진흥지역밖	136	
55	오창읍 복현리	456-1	구	16,312	674	농업진흥지역밖	674	
56	오창읍 복현리	1-1	구	889	293	농업진흥지역밖	293	
57	오창읍 복현리	1-4	구	1,094	175	농업진흥지역밖	175	
58	오창읍 복현리	1-7	도	6,761	2,068	농업진흥지역밖	2,068	
59	오창읍 복현리	1-6	구	718	161	농업진흥지역밖	161	
60	오창읍 복현리	1-8	구	4,150	2,047	농업진흥지역밖	2,047	
61	오창읍 복현리	1-13	도	305	234	농업진흥지역밖	234	
62	오창읍 복현리	456-21	구	742	697	농업진흥지역밖	697	
63	오창읍 복현리	1-2	도	644	644	농업진흥지역밖	644	
64	오창읍 복현리	1-3	구	1,018	271	농업진흥지역밖	271	
65	오창읍 복현리	456-8	구	742	221	농업진흥지역밖	221	
66	오창읍 복현리	1-5	구	1,338	765	농업진흥지역밖	765	
67	오창읍 복현리	52-12	도	420	18	농업진흥지역밖	18	
68	오창읍 장대리	16-4	구	1,270	144	농업진흥지역밖	144	
69	오창읍 장대리	16-6	구	564	82	농업보호구역	82	
70	오창읍 장대리	16-7	구	500	500	농업보호구역	500	
71	오창읍 장대리	16-5	도	12,869	1,553	농업보호구역	1,553	
72	오창읍 장대리	16-9	구	348	193	농업보호구역	193	
73	오창읍 장대리	16-32	구	781	752	농업보호구역	752	
74	오창읍 장대리	16-29	구	802	335	농업진흥구역	335	
75	오창읍 장대리	16-47	도	11,702	1,919	농업진흥구역	1,919	
76	오창읍 장대리	16-21	구	2,373	304	농업진흥구역	304	
77	오창읍 도암리	363-4	구	2,354	443	농업보호구역	443	
78	오창읍 도암리	360-15	구	182	182	농업진흥구역	182	
79	오창읍 도암리	363-13	구	300	300	농업진흥구역	300	
80	오창읍 도암리	363-9	도	3,390	3,062	농업진흥구역	3,062	
81	오창읍 도암리	363-11	구	255	255	농업진흥구역	255	
82	오창읍 도암리	363-5	구	6,284	1,967	농업진흥구역	1,967	

代 [illegible]

농림부 국유재산담당자 : 황 금 빛 (인)

확인자 : 농업기반담당자 : 김 성 국 (인)

편입농지 농업생산 기반정비(계획) 현황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우산오창고속도로(주)
농지담당 정대

□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현황 (단위 : ha)

구 분	기시행		시행예정	
	년도	면적	년도	면적
일반경지정리	사정지구(사정,1997)	36.0		
	깊은내지구(장남·백현,1995)	41.0		
	호죽지구(호죽,1985)	57.7		
	복현지구(복현,1997)	8.34		
	가곡지구(괴정·도암,2000)	✓ 0.0	농지담당 정대	
	장대지구(장대,1979)	112.0		

※ 상기 일부지역은 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 관리지역으로 청원지사와 협의할 것

□ 농업기반공사 수혜지역 편입 여 · 부 (여) - 한국농촌공사 의견 붙임

2013년 7월 일

조사자 : 지방시설7급 김 진 수 (인)

확인자 : 농업기반담당 김 성 국 (인)

청 원 군 수

충청북도지사 귀하

초지편입 현황 및 의견

☐ 사업시행자 (명칭) : ~~국토교통부장관~~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편입 조서 농지생산 정비구역

(단위: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소 유 자	비 고
해	당		없	음	

☐ 사용목적 :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승인

☐ 협의 의견

의 견 없 음

2013. 7. .

조사자 : 축산과 지방농업주사보 이 재 동 (인)

확인자 : 축산과 친환경축산담당 이 정 행 (인)

청 원 군

충청북도지사 귀하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

청 원 군

수신자 충청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협의 심사의견서 제출

1. 도 농업정책과-7843(2013.07.09.)호와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협의 심사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농지전용심사의견서 1부(원본별송). 끝.

청 원

★농지담당 우동환 농정과장 전결 08/21 이인수

협조자

시행 농정과-20041 (2013.08.21.) 접수 ( )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3(북문로1가 171-3번지)/ http://www.dhwoo@korea.kr
전화 043)251-3351 /전송 043)251-4008 / test@puru.net / 공개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

청 원 군

수신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의견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건에 대하여 귀 기관의 관리지역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3.8.27일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다. 사업면적 : 1,316,118㎡(농지면적 543,724㎡)
라. 편입지역 : 충북 청원군 옥산면~오창읍 일원

붙임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류 1부.(별송) 끝.

청 원

농지담당 08/22 우동환

협조자

시행 농정과-20226 (2013.08.22.) 접수 ( )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북문로1가 171-3번지)/ http://www.dhwoo@korea.kr
전화 043)251-3351 /전송 043)251-4008 / test@puru.net / 공개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수신자 청원군수(농정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견 회신

---

1. 관련 : 농정과-20226(2013. 08. 22)호.

2. 옥산-오창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건에 대해 우리지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협의사항

- 본선 STA.2+100~2+00(좌) : 호죽1지선(옥산면 호죽리 122전 일원)

⇒ 공기변맨홀(No.28+30)특성을 고려 정점부에 용수관로 이설

⇒ 분수공(No.30)은 우측으로 분기된 별도의 이설관로 및 분수공 설치

- 본선 STA.3+580(중) : 소로간선(옥산면 호죽리 48답 일원)

⇒ 보강흉관으로 별도처리 불필요

- 오창 RAMP-C STA.0+440 : 청미우간선 학소잠관 토구

⇒ 오창읍 도암리 42-1번지 구거는 편입토지에서 제외

나. 공통사항

- 용?배수로 및 농로의 단절이 없도록 연결하고, 편입되는 용?배수로의 대체시설은 도로 측구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 하여야 합니다.

- 도로의 우수가 용?배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시공전 세부계획으로 협의 하여야 합니다. 끝.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 

과장	박상구	차장	휴가	지역개발팀장	김일환	청원지사장	08/29 조성우

협조자

시행 청원지역-3723 (2013.08.29.) 접수 농정과-20826 (2013.08.29.)

우 360-8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
전화 043-290-0582 /전송 043-294-4193 / vlzkcb@ekr.or.kr / 공개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 의견서

1. 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403-7번지외 986필지(비농지포함)
2.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3. 사업시행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4. 목적 또는 사유 :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승인
5. 토지편입현황

<토지편입현황> (단위 : ㎡)

용도구역별	합계	농지				비농지
		계	답	전(과수원)	농지개량	
합 계	1,316,013	543,724	370,965	115,201	57,558	772,289
농업진흥지역	320,272	320,272	255,222	23,672	41,378	0.0
진흥구역	257,635	257,635	212,318	13,017	32,300	0.0
보호구역	62,637	62,637	42,904	10,655	9,078	0.0
농업진흥지역밖	995,741	223,452	115,743	91,529	16,180	772,289

※경지정리 : 편입농지 농업생산 기반정비현황 참조

6. 입지선정(입안) 사유 및 (사업시행자)

국토종합계획의 국토종합간선도로망계획 중 동서5축의 구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활성화에 따른 예상 교통수요를 충족하는 사회기반 시설를 공급하기 위함

7. 시장.군수(농지부서)의견

가. 당해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 신청지는 진흥지역의 농지와 진흥지역밖의 농지가 포함된 사업부지로 경지정리 및 농업생산기반이 일부 정비되어 있지만 국가의 교통체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편입되는 농지로,

○ 당해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바 농지전용(변경) 협의함이 공익에 바람하다고 판단됨.

나. 공사시행시 및 시설물 운영시 인근농업환경에 미치는 내용 및 방지 계획의 타당성

피해종류 및 범위	방 지 계 획	타당성
농경지피해예방대책 (농로, 기존수로)	첨부된 피해방지 계획에 의함	타당함
토사유출 방지	첨부된 피해방지 계획에 의함	타당함
생활환경(대기,수질, 토양,소음)	첨부된 피해방지 계획에 의함	타당함
기타농업경영,생활피해	첨부된 피해방지 계획에 의함	타당함

다. 당해농지 이외의 활용 가능한 토지의 유무 : 없음

라. 종합의견

○ 신청부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농지가 편입되나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피해방지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인근농지 및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국토의 효율적인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협의함이 타당함.

2013. 07.

청 원 군 수

충정북도지사 귀하

청 원 군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 관련 회신

1. 광역도시도로과-806(2013.6.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간선도로망(7×9) 동서5축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 관련하여 기 협의【건설과-22090(2013.7.5)】사항을 전제 조건으로 붙임과 같이 협의 회신합니다.

붙 임 : 1. 협의의견 1부.
2. 기 협의(실시설계)내용 1부. 끝.

청 원 군 수

★주무관 박상갑 도로담당 정무영 건설과장 전결 2013. 8. 16. 이강준

협조자

시행 건설과-26403 (2013. 8. 19.)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450 (2013. 8. 19.)

우 363-8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 http://www.corea0000.korea.kr

전화번호 043)251-3502 팩스번호 043)251-3519 / test@puru.net / 대국민 공개

도로의 구역결정(변경) 관계기관(부서) 의견

□ 공 사 명 : 옥산~오창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비 고
산림과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관련 .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녹지로 결정되는 구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녹지를 확보하고 조성하여야 함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임야) 면적이 3ha이상으로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허가사항으로 충청북도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야 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관련(가로수) . 사업지중에 현재 생육중인 가로수가 편입될 경우 청원군 산림과의 승인을 얻어 시행자 부담으로 이식하거나 제거(제거시 보상비 있음) 하여야 함	
건설과	-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원군 소관 국유재산이 사업부지내 편입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편입되어 기능을 상실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전환 등을 협의 할 것 - 편입되는 도로법상 도로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 주민 통행로 등에 대하여 대체도로(부체도로 등)를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것 - 편입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및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농업용 관정 등)이 사업부지내 편입시 인근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시행 경지정리지역내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편입되어 기능을 상실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전환 등을 충청북도와 협의할 것 - 편입되는 비법정 시설물(농로, 세천 등)에 대하여 대체시설 설치 및 기존 비법정 시설, 인프라 시설에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도시과	-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동시에 한국토지정보(KLIS)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시과로 통보하여야 함 - 오창읍 소재지 일대 녹지지역을 경유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완충녹지를 최소 폭 10M이상으로 계획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매입 및 조성하도록 입안서를 다시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함	
재난안전과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에 한함)시 사업규모 길이 2㎞ 이상인 경우 공사 시행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	

도로의 구역결정(변경) 관계기관(부서) 의견

□ 공 사 명 : 옥산~오창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비 고
재무과	- 의견없음	
상수도사업소	- 도로시설이 상수도시설과 중첩되는 경우 기존 급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시설를 설치하여야 하며, - 도로시설물로 인하여 급수지역이 분리되거나 차단되어 수소시설물의 연속 설치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공동구 및 상수도관로등을 설치하여 향후 수요에 대비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세부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와 협의 하여야 함 - 수도시설을 손괴 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원인자 비용 부담하여야 함.	
하수도사업소	- 오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하며, 폐쇄시에는 폐쇄 신고를 하여 주변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구간 내 공공하수도 시설이 저촉되는 구간은 공사 전 우리 사업소에 이설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준공도면, 공사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공사 준공전 완료확인을 득하여야 함	

옥산~오창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승인신청 협의 의견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비 고
사회복지과	. 부지내 무연분묘 발생시 반드시 무연분묘개장허가를 득하여야 함	
경제투자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저촉사항 없음	
문화체육과	.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대책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것	
농정과	. 토지조서 상이로 인하여 토지조서 재작성 및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재검토(토지조서 재작성에 따라)	
산림과	. 보전임지(임야) 면적이 3ha이상으로 충북도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지중에 현재 생육중인 가로수가 편입될 경우 산림과의 승인을 얻어 시행자 부담으로 잇ㄱ하거나 제거하여야 함(제거시 보상비 부담)	
축산과	. 초지전용협의완료(3필지/141,830㎡)	
환경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하여 이행에 철저 기할 것.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 . 환경영향평가시 기 할당하였으나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편입 면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오염물질배출부하량 산정하여 재 협의 할 것	
건설과	. 오창읍 소재지 주변 주민은 소재지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옥산면 주민은 돛대산 구간을 터널로 시공하여 달라며 현 노선을 반대하고 있음 . 계획노선이 오창읍 오창1,2과학단지 및 오창소재지를 감싸고 도는 형상으로 읍소재지 주거지역과 근접하여 주민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향후 오창읍 소재지 확장 등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창읍 소재지를 우회하여 산악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주고, 옥산면 장남리 돛대산이 지역 명산으로 터널 설치로 사업계획 수정 필요함, . 도로구역 결정관련 협의사항은 자료가 늦게 송부되어(2013.6.27) 협의시간 부족으로 협의 연장 필요	
도시과	. 지역지구(군계획시설 등) 지정시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군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지정 효력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됨으로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야하며, 고시와 동시에 KLIS 및 LURIS에 등재하여야 함 . 오창읍 소재지 뒤쪽을 통과하는 부분은 생산녹지지역으로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에 의거 완충녹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해 보완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의 의제를 위한 협의서류를 재구성하여 제출할 것	

옥산~오창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승인신청 협의 의견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비 고
재난안전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임, 하천 소하천 점용은 별도 허가 득할 것	
상수도사업소	. 기존 급수체계가 유지되도록 대체시설 확보하여야 함 . 도로건설로 인하여 향후 상수도공급 수요지역에 단절이 예상되는 경우 횡단관로 및 공동구 등을 설치하여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우리 사업소와 별도 협의할 걸 . 사업시설내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도 시설이: 존재하는 바 대체시설 필요함 . 사업시행전 선 협의 필요(굴착시 직원 입회) . 사업시행중 상수도시설 손괴시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복구 및 손괴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함	
하수도사업소	. 기협의【하수도사업소-9859(2013.5.9)】 의견을 준수할 것	
오창읍	.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였고, 국토계획에 불필요한 도로 임, . 현 노선대로 고속도로 개설시 오창읍소재지 발전에 저해 요인이며, 주민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주민의 의견보다 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도로는 불필요함	
옥산면	. 2012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일부개정)의 예외규정을 반영할 것. . 곡선을 직선으로, 돛대산구간을 터널로 고속도로 개설할 것 . 마을과 70m안에 고속도로 개설시 주민과 협의 하여야하는 규정을 지킬 것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 경부고속도로 접속방안 관계기관 회의결과

1. 우리 부 광역도시도로과-1374호('13.8.6)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구간)의 접속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3.8.7(수) 개최한 관계기관 회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기관별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의결과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도로정책과장, 한국도로공사사장, 옥산오창고속도로[illegible]

사무관대우	민인홍	기술서기관	유병수	과장	전결 2013. 8. 8. 김영국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1387 (2013. 8. 8.)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옥산-오창] 경부고속도로 옥산JCT 접속방안 관련 회의결과

'13.8.8(목) 광역도시도로과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3.8.7(수) 10:30 /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

○ 참석자 : 광역도시도로과 유병수書 등 2인, 도로정책과 정양기事, 한국도로공사 조사팀 박건태 부장, 옥산오창고속도로㈜ 김진욱 팀장, 삼보기술단 안만홍 부장

2 회의결과

○ **(실시계획)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옥산~오창의 옥산JCT 설치계획**은 그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대로 승인**

○ **(승인조건)** 경부선 **남이~천안 확장공사**(R=700)와의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옥산~오창 실시계획 승인조건 부여**

- 남이~천안 확장공사의 실시설계('14.9월)가 확정될 경우 옥산~오창 사업시행자는 도공과 협의하여 옥산JCT 설치계획을 수정

- 옥산~오창 사업시행자는 타 감액사항을 발굴하여 총사업비 증액 없이 「옥산JCT 설치계획 수정(안)」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 **(도공협조)** 도공은 **옥산-오창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남이~천안 확장공사**의 옥산JCT 접속구간은 **'16년초까지 조기 착공**

- 남이~천안 확장공사의 옥산JCT 접속구간이 '16년초까지 未착공될 경우 「옥산JCT 설치계획 수정(안)」은 재검토

- 「옥산JCT 설치계획 수정(안)」을 위한 필요한 환경·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은 도공이 남이-천안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수행

3 향후계획

○ **옥산-오창 실시계획 승인**('13.9월) 및 **착공**('13.10월)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

청 원 군

수신자 건설과장

(경유) 4/10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검토의견 회신

1. 건설과-19848(2013.06.18.)호와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농지법시행령제71조의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사항으로 농진전용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충북도청 농업정책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지부서 협의서류 1부(원본별송). 끝.

농정과장

농지담당	우동환	농정과장	전결 07/15 이인수

협조자

시행 농정과-17088 (2013.07.15.) 접수 ( )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북문로1가 171-3번지)/ http://www.dhwoo@korea.kr
전화 043)251-3351 /전송 043)251-4008 / test@puru.net / 공개

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

신청사항								
성 명	국토교통부장관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신청토지	소 재 지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403-7번지 외 636필지						
	면 적 (㎡)	답	전	농지개량	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면적	
		370,965	115,201	57,558	543,724	772,394	1,316,118	
	진흥지역안토지	255,222	23,672	41,378	320,272		320,272	
사업계획	전용목적 (용 도)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 사 계 획	착공일 : 승인일로부터, 준공예정 : 2017년 12월 일						

심 사 사 항			의 견			의견결정 이 유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	용도구역 행위제한	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가능행위
		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해당없음
	농지전용의 적 정 성	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사업계획에 의거 적합
		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적정	부적정		전용목적실현에 적합
	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	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일부정비	정비		일부미정비
		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분산	집단화		일부미집단화
		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낮음	높음		없음
		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	낮음	높음		없음
		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	낮음	높음		없음
		종 합 의 견	불필요	필요		적정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통풍·통작에 영향등)	※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피해방지계획에 의함
		※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피해방지계획에 의함
		※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적정
		종 합 의 견	적정	부적정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낮음
		※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낮음

종 합 의 견		
	적합(일부적합)	-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활성화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므로 농지전용협의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부 적 합	

2013년 7월 일

청 원 군 수 (인)

조 사 자 직급 : 지방농업주사 성명: 우 동 환

농정과장 확인 직급: 지방농업사무관 성명: 이 인 수

충청북도지사 귀 하

기재요령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 **글자를 음영으로 처리** 합니다., **전자결재로 시행시 「직인생략」** 가능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 의견서

1. 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오창면 일원
2.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4. 목적 또는 사유 :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승인
5. 토지편입현황

<토지편입현황> (단위 : ㎡)

용도구역별			합계	농지				비농지
				계	답	전(과수원)	농지개량	
합 계		당초	1,316,118	543,724	370,965	115,201	57,558	772,394
		변경						
		증감						
농업진흥지역		당초	320,272	320,272	255,222	23,672	41,378	
		변경						
		증감						
	진흥구역	당초	257,635	257,635	212,318	13,017	32,300	
		변경						
		증감						
	보호구역		62,637	62,637	42,904	10,655	9,078	
농업진흥지역밖		당초	995,846	223,452	115,743	91,529	16,180	772,394
		변경						
		증감						

※경지정리 : 편입농지 농업생산 기반정비현황 참조

6. 입지선정(입안) 사유 및 (사업시행자)

국토종합계획의 국토종합간선도로망계획 중 동서5축의 구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활성화에 따른 예상 교통수요를 충족하는 사회기반 시설를 공급하기 위함

7. 시장.군수(농지부서)의견

가. 당해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 신청지는 진흥지역의 농지와 진흥지역밖의 농지가 포함된 사업부지로 경지정리 및 농업생산기반이 일부 정비되어 있지만 국가의 교통체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편입되는 농지로,

○ 당해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바 농지전용(변경) 협의함이 공익에 바람하다고 판단됨.

나. 공사시행시 및 시설물 운영시 인근농업환경에 미치는 내용 및 방지 계획의 타당성

피해종류 및 범위	방 지 계 획	타당성
농경지피해예방대책 (농로, 기존수로)	첨부된 피해방지 계획에 의함	타당함
토사유출 방지	첨부된 피해방지 계획에 의함	타당함
생활환경(대기,수질, 토양,소음)	첨부된 피해방지 계획에 의함	타당함
기타농업경영,생활피해	첨부된 피해방지 계획에 의함	타당함

다. 당해농지 이외의 활용 가능한 토지의 유무 : 없음

라. 종합의견

○ 신청부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농지가 편입되나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피해방지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인근농지 및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국토의 효율적인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협의함이 타당함.

2013. 07.

청 원 군 수

충정북도지사 귀하

편입농지 농업생산 기반정비(계획) 현황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현황 (단위 : ha)

구 분	기시행		시행예정	
	년도	면적	년도	면적
일반경지정리	사정지구(사정,1997)	36		
	깊은내지구(장남·백현,1995)	41		
	호죽지구(호죽,1985)	57.7		
	복현지구(복현,1997)	8.34		
	가곡지구(괴정·도암,2000)			
	장대지구(장대,1979)	112		

※ 상기 일부지역은 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 관리지역으로 청원지사와 협의할 것

☐ 농업기반공사 수혜지역 편입 여 · 부 (여) - 한국농촌공사 의견 붙임

2013년 7월 일

조사자 : 지방시설7급 김 진 수 (인)

확인자 : 농업기반담당 김 성 국 (인)

청 원 군 수

충청북도지사 귀하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에 따른 의견

☐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승인

☐ 사업시행자 성명(명칭) : 국토교통부장관

☐ 편입 조서

따로 붙임

☐ 협의의견

v

○ 편입되는 농수산식품부 국유 재산 및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등)이 사업부지 내 편입 시 인근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한국농촌공사 시행 경지정리 내에 대하여는 농촌공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편입되어 기능을 상실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전환 등을 충청북도와 협의 할 것

상기 협의조건의 의견으로 협의코자 함.

2013. 7. .

농림부 국유재산담당자 : 황 금 빛 (인)

확인자 : 농업기반담당 : 김 성 국 (인)

청 원 군 수

충청북도지사 귀하

토 지 편 입 현 황

가. 토지편입현황

(단위 :㎡)

용도구역별		합계	농지				비농지
			계	답	전(과수원)	농지개량	
합 계	당초	1,316,118	543,724	370,965	115,201	57,558	772,394
	변경						
	증감						
농업진흥지역	당초	320,272	320,272	255,222	23,672	41,378	
	변경						
	증감						
진흥구역	당초	257,635	257,635	212,318	13,017	32,300	
	변경						
	증감						
보호구역		62,637	62,637	42,904	10,655	9,078	
농업진흥지역밖	당초	995,846	223,452	115,743	91,529	16,180	772,394
	변경						
	증감						

위농지전용 면적은 농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별지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 심사 의견서상의 농지면적과 일치하며 (전용대상농지의 지목별 면적이 정확히 산출되어 있음)신청부지 내 누락된 농지(사실상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부지 포함)가 없음을 확인함.

2013년 7월 일

조사자 : 지방농업6급 정 미 영 (인)

확인자 : 농 지 담 당 우 동 환 (인)

청 원 군 수

충청북도지사 귀하

사실농지 편입조서

□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승인

□ 시 행 자 : 국토교통부장관

□ 편입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해	당	없	음		

2013년 7월 일

조사자 : 지방농업6급 정 미 영 (인)

확인자 : 농 지 담 당 우 동 환 (인)

청 원 군 수

충청북도지사 귀하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관계기관 협의의견(7) 통보

1.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5170호('13.7.9) 및 산림청 산지관리과-4033호('13.7.10)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협의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문 사본 각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인

사무관대우 민인홍 과장 전결 2013. 7. 11. 김영국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1122 (2013. 7. 11.)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6등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 국민과의 약속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산 림 청

목재, 생활속의 자연
fine wood, fine living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협의안 검토의견

1. 관련문서 : 광역도시도로과-806(2013.6.14.)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협의안을 검토한 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산지면적 50만㎡이상~200만㎡미만(보전산지 3만㎡이상~100만㎡미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산지면적 50만㎡미만(보전산지 3만㎡미만)】 에게 협의 권한이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으니, 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 림 청 장

주무관 원동복 행정사무관 김원중 산지관리과장 전결 2013. 7. 10. 김용관
협조자

시행 산지관리과-4033 (2013. 7. 10.)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118 (2013. 7. 10.)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지관리과 / http://www.forest.go.kr
전화번호 042-481-4128 팩스번호 042-484-4641 / dbwon@korea.kr / 대국민 공개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진화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 방 부

함께해요! 전진강군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협의 의견 회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806(2013.6.14.)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협의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우리부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해당지역은 공군 17전투비행단 비행안전 6구역에 해당되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의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시행 시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음대비(방음시설 등) 필요

나. 항공기 소음에 기인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항공기 소음발생 가능성 고지 필요

다. '나' 사항을 위반하여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라.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항 2·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함

※ 관할부대 담당자 : 17전투비행단 군보담당(☎043-210-2105). 끝.

국 방 부 장 관

주무관 조현진 행정사무관 이지연 시설기획환경 전결 2013. 7. 9. 과장 박재민

협조자

시행 시설기획환경과-5170 (2013. 7. 9.)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092 (2013. 7. 10.)

우 140-83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http://www.mnd.go.kr

전화번호 군)900-5816 일)02-748-5816 ' 팩스번호 02-748-5819 / meschnee@mnd.mil / 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요청(옥산-오창)

1. 옥산오창 제2013-38(2013.06.05)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의 협의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를 2013.07.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협의결과 공문 접수현황 1부.
2. 관계기관 협의결과 공문사본 각 1부(기 송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

사무관대우 한형동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3. 7. 9. 김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2747 (2013. 7. 9.)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웅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563 팩스번호 042-670-3485 / hanhd@molit.go.kr / 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옥산~오창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관계기관 협의 접수현황

연번	기관명	접수일	담당자	전화번호	문서번호	비고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	2013.06.24	김종수	042-481-4957	발굴제도과-6026(2013.06.24)	
2	충청북도 (균형개발과장)	2013.06.24	최민규	043-220-4132	균형개발과-6447(2013.06.24)	
3	충청북도 (기업유치지원과장)	2013.06.26	김응희	043-220-7300	기업유치지원과-7300 (2013.06.26)	
4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장)	2013.06.28	박종빈	043-220-3541	농업정책과-7483(2013.06.28)	
5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장)	2013.07.01	박병현	043-220-3146	문화예술과-3146(2013.07.01)	
6	충청북도 (산림녹지과장)	2013.07.01	이상영	043-220-3794	산림녹지과-9948(2013.07.01)	
7	청원군 (사회복지과장)	2013.07.02	정용필	043-251-3164	사회복지과-42111(2013.07.01)	
8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	2013.07.03	이은일	043-540-2334	보수과-1843(2013.07.03)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2013.07.04	가필순	042-670-3312	하천계획과-1949(2013.07.03)	
10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2013.07.05	전준태	044-201-3886	도로정책과-1987(2013.07.04)	
11	청원군수 (사회복지과)	2013.07.05	박찬주	043-251-3156	사회복지과-42674(2013.07.04)	

국 토 교 통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관계기관 협의의견(6) 통보

1. 청원군 건설과-22090호('13.7.5), 충청북도 치수방재과-12065호('13.7.5)·도로과-9925호('13.7.5)·교통물류과-12613호('13.7.5),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2394호('13.7.5),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1733호('13.7.8)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협의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문 사본 각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민인홍 과장 전결 2013. 7. 9. 김영국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1088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 국 도 로 공 사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협의 검토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806호(2013.06.14)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협의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 임 : 한국도로공사 검토의견 1부. 끝.

한 국 도 로 공 사 사

팀장	2013. 7. 5. 설운호	도로조사팀	조형준	팀(부)장	박건태	도로조사팀	신승환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2394 (2013. 7. 5.)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071 (2013. 7. 8.)

우 461-7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 http://www.ex.co.kr/

전화번호 02-2230-4189 팩스번호 02-2230-4303 / naraguyo / 대국민 공개

「민원만족도 조사(발신자 :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응답해 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협의 검토의견

한국도로공사

□ 연결협의 추진경위

○ '12. 4 : 실시설계 협의 (대전청→도공)

○ '12. 5 : 실시설계 협의의견 회신 (도공→대전청)

- 설계기준에 위배되는 옥산분기점 접속위치 재검토 필요
  * 분기점 곡선반경 기준 및 휴게소와 이격거리 기준 위배
- 중복 요금 민원 방지 위해 이부요금제를 거리요금제로 전환 필요
- 서오창IC영업소와 서오창본선영업소 간 통행료 비등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오창IC영업소의 경부선 및 중부선 진출입 차로 분리 필요

○ '12. 8 : 협의의견 검토결과 통보 (대전청→도공)

- 옥산분기점 천안방면 연결로 접속방법 변경
- 그 외 주요 협의의견 불수용

○ '12. 10 : 협의의견 재검토 요청 (도공→대전청)

- 기존 협의의견('12. 5)을 준수하여 재검토 요구

□ 실시계획 검토의견

1. 분기점 설계 관련

○ 청원휴게소에 분기점을 계획하여 설계기준 위배* 및 **청원휴게소 관리·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대책 강구 필요**

* 출입시설 - 휴게소 간 이격거리 : (기준) 2km, (확보) 1km이하

- 휴게소 진입로 주변에 횡단 교량과 교각이 다수 설치됨에 따라 휴게소 건물 시인성 저해 및 소음 등으로 인해 민자휴게소인 청원휴게소의 영업 손실 예상

  * 청원휴게소는 화물차 운전자의 수면공간 및 쉼터 제공이 주 역할
    - 일평균 화물차 이용량 1000여대 중 휴게텔 이용객 250여명, 야간 수면차량 200여대

  * 연결로 교량 위치가 휴게소 내 생태테마파크와 인접하여 소음·진동에 민감한 파충류의 번식력 저하와 폐사 예상

- 옥산~오창 → 경부선 이용차량은 청원휴게소 이용 불가로 민원 예상

○ 경부선 남이~천안 확장사업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연결로 계획 필요**

- 현재 경부선 **확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옥산분기점 구간의 **선형 개량이 예정**되어 현 접속(안)대로 접속할 경우 경부선 확장 공사 시 **연결로 전면 재시공 필요**

○ 아울러 경부선 남이~천안 **확장사업 착공 지연에 대비하여 단계 건설이 가능한 연결로 계획 필요**

- 다만, 곡선반경이 매우 작고 시거가 미확보된 배향곡선 구간에 분기점 유출부를 휴게소 입구와 인접 설치하는 계획은 이용자 혼란 및 교통사고 빈발이 예상되어 지양 필요

○ 기존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시행한 **설계 및 공공디자인 심의 의견 반영 필요**

- 경부선 남이~천안 확장설계 반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설계 변경 시 우리공사에 심의 재요청 필요

○ 신설도로와 연계된 **기존 고속도로 안내 표지판 변경계획 반영 필요**

2. 영업체계 관련

○ 재정-민자 구간 연계 이용 시 **기본요금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행료 체계 재검토** 필요

○ 서오창IC 영업소 차로 미분리에 따라 **서오창IC 이용자와 서오창 본선영업소 이용자간 통행료 비등가 발생**으로 **민원 및 요금체계 혼란** 예상됨

○ 향후 이상의 사항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민자법인에서 부담**해야 함

○ 이밖에 현재 우리공사에서 검토 중인 영상인식 장치를 통한 재정-민자 통합요금정산시스템 구현 시('16. 4 예정) 연계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3. 공사시행 관련

○ 기존 고속도로 접속구간에 대해서는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 또는 **도로점용 허가** 절차 수행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 **충청본부와 사전 협의** 요망

○ 횡단교량 가설 시 공용노선 차단이 필요하므로 **교통처리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후 거더 거치 최소 1개월 전** 우리 공사 **충청본부와 사전 협의** 필요

4. 유지관리 관련

○ 기존 고속도로와의 **유지관리 경계는 연결로 변속차로 변이구간 시종점**으로 함

○ 청원휴게소 진출로(서울방향) 이설로 인해 발생되는 **폐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가 환경복원 시행** 필요

○ 횡단교량에는 투석방지망을 설치하고 교량하부 미관을 고려한 주기적인 유지관리 계획 수립 필요

5. 부대시설 관련

<전기시설>

○ 옥산분기점 및 오창분기점 **본선부 가로등 설치계획 누락**으로 보완 필요

○ 오창분기점은 **장래 동서5축 연결을 고려한 전기 설계** 필요

- 인입전주~분전반까지 케이블, 분전반 예비회로, 예비배관 및 횡단배관, 맨홀 등

* 오창분기점 향후 설치 예정 연결로 : Ramp-B, Ramp-E

<조경시설>

○ 분기점 구간 **기존 고속도로 및 휴게소 구간 수목** 조사 및 **이식·복구계획 수립, 비용** 반영

○ 분기점 램프 곡선 내측구간 **시거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위치 조정**

○ 준공 후 **유지관리를 고려**한 본선구간 **관목식재 위치 수정 검토** (성토부 사면 → 건물주변 등)

6. 기 타

○ 경부선 남이~천안 확장 실시설계 시 옥산~오창간 교통량을 반영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교통량 자료 협조 요청

○ 교통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 연계정보 : CCTV, VDS(실시간 30초 자료), TCS(실시간) 등

○ 상시 교통량 조사를 위한 교통량 조사 장비 설치

○ ITS 시설 구축 공사 전 최신 기술 및 공법 등을 고려한 재설계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협의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806(2013.06.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협의 요청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귀 시·도(시장·군수 포함)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농지법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심사의견서를 작성후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제출기간을 준수하여 우리부에 제출(전자결재 시스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시·도에서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작성시 필요한 농지전용협의요청서와 협의자료는 농지전용시스템(http://njy.maf.go.kr)에 게시하였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지전용협의요청서(별지20호서식)와 농지전용시스템의 전용농지명세서 면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의 농지관리담당이 수정하고 심사의견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4.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관리부서가 농지전용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충청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

행정사무관	안재록	농지과장	전결 2013. 7. 8. 이정형
협조자			

시행 농지과-1733 (2013. 7. 8.)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076 (2013. 7. 9.)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농림수산식품부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농지과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1739 팩스번호 044-868-0523 / anjr@mifaff.go.kr / 비공개(5)

- 160만 도민이 행복한「함께하는 충북」-

충 청 북 도

생명과 대양의 땅 충북
Bio Valley & Solar Valley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협의 회신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806(2013.06.14)호와 관련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음"을 회신합니다. 끝.

충 청 북 도

주무관	김윤환	교통정책팀장	정경화	교통물류과장	2013. 7. 5. 이용재

협조자

시행 교통물류과-12613 (2013. 7. 5.)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057 (2013. 7. 5.)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본관3층 / www.cb21.net

전화번호 220-4255 팩스번호 043-220-4259 / corea551@korea.kr / 대국민 공개

가슴가득 호국정신 손길가득 보훈사랑

- 160만 도민이 행복한「함께하는 충북」-

충 청 북 도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협의의견 제출

1. 광역도시도로과 - 806(2013.06.14)호와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협의의견서 1 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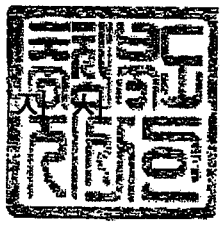

주무관 음치헌 도로계획팀장 신경원 도로과장 정시영 균형건설국장 전결 2013. 7. 5. 윤재길
협조자 도로행정팀장 이성철 도로시설팀장 김동원

시행 도로과-9925 (2013. 7. 5.)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058 (2013. 7. 8.)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화동) / www.cb21.net
전화번호 220-4222 팩스번호 220-4159 / che9999@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의견

○ 동서5축(당진~울진) 고속도로 오창(청주국제공항)~경북도청이전신도시 구간은 대통령공약사업에 포함되어 20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충북·경북도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오창JCT는 장래 동서5축 오창(청주국제공항)~울진 구간 연계를 고려한 연결로 계획 수립**

○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음·진동, 경관 등의 저감방안 강구 및 오창읍 구 도심(장대리, 모정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서오창IC 옥산JCT→오창JCT 방향 진출로 도로표지(본, 예고표지)에 청주국제공항 표기**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지방도의 상급 도로로 도로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도로시행허가 대상은 아니나, 연결도로 또는 접속구간 도로공사 시행 시 미리 우리도와 협의하여야 함.

○ 충청북도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 다만,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상매입 하여야 함.

청 원 군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협의 회신

1. 광역도시도로과-806(2013.6.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간선도로망(7×9) 동서5축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협의 회신합니다.

붙 임 : 1. 협의의견 1부.
2. 관련문서 각 1부. 끝.

청 원

★주무관	박상갑	도로담당	정무영	건설과장	전결 2013. 7. 5. 이강준
협조자					

시행 건설과-22090 (2013. 7. 5.)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055 (2013. 7. 5.)

우 363-8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 http://www.corea0000.korea.kr

전화번호 043)251-3502 팩스번호 043)251-3519 / test@puru.net / 대국민 공개

신수도권 중심도시 「2014.7.1. 통합청주시 출범」

옥산~오창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승인신청 협의 의견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비 고
사회복지과	. 부지내 무연분묘 발생시 반드시 무연분묘개장허가를 득하여야 함	
경제투자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저촉사항 없음	
문화체육과	.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대책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것	
농정과	. 토지조서 상이로 인하여 토지조서 재작성 및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재검토(토지조서 재작성에 따라)	
산림과	. 보전임지(임야) 면적이 3ha이상으로 충북도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지중에 현재 생육중인 가로수가 편입될 경우 산림과의 승인을 얻어 시행자 부담으로 이식하거나 제거하여야 함(제거시 보상비 부담)	
축산과	. 초지전용협의완료(3필지/141,830㎡)	
환경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하여 이행에 철저 기할 것.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 . 환경영향평가시 기 할당하였으나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편입 면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오염물질배출부하량 산정하여 재 협의 할 것	
건설과	. 오창읍 소재지 주변 주민은 소재지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옥산면 주민은 돛대산 구간을 터널로 시공하여 달라며 현 노선을 반대하고 있음 . 계획노선이 오창읍 오창1,2과학단지 및 오창소재지를 감싸고 도는 형상으로 읍소재지 주거지역과 근접하여 주민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향후 오창읍 소재지 확장 등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창읍 소재지를 우회하여 산악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주고, 옥산면 장남리 돛대산이 지역 명산으로 터널 설치로 사업계획 수정 필요함, . 도로구역 결정관련 협의사항은 자료가 늦게 송부되어(2013.6.27) 협의시간 부족으로 협의 연장 필요	
도시과	. 지역지구(군계획시설 등) 지정시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군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지정 효력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됨으로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야하며, 고시와 동시에 KLIS 및 LURIS에 등재하여야 함 . 오창읍 소재지 뒤쪽을 통과하는 부분은 생산녹지지역으로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에 의거 완충녹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해 보완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의 의제를 위한 협의서류를 재구성하여 제출할 것	

옥산~오창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승인신청 협의 의견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비 고
재난안전과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임, 하천 소하천 점용은 별도 허가 득할 것	
상수도사업소 ✓	. 기존 급수체계가 유지되도록 대체시설 확보하여야 함 . 도로건설로 인하여 향후 상수도공급 수요지역에 단절이 예상되는 경우 횡단관로 및 공동구 등을 설치하여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우리 사업소와 별도 협의할 걸 . 사업시설내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도 시설이; 존재하는 바 대체시설 필요함 . 사업시행전 선 협의 필요(굴착시 직원 입회) . 사업시행중 상수도시설 손괴시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복구 및 손괴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함	
하수도사업소 ✓	. 기협의 【하수도사업소-9859(2013.5.9)】 의견을 준수할 것	
오창읍	.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였고, 국토계획에 불필요한 도로 임, . 현 노선대로 고속도로 개설시 오창읍소재지 발전에 저해 요인이며, 주민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주민의 의견보다 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도로는 불필요함	
옥산면	. 2012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일부개정)의 예외규정을 반영할 것. . 곡선을 직선으로, 돌대산구간을 터널로 고속도로 개설할 것 . 마을과 70m안에 고속도로 개설시 주민과 협의 하여야하는 규정을 지킬 것	

진 정 서

수신 : 청원군수님 귀하
참고 : 건설과장님 귀하
발신 : 오창~옥산 고속도로피해 주민공동대표(복현3구 이장 김정현 복현1구 이장 김갑영, 모정1구 이장 이한정,모정2구 이장 양인석, 원리 2구 이장 이재원 일동)

귀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청에서는 옥산~오창 고속도로를 즉각 재검토 또는 불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주민들 의견을 전혀 무시 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1. 12.10.29 주민설명회 하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어느 주민이 찬성한 주민은 전혀 보지 못 하였습니다.(녹화장면확인)
2. 설명회를 할 때 인근 피해주민을 초청한 상태에서 하여야하나 초청하지 아니 하였다.
3. 설명회 장소도 고속도로 인근주민이 거주하는 오창읍이 아닌 과학단지에 하였다.
4. 공람 하였다고 하는데 공람은 관련 주민에 통보하여하나 관련 없는 곳에 공람현수막을 홍보하였다
5. 인근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부락 대표되는 사람에게 공람통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국토계획에 필요한 도로가 전혀 아닙니다.

1. 국가에 필요하다하면 인근피해는 최소화 하고 지역과 같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 계획과 먼 다른장소를 우회하여 공사하여도 토지 보상도 적개들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현 오창읍 인근 2~3 km 안에 IC 가 2개 있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므로 필요로하는 주변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다) 현 계획대로 할 경우 인근 주민에게 재산 손실, 지역 발전에 큰 재앙이 따른다.

1. 계획대로 추진 할 경우 인근 오창 장대1 2 3구, 창리 1 2구, 복현1 2 3구, 원리 1 2구, 모정 1 2구, 학소리의 조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2. 인근 복현리 앞 오창초등학교 앞은 인근 개발로 토지 지가가 날로 상승하고 있으나 큰 폭의 재산손실이 될 것이다.
3. 복현, 원리, 모정, 학소, 지역과 오창간에 뚝이 생김으로서 지역개발 저해 및 재산가치가 감소 될 것이 뻔하다.

라) 기업에 이익을 위한 민자고속도로 이기 때문에 지역의 국토계획에 불필요한 도로이다.

1. 계획대로 공사 할 시는 거리가 짧아 공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계속 주장.
2. 국토계획에 필요하다면 기업에 이익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3. 공사를 우회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고 하였음.
4. 토지 보상비는 정부에서 대주기 때문에 지가 높은 곳은 무관하여 공사거리 짧은 곳을 선택하였다.

주민의 의견서

오창읍 소재지는 지금현재도 잘못된
도로로 인하여 시장 자체가 점점
어려워 지면서 빈가게 들만 늘어가고 있다
앞으로 오창을 위해서는 발전가능성이 많은
고속도로 예정 지역에 APT나 원룸 같은
인구가 유입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오창읍이 활성화 된다고 본다
지금현재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많은
자금과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효과면에서
많이 부족한것 같읍니다
어린 실정인데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모든것은
분기분이 되리라 믿읍니다
어찌하여 건설회사의 이익을 위해 오창
주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또한 건설회사의 회신 내용도 거짓과
위조로 되었기에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과 협조하여 노선을
정해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꼭 재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 의견서

□ 건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관련

□ 주민의견

1,주민 의견서 1부

2,건의문 1부

2013. 7. 1.

이장 전석교 (인)

옥산면장 귀하

주민 의견서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오창읍 백현리 주민이 드리는 의견서 입니다

2012년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일부개정)을 반영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차례 민원을 국토해양부 청원군청 등등 주민의견을 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곡선을 직선으로, 터널로 건설하는 것에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2013년 3월 06일 건의문을 참고 하시고, 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살기 좋고 소중한 우리 마을 주민들과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장남리 백현리 주민일동

2013년 06월 28일

건 의 문

변재일 국회의원님 안녕 하십니까?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오창읍 백현리 주민이 드리는 건의문입니다.
GS 건설의 가 설계도를 보면서 마을주민과 GS 건설과 주민 설명회를 여러 차례 한 결과 아무런 결과도 없어 다시한번 민원을 제출 합니다
GS건설의 법적인 답변을 받아보고 반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09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 의관한 규칙 해설을 보내 왔습니다 이는 우리 마을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2012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일부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서울, 부산 방면)
국토해양부 (도로의 구조.기준)에 보면 부득이 JCT와의 간격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운전자가 터널 출구에 유출 연결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 안내표지,전광표지 판,노면표시등의 충분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검토 한다
둘 (오창 방면)
터널 입구와 JCT 변이구간 시점까지 거리는 차량유입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가속차로 및 테이퍼 구간에서 유입되지

못하였을 경유 가변차로 확보로 대기 공간을 사용 할 수 있다

이렇듯 충분히 터널로 건설 할 수 있는 데도 법적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GS 건설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셋

청원군 옥산 오창 민자 고속 (도로,환경영향평가)를 보면 마을과 70M 안 고속도로건설 에서는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한다 하는데 GS건설과 관계부처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가 설계도 로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이는 명백한 법위반이라 봅니다

GS건설의 현재 가설계 도면을 참고 하시고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수용하셔서 저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중하고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민의 의견과 뜻을 모아 이 건의문을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오창읍 백현리 주민대책위원회

2013년 03월 06일

충 청 북 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Bio Valley & Solar Valley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협의의견 회신

1. 광역도시도로과-806(2013. 6. 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간선도로망 동서5축의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하천분야

- 계획하폭내 교량구조물 설치로 인한 수위가 상승될 영향권내 제방 보축(파라펫 등)에 대하여는 실시 설계에 반영하였음으로 별도 의견은 없으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미호천-병천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의 계획하폭 내 병천천교 설치계획을 포함, 계획홍수위를 산정 반영하고
- 실시설계에 반영된 기설제방고 보축 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동 권역의 하천기본계획완료시 계획홍수위와 비교·분석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변경 설치하시기 바람.

○ 소하천분야

- 본 실시계획에 포함된 소하천(양지, 성산, 수락)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청인 청원군 소하천 담당부서와 협의하시고
- 실시계획에 반영된 이설계획구간 [(양지천(548.15m), 성산천(214.93m)] 의 기존소하천과 연결되는 상하류 구간은 재해에 상당히 취약한 구간으로 호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기 타

- 우리도 치수방재과-9469(2013.5.27.)호로 기 협의한 협의의견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제시한 조치계획과 같이 반듯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충 청 북 도 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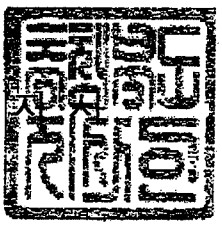

주무관 오철영 재난방재팀장 박노철 치수방재과장 전결 2013. 7. 5. 권봉억

협조자 주무관 손기용 주무관 김종식 하천정비팀장 이천호 하천계획팀장 출장

시행 치수방재과-12065 (2013. 7. 5.)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056 (2013. 7. 5.)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http://www.cb21.net

전화번호 220-4312 팩스번호 220-4319 / ocy2236@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 토 교 통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관계기관 협의의견(5) 통보

1.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1987호('13.7.4) 및 청원군 사회복지과-42674호('13.7.4)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협의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문 사본 각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인

사무관대우 민인홍 기술서기관 전결 2013. 7. 5. 유병수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1052 (2013. 7. 5.)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 토 교 통 부

수신 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협의의견 회신

1. 광역도시도로과806(2013.6.14)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협의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o (협의의견) 옥산-오창 고속도로와 접속되는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 확장사업(6→8차로) 실시설계(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진행중으로 사업간 사업시기 상이에 따른 사업비 중복 등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세부 협의 필요. 끝.

도로정책과장 [illegible]

직원	전준태	시설사무관	정양기	과장	2013. 7. 4. 이성해

협조자

시행 도로정책과-1987 (2013. 7. 4.)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045 (2013. 7. 5.)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등656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86 팩스번호 044-201-5588 / jtjeon@molit.go.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청 원 군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협의 회신

1. 광역도시도로과-806 (2013.06.14.)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협의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토결과서1부. 끝.

청 원 군수

주무관 박찬주 경로복지담당 이제일 사회복지과장 전결 2013. 7. 4. 남정인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42674 (2013. 7. 4.)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047 (2013. 7. 5.)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지북동 144-1) / http://www.puru.net
전화번호 043)251-3156 팩스번호 043)251-3159 / chanjoo75@korea.kr / 대국민 공개

검 토 결 과 서

□ 건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 주 용 도 : 고속도로

□ 회신기한 : 2013. 07. 05. (금)

검토대상	관련법령	검 토 의 견	검토자 (직 · 성명)	비고
경로복지 담 당	○노인복지법	해당사항없음.	사복7 김선수	
장애인복지 담 당	○장사등에관한법률	저촉사항은 없으나, 부지 내 무연분묘 발견 시 반드시 무연분묘개장허가를 득하여야 함.	정용민	
	○장애인복지법	해당사항없음.	한정용 고개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없음.		
여성청소년 담 당	○청소년활동진흥법	해당사항없음.	별정용 이지현	
아동보육 담 당	○아동복지법	해당사항없음.	사복7 우명수	
	○영유아보육법	해당사항없음.	사복7 진정구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계획 협의 회신

1. 광역도시도로과-806(2013. 6. 14.)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우리 사무소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가. 세부실시설계를 시행할 경우 단계별로 재협의

나. 복현1교 교각(P2)이 국도17호선 통로박스와 연결된 부체도로에 저촉되어 공사시행 시 도로차단이 불가피하므로, 교각위치 조정 등 재검토

다. 옥산~오창 고속도로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 검토. 끝.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인

주무관	이은일	주무관	임현빈	과장	전결 2013. 7. 3. 김익수
협조자					

시행 보수과-1843 (2013. 7. 3.)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019 (2013. 7. 3.)

우 376-80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3-540-2334 팩스번호 043-540-2402 / leeeunyle@molit.go.kr / 비공개(5)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한 협의의견 제출(옥산-오창)

1. 광역도시도로과-806호(2013.6.14)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출에 따른 우리 청(하천국)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협의의견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무관	가필순	주무관	배상근	사무관대우	김회룡	과장	이명원

전결 2013. 7. 3.

협조자 과장 장창식

시행 하천계획과-1949 (2013. 7. 3.)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021 (2013. 7. 3.)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312 팩스번호 042-670-3487 /pillgood7@molit.go.kr /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출에 따른 협의 의견

□ 협의 의견

협의기관	검토결과	비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옥산-오창 사업노선 중 지방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설치를 위하여는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미호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함 * 교량통과 지방하천 : 병천천, 용두천, 성암천(과업범위 내) * 횡단교량 : 병천천교, 용두천교, 오창JCT R-C교 및 R-D교 (병천천) (용두천) (성암천) ○ 현재 과업 진행상(초기단계) 교량계획에 필요한 수문자료(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 제공 및 적합여부 검토 곤란 -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가 확정되는 시기('14. 5월)에 맞춰 재협의 * 하천설계기준·해설(국토교통부, '09)에 적합하게 계획 ○ 또한, 교량 설치로 인해 병천천 등 3개 하천의 수위 상승이 발생하나 대책 방안이 별도로 제시 되어 있지 않음 - 수위 상승에 따른 기성제방의 보강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관리청인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조치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 별도 의견 없음	

첨부 : 세부 검토자료 1부. 끝.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출에 따른 세부 검토

1. 개 요

검토개요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노선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하천기본계획(미호천 상류권역II, 병천천권역)과의 적합여부 검토

2. 검토구간 현황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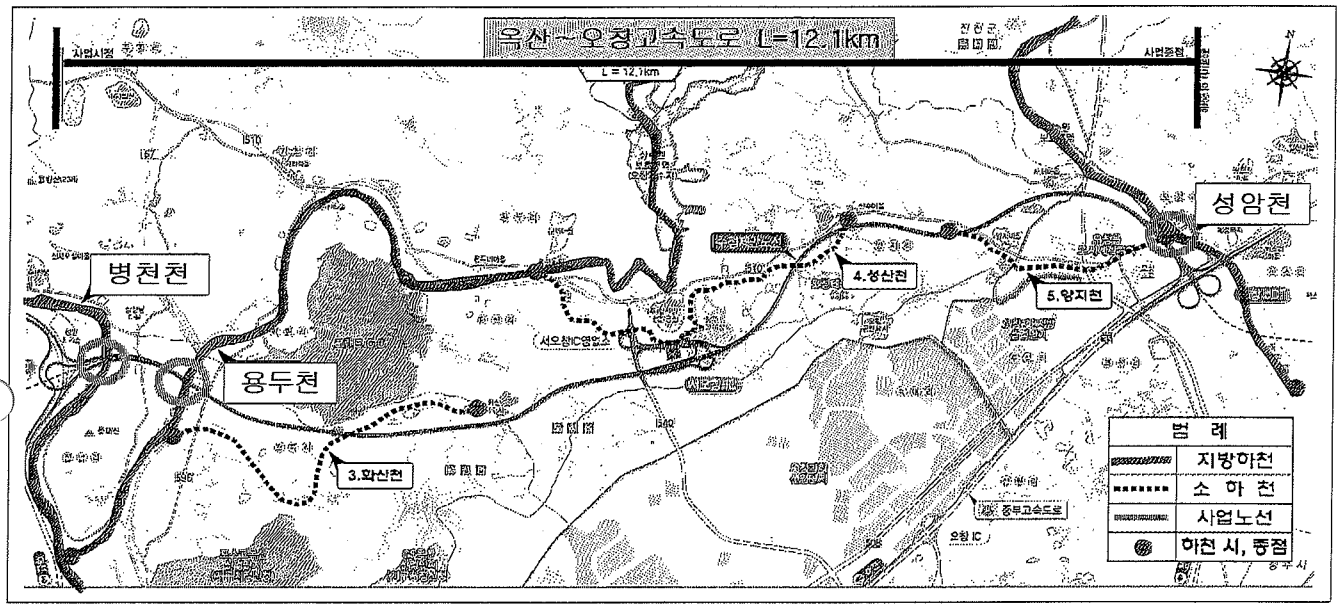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범위**
  -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연 장 : 12.1km (왕복 4차로)
  - 시설현황 : 교량 : 22개소/2,414m
  - 사업시행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추진경위

- 2012. 03. : 실시설계 착수
- 2013. 06. : 인허가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013. 09. :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착공(예정)
- 2017. 09. : 공사준공 (예정)

◉ 횡단교량

교 량 명	연 장	교 량 형 식	비 고
병천천교	230m (3@50+2@40=230)	개량형 PSC 빔교	지방하천 병천천 횡단
용두천천	135m (3@45=135)	개량형 PSC 빔교	지방하천 용두천 횡단
오창JCT R-C교	180m (4@45=180)	강박스 거더교	지방하천 성암천 횡단
오창JCT R-D교	235m (5@40+35=235)	개량형 PSC 빔교	

3. 하천기본계획 검토

「미호천권역 하천기본계획(상류권역Ⅱ, 병천천권역)」 개요

◉ 미호천 상류권역(Ⅱ)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 과업기간 : 2011년 9월 19일 ~ 2015년 7월 5일
- 과업범위 : 지방하천 성암천 외 7개하천(L=95.88km)

  * 해당 하천 : 지방하천 성암천

◉ 미호천 - 병천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 과업기간 : 2012년 6월 29일 ~ 2014년 6월 18일
- 과업범위 : 지방하천 병천천 외 8개하천(L=119.48km)

  * 해당 하천 : 지방하천 병천천, 용두천

▣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검토

◉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수립검토

하천명	등 급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관	비고
병천천	지방하천	병천천하천정비기본계획(1992.9)	충청북도	
용두천	지방하천	용두천하천정비기본계획(2003.7)	충청북도	
성암천	지방하천	성암천하천정비기본계획(1993.12)	충청북도	

※ 병천천, 용두천 및 성암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21년이 경과되어 하천법 제25조 1항에 의거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여 **금회 권역별 기본계획에서 수립중**임.

◉ 금회 수립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검토

- 권역별 기본계획 공정상 현재 홍수량 산정 단계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계획중인 병천천교 외 3개 교량에 필요한 수문자료 제공 및 적합여부 검토는 '14. 5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교량 제원결정시 필요한 수문자료

- 교량 하 폭 ⇒ 하천기본계획 상의 계획하폭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고시사항)
- 교량 계획고 ⇒ 하천기본계획 상의 계획홍수량에 의한 계획고 결정
  (하천설계기준 · 해설 제23장 제방편)
- 교량 경간장 ⇒ 하천기본계획 상의 계획홍수량에 의한 공식적용
  (하천설계기준 · 해설 제37장 기타구조물편)

4. 노선계획(교량) 검토

▣ 하천기본계획 적용 검토

교량명	하천명	등급	상위계획	수립기관	비고
병천천교	병천천	지방하천	병천천하천정비기본계획(1992.9)	충청북도	
용두천교	용두천	지방하천	용두천하천정비기본계획(2003.7)	충청북도	
오창JCT R-C교 오창JCT R-D교	성암천	지방하천	성암천하천정비기본계획(1993.12)	충청북도	

※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된 하천기본계획 자료를 적용하여 교량 설계를 시행

수리계산서 검토

적용 빈도, 홍수량 및 홍수위

교량명	하천명	하천 측점 (No.)	계획년도 (년)		홍수량 (m^3/s)		홍수위 (EL.m)		기준 여유고 (m)	계획 하폭 (m)
			계획	적용	계획	적용	계획	적용		
병천천교	병천천	79	50	100	1,577	1,776	46.15	46.52	1.0	178
용두천	용두천	20	50	100	385	430	47.42	47.84	0.8	84
오창JCT R-C교	성암천	7+20	50	100	324	373	42.92	43.43	0.8	112
오창JCT R-D교		7+90	50	100	324	373	43.21	43.65	0.8	120

※ 수리계산서 상 기 수립 기본계획의 계획빈도 50년에서 최근 이상강우 및 여유값 등의 사유로 계획빈도 100년을 적용하였으며, 본 권역별 기본계획에서도 계획빈도를 100년으로 상향 예정

◉ 수위영향검토

교량명	하천명	설치로 인한 수위상승	상승 영향구간	비고
병천천교	병천천	0.01~0.05m 상승	상류로 1,200m	
용두천교	용두천	0.01~0.28m 상승	상류로 400m	
오창JCT R-C교	성암천	0.01~0.28m 상승	상류로 380m	
오창JCT R-D교				

- 교량 설치로 인한 홍수위 영향은 병천천은 0.01~0.05m, 용두천은 0.01~0.28m, 성암천은 0.01~0.28m 상승이 되나, 수위 증가량이 미미함.

* 교량 설치에 따른 수위상승 대책(제방 보강 등)은 하천관리청(충청북도)에서 검토 조치

5. 검토결과

권역별 기본계획과의 적합여부 검토

◉ 미호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의 과업 추진상 현 단계에서는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계획 중인 병천천교 외 3개 교량에 대한 수문자료 제공 및 적합여부 검토는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교량 설계를 위한 최소 자료인 홍수량 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재협의 가능일 : 2014년 5월경

노선계획(교량) 검토

◉ 교량 설치로 인한 홍수위 상승이 발생하나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위상승에 따른 대책(기성제방의 보강 등)은 하천관리청(충청북도)과 협의하여야 함.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 토 교 통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관계기관 협의의견(4) 통보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1949호('13.7.3) 및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1843호('13.7.3)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협의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문 사본 각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민인홍	시설사무관	이강녕	과장	전결 2013. 7. 3. 김영국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1023 (2013. 7. 3.)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 토 교 통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관계기관 협의의견(3) 통보

1. 충북도 문화예술과-3146호('13.7.1), 산림녹지과-9948호('13.7.1) 및 사회복지과-42111호('13.7.1)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협의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각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민인홍	시설사무관	이강녕	과장	전결 2013. 7. 2. 김영국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1003 (2013. 7. 2.)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청 원 군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협의 회신

1. 광역도시도로과-806(2013.06.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협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사업지 내의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청 원

★주무관 정용필 장애인복지담당 박범순 사회복지과장 전결 2013. 7. 1. 남정인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42111 (2013. 7. 1.) 접수 광역도시도로과-995 (2013. 7. 2.)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361(지북동144-1) / http://www.puru.net

전화번호 043)251-3164 팩스번호 43)251-3169 / test@puru.net / 대국민 공개

- 160만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

충 청 북 도

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Bio Valley & Solar Valley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서류보완

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806(2013.6.14)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산지전용 협의 신청한 국토간선도로망 동서5축의 선도사업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 보완 요구하오니 제출바랍니다.

○ 보완사항

- 산지의 이용계획에 시설물 설치계획이 포함 될 경우 시설 배치계획 1부.
- 입목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계획 1부.
-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1부.

※ 토사량 5만㎥이상 반출할 경우 별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직 인

주무관 이상영 산지관리팀장 송영동 산림녹지과장 전결 2013. 7. 1. 안광태

협조자 주무관 이재국

시행 산림녹지과-9948 (2013. 7. 1.) 접수 광역도시도로과-996 (2013. 7. 2.)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2 (문화동, 충청북도청) / http://www.cb21.net/

전화번호 220-3794 팩스번호 043-220-3769 / lsy0713@korea.kr / 비공개(8)

쉽고 편리한 우리집 새주소,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

- 160만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

충 청 북 도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협의 회신

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806(2013.06.14.)호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협의 요청한,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협의에 대한 문화재보호조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 "충비삼월의 비" 에 대하여 2012.12.26일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착공 및 준공신고를 기한내 하여야 함.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여야 함.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직인

지방시설 주사 박병현 | 문화재팀 장 홍기운 | 문화예술전결 2013. 7. 1. 과장 장화진

협조자 주무관 이병진

시행 문화예술과-3146 (2013. 7. 1.) 접수 광역도시도로과-997 (2013. 7. 2.)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http://www.cb21.net/

전화번호 220-3833 팩스번호 043)220-3819 / byungo@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 토 교 통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관계기관 협의의견(2) 통보

1. 충북도 기업유치지원과-7300호('13.6.26) 및 농업정책과-7483호('13.6.28)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협의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각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인

사무관대우	민인홍	시설사무관	이강녕	과장	전결 2013. 7. 1. 김영국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978 (2013. 7. 1.) 접수 도로공사과-2544 (2013. 7. 1.)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Fax sent by : 0426703485 ADG 30-06-13 18:06 Pg: 6/8

- 160만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

충 청 북 도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 검토 결과 농지전용 협의 보완 요구

1. 관 련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806(2013. 6. 14)호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 요구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요구 내역>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 의거 구비서류 제출. 끝.

충 청 북 도

농지관리팀 장 박종빈 | 농업정책과 장 박은상 전결 2013. 6. 28.

협조자 주무관 윤기용

시행 농업정책과-7483 (2013. 6. 28.) 접수 광역도시도로과-965 (2013. 6. 28.)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청북도청 / http://www.cb21.net/
전화번호 220-3541 팩스번호 043-220-5159 / tongil@korea.kr / 비공개(5)

가슴가득 호국정신 손길가득 보훈사랑

Fax sent by : 0426703485 ADG ▼ 30-06-13 18:06 Pg: 8/8

- 160만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

충 청 북 도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검토의견 회신

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806(2013. 6.14)호와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본 사업구간 내 지정된 일반산업단지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충 청 북 도

주무관 김용희 입지지원팀장 우호기 기업유치지원 2013. 6. 26. 과장 정호진

협조자 주무관 이응철 주무관 석재균

시행 기업유치지원과-7300 (2013. 6. 26.) 접수 광역도시도로과-913 (2013. 6. 26.)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신관 4층 / http://www.cb21.net

전화번호 220-3335 팩스번호 220-3319 / kyh02@korea.kr / 대국민 공개

가슴가득 호국정신 손길가득 보훈사랑

Fax sent by : 0426703485 ADG ▼ 30-06-13 18:06 Pg: 7/8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관계기관 협의의견(1) 통보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6026호('13.6.24) 및 충북도 균형개발과-6447호('13.6.24)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협의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각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인

[redacted] 전결 2013. 6. 25.

사무관대우 민인홍 시설사무관 이강녕 과장 김영국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904 (2013. 6. 25.) 접수 도로공사과-2430 (2013. 6. 25.)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Sent by : 0426703485 ADG 30-06-13 18:05 Pg: 1/8

충 청 북 도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협의의견 회신

1. 광역도시도로과-806(2013.06.14.)호와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협의의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 받으려면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 이 경우 도로, 완충녹지, 교통광장에 대하여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 처리되오니 그 이외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인 청원군수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람. 끝.

충 청 북 도

주무관 최민규 도시계획팀장 우상명 균형개발과장 전결 2013. 6. 24. 조병옥

협조자 주무관 이광재 주무관 장인수 주무관 최승환 주무관 김현정

시행 균형개발과-6447 (2013. 6. 24.) 접수 광역도시도로과-886 (2013. 6. 24.)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균형정책과 / http://www.cb21.net

전화번호 220-4132 팩스번호 043-220-4119 / cmkmin@korea.kr / 대국민 공개

가슴가득 호국정신 손길가득 보훈사랑

Fax sent by : 0426703485 ADG 30-06-13 18:06 Pg: 5/8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문 화 재 청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 회신

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806(2013.6.14)호 관련입니다.

2. 귀 부의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후 우리 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 통보한 문화재보존대책(발굴제도과-915, 2013.1.29, 붙임 참조)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나. 향후 사업추진 시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74조(준용규정)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우선 이행.

붙임 : 청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부지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1부. 끝.

문 화 재 청장

행정사무관 김종수 발굴제도과장 진결 2013. 6. 24. 채수희
협조자

시행 발굴제도과-6026 (2013. 6. 24.) 접수 광역도시도로과-885 (2013. 6. 24.)

우 302-12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둔산등) 정부대전청사 1등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www.cha.go.kr
전화번호 042-481-4957 팩스번호 042-481-4959 / sarang8833@ocp.go.kr / 비공개(5)

Fax sent by : 0426703485 ADG 30-06-13 18:05 Pg: 2/8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문화재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부지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1.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오창읍 도암리 일원 「청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제1차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2013.01.25) 심의결과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 추진에 반영(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시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되거나 조사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수락리 유물산포지 등은(133,988㎡, 「대상범위 지표조사보고서 참조)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또한 사업대상지 중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일대에 대해서는 유적 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없이 표본조사(59.900㎡, 조사범위는 지표조사보고서 참조)를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표본조사로 인해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 표본조사 결과 유구가 미확인된 경우 별도의 보존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라. 지표조사에서 유구,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구역은 별도의 보존조치가 필요치 않음.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청에 신고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바. 향후 사업계획 변경(구역 및 면적)이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 보존대책을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이 건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발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은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반드시 반영하여 매장문화재의 사전보호 및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청원군수(문화재육과장),옥산오창고속도로(주)

학예연구사	최민화	학예연구관	이은석	발굴제도과장	전결 01/29 윤순호

협조자

시행 발굴제도과-915 (2013.01.29.) 접수 문화체육과-2503 (2013.01.29.)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www.cha.go.kr

전화 042-481-4953 /전송 042-481-4959 / uriina@nricp.go.kr / 공개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

청 원 군

수신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경유)
제목 민원(노선변경 등 재검토요구-양인석) 회신에 대한 설명 요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양인석님이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변경 등 재검토 요구" 민원에 대해 귀 사에서 회신한 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요구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요구 사항

① 주민설명회(2012.10.29)시 주민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한 주민 건의내용, 동영상 자료, 참석자 명단 등 관련 증빙 자료

② 본 사업(옥산-오창 고속도로사업)은 2008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전에 관련 지자체(충청북도,청원군)와 협의하여 오창제2산업단지 등 청원군개발계획을 반영하여 확정한 노선임 → 우리군에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오창소재지를 더 우회 산악지역 노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요구 하였음

끝.

청 원 군 수 의 인

★주무관	박상갑	도로담당	정무영	건설과장	전결 06/12 이강준

협조자

시행 건설과-19099 (2013.06.12.) 접수 ( )
우 363-8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 http://www.corea0000.korea.kr
전화 043)251-3502 /전송 043)251-3519 / test@puru.net / 공개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협의의견 알림(옥산-오창)

1. 광역도시도로과-687(2013.06.03) 및 옥산오창 제2013-36(2013.05.27)의 관련입니다

2. 장관으로 부터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협의내용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업시행 시 협의내용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협의내용(옥산-오창)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무관대우	한형동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3. 6. 3. 서용옥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1767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564 팩스번호 042-670-3485 / hanhd@molit.go.kr / 비공개(5)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 알림

1. 도시광역교통과-887호('13.5.31) 및 귀 청 도로공사과-1701호('13.5.30)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개선필요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문 사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3. 6. 3.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687 (2013. 6. 3.) 접수 도로공사과-1742 (2013. 6. 3.)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자 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 송부

1. 광역도시도로과-670(2013.5.31)호 관련문서입니다.

2.「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대한 개선필요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제2013-10호) 1부. 끝.

도시광역교통과장

주무관	신경창	행정사무관	김진동	과장	05/31 안석환

협조자

시행 도시광역교통과-887 (2013. 05. 31.) 접수 광역도시도로과-680 (2013. 05. 31.)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813 전송 044-201-5579 / startshin@molit.go.kr / 비공개(2,5)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 개선필요사항

일련번호 제2013-10호

1.사 업 명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사 업 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3.사업기간	2012년~2017년	4.수립대행자	(주)평화엔지니어링
5.사업위치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 충북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6.용 도	도로시설(고속도로)
7.사업규모	· 총연장 : 12.1km, 4차로(B=23.4m) · 출입시설 : 옥산 JCT, 서오창 IC, 오창 JCT · 영업소 : 본선 영업소, 서오창 IC 영업소	8.사업형태	개발형태 도로건설사업

9.교통수요	구 간	년 도	승용차	버스		트럭				계	비 고
				소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특수		
	옥산JCT ~ 서오창IC	2019년	16,256	1,865	1,645	3,060	2,850	2,745	683	29,104	
		2023년	21,306	2,445	2,156	4,010	3,735	3,598	895	38,145	
	서오창IC ~ 오창JCT	2019년	11,102	1,274	1,124	2,090	1,946	1,875	466	19,877	
		2023년	18,031	2,069	1,825	3,394	3,161	3,045	758	32,283	

10. 주차면수	도로사업으로 주차면수는 해당사항 없음

1. 교통 개선대책

구 분	개 선 방 안				
진출입지점과 연결되는 주변가로	•과업노선 주변 교통시설계획 반영 –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남이JCT ~ 천안JCT) : 2010.12 기본설계 완료 – 당진~천안 고속도로 신설계획(4차로) : 실시설계 진행중 •주변 교차로 신호현시 최적(안)제시 (3개소, 주기조정 및 보행시간 고려) – ① 기좌사거리(비보호 좌회전 적용), ② 질문이삼거리, ③ 한전앞사거리 •질문이삼거리 인전시설 및 우회전전용신호등설치				
설계제원	연장	설계속도	운영속도	폭원 및 차로수	주요시설 및 공종
	12.1km	100km/h	100km/h	23.4m (4차로)	교량 및 기타부대시설

주 1 : 운영부분은 사전검토보완('13.03) 사항임

주 2 : 운영부분 밑줄 굵은글는 수정의결검토보완('13.05) 사항임

구 분		개 선 방 안	
	구 분	형 식	시 설
과업노선	㉮옥산 JCT	• 준직결형 Y형식 -경부고속도로와 접속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확장 기본설계안 반영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3개소 (L=290→294m, 305m, 670m, B=3.6m) -감속차로설치 3개소 (L=196m, 290m, 430m, B=3.6m) •운전자의 혼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입로 삭제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출로 설치 : 연결로에서 합류후 경부고속도로 유입으로 경부고속도로 교통안전성 및 지정체 완화 -가속차로설치 1개소(L=141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B"~"D" 확보 •청원휴게소 진입로, 오창방향 연결로에 대한 통합표지판 설치(5개소)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서울,대전 방향 문형식 표지(1개소), 노면표시 (3개소)설치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1,480m)
	㉯서오창 IC	•더블트럼펫형 -지방도540호선과 접속	•지방도 540호선과 접속계획으로 교통소통 및 접근성확보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4개소 (L=180m, 335m, 362m, 370m, B=3.6m) -감속차로설치 4개소 (L=160m, 205m, 210m, 340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A"~"C" 확보 •하이패스 안내표지 설치(3개소)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안내표지추가 설치(2개소)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1,235m)
	㉰오창 JCT	•직결형 (장래 트럼펫형 단계건설) -중부고속도로와 접속	•장래 동서5축 오창~울진구간 연계를 고려한 기본설계VE안 반영 (대전방향 연결로 - 장래 단계 건설)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1개소(L=365m, B=3.6m) -감속차로설치 1개소(L=220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C"~"D" 확보 •안내표지판 지명 통일(서울→천안)
	교통안전 및 기 타		•적정위치 및 위험구간에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본선 영업소 및 IC 영업소의 충분한 영업소 차로수 확보 -본선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IC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출구정보안내중심(지명) 고속도로 표지판체계 기준 적용 •내리막 경사구간 대절토구간 연결로에 종방향 그루빙 설치(L=6,985m) •IC 분류부 및 영업소에 충격흡수시설 설치(17개소) •오창JCT 대전방향 이용불가에 대한 정보제공(옥산JCT 부근 및 서오창IC 영업소에 설치된 VMS에 문자표출)
	지역분리 극복방안		•지역간 단절지점 연계시설 설치 - 부체도로 설치 : 40개소, 7,844.40m - 이설도로 설치 : 1개소, 259.0m - 통로박스 설치 : 30개소, 1,241.01m - 교량 설치 : 22개소, 2,387.0m

주 1 : 옥영부분은 사전검토보완('13.03) 사항임

주 2 : 옥영부분 일부 굵은체는 수정의결검토보완('13.05) 사항임

첨부 1. 수정의결보완서 및 종합개선안도 1부(별송).

2. 교통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 시행계획 1부. 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교통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을 송부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인)

2. 교통 개선대책의 시행계획

구 분		개 선 방 안	개소	연장 (m)	폭원 (m)	시행 시기	시행 주체	비용 부담
진출입 지점과 연결되는 주변가로		•과업노선 주변 교통시설계획 반영 –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남이JCT ~ 천안JCT) : 2010.12 기본설계 완료 – 당진~천안 고속도로 신설계획(4차로) : 실시설계 진행중 •주변 교차로 신호현시 최적(안)제시 (3개소, 주기조정 및 보행시간 고려) – ① 가좌사거리(비보호 좌회전 적용), ② 질문이삼거리, ③ 한전앞사거리 •질문이삼거리 안전시설 및 우회전전용신호등설치	– 3	–	–	사업 시행시	관할 관청	사업 시행자
과업노선	㉮옥산 JCT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확장 기본설계안 반영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3개소 (L=290→294m, 305m, 670m, B=3.6m) –감속차로설치 3개소 (L=196m, 290m, 430m, B=3.6m) •운전자의 혼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입로 삭제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출로 설치 : 연결로에서 합류후 경부고속도로 유입으로 경부고속도로 교통안전성 및 지정체 완화 –가속차로설치 1개소(L=141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B"~"D" 확보 •청원휴게소 진입로, 오창방향 연결로에 대한 통합표지판 설치(5개소)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서울대전 방향 문형식 표지(1개소), 노면표시(3개소)설치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1,480m)	– – 3 3 – – 1 – 5 – –	– – 1,269 916 – – 141 – – – 1,480	– – 3.6 3.6 – – 3.6 – –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서오창 IC	•지방도 540호선과 접속계획으로 교통소통 및 접근성확보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4개소 (L=180m, 335m, 362m, 370m, B=3.6m) –감속차로설치 4개소 (L=160m, 205m, 210m, 340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A"~"C" 확보 •하이패스 안내표지 설치(3개소)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안내표지추가 설치(2개소)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1,235m)	– – 4 4 – 3 2 –	– – 1,247 915 – – – 1,235	– – 3.6 3.6 – –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오창 JCT	•장래 등서5축 오창~울진구간 연계를 고려한 기본설계VE안 반영(대전방향 연결로 – 장래 단계 건설)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1개소(L=365m, B=3.6m) –감속차로설치 1개소(L=220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C"~"D" 확보 •안내표지판 지명 통일(서울→천안)	– 1 1 – –	– 365 220 – –	– 3.6 3.6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교통안전 및 기 타	•적정위치 및 위험구간에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본선 영업소 및 IC 영업소의 충분한 영업소 차로수 확보 –본선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IC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출구정보안내중심(지명) 고속도로 표지판체계 기준 적용 •대리막 경사구간, 대절토구간 연결로에 종방향 그루빙 설치(L=6,985m) •IC 분류부 및 영업소에 충격흡수시설 설치(17개소) •오창JCT 대전방향 이용객에 대한 정보제공(옥산JCT 부근 및 서오창IC 영업소에 설치된 VMS에 분산표출)	– – – 17 	– – – 6,985 –	– –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지역분리 극복방안	•지역간 단절지점 연계시설 설치 – 부체도로 설치 : 40개소, 7,844.40m – 이설도로 설치 : 1개소, 259.0m – 통로박스 설치 : 30개소, 1,241.01m – 교량 설치 : 22개소, 2,387.0m	40 1 30 22	7,844.4 259.0 1,241.0 2,387.0	– –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주 1 : 음영부분은 사전검토보완('13.03) 사항임

주 2 : 음영부분 밑줄 굵은선는 수정의결검토보완('13.05) 사항임

종합계획도 - 수정이길보만도 (1/ 10가)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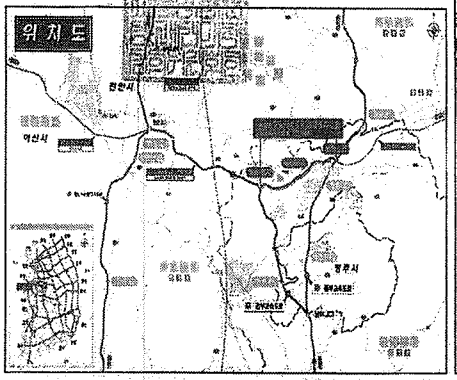

평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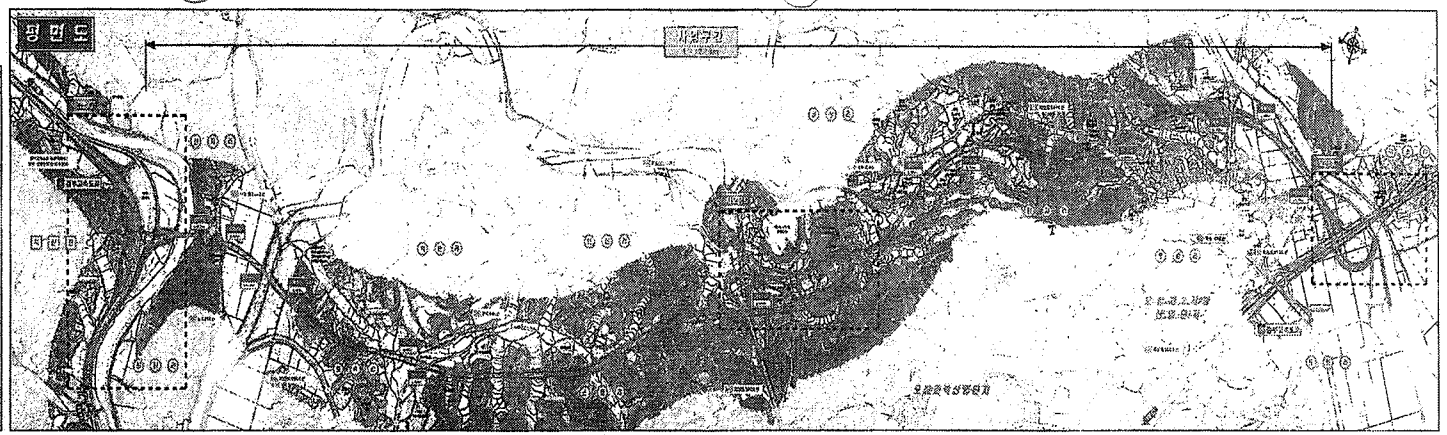

표준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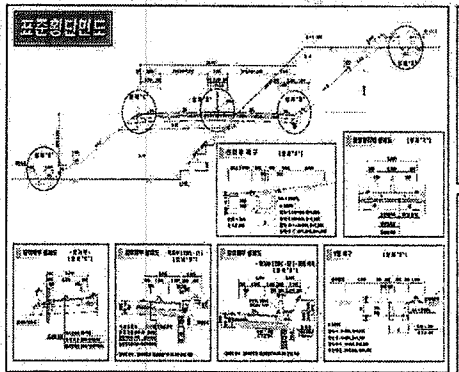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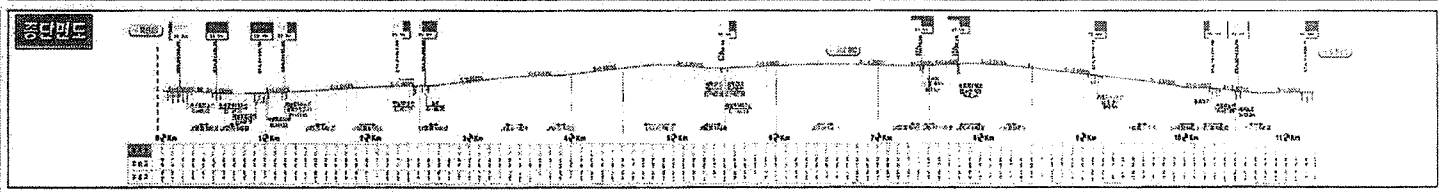

가 오한J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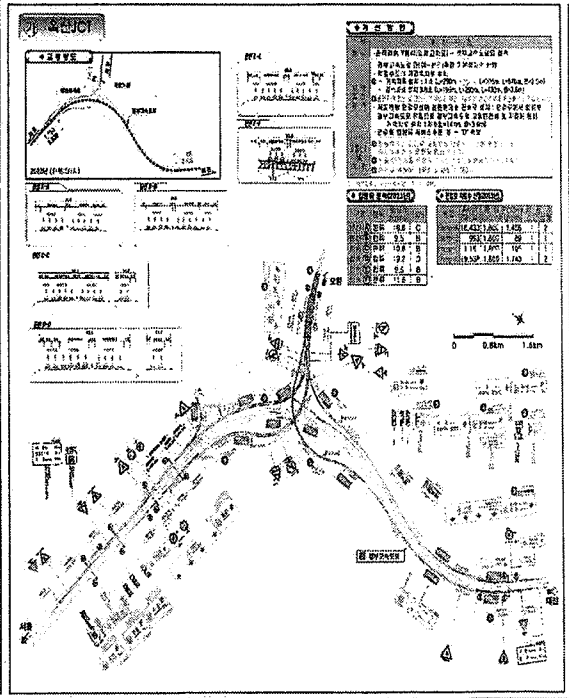

나 서오창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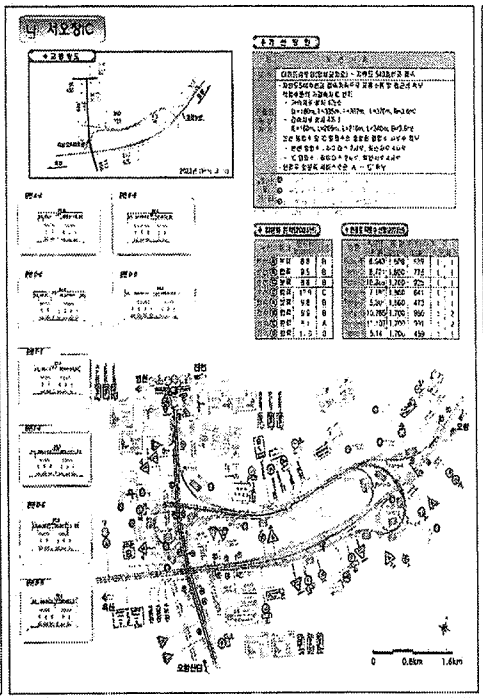

다 오창J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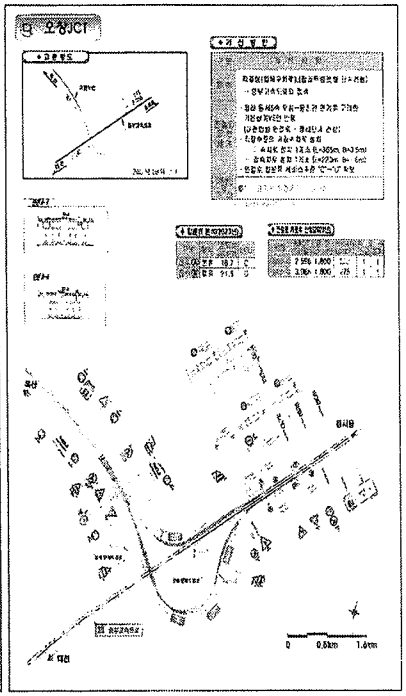

구분	검 토 내 용					
종합기본계획 및 검토방향	· 지방도로 확장 검토사업계획반영 - 검토사업 : 광역교통망 B지점 확장(남이JCT ~ 한천JCT) : 2016.12 기본설계 완료 당진 ~ 천안 고속도로 신설계획(사업) : 실시설계 진행중 · 주변 공사중 신호전시 확약(협의서 참조, 공사도중 및 준공시간 고려) · ※ 가림시키개(확약보 확보한 이후), ※ 임시이설키개, ※ 인천일시키개 · ※ 임시이설키개 인천시설 및 주변인근측신호등 고려					
설계개요	연장	설계속도	중앙분리대	폭원(차로수)	적용시설 및 경계	
	12.1km	100km/h	100km/h	23.4m(4차로)	교량 및 가림막(차단벽)	
구분	가	나	다	라	마	비 고
도로시설	· 본선일반 구간 설계 · 평면선형 기본설계 · 종단선형 기본설계 · 횡단선형 기본설계	평면도로계획 기준(KDS) - 인천일반 기준설계한 반영 최적수준의 기준속도로 설계 - 기속차로 설치 3개소 (L=200m~320m, L=305m, L=670m, B=3.0m) - 감속차로 설치 3개소 (L=190m, L=250m, L=430m, B=3.0m) - 본선에는 곡선 및 인천시고 여유율 등의 이용률을 인천일반설계 평균속도 인정할 것 최종방향 인천일반설계 평균속도 인정할 것 · 인천일반설계 평균속도 인정할 것 · 인천일반설계 평균속도 인정할 것 ·

가 옥산 JCT 상세도 (수정의결보완전=수정의결보완후-'1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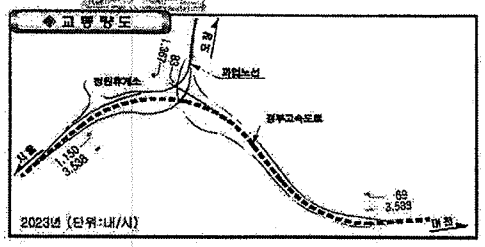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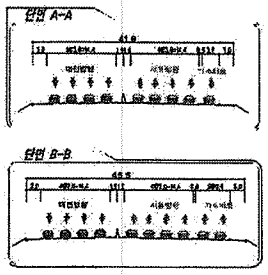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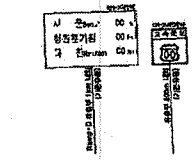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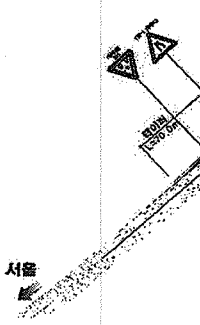

◆개 선 방 안

구분	개 선 사 항
형식	·준직결형 Y형식(입체교차로) - 경부고속도로와 접속
차량 동선 체계	·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확장 기본설계안 반영 ·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① - 가속차로 설치 3개소 (L=290m→ 294m, L=305m, L=670m, B=3.6m) - 감속차로 설치 3개소 (L=196m, L=290m, L=430m, B=3.6m) ② 운전자의 혼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입로 삭제 ·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출로 설치 : 연결로에서 합류후 경부고속도로 유입으로 경부고속도로 교통안전성 및 지정체 완화 - 가속차로 설치 1개소(L=141m, B=3.6m) ·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B" ~ "D" 확보
교통안전 및 기타	③ 청원휴게소 진입로, 오창방향 연결로에 대한 통합표지판 설치(5개소)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④ 서울·대전방향 분형식 표지(1개소), 노면표지(3개소) 설치 ⑤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L=1,480m)

주 : 적정단위 - 사전결토보관('13.03) 사항임

◆합분류 분석(2023년)

구분	형식	정도비 (pcpkm/h)	LOS
분석 Ⓐ	분류	16.6	C
분석 Ⓑ	합류	9.5	B
접속 Ⓒ	분류	10.6	B
접속 Ⓓ	합류	19.2	D
접속 Ⓔ	합류	9.5	B
접속 Ⓕ	분류	11.6	B

◆연결로 차로수 산정(2023년)

방향	AADT (대/일)	용량 (pcph)	PDDHV (pcph)	차로수 소요	차로수 결정
Ramp-A	16,433	1,800	1,466	1	2
Ramp-B	993	1,800	89	1	1
Ramp-C	1,181	1,800	105	1	1
Ramp-D	19,538	1,800	1,743	1	2

서오창 IC 상세도 (수정의결보완전-수정의결보완후-'1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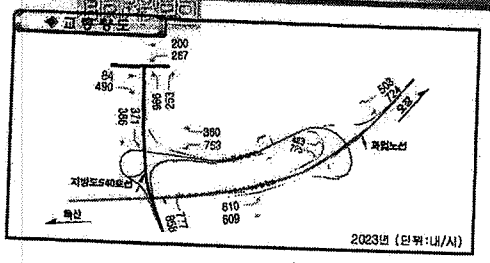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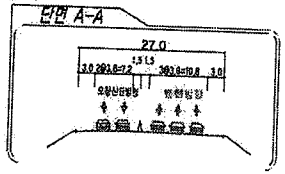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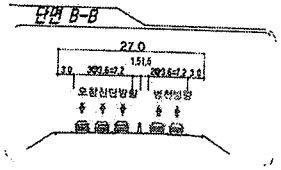

◆ 개 선 방 안

구분	개 선 사 항
공사	·더블트럼펫형(입체교차로) - 지방도 540호선과 접속
진출입부 개선	· 지방도540호선과 접속계획으로 교통소통 및 접근성 확보 · 직접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 가속차로 설치 4개소 (L=180m, L=335m, L=362m, L=370m, B=3.6m) - 감속차로 설치 4개소 (L=160m, L=205m, L=210m, L=340m, B=3.6m) · 본선 영업소 및 IC 영업소의 충분한 영업소 차로수 확보 - 본선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 IC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A" ~ "C" 확보
교통안전 시설	① 하이패스 안내표지 추가설치(3개소) ② 고속도로 진입로 위한 안내표지판가 설치(2개소) ③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L=1,235m)

주 : 차선표시 - 내부차로도색(13) 시행위

◆ 합분류 분석(2023년)

구분	형식	밀도 (pc/km/ln)	LOS
본선 Ⓐ	분류	8.8	B
본선 Ⓑ	합류	9.5	B
본선 Ⓒ	분류	8.8	B
본선 Ⓓ	합류	13.9	C
접속 Ⓐ	분류	9.8	B
접속 Ⓑ	합류	9.9	B
접속 Ⓒ	분류	5.1	A
접속 Ⓓ	합류	11.0	B

◆ 연결로 차로수 산정(2023년)

연결	AADT (대/일)	용량 (pcph)	DDHV (pcph)	차로수	설계
Ramp-B	6,043	1,600	539	1	1
Ramp-C	8,721	1,800	778	1	1
Ramp-D	10,369	1,700	925	1	1
Ramp-E	7,185	1,800	641	1	1
Ramp-F	5,305	1,600	473	1	1
Ramp-G	10,765	1,700	960	1	2
Ramp-H	11,107	1,700	991	1	2
Ramp-I	5,141	1,700	459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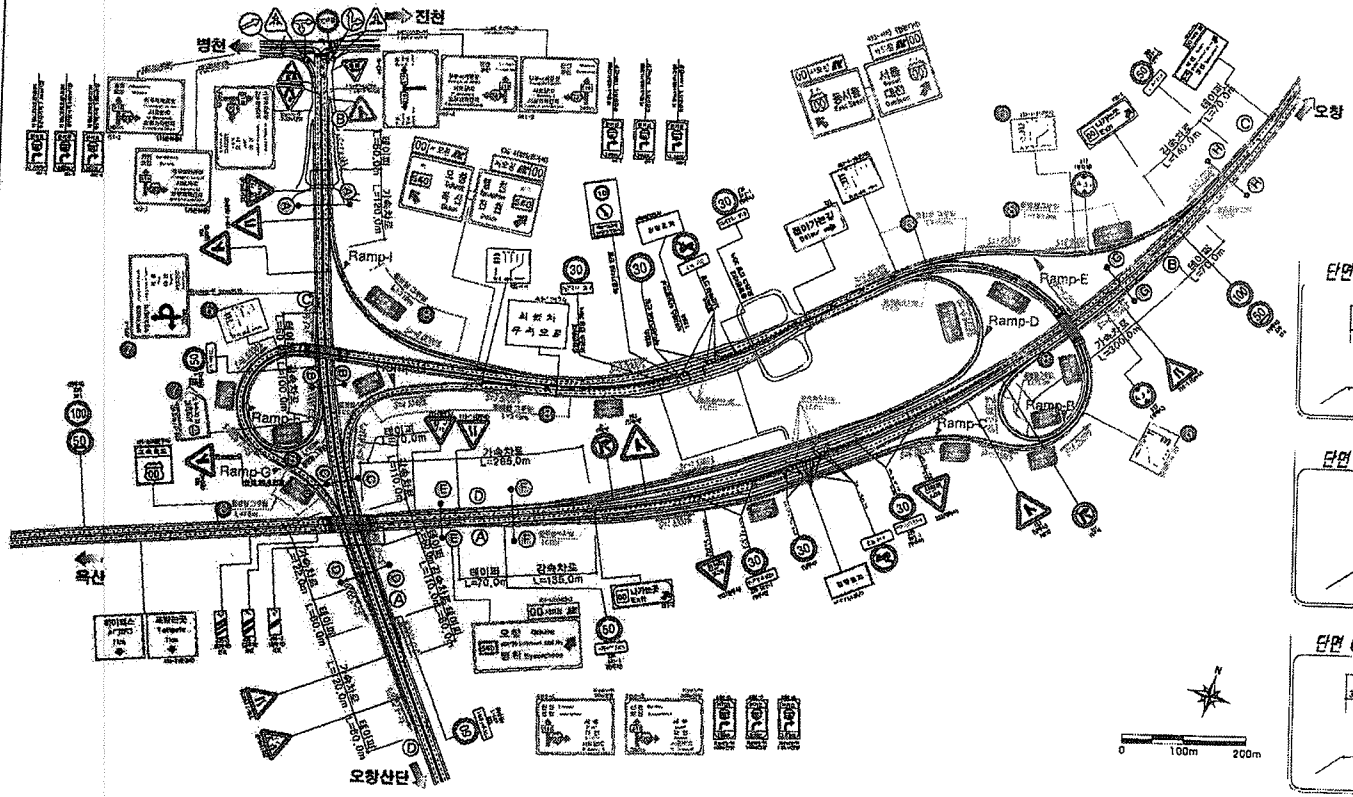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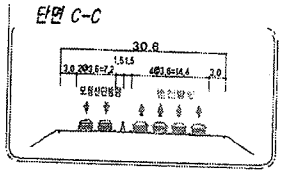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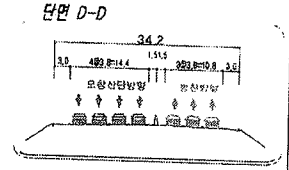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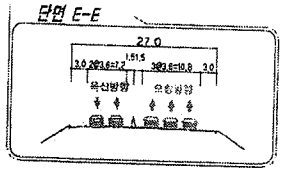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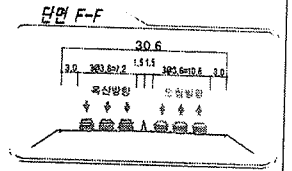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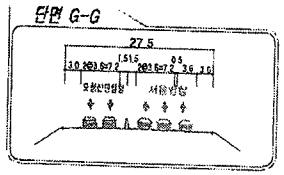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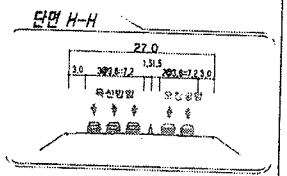

오창 JCT 상세도 (수정의결보완전=수정의결보완후-'1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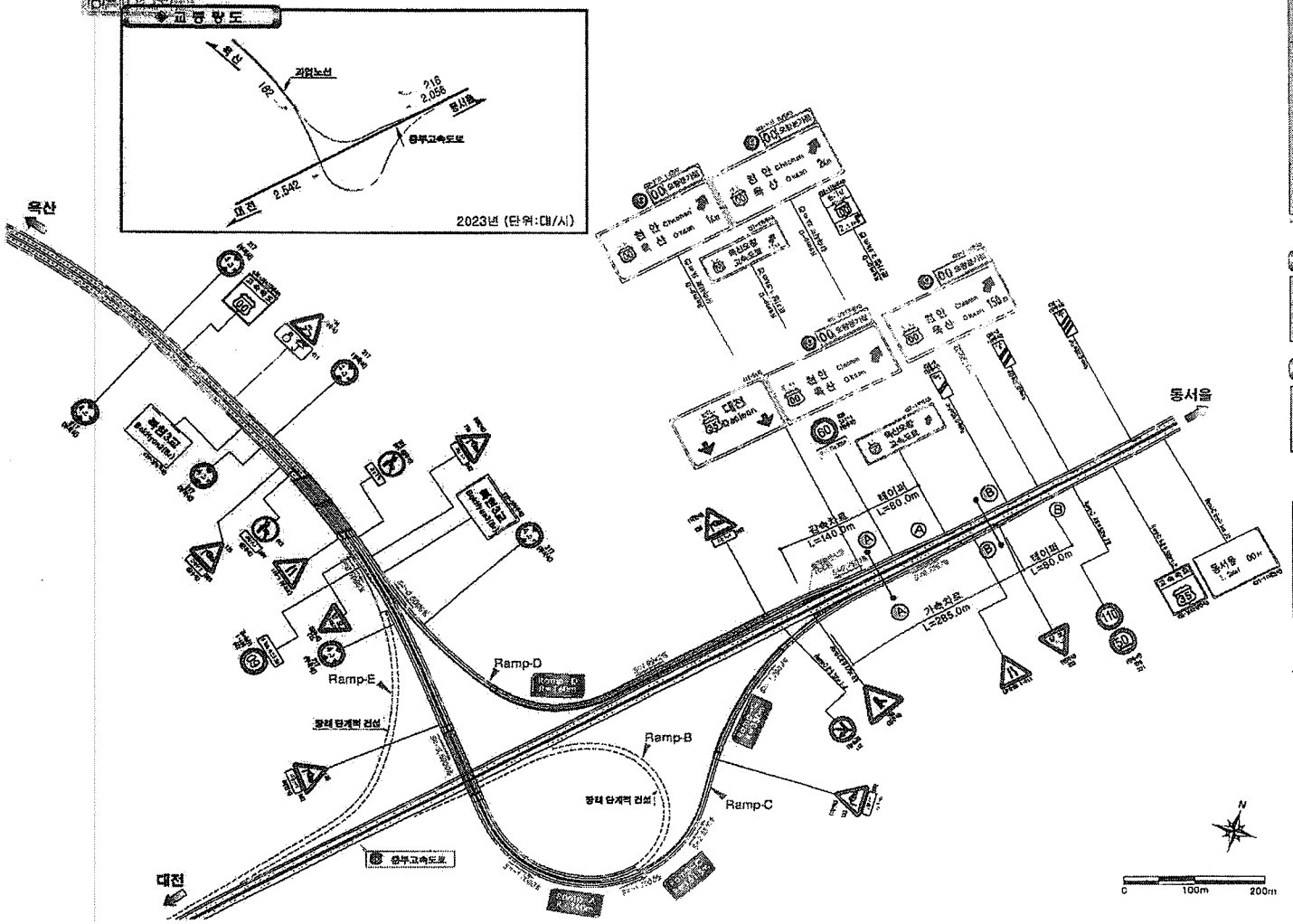

개 선 방 안

구분	개 선 사 항
형식	·직결형(입체교차로),(장래트럼펫형 단계건설) - 중부고속도로와 접속
진출입 동선 세계	· 장래 동서5축 오창-울진간 연계를 고려한 기본설계VE안 반영 (대전방향 연결로 - 장래단계 건설) ·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 가속차로 설치 1개소 (L=365m, B=3.6m) - 감속차로 설치 1개소 (L=220m, B=3.6m) ·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C"-"D" 확보
고려사항 및 기타	◎ 안내표지판 지명통일(서울→천안)

※ 적정분리 = 사전결로분리(1/3 ~ 2/3)

연결로 차로수 산정(2023년)

방향	AADT (대/일)	용량 (pcph)	PDDHV (pcph)	차로수 소요	차로수 설계
Ramp-C	2,596	1,800	232	1	1
Ramp-D	3,086	1,800	275	1	1

합분류 분석(2023년)

구분	형식	밀도비 (pcpkmpl)	LOS
접속 Ⓐ	분류	16.7	C
접속 Ⓑ	합류	21.9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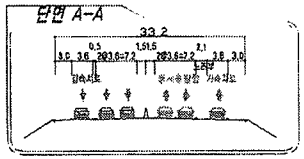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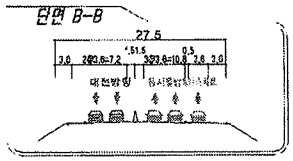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5. 3. - 5. 26.)

충 청 북 도

2013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의의견 회신

1. 균형개발과-4046호(2013. 4.17.)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 협의의견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균형개발과장

주무관	오철영	주무관	함동선	재난방재팀장	교육	치수방재과장	전결 2013. 5. 27. 권봉억		
협조자	주무관	손기용	주무관	김종식	하천계획팀장	이종선			
시행	치수방재과-9469	(2013. 5. 27.)	접수	도로공사과-1612	(2013. 5. 28.)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http://www.cb21.net
전화번호 220-4312 팩스번호 220-4319 / ocy2236@korea.kr / 대국민 공개

쉽고 편리한 우리집 새주소,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

협 의 의 견

□ 건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의

분야별	의 견
지방하천	○병천천을 횡단하는 병천천교의 설치로 인하여 계획홍수위가 상승되는 NO.79~NO.85 구간과 영향권내 기설제방고가 낮은 부족구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시행 바람. ○용두천을 횡단하는 용두천교와 성암천을 횡단하는 오창JCT Ramp-C교, D교 설치로 일부구간 수위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해당구간에 대한 소류력과 유속을 재검토하여 상승될 경우 호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치수사업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수위영향검토시 활용한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등에 자료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호천-병천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병천천과 용두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함. (미검토시 수문분석 재검토 요)
소하천	○본 개발구역에 포함된 소하천(양지, 성산, 수락)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청인 청원군 소하천 담당부서와 협의 바람. - 소하천 이설구간인 양지천(548.15m), 성산천(214.93m)에 대하여는 청원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구간으로 계획하폭, 제방고 등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소하천 설계기준(2012. 3. 소방방재청)을 준수 바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설계자문 결과 알림(옥산-오창)

1. 건설관리실-683(2013.05.15)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작성 양식에 따라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문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시고, 설계자문수당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결과(옥산-오창)
3. 자문의견 및 조치결과 작성양식 각 1부.
4. 자문비 산출서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무관대우 한형동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3. 5. 16. 서용옥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1326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564 팩스번호 042-670-3485 / hanhd@molit.go.kr / 비공개(5)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자 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설계자문 결과 알림(옥산-오창)

1. 건설관리실-400(2013.04.30.)호와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각 자문위원의 확인을 받아 우리 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문위원에게 배부한 자료의 회수 및 자문수당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설계자문 결과(옥산-오창) 1부.
2. 자문의견 조치결과(작성양식) 1부.
3. 자문비 산출서(옥산-오창) 1부. 끝.

건 설 관 리 실 장 김 성 수

주무관	김민수	사무관대우	박창순	사무관대우	강승일	시설사무관	이재호
실장	05/15 김성수						

협조자

시행 건설관리실-683 (2013. 05. 15.) 접수 도로공사과-1309 (2013. 05. 15.)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 042-670-3414 전송 042-670-3488 / mskim@molit.go.kr / 비공개(5)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 설계자문 개요

○ 일시 : **2013. 5. 13.(월) 13:30**

○ 방법 : 소집자문 / **우리 청 소회의실**

○ 안건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설계자문(마무리단계)

□ 자문결과

○ 선정위원 12명 중 11명 참석

분 야	소 속	성 명	자문의견수	비고
도 로 (2명)	(주)평화엔지니어링	이태옥	10	
	(주)드림이엔지	박용성	7	
토 질 (2명)	(주)도화엔지니어링	조영삼	6	
	중부대학교	정대석	6	
교 통 (1명)	국토연구원	정일호	4	불참
구 조 (2명)	한국교통대학교	방명석	6	
	우송대학교	정찬묵	5	
시 공 (2명)	금호건설(주)	피태희	6	
	케이투엔지니어링(주)	고현길	8	
도로안전 (1명)	도로교통공단	김택천	4	
환 경 (2명)	대전대학교	배병욱	3	
	LH토지주택연구원	김정곤	10	

○ 주요 자문의견

- 서오창IC 부근 잔여 부지에는 **태양열광판 설치 등으로 영업소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경부고속도로와 접속하는 구간은 곡선부에 위치하므로 **주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부대시설의 추가설치 검토**

※ 별첨 위원님 자문의견 1부. 끝.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00분야 000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 ~ ○○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자문회의 결과 위원별 지적사항과 동일하게 작성	1. 검토결과 원안적용은 사유를 명확히 기재	원안적용	별첨1
2.	2. 수정·보완사항은 보안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세히 기술하고 필요시 검토내용 등을 첨부 할 것.	수정·보완	별첨2
3.	3. 반영은 반영 전·후 구체적인 사항(필요시 대비표 등 첨부)을 기술 할 것	반영	별첨3

자문비 산출서

☐ 자문비용

○ 참석위원 : 11명×200,000원/명 = 2,200,000원

○ 불참위원 : 1명×100,000원/명 = 100,000원

☐ 지급기준

○ 자문수당(위촉직위원, 타 기관 당연직위원)

- 위원회 참석 : 1건 2일×100,000원/일 = 200,000원

* 위원회 미참석 : 1일×100,000원/일 = 100,000원

- 교통비 : 위원회 소집장소~평가위원 주소지까지 대중교통 이용요금 적용(KTX 일반실, 고속버스)

* 교통비는 위촉직 위원들에 한하여 실 참석 시 지급

○ 지급제외(감액) 대상

- 우리 청 소속직원의 자문비(타기관 소속위원은 지급)

- 자문회의 미참석 시 자문수당 1일 제외

(특) 한국산지보전협회

(우)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1 한국고원단체총연합회 6층
Tel 02-2058-3700 Fax 02-2058-3705 담당 이 준 호 이메일 ladei@kfca.re.kr

문서번호 산지보전 2013-173

시행일자 2013. 05. 15.

수 신 옥산오창고속도로㈜

참 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서 첨부서류 보완 요청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접수번호 2013-26(2013.05.07.)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옥산오창고속도로㈜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미비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합니다.

붙임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보완내용 요약. 끝.

한국산지보전협

韓國山地保全協會印

붙 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보완내용 요약

구 분	보 완 항 목
가.필요성	1) 신청면적 재확인 후 신청면적 변경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재작성 - 신청면적 변경일 경우 신청면적이 변경된 사업계획서로 재첨부 바람. 2) 위치도(jpg), 사업추진경위 3)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용도구역별, 지목별 및 소유별 총괄표
나.적합성	1) 피해방지계획(하류지역 홍수·유량상승·토사유출 등에 대비한 홍수조절지, 저류지, 침사지등) 2) 복구대상 절·성토 사면 면적(산지전용부분) ex) 절·성토 사면 수평투영면적 3) 원형존치산림 여부 및 조성녹지에 대한 관리계획 ex) 원형존치 없음, 조성녹지 준공후 귀납채부 등 4) 산지전용시 이용되는 도로현황 및 도로이용계획 5) 분묘처리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ex)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 등 6) 수림대·차폐림 조성계획(시설물·산지전용부분) 7)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다.환경성	-
라.기 타	※ 최초신청 첨부서류 중 PDF파일은 한글파일로 웹하드에 올려주시기바랍니다.

※ 위 내용은 보완공문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 보완내용은 CD파일 첨부 또는 우리협회 웹하드 올리기전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 [ID: KFCA3700, 비번: 0000]>

※ 문의사항은 총괄분석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총괄분석팀 이준호 사원 : 070-7875-4753>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대표이사
(경유)
제목 민원 이송(옥산-오창, 노선변경 등 재검토 요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 306-1번지 양인석님께서 붙임과 같이 서면민원(노선변경 요구)을 제출하여 사업시행자인 귀 사에 이송하오니,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 하시고, 회신문서를 우리 청에도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서류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무관대우	한형동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3. 5. 9. 서용옥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1148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564 팩스번호 042-670-3485 / hanhd@molit.go.kr / 비공개(5,6)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수신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경유)
참 조 :
제 목 : 설계심의 결과 통보(옥산JCT교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1. 우리공사 기술심사처-1060호(2013.05.08) 및 옥산오창 제2013-14호(2013.03.18)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경부선 316.6k 및 중부선 264.8k 상부횡단 교량에 대한 성과품 및 디자인 심의결과를 통보하오니 조치계획을 2013. 6. 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소요 비용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공문 사본 1부.
2. 심의 소요비용 산출내역 1부. 끝.

충 청 본 부

도로팀 **김영남** 도로팀 **김기현** 팀장 전결 **김낙릉**

시행 도로팀-1071 (2013.05.09.) 접수
우 306-8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79-2번지 / http://www.ex.co.kr/
전화 042-630-7263 전송 -- / gwanggaeto@ex.co.kr / 공개

'주소 하나로 빠르고 편리한 생활, 이제 도로명 주소입니다.'

문서출력 : 충청본부 도로팀 / 김영남 / 2013-05-10 10:06:11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 국 도 로 공 사

수신자 : 충청본부장
(경유)
참 조 : 충청지역 도로팀
제 목 : 설계심의 결과통보[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1. 기술심사처-745(2013.04.09), 도로처-1160(2013.03.28) 및 충청본부 도로팀-626(2013.03.25)호의 관련입니다.

2.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계획을 2013. 6. 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설계심의 결과통보서 1부.
2. 설계심의 의견서 1부. 끝.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기술심의팀 **손혁기**	기술심의팀 **유준석**	팀장 **정연권**	처장 전결 **홍두표**

시행 기술심사처-1060 (2013.05.08.) 접수 도로팀-1062/4707 (2013.05.08.)
우 461-7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 http://www.ex.co.kr/
전화 031-779-5493 전송 031-779-4199 / littleprince79@ex.co.kr / 공개
공람 도로팀 **김영남** 도로팀 팀장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안　건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심의결과

- 1호
  -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 조건부채택
  -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디자인(교량) : 조건부(3안)
  -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디자인(투석방지망) : 조건부(1안)
- 2호
  -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 조건부채택
  -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디자인(투석방지망) : 조건부(1안)

[설계심의 의견서 내용을 참조하여 반영하고,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붙　　임 : 1. 설계심의 의견서 1부.
2. 심의위원 확인서 양식 1부.　끝.

붙 임 1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설 계 심 의 의 견 서

2013. 4

기술심사처 기술심의팀

" 심의의견서 별도 첨부"

붙 임 2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 붙 임 : 설계심의결과 조치내용 1부.

설계심의결과 조치내용

□ 건 명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1. ...가 ...하여 ... 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는 ...기준에 따라 ..하였으나.. ..를 검토한 결과 ...의 기준을 만족하고, 경제성 및 시공성에서 유리하여....하였으며, ...는 ...의 사유로 ...가 불가피함.	원안적용 별첨#1-1
o 심의위원 OOO	2. ...는 ...하니 ...하기 바람.	2. 검토결과 ...는 ...를 고려하여 ...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음.	반영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고려대학교

직위 : 교수

위원 : 공 정 식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 옥산 JCT교의 경우 곡선교이며 경간장을 고려하고 JCT 부근의 지형 및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주변환경 순응적이고 경제적인 강박스 주형 형태의 교량이 적합하다 판단됨 - 기존 강박스 교량의 스터드 형식을 개선한 형태의 원안이 실적은 많지 않으나 관련 연구결과 성능에 문제가 없고 전형적인 강박스 거더교에 비하여 경제적이므로 원안 대로 추천함. 2. - 대상 교량 자체의 곡선교 특성 및 고속 도로 주행 시 곡선을 따라 변화하는 관찰점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교량의 색상은 상이한 색상 또는 패턴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씨티씨(주)

직위 : 대표이사

위원 : 이 희 현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램프교 가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료 제시 바랍니다. (크레인 용량, 안전율, 시공중 안정성 등) 2. 곡선교이므로 콘크리트 타설 순서에 따라 시공중 및 완공후 부반력 발생 여부 검토 자료 제시 바랍니다. 3. 면진 받침 적용 사유 및 설계 방법 기술 바랍니다. 4. SEB거더의 우수성에 관한 공인기관 검증자료 제시 바랍니다. 5. 가시설 계측은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계측빈도, 방법등 상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주)한국종합기술

직위 : 전 무

위원 : 임 부 호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공통사항 기본 및 실시설계시 검토된 교량에 대한 형식 비교안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때의 교량 연장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비교안 작성이 필요함.	설계 일반보고서 (P5-183)
2. 옥산 JCT RAMP-A교 1)강교 단면 검토시의 부재규격과 설계도면의 규격이 상이함. - SPLICE 7 상부 종리브 갯수 상이 (구조계산서:120X12,5개, 설계도면:120X12,2개) - SPLICE 11 상부플랜지 두께 상이 (구조계산서:12mm, 설계도면:10mm)	구조계산서(Ⅰ) P476,P494 설계도면 1.046,1.049
2)강상형 상세도에서 환기구 위치가 현장이음부와 간섭이 되므로 재조정이 필요함.	설계도면 1.026,1.028,1.042 ,1.044
3)맨홀(작업구멍)의 위치가 누락	강상형상세도
4)단지점부(A1,A2)의 지점부 보강재와 종리브와의 설치 순간격이 협소하여 용접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보완이 필요함.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참조)	설계도면 1.022,1.038,1.039 1.055,1.067,1.110
3. 옥산 JCT RAMP-C교 1)결로수 집수구와 맨홀(작업구멍)이 간섭되어 재조정이 필요함.	설계도면 2.037,2.057
2)강상형상세도 F11 단면이 강상형단면도 F11단면과 상이함.(B-Flange 보강여부)	설계도면 2.043,2.063,2.114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주) 동일기술공사

직위 : 부 사 장

위원 : 최 장 환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교각 형상을 평이한 T형 교각으로 계획하였는바 경관성을 고려하여 코핑을 곡선형태로 검토바람. 2. RAMP 교량의 경관 설계 측면에서 LED 조명을 상부 거더에 설치하여 야간 경관 효과를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바람.(가로등과 연계된 야간 자동 개폐시스템 적용) 3. 옥산 JCT RAMP-A의 경간구성이 65+65+50 = 180.0M로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측경간의 50M를 삭제하고 토공구간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4. 옥산 JCT RAMP-C의 경간구성이 60+70+60+30 = 220.0M 연속경간으로 30M 구간의 교대부가 부반력이 예상되는바 경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가설시 사용 장비가 650톤 C/C으로 자중 및 인양무게를 고려시 지반의 부등침하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지반보강 및 지침을 도면과 시방서에 상세히 명기하기 바람.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 대우건설

직위 : 상무

위원 : 지 홍 근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고속도로 횡단하는 곡선교량으로서 인양시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정확히 검토하여 인양포인트 및 상부가설단계별 크레인 배치계획 수립이 필요함 2. Ramp-A교와 Ramp-C교가 중첩되어 단계별 상부 가설계획을 세밀히 검토바람. 3. Ramp-A교 P1교각 하부시공시 고속도로와 간섭이 되는데 이에 대한 수립 필요. 4. 상부가설시 교통차단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검토 바람. 5.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후 종방향 거더의 구속으로 일정간격의 횡방향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양생방법을 검토 바람. 6. 교량하부 통과시 위압감,개방감 검토를 위해 상.하행선, 청원휴게소 진입로 등에 대한 주행 시뮬레이션 검토 바람.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도로처

직위 : 부 장

위원 : 박중규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설계심의 의견 - 강교의 개구부(충복식)는 향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최대한 확대(ρ=0.4미만)하는 방안 검토 (대상 : 램프A, C교) - 램프C교 A2는 ~~향후 도시계~~ 경부고속도로로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도면번호 2.003) - 램프A교 교각부 I.P 거더는 구조적 안정성측면(하중균등분배)을 감안하여 가로보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2. 공공디자인 심의의견 - 램프A, C교는 고속도로 본선 곡선반경과 휴게소 조망권을 고려할 때 교량상호간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1안이 바람직 - 램프A교 P1의 교량점검시설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향후 확장 시 미관을 고려하여 동 시설 범위를 계획하시기 바람. - 투석방지망은 향후 유지관리 및 미관(흙탕물) 등을 감안하여 디자인 1안으로 하되, 가급적 염화물 피해가 적은 재질사용 검토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디자인

소속 : 홍익대학교

직위 : 교수

위원 : 최 종 석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색채디자인 관련 표기는 전부 KS(한국산업표준)에 맞추어 먼셀기호를 병기하도록 요망 2. 모든 디자인 시방서에는 재질,마감상태,컬러등을 명기하도록함(컬러칩은 프린트물이 아닌 별도의 색견본 준비요망) 3. 디자인 투시도는 고해상도로 A1크기이상으로 출력하여 Detail을 이해할수 있도록 요망 4. 기존 설치된 도로변의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은 형태 컬러등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Simulation이 될수있도록 요망 5. 옥산JCT교와 오창JCT교의 디자인은 2개안을 구분하여 따로 발표 요망 6. 옥산JCT 3개 교량의 컬러를 통일하여 적용하되, 현장사진을 배경으로 simulation 요망, 명도를 약간 낮추어 제시 요망, 거더부분의 컬러와 상부의 2tone 컬러 경우 상부가 밝게 검토요망 7. 스텐레스 지주의 상부예각 삭제요망 - 금속소재는 모두 무광처리 요망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디자인

소속 : 성신여자대학교

직위 : 교수

위원 : 이 홍 구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교량의 전체 색 명도가 밝지 않게 해주세요. - 밝은 색을 넓어지면 더 밝아집니다. 2. 3개의 교량색을 통일해주세요. 3. (3)안을 중심으로 하되, 교대보다 거더를 어둡게 할 것 4. 투석방지망의 경우 무광처리, 상부 모서리를 뾰족하지 않게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고려대학교

직위 : 교수

위원 : 공 정 식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오창 JCT교의 경우 직선교이며 경간장을 고려하고 JCT 부근의 환경을 고려할 때 랜드마크적 형식의 교량보다는 주변환경 순응적이고 경제적인 PC 거더 주형 형태의 교량이 적합하다 판단됨 2. 오창교는 직선부 고속 도로 주행 시 지속적으로 관찰되게 되며 주형의 높이가 2.6m로 둔탁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시각보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슬림화를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씨티씨(주)

직위 : 대표이사

위원 : 이 희 현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하부교각 직경을 축소하여 경관성 및 시공성 등을 향상 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2. 가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료 제시 바랍니다. (인상높이, 작업반경, 크레인 용량, 안전율, 시공중 안정성등) 3. BICON 거더의 우수성에 관한 공인기관 검증 자료 제시 바랍니다. 4. 도면의 시공 순서도는 본 교량에 맞게 재작성 바랍니다. 5. 보강토 옹벽 하부지반 상태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 바랍니다. 6. 하부구조 및 기초 시공시 계측의 필요성 여부 검토 바랍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계측은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계측빈도, 방법등 상세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교각부 받침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주)한국종합기술

직위 : 전 무

위원 : 임 부 호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공통사항 기본 및 실시설계시 검토된 교량에 대한 형식 비교안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때의 교량 형식 및 연장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비교안 작성이 필요함. - 형식,특징,시공성,경제성,조형미,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비교안 작성	설계 일반보고서 (P5-183)
2. 교량 상부공 가설계획에서 시공시 사고우려와 고속도로 통행 차단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설대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설계도면 가설계획도
3. 현 설계인 BICON 거더교의 경우 형고가 2.6m로 조형미가 다소 저하되는바, 형고를 줄일수 있는 콘크리트 강합성 거더 계열의 상부형식 대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설계도면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주) 동일기술공사

직위 : 부 사 장

위원 : 최 장 환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오창 JCT 교량도 야간 경관 효과 측면에서 LED 조명을 상부 거더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2. RAMP-A 가설시 2대의 크레인을 사용하므로 크레인 로드게이지를 이용한 인양계획을 표시하기 바람. (각크레인의 적용 하중을 명시하기 바람.) 3. 가설시 사용장비 및 인양하중(약 850톤)으로 인한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반보강 및 지침을 도면과 시방서에 상세히 명기하기 바람.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 대우건설

직위 : 상무

위원 : 지 홍 근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고속도로 횡단하는 상부가설 단계별 크레인 배치계획 수립이 필요함 2. Ramp-A교 P1 교각 하부시공시 지방도 510 호선과 중부고속도로의 사면거동에 따른 도로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수립 검토 필요. 3. 상부가설시 교통차단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검토 바람. 4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후 종방향 거더의 구속으로 일정간격의 횡방향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양생방법을 검토 바람. 5. 오창JCT는 오창읍 구시가지에서 조망점을 추가로 분석하여 경관현황 및 조망특성을 반영한 순응형 교량임을 검토바람.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도로처

직위 : 부 장

위원 : 박중규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설계심의 의견 - 오창분기점 거더거치(700톤 하이드롤릭 크레인)시 크레인 전도등에 문제가 없도록 P1 임시 성토 지반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공공디자인 심의 의견 - 중부고속도로 상부(램프A교) 및 인접(램프C, D교) 통과구간의 교량색채는 교량상호간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1안이 바람직 - 투석방지망은 향후 유지관리 및 미관(흙탕물) 등을 감안하여 디자인 1안으로 하되, 가급적 염화물 피해가 적은 재질사용 검토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디자인

소속 : 홍익대학교

직위 : 교수

위원 : 최 종 석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색채디자인 관련 표기는 전부 KS(한국산업표준)에 맞추어 먼셀기호를 병기하도록 요망 2. 모든 디자인 시방서에는 재질,마감상태,컬러등을 명기하도록함(컬러칩은 프린트물이 아닌 별도의 색견본 준비요망) 3. 디자인 투시도는 고해상도로 A1크기이상으로 출력하여 Detail을 이해할수 있도록 요망 4. 기존 설치된 도로변의 가로등과같은 시설물은 형태 컬러등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Simulation이 될수있도록 요망 5. 옥산JCT교와 오창JCT교의 디자인은 2개안을 구분하여 따로 발표 요망 6. 스텐레스 지주의 상부예각 삭제요망 - 금속소재는 모두 무광처리 요망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디자인

소속 : 성신여자대학교

직위 : 교수

위원 : 이 홍 구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중부고속도로와 지방도 510호선에서 볼 때 교량의 높이가 낮아 보이는 이유로 교량 전체가 위압적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2. 교량의 거더를 알루미늄 판넬로 커버하여 전체적인 위압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3. 투석방지망의 경우 무광처리, 상부모서리를 뾰족하지 않게	

심의 소요비용 산출내역

□ 건　　명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1호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2호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심의위원 : 8명(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1명)

□ 심의 소요비용 산출내역

① 심의위원 심의료

o 1인당 심의료

구 분	심의시간	시간당비용	건수할증	1인당 심의비	비고
외 부	**8시간** · 사전검토 : 6시간 · 회의시간 : 2시간	40,000원/h	1.2(2건)	**384,000원**	
내 부	**6시간** · 사전검토 : 6시간	20,000원/h	1.2(2건)	**144,000원**	

o 심의료 산출

· 7명(외부위원) × 384,000원 =　　2,688,000원

· 1명(내부위원) × 144,000원 =　　144,000원

계 =　**2,832,000원**

※ 2010년 심의·자문료 및 여비지급기준 : 설계심의

② 타 기관 심의 수행에 따른 내부직원 인건비, 기타경비 : 3,600,000원

구 분	소집 심의·자문	서면 심의·자문	비고
업무과다	**3,600천원**	-	
업무보통	3,000천원	2,400천원	
업무과소	-	1,920천원	

□ **심의 소요비용** : 6,432,000원 × 1.1(부가가치세 포함) = **7,075,200원**

□ 기타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사본 · 전자세금계산서(별도송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 알림(옥산-오창)

1. 광역도시도로과-323(2013.04.25) 및 옥산오창 제2013-20(2013.04.04)의 관련입니다

2. 장관으로 부터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협의내용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옥산-오창)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무관대우	한형동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3. 5. 1. 서용옥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873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564 팩스번호 042-670-3485 / hanhd@molit.go.kr / 비공개(5)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1.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1067호('13.4.24)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256호('13.4.4)의 관련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3. 4. 25.
민인홍	이강녕	김영국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323 (2013. 4. 25.) 접수 도로공사과-757 (2013. 4. 25.)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내 용

<옥산-오창고속도로 민자사업>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 오창읍

○ 사업규모 및 주요 시설

연장	차로	교량	생태통로	JCT	IC
12.1㎞	4차로	22개소	2개소	2개소	1개소

○ 사업기간 : 2013~2017

○ 사업자(승인기관) :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국토교통부)

Ⅰ. 총 괄

○ 본 사업은 동·서축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인 옥산-오창고속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으로

- 각 항목별 검토의견과 저감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평가서에 제시된 예측자료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영향범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에 적용한 계획 및 조건 등의 변화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평가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환경영향조사 계획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시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동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당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대책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업승인기관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함

Ⅱ. 항목별 협의의견

1. 대기환경 분야

가. 대기질

○ 공사시 세륜·세차시설은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공사용 도로와 기존 도로의 접속구간에 설치하고, 비산먼지의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지역에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대기환경기준치(년, 일, 시간)를 초과할 경우 고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계획노선 인접 주요 정온시설에 대하여는 사후 모니터링 결과 기준에 근접하거나 예측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등의 조치계획이 필요함

○ 운영시 차량의 배기가스에 의한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오창 IC, JCT(옥산, 오창), 절·성토 사면부와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적정한 양의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여야 함

○ 대기질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00m 이내 지역(10개 지점)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평가서에서 제시(194쪽)한 대로 공사시(토공시 토공구간 인접지역은 매시간별 측정) 및 운영시 분기 1회 조사하여야 함

나. 온실가스

○ 평가서 207-208쪽에 의거 공사시 에너지 사용량 저감, 저탄소 재료의 사용 등 방안과 운영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개발 대비 선택대안의 감축효과 비교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함

2. 수환경 분야

가.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절토 지역은 산마루 측구, 평지 및 성토 지역은 가배수로 및 우수유입 방지둑 등을 선시공하고, 규모가 큰 침사지는 다단계로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침사지의 효율이 저하되어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경우 고분자응집제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하천구간에 대한 교량 공사시 일시적인 토사유출로 부유물질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공사구간 하류지역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가도설치 및 기초터파기 공사는 현장에 맞는 적정한 공법을 선정·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등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계획교량 주변하상의 유지(세굴 방지)를 위해 하상보호공을 적정하게 설치해야 함

○ 계획노선 편입지역에 포함되는 관정은 지하수질의 오염이 예상되므로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따라 원상복구 및 되메움 방법 등으로 적정 처리하여야 함

○ 도로구간, 교량구간, 영업소 등 불투수지역을 대상으로 평가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연형시설인 침투도랑 등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사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함

3.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 지역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통로박스 설치시 이용자가 빈번하거나

마을 인접지역 및 IC 또는 JCT 부근을 횡단하는 10m 이상의 통로박스에 대하여는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로의 특성, 지형조건 및 인근 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함

○ 계획노선은 다수의 도로와 교차구간을 형성하면서 불용토지가 발생(특히 IC, JCT 구간 등 교통섬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용토지에 대한 조경계획 등의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양

○ 지장물 철거작업 이전에 토양오염 개연성 지장물에 대한 토양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의 오염유무를 판단하고, 오염토양이 존재할 경우 오염토양 면적, 심도, 정화가 필요한 오염 토양량 산정 등 각 지장물별 구체적인 토양오염 정밀조사 계획(측정지점 개수, 위치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지형·지질

○ 종단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대절토사면고(30m 이상) 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방안을 시행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 훼손된 절취부를 조기에 복원시킬 수 있도록 현지지형에 맞는 초본류, 관목·교목을 선정·식재하여야 함
-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유지, 토사 및 암석 비탈면의 보강을 위하여 지층상태 및 비탈면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선정·시공하고, 절·성토 지역 등의 집중호우에 의한 재난에 대비하여 사면안정화 방안(보완서 72-75쪽)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생태통로는 지형적,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능선축에 설치하고, 주변에 지형경사가 완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복토와 사면경사를 조정하여 실효성있게 설치하여야 함

- 생태통로 설치 : 돛대산(폭 49m) 및 만뢰지맥(폭 45m) 통과구간

○ 부족토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한 토취장은 불필요한 지형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보완서 76쪽)하고,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최대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4.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 자연수종을 중심으로 이식대상 선정시 높은 고사율로 인한 가이식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생존율을 고려, 중·소형목의 입목에 적용하고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수목 재활용율을 높여야 함

- 계획노선 훼손수목 발생량에 비해 재활용율(2.71%)이 너무 낮으므로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시 추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통로 및 수로박스는 입·출구부에 유도 숲 조성, 통로 내부의 흙바닥 조성, 양서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수로바닥 수분유지 등 동물이동통로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시공하여야 함

- 특히 Road Kill 방지를 위한 대책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6)」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며, 유도울타리의 경우 목표종에 따라 침입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울타리 높이는 1.2-1.5m로 하되 종의 특성에 따라 더 높게 하여야 함

- 또한 수로 탈출시설은 소형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며 양서류의 집단이동 등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30m 간격으로 충분히 조성하고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고라니 등 중형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방도 0.7 이상의 생태통로 박스를 조성(보완서 85-86쪽)하여야 하며, 도로 특성에 따라 미확보시 지중강판 구조물로 변경하여 최대한 확장하여야 함

○ 가로등 설치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도관리 및 조명갓 등을 설치하여 불빛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생태계 지역에는 야간 차량통행에 의한 불빛으로 산림성 조류의 산란 및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지역에서 법정보호종인 수달, 황조롱이 등이 확인되어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 및 식생자원의 불필요한 훼손을 저감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광역생태네트워크중 그린네트워크는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고, 블루네트워크는 교량을 설치하여 분지맥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고 일부 생태단절이 발생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는 통·수로 암거 등을 설치하여 네트워크 연결성을 높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법정보호종 및 주요 생물종에 대한 모니터링은 공사시 월 1회 실시하여야 함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 지장물중 철거시 발생하는 석면슬레이트 잔재물은 적정 처리하고 기존정화조,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거전에 정화조의 분뇨를 전량 수거 처리 하여야 함

○ 임목폐기물은 성상별(줄기, 뿌리 등)로 분리 보관 및 건조한 후 목재, 나무제품 가공원료, 연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나. 소음 · 진동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장비분산투입 및 일일 작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저감토록 하여야 함

- 최종 저감방안 수립 후에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장남리우사3(보완서 127쪽)에 대하여는 작업시간 조정 등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시 제시하여야 함
- 저감계획 수립 후에도 기준에 근접한 일부 지역(KST, 복현리마을1 등) 및 민원발생 예상지역은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축사의 경우 소음저감 대책으로 작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인지능력이 제한적인 가축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므로 보완서(136-137쪽)에서 제시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발파 시 인근 주거지역, 축사 및 정밀기기공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발파를 토대로 장약량 최소화, 사전예고제 실시, 가설

토류벽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발파시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을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음·진동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합한 발파공법 선정 및 발파 설계를 시행하여야 함

○ 영향지역내 정온시설에 대한 운영시 소음도 예측결과 방음벽 설치시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주요 영향지역인 가옥(교육시설) 및 축사 등에서 인지하는 체감도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음대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적극수렴·반영하여 소음피해 및 민원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사시 주요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가설 방음판넬 설치부에 소음자동측정망(18개소)을 이동·설치하고, 소음전광판에 표시된 소음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장 및 주변지역에 이동식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모니터링 결과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피해 및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기존 방음시설의 제원 변경, 추가 방음시설 설치, 주민협의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경관, 일조장해

○ 각종 구조물(교량, 방음벽 등)의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디자인 적용과 아래의 내용을 반영한 경관 개선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 각종 구조물(교량, 방음벽 등)설치시 후면 노출부의 H빔 돌출, 불규칙한 콘트리트 마감 등 경관 저해요인은 미장 강판 등을 이용 차폐

- 조경수는 주변지역의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선정 · 식재

- 돛대산 생태통로 설치구간은 자연스럽게 지형이 연결되도록 계획하여 경관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방음벽 및 교량설치로 인한 실질적인 일조장해 피해여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민원발생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Ⅲ.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요약)

1. 대기질

가. 공사시(평가서 182-191쪽)

○ 가설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17개 지역)

○ 세륜·세차시설 설치(7개소)

○ 공사차량 속도 제한 및 규제 : 20㎞/hr이하 운행, 적재함 규제

○ 주기적 살수실시(건기시 및 토공사 성수기 추가 살수)

○ NO_2 저감을 위한 공사장비 분산투입 및 공회전 금지

나. 운영시(평가서 192-193쪽)

○ 환경정화수종 식재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194-196쪽)

2. 온실가스

가. 공사시(평가서 207쪽)

○ 에너지 사용량 저감, 저탄소 재료의 사용

나. 운영시(평가서 207-208쪽)

○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탄소 흡수, 하이패스·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209쪽)

3. 수질

가. 공사시(평가서 272-293쪽)

○ 우수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평가서 272-286쪽)

- 가배수로 설치 또는 물막이공 활용 배수시설 설치
- 침사지 설치(89개소) 및 침사지 효율증대 방안 강구

○ 하천횡단 교량구간 저감대책(평가서 287-289쪽)

- 교량공사시 수질오염 저감대책(가도설치, 기초터파기, 오탁방지막 등)
- 교량공정별 부유물질 저감대책

· 하천 유로변경시 저감방안

· 교량 기초공사시 저감방안

· 교량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방안

○ 공사시 지하관정 폐공 조치계획(평가서 290-291쪽)

○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오수처리(평가서 292-293쪽)

- BOD, SS 각각 10㎎/L 이하로 처리

나. 운영시(평가서 294-310쪽)

○ 시설물 운영에 따른 생활용수 및 생활오수 처리대책(평가서 294쪽)

- BOD, SS 각각 20㎎/L 이하로 처리

○ 비점오염원 처리대책(평가서 294-310쪽)

- 노면부 및 교량부 자연형시설인 침투도랑 설치

다.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311-313쪽)

라. 수질오염총량 관련(보완서 27-47쪽)

4. 토지이용

가. 공사시(평가서 347-348쪽)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나. 운영시(평가서 349-363쪽)

○ 계획노선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검토결과

○ 지역간 단절방지 대책

- 주거지 및 농경지 단절 : 교량 22개소, 통로박스 25개소, 부체도로 40개소, 이설도로 2개소

- 수로 및 하천 단절 : 수로박스 11개소, 통수로 6개소, 수로파이프 54개소

5. 토양

가. 공사시(평가서 376-379쪽)

○ 토양형질 변경으로 인한 토사유출 저감대책

○ 투입장비로 인한 폐유발생 저감대책

○ 현장투입 인부에 의한 발생분뇨 처리대책

○ 지장물 철거시 처리방안

○ 화약류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대책

나. 운영시(평가서 379쪽)

○ 비점오염원 처리대책

다.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380-381쪽)

6 지형·지질

가. 지형훼손 최소화(평가서 471쪽)

○ 절·성토구간 최소화(보완서 58-71쪽)

○ 비탈면 기울기 조정

나. 능선축 보전방안(평가서 472쪽)

○ 생태통로계획(보완서 48-57쪽)

다. 사토처리계획(평가서 472-473쪽)

○ 토취장 계획(보완서 76-82쪽)

라. 토사유출 저감방안(평가서 474쪽)

○ 우기를 피해 공사,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 설치

마. 지형개변지역 복구방안 및 활용방안(평가서 474-475쪽)

○ 공사용 진입도로 및 현장사무소, 부체도로 설치로 인한 지형변화대책

바. 비옥토 처리대책 및 활용계획(평가서 475-476쪽)

사. 시추공 폐공처리대책(평가서 477쪽)

아. 사면보호대책(평가서 477-480쪽)

○ 기후변화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안정화 방안(보완서 72-75쪽)

자.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481쪽)

7. 동·식물상

가. 육상, 육수식물

○ 훼손수목 처리방안(평가서 574-579쪽, 보완서 83쪽)

- 재활용율 높이는 방안에 대한 추가 대책 강구

○ 계획노선 식생피복계획(평가서 579-583쪽)

나. 육상동물

○ 생태측구 설치방안(평가서 584-585쪽)

○ 생태네트워크의 보전대책(평가서 585-598쪽, 보완서 84-91쪽)

- 생태통로 설치계획 : 육교형, 암거(박스형)형 설치방안

○ 유도울타리 설치계획(안)(평가서 599-602쪽)

다. 육수동물

○ 토사유출 저감방안, 교량공사 저감대책 수립(안)(평가서 603-605쪽)

라. 특정야생생물(법정보호종) 저감방안(평가서 606쪽)

마.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608쪽)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공사시(평가서 635-649쪽)

○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평가서 635쪽)

○ 폐유처리 대책(평가서 635-636쪽)

○ 건설폐기물 처리(평가서 637-642쪽)

○ 지정폐기물(잔류 유해물질) 처리대책(평가서 642-643쪽)

○ 유해성폐기물(석면, 수은, PCBs 등 함유) 처리대책(평가서 643-648쪽)

○ 임목폐기물 처리(평가서 648-649쪽)

나. 운영시(평가서 649-650쪽)

○ 영업소 운영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

○ 슬러지 처리방안, 도로변 폐토사류 처리방안

다.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651쪽)

9. 소음 · 진동

가. 공사시(평가서 743-770쪽, 보완서 111-137쪽)

○ 건설장비 소음저감대책(평가서 743-762쪽)

- 일반적인 소음대책(평가서 743-745쪽)
- 공사장비 투입 최소화, 민원발생 방지대책(평가서 746쪽)
- 가설방음판넬 설치(평가서 746-751쪽, 보완서 114-124쪽)

- 투입장비 조절 및 작업시간대 조정(평가서 751-752쪽, 보완서 125-126쪽)
- 최종 저감방안 총괄(평가서 753-762쪽, 보완서 127-136쪽)

○ 건설장비 진동저감대책(평가서 763쪽)

○ 구조물 기초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저감대책(평가서 763-765쪽)

○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평가서 765-770쪽)

나. 운영시(평가서 771-782쪽)

○ 방음벽의 저감효과 산정(평가서 771쪽)

○ 방음벽의 연장(길이) 산정(평가서 771쪽)

○ 소음저감시설 설치계획(평가서 772-782쪽)

다.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783-785쪽, 보완서 138-149쪽)

10. 경관

가. 조경계획 수립(평가서 842-858쪽)

나. 절·성토시 비탈면 발생에 따른 경관변화 저감대책(평가서 859-862쪽)

다. 방음벽 설치에 따른 경관저감대책(평가서 863쪽)

11. 일조장해(평가서 921쪽)

12. 인구 및 주거(평가서 926쪽)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 공사시 및 운영시 -PM-10, NO_2 -유지목표농도(PM-10 80㎍/㎥, NO_2 50ppb) 준수여부 -환경영향저감시설 :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운영, 살수차 운행현황 등	• 영향예상 지점 (10개 지점)	• 현지조사(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공사시 및 운영시 1회/분기(3일 연속측정) -토공시 토공구간 인접지역은 매시간별 측정
온실가스	• 공사시 -공사장비의 과부하 운행 및 불필요한 공회전·급정지·급가속 방지 대책 -공사시 저탄소 재료의 사용 확인 •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사용여부 확인	• 계획노선 내 -공사시 계획노선내 온실가스 발생구간(공사장비 사용구간) -공사시 저탄소 재료를 사용하는 공사구간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사용구간	• 현지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1회/반기
수질	• 공사시 -지표수 : BOD, SS등 16개항목 -하천통과교량 공사 지점 하천 상·하류 3개항목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5개항목 -지하수 : 23개항목 -토사유출 저감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점검 • 운영시 -영업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pH, BOD, SS, T-P, T-N)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입·유출수(pH, BOD, SS, T-P, T-N) -비점저감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점검	• 공사시 -현황조사지점 : 4개 지점 -하천통과교량(3개 하천) 공사지역 하천 상·하류 : 3개 지점(현황조사지점과 중복되는 3개지점 생략)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지점 : 1개 지점 -지하수질 현황조사 : 2개 지점 • 운영시 -영업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지점 : 1개 지점 -영업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출지점 : 1개 지점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 공사시 1회/분기(조사지점별 월조사 계획) • 운영시 1회/분기
토양	• 공사시 및 운영시 -Cd, Cu, As, Hg, Pb, Cr^{6+}, 유기인, CN, 페놀, TPH, 벤젠, 톨루엔, 에틸렌, 크실렌 -폐유저장소 적정 운영여부 -화약류 모니터링 계획	• 공사시 -현황조사지점(4개 지점) -서오창IC 휴게소 인근(1개 지점) -폐유저장소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지점 각 1개 지점 • 운영시 -현황조사지점(4개 지점) -서오창IC 유지관리사무소 인근(1개 지점)	• 현지조사(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공사시 1회/분기 • 운영시 1회/분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지질	• 공사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관리 -비탈면의 안정구배 유지 및 보호공법 시행 -비옥토수거 및 적치상태 확인 • 운영시 -비탈면의 안정구배 유지 및 보호공법 시행	• 계획노선 및 주변인접 영향권	• 현지조사	• 공사시 1회/분기 • 운영시 1회/반기
동·식물상	• 공사시 -식물상의 변화, 조사 -수목이식 현황 조사 -절·성토법면 녹화 조사 -육상동물상 현황, 영향 조사 -육수생물상 현황, 영향 조사 -법적보호종 현황, 영향 조사 -특히, 현지조사된 수달은 비상보전대책을 선 수립 후 정밀 모니터링실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현황 -생태통로 설치 상황 -공사구간별 분양이식 관리 및 현황조사 • 운영시 -식생복구지역의 천이 상황 -하천생물상의 동태 -특정야생생물의 동태 -생태통로 이용현황	• 훼손지역, 가이식장 • 식생조성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 공사시 (법적보호종 및 주요 생물종에 대해 월1회 모니터링) -식물상 : 3회/연 -동물상 : 4회/연 • 운영시 1회/반기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적법 처리여부 -발생 폐유류의 적정 처리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유해성폐기물(석면, 수은, PCBs등)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여부 -임목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여부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여부 -도로변(갓길포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여부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 공사시 1회/분기 • 운영시 1회/반기
소음·진동	• 공사시 -조사결과의 환경기준치 초과여부 -소음자동측정망 설치 및 관리 -공사시 저감방안이행여부 및 민원발생여부 -항타 및 발파시 소음·진동조사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관리여부 • 운영시 -환경기준치 초과여부 -방음벽 설치 및 관리여부 • 민원발생지점은 수시로 시행	• 공사시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12개소) -항타 및 발파시 주변 정온시설 • 운영시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12개소)	•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 공사시 1회/분기 (항타 및 발파시: 2회) • 운영시 1회/반기

Ⅳ. 행정사항

1. 사업승인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함)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되도록 조치하고,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를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부에 통보하여야 함

나.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부에 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이 사업계획에 반영(변경승인 등)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우리부에 통보하여야 함

라.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므로, 같은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일(인·허가일·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시 그 내용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 함

※ 붙임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식" 참조

마. 법 제3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자(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기관을 거쳐 우리부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 등의 변경사항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부와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의 사전검토 또는 우리부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의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착공한 날(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여야 함

마.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승인기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승인기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함

협의내용 반영 결과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장 위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3. 참고사항

작성요령

1. 사업계획 (승인)내용란에는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 승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협의내용 반영서류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설계도면·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반영할 사항이 아닌 내용인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명을 적으며,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3. 비고 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참고사항 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임을 시·도에 통보한 날짜 및 대상기관(부서명 포함)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미호천권역 하천통과 관련 협의요청 회신내용 알림(옥산-오창)

1. 하천계획과-540(2013.04.24) 및 옥산오창 2013-27(2013.04.18)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미호천권역 지방하천(병천천, 용두천, 성암천) 통과 구간의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하천기본계획 완료 시기에 맞추어 옥산-오창 사업에 이를 반영하여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신 공문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무관대우	한형동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3. 5. 1. 서용옥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872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564 팩스번호 042-670-3485 / hanhd@molit.go.kr / 비공개(5)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하천횡단에 따른 협의의견 회신(미호천 권역 기본계획)

1. 도로공사과-621호(2013.4.19)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노선과 관련하여 우리 국에서 시행중인 하천기본계획(미호천 상류권역(II), 미호천-병천천 권역)과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과 하천기본계획과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이 필요하나, 현재 과업 진행상(초기단계) 자료 제공 및 적합여부 검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가 확정되는 시기('14.5)에 맞춰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하천통과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시고 하천설계기준·해설(국토교통부, '09)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끝.

하 천 국장

주무관	주무관	과장	전결 2013. 4. 24.
가필순	배상근	이명원	

협조자

시행 하천계획과-540 (2013. 4. 24.) 접수 도로공사과-710 (2013. 4. 24.)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312 팩스번호 042-670-3487 /pillgood7@molit.go.kr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 국 도 로 공 사

수신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참 조 :
제 목 :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VE 수행결과 제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설계VE 위·수탁 협약서(2009.5) 관련입니다.

2. 위 협약서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수행한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VE 수행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실시설계VE 수행결과 요약 1부
2. 실시설계VE 보고서(별도송부). 끝.

No. 접수 2013. 4. 25 옥산오창고속도로(주)

한 국 도 로 공 사 사장

설계VE팀 **백경민** 설계VE팀 **김형무** 팀(부)장 **류제하** 처장 전결 **홍두표**

시행 기술심사처-840 (2013.04.17.) 접수
우 461-7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 http://www.ex.co.kr/
전화 031-779-5483 전송 031-779-4199 / 100km@ex.co.kr / 공개

'주소 하나로 빠르고 편리한 생활, 이제 도로명 주소입니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청원군 협조요청 검토지시(옥산-오창, 교량설치요청)

1. 청원군 건설과-11479(2013.04.11.)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청원군수로부터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측점 3+860지점의 농어촌도로 확장예정구간에 교량설치 요청(당초 통로암거)이 있어 검토지시 하니, 설치가능여부 및 구조형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원군 협조요청공문 사본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무관대우 한형동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서용욱 전결 2013. 4. 15.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482 (2013. 4. 15.)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564 팩스번호 042-670-3485 / hanhd@molit.go.kr / 비공개(5)

청 원 군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 관련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오창읍 화산리에서 구룡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2차선, B=8.0m)이 있어 아래와 같이 교량 설치를 요청하오니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ㅇ 고속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STA 3+860 지점 기존도로 통과 부분에 대하여
교량 설치. 끝.

청 원

★주무관 박상갑 도로담당 정무영 건설과장 전결 2013. 4. 11. 이강준
협조자

시행 건설과-11479 (2013. 4. 11.) 접수 도로공사과-439 (2013. 4. 12.)

우 363-8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 http://www.corea0000.korea.kr
전화번호 043)251-3502 팩스번호 043)251-3519 / test@puru.net / 대국민 공개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 국 도 로 공 사

수신자 : 충청본부장
(경유)
참 조 : 충청지역 도로팀
제 목 : 설계심의 계획 변경 통보[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1. 기술심사처-745(2013.04.09), 도로처-1160(2013.03.28) 및 충청본부 도로팀-626(2013.03.25)호의 관련입니다.

2.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에 대한 설계심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 다 음 -

가.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심의위원	㈜간삼파트너스 윤홍노 부사장	성신여자대학교 이홍구 교수

나. 변경사유 : 해외출장으로 인한 심의참석 불가

다. 심의일시 및 장소는 변동사항 없음

붙 임 : 설계심의 계획(변경) 1부. 끝.

한 국 도 로 공 사

기술심의팀 **손혁기**　　기술심의팀 **유준석**　　팀장 전결 **정연권**

시행 기술심사처-802 (2013.04.12.)　　접수 도로팀-831/3750 (2013.04.12.)

우 461-7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 http://www.ex.co.kr/

전화 031-779-5493　전송 031-779-4199　/ littleprince79@ex.co.kr　/ 공개

'주소 하나로 빠르고 편리한 생활, 이제 도로명 주소입니다.'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설 계 심 의 계 획

□ 심의개요

o 심의안건
- 1호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2호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o 요청부서 : 충청본부(사업시행기관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o 심의방법 : 소집심의

o 사전의견서 제출일 : 2013. 4. 18(목)

o 심의일시 : 2013. 4. 23(화), 14:00

□ 심의위원(8명)

전문분야	소 속(직위)	성 명
구조(2명)	고려대학교(교수)	공 정 식
	씨티씨(주)(대표이사)	이 희 현
철근콘크리트(2명)	한국종합기술(전무)	임 부 호
	동일기술공사(부사장)	최 장 환
시공(1명)	대우건설(상무)	지 홍 근
디자인(2명)	홍익대학교(교수)	최 종 석
	성신여자대학교(교수)	이 홍 구
내부(1명)	도로처 방재총괄팀(부장)	박 중 규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 국 도 로 공 사

수신자 : 충청본부장
(경유)
참 조 : 충청지역 도로팀
제 목 : 설계심의 계획 통보[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1. 기술심사처-745(2013.04.09), 도로처-1160(2013.03.28) 및 충청본부 도로팀-626(2013.03.25)호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고속도로(주)에서 시행중인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경부선 316.6k 및 중부선 264.8k 상부 횡단 교량에 대한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에 대한 설계심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다 음 -

가. 심의안건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1호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2호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나. 심의방법 : 소집심의
다. 심의일시 : 2013. 4. 23(화), 14:00
라. 심의장소 : 본사 제1별관 4층 세미나실
마. 심의위원 : "설계심의 계획" 참조
바. 협조사항 : 심의 소요 비용 - 사업시행기관 지급

붙 임 : 1. 설계심의 계획 1부.
2. 심의 소요비용 산출내역 1부.
3. 통장사본(별도송부) 1부.
4. 사업자등록사본(별도송부) 1부.
5. 전자세금계산서 1부(별도송부). 끝.

한 국 도 로 공 사

기술심의팀 손혁기　　기술심의팀 유준석　　팀장 전결 정연권

시행 기술심사처-753 (2013.04.09.)　　접수 도로팀-794/3534 (2013.04.09.)

우 461-7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 http://www.ex.co.kr/

전화 031-779-5493 전송 031-779-4199 / littleprince79@ex.co.kr / 공개

공람　　도로팀 김영남　　도로팀 김기현　　팀장 김낙륭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설 계 심 의 계 획

□ 심의개요

o 심의안건
- 1호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2호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o 요청부서 : 충청본부(사업시행기관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o 심의방법 : 소집심의

o 사전의견서 제출일 : 2013. 4. 18(목)

o 심의일시 : 2013. 4. 23(화), 14:00

□ 심의위원(8명)

전문분야	소 속(직위)	성 명
구조(2명)	고려대학교(교수)	공 정 식
	씨티씨(주)(대표이사)	이 희 현
철근콘크리트(2명)	한국종합기술(전무)	임 부 호
	동일기술공사(부사장)	최 장 환
시공(1명)	대우건설(상무)	지 홍 근
디자인(2명)	홍익대학교(교수)	최 종 석
	간삼파트너스(부사장)	윤 홍 노
내부(1명)	도로처 방재총괄팀(부장)	박 중 규

심의 소요비용 산출내역

□ 건　　명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1호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2호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심의위원 : 8명(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1명)

□ 심의 소요비용 산출내역

① 심의위원 심의료

o 1인당 심의료

구 분	심의시간	시간당비용	건수할증	1인당 심의비	비고
외 부	**8시간** · 사전검토 : 6시간 · 회의시간 : 2시간	40,000원/h	1.2(2건)	**384,000원**	
내 부	**6시간** · 사전검토 : 6시간	20,000원/h	1.2(2건)	**144,000원**	

o 심의료 산출

· 7명(외부위원) × 384,000원 = 2,688,000원

· 1명(내부위원) × 144,000원 = 144,000원

계 = **2,832,000원**

※ 2010년 심의·자문료 및 여비지급기준 : 설계심의

② 타 기관 심의 수행에 따른 내부직원 인건비, 기타경비 : 3,600,000원

구 분	소집 심의·자문	서면 심의·자문	비고
업무과다	**3,600천원**	-	
업무보통	3,000천원	2,400천원	
업무과소	-	1,920천원	

□ **심의 소요비용** : 6,432,000원 × 1.1(부가가치세 포함) = **7,075,200원**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 알림

1.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1099호('13.3.29)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민인흥 시설사무관 전결 2013. 4. 1. 이감녕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60 (2013. 4. 1.)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등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소 방 방 재 청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회신

1. 귀 부에서 협의 요청한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에 대한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의견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결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회신 1부. 끝

소 방 방 재 청

주무관	김기용	기술서기관	강옥륜	재해영향분석과장	최규용	방재관리국장	03/29 김계조

협조자

시행 재해영향분석과-1099 (2013. 03. 29.) 접수 광역도시도로과-49 (2013. 04. 01.)

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207호 / http://www.nema.go.kr
전화 02-2100-5228 전송 02-2100-5489 / zpdlfnql@korea.kr / 비공개(5)

2013. 3

[개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사전재해영향성 협의 의견서

NEMA

소 방 방 재 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서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재협의)』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본 건은 1. 9 위원회 개최시 재작성되어 3. 26 재심의한 사업임

1. 재검토 사항 조치결과 확인 : 보완완료

검토의견	조치결과 및 계획	반영 여부	비고
▪ 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대상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산지, 농경지, 배수체계, 저수지 등)	▪ 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대상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반영	P.5-53 ~5-55
▪ 본 개발사업과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추가 검토할 것	▪ 도로, 택지/산업단지, 하천, 민원 등 관련계획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후 장래계획에 부합하는 현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P.3-102 ~3-116
▪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위험지구 검토 등 저감방안 제시	▪ 호우재해(횡배수시설 저감시설) : PIPE(60개소), 암거(14개소) ▪ 토사유출방지시설 – 임시침사지 : 71개소(최소 18㎡) – 가배수로 : 76개소 ▪ 사면 및 지반재해방지시설 – 사면완화 : 18개소 – 녹화공법(식생기반재 취부공법, t=5.0~10.0cm) : 61개소(전구간) – Soil Nailing : 4개소	반영	P.3-114 ~3-116 P.4-5,6,10

검토의견	조치결과 및 계획	반영 여부	비고
▪ 재해유형별(지반·사면재해 등)로 세부적인 취약성평가와 저감대책 제시	▪ 하천재해 : 세굴보호공 (50~100cm 규격의 사석) ▪ 호우재해(횡배수시설 저감시설) : PIPE(60개소), 암거(14개소) ▪ 토사유출방지시설 - 임시침사지 : 71개소(최소 18㎡) - 가배수로 : 76개소 ▪ 사면 및 지반재해방지시설 - 사면완화 : 18개소 - 녹화공법(식생기반재 취부공법, t=5.0~10.0cm) : 61개소(전구간) - Soil Nailing : 4개소	반영	P.5-2~5 -52
▪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위치 선정 사유, 도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본 계획대상지역의 개발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유출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토사를 동반한 홍수의 흐름을 저류하여 미세한 토립자를 침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임시저류지겸 침사지를 설치하였음. 각 소유역에서는 개발중에 임시침사지를 통하여 토사유출량의 증가를 저감한 후 유역외부로 유출되도록 유역의 최종 유출부에 계획하였으며 소유역내 우수가 임시침사지(71개소)를 통과한 후 사업대상지구 하류로 유출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 적절한 크기의 가배수로(76개소)를 적절히 배치하였다.	반영	P.5-5~5 -20
▪ 본 개발사업 노선선정에 터널계획 노선을 포함 비교·검토하고, 최종안 채택 사유를 수록할 것	▪ 관련기관 협의 및 민원을 반영하여 현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깎기고 30m 이상 5개소 지점에 별도 터널설치 검토결과, 대부분 편측 30m 깎기고 발생구간으로 터널시공에 필요한 최소 토피고(1.5~2.0D) 미확보로 토공 깎기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P.3-102 ~3-116 P.1-15 ~1-20

검토의견	조치결과 및 계획	반영 여부	비고
▪ 하천이설 2개소에 대한 상하류 영향, 빈도설정, 교각설치에 따른 세굴 등의 수리검토를 추가할 것	▪ 하천이설 2개소에 대하여 상하류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이설전과 이설후 수위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또한 빈도설정과 관련하여 기존 상하류에 현재 개수공사가 진행중이며 그것에 맞춰 빈도를 설정하였음. 교각설치에 따른 세굴 등의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블록적용 검토하였으나 현장 암이 풍부하여 기존 규격 약 30 cm인 사석규격을 50 ~ 100 cm로 상향 조정하여 블록과 비슷한 규모로 적용하였음	부분 반영	P.4-26~4-31 P.5-3
▪ 사업노선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세부적으로 산사태발생 위험을 검토하고 재해저감방안 제시	▪ 기준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7개 구간 - 경사완화 및 비탈면보강(Soil Nailing) - 비탈면 녹화를 위한 식생기반재 취부 공법(t=5.0~10.0cm) ▪ 산사태 위험지구를 통과하는 8개 구간 - 비탈면 높이가 30m 이상인 5개구간 :시공중 비탈면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반 거동을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계측계획 반영 - 공용 중에는 전체 8개 구간을 중점관리 구간으로 선정하여 임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	반영	P.4-8~4-11, P.4-197~4-201 P.5-43~5-51 P.6-13~6-14
▪ 배수암거 및 통로암거의 연장이 길어(L=70m 이상)만관흐름, 토석류 등에 의한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수문·수리모형 재검토 제시	▪ 본 횡배수관 설치시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통수단면의 20%를 추가 확보하였음 ▪ 용도별 검토결과, 70m 이상 설치되는 곳은 평야지 용수용 6개소, 녹지대 배수용 2개소, 산지부 배수용 4개소 등 총 12개소가 발생함 ▪ 평야지 용수용 6개소 및 녹지부 배수용 2개소는 유지관리로 토석류 유입에 의한 재해위험에 영향은 없음	부분 반영	P.3-102~3-116 P.1-15~1-20

	▪ 산지부 배수용 4개소는 지형 분석결과, 완만한 평계곡, 경작하는 평계곡의 소유역으로서 산사태 위험지구 1,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본 사업구간 횡배수관 설치부는 토석류 및 유송잡물의 유입에 의한 재해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별도 검토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배수체계도를 제시할 것	▪ 노선선정시 대부분 기존 배수체계를 준용하였으며, 과업노선 계획에 따른 배수체계도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P.4-61

2. 추가의견 제시

□ 예측재해 저감대책에서

○ 노선선정 검토시 재해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추가 검토하기 바람.

○ 소하천 이설 2개소에 대해서는 수충부(직각으로 꺾이는 부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형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 양지천 직상류에 저수지가 있고 여수로가 양지천으로 연결되어 있는바, 양지천 선형변경에 따른 도수처리(감쇄공 설치 등)와 하상 및 법면 세굴방지 대책을 포함한 선형변경을 시키지 않는 방안은 없는지 추가검토할 것

○ 하천내 교각설치에 따른 수리검토는 주변 상·하류 수위 영향인자(윤변, 경심 등)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증가되는 수위는 현재수립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 하천관리청과 협의 공문을 수록하기 바람

○ 배수관 유속은 적정유속(0.8~3.0m/s)을 지키고, 초과되는 경우는 유입구 및 유출구에 감쇄공 등을 설치하여 유속을 저감시킬 것

○ 개발후 홍수량 감소하였는바, 홍수량산정을 재검토하기 바람

○ 토사유출량 산정시 현장 위치별로 지층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위치별 현장의 지층조건을 고려하여 K값을 적용할 것

○ 산사태위험지구 계측관리는 개발중·후 철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측하기 바람

○ 생태통로 BOX 위치를 명확히 제시할 것(도면)

□ 본 과업에 대하여

○ 본 검토보고서와 협의의견은 시공시 실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계획(실시설계보고서, 설계서, 시방서 등)에 모두 보완 반영하여 인·허가를 받아 주시고, 제시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현장에 맞는 이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 관리하시기 바람

○ 사업시행자는 사업 착공전 재해저감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준공전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전 협의의견 변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람

○ 본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끝.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알림

1. 도시광역교통과-4호('13.3.29)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수정의결)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민인홍 시설사무관 전결 2013. 4. 1. 이강녕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59 (2013. 4. 1.)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3년 제2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송부

1. 도시광역교통과-795(2013.3.20)호 관련 문서입니다.

2. 2013년 제2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심의결과를 반영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일 시 : 2013.3.25(월) 14:00 ~ 17:30
- ㅇ 장 소 : 우리 부(6동) 소회의실(643호)
- ㅇ 심의위원 : 성균관대학교 김광식 교수 등 8명
- ㅇ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사 업 자	심의내용
1	행정도시~공주 도로확장공사(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정의결
2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건설사업(변경)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정의결
3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안의결
4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최초)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수정의결
5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및 배후부지 조성사업(변경)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등 3개	수정의결

붙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각 1부. 끝.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

☐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최초심의)

☐ 심의일시 : 2013. 3. 25(월)

☐ 사업개요

- ㅇ 사업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 오창읍
- ㅇ 사업규모 : 연장 12.1km
- ㅇ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
- ㅇ 사 업 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ㅇ 수립대행업체 : (주)평화엔지니어링

☐ 심의결과 : 수정의결

구 분	심의내용(구체적으로 제시)	비 고
진·출입지점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로 등)	-	
진·출입지점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로 등)과 연결되는 주변기로 및 교차로	-	
대중교통 및 보행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	
주차 (휴게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	
교통안전 및 기타	- 오창 JCT에서 운전자에게 방향별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는 표지판 설치 등을 검토할 것.	
지역분리 극복방안	-	

국토교통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신도시택지개발과장, 광역도시도로과장, 철도건설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교통계획과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항만물류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전결 03/29
신경창	김진동		안석환

협조자

시행 도시광역교통과-4 (2013. 03. 29.) 접수 광역도시도로과-53 (2013. 04. 01.)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813 전송 044-201-5579 / startshin@mltm.go.kr /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국 토 해 양 부

희망의 땅 기회의 바다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3년 제2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1. 신도시개발과-356(2013.3.19), 광역도시도로과-736(2013.3.20), 철도건설과-548(2013.3.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431(2013.2.18) 및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1005(2013.2.19)호 관련 문서입니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따라 2013년 제2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심의대상 사업자의 회의참석과 사전검토보완자료 설명 등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3.25(월), 14:00~17:00**
2. 장 소 : **국토해양부(6동) 소회의실(643호)**
3. 안 건

연번	사 업 명	사 업 자	비 고 (심의예정시간)
1	행정도시~공주 도로확장공사(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00~14:30
2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건설사업(변경)	한국철도시설공단	14:30~15:00
3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15:00~15:30
4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최초)	옥산오창고속도로(주)	15:30~16:00
5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및 배후부지 조성사업(변경)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등3개	16:00~17:00

붙임 : 2013년 제2차 심의위원회 상정안건 개요 1부. 끝.

도시광역교

수신자 신도시개발과장, 광역도시도로과장, 철도건설과장, 항 설청장(교통계획과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항만물류과장)

주무관 신경창 과장 03/20 안석환

협조자

시행 도시광역교통과-795 (2013. 03. 20.) 접수 철도건설과-561 (2013. 03. 20.)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전화 044-201-3813 전송 044-201-5579 / startshin@mltm.go.kr /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2013 제2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상정안건(5건)

① 행정도시~공주 도로확장공사(변경, 재심의)

- ㅇ 사업위치 : 충남 공주 장기면~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ㅇ 사업규모 : 연장 6.3km
- ㅇ 사업기간 : 2009년 ~ 2017년
- ㅇ 승인관청, 사업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ㅇ 수립대행업체 :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②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 건설사업(변경심의)

- ㅇ 사업위치 : 충북 청원군 강외면~광주 광산구 송정동
- ㅇ 사업규모 : 연장 184.502km, 4개 정거장
- ㅇ 사업기간 : 2006년 ~ 2014년
- ㅇ 승인관청, 사업자 : 국토해양부(철도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 ㅇ 수립대행업체 : (주)평화엔지니어링

③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변경심의)

- ㅇ 사업위치 : 경기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등 13개 리 및 동 일원
- ㅇ 사업규모 : 면적 24,014,896㎡
-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5년
- ㅇ 승인관청, 사업자 : 국토해양부(신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 ㅇ 수립대행업체 : (주)건화

④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최초심의)

○ 사업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오창읍

○ 사업규모 : 연장 12.1km

○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

○ 승인관청, 사업자 : 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수립대행업체 : (주)평화엔지니어링

⑤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및 배후부지 조성사업(변경심의)

○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남해화학(주) 회처리장 전면 공유수면

○ 사업규모 : 하역능력 973.25만톤/년

○ 사업기간 : 2004년 ~ 2014년

○ 승인관청, 사업자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여수국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 수립대행업체 : (주)해오름이엔씨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대표이사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류 재출요청 알림(옥산-오창)

1. 국토환경평가과-516(2013.02.21) 및 옥산오창 제2013-5(2013.01.14)의 관련입니다

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공문 1부.
2.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사항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무관대우	한형동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3. 2. 25. 서용욱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991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64 팩스번호 042-670-3485 / hanhd@mltm.go.kr / 비공개(5)

환 경 부

수신 국토해양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1. 광역도시도로과-194(2013.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에서 협의 요청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보완 요청하오니 보완서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사항 1부. 끝.

환 경 부 장

환경사무관	조상대	과장	전결 2013. 2. 21. 박찬갑
협조자			

시행 국토환경평가과-516 (2013. 2. 21.) 접수 광역도시도로과-491 (2013. 2. 22.)

우 427-72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환경평가과 / http://www.me.go.kr

전화번호 044-201-7294 팩스번호 044-201-7304 / jd3874@me.go.kr / 비공개(5)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사항

1. 총 괄

○ 본 사업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과 오창읍을 연결하는 사업(연장 12.1km, 4차로, 설계속도 100km/h)으로 아래 제시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고 요구내용 중 보완이 어려운 사항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2. 항목별 보완사항

가. 수질

○ 수질오염총량 관련

- 수질오염총량관리 제3단계('16-'25)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제3단계 지역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한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누락되어 있음

나. 지형·지질

○ 생태통로계획

- 단절 능선축(만뢰지맥 등) 구간에 대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제시된 생태통로의 위치 및 규모를 검토한 결과 지형적·생태적 연결성에 있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생태통로의 위치를 능선축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조정하고 폭원을 최소 50m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반영한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생태통로의 위치가 능선축이 아닌 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능선축 훼손에 따른 지형적 연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 이동로의 기능에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생태통로 주변으로 지형경사가 완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복토와 사면경사를 조정

· 충분한 복토가 가능하도록 파형강관보다는 강한 지지력을 가지는 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지형훼손 최소화

- 계획노선 주변으로 30m 이상의 대절토 구간(6개소)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만뢰지맥 통과구간인 STA.8+200~900에서 절토사면이 산정부에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형훼손이 우려됨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면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면경사 완화방안을 적용하고 있어 절토사면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규모 절토사면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사면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절·성토, 조경계획에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강수 집중도, 토석류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사면안정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토취장 계획

- 평가서(초안)시 예상되던 부족토량(376,500㎥)을 서오창 IC내 토취장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서오창 IC의 지형변화 및 토공계획에 대해 평가서(초안)의 계획과 비교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지형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 계획노선의 대부분 절토구간에서 사면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경사완화 방안을 적용하고 있어 토취장 개발과 더불어 부족토량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부족토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지형훼손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다. 소음·진동

○ 공사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 계획노선 인근 정온시설중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소음도 재산출 및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후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작업시간 단축(1일 3-6시간 이하)을 통하여 소음규제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정온시설의 특성상 축사 등에 대한 소음영향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기에는 저감수단이 미미하므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

※ 가설방음판넬에 의한 소음의 회절감쇠 산정시 음원과 가설방음판넬의 거리(10m, 20m, 30m 이상을 각각 산정), 가설방음판넬과 수음점의 거리(10m, 20m, 30m 이상을 각각 산정)를 명시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 운영시 계획노선 부근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계획노선에서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넬 설치부에 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1마이크로폰의 위치는 계획노선과 정온시설을 연결하는 최단 이격거리의 접점에서 가설방음판넬이 설치되는 부분의 접점 상단부 1m에서 공사장 내부로 0.5m 지점에 공사장 내부를 지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2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정온시설의 외부(창문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한 지점) 또는 정온시설의 전면부에 설치하여 전광판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전광판에는 각각 두 개의 마이크로폰의 소음도를 현황소음도로 동시에 표시토록 하여야 함

· 공사장 및 주변의 교통소음 등 배경소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등을 설치하여 전광판에 표기된 소음도가 공사시 소음인지 배경소음(BGN)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이 다수인 경우 주요 지점에 대하여 모니터링 지점을 선정하여야 함

라. 동·식물상

○ 훼손수목 재활용

- 계획노선 훼손수목 발생량에 비해 재활용율(2.71%)이 너무 낮으므로 주변 사유지 소유주 이식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재활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통로박스 설치계획

- 통로박스 설치지점에 대하여 고라니 등 중형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개방도 0.7 이상의 생태 통로박스 조성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마. 경관

○ 경관계획

- STA.300-400 구간은 남측의 돛대산과 북측의 산지가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시각적 연결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동 구간에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바 주변의 지형과 단차가 발생하거나 절토사면이 조망될 경우 경관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상기 구간은 최종조망점 10번을 선정하여 영향을 예측하였지만 상장남 마을의 가장 끝자리로 선정하고 있어 경관적 영향을 대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장남 마을의 진입도로와 주요 생산 및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을 추가 선정하여 예측하여야 함

- 가시권 분석시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경관변화지역(대절토·고성토 조망지역, 차폐조망지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변화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관 영향예측시 전반적으로 경관 시뮬레이션 상세과정을 제시하여야 함

○ 교량계획

- 계획노선중 STA.9+500-10+000 구간은 고성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복현마을과 분투골마을 등에서 복현천으로의 조망을 차단하고 있고, 또한 반대편의 새터마을과 연결도로가 있는 지역으로 하천 조망의 차단과 차폐감, 마을간 접근성 악화 등이 예상되므로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상기 구간에 대한 조망점 12번을 선정하여 경관변화를 예측하였지만 주요 경관영향이 발생하는 지역은 그 반대편에 입지하고 있는 복현 및 분투골 마을로 최종 조망점 선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토해양부

국 토 해 양 부

희망의 땅 가치의 바다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검토결과 알림

1.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450호('13.2.13)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418호('13.1.23)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사전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국토해양부장관

사무관대우	민인홍	시설사무관	이강녕	과장	전결 2013. 2. 14. 어명소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414 (2013. 2. 14.) 접수 도로공사과-773 (2013. 2. 14.)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해 양 부

희망의 땅 기회의 바다

수신자 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보고서 사전검토결과 송부

1. 광역도시도로과-246(2013.1.24)호 관련 문서입니다.

2.「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보고서 사전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심의에 상정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전검토 조치의견을 종합적으로 구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내용항목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 사전검토 조치의견을 위원별(번호)로 구분하여 제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제27조제4항 1호 내지 8호

○ 심의위원회 상정 보고서는 사전검토를 받은 후 20부 제출

붙임 1. 제출양식 1(내용항목별 구분) 1부.
2. 제출양식 2(위원별 구분) 1부.
3. 제출양식 3(지침 제27조제4항 관련) 1부
4. 사전검토 결과서 1부. 끝.

도시광역교통과장 안석환

주무관	신경창	행정사무관	김진동	과장	02/13 안석환

협조자

시행 도시광역교통과-450 (2013. 02. 13.) 접수 광역도시도로과-411 (2013. 02. 13.)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전화 044-201-3813 전송 044-201-5579 / startshin@mltm.go.kr /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오창IC) ○ 중부고속도로의 대전방향의 접속부에 대한 검토는 추후 고려(?) 이유는? 도로건설시 병행 건설이 반드시 필요.	
5	○ 옥산JCT 오창방면 진출직결램프의 경우, 우측방향 진출로가 좌측방향 진출로보다 선행한다는 이용자의 기본인식과는 다르게 반대방식으로 진출로가 설계되어 있어 이용자의 진출동선 혼란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바, 진출방식을 재검토할 것. ○ 사업노선 주변 교차로 중 1.가좌사거리, 3.한전앞사거리는 보행시간을 고려하여 신호운영방안을 재검토하고, 특히 1.가좌사거리의 경우에는 남북측 접근로의 교통량이 적으므로, 비보호 좌회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미기재
6	○ 청원휴게소 진입로는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로 위치해 있어 내부동선이 복잡하고 역주행 등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으므로 진입로 위치를 재검토 할 것.	미기재
7	○ 옥산JCT의 연결로에서 연결되는 청원휴게소는 ICT와 근접 위치하고 있어 운전자의 경로선택 혼선으로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상·하류 휴게소와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휴게소 연결로 설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휴게소와의 연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경로선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로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 및 안내시설을 보완할 것. ○ 서오창IC 접속부의 "질푼이 삼거리"는 마을 진입로가 교차로 부근에 설치되어 있어 교차로에서의 교통 혼잡과 교통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으로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 본 과업은 민자노선으로 재정건설노선보다 요금수준이 높을 경우, 주민들의 민원 등이 예상 되는 바 민자노선에 대한 요금 수준을 제시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	미기재
8	○ 옥산JCT 오창방면의 청원휴게소 진입로는 램프의 곡선부 이후 바로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인성 및 인지성이 낮고 방향혼돈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주변에 설치된 휴게소를 고려한 진입로 설치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 바람.	미기재

	○ 사업노선은 동서축간 도로로서 동절기시 대절토 구간은 결빙위험이 예상되므로, 결빙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8.0km~10.0km구간은 경사가 약 3% 수준의 내리막 급경사구간에 S곡선이 복합된 구간은 사고통계상 악천후시(특히 강우시) 사고다발구간이므로 교통안전대책을 검토 바람.	
9	○ 옥산JCT 연결로(오창-서울)에 설치된 휴게소의 경우 연결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불합리한바 재검토 필요. ○ 옥산JCT 부산방향 접속부 가속차로 부분의 본선구간에 면한 길이가 짧아 시거 확보 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검토 필요. ○ 서오창IC 기존 도로로의 접속부 삼지교차로의 경우 측도가 가까이 접속하게 되어 있는바 안전시설 등 설치 필요. ○ 오창JCT 중부 서울방향 접속부 가속차로 또한 본선구간면한 구간길이 추가 확보 검토.	미기재
10	○ 사업대상구간내 IC, JCT의 본선과 램프의 분류부 지점에 충격완화 시설물 설치 방안 모색. ○ 사업대상구간내 IC, JCT의 램프부는 회전반경을 제시하고 경사도를 도면에 제시. ○ 과다 설치된 교통정보는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므로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청(경찰서)과 협의 후 설치. ○ 주변 교차로(①가좌사거리, ②질푼이삼거리, 한전앞사거리) 신호주기는 120초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p.261).	미기재
11	○ 사업지 주변 산업단지 및 과학단지로 대형화물차량(위험물 차량 포함)의 통행에 예상되는 바, 기상이변(강우·강설, 폭우·폭설)에 대한 구간별(예, 교량상판, 서오창 IC등) 대책수립 검토.	미기재
12	○ 청원휴게소는 서울방향 진입로 신설로 인하여 기존 휴게소 내부 차량동선체계 변경이 필요해 보임. 또한 차량동선변경에 따른 보행자 동선체계와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도 검토돼야 하겠음.	미기재

(제출양식 1)

< 작성예시 " 샘플" >

0 0 0 0 건설사업(변경)

(총 00건, 수용 0건, 미수용 0건)

□ 사업개요

-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남양방조제
- ○ 사업규모 : 매헌역사 이전(염곡사거리 방향 261.8m)
- ○ 사업기간 : 2007~2015년
- ○ 승인, 시행 및 대행자 : 철도건설팀, 신분당선(주), (주)ADL

□ 사전검토의견

항목별	사전검토의견	조치의견	수용 구분
대중교통 및 보행	○정류장이 도로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보행 교통량이 한곳에 치우칠 우려있음 -지하 1층의 모든 보행량이 집중되는 통로를 현재보다 확폭 설계 요망	○ 현재 설계되어 있는 중앙통로폭은 7.0m로 보행통행량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보행교통류율 24.30인/분/m로 분석되어 서비스수준 "B"로 분석되어 통행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판단됨	수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 사업별 내용항목 기준으로 작성)			수용

※ 글자모양, 크기, 줄간격 등 양식은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2)

< 작성예시 " 샘플" >

0 0 0 0 건설사업(변경)

(총 00건, 수용 0건, 미수용 0건)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남양방조제
○ 사업규모 : 매헌역사 이전(염곡사거리 방향 261.8m)
○ 사업기간 : 2007~2015년
○ 승인, 시행 및 대행자 : 철도건설팀, 신분당선(주), (주)ADL

□ 사전검토의견

위원 번호	사전검토의견	조치의견	수용 구분
1	○정류장이 도로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보행 교통량이 한곳에 치우칠 우려있음 -지하 1층의 모든 보행량이 집중되는 통로를 현재보다 확폭 설계 요망	○ 현재 설계되어 있는 중앙통로폭은 7.0m로 보행통행량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보행교통류율 24.30인/분/m로 분석되어 서비스수준 "B"로 분석되어 통행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판단됨	수용 P35
2	○ -	○ -	미수용 P48
3			

※ 글자모양, 크기, 줄간격 등 양식은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3)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지침 제27조제4항 제1호 ~ 8호 관련>

1. 사업명 및 사업자
2. 사업기간 및 수립대행자
3. 사업위치, 용도
4. 사업규모(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용적율)
5. 사업형태
   가. 건축물은 지상 · 지하의 층 · 동, 진출입구 수
   나. 개발사업은 개발형태 · 진출입구 수
6. 목표년도별 첨두시 교통량 유발 대수
7. 주차시설(면수), 진출입동선, 주변가로와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대중교통시설, 기타 심의사항
8. 첨부하여야 할 사항
   가. 종합개선안(배치계획, 동선계획 포함)
   나. 용도별 면적표 또는 토지이용계획
   다. 건축물의 배치계획
   라.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마. 기타 심의시 추가 또는 보완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계획

※ 상기 내용을 **전자문서에 첨부할시**에는 **도면, 그림 등은 모두 삭제한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문화재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부지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1.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오창읍 도암리 일원 「청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제1차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2013.01.25) 심의결과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 추진에 반영(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시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되거나 조사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수락리 유물산포지 등은(133,988㎡, 「대상범위 지표조사보고서 참조)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법령이 정한 철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또한 사업대상지 중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일대에 대해서는 유적 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없이 표본조사(59.900㎡, 조사범위는 지표조사보고서 참조)를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상기 표본조사로 인해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o 표본조사 결과 유구가 미확인된 경우 별도의 보존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라. 지표조사에서 유구,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구역은 별도의 보존조치가 필요치 않음.

o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청에 신고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바. 향후 사업계획 변경(구역 및 면적)이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 보존대책을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이 건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발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은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반드시 반영하여 매장문화재의 사전보호 및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청원군수(문화체육과장),옥산-청주창고속도로(주)

학예연구사	최인화	학예연구관	이은석	발굴제도과장	전결 01/29 윤순호

협조자

시행 발굴제도과-915 (2013.01.29.) 접수 문화체육과-2503 (2013.01.29.)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www.cha.go.kr

전화 042-481-4953 /전송 042-481-4959 / uriina@nricp.go.kr / 공개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국 토 해 양 부

희망의 바다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106호('13.1.4) 및 옥산오창고속도로㈜ 옥산오창 제2013-01호('13.1.4)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결정사항이 통보되어 알려 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국토해양부장관

수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옥산오창고속[illegible]

사무관대우	민인홍	시설사무관	이강념	과장	전결 2013. 1. 17. 어명소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174 (2013. 1. 17.)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비공개(6)

국토해양부

국 토 해 양 부

희망의 땅 기회의 바다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연장 알림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202호('13.1.9) 및 옥산오창고속도로㈜ 옥산오창 제2013-2호('13.1.8)의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연장 요청에 대하여는 실시협약 제18조에 따라 연장('13.7.10까지)하니, 관련 인허가 협의 마무리 및 적극적인 민원해소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해양부

수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옥산오창고속

사무관대우	민인홍	시설사무관	이강녕	과장	전결 2013. 1. 10. 어명소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113 (2013. 1. 10.)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비공개(6)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수질오염총량제 청원군 검토의견 알림(옥산-오창)

1. 옥산오창 제2012-47(2012.12.27) 및 청원군 환경과-750(2013.01.07)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협의 요청한 수질오염총량제 검토의견이 청원군으로 부터 제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옥산-오창) 1부. 끝.

접수 No. 2013. 1. 08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전지방국토관리

사무관대우 한형동 과장 전결 2013. 1. 8. 서용옥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180 (2013. 1. 8.)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64 팩스번호 042-670-3485 / hanhd@mltm.go.kr / 비공개(5)

청 원 군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수질오염총량제 검토의견 보냄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8643(2012.12.27.)호와 관련 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 검토의견

가. 위 개발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상 미호B 단위유역에 해당되며 2017년 준공 예정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제3단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

나. 개발사업부지 부지 1,322,272㎡ 중 542,007㎡를 집수구역으로 침투도랑 설치하여 비점배출부하량은 10.5Kg/일 증가하고, 발생하는 오수 25.85톤/일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하여 BOD 20mg/L로 처리하여 점 배출부하량은 0.00Kg/일 증가하여 최종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부하량은 10.5Kg/일로 산정되었으며 3단계 대장에 등재하겠음

다. 개발사업 완료후엔 삭감시설 설치에 대한 증빙자료 갖춰 환경과로 결과 제출해야 함

붙 임 : 누적관리대장 1부. 끝.

청 원 청원군의회

★주무관	장미수	수질담당	윤선임	환경과장	전결 2013. 1. 7. 김학수
협조자					

시행 환경과-750 (2013. 1. 7.) 접수 도로공사과-162 (2013. 1. 8.)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북문로1가 171-3) / http://www.puru.net

전화번호 043)251-3472 팩스번호 043)251-3479 / test@puru.net / 대국민 공개

청원군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 대장 (3단

□ 미호B 단위유역(총량관리 계획기간 : 2016년 ~ 2025년)

연번	① 할당일자	② 사 업 명	③ 사업위치	④ 사업면적(km2)	⑤ 인구 (명)	⑥ 착공 연도	⑦ 완공 연도	개발사업에 따른 BOD삭감							
								⑧ 삭감량 (점+비점)	점삭감					비점삭	
									⑨ 방법	⑩부하 (kg/일)	⑪유량 (m3/일)	⑫농도 (mg/L)	⑬	⑭ 방법	⑮ 부하 (kg/일)
1	2011.07.22.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확장사업	청원 남이~충남 천안	15.62Km (1,090,207㎡)			2017	0.577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농도강화 당초20, 변경10		319	10		식생수로	0.577
2	2011.07.27.	KTX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강외 오송 108-5 일원	1,626,700㎡	14,536 증		2020		오송2산단 또는 조치원하수처리장 연계 (방류농도5)	807	3,416	5		장치형 (필터형)	52.39
3	2012.07.31.	초정~미원 간 도로 확포장공사	내수 초정 ~ 증평~미원	152,866㎡	-	2012	2018	2.185	없음					장치형 (필터형) 11개소	2.185
4	2013.01.07.	옥산~오창 고속도로	옥산 ~ 오창	12.1Km 1,322,272㎡		2013	2017	14.89	개인하수처리시설	3.9	25.85	20		침투도랑	10.99

□ 미호B 단위유역(총량관리 계획기간 : 2016년 ~ 2025년)

연번	① 할당일자	② 사 업 명	③ 사업위치	④ 사업면적(km2)	⑤ 인구 (명)	⑥ 착공 연도	⑦ 완공 연도	개발사업에 따른 BOD삭감							
								⑧ 삭감량 (점+비점)	점삭감					비점삭	
									⑨ 방법	⑩부하 (kg/일)	⑪유량 (m3/일)	⑫농도 (mg/L)	⑬	⑭ 방법	⑮ 부하 (kg/일)

□ 미호B 단위유역(총량관리 계획기간 : 2016년 ~ 2025년)

연번	① 할당일자	② 사 업 명	③ 사업위치	④ 사업면적(km2)	⑤ 인구 (명)	⑥ 착공 연도	⑦ 완공 연도	개발사업에 따른 BOD삭감							
								⑧ 삭감량 (점+비점)	점삭감					비점삭	
									⑨ 방법	⑩부하 (kg/일)	⑪유량 (m3/일)	⑫농도 (mg/L)	⑬	⑭ 방법	⑮ 부하 (kg/일)

□ 미호B 단위유역(총량관리 계획기간 : 2016년 ~ 2025년)

연번	① 할당일자	② 사 업 명	③ 사업위치	④ 사업면적(km2)	⑤ 인구 (명)	⑥ 착공 연도	⑦ 완공 연도	개발사업에 따른 BOD삭감							
								⑧ 삭감량 (점+비점)	점삭감					비점삭	
									⑨ 방법	⑩부하 (kg/일)	⑪유량 (m3/일)	⑫농도 (mg/L)	⑬	⑭ 방법	⑮ 부하 (kg/일)

□ 미호B 단위유역(총량관리 계획기간 : 2016년 ~ 2025년)

연번	① 할당일자	② 사 업 명	③ 사업위치	④ 사업면적(km2)	⑤ 인구 (명)	⑥ 착공 연도	⑦ 완공 연도	개발사업에 따른 BOD삭감							
								⑧ 삭감량 (점+비점)	점삭감					비점삭	
									⑨ 방법	⑩부하 (kg/일)	⑪유량 (m3/일)	⑫농도 (mg/L)	⑬	⑭ 방법	⑮ 부하 (kg/일)

합계)

감

⑯ 방법	⑯ 부하 (kg/일)
유공포장	0.47

감

⑯ 방법	⑯ 부하 (kg/일)

감

⑯ 방법	⑯ 부하 (kg/일)

감

⑯ 방법	⑯ 부하 (kg/일)

감

⑯ 방법	⑯ 부하 (kg/일)

BOD												비고	금강청협의	추진기관
⑰지역개발부하량			⑱배출부하량			⑲누적부하량			⑳잔여부하량					
계	점	비정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4.24	0	4.24	4.24	0	4.24						한국도로공사 녹색환경처 031-779-5563
			47.25	15.11	32.14	51.49	15.11	36.38					보완요구	도시과 사업시행자미결정
			0.19	0	0.19	51.68	15.11	36.57						충청북도 도로과
				0	10.5		15.11	47.07						옥산오창고속도로㈜ 070-4421-8690~5 이세옥팀장 대전지방국토관리

BOD												비고	금강청렴의	추진기관
⑰지역개발부하량			⑱배출부하량			⑲누적부하량			⑳잔여부하량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BOD												비고	금강청협의	추진기관
⑰지역개발부하량			⑱배출부하량			⑲누적부하량			⑳잔여부하량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BOD												비고	금강청협의	추진기관
⑰지역개발부하량			⑱배출부하량			⑲누적부하량			⑳잔여부하량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BOD												비고	금강청렴의	추진기관
⑰지역개발부하량			⑱배출부하량			⑲누적부하량			⑳잔여부하량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

청 원 군

수신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 귀하

(경유)

제목 청원 충비삼월의 비 주변 고속도로 건설 현상변경 허가 통지 알림

1. 충청북도 문화예술과-18354(2012.12.26)호 관련입니다.

2.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소재 문화재자료 제14호「충비 삼월의 비」주변 고속도로건설 위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후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제1분과, 2012. 12.20) 결과 "가결"되어 다음과 같이 허가되었기 알려드리니, 허가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받는 자 : 옥산옥창고속도로(주)(서초구 강남대로 525)

나. 허 가 사 항 : 고속도로건설(세부사항 허가서 참조)

3. 행정사항 :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40조(신고사항)에 따라 착공·준공 신고가 기한 내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 1부. 끝

청 원 군 수

★주무관 이나경 관광시설담당 연규성 문화체육과장 전결 12/27 오임택

협조자

시행 문화체육과-30567 (2012.12.27.) 접수 ( )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 / http://www.puru.net
전화 043)251-3283 /전송 043)251-3289 / mjlee12388korea.kr / 공개

<앞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

허가 받는자	성 명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주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대상 문화재	종 별	문화재자료	지정번호	제14호	명 칭	충비 삼월의 비
	소재지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산16번지				
허가 사항	개 요	고속도로 건설				
	위 치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산16번지 일원				
	내 용	○ 고속도로건설 - 폭원 : 23.4m(왕복 4차로) - 통과구간 : 517m				
	허가 기간	허가일로부터 ~ 2017. 6.30				
허가 조건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충 청 북 도 지 사 인

(관인생략)

<뒷면>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허가이오니 다른 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40조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다음 각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허가사항 및 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을 경우
   다. 공사 및 기타의 사유로 도지정문화재 및 주변 경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허가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에는 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기간 내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신고하여야 합니다.
7. 발굴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문화재에 영향이 있을시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시·군 문화관광과 및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에 신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합니다.
8. 관계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시장군수의 지도 및 감독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2012 12/27 11:16 FAX 3276 MH 003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

청 원 군

수신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

(경유)

제목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현지조사 의견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1. 충청북도 문화예술과-17318(2012.12.05)호와 관련입니다.

2. 도지정문화재 충비삼월의 비 주변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문화재 위원 현지조사에서 제출된 아래의 의견을 반영한 심의자료를 2012. 12. 10까지 15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조사의견 -

○ 충비삼월의 비 가 위치한 능선을 기준으로 최대한 보존방안과 그에 따른 공법을 제시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적절한 방안 제시

붙임 : 현상변경허가 현장조사서 1부. 끝

청 원 군 수 의 인

★주무관 이나경 관광시설담당 연규성 문화체육과장 전결 12/06 오영택

협조자

시행 문화체육과-28735 (2012.12.06.) 접수 ( )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 / http://www.puru.net
전화 043)251-3283 /전송 043)251-3289 / mjlee1236@korea.kr / 공개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현장조사서

문화재명	충비삼월의 비
지 정 별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현상변경 내용	○ 고속도로 건설 - 위 치 :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산 16번지 - 폭원 : 23.4m(왕복 4차로) - 통과구간 : 517m ※ 문화재와 이격거리 : ~~29m~~ 51.74m
현지조사 의 견	충비삼월의 비가 위치한 선맥 주변에서 주변을 지나는 고속도로 건설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문화재로부터 51m 정도부터 사면이 발생하고 있어 문화재가 위치한 능선을 기준으로 최대한의 보존방안과 2m 따른 공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2m 따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12. 12. 4.

문화재위원 조중근(인)

문화재위원 손태진(인)

- 함께하는 충북 -

충청북도

수신자 청원군수(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현지 조사의견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1. 충청북도 문화예술과-17028 (201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도지정문화재 충비상월의 비 주변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문화재 위원 현지조사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심의자료를 2012. 12. 10까지 15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조사의견 -

○ 충비상월의 비 가 위치한 능선을 기준으로 최대한 보존방안과 그에 따른 공법을 제시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적절한 방안 제시

붙임 현상변경허가 현장조사서 1부. 끝.

충청북도지

지방시설주사 박병현 문화재팀장 박준순 문화예술과장 12/05 강성택

협조자 주무관 안진석

시행 문화예술과-17318 (2012.12.05.) 접수 문화체육과-28712 (2012.12.05.)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www.cb21.net

전화 220-3834 /전송 043)220-3819 / byungo@korea.kr / 공개

2012 12/06 14:39 FAX 3276 MH 002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민원 이송(옥산-오창, 옥산IC 설치 요청)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4번지 류재준 등 마을주민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서면민원이 제출되어 사업시행자인 귀 사에 이송하오니,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청에도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서류 및 민원회신 문서사본 1부(별도송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

주무관	박준식	주무관	박웅구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서용옥
국장	전결 2012. 12. 4. 인기환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8024 (2012. 12. 4.)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54 팩스번호 042-670-3485 / mjjs98@mltm.go.kr / 비공개(5)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류재준 귀하 (우363-912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4)
(경유)
제목 민원 이송 알림(옥산-오창, 옥산IC 설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등 마을주민께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우리 청으로 이송된 **옥산~오창 고속도로**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 내 옥산IC 추가 설치 요청

□ **회신내용**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옥산IC 설치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옥산오창고속도로(주)로 하여금 선생님께 회신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로공사과(담당 박준식 ☎042-670-355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지방국토관리

주무관	박준식	주무관	박웅구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서용옥
국장	전결 2012. 12. 4. 인기환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8023 (2012. 12. 4.)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54 팩스번호 042-670-3485 / mjjs98@mltm.go.kr /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민원

건 의 서

1. 수신자 :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2. 건의자 : 위원장 : 장남 이장 : 류 재 준

주 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연락처 : 010-6475-0867

위원장 : 옥산노인연합회장 곽 근 완

주 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금정2차101동609호
연락처 : 010-3405-0323

위 원 : 생명자연교회 담임목사 노 주 열

주 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국사오산로 284-14
연락처 : 043)231-1023 ,010-5483-0063

위 원 : 덕촌교회 담임목사 오 용 균

주 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연락처 : 010-4414-4129

위 원 : 장남 우리교회 담임목사 권 영 부

주 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연락처 : 010-4193-1060

위 원 : 호죽1구 이장 : 정 상 언

주 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2길27호
연락처 : 010-5484-2238

위 원 : 호죽2구이장 : 하 성 구

주 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134
연락처 : 011-9840-1636

위 원 : 백현이장: 박 재 규
주 소 : 충북 청원군 오창면 백현리 141
연락처 : 010-3913-4681

위 원 : 이 재 석
주 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청주역로 653-4
연락처 : 010-5469-0212

위 원 : 정 수 상
주 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illegible]남리1-1
연락처 : 011-466-1822

3. 내 용: 옥산.오창 민자 고속도로 옥산 나들목(I.C) 설치의 건

1. 국가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연구하며 밤낮없이 고심하며 희생과 헌신으로 온 힘을 기울이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청원군의 균형발전과 옥산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번영하기를 희망하며, 우리고장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옥산 나들목(I.C)가 설치되기를 확신하며 기다려 왔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여 건의서를 올리게 되었으니 깊이 심사숙고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나들목(I.C)
   1)이유에 대하여
2. 재고되어야 할 나들목(I.C)
   1)이유에 대하여
3. 설계상의 문제점
4.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면

5 . 서명자: 662명

◈건의서

전국토의 발전과 번영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책을 세우시고 추진하시며 행정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나들목(I.C)

1)이유에 대하여

옥산을 사랑하며 평소 희망을 가졌던 우리는 옥산 나들목(I.C)이 설계상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인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고심 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옥산의 미래는 없으며 옥산은 오창 과 오송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가 되고 퇴보하는 지역으로 앞으로 낙후 될 수밖에 없다는 절망과 인식을 하면서 큰 충격을 받으며 침통함을 금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이 옥산 나들목(I.C)은 경부고속도로 부근(몽단이) 또는 지금 현재 청원휴게소로 사용하는 그곳이 인터체인지가 될 것이다. 라고 질문하며 홍보하더니 이제 와서는 설계도에 아예 빠져버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모 국회의원은 옥산지역 주민들을 지금껏 우롱하고 사기 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2. 재고되어야 할 나들목(I.C) 、

1) 이유에 대하여

이번 설계도면을 보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부시책에서 도농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이야기 하고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누가 보더라도 균형발전은커녕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면서 어찌 오창 과학지단지 쪽에는 지금 현재도 오창 나들목(I.C)이 있고 오창에서 4KM 증평 나들목(I.C)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창 서 나들목(I.C)을 또 건설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지.'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 할 수없는 사안이라 봅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오창 중심으로 삼각형으로 나들목(I.C)이 설계되었다고 보면 됩니

다. 이것이 어찌 균형발전인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재고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반드시 재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3. 설계상의 문제점

옥산 민자고속도로가 발표 되면서 알게 된 사안은 옥산면 장남리 산 9-1번지 산 10번지 부근으로 설계된 도면을 보면서 이 지역이 마을과 너무 가깝게 설계된 점은 이곳 주민들이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 보며 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사업경제성만 생각하여 설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전혀 현지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라 봅니다. 반드시 시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4.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면

첫째: 민자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경제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서 보면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그 만큼 손해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옥산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옥산 나들목(I.C)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둘째: 옥산인터체인지 설치 지점 남쪽에 옥산산단은 전체 41개 공장부지(73만 4869㎡) 중 LG하우시스 등 38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분양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렴한 분양가와 교통망 때문이며, 인근에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KTX오송역, 청주역 등이 위치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교통여건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입주업체의 말이다.

그리고 북쪽방향 성재리 지역에 개인 산업단지(15만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곳에 나들목(I.C)이 들어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오송생명의료 연구단지와 KTX오송역 연계 그리고 세종시로 또는 천안시 병천으로 가기에 매우 좋은 곳이기에 가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즉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끝으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이처럼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공존공생하며 사는 것이 인류가 꿈꾸며 추구하는 행복이라 봅니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경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옥산. 오창간 고속도로 개설이 미래 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옥산도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이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옥산 주민들이 오래도록 염원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들의 희망을 아니 소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부디 거시적인 안목으로 다시 재고하셔서 장관직책을 떠나서도 후회 없는 정책을 추진하시길 간곡히 바라며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1)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서종연	옥산면 동림리 산53번지	서종연	010 24801559
김소희	옥산면 환희리 산 102번지	김소희	010.2078.4514
이경한	〃 동림 2길	[illegible]	230-4000
이인두	옥산면 동림리 531번지	[illegible]	230-4022
최원석	옥산면 동림리 산 68-1	[illegible]	230-4021
김민채	옥산면 동림리 산 53번지	[illegible]	230-4023
이대원	옥산면 환희리 산102번지	[illegible]	230-4000
김미성	옥산면 환희리 동림리 산53번지	[illegible]	230-4020
이세성	옥산면 환희리 산 102번지	[illegible]	230-4000
정인희	옥산면 동림 2길	[illegible]	230-4020
유천두	옥산면 오산리 아트빌 306-402	유천두	230-4000
김혜영	〃 〃 〃 303동 404	김혜영	230-4020
조샛별	옥산면 오산리 아트빌 303동 410호	조샛별	010-2544-8527
임선영	오송읍 모아미래도 501-403	임선영	230-4020
이승연	오송읍 유면시아 106동 401호	이승연	230-4000
유정미	옥산면 오산리 아트빌 306-404	유정미	230-4020
이두정	옥산면 오산리 아트빌 306-404	이두정	230-4200
조성욱	옥산면 아트빌 303동 304호	[illegible]	230-4200
박승미	오송읍 만수리 유면시아 112동	박승미	230-4021
박정희	옥산면 동림리 산53번지	박정희	230-4021
박경배	옥산면 오산리 아트빌 306-306	박경배	230-4200
신선영	옥산면 동림리 산53번지	신선영	230-4000

(2)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김 원 선	청원군옥산면와리 아름아파트 3이동 404호	김원선	010-8669-4630
이 씨 훈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생명3로 111 606동 1801호		010-3584-2243
전 영 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010-2487-4411
이 성 훈	충북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산53		010-3407-9642
차 정 훈	청원군 오창읍 각리 쌍용아파트 404-606		010-2847-3648
한 지 영	청주시 오창읍 주동리 401-10 304		010-8257-6059
양 인 근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금정A 103-610		043-230-4010
김 정 순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산53번지		043-230-4011
김 정 태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043-230-4012
김 주 득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산53		043-230-4013
연 지 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043-230-4080
이 계 석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47-1		043-230-4023
이 성 우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산53번지		043-230-4022
안 상 희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대림아파트 806-1901		043 230 4030
김 기 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와우정로94 806-401		043-230-4011
정 우 현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에이스 703동 1201호		043-230-4041
남 상 원	충북 청원군 옥산면 동림산 52번지		043-230-4017
박 [illegible]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041-230-4115
지 정 우	충북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산53		043)230-4146
강 말 자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 131-6		043-236-6009
원 주 성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 131-6		010-2445-3529
유 재 형	충북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460-5		010-8277-4523

(3)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박선정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1로152 606-9이	박선정	230-4020
신미란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아트빌Ⓐ 303동 410호	신미란	230-4023
고선옥	옥산면 한화리산 102번지	고선옥	230-4021
김현우	청원군 옥산면 오산시내2길24-3 201	김현우	230-4020
유혜진	청원군 오송읍 연지리 호반베르디움 604동 1304호	[illegible]	214-6315
김미화	청원군 옥산면 동림 2길	김미화	230-4021
조해숙	옥산면 동림리 산68-1	[illegible]	230-4000
김미희	옥산면 한화리금경Ⓐ 306 [illegible]	[illegible]	230-4022
이경이	옥산면 동림리 산53번지	이경이	230-4021
윤다영	옥산면 한화리 산102번지	윤다영	230-4022
이정순	옥산면 동림리산68-1 번지	[illegible]	230-4027
김명례	옥산면 동림리 산53번지	김명례	230-4023
김용희	옥산면 동림 2길	김용희	230-4021
김인영	옥산면 오산리 아트빌 306/301	김인영	230-4020
박은진	옥산면오산리아트빌306/301	[illegible]	230-4020
천윤석	〃 305/401	천윤석	230-4020
이종민	옥산면 오산리 아트빌 306/306	이종민	010-8814-8385
진신민	강리면 만수리 오송휴먼시아112-202	진신민	230-4000
권오희	오송읍 [illegible] 801동 801호	[illegible]	01015246 5596
유선경	오창읍 구룡리397-9	[illegible]	230-4022
최금복	옥산면 한화리 산 102번지	최금복	230-4000
유선이	오창 구룡리 397-9 303호	유선이	230-4020

(4)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윤종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한울1차 B-407	[illegible]	010-8829-8176
최용석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1-6	[illegible]	010-4454-2813
유재정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11-39	[illegible]	011-468-3940
안희근	대전시 서구 도마2동 경남@104동 709호	[illegible]	010-5068-5888
유덕용	충북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471	[illegible]	010-5519-9497
박준근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한울2차 101-901	[illegible]	010-8849-7589
최재봉	청주시 충덕구 가경로 134세원3차Ⓐ104-1405	[illegible]	010-7176-4507
윤명훈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한울2차 101-1401	[illegible]	010-8829-3238
오석민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아트빌Ⓐ305-409	[illegible]	010-9492-1489
조상현	〃 〃 303-1009	[illegible]	011-9425-8242
강용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신흥구공Ⓐ203동803호	강용범	010-5579-9137
조창덕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아트빌 [illegible]	[illegible]	011-460-5144
허운수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62-6	[illegible]	010/2914/2518
유상호	청원군 옥산면 상동림리 541	상	010 6433 0350
문정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아트빌 @303-1009	[illegible]	010-3673-8242
유재학	〃 〃 〃 동림리 471	유재학	
유준동	〃 〃 옥산면 오산리 한울2차 102-604	유준동	010-9458-9676
박지영	〃 〃 〃	박지영	
곽용범	충북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514	[illegible]	010-9948-1249
이현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 파크리안@103동 1202호	[illegible]	010-3498-1371
박낙현	충북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981-1	[illegible]	011-464-6309
박상구	〃 〃 〃 오산 5권 한울@101-1406	[illegible]	010-3193-3738

(5)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이영분	적촌리 37번지	[illegible]	260-1314
배미자	옥산면 가락3구	[illegible]	260-0261
임순옥	옥산면 오산리	[illegible]	260.0316
김경래	옥산면 오산리 538-1	[illegible]	260 0316
윤원선	옥산면 장동리 021-1	[illegible]	231-1072
정미숙	옥산면 오산리 546-1	[illegible]	260-9580
이기만	〃 가락리	[illegible]	260.0609
정광영	〃 중죽리 4가	[illegible]	011-9841-0284
심영순	〃 장남리 342	[illegible]	260-4987
홍선희	〃 오산리 241-117	[illegible]	260-4987
김갑순	오산리 149-9	[illegible]	260-4133
곽근완	옥산면 오산1지구 금정2차 Ⓐ101-609	[illegible]	218-0295
박동희	오산리 금정2차	박	269-1566
손선례	오산리 금정2차	[illegible]	260-5044
신[illegible]자	오산리 금정2차	[illegible]	260-5206
김정선	오산리 금정2차	[illegible]	260-3229
강혜수	오산리 금정2차	[illegible]	265671
오[illegible]	오산리 금정2차 Ⓐ101-609	[illegible]	218-0295
박성규	오산리 금정2차	[illegible]	011 450 2195
이춘월	오산리 금정2차	이	260-4231
변상훈	오산리 금정2차	[illegible]	260-1465
전석구	오산리 금정101동 1203	[illegible]	260-1229

(6)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유 무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illegible]	260-0366
유 재우	청원군 옥산면 오산1리	[illegible]	260-0047
윤종호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illegible]	260-0190
제 문식	오산리 536-1	제 문식	260-4289
왕 인욱	청원군 옥산면 대신Ⓐ 803	왕 인욱	260-1810
박 향모	오산리 211-11	[illegible]	260-0225
김 윤선	오산리 211-11	김	〃
유 홍자	한울Ⓐ B 805호	유	260-0665
이 건희	옥산면 두락리 [illegible]	[illegible]	011-487-3874
박 상식	옥산면 오산리 211-32	[illegible]	017.425.0222
박 인순	〃 〃 6리 대신Ⓐ 1101호	[illegible]	260-0488
이 [illegible]	〃 덕촌리 61	[illegible]	260-0733
이 학중	옥산가 락 3리	[illegible]	010 8412 1125
박 [illegible]	옥산면 오산리 211	[illegible]	010 8800 8055
한 [illegible]	옥산면 청주역로 655	[illegible]	010-9000-1895
김 현경	옥산면 오산리 211	김현경	019-9768-0178
박 [illegible]	옥산면 호죽 1구	[illegible]	231-1083
곽 [illegible]	옥산면 금계리 484	[illegible]	010-9963-4546
김 순정	옥산면 가락리 764	김순정	260-0108
조 [illegible]	오창 모정리 247	[illegible]	010-4454-2287
김 [illegible]	옥산면 호죽리 [illegible]	[illegible]	019-486-7317
송 용기	소로 2리 149	[illegible]	218-0114

(7)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박 성순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11-28	[illegible]	043 278-3171
차 경숙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11-28	차	043 260-3171
양 순동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17-28	양	260-0026
박상화	아트빌 304동 102회	[illegible]	269-3171
박상원	아트빌 302동 405호	[illegible]	272-3171
이 기호	옥산면 오산리 211	[illegible]	260-0212
명 순희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13-1	명	260-0090
이 종안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13-1	[illegible]	260-0090
이 재옥	옥산면 대창A 106호	이재옥	260-4678
김 순 주	금정 1차 417	[illegible]	010-8842-0854
정 영 환	충북 청원군 오산2주 140	정	260-1503
김 응오	충북 청원 옥산 한화2 107	[illegible]	010-8782-8840
김 만순	충북 청원 금정 304동 503호	[illegible]	260-0244
정 전 환	청원군 옥산 수곡 113	정	231-8446
이 순 학	청원군 옥산면 수곡리 113	[illegible]	
기 상 미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763-8	[illegible]	269-2846
곽 한 건	〃 가곡리		269-2846
유 인 섭	청원군 옥산면 가곡수구	[illegible]	260-0170
이 관 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36-211	영	260-1489
이 현 욱	〃 오산리 211-36	욱	260-1489
채 경 순	〃 오산리 211-36	[illegible]	269-0655
이 상 욱	옥산면 소로리 85-4	이상욱	218-1159

(8)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원종인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11	[illegible]	010-2991-7020
이재식	〃 오산리 211-38	[illegible]	010-5469-0292
배복순	옥산면 청주역로 655	[illegible]	260-1619
윤종열	옥산면 오산리 211-10	윤종열	260-0932
안관식	옥산면 가락리	안관식	010-4270-0540
백중남	옥산면 오산리 금정1차	백중남	010-2402-1003
조성자	옥산면 가락4리	[illegible]	010 9951 1143
전이선	옥산면 가락리	[illegible]	010.4668.6371
홍풍갑	옥산면 오산리	[illegible]	011-461-4199
배정자	오산리	[illegible]	060-0021
홍종근	오산리 211-38	[illegible]	010-2706-7859
심라근	가락리 화산 Ⓐ 102동 710	[illegible]	010.9100.3421
정계만	오산리 211-10	[illegible]	010-4660-2588
정근문	오산3리 211-26		260-4944
권태순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권	260-5869
장상희	옥산면 오산리 금정1차	장상희	010-6475-7884
신동희	옥산면 오산리 211-26	[illegible]	260-4944
김모숙	옥산면 오산리 211-26	[illegible]	260-4944
신민성	옥산면 오산리 211-26	[illegible]	260-4944
신순지	옥산면 오산리 211-26	[illegible]	260-4944
김유진	가락리 화산 Ⓐ 102동 804호	[illegible]	260-0066
송송산	청주역로 655	송	260-1619

(9)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박은주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551-20	[illegible]	019-456-0088
최익주	〃 〃 가로수구리 764	[illegible]	010-224-7138
허동만	〃 〃 오산리 〃	[illegible]	260-0484
박정문	〃 〃 113-3	[illegible]	260-1268
이무연	〃 오산2구 104	[illegible]	260-1533
남정문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140	남	260-0402
신연문	〃 〃 오산2구2-28번지		260-1173
김종국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금정A 304동 503호	남	011-467-0716
전정수	청원 옥산면 가락 764-19	남	010-5313-5812
이종세	〃 〃 오산리 551-15	남	011-492-6805
윤창섭	오송읍 연제리 호반베리다움 309/306	남	010-4842-5136
김관호	옥산면 국사리 370-3	남	011-465-9666
장경기	옥산면 오산리 548-4	[illegible]	010-8884-9541
장병우	청원 옥산 가락리 하인히크노빌 102-111호	[illegible]	010-3710-7273
차[illegible]	〃 [illegible]리 687-1	[illegible]	011-465-2745
장금여	청원 옥산 오산리 455	장금여	011-5548-[illegible]
최승구	청원군 덕촌리 30-2	최승구	011-482-5208
박성춘	옥산 신촌		260-1376
이미경	옥산 오산	이미경	266-4611
윤병주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 393	尹東[illegible]	011-462-1457
이기철	〃 〃 오산리 536-3	이기철	260-0525
한옥수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illegible]	한옥수	010-5873-8304

(10)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오효석	옥산면 가락리 산75	[illegible]	260-0721
김태동	옥산면 오산리 산213	[illegible]	010.3410.1404
황선덕	옥산면 오산리 산213	[illegible]	010.3927.1408
최용석	〃 가락리. 741-	[illegible]	011.484-3661
전재동	〃 〃 757	[illegible]	016 436 1701
한현종	〃 〃 285	[illegible]	011-461 4507
황영욱	〃 가락4리	[illegible]	011 9841 0965
조기준	〃 오산리 227-4	[illegible]	010-4628-1503
김연자	〃 가락화인A	[illegible]	010 9425-1302
김옥문	〃 가락5리 757	[illegible]	010 9846 2989
박희영	〃 오산리211-49	[illegible]	010-3660-2322
윤정구	오산2리 150-2	[illegible]	010441107 43
최의주	오산2리 3-2	[illegible]	010 4414-1330
맥상의	〃 호죽2리	[illegible]	011-9828-5623
맥상희	〃 호죽2리 746-23	[illegible]	010 4787 1173
박기영	〃 동림리 327-3	[illegible]	010 9562 1027
이상옥	옥산면 소로리	[illegible]	011-9407-1159
서월희	오산 2리 3-2		264-1330
박재열	〃 동림리	[illegible]	010 9561-1027
이종기	〃 가락리 763-6	[illegible]	010-8181-0814
이종득	〃 오산리	[illegible]	010-2008-6805
최재홍	오산리 151-20	[illegible]	010-2412-0050

(11)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윤순애	옥산면 오산리 211	윤	260-0013
이선종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483	[illegible]	011-491-0592
여명리	옥산면 오산리 538-1	[illegible]	010 8311 0446
이정애	옥산면 오산리 211-7	[illegible]	011 9828 5978
이민호	오산 二구 110	[illegible]	011-578-1734
유오임	청원군 옥산면 호죽1구 855	[illegible]	010-4129-7600
김동일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197-3	김동일	010-4546-5006
최요한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159-2	최요한	010-3571-9328
김순화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한울2차 102동 804호	김	011-9417-1038
박종규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764-11	[illegible]	011 260-0245
김민철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11-25	[illegible]	010-5516-2817
김제선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11-25	[illegible]	010-4172-4839
정동호	청주시 개신동 개신독고 406-102	정동호	010-9369-9088
이경자	청원군 오산리 213번지	이경자	010-3232-9395
윤병무	옥산면 장동리 35-18	[illegible]	010-3096-3401
서원석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금정 2차 101-203	[illegible]	010.5463.0390
육준여	청원. 옥산. 금정 (A)	육	010.9242.0398
강인철	〃 옥산 청주역로 653-4	[illegible]	011-462-7711
권경하	〃 옥산 소로1구 294-2	[illegible]	010 4481 1143
박태순	〃 옥산 소로1구 294-2	[illegible]	011 4811143
최순석	〃 옥산 오산 3리 [illegible]-5	[illegible]	010 4859 3438
조남두	〃 옥산 오산리	[illegible]	010-5462-1184

(12)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김국봉	충북 청주시 개신동 개신주공APT 302동 106호	[illegible]	016-9577-0921
박재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덕리 화인APT 102-201	박재경	010-5419-6460
최종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대창3차 201동 801호	최종성	010-8848-2973
강화순	〃 〃 흥덕구 사창동 [illegible]	가동106(강)	010-3304-3396
박종민	〃 청원군 옥산면 금령2차 101 1064	[illegible]	016-425-0264
천용진	〃 청원군 옥산면 오산4리	[illegible]	010-9254-2899
임노문	〃 〃 덕촌 2구	[illegible]	260-0081
전병철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illegible]	010-2373-6374
박창환	〃	[illegible]	010-5480-6030
신영수	옥산면 환희리 33-1	[illegible]	010-9332-3866
박종식	청원군 오산면 오산리 384-2	[illegible]	010-9441-1510
김관성	〃 옥산면 환희리 511-1	[illegible]	010-1064-9723
김재홍	〃 〃 오산리 764	[illegible]	010-2265-0103
김성만	〃 〃 오산리 13-6	[illegible]	260-01530
우동식	〃 〃 오산리	[illegible]	260-3393
신동미	〃 〃 오산리 241-21	신동미	260-0159
정도영	〃 〃 오산리 106-1	[illegible]	010-[illegible]-0[illegible]
김애중	〃 〃 신촌리 51-1	[illegible]	010-5462-3271
전경자	옥산면 오산리 오미타운 1동 102호		260-0310
조축이	〃 오산리 241-31		260-0518
이순석	오산리 241-4		260-0133
장오성	오산리 오미타운		260-0707

(13)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이경아	청주시 가경동. 대림 601	이	010-9142-6412
이미선	〃 용암동	[illegible]	010-5318-0722
최동근	옥산면 가락리 764-1	[illegible]	010-9184-6379
연규호	옥산 신촌리 54-1	[illegible]	010-5462-3271
박한도	옥산 신촌리 154-5	[illegible]	010.5771.0896
신동일	옥산 오산리 544-1	신동일	011.491.1099
이상순	옥산 오산리 109.10	이	010-2969-1323
유현석	옥산면 오산리 545-3	유현석	011-466-4458
박인복	옥산면 오산리 청주역로 651	박인복	010.9426-9089
안경숙	오산리 〃	안경숙	010-5161-2648
안재현	오산리 211-16	안재현	010 3431 3403
이미화	오산리 211-39	이미화	010.9170.4376
박용석	오산리 〃 211-16	박용석	011.465.4233
정경라	오산리 213-1번지	이	260-4844
정승호	오산리 214-1	정승호	260-5522
배숙희	오산리 540-3	[illegible]	278-0099
김창수	오산리 540-3	[illegible]	011-467-7535
기병욱	옥산면 신촌리 159-5	병욱	260.0896
원수원	옥산면 오산리 211-16	[illegible]	260-5611
신현숙	오산리 540-1	[illegible]	260-2696
오동식	오산리 540-3번지	[illegible]	016-467-1919
송선임	장동리 지7번지	[illegible]	010-5459-5401

(14)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정원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형석 1차 103-1502	[illegible]	010-5041-4752
김원로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곡리 최 9 APT 102-1207	[illegible]	010-4802-6297
박윤숙	청주시 수곡2동 두진 104 80P로	박윤숙	010 8486 1852
남기창	충북 청원군 오창읍 726-3	[illegible]	010 7580 2343
표원웅	충북 청원 옥산면	[illegible]	010.4859.4562
김광용	충북 청주 흥덕 가경동 가로수 아울 홈번 시아-A 107-1203	[illegible]	010.8640 0438
윤변일	옥산면 오산리 210-7	[illegible]	260-0650
이윤희	청원. 오송읍 연제리 794	[illegible]	260-1840
방영미	청주 흥덕 가경동 대우 [illegible] 501-1704	[illegible]	010-8828-5546
양종덕	청주 흥덕 가경동 형석 205-1204	[illegible]	010-4657-8622
김현석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43-15	[illegible]	010-4848-9604
노영숙	청원군 오창읍 중앙총 13 9길 1차 103-1105	[illegible]	010-3472-2609
이재원	청원군 오창읍 [illegible] P-4	[illegible]	010.3117.1203
박[illegible]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illegible] 103-707	[illegible]	010-3425-6598
안효종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삼일 A 101-1403	[illegible]	010-9262-4683
박신호	청원군 옥산면 금정 1차 F162	[illegible]	010-5463-8141
오경남	〃	[illegible]	〃
강영규	청주시 흥덕구 성화수공 102-1501로	[illegible]	011 464 4607
김외란	청원 옥산 환리 33-1	[illegible]	010-3260-5377
박순희	청원 옥산 환리 33-1	박순희	010-9540-5577
김미자	〃	[illegible]	010 4415 2202
배영미	청원 옥산 환리 33-1	[illegible]	010.3452.2202

(15)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가학연	오창읍 각리 한라비발리 811/1402	[illegible]	011-264-3838
리용석	옥산면 신촌리	[illegible]	010.5466.0670
이석기	〃 오산리	[illegible]	011 4985878
임남리	옥산면 한울A	[illegible]	010 8298-4588
박흠직	〃 덕촌 33-18	[illegible]	010-5467-9006
차병준	옥산면 가락2리 759-6	[illegible]	011.481.1846
김병태	〃 〃 3리 75-5	[illegible]	010.5458.4610
감동완	〃 오산리 247-1	[illegible]	010.4755.0602
신태라	〃 덕촌리 47-1	[illegible]	011-491-0620
박춘자	오산리 536-3	[illegible]	260-0525
송석환	〃 오산리 536-2	[illegible]	260-1778
신은숙	〃 〃 〃	[illegible]	010 4415 1665
단철수	오산리 한울1차 A동 202호	[illegible]	260-1404
정해명	옥산면 오산리 금성2차 102동 206호	[illegible]	010.9767.5171
김종환	옥산면 오산리 546-2번지	[illegible]	010-7182-1230
강우건	옥산면 가락리 763-P	[illegible]	260 0312
김병자	〃	[illegible]	〃
최병래	〃 한희1리 400		260-1341
노희수	오산리 535	[illegible]	260-2611
노옥래	옥산면 오산리 535-7	[illegible]	265-0536
이순석	오산리 711-23	[illegible]	260-0885
유복선	오산리 711-23	[illegible]	260.0885

(16)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박 종자	오산리	[illegible]	260-1513
이형정	오산리	[illegible]	070-8104-0208
한기원	오산리	[illegible]	010. 9081 6736
정성운	오산리	[illegible]	010 3402 7321
조정현	오산리	[illegible]	〃
김세희	오산리	[illegible]	260-1322
이석복	가락리 화인아파트	[illegible]	011-482-4999
김득영	옥산면 대신아파트 407호	[illegible]	260-1870
용만세	옥산면 오산리대청102	[illegible]	010-4106-958
최병만	〃 한리리 4P0-3	[illegible]	010-9520-0171
이기형	덕촌리 1	[illegible]	
박원섭	오산리 대신APT	[illegible]	260-0314
박도영철	옥산면 가락 789-5		010-8071-3479
권선모	옥산면 오산리 대신APT	[illegible]	260-1577
[illegible]	오산리 PT	[illegible]	260-1623
안종근	옥산면 가락리 411-3	[illegible]	260 1285
김성태	옥산면 가락리	[illegible]	260-1284
기성수	옥산면 오산리	기성수	260-0421
[illegible]	옥산면 오산리408-4	[illegible]	260-5827
양은주	247-1	[illegible]	260-5880
김병수	옥산면 오산리 590-1	[illegible]	010-2880-9174
[illegible]	오산리	[illegible]	010. 2881. 0404

(17)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이정석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120-11	이정석	010-3466-1460
차[illegible]	오창읍 갈리 한라Ⓐ 801-1803	[illegible]	016 9466 4332
이[illegible]	옥가경동 행복 2차A 202동 806	이[illegible]	011-430-[illegible]
박[illegible]	청원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이미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동부Ⓐ 101-1001	[illegible]	010-3666-[illegible]
윤호섭	오산 오산 그리	[illegible]	011-468-[illegible]
안혜자	〃 가-1	[illegible]	260-0026
이현승	청주시 가경동 현대3단지 307-106	이현승	251-4064
[illegible]	옥천시 [illegible]	[illegible]	010-5463-2[illegible]
김태호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청대고자Ⓐ 205-806	[illegible]	010-5483-[illegible]
김광웅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동부Ⓐ 101-1001	[illegible]	010-3405-[illegible]
에[illegible]	오산 그리 17-2	[illegible]	26[illegible]
서[illegible]	오산리 가-1	[illegible]	010-4466-9416
이학전	〃 251-10	[illegible]	010-9588-1421
[illegible] 영순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111-1번	[illegible]	010-2338-5[illegible]
[illegible] 선희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천방현빌 Ⓐ 101동 110호	[illegible]	010-6671-8114
[illegible]	청원군 오산리 오산리 가-[illegible]	[illegible]	010-[illegible]
이[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700-0[illegible]
한영[illegible]	오산리 258-1	[illegible]	260-0[illegible]
심희자	오산리 258-1	[illegible]	010-3009-8099
이종욱	오산리 258-1	[illegible]	010-[illegible]486-0[illegible]
배현리	오산리 374-2	[illegible]	010 8821 2[illegible]

(18)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우석일	오산리 삼영 110	우석일	010-6509-8400
박정순	오산리 211-11	박정순	011-849-5130
박순자	오산리 211-11	박순자	011-423-1687
송인자	오산 2구	[illegible]	260-9726
정영주	오산리 211-4	정영주	010.5435-1594
박정호	오산리 211-	박정호	010.5269.3802
연광옥	오산리 211	[illegible]	010.4852.3802
장명옥	오산리 211-7	명옥	010-9494-6420
임동연	오산리 211-7	동연	010-5498-1354
김[illegible]	가락리 165-11	[illegible]	011 469 5466
이성순	〃	[illegible]	010 2213 0263
고순례	오산8리 삼덕 204호	[illegible]	260-1082
박순임	오산3리 211	박	260-0061
박상룡	가락리 178-6		260-1255
신안수	옥산면 오산 2구 165-3	[illegible]	260-1059
이종호	오산리 211-38	이종호	260-0212
박성민	옥산면 가락 764	[illegible]	260-0080
김영숙	옥산면 국산리 180	[illegible]	269-1614
이재덕	옥산면 오산리 211	[illegible]	260-1040
이정수	오산리 옥산시내 2길 25-2	[illegible]	260-0116
진현준	오산 3리 196-9번지	[illegible]	010-4453-5243
김동수	오산3리 196-9	[illegible]	010-5482-0774

(1.9)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유동윤	충북 청원 오송읍 대원칸타빌 703-1602	[illegible]	010-3408-6535
곽미정	〃 오창읍 양청리 762-4	[illegible]	010-7433-9705
이승학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illegible]	010-3830-5616
정의동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illegible]	010-4848-6076
김종태	〃	[illegible]	010-5483-3861
이경수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	[illegible]	010-4809-0978
권종율	충북 청원 옥산 환희	[illegible]	010-3808-4781
김성학	충북 청원 옥산	[illegible]	010-9360-3169
이동명	충북 청원 옥산면 아트빌Ⓐ304-301	[illegible]	010-5425-8719
우종현	청주시 복대동 세원노터마을 101동 201호	[illegible]	010-3090-6685
김지섭	청주시 영운동 37-5번지 102호 성지빌라	[illegible]	010-5460-3069
변성수	청주 흥덕 흥명 프론A 103-103	[illegible]	010-4167-6728
김호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160-1 한울 [illegible]	[illegible]	010-3947-0418
김한규	청주시 복대1동 2913번지204	KHK	010-9305-6668
황경숙	청주시 사직동 [illegible]-20	[illegible]	010-9236-1874
이탄숙	청주시 사직동 207-1	[illegible]	010-4917-4436
오원진	청주시 가경동 태안 수정 101-1101	[illegible]	010-3131-8867
권상정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77. 번지	[illegible]	010-2445-7526
노승호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771-1	[illegible]	010-4578-5699
서영진	충북 청원 옥산	[illegible]	010.5538.4090
조명원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주전[illegible] 1[illegible]	[illegible]	010.4107.8368
하성용	청원군 옥산면 덕동리	[illegible]	011.[illegible]

(20)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정자용	청주시 봉명동 2030	[illegible]	010-5601-7930
이길훈	덕촌3[illegible] 6[illegible]	[illegible]	260-05[illegible]
윤상수	옥산면 오산리 [illegible] 306동 1306	[illegible]	260-4362
진중원	〃 국사회 397-1	[illegible]	011-4628916
민병환	옥산면 오산 3리 211-[illegible]	[illegible]	011-9843-1034
이유[illegible]	〃 가락리 741-27	[illegible]	010-8791-0448
곽민상	옥산면 [illegible]제리 286-1	[illegible]	011-467-1132
오춘식	옥산면 소로리 397-2	[illegible]	010-5468-1865
윤미자	옥산면 장동리 391	[illegible]	010-6424-1443
민대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16 [illegible] 105-404	[illegible]	010-9437-4560
박[illegible]	청주시 [illegible] 106-506	[illegible]	010-4410-1826
한완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illegible] 102-504	[illegible]	010-5468-9010
민용기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764	[illegible]	010-4406-2913
우명화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764	[illegible]	010-4430-0431
천기환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589-5	[illegible]	010-5356-3331
고의웅	〃 오산리 [illegible] 408	[illegible]	010-3845-5236
양희영	〃 〃 211-31	[illegible]	010-5466-0816
권의택	오산리 537-12	[illegible]	260-0729
유복신	오산 3리 211-23	[illegible]	260-0885
권영국	한희2리 130-1	[illegible]	260-1015
권영택	오산리 143	[illegible]	260-0636
양순동	오산리	[illegible]	260-0026

(21)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이기순	옥산면 신촌리 73번지	[illegible]	260-0196
원순연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237-1	[illegible]	260-0260
김희순	옥산면 오산리 한울(A) 102동 404호	김희순	010.6219.1552
박성운	〃 덕촌1구 74-4	박성운	010-7422-5011
조용분	〃 덕촌2구 40번지	조용분	260-0611
최정숙	〃 덕촌1구 21번지	[illegible]	260-0414
박정재	〃 덕촌1구 240-5	[illegible]	260-14538
장행자	옥산면 오산리 545-7	[illegible]	260-0079
연규복	오산면 신리 아드벌 306 606	[illegible]	011-9842-0710
이순영	옥산면 덕촌리 18-1	[illegible]	010-8208-6525
김태로	〃 덕촌리 18-1	[illegible]	260-0262
김저경	옥산면 덕촌2리 33-6	[illegible]	011-9846-4612
정현우	옥산면 덕촌리 74	[illegible]	011-469-0833
박동윤	옥산면 덕촌리 59-5		
이상환	〃 덕촌리 9-1	[illegible]	010.3176.5331
최혜진	옥산면 덕촌리 37-2	[illegible]	010 2020 9232
황병철	옥산면 오산리 400-4	[illegible]	010-3712-4844
박미란	옥산면 덕촌리 518-1	[illegible]	010.3285.1313
박미경	〃 〃 38	[illegible]	010-6956-6056
이복노	옥산면 덕촌리 61	[illegible]	011-9816-0734
이경익	〃 〃	이경익	010-3411-0733
박봉희	〃 〃	[illegible]	010-2090-0733

(22)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설계변경 요청서명서

성 명	주 소	서 명	연락처
정 만호	옥산면 덕촌리 20-9	[illegible]	010 5460 5921
박영순	덕촌리 37-2번지	[illegible]	010-6374-8938
이은서	〃	[illegible]	010-4341-3035
박 혜란	〃	[illegible]	010-7205-9327
김은종	〃	[illegible]	010-2015-0412
곽명성	〃	[illegible]	010-2335-6454
박상화	호죽리 158번지	박상화	010-2756-3787
이정화	맑음 정중리 156-2	이정화	010-2253-1213
오용균	옥산면 덕촌리 58	오용균	010-4414-4129
박종명	옥산면 신촌리 80-7	[illegible]	010-5150-1988
정수리	청주시 상당수 956번지 101호	정수리	010-5547-0227
정민리	〃	정민리	010-7920-0227
이 현	옥산면 소로리 373-3	[illegible]	010-4770-4696
김 항섭	옥산면 덕촌리 58	[illegible]	010-4915-5748
신 명희	옥산면 신촌리 80-7	신	010-3431-1484
방 춘자	옥산면 덕촌리 75-4	방	010 9361 1878
강희숙	옥산면 덕촌리 20	강	010 8834 [illegible]155
조원님	옥산면 금정 103중	조	010 9198 0352
배정순	옥산면 덕촌리 2구 560-3	배	260-[illegible]1434
한경옥	〃	한	260-0706
정종순	옥산면	정종순	
이금자	〃 삼선골 2번지	정	260-6966

(23)

이름	주 소	서명
유재준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4	
백현준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5	
이상원	〃 〃 4	
백순미	〃 〃 4	
강기환	〃 〃 4	
전윤미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0-26	
권영목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9-3	
박월세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9-2	
이두복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9-1	
김동석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번리	
정선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번리	
설영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1번리	
김현실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2번리	
김현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3번리	
김성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45-1	
이숙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45-2	
박영경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45-2	
김선옥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7	
정홍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6	
이강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6	
신준식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1	
김기옥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05-1	
함금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	
서정봉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19	
이종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31-6	
유원선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38	유원선
오홍화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	
원춘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	
원춘섭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	

이름(24)	주 소	서명
박재규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41	
정윤기	〃 백현2리 139	
정창기	〃 〃 139-2	
신수일	〃 〃 139-5	
김광복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	
김광덕	오창읍 백현리	
이영자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김광자	오창읍 백현리	
김준경	오창읍 백현리	
김기서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37	
오치종	〃	
김종희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33-3	
서진환	〃 〃 137	
서분례	〃 〃 133	서분례
박상덕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38-6번지	박상덕
박범용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38-6번지	박범용
박근육	〃 139	박근육
김준배	〃 백현리	
조찬식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송정임	〃 〃	
이정희	〃 〃	
이진원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김주희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37	
원성연	〃 〃 134	
박동환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33	
박의재	〃 133-1	
정동례	〃 133-2	
유복희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27	유복희
박조수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41	

이름 25	주 소	서명
이병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0-11	
정진평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6-3	
우병선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8	
박복석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4-1	
김재근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56	
양정숙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6-3	
김부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	
엄일석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86	
이명분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7	
양희성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9-3번지	
신태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9-3번지	
이은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1	
조건호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15	
심영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15	
공희선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56번지	
유재기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7-4	
이문홍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8	
서정애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6-4	
홍문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18	
정분량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9번지	
조종설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3H	
유서운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3H	
윤옥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김영길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P6번지	
서영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P6-1	
유홍현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6	
최영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6	
전석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0-27	
엄춘남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0-28	

26

이름	주 소	서명
오병오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1구 88-1	
이경례	〃 〃 〃 〃	
이원순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88-2	
윤화자	〃 〃	
이분자	〃 〃	
이창녀	〃 〃	
김진호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황옥순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90-3	
김자순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90-3	
김지필	〃 〃 〃 〃	기
김병일	〃 〃 〃 〃	
서운석	오창읍 백현리 192-2	
이화실	〃	이화실
서정두	오창읍 백현리 43-2	
김순옥	〃 〃 〃	
서정희	〃 〃 44-4	
박과수	〃 〃 145-1	
한계숙	〃 145-1	
추정수	〃 〃 50번지	
신명식	〃 〃 50번지	
이정순	〃 〃 55번지	
유일산	55번지	
이춘길	〃 〃 69번지	보
추정복	〃 1단65	
이상순	〃 〃 52	
이병숙	〃 〃 52	
오순진	오창읍 백현리 1구 85-5	
전병국	오창읍 백현리 1구 85-5	
김수상	옥산면 장남리 1-1	

(27)

이름	주 소	서명
신언국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 3-9	
신언덕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 434	
구호자	〃	
신상철	〃 〃 337	
이규선	〃 〃 337	
신언국	〃 〃 319-1	
이규분	〃 〃 319-1	
신관준	〃 〃 318-1	
이명희	〃 〃	
이창배	〃 성재2길 41-8	
정춘수	〃 〃 41-2	
홍기양	〃 〃 398-33	
김경우	〃 〃 43-2	
김덕호	〃 〃 39-59	
이남규	〃 〃 43-14	
이선녀	〃 〃 41-4	
박만호	〃 〃 49	
이용준	〃 〃 41-2	
신과준	〃 〃 39-20	
주영숙	〃 〃 39-57	
이장희	〃 〃 47	
박금화	〃 〃 43-2	
정천국	〃 〃 39-57	
신노관	〃 〃 39-30	
신언규	〃 〃 41-4	
이복례	〃 〃 39-20	
신언관	〃 〃 50	
장이순	〃 〃 55	
신홍수	〃 〃 39-63	

□옥산인터체인지 설치 서명날인(사인)

이 름	주 소	전화	날인/사인
노주영	청원군 옥산면 국사원리 284-14	043)231-1023	[illegible]
노은영	청원군 옥산면 [illegible]	010-[illegible]	[illegible]
권[illegible]	청원군 옥산면 [illegible]	011-[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청원군 옥산면 [illegible]	0(43)231-1023	[illegible]
노은영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우창산수 101/302	010-6486-[illegible]	노은영
하순임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 [illegible]	043)231-0006	하순임
김학재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0(43)231-1177	김학재
봉선옥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010-[illegible]-[illegible]	봉선옥
장동[illegible]	청원군 옥산면 [illegible]	010-[illegible]	장[illegible]
강수심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 [illegible]-1	010-[illegible]	강수심
송영한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010-[illegible]	[illegible]
방[illegible]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illegible]-5	010-[illegible]	[illegible]
곽[illegible]	[illegible] 주공 [illegible]	010-[illegible]	[illegible]
정[illegible]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 317	010-[illegible]	정순희
이무경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 금산		이무경
박미[illegible]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우창산수 101/302	010-6486-[illegible]	[illegible]
한소재	청원군 옥산면 [illegible]	043)231-6076	한소재
[illegible]	증평군읍 장동리 주공 [illegible]	010-[illegible]	[illegible]
신복[illegible]	청원군 옥산면 [illegible] 100	011-[illegible]	신복[illegible]
[illegible]	〃 〃 〃		
강병희	증평군읍 장동리 주공 [illegible]	011-463-[illegible]	강병희
[illegible]	[illegible]	010-[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010-[illegible]	[illegible]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민원 이송(옥산-오창, 노선변경 등)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20-5 201호 이철한님께서 붙임과 같이 서면민원을 제출하여 사업시행자인 귀 사에 이송하오니,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청에도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서류 및 민원회신 문서사본 1부(별도송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무관	주무관	사무관대우	과장	전결 2012. 12. 3.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8021 (2012. 12. 3.)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54 팩스번호 042-670-3485 / mjjs98@mltm.go.kr / 비공개(5,6)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해 양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민원 이송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인(이철한님)이 우리부에 제출한 서면민원(접수번호 DAA-1211-005047, '12.11.21)에 대해 동 사업의 사업관리기관인 귀 청에 붙임과 같이 이송하오니,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에도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민원서류에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서류 1식(별도송부). 끝.

국토해양부장관

사무관대우 김대현 서설사무관 이강녕 과장 전결 2012. 11. 21. 어명소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2894 (2012. 11. 21.) 접수 도로공사과-7739 (2012. 11. 22.)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광역도시도로과 / http://www.mltm.go.kr
전화번호 02-2110-6449 팩스번호 02-504-9056 / portkdh@mltm.go.kr /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보내는 사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0-5 번지 ~ 201호
이 철 한

560-900

우 표

받는 사람

국토 해양부 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 청사 4동
국토 해양부

2012/11/19 427-712
안양 과천
35601-0201-4209
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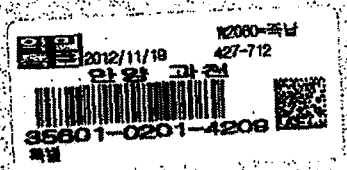

427-712

진정서

1. 진정자: 이철한

2. 진정사항:

국정을 돌보기에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옥산-오창 민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지난 10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이 제가 민원을 통해 제안 드렸던 사항과 동일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오창 지역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외면한 채 국토해양부와 건설 사업단 위주로 잘못 계획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차 진정을 드립니다.

*당진-천안-울진 간 고속도로 조성 촉구

1) 옥산-오창 민자 고속도로 조성 지양 및 고속화도로 조성 촉구

옥산-오창 지역에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없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라면 고속화 도로가 건설돼야 할 것입니다. 즉 오창 지역에는 천안과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고속화 도로가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옥산-오창 민자 고속도로의 12.1km 구간에는 고속화도로가 적합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고속화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100km/hr의 고속도로와 80km/hr의 고속화도로의 주파 시간의 차이는 단지 2분에 불과 합니다 (계산은 별지 참조). 그러므로 오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속화도로가 조성돼야 하고 당진-울진 간에는 새로운 직선 고속도로의 조성이 바람직하다는데 대다수 주민들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2) 당진-천안-울진 간 고속도로 조성 목적

당진-천안-울진 간의 직선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공사비는 물론 소요시간 및 운임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옥산-오창 민자 고속도로는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 주민 설명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고속도로라면 대단히 중요한 고속국도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 구간인 옥산-오창 민자 고속도로의 통과 도면을 보면 마치 지방도로 설계도면 같은 착각이 됩니다. 현재의 설계는 당진에서 시작해서 천안에서 경부 고속국도를 따라 약 17km 남하해 청원휴게소 지점을 옥산-오창 민자 고속도로의 시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골프장을 피해 사행해서 오창 JCT로 가게 됩니다. 이에 경부고속국도 천안에서 청원휴게소 까지 약 17km를 남하하는 우회로를 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속국도답게 천안에서 진천 IC지역 남단 초평저수지 북쪽으로 직진해야 할 것입니다 (설계 추천도 별지 1 참조). 그리고 직선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서 청주 국제공항으로 가는 IC를 만들어 현재 설계상의 540번 도로 상의 서 오창 IC 지점과 직선 고속도로로 연결한다면 복잡한 경부고속국도를 이용할 필요 없이 공항접근이 더욱 용이하게 돼서 충청남도 지역 주민들의 청주 국제공항 이용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 입니다. 혹시나 명분 없

이 우편물은 2012-11-19
제 35801020142098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전주우체국장

는 환경평가나 영양평가의 이유는 들지 마십시오.

3) 민자 유치 부정개재 의아

민간인이 자금을 투입해서 도로를 조성하고자 함은 국가 예산 절감이유 이외에 이미 상당한 돈벌이가 된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다른 지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혹 부정이 개입돼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이에 대해 해명을 촉구합니다. 민자 고속도로의 문제점은 이미 타 지역의 사례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국가가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경우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기반시설은 국가가 건설 및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산-오창 지역에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없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 옥산-오창 민자 고속도로 설계 수정

1) 현 설계의 서 오창 IC-오창 JCT 구간을 직선 조성

(가) 대형 S자로 목령산 남쪽 능선 통과 (설계도면 별지 2 가 참조)

서 오창 IC에서 청주농고 농장을 지나 오창 텍크노빌과 510번 도로를 지나는 부분을 목령산 남쪽 능선으로 직선 설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km/hr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의 사행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목령산 남쪽 능선을 통과해 양자리에서 510번 도로를 지나 오창 JCT으로 진입한다면 커다란 S자 모양으로 현재 설계의 국궁 모양과 비교해서 주행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설계도면 별지 2 참조) 목령산 남쪽의 직선 부분이 오창 JCT에 위치한 곡선 부분과 완만한 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곡선 부분은 현 설계의 오창 JCT 지역의 곡선 부분 밖에 없습니다. 길이가 수 km되는 거대 S자의 곡선 도로에서 100km/hr의 속도를 내는 것은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고속도로의 예를 보면 많은 도로의 완곡도가 위의 말씀드린 구간에서의 완곡도와 비교해서 훨씬 심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가 100km/hr로써 고속국도가 건설된 후 수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 서 오창 IC-과학단지-오창 JCT 직선 조성 (설계도면 별지 2 나 참조)

오창 IC-오창 JCT 구간에서 고속도로가 농고 농장을 지난 후 직선화되도록 이 구간이 목령산 남쪽 능선과 현재 개발 중인 오창 제 2 과학단지 옆 부지와 오창 중학교 옆 부지를 통과해 오창 JCT를 위치할 것을 제한했었습니다. 실상 오창 과학단지 부지가 조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옥산-오창 고속도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과학단지를 통과하는 설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단지 부지조성이 마무리된 이제 와서야 뒤늦게 과학단지 부지는 이용할 수 없다는 거부 이유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과학단지 입주자들 하고는 협상할 수 없고 지역 농민들에게 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충북대가 입주를 취소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 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행정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일부 과학단지 입주자들과 원만히 협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00204

(다) 직선 지하차도 조성 (설계도면 별지 2 다 참조)

직선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청주농고 농장부터 오창 JCT 진입로 까지 약 2km 구간을 목령산 북부 능선으로 통과해 직선 지하도로 건설 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상대책의 현실화 촉구

옥산-오창 민자 고속도로의 통과 지역을 보면 두 군데의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은 모두 우회해서 지나가고 농지를 통과함으로 인해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많으며 농민들은 보상을 받더라도 그 금액으로는 같은 토질과 크기의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국책사업 시행이란 미명하에 농민은 무시당하고 빈곤해져도 무방하다는 것 입니까? 이 같은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보상대책은 배제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상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보상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3)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의 배제 촉구

옥산-오창 2012년 10월 29일 주민 설명회는 도로 건설의 설계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한다는 모임이었지만 주민들이 설계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경우 설계팀으로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의 의혹만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보다는 관계 공무원 및 공직자가 참석해서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었어야 했음을 진정합니다.

4)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 조성의 사실 여하?

당진 울진 간 고속도로가 한반도 동서 횡단 고속국도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발추처가 국토해양부이고 그 총 책임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임이 분명한데 어떤 이유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주무청으로 돼 있는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5) 도로 건설계획 일정 공개

주민 설명회에서 향후 도로 건설계획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 계획을 수정하실 경우 수정된 계획과 일정도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한반도에 동서 횡단 고속국도와 같은 국가 중대 기반시설은 한 번 건설되면 수십 년은 물론이고 수백 년에 걸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이득만 바라봄으로써 명품 고속도로가 조성될 수 있는 일을 그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당진-천안-진천 IC 남단-울진 간의 직선 고속도로가 조성돼야하고 옥산-오창 지역은 고속화도로 조성이 추진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각 항목 별로 해결책을 상세히 답변해주십시오. 끝

SCO2

2012년 11월 15일

발신자: 이철한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20-5 201호
우편번호 560-900
휴대전화: 010-4657-3693

수신자: 국토해양부 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 청사 4동 국토해양부
427-712

동봉: 설계 추천도 별지 1
설계도면 별지 2
주행속도 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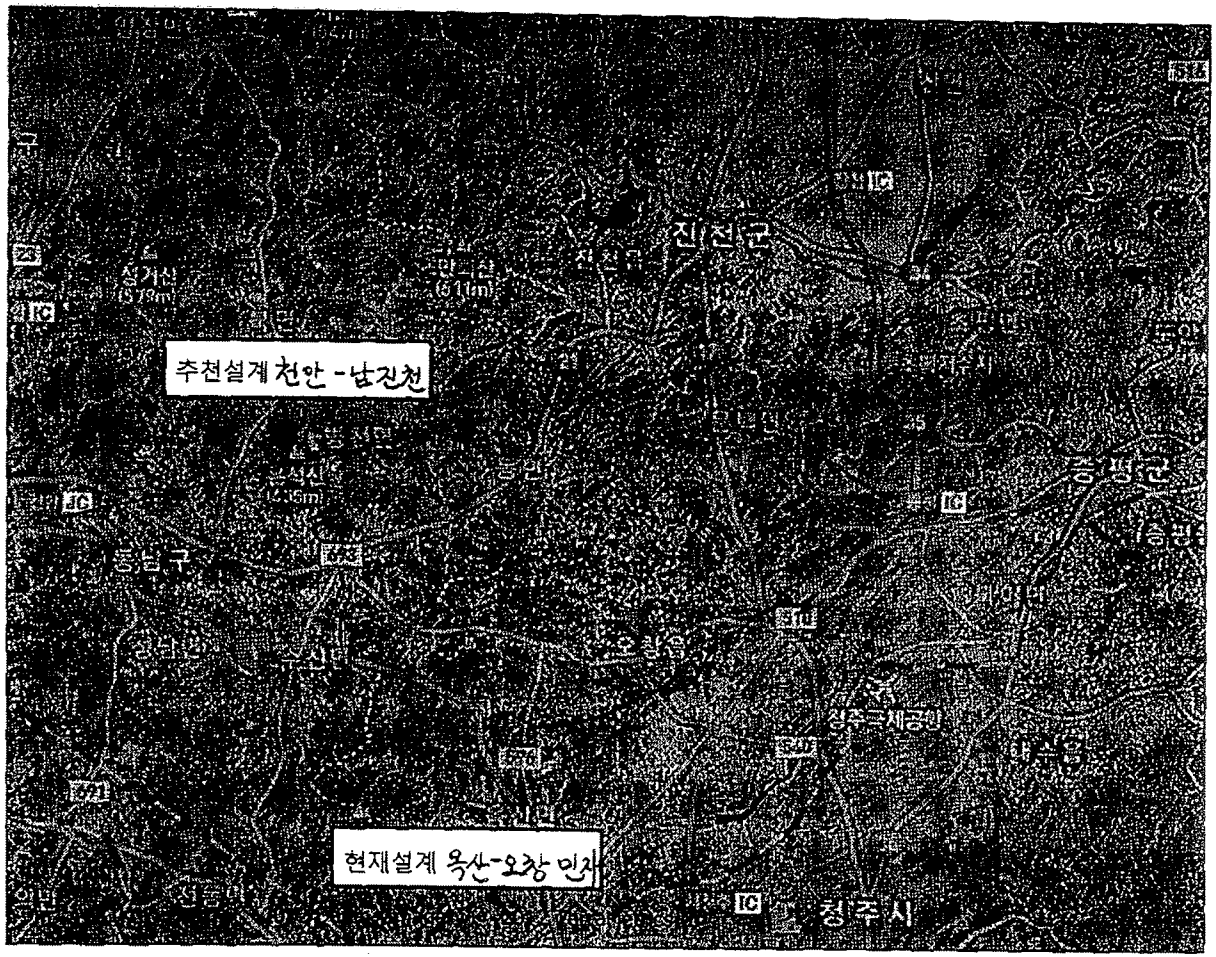

울진 방면

설계 추천도 별지 1
새로운 추천 설계: 천안-진천 IC 남단-괴산
현재설계: 옥산-오창 (직선과 비교된 우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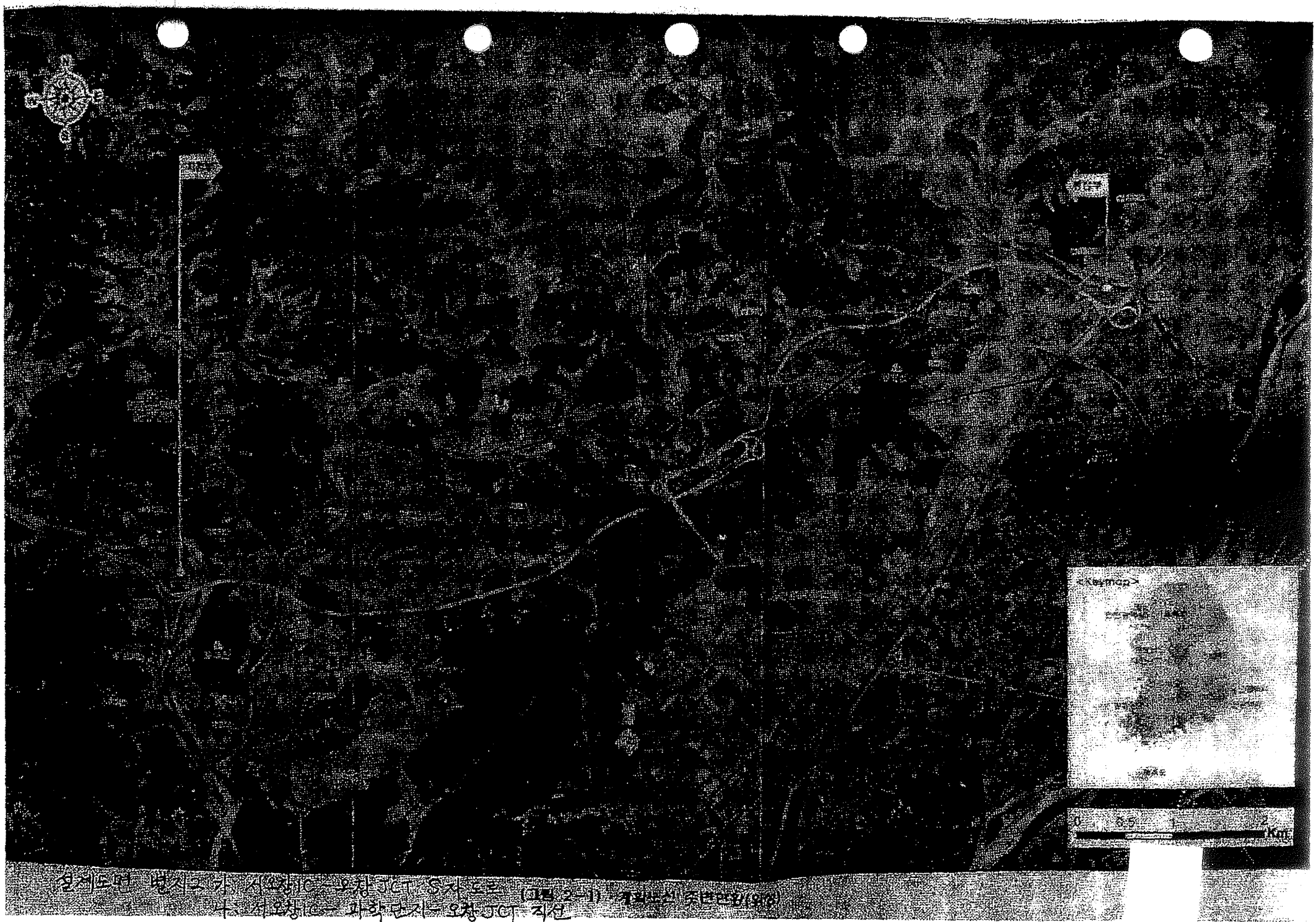

설계도면 별지 2 가. 서오창IC-오창JCT S자 도로 (그림 2-1) 계획노선 주변면황(위성)
나. 서오창IC-과학단지-오창JCT 직선
다. 직선 지하 차도

옥산-오창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의 주행시간 비교

고속도로 제한 최고속도 100km/hr
고속화도로 제한 최고속도 80km/hr 라고 할 경우
옥산-오창 간 거리: 12.1km

100km/hr 질주 할 경우 소요시간: 12.1km ÷ 100km/hr × 60min/hr ≒ 7.26 min (분)
80km/hr 질주 할 경우 소요시간: 12.1km ÷ 80km/hr × 60min/hr ≒ 9.075 min (분)

고속화 도로와 고속도로 간의 주행시간 차이: 약 9분 - 약 7분= 약 2분 끝

계산자: 기술사 이중호 2012년 11월 15일

11.19
JECQ204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이철한 귀하 (우560-2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0-5 201호)
(경유)
제목 민원 이송 알림(옥산-오창, 노선변경 등)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우리 청으로 이송된 **옥산~오창 고속도로**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도로건설계획 일정공개 등 요청

2. 회신내용

가.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노선변경 요청에 대하여는 도로계획과-3048호(2012.04.07)등 8회 회신하여 드린 사항과 동일하여 종결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나. 도로건설계획 일정공개 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옥산오창고속도로(주)로 하여금 선생님께 회신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로공사과(담당 박준식 ☎042-670-355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무관	주무관	사무관대우	과장	전결 2012. 12. 3.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8020 (2012. 12. 3.)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54 팩스번호 042-670-3485 / mjjs98@mltm.go.kr / 비공개(5,6)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 함께하는 충북 -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현지조사 일정 알림

1. 청원군 문화체육과-27000(2012.11.16)호, 보은군 문화관광과-21853(2012.11.27)호 관련입니다.

2.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소재 문화재자료 제14호 "충비상월의 비" 주변 고속도로 건설, 보은군 보은읍 상산리 소재 유형문화재 제115호 "보은동헌"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 현상변경 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코자 하오니 현지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12. 12. 4(화)
- 청원 충비상월의 비 : 10:00 보은동헌 13:00

○ 장 소 : 문화재 현장

○ 참석위원 : 조중근위원, 손태진위원

○ 조사내용 : 문화재 주변 시설물 건축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여부. 끝.

충청북도지

수신자 청원군수(문화체육과장),보은군수(문화관광과장)

지방시설주사 박병현 문화재팀장 박준순 문화예술과장 11/28 강성택

협조자 주무관 안진석 정책관리팀장 이강명

시행 문화예술과-17028 (2012.11.28.) 접수 문화체육과-@N ( )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www.cb21.net

전화 220-3834 /전송 043)220-3819 / byungo@korea.kr / 공개

청 원 군

수신자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송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신청내역

가. 성 명 : 옥산오창고속도로(주)(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나. 허가사항 : 고속도로 건설

다. 대 상 :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4호 충비상월의 비

붙 임 :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1부(별송). 끝

청 원 군

★주무관 이나경 관광시설담당 연규성 문화체육과장 전결 11/16 오영택

협조자

시행 문화체육과-27000 (2012.11.16.) 접수 ( )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문로1가 171-3 / http://www.puru.net
전화 043)251-3283 /전송 043)251-3289 / mjlee1238@korea.kr / 공개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

청 원 군

수신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옥산오창고속도로(주)
(경유)

제목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주민건의사항 검토 의뢰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간선도로망계획의 동서 5축 사업 일환으로 귀 사의 제안으로 추진중인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사업" 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2012. 11. 14. 우리군을 반문하여 군수님을 면담한 결과 아래와 같이 건의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건의사항

○ 옥산 JCT에서 돛대산 통과 구간을 **직선화**하고 **터널**로 검토

- 돛대산의 허리를 잘라 지역의 명산의 기를 단절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게 터널로 도로 개설
- 터널안 조도를 높이는 등 밝게 하여 조도순응시간 조정
- 고속도로가 주택지 바로 옆을 지나 소음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택지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옥산지역에 **IC설치** 검토

- 옥산산업단지와 성재산업단지가 대단위(55만평)로 개발되고 있어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할 수 있도록 옥산산업단지앞에 IC설치

붙 임 : 건의문 1부. 끝.



청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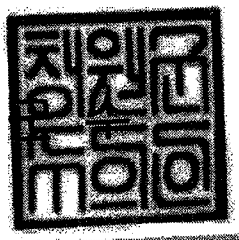

★주무관	박상갑	도로담당	정무영	건설과장	11/16 임종호

협조자

시행 건설과-31787 (2012.11.15.) 접수 ( )

우 363-8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 http://www.corea0000.korea.kr
전화 043)251-3502 /전송 043)251-3519 / test@puru.net / 공개

건 의 문

국토해양부 장관님 안녕 하십니까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오창읍 백현리 주민이 드리는 건의문입니다
우리 마을은 평범하게 농사를 주업으로 조상대대로 조용하고 평온하게 열심히 마을을 보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산 오창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옥산면 장남리 산 9-1번지.산 10번지 부근으로 마을과 너무 가깝게 설계된 점이 이해하기가 어렵 습니다
우리 마을의 명산(돛대산)이 절개 공사로 반 토막이 된다는 점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 습니다
요즘 도로공사를 보면 직선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곳 도로공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절개를 하지 않고 구부러진 도로를 직선으로 하고 터널을 이용한 고속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모든 동식물과 함께 살아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고 나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 합니다
GS건설의 설계 도면을 참고 하시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을 청취하시고 우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중하고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민의 의견과 뜻을 모아 제출 합니다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오창읍 백현리 주민 일동

돛대산의 유래

사라진 뱃길에 삶의 터전이 이어진 곳 장남리
계절의 변화 속에 날마다 색다른 돛을 올리고 있는 돛대산

옥산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 5Km지점에 위치한 장남리를 찾아 몽단이 고개를 넘어서면 마주보이는 산이 바로 돛대산이다. 해발 177M로 상봉은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고 양쪽에 봉우리가 솟아있다.

산 아래 장남마을을 살펴보면 서쪽으로는 병천천 동쪽으로는 용두천 남쪽으로는 두 물줄기가 만나 천수천이 되어 흐르고 북쪽에는 돛대산이 있다. 이런 마을의 지형을 배가 항해하는 듯 보인다 하여 행주형(行舟形)이라고 하며 풍수지리상으로는 마을이 배의 몸체에 해당하고 돛대산은 배의 돛대에 해당된다고 한다. 실제로 마을에 우물을 파면 배 바닥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아 우환과 재난이 생긴다고 믿었던 마을사람들은 1950년대까지 우물을 파지 않고 냇물을 식수로 이용했다. 이렇게 이름지어진 돛대산에 한 가지 전설도 전해진다.

아주 오랜 옛날 병천천과 용두천이 만나는 강의 합수머리에 심술궂은 용왕이 살고 있었다. 용왕은 이곳을 왕래하는 배들이 공물을 올리지 않으면 바람과 파도를 세차게 일으켜 침몰시키곤 했는데 어느 해에 하늘의 선녀가 이곳에서 용왕의 장난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을 본 천신이 용왕을 강의 큰 바위 밑에 잡아 매놓고 물을 말려 배가 뜨지 못하게 했다. 용왕은 할 수 없이 잣나무를 베어 돛대를 삼아 가벼운 배를 만들어 띄우려 했다. 그러나 물이 점점 줄어 띄울 수 없게 되고 끝내 용왕은 그 곳에서 쫓겨났다. 그 후 물건을 실은 거대한 배가 그 사실을 모르고 이곳을 지나다 배가 강바닥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 하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배가 그대로 굳어서 돛대산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는 전설 속에 사라진 뱃길을 대신하듯 병천천 옆으로 경부고속도로가 힘차게 뻗어있다.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백현리 주민 위원회

상 장남리 이장　　유 재 준

상 장남리 위원장　　정 수 상

하 장남리 노인회장　서 정 봉

하 장남리 위원장　　정 진 평

백현리 이장　　박 재 규

백현리 위원장　　김 종 뢰

민원 인명부

	이름	주소	서명
1	신언곡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 309	
2	신언덕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 434	
3	구순자	〃	
4	신상철	〃 〃 337	
5	이규선	〃 〃 337	
6	신언국	〃 〃 319-1	
7	이규분	〃 〃 319-1	
8	신관준	〃 〃 318-1	
9	이명희	〃 〃	
10	이창배	〃 성재2길 41-8	
11	정춘수	〃 〃 41-2	
12	홍기양	〃 〃 398-33	
13	김경우	〃 〃 43-2	
14	김덕호	〃 〃 39-59	
15	이남규	〃 〃 43-14	
16	이선녀	〃 〃 41-4	
17	박만호	〃 〃 49	
18	이용근	〃 〃 41-2	
19	신화준	〃 〃 39-20	
20	주영숙	〃 〃 39-57	
21	이장희	〃 〃 47	
22	박준화	〃 〃 43-2	
23	정현국	〃 〃 39-57	
24	신노재	〃 〃 39-30	
25	신언규	〃 〃 41-4	
26	이복례	〃 〃 39-20	
27	신언관	〃 〃 50	
28	장이순	〃 〃 55	
29	신홍수	〃 〃 39-63	

민원 인명부

	이름	주 소	서명
30	오병오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1구 88-1	
31	이경례	〃 〃 〃 〃	
32	이원돈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86-2	
33	윤화자	〃 〃	
34	이분자	〃 〃	
35	이창녹	〃 〃	
36	김진호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37	황옥순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90-3	
38	김자순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90-3	
39	김지필	〃 〃 〃 〃	
40	김병일	〃 〃 〃 〃	
41	서은석	오창읍 백현리 192-2	
42	이화실	〃	이화실
43	서정두	오창읍 백현리 43-2	
44	김순옥	〃 〃 〃	
45	서정희	〃 〃 44-4	
46	박광순	〃 〃 145-1	
47	한계숙	〃 145-1	
48	추정수	〃 〃 50번지	
49	신명식	〃 〃 50번지	
50	이정은	〃 〃 55번지	
51	유일상	55번지	
52	이춘길	〃 〃 69번지	
53	추정복	〃 1길 65	
54	이상순	〃 〃 52	
55	이병숙	〃 〃 52	
56	오순진	오창읍 백현리 1구 85-5	
57	전병국	오창읍 백현리 1구 85-5	
58	김수상	옥산면 장남리 1-1	
59	김광순	옥산면 장남리 1-2	

민원 인명부

	이름	주 소	서명
60	박재규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41	
61	정원기	〃 백현2리 137	
62	정창기	〃 〃 139-2	
63	신수일	〃 〃 139-5	
64	김광복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	
65	김광덕	오창읍 백현리	
66	이영자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67	김광자	오창읍 백현리	
68	김춘경	오창읍 HH 현리	
69	김기서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37	
70	오치종	〃	
71	김종희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33-3	
72	석진환	〃 〃 137	
73	서분례	〃 〃 133	
74	박상덕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38-6번지	박상덕
75	박범용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38-6번지	박범용
76	박근유	〃 139	박근유
77	김준배	〃 강현리	
78	조찬식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79	송정임	〃 〃	
80	이정희	〃 〃	
81	이진원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82	김주희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37	
83	원성연	〃 〃 134	
84	박동환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33	
85	박의환	〃 133-1	
86	정동례	〃 133-2	
87	유복희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27	유복희
88	박종숙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41	
89	정호선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33	정호선

민원 인명부

	이름	주 소	서명
90	이 명 전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0-1	
91	정 관 평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6-3	
92	우 병 식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8	
93	박 복 성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4-1	
94	김 래 근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8	
95	양 정 숙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6-3	
96	김 부 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	
97	염 일 석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86	
98	이 명 분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7	
99	양 희 성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9-3번지	
100	신 해 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9-3번지	
101	이 은 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	
102	곽 건 호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	
103	심 명 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	
104	공 희 선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8번지	
105	우 재 기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7-4	
106	이 분 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8	
107	서 정 애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6-4	
108	홍 순 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18	
109	전 분 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2번지	
110	조 종 선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3-1	
111	윤 서 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3-1	
112	윤 옥 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13	김 영 길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96번지	
114	서 명 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96-1	
115	유 홍 현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6	
116	최 영 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6	
117	전 석 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0-2	
118	염 호 남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0-2	

민원 인명부

	이름	주 소	서명
119	유재훈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4	
120	백현준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5	
121	이상원	〃 〃 4	
122	백순미	〃 〃 4	
123	강기환	〃 〃 4	
124	전윤미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0-26	
125	권영목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9-3	
126	박철세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9-2	
127	이두복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9-1	
128	김동석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번리	
129	정선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번리	
130	원영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1번리	
131	김현실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2번리	
2	김혜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3번리	
3	김성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45-1	
4	이숙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45-2	
5	박영경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45-2	
6	김선옥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7	
7	정홍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6	
8	이광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6	
9	신준식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1	
10	김기옥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05-1	
1	함금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	
2	서정봉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19	
3	이종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31-6	
4	유원선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38	유원선
5	오홍화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	
6	원춘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	
7	원춘섭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협의 의견에 대한 재검토 지시(옥산~오창 고속도로)

1.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3611(2012.10.25)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재협의 의견이 있어 검토 지시하오니 11.1(목)까지 검토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도로공사 재검토의견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무관	주무관	과장	전결 2012. 10. 29.
박준식	박웅구	정상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7113 (2012. 10. 29.)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53 팩스번호 042-670-3485 / mjjs98@mltm.go.kr / 비공개(5)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 국 도 로 공 사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검토의견 통보

1. 도로공사과-5688호(2012.08.29)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 임 : 검토의견 1부. 끝.

한 국 도 로 공 사 사

도로조사 팀 조형준	도로조사 팀 전준태	팀(부)장 이창봉	팀장 설운호	2012. 10. 25.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3611 (2012. 10. 25.) 접수 도로공사과-7071 (2012. 10. 25.)

우 461-7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 http://www.ex.co.kr/

전화번호 02-2230-4189 팩스번호 02-2230-4303 / naraguyo / 대국민 공개

『민원만족도 조사(발신자 :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응답해 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협의 검토의견

□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 접속위치 관련

○ 천안방면 연결로

- 휴게소 진출로와 합류 후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협의(안)에 동의**

○ 남이방면 연결로

- 접속위치가 곡선(R=600) 구간으로 분기점 설치 기준에 위배되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연결로가 휴게소 진입로와 근접하여 이용객 혼란 발생이 우려되므로 **협의(안)에 부동의**

☞ 교통안전 및 이용객 혼란 방지를 위하여 **곡선구간을 벗어나서 연결로 접속** 및 **휴게소 진입부와 이격거리 확보** 필요

□ 영업시설 설치 관련

○ 재정~민자 연계 이용 시 최저요금 또는 기본요금의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금제 검토 필요

○ 서오창IC 차로 미분리(경부선 및 중부선방향)에 따라 향후 연결되는 노선 실제 이용구간 식별 불가로 민원 등 통행료 수납 시 문제 소지 있음

○ 향후 위 사항에 대한 제반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민자법인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210-064707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김완중		
연락처	070-7487-8674	휴대전화	010-3648-1380
주소	[135 - 82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38		
진행상황통보방식	이메일		
이메일	b1624@hanmail.net	나의민원확인방식	간편형
신청일	2012.10.18. 10:21:36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교통안전진단의 수행여부 검토 요청
민원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건설 회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교통안전법이 최근에 개정 되어 법 제34조 1항에 의해 기존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금번 개정(2012.9.1 시행)에서는 이항목이 제외되어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 교통안전진단을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해사업의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4년 11월 최초사업제안서 제출 - 2007년 06월 사업제안서 검토 완료 - 2008년 05월 민간제안사업 제3자공고 - 2008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지정 - 2012년 01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2년 02월 실시설계 중 -2012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및 주민설명회 개최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공유여부]

민원공유여부	비공유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연락처)	김해기 (02-2110-6424)	민원인 신청번호	1AA-1210-064707
접수일	2012.10.18. 17:47:4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10-149022
처리예정일	2012.10.2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차 답변일	2012.10.19. 14:41:36		
	교통안전에 관심을 많은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차 답변내용)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 설치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면제하였으나 금년 9월 1일 부터 개정된 교통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도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추진중인 교통시설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그 기준은 실시설계 발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실시설계를 발주 한 경우에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간주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시한번 교통안전진단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점에 감사드리며, 혹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김해기 사무관 : 02 - 2110- 6424)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환경부

'녹색성장 더큰대한민국'

수신자 청원군수(환경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1.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제 2012-35(2012.9.11)호와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옥산-오창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1부. 끝.

환경부장

환경사무관 조상대 과장 전결 10/12 김필홍

협조자

시행 국토환경평가과-2527 (2012.10.12.) 접수 환경과-48122 (2012.10.12.)

우 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725호 국토환경평가과 / http://www.me.go.kr

전화 02-2110-6709 /전송 02-507-6214 / jd3874@me.go.kr / 비공개

옥산-오창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사 업 개 요〉

○ 사업명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 청원군 오창읍

○ 주요내용

구 분		사업내용
연 장		▪ L = 12.1㎞
차 로 수		▪ 4차로(본선 23.4m)
설계속도		▪ 100㎞/h
주요 구조물	교량	▪ 26개소
	출입시설	▪ JCT 2개소, IC 1개소
	영업소	▪ 2개소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국토해양부)

Ⅰ. 총괄의견

○ 본 사업은 동·서축 국가기간망의 구축을 통해 대전·청주권 지역에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주국제공항과의 원활한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으로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되, 영향예측 및 평가시 산정과정과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붙임의 "평가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대상지역 인근에 대기질, 수질, 토양·지하수 등 국가운영 측정망이 존재할 경우 본 사업의 환경현황 측정자료와 비교·분석
- 환경영향범위 내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누적하여 평가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과정 및 내용, 이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특히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공고 및 공람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첨부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대기질(온실가스)

□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누적평가 추가
- 사업지역 주변에 타 개발사업 등에 대한 누적평가를 추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누적평가는 본 사업의 배출량과 계획된 개발사업들의 배출량을 함께 입력자료로 적용하여 영향예측을 실시

○ 영향 예측지점 조사
- 대기질 영향에 민감한 사업지구 인근의 주요 지역(70m 이내, 단독주거지를 포함한 주거지역, 학교, 축사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별로 최단 이격거리, 가구수 및 특히 지형적 차폐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특히 공사시 영향예측 결과 저감방안 강구 후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나 인접 주요시설(70m 이내)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등의 조치계획이 필요함

○ 녹지계획

- 절·성토 사면부 및 서오창IC, 옥산·오창JCT 등의 지역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재계획 수립이 필요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사시 70m 및 운영시 100m 이내 주요 정온시설 중심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실가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필요
  · 공사시 저탄소 자재 사용 등과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함

2. 수 질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 생활계 오수발생량 산정은 '12.07.31 개정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토지계 삭감부하량은 개정된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8,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동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제3단계('16-'25)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발생오염원에 대한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협의한 후 총량협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목록 또는 개발사업간 부하량조정내역서와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 침사지 설치계획

○ 침사지 설계시 포착대상입경을 0.2mm로 선정(210쪽)하였으나 포착대상입경은 사업지구의 입도분석을 통해 침사지 유출수의 부유물질 농도와 이로 인한 인근 하천의 영향을 검토하여 침사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토사유출량은 연간일수가 아닌 강우일수를 적용(186쪽)하여 재산정
- 침사지 유출수의 부유물질농도와 단순혼합식을 이용한 방류하천의 영향 검토
- 인근 하천의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는 하천수질 기준 Ⅲ등급(25㎎/L 이하)을 적용하여 침사지 설계의 적정성 검토
- 침사지에 대한 주기적인 준설 및 청소 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침사지의 설치시 부지면적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단계 형식의 침사지 설치 및 응집제 투입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비점오염원 처리대책

○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계획은 토지이용 특성과 처리효율, 유지관리 비용 및 용이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 교량부에 대하여 장치형(여과형)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동 시설은 유지관리가 미흡할 경우 저감능력은 크게 떨어지므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3. 토지이용

□ 교차로 계획

○ 계획노선중 서오창IC(본선영업소와 서오창IC영업소)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불용토지가 발생하며, 다수 구간에서 대절토 및 고성토가 발생하는 등 과도한 지형 및 식생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오창IC와 본선영업소를 2개의 노선으로 분류하지 않고 단일노선의 계획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최적안을 선정

- 다수의 대안을 제시하고 동 검토안을 선정한 불가피한 사유 등 제시

□ 부체도로 설치

○ 부체도로의 설치폭을 5m(249쪽)로 계획하였는바 6m 이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지형·지질

□ 지형·지질 자산

○ 계획노선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형·지질 자산현황을 조사하여 지질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시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형정보 :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전국자연환경조사(지형경관편 등) 등 참조
- 지질정보 : 한국의 지질유산 정보구축 및 관리방안(KEI, 2008), 한국의 지질노두 150선(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광물 문화재 정밀조사보고서(문화재청), 지형지질 관련 천연기념물 및 명승지 등의 문화재(문화재청) 등 참조(지역명 혹은 지층명을 입력)
- 지질관련 학술자료 :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http://ieg.or.kr)
- 조사결과 주요한 사항은 도면상으로 작성

□ 능선축 보전방안

○ 계획노선은 만뢰지맥 능선축을 통과하고 있으나 본 지맥 통과구간에 대하여 도로 및 경작활동으로 인하여 연결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하지만 본 평가서에서는 계획노선 통과구간에 대한 상세한 능선축 분석결과 및 현황도면이 제시되지 않아 훼손에 대한 평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만뢰지맥 통과구간에 대한 상세한 도면을 이용한 능선축 분석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작성하여야 함

○ 만뢰지맥이 도로 등으로 인하여 일부 구간에서 훼손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원지형을 기준으로 설정된 능선축은 국토보전 및 광역생태축의 보전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만뢰지맥은 계획노선 주변지역에서 지형적으로 능선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30m 이상의 절토사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지형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터널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돛대산 통과구간(병천천교와 상장남교 사이)은 능선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본 사업으로 인하여 지형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암터널 또는 생태통로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시행시 30m 이상의 대규모 절토사면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주요 능선축이 아닌 보조 능선축으로서 지형생태축의 역할을 하는 경우 지형적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상세 지형도를 이용하여 보조능선축 수준까지 능선축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

□ 지형훼손 최소화

○ 사업시행시 30m 이상의 절토사면 및 20m 이상의 성토사면 발생구간에 대하여 종단경사 조정, 터널설치, 교량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 부수적 지형개변

○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용 진입도로, 현장사무소, 부체도로 등이 필요한 경우 현황을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작업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필요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형개변지역 중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복구방안이나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작성

□ 부족토 공급방안

○ 사업시행시 부족토량(376,500㎥)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비탈면 보호공법

○ 비탈면의 경우 덩굴식물과 녹생토 공법을 시행(348쪽)하고 있어 경관에 큰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목본위주의 생태적 복원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동·식물상

□ 생태네트워크 분석 및 육상생물 보전방안

○ 육상 및 육수생물상의 보전대책으로 제시되어 있거나 제시 가능한 교량, 생태터널, 배수관, 통로암거, 측구, 유도펜스 등의 시설물들은 사업구간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과 위치들에 대한 분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현재 제시된 저감시설물 및 보전대책은 대상구간의 생태계 영향여부, 대상 생물의 영향정도 및 효과에 대한 분석 후 계획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업구간과 그 주변에 대한 생태네트워크(Blue-Green Network)와 대상노선으로 인해 영향 및 단절이 예상되는 생태네트워크, 생물군, 서식지 등에 대한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감시설물의 배치, 규모, 수량 등을 확정하여야 함

- 대상구간 및 그 주변(각 분류군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의 생태네트워크 분석 실시
- 생태네트워크 분석시 아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도로구간 주변의 구체적인 생태네트워크 현황
  · 사업구간 주변 주요 생물군 및 주요 서식지 현황
  · 도로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생태네트워크 단절 및 영향정도
  · 도로공사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 및 서식지 등
- 분석된 생태네트워크 위에 사업구간을 중첩 표시하여 생태적 단절 및 영향정도를 도면에 시각적으로 표시
- 생태네트워크 분석 후 보전대책 및 저감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공사 구간 제시
- 각 저감시설물의 경우 이용이 예상되는 대상 생물군 제시
- 대상 생물군의 분석 이후 각 저감시설물(교량, 생태터널, 배수관, 통·수로암거, 측구, 유도펜스 등)의 위치, 규모, 수량을 결정하여 도면에 제시

□ 주요 종 및 서식지 정밀 모니터링 방안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산림, 논습지, 하천 등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서식 또는 서식가능성이 있는 법적보호종 등 주요 종과 서식지에 대한 영향여부와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특히 영향이 예상되는 법적보호종 등 주요 종에 대해서는 각 종별 영향과 보전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들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정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정밀 모니터링시 대상 법적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선수립하여야 함

- 각 대상 법적보호종, 주요 생물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하여 생활사를 고려한 월 1회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정밀 모니터링시 조사기간, 조사지점, 조사경로를 결과에 첨부

□ 훼손수목 재활용 방안

○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 발생이 30,692주로 산정되었으나 990주만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바 이식대상 선정시 높은 고사율로 인한 가이식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생존율을 고려, 중·소형목의 입목에 적용하고 주변 사유지 소유주 이식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훼손수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통로암거 설치 계획

○ 통로암거를 신설(447쪽)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빈번하거나 마을 인접지역 및 IC 또는 JC 부근을 횡단하는 10m 이상의 통로암거에 대하여는 조명설치 등의 계획이 필요함

6. 친환경적 자원순환

□ 지장물 철거시의 유해성 폐기물 처리계획

○ 지장물 철거시 유해물질(석면, 수은, 변압기 내의 PCB 등)이 포함된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유해성폐기물 발생시의 적정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7. 소음·진동

□ 공사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공사시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예측에서 공동주택 층별 보정계수를 적용(520쪽)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층별 보정계수는 도로교통소음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음원의 특성이 다른 공사장 소음의 경우 소음원과 정온시설 사이의 실제(수평 및 수직) 이격거리를 고려한 층별 소음분포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치원(556쪽, 18지점)의 경우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한 이후에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육시설의 추가 저감대책(559쪽)으로 작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환경목표기준이 상향되어 가축에 대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저감대책(추가 방음시설 운영, 저소음 장비 및 공법 적용, 소음현황판 설치, 관리인력 운영, 가설방음판넬의 제원조정, 축사 임시이동, 주민협의 등)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오창테크노빌GC 인근 정밀기기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어 소음·진동, 경관 등의 영향이 우려되므로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예측식 및 예측인자의 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근거의 제시 없이 도로교통 소음도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 계획노선과 유사한 지역(교통량, 차속 등 고려)을 대상으로 실측소음도와 예측소음도를 비교·검토한 타당성 검토자료
- 목표년도까지 5년 간격의 서비스 수준에 따른 구간별 및 시간대(24시간)별 차량의 통행속도와 교통량을 교통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산출(교통관련 전문가의 교통예측결과에 관한 근거자료와 의견서 첨부)
- 상기 자료를 근거로 해당 연도의 시간대별 소음도 예측
-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연도 및 시간대 선정
- 저감대책의 수립시기와 방법 선정(선정 근거 명기)
- 계획노선 주변 도로, 차량 진출입로 등에 대한 소음기여도 산정 및 누적 평가
- 고층 정온시설(진달래아파트 등, 546-549쪽)에 대하여 운영시 저감방안 수립 전·후의 수직 등음선도를 제시하고 고층 정온시설의 형상 및 배치, 소음원과 고층 정온시설 사이의 특성(지형, 소음저감시설, 기존 시설물 등)을 적용하고 회절감쇠에 따른 소음전파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적용된 3차원 소음예측모델 등에 의한 소음예측결과와 소음측정결과의 비교·검토, 방음벽 등(576-578쪽)을 반영한 소음평가 수행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발파 소음·진동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발파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제 발파가 시행되는 시점(시험발파 포함)을 발파시 조사시기로 설정
- 소음(Lmax, Leq) 및 진동(dB(V), kine) 측정계획 포함

8. 경관

□ **경관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 계획노선은 다수 구간에서 대절토 및 고성토가 발생하여 경관적 영향이 예상되며 평가서에서 선정한 조망점외에 대규모 절·성토가 발생하는 구간(303쪽)과 인접하여 마을과 도로 등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조망점을 선정하여 현실감과 스케일을 고려한 경관변화를 예측하여야 하며 이때 조망점의 현황과 절성토 사면고, 이격거리, 지반고와 계획고, 상향각 등을 명시하고, 경관변화 예측결과를 토대로 교량의 신설과 추가, 종단선형 변경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인근 그랜드골프장(계획노선에서 인접한 홀)에서 고속도로의 경관훼손 부분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저감대책(차폐식재 등) 강구

○ 최종 조망점 선정시 원경의 조망점을 선정하지 않았는데 교량의 경우 원경의 조망점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경 조망점에 대한 사업 후 시뮬레이션 경관이 원경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문제가 있음

< 붙임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평가서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이나 조사지점 선정, 예측조건, 예측시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다른 법률이나 행정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확인이 가능한 관련문서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과 연관성이 적은 사실이나 불필요한 사항의 나열, 일반적인 이론의 전개, 반복기재, 결정되지 않은 사항 등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중요한 사항을 부록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됨

○ 평가서 작성시 각 항목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의 예측 및 저감방안이 구체적으로 평가·제시되어야 함. 특히, 영향예측은 수치화,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막연한 표현(영향이 있을 수 있다 등)은 삼가하여야 함

○ 평가서에 사용되는 용어 중 법률과 관련된 용어는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률개정 등으로 이미 없어진 법률용어를 인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함(예 : 특정야생동물 등)

○ 사업지구를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의견수렴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협의 도중에 선행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협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끝.

- 함께하는 충북 -

충청북도

수신자 청원군수(환경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통보

1.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옥상오창 제2012-37호(2012. 9.11.)호와 관련입니다.

2. 옥산(경부고속도로)~오창(중부고속도로)간에 추진하고자 하는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본 사업과 관련 주무행정기관인 청원군(환경과)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공사 및 운영시 검토의견을 반영(평가서 본안)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옥산~오창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1부. 끝.

충청북도지

주무관 박재신 자연환경팀장 전결 09/21 이태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9014 (2012.09.21.) 접수 환경과-45243 (2012.09.27.)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서관4층 403호 (문화동) / www.cb21.net

전화 220-4023 /전송 043-220-4029 / jsp94841@korea.kr / 공개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사업개요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 ~ 오창읍(중부고속도로)

○ 기 간 : 2013. 1 ~ 2016.12

○ 규 모 : 연장 12.1㎞ (왕복 4차로, 100㎞/hr)
- 교량 29개소(3,115m), - 출입시설 : JCT 2개소 / IC 1개소

○ 시행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 박정수)

○ 승 인 : 국토해양부

○ 사업비 : 2,300억

□ 검토의견

○ 본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 5. 도로의 건설사업에 해당되므로 공사시행의 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을 환경부장관에게 하여야 함.

○ 본 사업지역은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미호B" 단위유역에 해당되며,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결과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여 환경부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제재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8조에 따라 청원군으로부터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사업의 승인 등이 이루어질 경우「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으로 사업의 승인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생태계훼손면적을 산정하여 충청북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 (협의내용, 검토의견 포함) 이행·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련규정 (기준)위반과 환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정수
(경유)
제목 민원 조치 요청(옥산-오창)

1. 광역도시도로과-2149(2012.09.03.), 도로공사과-5507(2012.08.22.)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4 유재준님 등 146인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이송된 터널설계변경 요청 민원을 붙임과 같이 이첩하니 조치계획을 2012.09.10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사본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

주무관	박웅구	사무관	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2. 9. 6. 정상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5917 (2012. 9. 6.)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63 팩스번호 042-670-3485 / sendpark@mltm.go.kr / 비공개(6)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국 토 해 양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민원이송 알림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인(유재준님 외 146)이 우리부에 제출한 서면민원(접수번호 DAA-1209-000197, '12.9.3)에 대해 동 사업의 사업관리기관인 귀 청에 붙임과 같이 이송하오니,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민원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서류 1식(별도송부). 끝.

국토해양부장관

사무관 대우 김대현	시설사무관 이강녕	과장	전결 2012. 9. 3. 어명소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2149 (2012. 9. 3.) 접수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광역도시도로과 / http://www.mltm.go.kr

전화번호 02-2110-6449 팩스번호 02-504-9056 / portkdh@mltm.go.kr / 비공개(5,6)

건 의 문

국토해양부 장관님 안녕 하십니까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오창읍 백현리 주민이 드리는 건의문입니다
우리 마을은 평범하게 농사를 주업으로 조상대대로 조용하고 평온하게 열심히 마을을 보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산 오창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옥산면 장남리 산 9-1번지.산 10번지 부근으로 마을과 너무 가깝게 설계된 점이 이해하기가 어렵 습니다
우리 마을의 명산(돛대산)이 절개 공사로 반 토막이 된다는 점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 습니다
요즘 도로공사를 보면 직선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곳 도로공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절개를 하지 않고 구부러진 도로를 직선으로 하고 터널을 이용한 고속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모든 동식물과 함께 살아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고 나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 합니다
GS건설의 설계 도면을 참고 하시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을 청취하시고 우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중하고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민의 의견과 뜻을 모아 제출 합니다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오창읍 백현리 주민 일동

돛대산의 유래

사라진 뱃길에 삶의 터전이 이어진 곳 장남리
계절의 변화 속에 날마다 색다른 돛을 올리고 있는 돛대산

옥산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 5Km지점에 위치한 장남리를 찾아 몽단이 고개를 넘어서면 마주보이는 산이 바로 돛대산이다. 해발 177M로 상봉은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고 양쪽에 봉우리가 솟아있다.

산 아래 장남마을을 살펴보면 서쪽으로는 병천천 동쪽으로는 용두천 남쪽으로는 두 물줄기가 만나 천수천이 되어 흐르고 북쪽에는 돛대산이 있다. 이런 마을의 지형을 배가 항해하는 듯 보인다 하여 행주형(行舟形)이라고 하며 풍수지리상으로는 마을이 배의 몸체에 해당하고 돛대산은 배의 돛대에 해당된다고 한다. 실제로 마을에 우물을 파면 배 바닥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아 우환과 재난이 생긴다고 믿었던 마을사람들은 1950년대까지 우물을 파지 않고 냇물을 식수로 이용했다. 이렇게 이름지어진 돛대산에 한 가지 전설도 전해진다.

아주 오랜 옛날 병천천과 용두천이 만나는 강의 합수머리에 심술궂은 용왕이 살고 있었다. 용왕은 이곳을 왕래하는 배들이 공물을 올리지 않으면 바람과 파도를 세차게 일으켜 침몰시키곤 했는데 어느 해에 하늘의 선녀가 이곳에서 용왕의 장난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을 본 천신이 용왕을 강의 큰 바위 밑에 잡아 매놓고 물을 말려 배가 뜨지 못하게 했다. 용왕은 할 수 없이 잣나무를 베어 돛대를 삼아 가벼운 배를 만들어 띄우려 했다. 그러나 물이 점점 줄어 띄울 수 없게 되고 끝내 용왕은 그 곳에서 쫓겨났다. 그 후 물건을 실은 거대한 배가 그 사실을 모르고 이곳을 지나다 배가 강바닥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 하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배가 그대로 굳어서 돛대산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는 전설 속에 사라진 뱃길을 대신하듯 병천천 옆으로 경부고속도로가 힘차게 뻗어있다.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백현리 주민 위원회

상 장남리 이장　　유 재 준

상 장남리 위원장　　정 수 상

하 장남리 노인회장　서 정 봉

하 장남리 위원장　　정 진 평

백현리 이장　　박 재 규

백현리 위원장　　김 종 뢰

민원 인명부

이름	주 소	서명
유재준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4	
백현문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5	
서상원	〃 〃 4	
백순미	〃 〃 4	
강기환	〃 〃 4	
전윤미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0-26	
권영묵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9-3	
박률세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9-2	
이두복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9-1	
김동석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번리	
정선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번리	
설영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1번리	
김현실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2번리	
김현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3번리	
김성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45-1	
이숙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45-2	
박영경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45-2	
김선옥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7	
정홍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6	
이강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6	
신준식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1	
김기옥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05-1	
함금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	
서정봉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19	
이종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31-6	
유원선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38	유원선
오홍화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	
원춘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	
원춘섭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8	

민원 인명부

이름	주 소	서명
이병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0-11	
정진평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6-3	
유병선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8	
박복석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4-1	
김재근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illegible]	
양정숙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6-3	
김부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	
엄일석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86	
이명분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7	
양희성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9-3번지	
신태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9-3번지	
이은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1	
조건호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15	
심영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0-15	
공희선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illegible]번지	
유재기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7-4	
이문홍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8	
서정애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46-4	
홍문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18	
정분량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9번지	
조종설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3-1	
유서운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3-1	
윤옥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김영길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P6번지	
서영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P6-1	
유홍현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36	
최영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16	
전석교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0-27	
임춘남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0-28	

민원 인명부

이름	주 소	서명
박재규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41	[illegible]
정윤기	〃 백현2리 131	[illegible]
정창기	〃 〃 139-2	[illegible]
신수일	〃 〃 139-5	[illegible]
김광복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	[illegible]
김광덕	오창읍 백현리	[illegible]
이영자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illegible]
김광자	오창읍 백현리	
김춘경	오창읍 백현리	[illegible]
김기서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37	[illegible]
오치종	〃	[illegible]
김종희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33-3	[illegible]
석진환	〃 〃 137	[illegible]
서분례	〃 〃 133	서분례
박상덕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38-6번지	박상덕
박범용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38-6번지	박범용
박근육	〃 139	박근육
김준배	〃 백현리	[illegible]
조찬식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illegible]
송정임	〃 〃	[illegible]
이정희	〃 〃	[illegible]
이진원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illegible]
신구희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37	[illegible]
원성연	〃 〃 134	[illegible]
박동환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33	[illegible]
박의재	〃 133-1	[illegible]
정동례	〃 133-2	[illegible]
유복희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27	유복희
박종숙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41	[illegible]
정호선	청원군 오창읍 백현2리 133	[illegible]

민원 인명부

이름	주 소	서명
오병오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1구 88-1	
이경례	〃 〃 〃 〃	
이원은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86-2	
원희자	〃 〃	
이분자	〃 〃	
이창녀	〃 〃	
김진호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황옥순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90-3	
김자순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90-3	
김지표	〃 〃 〃 〃	
김병일	〃 〃 〃 〃	
서은석	오창읍 백현리 192-2	
이화실	〃	이화실
서정두	오창읍 백현리 43-2	
김순옥	〃 〃 〃	
서정희	〃 〃 44-4	
박과수	〃 〃 44-1	
한계숙	〃 44-1	
추정수	〃 〃 50번지	
신명식	〃 〃 50번지	
이정순	〃 〃 55번지	
유일상	55번지	
이춘길	〃 〃 69번지	
추정복	〃 1길65	
이상순	〃 〃 52	
이명숙	〃 〃 52	
오순진	오창읍 백현리 1구 85-5	
전병국	오창읍 백현리 1구 85-5	
김수상	옥산면 장남리 1-1	

김광순 옥산면 장남리 1-2

민원 인명부

이름	주 소	서명
신언경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 309	
신언덕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 434	
구둔자	〃	
신상철	〃 〃 337	
이규선	〃 〃 337	
신언국	〃 〃 319-1	
이규분	〃 〃 319-1	
신환권	〃 〃 318-1	
이명희	〃 〃	
이창배	〃 성재2길 418	
김춘수	〃 〃 41-2	
홍기양	〃 〃 398-33	
김경우	〃 〃 43-2	
김덕호	〃 〃 39-59	
이남규	〃 〃 43-14	
이선녀	〃 〃 41-4	
박민호	〃 〃 49	
이용근	〃 〃 41-2	
신화권	〃 〃 39-20	
주영숙	〃 〃 39-57	
이장희	〃 〃 47	
박금화	〃 〃 43-2	
정현국	〃 〃 39-57	
신노권	〃 〃 39-30	
신언규	〃 〃 41-4	
이복례	〃 〃 39-20	
신언관	〃 〃 50	
장이순	〃 〃 55	
신홍수	〃 〃 3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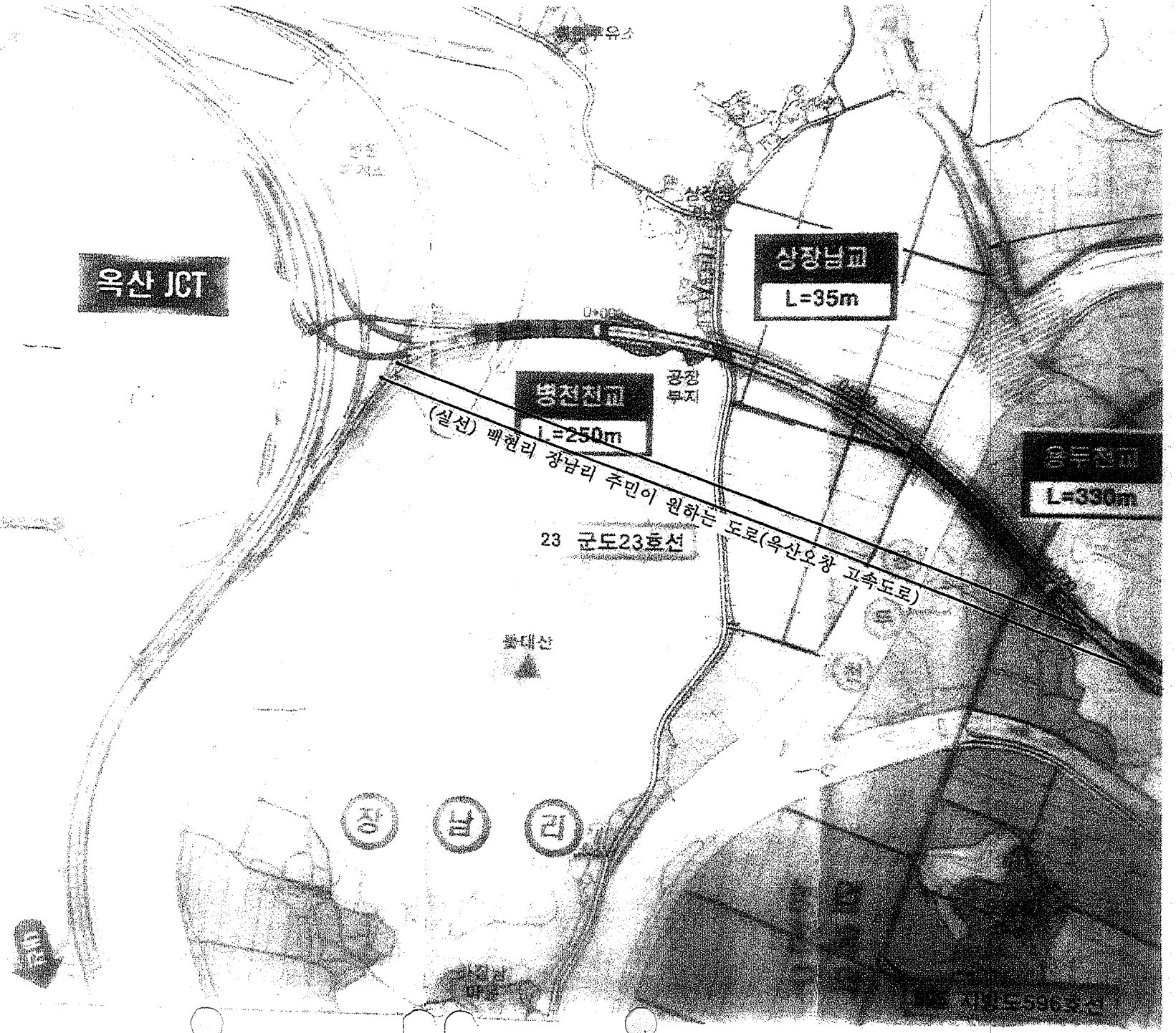
옥산 JCT
상장남교
L=35m
병천천교
L=250m
용두천교
L=330m
공장
부지
(실선) 백현리 장남리 주민이 원하는 도로(옥산오창 고속도로)
23 군도23호선
장 남 리
지방도596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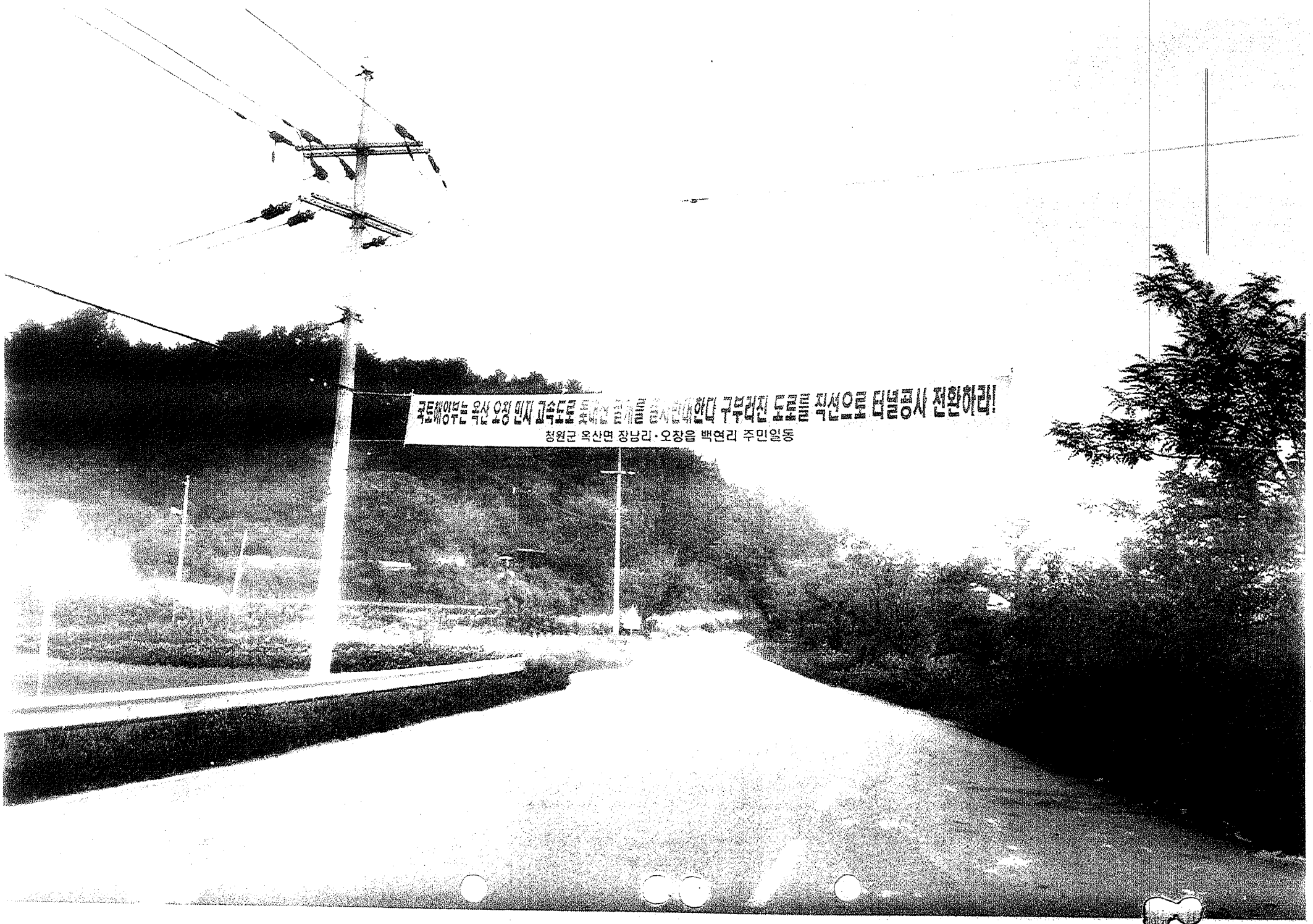
국토해양부는 옥산 오창 민자 고속도로
구부러진 도로를 직선으로 터널공사 전환하라!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오창읍 백현리 주민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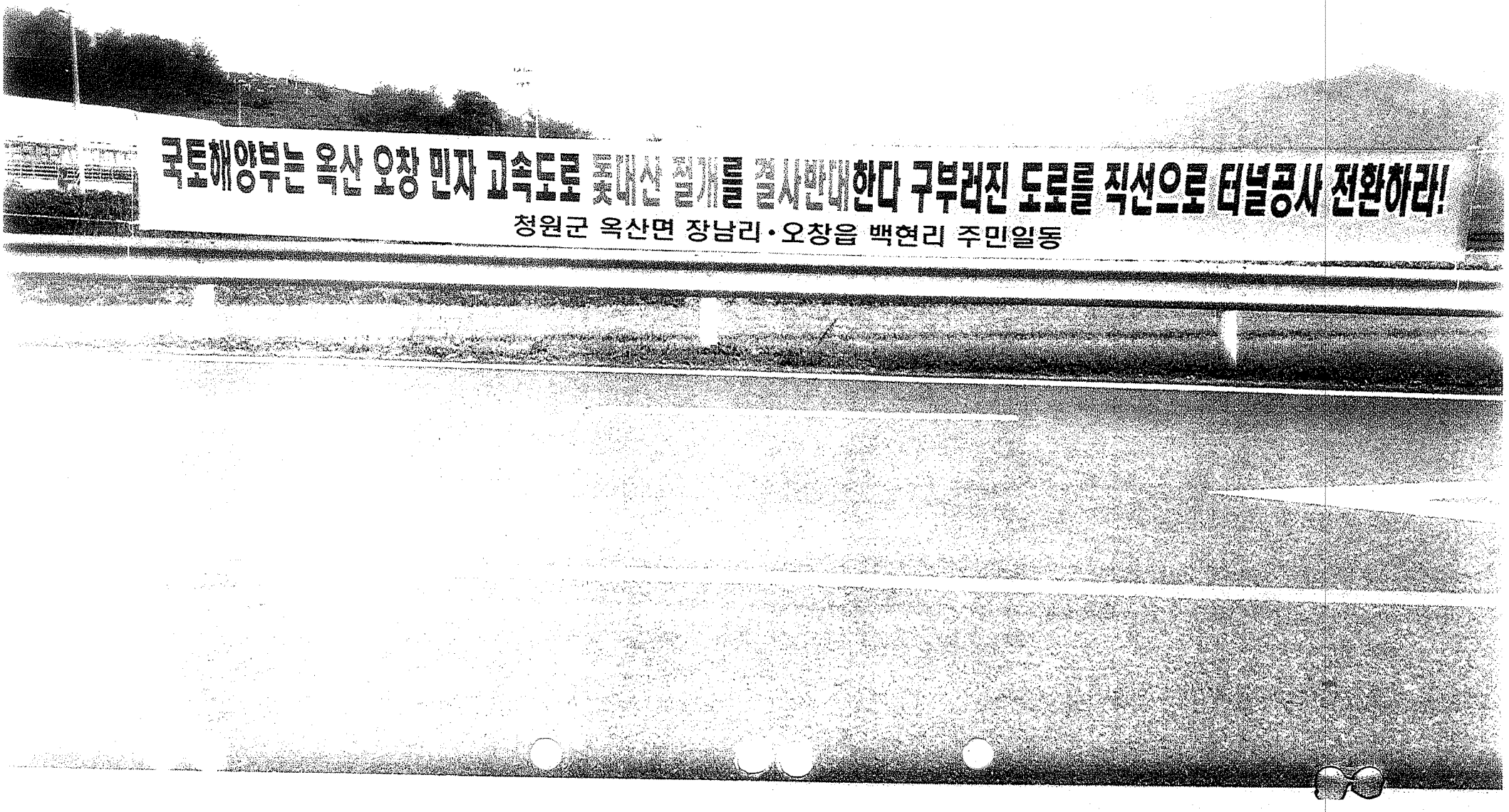
국토해양부는 옥산 오창 민자 고속도로 돛대산 절개를 결사반대한다 구부러진 도로를 직선으로 터널공사 전환하라!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오창읍 백현리 주민일동

대한제국 시위대 보병 제5연대 1대대 1중대 병사들

올림픽 고궁 복원 용역조사 보고서 발간 기념 사진전

창원근린공원 중앙광장 · 남문 · 건물 앞 · 남문 앞 · 남문 앞 · 남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오창읍 백현리 주민위원회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충청북도교육청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오창~옥산 고속도로 노선계획 협의 의견 검토결과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5687(2012.08.29.)호 관련입니다.

3.「오창~옥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실시설계 노선계획(안)과 관련한 귀 기관의 관계기관간 협의의견 검토결과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우리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충청북도교

주무관	김병민	재산담당 사무관	전찬우	재무과장	2012. 9. 6. 유성복

협조자 주무관 남윤미 주무관 김용도

시행 재무과-4873 (2012. 9. 6.) 접수 도로공사과-5938 (2012. 9. 7.)

우 361-70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산남동,충청북도교육청) / http://www.cbe.go.kr

전화번호 043-290-2624 팩스번호 043-290-2744 / doogaegol@cbe.go.kr / 대국민 공개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민원처리 결과 알림(옥산-오창)

1. 광역도시도로과-1973(2012.8.14)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4 유재준님의 터널설계변경 요청 민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민원인에게 직접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향후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사본 1부.
2. 민원회신문 사본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

주무관	박준식	주무관	박웅구	과장	전결 2012. 8. 22. 정상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5507 (2012. 8. 22.)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53 팩스번호 042-670-3485 / mjjs98@mltm.go.kr / 비공개(6)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유재준외 1인 귀하 (우363-912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4)
(경유)
제목 민원 회신(터널설계요청, 옥산-오창)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우리 청으로 이송된 옥산~오창 고속도로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옥산-옥산 고속도로 노선 중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산9-1번지 일원의 절토 비탈면 노선을 터널로 변경설계 요청

□ 회신내용

선생님께서 우리 청 방문시 직접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지역은 『도로법』 제37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국토해양부)」에 따라 터널과 교차로(인터체인지)간 최소간격 확보가 어려운 구간으로 부득히 터널시공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로 하여금 선생님을 방문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로공사과(담당 박준식 ☎042-670-355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지방국토관리

주무관	박준식	주무관	박웅구	과장	전결 2012. 8. 21. 정상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5502 (2012. 8. 21.)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53 팩스번호 042-670-3485 / mjjs98@mltm.go.kr / 비공개(5,6)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수신 옥산오창 고속도로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2-2 정일빌딩 3층)

(경유)

제목 관계기관 협의 의견 알림(한국도로공사,오창~옥산)

귀 사에서 설계중인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협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설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청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관련공문 사본 1 부.
2.의견서 1 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무관	사무관대우	과장	전결 2012. 6. 11.
이관희	송창원	정상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3809 (2012. 6. 12.)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62 팩스번호 042-670-3485 / lkh9@mltm.go.kr / 비공개(5)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 국 도 로 공 사

수신 국토해양부장관(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의견 회신

1. 도로계획과-3404(2012.04.12)의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사업관리중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한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 임 :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의견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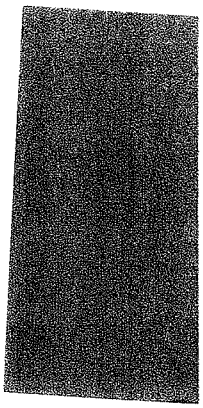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도로조사팀	도로조사팀	팀(부)장	팀장
실장	2012. 5. 18.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1715 (2012. 5. 18.) 접수 도로계획과-4650 (2012. 5. 18.)

우 461-7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 http://www.ex.co.kr/
전화번호 02-2230-4288 팩스번호 02-2230-4303 / jh-prince / 대국민 공개

『민원만족도 조사(발신자 :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응답해 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 의견

□ 기존 고속도로 교통영향 측면

○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을 고려하여 민자사업 시행 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재검토 필요

□ 고속도로 접속 및 실시설계 측면

○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 접속 위치 재검토 필요**

- **분기점 평면곡선반경 기준 및 출입시설~휴게소 간 이격거리 기준에 위배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휴게소 이용객 혼란 · 교통 지정체 등이 우려되므로 현 위치 접속은 곤란**

*분기점 설치기준「도로구조및시설기준, 국토부」

구 분	기 준	설계(안)
분기점 평면곡선반경	700m	600m
출입시설-휴게소 간 이격거리	2㎞	0㎞

○ **금년 실시설계 착수 예정인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6→8차로)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상세 실시설계 사항은 추후 재협의 필요

○ 횡단교량 설계는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형하고를 5.0m 이상 유지하고, **설계 시 우리공사 경관디자인 심의 및 설계심의 이행**

□ 영업시설 측면

○ 국고 및 민자구간 기본요금 중복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금제 재검토 필요

- 민자구간 요금제를 이부요금제에서 거리비례 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

○ **서오창TG(IC)의 경우 경부선 및 중부선 진·출입 차로를 분리하여 영업시설 설치 필요**

- 본선 영업소는 이용차량 경로 확인이 가능하나 IC 영업소는 확인이 불가하여 본선 및 IC 영업소간 통행요금 비등가 발생으로 민원 및 우리공사 요금체계 혼란 등 문제점 예상

○ 서오창TG(본선)는 향후 영업체계 연계방식(경유지 인식) 결정에 따라 추가 검토 필요

☞ 향후 기본요금 중복 등 통행료 관련 민원 발생 시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조치

□ **유지관리 및 기타 측면**

○ **통합유지관리방안은 추후 별도 협의 필요**

○ 민자고속도로 서울방향 이용차량의 기존 청원휴게소 이용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휴게소를 이용가능 하도록 조치**

○ 고속도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고구간과 연계한 교통정보 연계체계 구축 필요** [연계정보:CCTV영상, VDS(실시간 30초), TCS(실시간)]

○ 민자구간 내 교통량 조사장비(AVC) 설치 필요

○ **실시설계 후 접속부 공사 시행은 우리공사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등과 협의 후 시행**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정수 귀하
(경유)
제목 관계기관 협의 의견 알림(충북교육청,오창~옥산)

귀 사에서 설계중인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교육청의 협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설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관련공문 사본 1 부.
2.의견서 1 부. 끝.

대전지방국토관

주무관	이관희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2. 6. 1. 정상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3570 (2012. 6. 1.)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62 팩스번호 042-670-3485 / lkh9@mltm.go.kr /비공개(5,6)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충청북도교육청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노선계획(안) 협의 의견 통보

1. 관련: 도로계획과-3404(2012.04.12)

2. 우리 교육청 소관 재산인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산145-21번지 일원(통합목장)에 위치한 교육연구시설 부지 및 건물이 귀청의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편입되는 부지 협의 요청과 관련하여

3. 「옥산-오창 고속도로」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청주농업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통합목장)은 우리 도내 농업계 학교의 공동실습소로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 및 지장물의 적정한 보상 조건을 부하여 협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의견서 1부. 끝.

충청북도교육청

주무관	고장로	관재담당	전찬우	재무과장	이문재	기획관리국장	2012. 5. 25. 구명회
협조자	주무관 김병민	주무관 김용도	주무관 안용모	장학사 김일환	장학관 박영철		

시행 재무과-12400 (2012. 5. 25.) 접수 도로계획과-4820 (2012. 5. 29.)

우 361-70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 http://www.cbe.go.kr
전화번호 043-290-2625 팩스번호 043-290-2744 / mc537kjr@cbe.go.kr / 비공개(7,8)

의 견 서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

성 명	충청북도교육감	연락처	043-290-2625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의 견 내 용

□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동수	전체면적(㎡)	편입면적(㎡)	비고
토지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산145-21외 3필지	목장	125,440.5	78,001.5	
건물		산145-21	19동	3,747.68	3,747.68	

1.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노선계획(안)에 편입되는 상기 재산은
2. 농업계특성화고 교육과정의 공백 없는 교육활동을 위한 대체 교육시설부지 필요
3.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교육시설 이전부지 선정의 어려움
4. 현대적인 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목초지 330,000㎡,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물 1일 30톤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부지 선정의 어려움
5. 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 정보 제공 희망
6. 귀청의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으로 노선 확정시 잔여지로는 부지가 협소하여 교육시설부지(공동 목장 운영 및 농업교육)로 활용할 수 없으며, 특히 공사 및 차량 소음으로 인한 각종 동물들의 성장 및 발육 저하 등으로 농업계 교육연구 시설부지(공동 목장)로 기능을 상실하여 교육연구시설 부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7.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연구시설(공동 목장 운영) 부지 중도로 편입 학교용지와 건물, 공작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건을 부함.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 국 도 로 공 사

수신 국토해양부장관(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의견 회신

1. 도로계획과-3404(2012.04.12)의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사업관리중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한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 임 :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의견 1부. 끝.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도로조사팀	도로조사팀	팀(부)장	팀장
실장	2012. 5. 18.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1715 (2012. 5. 18.) 접수 도로계획과-4650 (2012. 5. 18.)

우 461-7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 http://www.ex.co.kr/
전화번호 02-2230-4288 팩스번호 02-2230-4303 / jh-prince / 대국민 공개

『민원만족도 조사(발신자 :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응답해 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 의견

□ 기존 고속도로 교통영향 측면

○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을 고려하여 민자사업 시행 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재검토 필요

□ 고속도로 접속 및 실시설계 측면

○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 접속 위치 재검토 필요**

- **분기점 평면곡선반경 기준 및 출입시설~휴게소 간 이격거리 기준에 위배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휴게소 이용객 혼란 · 교통 지정체 등이 우려되므로 현 위치 접속은 곤란**

*분기점 설치기준「도로구조및시설기준, 국토부」

구 분	기 준	설계(안)
분기점 평면곡선반경	700m	600m
출입시설-휴게소 간 이격거리	2㎞	0㎞

○ **금년 실시설계 착수 예정인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6→8차로)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상세 실시설계 사항은 추후 재협의 필요

○ 횡단교량 설계는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형하고를 5.0m 이상 유지하고, **설계 시 우리공사 경관디자인 심의 및 설계심의 이행**

□ 영업시설 측면

○ 국고 및 민자구간 기본요금 중복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금제 재검토 필요

- 민자구간 요금제를 이부요금제에서 거리비례 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

○ 서오창TG(IC)의 경우 경부선 및 중부선 진·출입 차로를 분리하여 영업시설 설치 필요

- 본선 영업소는 이용차량 경로 확인이 가능하나 IC 영업소는 확인이 불가하여 본선 및 IC 영업소간 통행요금 비등가 발생으로 민원 및 우리공사 요금체계 혼란 등 문제점 예상

○ 서오창TG(본선)는 향후 영업체계 연계방식(경유지 인식) 결정에 따라 추가 검토 필요

☞ 향후 기본요금 중복 등 통행료 관련 민원 발생 시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조치

□ 유지관리 및 기타 측면

○ 통합유지관리방안은 추후 별도 협의 필요

○ 민자고속도로 서울방향 이용차량의 기존 청원휴게소 이용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휴게소를 이용가능 하도록 조치

○ 고속도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고구간과 연계한 교통정보 연계체계 구축 필요 [연계정보:CCTV영상, VDS(실시간 30초), TCS(실시간)]

○ 민자구간 내 교통량 조사장비(AVC) 설치 필요

○ 실시설계 후 접속부 공사 시행은 우리공사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등과 협의 후 시행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의견 제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3404(2012.4.12)호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관리 중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따른 우리학교 목장부지 편입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목장부지 편입에 대한 의견 : 동의함
2. 세부의견
   가. 농업계특성화고 교육과정의 공백 없는 교육활동을 위한 목장부지 대체 확보 필요.
   나. 적정가격에 의한 보상가의 현실화
   다. 목장 이전부지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부지 선정의 어려움
   라. 현대적인 목장 조성을 위한 목초지 330,000㎡,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물 1일 30톤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부지 선정의 어려움
   마. 위 조건 충족할 수 있는 대체부지 정보 제공 희망

붙임 : 1. 청주농고 통합목장 부지 편입 검토의견 1부.
2. 청주농고 통합목장 재산현황(토지,건물,공작물) 1부 끝.

청주농업고등학교장

수신자 충청북도교육감(재무과장).충청북도교육감(산업정보

주무관	한혜선	행정부장	길현분	행정실장	유재선	교장	05/17 박종태

협조자 교사 김덕재 교사 이금주

시행 청주농업고등학교-6941 (2012.5.17.) 접수 ( )

우 360-80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로 45 (내덕동.청주농업고등학교) / http://www.cheongju-agh.hs.kr
전화 043-256-4901 /전송 043-255-0548 / seon3717@cbe.go.kr / 공개

24 AUG '12 09:31 0432550548 P.1

청주농고 통합목장 부지 편입 의견

1. 목 장 현 황

가. 재산현황

구분	지번	필지수	면적(㎡)	금액(원)	비고
토 지	성산리 산145-21 외6 15필지	16필지	210,423.0	1,892,892,070	공시지가적용
건물 및 공작물	〃	24개소	3,748.0	2,006,867,350	대장가격
편입예정	성산리 산145-21		115,560.8	915,241,536	
토 지	성산리 산145-27		4,368.5	24,638,340	공시지가적용
(57%)	소 계		119,929.3	939,879,876	

- 현대적인 목장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넓은 부지 확보 필요 및 공작물중 축산정화조 (210,879,770원)은 매립되어 있음

나. 교육 및 사육현황

(1) 교육현황

교육대상기관		기수	대상인원	비고
특성화고등학교	기타			
5	11	31	987	

- 2012년의 경우 도내 5개 농업계특성화고 학생 592명 기타 395명이 1주일 단위로 31회에 걸쳐 987명의 공동실습소인 목장에서 수업을 받고 있음

(2) 사육현황

젖소	한우	돼지	닭	비고
50	10	317	172	

- 현재 목장에 있는 젖소에서 우유, 한우는 비육우, 돼지는 비육돈, 닭은 유정란을 생산하며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음

2. 부지 수용에 대한 학교의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여야 하나, 공동실습소의 공백 없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대체 목장을 마련한 후 수용에 응할 수밖에 없기에, 학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실습소 목장 이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별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재투자를 위한 보상가의 현실화

나. 목장 이전부지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목장이전대상 부지 선정의 어려움

다. 학교에서 1시간 이내의 인근지역에 현대적인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초지 330,000㎡정도 및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물 1일 30톤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부지 물색이 어려움

라. 위와 같은 조건 충족할 수 있는 대체부지 정보 제공 희망

청 원 군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검토의견 제출

1. 도로계획과-3404(2012.04.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관리청에서 사업관리중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실과별 검토의견 1부. 끝.

청 원 군수

★도로담당 박인규 건설과장 전결 2012. 5. 8. 유재청

협조자

시행 건설과-12359 (2012. 5. 8.) 접수 도로계획과-4304 (2012. 5. 9.)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 167번길 72(율량동 724번지) / http://www.puru.net
전화번호 043)251-4421 팩스번호 043)251-4420 / test@puru.net / 대국민 공개

부서별 협의사항

부서	협 의 내 용	비 고
건설과	- 사업구간과 교차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별도 협의할 것 - 실시설계시 기존도로 편입부 부체도로 설치 및 노면수 처리시 농경지로의 배수처리를 지양할 것 -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전환(또는 무상귀속)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협의할 것 - 고속도로 노면수 처리시 인근 농경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도시과	-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량 등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도시계획시설을 훼손 시 원상복구할 것 - 버스승강장 및 가로(보안)등 관련 시설물 저촉시 별도 협의할 것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계획(안) 협의사항은 검토결과 동춘산업에서 제안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추진부지와 저촉됨으로 해당 민원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며, 테크노빌골프장과 저촉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교통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노선을 결정함이 타당함 - 향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자할 경우 미리 군관리계획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충북도 및 청원군 도시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농정과	- 농지법 제34조및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의거 농지전용협의(허가)를 득할후 사업을 시행할 것	

부서		협 의 내 용	비 고
문화체육과		- 사업신청지 주변에 지정문화재가 없어 문화재 보호법상 저촉사항 없음 -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 건설공사는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전에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보존대책을 통보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중 미 확인된 매장문화재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재난안전과	재난담당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축및개축에 한함)시 그 연장이 2km이상일 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 대상임	
	하천담당	- 하천 및 소하천에 구조물등을 설치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유수 단면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 기정비된 하천 및 소하천구간은 기존 시설물이 손상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 구조물 설치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터널식 및 고가차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상협의시 기득하천점용허가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하천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충청북도와 별도 협의할 것 - 실시설계시 재 협의할 것	

부서	협 의 내 용	비 고
산림과	-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보전산지 면적이 3ha이상이 사업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 허가 사항임 .임야가 포함될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항임 .가급적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임야에 대하여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득할 것 .사업구역내에 있는 이식가능한 유용 수목에 대하여는 전량 이식 조치하여야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업부지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편입시 관련 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함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점용사유가 불가피하여야 함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구조는 지상의 경우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의 경우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함 - 녹지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함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녹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함	

부서	협 의 내 용	비 고
환경과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할 때 사전환경서검토 협의를 이행하여야 함 - 도로구역의 결정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여야 함(관리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경우 공사시행허가전)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임 - 공사시 장비(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를 5일이상 사용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 - 입목폐기물 5톤이상 발생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임 - 건설폐기물 5톤이상 발생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수도 급수구역인 경우 인입사용하고 비급수구역인 경우 지하수 개발 이용시 신고해야함. - 공사구간중 사용종료된 지하수가 있는 경우 폐공 및 종료 신고하여야 함 - 개발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상 미호B 단위유역에 해당되며 2015년까지 준공 예정인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 제2단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2016년 이후 준공 예정인 경우 3단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 - 우리 군은 자연오염원증가(인구증가, 토지대지화 등)에 의한 배출부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오염물질배출 부하량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이 어려워짐으로 부하량이 최소화도도록 자연형 및 장치형 비점 저감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계획 수립하여 재 협의하여야 하며, - 개발사업으로 할당해야하는 부하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청원군 일대의 기존 비점오염원발생원도 병행하여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 주기 바람	

부서	협 의 내 용	비 고
경제투자과	- 저촉사항 없음	
하수도사업소	- 오창 JCT 부근 노선계획도가 실제현황과 불일치함에 따라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산수교~오창JCT 구간은 하수관로 매설지역으로 실시설계시 간섭되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사업소와 사전 협의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상수도사업소	- 기 매설한관로 및 향후 급수를 위한 송배수관로에 대하여 별도 협의 할 것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자 옥산옥창고속도로(주)
(경유)
제목 노선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의견 알림(옥산~오창 고속도로)

1. 도로계획과-3404호(2012.04.12.)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노선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계획)를 붙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속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계기관 협의의견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무관	사무관대우	과장	전결 05/03
가필순	김회룡		강호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147 (2012. 05. 03.)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ltm.go.kr/
전화 042-670-3515 전송 042-670-3484 / pilgood7@mltm.go.kr / 비공개(5)

한 국 전 력 공 사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 회신

1. 평소 전력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404(12.4.12)호 관련입니다.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 요청하신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으로 사업노선(오창읍) 건설에 따른 시설물(전주) 저촉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당사 배전선로(전주) 이설이 수반되므로 공구별 이설이 필요한 시기로부터 3개월 전에 이설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배전선로(전주) 이설공사비는 고속도로 건설 시행주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충북지역본부장

팀원	파트장	팀장	전결 2012. 5. 3.
김석재	이호삼	이병호	

협조자

시행 충북본(전)84106-781 (2012. 5. 3.) 접수 도로계획과-4126 (2012. 5. 3.)

우 360-8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25 / http://www.kepco.co.kr
전화번호 043-251-2217 팩스번호 043-251-2281 / ksjae9@kepco.co.kr / 대국민 공개

군인복무규율 준수 생활화

제37보병사단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업무 담당자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3404('12.4.1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

3. 위 관련근거에 의거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군사기지 및 군시설은 없으나 고속도로 신설 후 방호대책으로 목진지 구축이 요망되므로, 공사계획 변경 및 확정시 재협의가 필요함. 끝.

제37보병사단장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전결 2012. 5. 1.
한현덕	박재우	신영인	김양태	

협조자

시행 작전참모처-917 (2012. 5. 1.) 접수 도로계획과-4057 (2012. 5. 1.)

우 368-906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사서함 82-1 / www.37div.army.mil
전화번호 043-835-6305 팩스번호 043-835-6091 / Eisenhower@army.mil / 비공개(2)

풍수해 사전대비로 "재난없는 충북건설" 실현

충 청 북 도

수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의견 제출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3404(2012.04.12.)호와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한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협의의견 1부. 끝.

충 청 북 도 지사

주무관	최민규	도시계획팀장	우상명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전결 04/27)
협조자 주무관	최승환	주무관	김종식		

시행 균형개발과-5144 (2012. 04. 27.) 접수 도로계획과-3962 (2012. 04. 27.)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균형정책과 / http://www.cb21.net
전화 220-4132 전송 043-220-4119 / cmkmin@korea.kr / 대국민 공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의견

구 분	협 의 의 견	비고
균형개발과	○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일부 구간이 오창읍 소재지 도시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청원군수와 협의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도시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 노선계획(안)이 입안절차가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청원군수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 받으려면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 이 경우 도로, 완충녹지, 교통광장에 대하여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 처리되오니 그 이외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인 청원군수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람.	
도 로 과	○ 지방도 540호선 서오창IC 진출입로 접속구간은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도로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추후 세부도면으로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지방도 통과하는 용두천교, 상산1교, 산수교 구간은 향후 도로 확포장을 고려하여 상·하행 1차로 이상의 여유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함. ○ 기업 활동이나 영농을 위해 이용하던 기존도로 동선이 본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한계 및 2차로 이상 폭을 확보하여야 함. ○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교통물류과	○ 별도 의견 없음.	

구 분	협 의 의 견	비고
치수방재과	○ 지방하천 성암천(충청북도 제1994-12호'94.01.14), 병천(충청북도 제1993-19호'93.01.29), 용두천(충청북도 제2003-121호'03.09.19) 하천기본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횡단하는 구조물(교량 등)은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 ○ 도로 폭 확장으로 인한 하천편입은 불가하며, 부득이 편입시는 하폭 확장 등 대체시설 강구.(하폭 확장시는 재협의) ○ 소하천(화산천, 성산천)은 관리청인 청원군과 사전 협의.	
기업유치 지 원 과	○ 산업단지 추진계획과 저촉사항 없음.	
농업정책과	○ 사업예정지에 농지 편입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별표1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전용협의 요청하기 바람. ○ 사업시행시 공사에 따른 경작지 분리 및 자투리 농지 발생, 우량농지 잠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인 타당성안 검토. ○ 사업시행시 토사유출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산림녹지과	○ 사업구역내 포함되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산지전용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함.(한국산지보전협회) ○ 개체 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 할 것. ○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교량 설치 등 저감방안 마련 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구 분	협 의 의 견	비고
산림녹지과	○ 산림청 소관 국유림 편입 시에는 보은국유림관리소와 협의. ○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산지전용 협의권자가 50만㎡ 미만(보전산지 3만㎡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 50만㎡~200만㎡(보전산지 3만㎡~100만㎡)인 경우 도지사, 200만㎡ 이상(보전산지 100만㎡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임. ○ 기타 청원군 산림부서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도 설계 및 산지전용 협의 신청시 반영하고, 기타 타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의하여 절차 이행.	
문화예술과	○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주변에 지정문화재는 없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의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으로 공사 전 전문기관의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굴착 등 공사시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관광항공과	○ 의견 없음.	
환경정책과	○ 본 사업은「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 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1] 5. 도로의 건설사업에 해당되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관할 지방환경청장(금강유역환경청장)과 하여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인 영향을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환경부 고시 제2008-180호, 2008. 12.08)" 및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내용에는 대안의 제시 및 대안에 대한 환경적인 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개발이 되도록 하는 사전검토제도임. - 따라서, 옥산~오창 간 고속도로 노선계획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함.	

한 국 전 력 공 사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조 :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 회신

1. 전력사업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문서 도로계획과-3404(2012.4.12)와 관련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지장설비 및 도로계획구간

○ 345kV 청원-신진천 송전선로 54~55호 [도로계획 3+100 지점 통과]

○ 154kV 신진천-오창 송전선로 36~38호 [도로계획 8+700 지점 지장]

나. 도로 구간별 지장내용

○ 3+100 구간 : 철탑이 도로공사 절토지역에 근접하여 철탑이설 또는 고속도로 노선조정 필요

○ 8+700 구간 : 철탑 1기가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철탑이설 필요

다. 기 타

○ 철탑이설은 우리 회사에서 시공하거나 요청자께서 시공하실 수 있으며, 우리
회사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예산배정 등 업무처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이설 전년도 9월까지는 이설요청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충북지역본부장

팀원	파트장	팀장	전결 2012. 4. 27.
임명규	이문희	김도화	

협조자

시행 충북본(운)76208-760 (2012. 4. 27.) 접수 도로계획과-3960 (2012. 4. 27.)
우 360-8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25 / http://www.kepco.co.kr
전화번호 043-251-2542 팩스번호 043-251-2529 / lmging@kepco.co.kr / 대국민 공개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협의 회신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3404(2012.04.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귀 청에서 협의 요청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요역을 시행함에 있어 농지구간 통과노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의견을 회신하오니 실시설계시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요청사항

(1) 위치 : 축북 청원군 옥산면 및 오창읍 일원

(2) 목적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설계

(3)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 노선안 : 계획안 12.1km

나. 협의의견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설계노선에 대하여는 계획안으로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지를 성토로 통과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농로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용수간·지선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등을 감안하여 전체 도로노선의 높이를 계획하고 농지편입면적 및 자투리 농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야 함. 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전결 2012. 4. 27.

행정사무관 안재록 농지과장 최병국

협조자 주무관 남기헌

시행 농지과-2075 (2012. 4. 27.) 접수 도로계획과-3983 (2012. 4. 27.)

우 427-71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농지과 / http://www.mifaff.go.kr

전화번호 02-500-1629 팩스번호 02-507-2649 / anjr@mifaff.go.kr / 부분공개(5)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kt

수 신 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시행일자: 2012.04.27
보 기: 도로계획과장
제 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 회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계획과-3404(2012.04.12) 관련입니다.
3. 위관련 옥산~오창고속도로 노선구간에 KT 광,동케이블이 시설되어 있어 공사 착공후 공동 현장실사가 필요하며, 부득이 KT선로시설 지장이전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이설 및 철거공사비 부담됨을 알려드리오며, 위 노선은 2개의 전화국을 경유하는 곳이라 KT서청주지사 가경전화국, KT청주지사 상당전화국 시설부서와 협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지원해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4. 협의부서
-KT서청주지사 가경특별기동팀
-KT청주지사 상당특별기동팀 끝.

주식회사케이티서청주지사

문서번호: 충북마2012-1252
충북마케팅단 서청주지사 가경특별기동팀
(우)361-8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71
담당자: 서항석(shs9466@kt.com)
/☎ 043)231-0060 /FAX 043)235-0060

한 국 전 력 공 사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조 :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 회신

1. 전력사업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문서 도로계획과-3404(2012.4.12)와 관련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지장설비 및 도로계획구간

○ 345kV 청원-신진천 송전선로 54~55호 [도로계획 3+100 지점 통과]

○ 154kV 신진천-오창 송전선로 36~38호 [도로계획 8+700 지점 지장]

나. 도로 구간별 지장내용

○ 3+100 구간 : 철탑이 도로공사 절토지역에 근접하여 철탑이설 또는 고속도로 노선조정 필요

○ 8+700 구간 : 철탑 1기가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철탑이설 필요

다. 기 타

○ 철탑이설은 우리 회사에서 시공하거나 요청자께서 시공하실 수 있으며, 우리 회사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예산배정 등 업무처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이설 전년도 9월까지는 이설요청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충북지역본부장

팀원	파트장	팀장	전결 2012. 4. 27.
임명규	이문희	김도화	

협조자

시행 충북본(운)76208-760 (2012. 4. 27.) 접수 도로계획과-3960 (2012. 4. 27.)

우 360-8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25 / http://www.kepco.co.kr

전화번호 043-251-2542 팩스번호 043-251-2529 / lmging@kepco.co.kr / 대국민 공개

품격있고 가치있는 녹색자원 육성

보은국유림관리소

수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 협의에 따른 회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도로계획-3404(2012.04.12.)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귀청에서 사업추진중인「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한 검토 요청 건에 대하여는 상세 도면이 첨부되지 않아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검토의견 제시가 지난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은국유림관리소장

주무관	행정서기보	팀장	보은국유림관리소장
백운형	이은주	이만우	04/27 권장현

협조자

시행 보은국유림관리소-2473 (2012. 04. 27.) 접수 도로계획과-3961 (2012. 04. 27.)

우 376-80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67-7 / http://www.forest.go.kr/
전화 043-540-7051 전송 043-540-7090 / hyeong100@forest.go.kr / 대국민 공개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진화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문 화 재 청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안) 협의회신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3404(2012.04.12.)호 관련입니다.

2. 귀 청의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행 시 검토노선안에 대해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현 시점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곤란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당 지역 문화유적분포지도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 문화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개발과 문화재보존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선안을 검토하도록 함.

나. 사업지역(확정 노선안)에 대해서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청에 동시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ㅇ 문화재지표조사는 당해 사업지역과 동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표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도 조사면적에 포함.

다.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74조(준용규정)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우선 이행하여야 함.

라.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 행정기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당해 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 보호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끝.

문 화 재 청

행정사무관 김동대 발굴제도과장 전결 2012. 4. 26. 윤순호

협조자

시행 발굴제도과-4586 (2012. 4. 26.) 접수 도로계획과-3888 (2012. 4. 26.)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2동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 www.cha.go.kr

전화번호 042-481-4957 팩스번호 042-481-4959 / kddae100@ocp.go.kr / 대국민 공개

실천하는 청렴강령 사랑받는 문화재청

your Personal Value Provider

LG U+

충북 청주시 복대동 648-4 LG유플러스빌딩 4층 0437113780/ FAX 010-8080-6780/ kukjin1@lguplus.co.kr/ 담당:박국진

문서번호 : 청주NW팀-1204-0289 시행일자 : 2012-04-26

수 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도로계획과장

제 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의견통보

1. 평소 우리회사의 정보통신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 드리며,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계획과-3404('12.4.12)"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협의"

3. 상기 관련으로 당사 검토의견 및 사업구간내에 운용중인 당사 통신시설 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

가.시설내역 : 사업 구간내 광케이블 11개소 저촉

나.요청사항: 향후 지장물 조사시 공동실사 요청할것

다.통신설비 이설비용

- 현장 실사 및 설계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

라.이설비용 원인자부담 관련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설비의 이전등)
- 정보화촉진기본법 32조 "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등"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대표이사

한 국 가 스 공 사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설계에 따른 시설물 저촉 회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계획과-3404(2012.04.1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 와 관련하여,

3.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배관 저촉사항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해당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해당 사업구간 : 옥산JCT~서오창IC~오창JCT(12.1㎞)

다. 검토 결과 : 해당 사업구간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관리하는 천연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음. 끝.

충청지역본부장

2012. 4. 25.

과장	차장	팀장
고일주	김용필	모정남

협조자

시행 충청지역본부-2593 (2012. 4. 25.) 접수 도로계획과-3912 (2012. 4. 26.)

우 301-840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88 / http://www.kogas.or.kr
전화번호 (042)229-3562 팩스번호 (042)229-3479 / / 대국민 공개

지식경제부 광업등록사무소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협의에 대한 회신

1. 도로계획과 - 3404(2012.04.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협의 요청하신『옥산 ~ 오창간고속도로 노선계획』지역(해당광업지적:신지적:병천26,27,36,46,47,57,58,67,68,78,88,97,98호/구지적:병천26,27,36,46,47,57,58,67,68,78,88,97,98호)에는 위 도로사업 시행자인 (주)삼보기술단에서 방문하여 광업권 설정여부를 확인한바,2012.04.23.현재 광업권 설정등록 및 출원신청이 없음을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구광업 지적의 구분은 붙임의 도표를 참고바람.

붙 임 : 신.구광업지적간 단위구역분포도(예시,인천지적제75호). 끝.

광업등록사 [직인]

2012. 4. 24.

주무관 황명주 ★등록팀장 김형명

협조자

시행 등록팀-1168 (2012. 4. 24.) 접수 도로계획과-3822 (2012. 4. 24.)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 http://www.mke.go.kr
전화번호 02-2110-4930 팩스번호 02-503-8735 / hwang@mke.go.kr / 대국민 공개

- 신·구광업지적간 단위구역 분포도(인천지적 제75호)

동경측지계(구광업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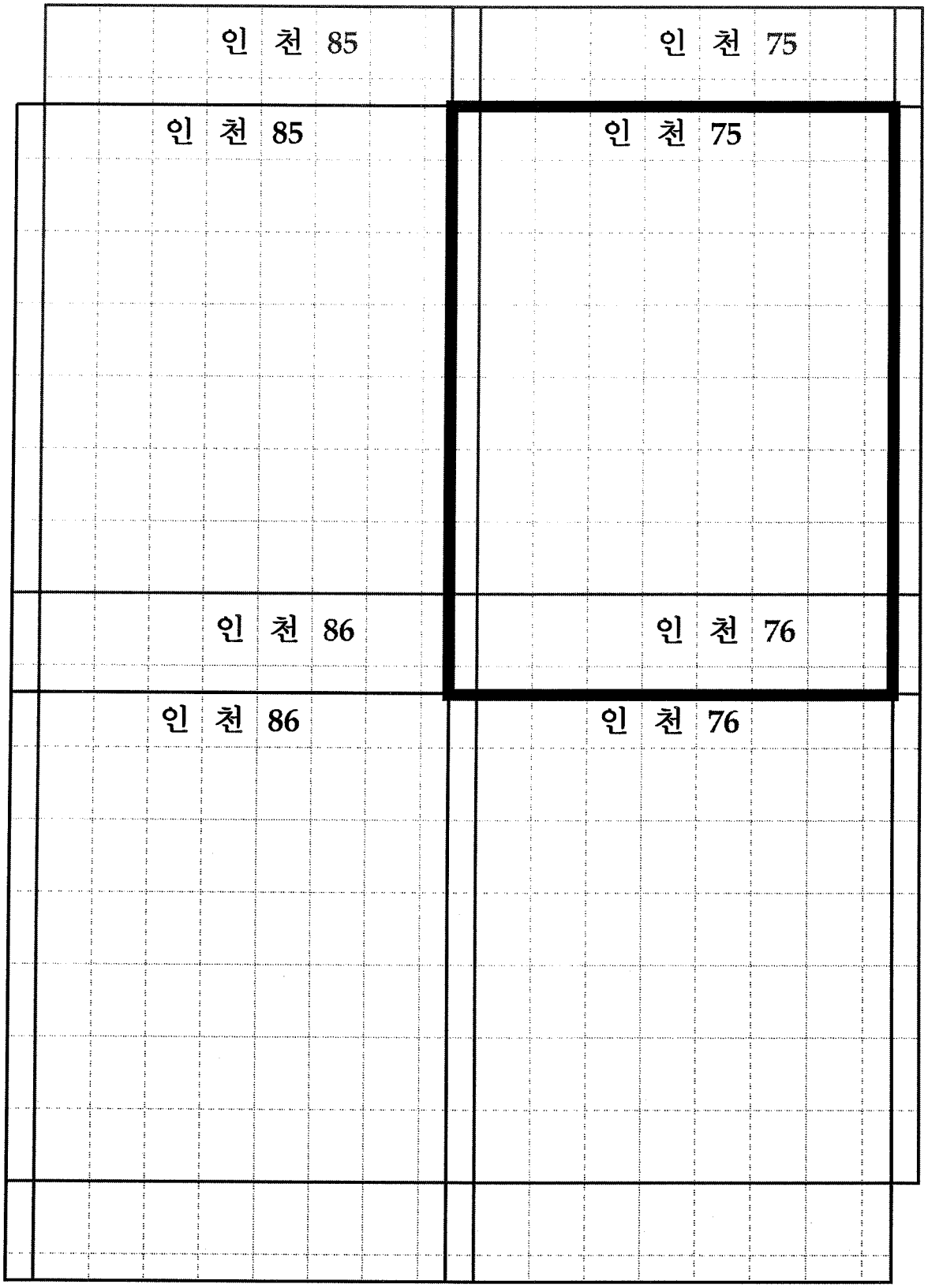

세계측지계(신광업지적)

- o 신광업지적 인천75호는 구광업지적 인천75호의 좌측하부에 위치하며, 4개(인천75, 76, 85, 86호)의 구광업지적과 중복
- o 지적별 출원상황표에는 해당 신광업지적, 중복된 4개의 구광업지적의 출원사항 기재

"고객에게 감동을, 농어촌에 희망을"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계획 협의회신

1. 관련 : 도로계획과-3404(2012. 4. 12)호.

2.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한 우리지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관리구역 통과구간 : 오창JTC중부고속도로 하부 램프구간

나. 협의의견

- 용·배수로 농로의 단절이 없도록 연결 하여야 합니다.
- 편입되는 용·배수로의 대체시설은 도로 측구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 하여야 합니다.
- 도로의 우수가 용·배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시공전 세부계획으로 협의 하여야 합니다. 끝.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장

★과장	차장	지역개발팀장	청원지사장	2012. 4. 24.
김계범		김일환	김회식	

협조자

시행 청원지역-1417 (2012. 4. 24.) 접수 도로계획과-3823 (2012. 4. 24.)

우 360-8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

전화번호 043-290-0531 팩스번호 043-294-4193 / kkb008@ekr.or.kr / 대국민 공개

"고객에게 감동을, 농어촌에 희망을"

대 한 송 유 관 공 사

우 330240 충남 천안시 부대동 80번지 / 전화 565-0201 / 전송 041-565-5077 담당 정관희

문서번호 충청지사-2012-756

시행일자 2012-04-24

수 신 대전지방국도관리청장

참 조 도로계획과장

제 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대한 의견회신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도로계획과-3404(2012.04.12)"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 노선계획(안)구간에 위험시설인 고압송유관(16,18",복선)이 매설되어 있는바, 송유관 안전을 위하여 당사와 협의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장

ID : 9875860 부서 : 안전관리부 출력일 : 2012/04/25 09:19:39
2012-APR-25 09:08 From:
To:123
P.1/1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경유)
제목 민원사항 알림(옥산~오창, 이종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20-5번지 201호 이철한님으로부터 노선변경 요구 민원이 붙임과 같이 제출되어 알려드리오니, 민원인이 제시한 노선대 및 주변여건 등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와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서류 사본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무관	유소영	사무관대우	김회룡	과장	전결 2012. 4. 24 강호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816 (2012. 4. 24.) 접수

우 300-723 대전 동구 용전동 계족로 447 / http://domo.mltm.go.kr/
전화번호 042-670-3524 팩스번호 042-670-3484 / syyooii@mltm.go.kr / 비공개(5.6)

국토해양부 장관께

2012년 04월 12일

수신 국토해양부 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 청사 4동 국토해양부
427-712

제목 옥산-오창 민자 도로

발신 이종호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8-7
우편번호 363-881

연락처: 이철한 (발신자의 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20-5 201호
우편번호 560-900
휴대전화: 010-657-3693

국정을 돌보기에 바쁘신 중에도 회신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2년 03월 29일 민원 회신 (동봉)에서 본인이 요청했던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 중 오창 과학단지에서 오창 읍까지의 구간의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후보 노선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 것을 거부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여건 상 노선을 변경하기 곤란한 실정이다"라고 같은 답변을 전에는 GS 건설, 이번엔 대전청을 통해 답변을 (동봉) 주셨습니다.

이에 본인은 세 번째로 다시 요구합니다. 그 현지 여건이 무엇인지, 과연 노선을 변경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인지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 중 오창 과학단지에서 오창 읍까지의 구간 노선을 변경할 수 없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직접 자세히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동봉: 민원회신 도시도로과-3048 (2012. 04. 04)

추신: 발신자 이종호의 자 이철한이 본 서류를 관리하오니 회신은 이철한의 주소로 발송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우편물은 2012-04-13
제 3500105001446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전주우체국장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 국 도 로 공 사

수신 국토해양부장관(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관련 중간회신

1. 귀 청 도로계획과-3404호(2012. 4. 12)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와 관련하여 별도 송부키로 한 노선계획(안)이 4. 20 우리공사에 제출된 점과 옥산Jct가 당초 협의한 위치와 다르게 선형이 불량한 경부고속도로 청원휴게소에 접속됨에 따라 교통안전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귀 청에서 요청한 4. 27한 회신이 어려움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 국 도 로 공 사 사장

2012. 4. 23.

도로조사팀 전준태 팀(부)장 이창봉 팀장 설운호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1434 (2012. 4. 23.) 접수 도로계획과-3775 (2012. 4. 23.)

우 461-7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 http://www.ex.co.kr/
전화번호 02-2230-4286 팩스번호 02-2230-4303 / jtjun / 대국민 공개

『민원만족도 조사(발신자 :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응답해 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 안내

1. 관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3404(2012.4.12)호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관리 중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이첩하오니 검토의견을 기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노선계획(안)협의 공문 사본 1부.
2. 기관별 협의내용 1부.(별도송부)
3.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1부.(별도송부) 끝.

청주농업고등학교장

수신자 충청북도교육감(재무과장),충청북도교육감(산업정보

주무관	한혜선	행정실장	유재선	교장	04/20 박종태

협조자 교감 임동국

시행 청주농업고등학교-5361 (2012.4.20.) 접수 ( )

우 360-80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로 45 (내덕동,청주농업고등학교) / http://www.cheongju-agh.hs.kr
전화 043-256-4901 /전송 043-255-0548 / seon3717@cbe.go.kr / 공개

충북경제를 이끌고 받쳐주는 도민의 공기업

충 북 개 발 공 사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사~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 회신

1. 도로계획과-3404(2012.04.12)호와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하여 도로 건설에 따른 <u>의견 없음</u>을 회신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차장	엄재국	개발사업부장 전결 2012. 4. 20.	임노열
협조자 차장	안광민	차장	최용락

시행 개발사업부-304 (2012. 4. 20.) 접수 도로계획과-3714 (2012. 4. 20.)

우 360-56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 공항로 329번길 19 / http://www.cbdc.co.kr
전화번호 043) 210-9174 팩스번호 043) 210-9159 / libra22@hanmail.net / 대국민 공개

정시율 세계 1위는 계속됩니다. 안전성 세계 3위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 2011년 국제철도연맹 조사결과 -

KORAIL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청렴세상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 협의 회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도로계획과-3404(2012.04.12)호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청에서 추진중인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민가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 도로건설에 따른 철도시설물과의 저촉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전결 2012. 4. 18.

파트장 [illegible] 시설처장 이오현

협조자

시행 시설처-3504 (2012. 4. 18.) 접수 도로계획과-3675 (2012. 4. 19.)

우 300-739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번지 / http://www.korail.com
전화번호 (042)259-2350 팩스번호 (042)259-2357 / kyd6212@korail.com / 대국민 공개

국토해양부

국 토 해 양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민원이송 알림(옥산-오창)

민원인(이종호님)이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노선변경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한 서면민원(접수번호 DAA-1204-004524, '12.4 17)에 대해 동 사업의 사업관리기관인 귀 청에 이송하오니, 민원인의 요구대로 노선변경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 바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그 자세한 검토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시고 민원인에게 회신한 결과를 우리부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원서류 1식. 끝.

국토해양부장관

사무관대우	기술서기관	과장	전결 2012. 4. 13
김대현	전근배		어명소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895 (2012. 4. 18.) 접수 도로계획과-3620 (2012. 4. 18.)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광역도시도로과 / http://www.mltm.go.kr
전화번호 02-2110-6449 팩스번호 02-504-9056 /portkdh@mltm.go.kr /비공개(7)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해 양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한 협의회신

1. 도로계획과-3404(2012.04.12)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한 산업단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오창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 계획에 일부 저촉될 것으로 예상되니 충청북도와 별도 협의 필요. 끝.

국토해양부장관

주무관 김남철 행정사무관 김성수 과장 전결 2012. 4. 17. 이동민
협조자 시설사무관 한병용
시행 산업입지정책과-981 (2012. 4. 17.) 접수 도로계획과-3584 (2012. 4. 17.)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 http://www.mltm.go.kr
전화번호 02-2110-8181 팩스번호 02-503-7309 / inc523@korea.kr / 비공개(5)

국토해양부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민원 검토요청(옥산-오창)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노선과 관련하여 민원인(이철한 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서면민원 중 노선변경 제안사항(붙임참조)을 귀 사에 검토 요청하오니,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검토내용을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부에도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원서류 1식. 끝.

국토해양부장관

사무관대우	김대현	기술서기관	전결 02/08 전근배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334 (2012. 02. 08.) 접수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광역도시도로과 / http://www.mltm.go.kr
전화 02-2110-6449 전송 02-504-9056 / portkdh@mltm.go.kr / 부분공개(6)

Harmony of Human, Nature & Tech.

(株) 東 春 産 業 開 發

135-95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2-6 현대빌딩 401-1호 / TEL : 02-543-0182 / FAX : 02-543-0177

문서번호 : 2012-003

2012년 1월 16일

수　　신 : 옥산 오창고속도로㈜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토지보상관련 긴급자금 선 집행 협조요청 알림

1. 귀 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당사는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의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에 첨부와 같이 토지보상비 지급 전 착공시까지 긴급으로 필요한 자금을 귀사가 선 집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첨부.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토지보상 관련 긴급자금 선 집행 협조요청서(2012년 1월16일자) 사본 1부　　끝.

(주) 동 춘 산 업 개 발

대 표 이 사　전 정 자

Harmony of Human, Nature & Tech.

(株) 東 春 産 業 開 發

135-95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2-6 현대빌딩 401-1호 / TEL : 02-543-0182 / FAX : 02-543-0177

문서번호 : 2012-002

2012년 1월 16일

수　　신 : 국토해양부

참　　조 : 도로정책관실 광역도시도로과장

제　　목 :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토지보상관련 긴급자금 선 집행 협조 요청서

1.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애 쓰시는 귀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당사 2012년 1월 11일자 문서번호 2012-001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토지대금 조기지급 협조 요청서"와 관련됩니다.
3. 당사가 2002년부터 추진해 오던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성산리 250번지 일대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2009년 2월경부터 사실상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 당사의 주주들 및 관련 지주들 등 관련투자자들은 총 약 금 11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이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 금융비용의 부감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4. 이러한 당사 및 관련 투자자들이 더 이상은 감당키 어려운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결 할 수 있도록 귀부가 토지보상비로 지급전 착공시까지 긴급으로 필요한 약 금 10억원 만이라도 사업시행자가 귀부를 대위하여 긴급히 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선 집행 요청 금액 내역서 1부　끝.

(주) 동 춘 산 업 개 발

대 표 이 사　전 정 자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민원이송 알림(옥산-오창)

1. 귀 사에서 추진중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동춘산업개발(대표이사 전정자)로부터 붙임과 같은 민원이 우리부에 접수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간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민원해소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서류에는 민원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민원인 개인정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원서류 1식(별도송부). 끝.

'12.2.1

국토해양부

決裁	管理者		任員	合議	本部長

사무관대우 김대현 기술서기관 전근배 과장 김태병 전결 01/13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127 (2012. 01. 13.) 접수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광역도시도로과 / http://www.mltm.go.kr
전화 02-2110-6449 전송 02-504-9056 / portkdh@mltm.go.kr / 비공개(5,6)

(株) 東 春 産 業 開 發

DONG CHOON E&C

135-95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2-6 현대빌딩 401호 / TEL : 02-543-0253 / FAX : 02-543-0177

문서번호 : 2012-001 2012년 1월 11일

수 신 : 국토해양부

참 조 : 도로정책관실 광역도시도로과 (주무관)

제 목 :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토지대금 조기지급 협조 요청서

1. 국토의 발전을 위한 귀부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당사는 지난 2011 년 12 월 민간사업투자심의회를 통과한 오창 옥산간 민자고속도로(주간사 GS 건설) 예정부지에에 개발사업을 진행했던 업체입니다.(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성산리 250 번지 일대)

3. 지난 2002 년부터 해당 지역에 2 종 지구단위 계획을 진행하여 오던 중 본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되어 해당 사업이 모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조속한 사업 진행과 토지 보상등을 요청하는 공문과 탄원서를 여러 차례 귀부서와 기타 국가 기관 등에 제출하여 왔습니다.(첨부자료 참고)

5. 그러던 중 해당 사업이 민간사업투자심의회를 통과하고 향후 사업 진행이 확정되었기에 해당 사업 중 토지보상비의 당사 관련 구역의 금액을 조기 집행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6. 당사는 현재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약 37 억원의 법인자금과, 대주주(전정자) 자금 75 억원 등 총 112 억원 가량이 기투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날이 발생하는 금융비용등으로 인하여 관련투자자들의 고충이 한계를 넘어선 듯합니다.

7. 당사 및 관련투자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해당 토지보상비 중 일부분을 빠른 시기에 조기집행하여 주시기를 관련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요청 드립니다.

끝.

첨부

1. 기제출 탄원서
2. 투자비용 내역서
3. 당사 진행 지구단위사업 진행내역

(주) 동 춘 산 업 개 발

대 표 이 사 전 정 자

국토해양부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GS건설(주) 대표이사((가칭)옥산오창고속도로(주))
(경유)
제목 민원이송 알림(옥산-오창, 이철한님)

1. 민원인(이철한님)이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노선변경을 요구하며 우리부에 제출한 서면민원(접수번호 DAA-1111-010018, '11.11.30)에 대해 동 노선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귀 사에 이송하오니,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시고, 민원인에게 회신한 결과를 우리부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서류에는 민원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민원인 개인정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원서류 1부. 끝.

국토해양부

사무관대우	김대현	시설사무관	전근배	과장	전결 12/02 김태병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2100 (2011. 12. 02.) 접수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광역도시도로과 / http://www.mltm.go.kr
전화 02-2110-6449 전송 02-504-9056 / portkdh@mltm.go.kr / 부분공개(6)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

청 원 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건설 관련 질의 및 건의

1. 귀 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옥산~오창간 고속도로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노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우리군에서 계획하여 추진코자하는 개발사업 등이 불투명한 계획으로 추진이 어렵거나 보류되는 등 개발사업 계획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 및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 및 건의 사항

○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확정의 시기 및 추진일정 및 노선확정이 지연될 경우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귀 부(사)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고

○ 건의사항 :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하여는 청원군 건설과-14679(2009.6.18)호로 기 건의된 노선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재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노선변경 건의서 사본 1부. 끝.

청 원 군 수

수신자 국토해양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한국도로공사(도로사업처), GS건설

	군수	10/21 이종윤				
★주무관 김경원	도로담당	민찬식	건설과장	김용회	부군수	김진형

협조자

시행 건설과-24556 (2010.10.21.) 접수 ( )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 / http://www.puru.net
전화 043)251-3502 /전송 043)251-3509 / kwk9289@korea.kr / 공개

청 원 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재건의

1. GS건 SOC 09-91(2009.06.03.)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계획 노선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요청)하오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 고속도로 건설시 자치단체로서 행정지원이 어려운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옥산(경부고속도로)~오창(중부고속도로)간 고속도로건설 계획노선(
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창제2산업단지 및 오창읍 소재지를 감싸고 도는 형상으.
읍 소재지 주거지역과 근접하여 주민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뿐만아니라 향후 오창읍 소재지확장에 큰 장애가 예상되어 오창읍 주민들이 대형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만한 사업추진이 절대불가하며,

나.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 간선도로 진입기능을 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오창IC와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계획 노선 내 서오창IC가 4~5km로 근접하여 사업효과가 없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인접하여 불합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진·출입시 경부고속도로 목천IC에서 기 개통되어 이용중인 국도21호(4차로)를 경유하여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공중인 지방도696호 및 충청북도에서 시공중인 지방도510호 확·포장공사가 2010년 12월에 자동차전용 4차로로 동시에 개통될 예정으로 경부고속도로 목천IC에서 오창과학단지까지 소요시간이 약15분대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물류유통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차량은 오창IC에서 2km에 위치하고 있어 소요시간은 2분 이내로 전혀 불편이 없는바 민자고속도로 건설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필요한 고속도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것이 경제논리에 맞느냐는 주민의 부정적여론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 사업명 : 지방도 696호 확·포장공사
- 사업량 : L=4.9km(4차로), 소요사업비 : 378억원, 시행청 : 충청남도

○ 사업명 : 지방도 510호(성산~두릉간) 확·포장공사

- 사업량 : L=6.3㎞(4차로), 소요사업비 : 500억원, 시행청 : 충청북도

다. 계획노선내 오창읍 양지리와 복현리는 수백 년을 이어온 조상의 혼이 담겨있는 선산에 안동김씨 군자공파, 신항공파, 현경공파, 소용공파 등 수백년된 묘소 20여기와 전의이씨 자인공파 등 오래된 문중의 묘소 10여기가 위치하고 있어 문중의 묘지 이설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력 반대의견을 제시, 노선변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라. 또한, 오창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전면으로는 중부고속도로가 앞을 가로막으며 인접하여 지나가고 후면으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가 장대리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될 경우 앞으로 성장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오창읍은 그야말로 앞뒤로 고속도로속에 둘러쌓여 뻗어나갈수가 없는 형편으로 3만9천여명의 오창읍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더 멀리 우회하여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염원하고 있습니다.

마. 2003.07 천안~오창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서조사시 검토한 사항을 살펴보면 대안 1노선 수락JCT~공항IC~문백IC~증평JCT로 총연장 14.4㎞의 연결노선(별첨도면참조)이 건설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며 경제성이 가장 높은 최적의 노선으로 검토하여 종합 결론을 내렸듯이 장래 오창읍 발전을 위하여 멀리 우회하여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바. 2004.07~2006.06 천안~오창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시 노선의 검토사항 및 청원군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대안1,2,3으로 의견을 물은 바 대안2로 2006.03.24일 의견을 제출한 것은 정확한 위치 및 통과지점이 표기되지 않은 노선대(별첨도면참조)로서,

대안1은 너무 북쪽이고, 대안3은 남쪽으로 치우쳐 중간지점인 대안2로 의견을 제출한 것이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아님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사. 국가기간교통망인 동서5축(당진~울진) 도로망과의 연계성은 공감하나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오창과학산업단지 물류유통 및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며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요인이 예상되는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창읍 발전 더 나아가 청원군 발전을 위하여 소재지를 더 멀리 우회하여 변경하여 줄 것을 간곡히 재 건의(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예비타당성조사 검토노선 1부.

2. 타당성조사 검토노선 1부.

3. 현재 도로이용현황 및 노선변경 건의도면 1부. 끝.

청 원 문 서

수신자 국토해양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GS건설

						군수	06/18 김재욱
★지방시설서기	진정현	도로담당	박인규	건설과장	유재형	부군수	윤영현
협조자	지방시설주사보	김상원	도시계획담당	대결연종흠		도시과장	김용희

시행 건설과-14679 (2009.06.18.) 접수 ( )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번지 / http://www.puru.net
전화 043)251-3165 /전송 043)251-3498 / test@puru.net / 공개

행정서비스헌장실천! 15만 군민 행복!

첨단

청 원 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

1. 귀 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계획 노선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 고속도로 건설시 자치단체로서 협조하여할 행정지원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실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옥산(경부고속도로)~오창(중부고속도로)간 고속도로건설 계획노선이 신시가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창제2일반산업단지 및 오창읍 소재지를 감싸고 도는 형상으로 오창읍 소재지 주거지역과 근접하여 주민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뿐아니라 향후 오창읍 소재지확장에 큰 저촉이 예상되어 오창읍 주민들이 대형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원만한 사업추진이 절대 불가한 사항이며,

나.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 간선도로 진입기능을 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오창IC와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계획노선내 서오창IC가 4~5㎞로 근접하여 사업효과가 없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인접하여 불합리하며,

⇒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진·출입시 경부고속도로 목천IC에서 기 개통되어 이용중인 국도21호(4차로)를 경유하여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공중인 지방도 696호 및 충청북도에서 시공중인 지방도 510호 확·포장공사가 2010년 12월에 자동차전용 4차로로 동시에 개통될 예정으로 경부고속도로 목천IC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까지 소요시간이 약 15분대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물류유통에 전혀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차량은 오창IC에서 2㎞에 위치하고 있어 소요시간은 2분 이내로 전혀 불편이 없는 바 민자고속도로 건설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필요한 고속도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것이 경제논리에 맞느냐는 주민의 부정적 여론이 고조된 상태임.

○ 사업명 : 지방도 696호 확·포장공사

- 사업량 : L=4.9㎞(4차로), 소요사업비 : 378억원, 시행청 : 충청남도

○ 사업명 : 지방도 510호(성산~두릉간) 확·포장공사

- 사업량 : L=6.3㎞(4차로), 소요사업비 : 500억원, 시행청 : 충청북도

다. 계획노선내 오창읍 양지리와 복현리는 수백 년을 이어온 조상의 혼이 담겨 있는 선산에 안동김씨 군자공파, 신항공파, 현경공파, 소용공파 등 수백년된 묘소 20여기와 전의이씨 자인공파 등 오래된 문중의 묘소 10여기가 위치하고 있어 문중의 묘지 이설이 절대 불가한 사항으로 노선변경이 절실히 요구됨.

라. 현재 오창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전면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앞을 가로막으며 인접하여 지나가고 후면으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가 장대리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될 경우 앞으로 성장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오창읍은 그야말로 앞뒤로 고속도로속에 둘러싸여 뻗어나갈수가 없는 형편으로 3만9천여명의 오창읍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더 멀리 우회하여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염원하고 있으며,

마. 국가기간교통망인 동서5축(당진~울진) 도로망과의 연계성은 공감 하나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오창과학산업단지 물류유통 및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창읍 발전을 위하여 소재지를 더 멀리 우회하여 산악지역 노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우리 군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전경사진 1부.(별송)

2. 현재 도로이용현황 및 노선변경 건의도면 1부.(별송) 끝.

청 원

수신자 국토해양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GS건설

						군수	05/27 김재욱
★지방시설서기	진정현	도로담당	박인규	건설과장	유재청	부군수	윤영현
협조자	지방시설주사보	김상원	도시계획담당	신문수		도시과장	김용회

시행 건설과-12744 (2009.05.27.) 접수 ( )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곡로 27번지(북문로1가 171-3)/ http://www.puru.net
전화 043)251-3165 /전송 043)251-3498 / test@puru.net / 공개

행정서비스헌장실천! 15만 군민 행복!

대한민국 행복1번지
푸른청원 첨단청원

청 원 군

수신자 GS건설주식회사
(경유) SOC도로사업단
제목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개설사업 계획에 대한 노선변경 건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에서는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의 전략사업으로 우리군 오창읍 주성리일원에 「오창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그런데 귀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하신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노선중 일부가 산업단지 예정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적지않은 장애요소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또한 동 산업단지는 주거기능을 겸한 복합단지로 계획되어 있어 고속도로가 산업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단지 존립자체를 위협받게 되어 결국 지역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니 산업단지를 경유하지 않도록 고속도로 노선계획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붙임 산업단지 예정지 위치도 1 부 끝.

청 원

★⊙지방시설주사보 윤종팔 첨단청원반장 연가 혁신팀장 전결 11/05 박노문

협조자

시행 혁신팀-1631 (2007.11.05.) 접수 ( )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71-3 / http://www.puru.net
전화 043)251-3037 /전송 043)251-3199 / jpyun@puru.net / 공개

2.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서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2012. 5

국 토 해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기관 협의의견 회신현황

관 계 기 관		회신	담 당 자	비고
1	국 토 해 양 부	○ (4/17)	산업입지정책과/ 김남철 주무관 02-2110-8181	
2	국 방 부		국방부장관	
		○ (5/1)	37사단 작전처/ 한현덕대위 043-835-6304/010-5076-1105	
3	환 경 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 최동호 02-2110-6704	
4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4/27)	농지과/ 안재록 사무관 02-500-1629	
5	산 림 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원동북 주사 042-481-4128	
		○ (4/27)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백운형 주무관 043-540-7051	
6	문 화 재 청	○ (4/26)	발굴제도과/ 김동대 사무관 042-481-4957	
7	지 식 경 제 부	○ (4/24)	광업등록사무소/ 황명주 주무관 02-2110-4930	
8	충 청 북 도	○ (4/27)	균형개발과/ 최민규 043-220-4131	
9	청 원 군	○ (5/08)	건설과/박인규 043-251-3501 박상갑 043-251-3503	
10	한 국 도 로 공 사	○ (4/23)	기획조정실 도로조사팀/ 전준태 차장 02-2230-4286	중간 회신
			천안지사/ 박경린 과장 041-590-0332	
			진천지사/ 안영찬 과장 043-531-3342	
			충청본부 도로팀/ 김기우 과장 042-630-7262	추가 협의
11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충청지역본부 개발사업부/ 이동수 과장 043-290-3536	
12	한 국 농 어 촌 공 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4/24)	청원지사 지역개발팀/ 김계범 과장 043-290-0531	

관 계 기 관		회신	담 당 자	비고
13	한 국 철 도 공 사		한국철도공사 사장	
			충북본부장	
		○ (4/18)	대전충남본부 시설처/ 조창목 차장 042-259-2348	추가 협의
14	한 국 철 도 시 설 공 단		기획혁신본부 녹색사업전략처/ 고병찬 부장 042-607-3142	
15	한 국 전 력 공 사		한국전력공사 사장	
		○ (5/03)	충북지역본부 배전운영팀/ 김석재 010-3477-2415	
		○ (4/27)	충북지역본부 송전운영팀/ 임명규 사원 043-251-2542	
			서청주지사 배전운영팀/ 장명봉 043-230-8385	
16	한 국 수 자 원 공 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충청지역본부 통합운영팀/ 이상석 대리 043-230-4307	
17	한 국 가 스 공 사	○ (4/25)	충청지사 안전환경팀/ 고일주 과장 042-229-3562	
18	대 한 송 유 관 공 사	○ (4/24)	충청지사 시설부/ 정관희 대리 041-565-0201	
19	충 북 개 발 공 사	○ (4/20)	개발사업부/ 임노열 부장, 엄재국 차장 043-210-9174	
20	청주농업고등학교공동실습소		행정실/ 유재선 실장 043-256-4901/010-5206-8439	
21	주 식 회 사 케 이 티	○ (4/27)	서청주지사 가경지점/ 서항석 043-231-0060	
22	주 식 회 사 L G 유 플 러 스	○ (4/26)	서부운영담당 청주네트워크팀장/ 박국진 부장 010-8080-6780	
23	S K 텔 레 콤		중부네트워크본부 엑세스2팀/ 김춘식 과장 010-5468-0003	
24	K T F		충청무선네트워크 운용단/ 조재호 매니저 010-3451-6528	
25	세 종 텔 레 콤		중부운영팀/ 김대기 대리 010-9400-1550	
26	S K 브 로 드 밴 드		청주지사 중부운영팀/이경민 팀장 043-904-2400/010-7179-8433	
27	충 청 에 너 지 서 비 스		안전공급2팀/ 장경순 과장 043-261-4551/010-5465-4117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981, '12.04.17)	【산업입지정책과】 ○ 노선계획에 대한 산업단지 관련 - 오창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 계획에 일부 저촉될 것으로 예상되니 충청북도와 별도 협의 필요.	○ 이행	
국방부	【본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제37보병사단 (작전참모처-917, '12.05.01)	【작전참모처】 ○ 공사계획 확정시 재협의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며 군사기지 및 군시설은 없으나 고속도로 신설 후 방호대책으로 목진지 구축이 요망되므로, 공사계획 변경 및 확정시 재협의가 필요함.	○ 이행 -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협의 요청하겠음	
환경부	【본부-국토환경평가과】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2075, '12.04.27)	【농지과】 ○ 농지편입 및 자투리 농지발생 최소화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설계노선에 대하여는 계획안으로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농지를 성토로 통과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농로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용수간·지선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등을 감안하여 전체 도로노선의 높이를 계획하고 농지편입면적 및 자투리 농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야 함.	○ 수용검토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2)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산림청	【산림관리과】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2473, '12.04.27)	【보은국유림관리소】 ○ 산림청 소관 국유림 편입여부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설계노선계획(안)에 대한 검토 요청 건에 대하여는 상세도면이 첨부되지 않아 산림청 소관국유림이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검토의견 제시가 지난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행 -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협의 요청하겠음	
문화재청 (발굴제도과-4586, '12.04.26)	【발굴제도과】 ○ 관련법령 적용 -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행 시 검토노선안에 대해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현 시점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곤란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당 지역 문화유적분포지도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 문화재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개발과 문화재보존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선안을 검토하도록 함. ○ 관련법령 적용 - 사업지역(확정 노선안)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청에 동시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문화재지표조사는 당해 사업지역과 동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표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도 조사면적에 포함.	○ 이행 - 문화재지표조사 수행 예정 ○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3)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문화재청 (발굴제도과-4586, '12.04.26)	【발굴제도과】 ○ 관련법령 적용 -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74조(준용규정)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우선 이행하여야 함. ○ 관련법령 적용 -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 행정기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당해 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 보호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이행 ○ 이행	
지식경제부 (등록팀-1168, '12.04.24)	【광업등록사무소】 ○ 관련법령 적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계획」 지역(해당광업지적:신지적:병천 26,27,36,46,47,57,58,67,68,78,88,97,98호/구지적:병천26,27,36,46,47,57,58,67,68,78,88,97,98호)에는 위 도로사업 시행자인 (주)삼보기술단에서 방문하여 광업권 설정여부를 확인한바, 2012.04.23. 현재 광업권 설정등록 및 출원신청이 없음을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4)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 '12.04.27)	【균형개발과】 ○ 노선계획 - 옥산~오창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일부 구간이 오창읍 소재지 도시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청원군수와 협의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도시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 도시관리계획 저촉여부 - 노선계획(안)이 입안절차가 진행중인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청원군수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적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받으려면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실시설계 승인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도로, 완충녹지, 교통광장에 대하여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 처리되오니 그 이외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인 청원군수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람. 【도로과】 ○ 관련 법령적용 - 지방도 540호선 서오창IC 진출입로 접속구간은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도로 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하므로 추후 세부도면으로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이행 ○ 이행 ○ 이행 ○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5)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 '12.04.27)	【도로과】 ○ 장래 도로확포장 여유부지 고려 - 지방도 통과하는 용두천교, 상산1교, 산수교 구간은 향후 도로 확포장을 고려하여 상·하행 1차로 이상의 여유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함. ○ 기존도로 활용 - 기업 활동이나 영농을 위해 이용하던 기존도로 동선이 본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한계 및 2차로 이상 폭을 확보하여야 함. ○ 민원발생 예방 -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교통물류과】 - 별도 의견 없음. 【치수방재과】 ○ 하천설계기준 적용 - 지방하천 성암천(충청북도 제1994-12호'94.01.14), 병천(충청북도 제1993-19호'93.01.29), 용두천(충청북도 제2003-121호'03.09.19) 하천기본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횡단하는 구조물(교량 등)은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 ○ 하천편입 관련 - 도로 폭 확장으로 인한 하천편입은 불가하며, 부득이 편입시는 하폭 확장 등 대체시설 강구.(하폭 확장시는 재협의) ○ 소하천 관련 - 소하천(화산천, 성산천)은 관리청인 청원군과 사전 협의.	○ 수용검토 ○ 수용검토 - 영농 및 주민이용에 지장 없도록 기존도로 시설한계 및 폭원을 검토 후 확보하겠음. ○ 적극반영 ○ 이행 ○ 수용검토 - 부득이 편입시는 협의절차를 수행하겠음. ○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6)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 '12.04.27)	【기업유치 지원과】 ○ 추진계획 - 산업단지 추진계획과 저촉사항 없음. 【농업정책과】 ○ 관련법령 적용 - 사업예정지에 농지 편입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별표1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전용협의 요청하기 바람. ○ 농지편입 및 자투리 농지발생 최소화 - 사업시행시 공사에 따른 경작지 분리 및 자투리 농지 발생, 우량농지 잠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인 타당성안 검토. ○ 농업경영 피해방지계획 - 사업시행시 토사유출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산림녹지과】 ○ 관련법령 적용 - 사업구역내 포함되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산지전용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함.(한국산지보전협회)	○ 이행 ○ 이행 ○ 이행 ○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7)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 '12.04.27)	【산림녹지과】 ○ 야생 동식물 보호 - 개체 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 비탈면훼손 최소화 -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할 것. ○ 장대비탈면 저감방안 -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교량 설치 등 저감방안 마련 할 것. ○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 주변 산림 단절 방지 -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관련법령 적용 - 산림청 소관 국유림 편입 시에는 보은국유림관리소와 협의.	○ 이행 ○ 이행 ○ 이행 ○ 이행 ○ 이행 ○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8)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 '12.04.27)	【산림녹지과】 ○ 관련법령 적용 -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산지전용 협의권자가 50만㎡ 미만(보전산지 3만㎡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 50만㎡~200만㎡(보전산지 3만㎡~100만㎡)인 경우 도지사, 200만㎡ 이상(보전산지 100만㎡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임.	○ 이행	
	○ 관련법령 적용 - 기타 청원군 산림부서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도 설계 및 산지전용 협의 신청시 반영하고, 기타 타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의하여 절차 이행.	○ 이행	
	【문화예술과】 ○ 관련법령 적용 -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주변에 지정문화재는 없음.	○ 이행	
	○ 관련법령 적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의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으로 공사 전 전문기관의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이행	
	○ 관련법령 적용 -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굴착 등 공사시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이행	
	【관광항공과】 - 의견 없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9)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 '12.04.27)	【환경정책과】 ○ 관련법령 적용 - 본 사업은「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 하여야 하며,「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1] 5. 도로의 건설사업에 해당되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관할 지방환경청장(금강유역환경청장)과 하여야 함.	○ 부분이행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에 의에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나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2 제1호 가목(7)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의한 민간부문제안사업은 '05.9.8 시행령 개정당시 부칙 제2항에 '05.11.1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민간부문제안사업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본 사업 최초제안 : '04.11 - 본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1] 5. 도로의 건설사업에 해당되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관할 지방환경청장(금강유역환경청장)과 이행하겠음	
	○ 관련법령 적용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인 영향을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환경부 고시 제2008-180호, 2008. 12.08)" 및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내용에는 대안의 제시 및 대안에 대한 환경적인 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개발이 되도록 하는 사전검토제도임. - 따라서, 옥산~오창 간 고속도로 노선계획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함.	○ 미반영 - 해당사항 없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0)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12359, '12.05.08)	【건설과】 ○ 농어촌도로 횡단 - 사업구간과 교차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별도 협의할 것.	○ 이행	
	○ 부체도로 및 농경지 배수처리 - 실시설계시 기존도로 편입부 부체도로 설치 및 노면수 처리시 농경지로의 배수처리를 지양할 것.	○ 이행	
	○ 관련 법령적용 -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전환(또는 무상귀속)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협의할 것.	○ 이행	
	○ 노면수 처리 - 고속도로 노면수 처리시 인근 농경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이행	
	【도시과】 ○ 도시계획도로 반영 -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량 등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이행	
	○ 시설물 저촉 - 도시계획시설을 훼손시 원상복구할 것 - 버스승강장 및 가로(보안)등 관련 시설물 저촉 시 별도 협의할 것.	○ 이행	
	○ 관련 법령적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계획(안) 협의사항은 검토결과 동춘산업에서 제안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추진 부지와 저촉됨으로 해당 민원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며, 테크노빌 골프장과 저촉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교통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노선을 결정함이 타당함.	○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1)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12359, '12.05.08)	【도시과】 ○ 관련 법령적용 - 향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자할 경우 미리 군관리계획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및 청원군 도시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농정과】 ○ 관련법령 적용 - 농지법 제34조및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의거 농지전용협의(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 할 것. 【문화체육과】 ○ 관련법령 적용 - 사업신청지 주변에 지정문화재가 없어 문화재 보호법상 저촉사항 없음. -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 건설공사는 매장 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6조,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전에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보존대책을 통보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관련법령 적용 - 사업시행중 미확인된 매장문화재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 신고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이행 ○ 이행 ○ 이행 ○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2)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12359, '12.05.08)	【재난안전과】 ○ 재난담당:사전재해 영향검토 시행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축 및 개축에 한함)시 그 연장이 2km이상일 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 대상임.	○ 이행	
	○ 하천담당:하천 횡단 계획 - 하천 및 소하천에 구조물등을 설치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유수단면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 기정비된 하천 및 소하천구간은 기존 시설물이 손상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 구조물 설치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터널식 및 고가차도 등을 고려하여야하고 보상협의시 기득하천 점용허가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이행	
	○ 하천담당:하천 정비 계획 - 하천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충청북도와 별도 협의 할 것. - 실시설계시 재협의 할 것.	○ 이행	
	【산림과】 ○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 보전산지 면적이 3ha이상이 사업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 허가 사항임. - 임야가 포함될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항임. - 가급적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임야에 대하여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득할 것. - 사업구역내에 있는 이식가능한 유용 수목에 대하여는 전량 이식 조치하여야 함.	○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3)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12359, '12.05.08)	【산림과】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적용 - 사업부지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편입시 관련 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함. -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점용사유가 불가피하여야 함. -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구조는 지상의 경우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의 경우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함.	○ 이행	
	○ 녹지 -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함. -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녹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함.	○ 이행	
	【환경과】 ○ 관련법령 적용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할 때 사전환경서검토 협의를 이행하여야 함. - 도로구역의 결정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여야 함.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공사시행 허가전)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임. - 공사시 장비(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를 5일이상 사용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	○ 부분이행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에 의에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나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2 제1호 가목(7)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의한 민간부문제안사업은 '05.9.8 시행령 개정당시 부칙 제2항에 '05.11.1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본 사업 최초제안 : '04.11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4)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12359, '12.05.08)	【환경과】 ○ 관련법령 적용 - 입목폐기물 5톤이상 발생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임. - 건설폐기물 5톤이상 발생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수도 급수구역인 경우 인입사용하고 비급수구역인 경우 지하수 개발 이용시 신고해야함. - 공사구간중 사용종료 된 지하수가 있는 경우 폐공 및 종료 신고하여야 함. - 개발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상 미호B 단위유역에 해당되며 2015년까지 준공 예정인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 제2단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2016년 이후 준공 예정인 경우 3단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 ○ 오염물질배출 부하량 - 우리군은 자연오염원증가(인구증가, 토지대지화 등)에 의한 배출부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오염물질배출 부하량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이 어려워짐으로 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자연형 및 장치형 비점저감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계획 수립하여 재협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으로 할당해야하는 부하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청원군 일대의 기존 비점오염원 발생원도 병행하여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 주기 바람. 【경제투자과】 - 저촉사항 없음.	○ 부분이행 - 본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1] 5. 도로의 건설사업에 해당되며,「도로법」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시행의 허가 전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이행하겠음 - 본 사업은 2014년 준공 예정으로 제2단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수용검토 -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하량의 발생을 최소화토록 실시설계시 자연형 및 장치형 비점 저감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수질오염총량 협의시 계획노선 인근의 기존 비점오염원을 병행하여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겠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5)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12359, '12.05.08)	【하수도사업소】 ○ 하수도시설 저촉 협의 - 오창JCT 부근 노선계획도가 실제현황과 불일치함에 따라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산수교~오창JCT 구간은 하수관로 매설지역으로 실시설계 시 간섭되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사업소와 사전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상수도사업소】 ○ 송배수관로 저촉 협의 - 기매설한관로 및 향후 급수를 위한 송배수관로에 대하여 별도 협의 할 것.	○ 이행 ○ 이행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1434, '12.04.23)	【본사-기획조정실】 ○ 중간회신 -노선계획(안)이 4.20 우리공사에 제출된 점과 옥산JCT가 당초 협의한 위치와 다르게 선형이 불량한 경부고속도로 청원휴게소에 접속됨에 따라 교통안전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요청한 4.27 회신이 어려움을 통보함.	○ 이행 - 협의의견 회신시 추가 조치계획을 이행하겠음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6)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청지역본부-개발사업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농어촌공사(청원지역-1417, '12.04.24)	【청원지사-지역개발팀】 ○ 오창JCT 중부고속도로 하부램프 - 용배수로 농로의 단절이 없도록 연결하여야 합니다. - 편입되는 용·배수로의 대체시설은 도로 측구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도로의 우수가 용·배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시공전 세부계획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이행	
한국철도공사	【본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철도공사(시설처-3504, '12.04.18)	【대전충남본부-시설처】 - 실시설계 노선계획 도로건설에 따른 철도시설물과의 저촉은 없음.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전력공사	【본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7)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전력공사 (충북본(전)8410 6-781, '12.05.03)	**【충북지역본부-배전운영팀】** **ㅇ 배선전로(전주) 저촉협의**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으로 사업노선(오창읍) 건설에 따른 시설물(전주) 저촉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당사 배선전로(전주) 이설이 수반되므로 공구별 이설이 필요한 시기로부터 3개월 전에 이설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선전로(전주) 이설공사비는 고속도로 건설 시행주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행	
한국전력공사 (충북본(운)7620 8-760, '12.04.27)	**【충북지역본부-송전운영팀】** **ㅇ 송전철탑 협의** - 지장설비 및 도로계획구간 1) 354kV청원-신진천 송전선로 54~55호선 [도로계획 3+100지점 통과]. 2) 154kV신진천-오창 송전선로 36~38호선 [도로계획 8+700지점 지장]. - 도로 구간별 지장내용 1) 3+100구간 : 철탑이 도로공사 절토지역에 근접하여 철탑이설 또는 고속도로 노선조정이 필요함. 2) 8+700구간 : 철탑1기가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철탑이설 필요. - 기타 1) 철탑이설은 우리회사에서 시공하거나 요청자께서 시공하실 수 있으며, 우리 회사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예산배정 등 업무처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이설 전년도 9월까지는 이설요청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행	
한국전력공사	**【서청주지사 배전운영팀】**	ㅇ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8)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 수자원공사	【본사】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 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통합운영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2593, '12.04.25)	【충청지사-안전환경팀】 ○ 천연가스 배관 매설 및 저촉여부 - 해당사항 없음.		
대한 송유관공사 (충청지사 2012-756, '12.04.24)	【충청지사-시설부】 ○ 고압송유관 매설구간 노선협의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구간에 위험시설인 고압송유관(16,18", 복선)이 매설되어 있는바, 송유관 안전을 위하여 당사와 협의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	
충북개발공사 (개발사업부-304, 12.04.20)	【개발사업부】 - 의견 없음.		
청주농업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행정실】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주식회사 케이티 (충북마 2012-1252, '12.04.27)	【서청주지사】 ○ 지하매설물 노선협의 - 옥산~오창 고속도로 노선구간에 KT광, 동케이블이 시설되어 있어 공사 착공후 공동 현장실사가 필요하며, 부득이 KT선로시설 지장이전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이설 및 철거공사비 부담됨을 알려드리오며, 위 노선은 2개의 전화국을 경유하는 곳이라 KT서청주자사 가경전화국, KT청주지사 상당전화국 시설부서와 협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행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9)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청주NW팀 1204-0283, '12.04.26)	【서부운영담당】 ○ 관련법령 적용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관련으로 당사 검토의견 및 사업구간내에 운용중인 당사 통신시설 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시설내역 : 사업 구간내 광케이블 11개소 저촉 2)요청사항 : 향후 지장물 조사시 공동실사 요청 할 것 3)통신설비 이설비용 : 현장 실사 및 설계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 4)이설비용 원인자부담관련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설비의 이전 등) - 정보화촉진기본법 32조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 이행	
SK텔레콤	【중부네트워크본부 엑세스2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KTF	【충청무선네트워크 운용단】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세종텔레콤	【중부운영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SK 브로드밴드	【청주지사 중부운영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충청 에너지 서비스	【안정공급2팀】	○ 2012년 5월 15일 현재 회신 없음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12. 8

국 토 해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4)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교육청 (재무과-12400, '12.05.25)	【관재담당】 ○ 대체 교육시설부지 필요 - 농업계특성화고 교육과정의 공백 없는 교육활동을 위한 대체 교육시설부지 필요 -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교육시설 이전부지 선정의 어려움 - 현대적인 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목초지 330,000㎡,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물 1일 30톤 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 선정의 어려움, 농업계특성화고 교육과정의 공백 없는 교육활동을 위한 대체 교육시설부지 필요 - 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 정보 제공 희망	○ 부지 정보제공 곤란 - 사업관리청과 사업시행자는 교육시설 이전이 가능한 인근지역 부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교육시설에 대한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의 인지 부족으로 정보제공이 불가함.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5)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북도 교육청 (재무과-12400, '12.05.25)	○ 적정한 보상 이행 - 귀 청의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 계획(안)으로 노선 확정시 잔여지로는 부지가 협소하여 교육시설부지(공동 목장 운영 및 농업교육)로 활용할 수 없으며, 특히 공사 및 차량 소음으로 인한 각종 동물들의 성장 및 발육 저하 등으로 농업계 교육연구 시설부지(공동 목장)로 기능을 상실하여 교육 연구시설 부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연구시설(공동 목장 운영) 부지 중 도로 편입 학교용지와 건물, 공작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건을 부함	○ 적법한 보상 - 관련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입되는 토지와 시설에 대하여는 적법한 감정평가와 보상 실시. - 옥산~오창 고속도로 편입 예정 면적은 약 116천㎡이며, 교육시설 15개동과 관정 2개소 등이 포함됨. - 본 사업은 2013년 상반기 착공 및 2017년 개통 예정인 사업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이 2015년 8월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한국도로공사)

2012. 8

국 토 해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table>
<tr><th>관계기관</th><th>협 의 의 견</th><th>조 치 계 획</th><th>비 고</th></tr>
<tr>
<td>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1715,
'12.05.18)</td>
<td>【도로조사팀】

□ 기존 고속도로 교통영향 측면
○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 확장을 고려하여 민자사업 시행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재검토 필요

□ 고속도로 접속 및 실시설계 측면
○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 접속 위치 재검토 필요
- 분기점 평면곡선반경 기준 및 출입시설~휴게소간 이격거리 기준에 위배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휴게소 이용객 혼란·교통 지정체 등이 우려되므로 현 위치 접속은 곤란
- 분기점 설치기준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 국토부」

<table>
<tr><th>구분</th><th>기준</th><th>설계(안)</th></tr>
<tr><td>분기점
평면곡선반경</td><td>700m</td><td>600m</td></tr>
<tr><td>출입시설-휴게소간
이격거리</td><td>2km</td><td>0km</td></tr>
</table>
</td>
<td>○ 이행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행시 재검토하겠음

○ 수용불가
- 부득이하게 옥산분기점이 경부선 평면곡선반경 R=600m 지점에 설치되나 유출입부는 직선부에 설치하여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였음.
- 출입시설~휴게소간 이격거리는 유입-유출에 따른 엇갈림을 감안 산정하나, 본 계획은 유입-유입 또는 유출-유출 형태로 계획하여 출입시설~휴게소간 이격거리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별첨#1 유사 설치사례 참조)
- 다만 휴게소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본 사업의 연결로 상에서 분·합류 후 경부고속도로에 진·출입 하도록 보완하겠음.

당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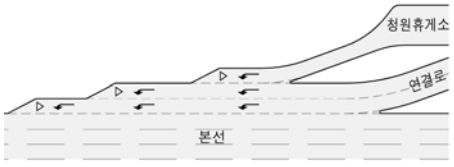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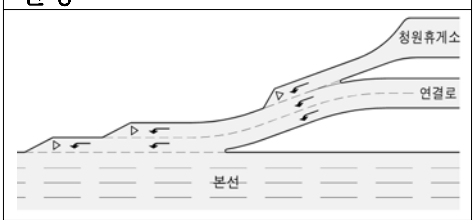

</td>
<td></td>
</tr>
</table>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2)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1715, '12.05.18)	○ 금년 실시설계 착수 예정인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6→8차로)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상세 실시설계 사항은 추후 재협의 필요	○ 이행 - 남이~천안 확장(6→8차로)실시설계를 고려하여 설계반영 및 재협의토록 하겠음.	
	○ 횡단교량 설계는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형하고를 5.0m 이상 유지하고, 설계시 우리공사 경관디자인 심의 및 설계 심의 이행	○ 이행 - 횡단교량 형하고 5.0m 이상유지 및 경관디자인 심의 및 설계 심의를 이행토록 하겠음.	
	□ 영업시설 측면 ○ 국고 및 민자 구간 기본요금 중복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금제 재검토 필요 - 민자 구간 요금제를 이부요금제에서 거리비례 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	○ 협의 후 결정 - 운영 개시전 관계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후 조치하겠음.	
	○ 서오창TG(IC)의 경우 경부선 및 중부선 진·출입 차로를 분리하여 영업시설 설치 필요 - 본선 영업소는 이용차량 경로 확인이 가능하나 IC 영업소는 확인이 불가하여 본선 및 IC 영업소간 통행요금 비등가 발생으로 민원 및 우리공사 요금체계 혼란 등 문제점 예상	○ 수용불가 - 불필요한 통행료 징수시설 추가 설치로 건설비 및 운영비 과다 증가(6차로->10차로 이상) - 진·출입 영업소간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산출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음.	
	○ 서오창TG(본선)는 향후 영업체계 연계방식(경유지 인식) 결정에 따라 추가 검토 필요 ☞향후 기본요금 중복 등 통행료 관련 민원 발생 시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조치	○ 검토후 결정 - 실시계획 수립시 주무관청과 협의 후 결정하겠음.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3)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1715, '12.05.18)	□ 유지관리 및 기타 측면		
	○ 통합유지관리방안은 추후 별도협의 필요	○ 이행 - '11.03월 한국도로공사와 관리운영위·수탁 양해각서 체결하였으며, 운영 개시전 별도 협의하겠음.	
	○ 민자 고속도로 서울방향 이용차량의 기존 청원휴게소 이용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휴게소를 이용가능 하도록 조치	○ 협의 후 결정 - 실시계획 수립시 옥산JCT R-D에서 청원휴게소 진입을 위한 연결로를 추가 반영하겠음. - 다만 곡선 교량구간 차로 변경 등으로 휴게소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어 설계자문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별첨 #2 도면참조) 옥산JCT Ramp-D에서 직결 접속 	
	○ 고속도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고구간과 연계한 교통정보 연계체계 구축 필요 〔연계정보:CCTV영상, VDS(실시간 30초), TCS(실시간)〕	○ 이행 - CCTV 11개소, VDS 14개소, TCS 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실시계획 수립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겠음.	
	○ 민자 구간 내 교통량 조사장비(AVC) 설치 필요	○ VDS와 비교 후 결정	
	○ 실시설계 후 접속부 공사 시행은 우리공사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등과 협의 후 시행	○ 이행	

별 첨 #1

추풍령휴게소



진주휴게소



함안휴게소



별 첨 #2

청원휴게소 진입로 설치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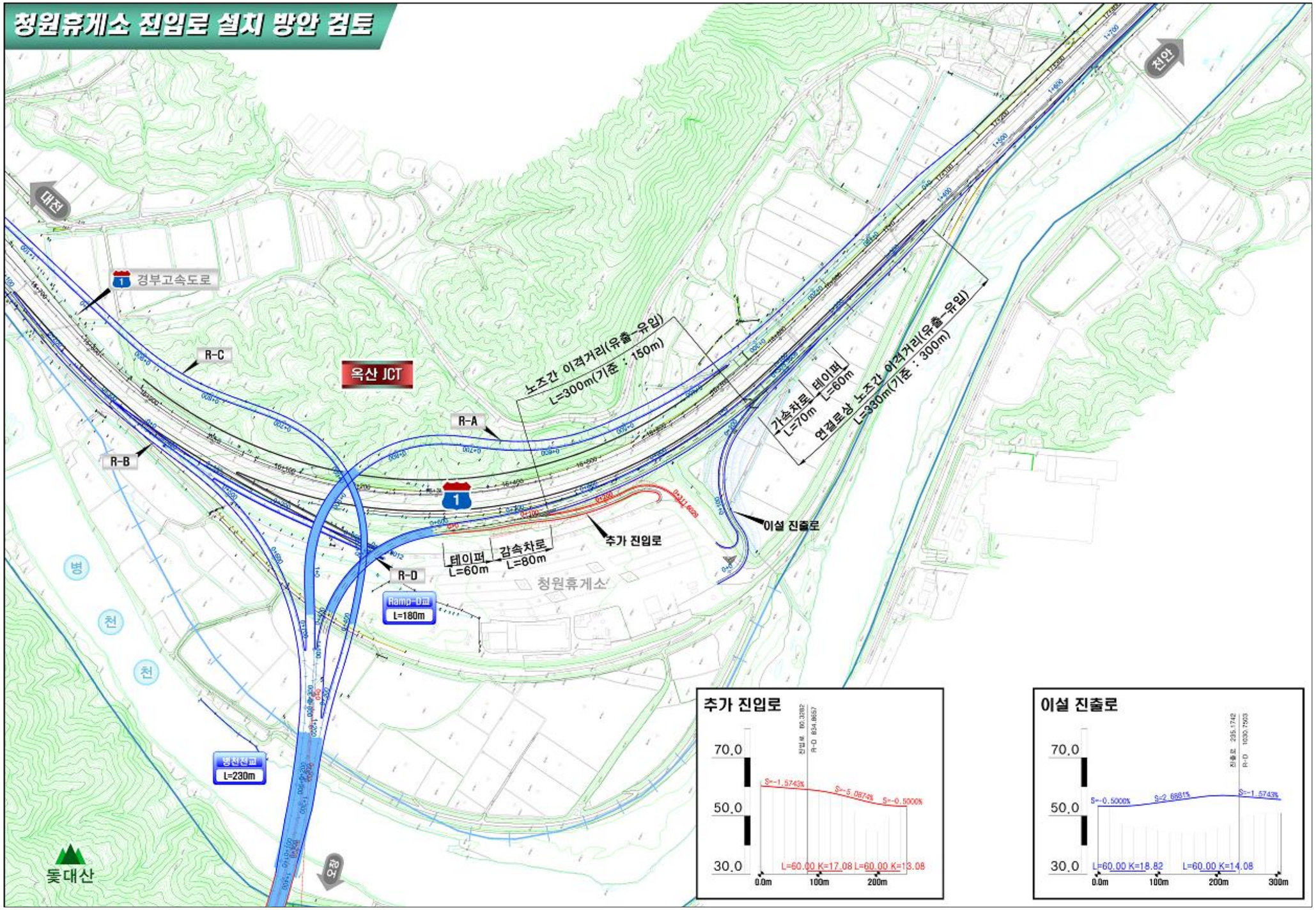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한국도로공사)

2013. 1

국 토 해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1)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3611, '12.10.25)	【도로조사팀】 □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 접속위치 관련 ○ 천안방면 연결로 - 휴게소 진출로와 합류 후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협의(안)에 동의 ○ 남이방면 연결로 - 접속위치가 곡선(R=600) 구간으로 분기점 설치 기준에 위배되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연결로가 휴게소 진입로와 근접하여 이용객 혼란 발생이 우려되므로 협의(안)에 부동의 ☞교통안전 및 이용객 혼란 방지를 위하여 곡선구간을 벗어나서 연결로 접속 및 휴게소 진입부와 이격거리 확보 필요	○ 이행 ○ 수용 - 대전방향 연결로와 청원휴게소 진입로간 이격거리를 당초 410m에서 이용객 혼선 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상 직선부까지 대전방향 연결로 연장 설치 - 본 사업 연결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공사비는 사업자가 부담할 것이며, 세부사항은 남이~천안 확장공사 실시설계시 재협의를 요청함 ※ 사업추진 관련 - 본 사업은 '13년 하반기 착공하여 '17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사업으로, (공사기간 48개월) - 사업기간 차이로 인한 재시공 또는 보완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를 막기 위해 본 사업 옥산JCT 접속구간은 남이~천안 확장공사 선 시공 후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므로 사업추진시 협조 요청 -만약,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지연으로 옥산JCT가 현 경부고속도로에 6차로 구간에 접속되는 경우 단계건설이 불가피하므로 접속방안, 공사시기, 공사비 분담방안 등에 대하여는 재논의	별첨#1 참조 별첨#2 참조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2)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3611, '12.10.25)	【도로조사팀】 □ 영업시설 설치 관련 ○ 재정~민자 연계 이용시 최저요금 또는 기본요금의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금제 검토 필요	○ 개통전 재검토 - 본 사업의 최초통행료 및 통합운영에 따른 요금체계 변경 등은 주무관청 승인사항으로 한국도로공사 요금체계 개선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무관청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임 - 참고로, 협약 요금체계는 단거리 구간임을 감안 기본요금을 400원으로 할인(50%)하였음 ☞요금산출근거(1종기준, '04년 9월 불변) -옥산JCT~서오창IC(경부선 이용차량) (400원+6.5km×39.1)×1.4=916원 -서오창IC~오창JCT(중부선 이용차량) (400원+5.6km×39.1)×1.4=867원 -옥산JCT~오창JCT(전구간) (400원+12.1km×39.1)×1.4=1,222원	
	○ 서오창IC 차로 미분리(경부선 및 중부선방향)에 따라 향후 연결되는 노선 실제 이용구간 식별 불가로 민원 등 통행료 수납시 문제 소지 있음	○ 개통전 재검토 - 경부선/중부선 연결로에 차량번호 인식시설을 계획하여 도공구간 실제 이용거리에 따라 통행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 향후, 도로공사의 통행요금 부과체계 연구용역에 따른 요금체계가 변경될 경우, 요금징수시설 변경을 검토할 계획임 -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행요금 부과체계 연구용역에 본 사업의 반영을 요청함	※이용 방향별 최단거리 요금 적용
	○ 향후 위 사항에 대한 제반 문제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민자법인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별 첨 #1

옥산JCT 차선도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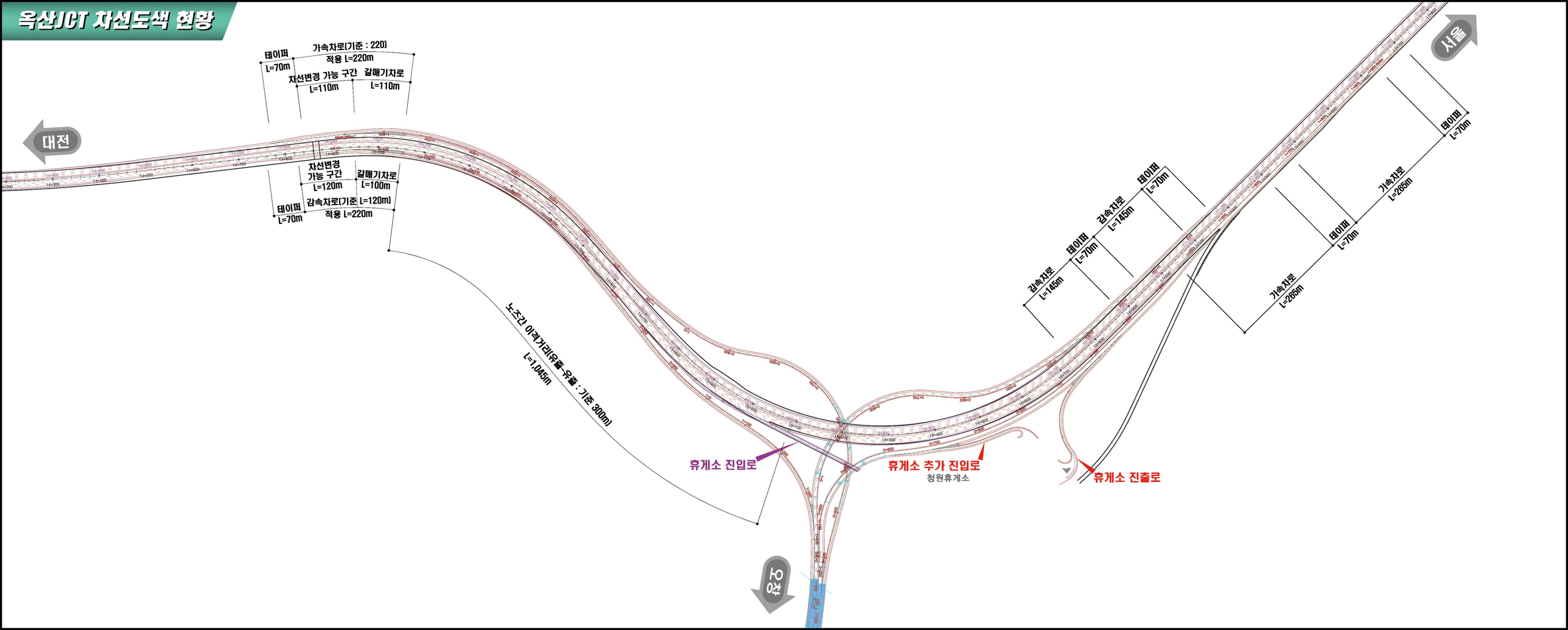

별 첨 #2

■ 주요 공사량 비교

구 분	한국도로공사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전제조건	• 남이~천안확장 선 시공 후 옥산JCT 연결로 접속 • 옥산JCT 접속에 따른 남이~천안확장 변경선형 실시설계시 수용	
남이~천안 기본설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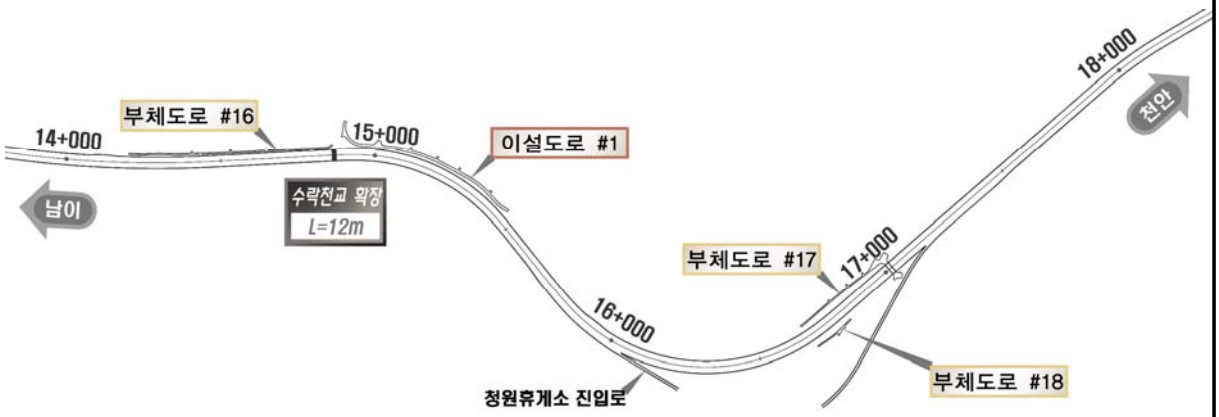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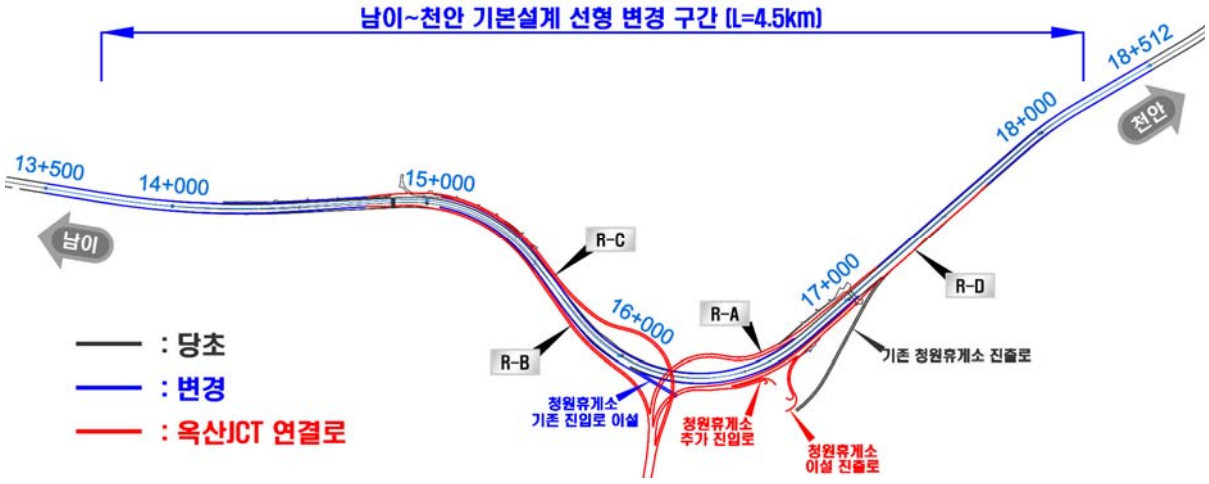	
주 요 공사량	• 남이~천안확장 : L=4.50km(왕복8차로) -본선 부대시설 : 1식 • 청원휴게소 기존 진입로 이설 • 남이~천안 8차로 수락천교 확장 • 남이~천안확장 기본설계시(2010. 12) 이설도로#1(리도202호선), 부체도로 #16, #17, #18 및 확장 배수구조물 • 남이~천안확장 공사시 교통처리	• 옥산JCT 연결로 가감속차로 -연결로 접속부 부대시설 : 1식 • 청원휴게소 추가 진입로 • 옥산JCT 연결로 설치에 따른 수락천교 확장 • 옥산JCT 연결로 설치에 따른 추가 배수구조물 확장 • 옥산JCT 연결로 접속부 교통안전시설
기 타	※남이~천안 확장공사 지연시 옥산JCT 연결로 접속은 단계건설(현 6차로→장래 8차로)이 불가피 하므로, 추후 옥산JCT 접속관련 세부협의 필요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충청북도 청원군 건설과 〕

2013. 5

국 토 교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계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청원군 (건설과 -11479, '13.04.11)	【건설과】 ○ 장래 도로확포장 관련 - 고속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STA. 3+860 지점 기존도로 통과 부분에 대하여 교량설치	○ 세부계획 수립 후 재협의 - 귀 군의 협의의견(건설과-12359, '12.05.08)을 반영하여 STA. 4+200 위치에 통로암거(4.5×4.5)를 계획하였음 -본 사업은 2013년 6월내 실시계획승인신청 예정으로서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귀 군의 화산도로 확포장공사 반영시 일정지연이 불가피함으로 현 단계에서 반영은 곤란함 -따라서, 귀 군의 협의의견은 화산도로 확 포장공사 세부계획 수립 후 재협의 필요 ■ 방문 확인결과(2013.04.22) • 실제 위치 : STA. 4+200 • 사업명 : 화산도로 확포장공사 (L=1.5km, 왕복2차로) • 화산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일정 -2013. 05 : 실시설계 착수 -2013. 09 : 실시설계 완료 -2014. : 보상 완료	

3.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지표조사보고 364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13. 01.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Institute of Korean Prehistory

차 례

Ⅰ. 조사개요 5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7

1. 자연 · 지리 환경 7
2. 고고 · 역사 환경 8
3. 연혁 11

Ⅲ. 조사내용 15

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현황 15
2. 고고 · 역사분야 19
3. 자연마을 및 주요지명 조사 27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38

1. 문화재 보존대책(현황) 38
2. 종합고찰 및 조사단의견 39

표 차례

[표 1] 조사대상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 ····· 12
[표 2] 1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범위 및 성격 ····· 21
[표 3] 2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범위 및 성격 ····· 23
[표 4] 3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범위 및 성격 ····· 24
[표 5] 4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범위 및 성격 ····· 26
[표 6] 5구간 내 표본조사 필요범위 및 성격 ····· 26
[표 7] 조사 현황 ····· 38
[표 8] 조사대상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500m 이내) · 38

지도 차례

[지도 1] 조사대상지역 위치도 ····· 6
[지도 2] 충청북도 음영기복도 ····· 7
[지도 3] 조사지역의 토양 및 퇴적분포, 토양모재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 ····· 10
[지도 4] 조사대상지역 주변 유적분포도 ····· 14
[지도 5] 조사대상지역 위성지도 ····· 18
[지도 6]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920년대) ····· 20
[지도 7] 제1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 20
[지도 8] 제1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 22
[지도 9] 제3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 22
[지도10] 제4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 25
[지도11] 제5구간 계획평면도 및 표본조사필요범위 · 26

사진 차례

[사진 1] 충비 삼월지비 및 청풍김씨 묘역 ····· 17
[사진 2] 이효석 신도비 ····· 17
[사진 3] 청풍김문 쌍효각 ····· 17
[사진 4] 성인문 ····· 17
[사진 5] 이인석 묘 ····· 17
[사진 6] 청원휴게소 경부고속도로 분기점 전경 (1) ···· 42
[사진 7] 청원휴게소 경부고속도로 분기점 전경 (1) ···· 42
[사진 8] 수락리 유물산포지 전경 (1) ····· 43
[사진 9] 수락리 유물산포지 전경 (2) ····· 43
[사진 10] 청원휴게소 ~ 0+200 전경 (3) ····· 44
[사진 11] 1+200 ~ 0+500 전경 (4) ····· 44
[사진 12] 0+500 ~ 1+200 전경 (5) ····· 45
[사진 13] 1+200 ~ 1+500 근경 (6) ····· 45
[사진 14] 1+200 ~ 1+500 근경 (6) ····· 46
[사진 15] 호죽리 유물산포지 전경 (7) ····· 46
[사진 16] 호죽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7) ····· 47
[사진 17] 2+0 ~ 2+500 원경 (8) ····· 47
[사진 18] 2+600 ~ 2+700 전경 (9) ····· 48
[사진 19] 2+700 ~ 2+800 근경 (10) ····· 48
[사진 20] 2+800 ~ 2+900 근경 (11) ····· 49
[사진 21]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전경 (12) ····· 49
[사진 22]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전경 (12) ····· 50
[사진 23] 3+700 ~ 4+0 원경 (13) ····· 50
[사진 24] 3+700 ~ 4+0 원경 (13) ····· 51
[사진 25] 4+100 ~ 4+500 원경 (14) ····· 51
[사진 26] 4+100 ~ 4+500 근경 (14) ····· 52
[사진 27]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근경 (15) ····· 52
[사진 28]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수습유물 (15) ····· 53
[사진 29] 4+800에서 바라 본 시점부 전경 (16) ··· 53
[사진 30] 5+100 계곡부 경작지 전경 (17) ····· 54
[사진 31] 5+800에서 바라본 성산리 유물산포지 (18) · 54
[사진 32] 성산리 유물산포지 근경 (19) ····· 55
[사진 33] 성산리 유물산포지 근경 (19) ····· 55
[사진 34] 성산리 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원경 (20) ··· 56
[사진 35] 청풍김씨 묘역 수습 유물 (21) ····· 56
[사진 36] 능골 유물산포지 전경 (23) ····· 57
[사진 37] 능골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23) ····· 57
[사진 38] 7+900 주변 경작지 전경 (24) ····· 58
[사진 39] 8+300 주변 경작지 전경 (25) ····· 58
[사진 40] 8+300 능선 근경 (25) ····· 59
[사진 41] 8+800 능선 근경 (26) ····· 59
[사진 42] 목령산 북쪽 사면부 근경 (27) ····· 60

[사진 43] 9+300 근경 (27) ····· 60
[사진 44] 9+300 능선 정상부 근경 (28) ····· 61
[사진 45] 9+400 경작지 근경 (29) ····· 61
[사진 46] 복현리 유물산포지 근경 (30) ····· 62
[사진 47] 복현리 유물산포지 근경 (31) ····· 62
[사진 48] 복현리 유물산포지 근경 (31) ····· 63
[사진 49] 복현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31) ····· 63
[사진 50] 10+100 사면 근경 (32) ····· 64
[사진 51] 10+200 사면 전경 (33) ····· 64
[사진 52] 모정교 ~ 복현사거리 전경 (34) ····· 65
[사진 53]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35) ····· 65
[사진 54]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36) ····· 66
[사진 55]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37) ····· 66

Ⅰ. 조사개요

1. 조 사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경위

○ 국토해양부는 국토간선도로망계획(7x9) 동서 5축(당진~천안~옥산~오창~영주~울진)의 구축의 일환으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산만권과 대전·청주권간 생산, 물류, 교류 기반조성 확대 등 지역간 균형 발전 효과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또 동서 5축의 조기 건설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지역의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담당한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주)는 사업시행 전 공사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 우리 연구원은 2012년 08월 29일 지표조사에 착수하여 사전조사→현지조사→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순으로 2013년 01월 08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조사지역의 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일원

4. 조사면적 : 1,322,272㎡(연장 12.1km)

5. 조사기간 : 2012년 8월 29일 ~ 2013년 01월 08일

(사전조사 3일, 현장조사 2.5일, 정리 및 분석 2.0일, 보고서 작성 5.0일)

6. 조사단구성

○ 조 사 단 장 : 우 종 윤 (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손 명 수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조 사 원 : 신 승 철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준 조 사 원 : 이 신 복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7. 조사의뢰기관 :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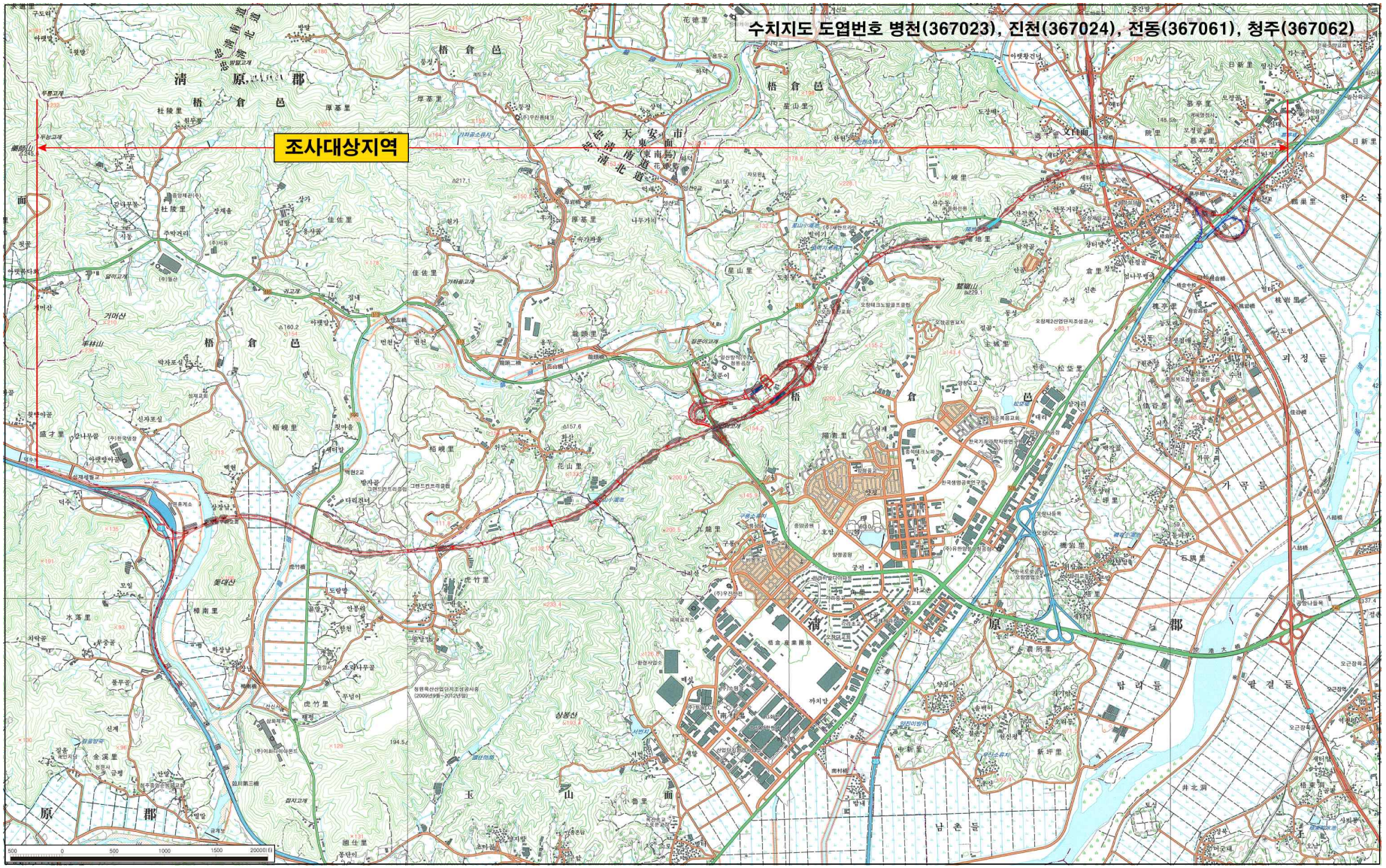

[지도 1] 조사대상지역 위치도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1. 자연·지리 환경

조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1,322,272㎡(연장 약 12.1km)이다.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청원군은 충북의 중서부에 자리하였으며 동쪽으로는 증평군, 보은군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충남 천안시, 연기군과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충남 연기군, 북쪽으로는 진천군, 괴산군과 접하며, 중앙부에 자리한 청주시를 감싸고 있다[지도 2].



[지도 2] 충청북도 음영기복도

청원군의 지형은 전체로 보아 동고서저형으로 동쪽은 산악지대이고, 서쪽은 평야와 낮은 구릉성 산지로 구성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쪽의 노령산맥은 차령산맥과 옥갑산에서 분기하여 정남으로 뻗어 내려 백마령, 보광산, 칠보산을 지나 미원면의 좌구산에서 미동산, 국사봉, 피반령, 샘봉산을 지나 옥천군의 환산과 대성산으로 이어진다. 또한 남쪽으로 문의의 작두산, 현도면의 구봉산등이 솟아 있다. 북서쪽으로는 차령산맥의 저산지가 남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어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면서 서남방향으로 뻗어 소평야 지대를 이루고 있다.

충북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인 오창평야와 미호평야를 관개하는 미호천은 음성군 부용산(644m) 남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충북 진천군, 청원군 및 충남 연기군을 거치면서 백곡천, 보광천, 무심천, 천수천, 조천 등 지류를 합치고 부강 서쪽에서 금강에 합류한다. 금강은 전북 장수군 일대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노령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서 여러 소지류와 합류하여 신탄진까지는 곡류하고 있으나, 부여에서부터는 커다란 강폭을 나타내며 서해로 흘러든다.

청원군의 지질은 변성퇴적암류인 편마암류와 곳곳에 잔류되어 있는 흑운모 편암류, 이들이 관입하고 있는 화강암과 이를 부정함으로 덮고 있는 편마암류, 그리고 그 위를 다시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충적층으로 크게 구분된다.[1] 토양은 크게 6개의 토양군으로 구분되고, 사촌-상주 토양군, 식질토양인 화동-극락토양군, 사양질 토양인 예산-오산 토양군, 사양질 토양인 삼각-외산토양군 등이 있다.

기후는 충청북도 중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지형적으로 차령, 노령, 소백산맥 등으로 둘러싸여 지형이 높은 동부지역은 서부의 저지대에 비해 특이한 기후현상을 보인다. 청원군의 연 평균 기온은 11.5℃로 온난한 편이나 1월 평균기온은 -3.8℃, 8월은 25.2℃ 내외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29℃에 달한다. 전

1) 나기창, 1990.「지형과 지질」『청원군지』(청원군지 간행위원회) 191~201.

반적으로 위도에 비해 춥고 더운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강수량은 남동풍이 탁월한 3개월 동안은 연간 강수량의 55% 이상이 집중된다. 봄과 가을의 강수량은 37%에 불과하고, 겨울의 강수량은 37%에 불과하고, 겨울의 강수량은 6.7% 정도이다 연 강수량은 1,24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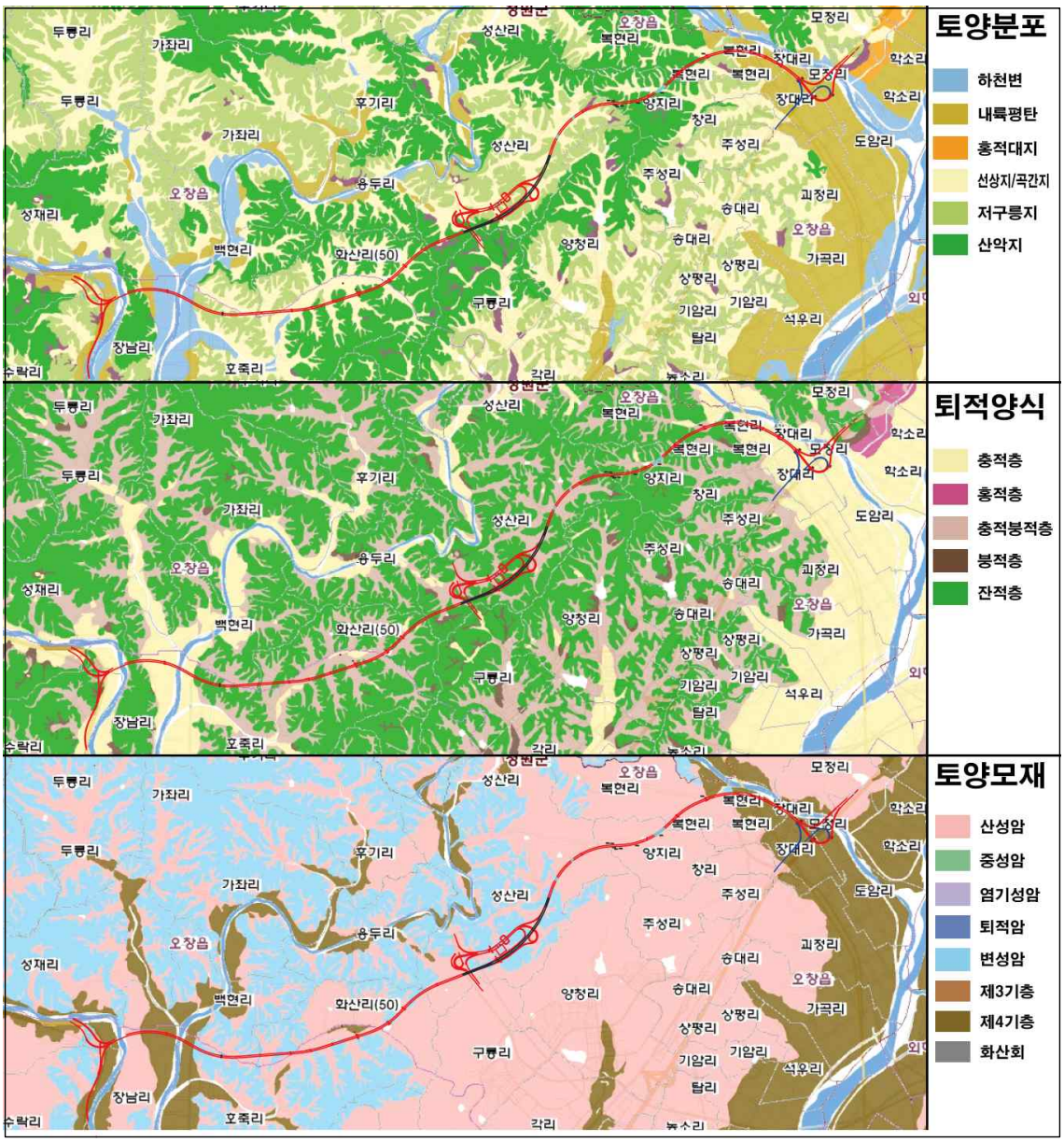

[지도 3] 조사지역의 토양 및 퇴적분포, 토양모재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

2. 고고·역사 환경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은 금강상류 지역으로 미호천과 병천천이 진천지역과 천안지역에서 흘러 청원군 강외면에서 합류하여 금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미호천과 병천천 주변의 무심천, 초평천, 작천 등의

소지류를 거느리고 있으며, 하천의 주변으로는 해발 50~150m의 낮은 구릉성 산지와 충적지인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미호천 유적의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류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80년대 이후 부분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 유적이 보고되었으며,[2] 1998년『문화유적 분포지도-청주시』[3]와 2000년 『문화유적 분포지도-청원군』[4]이 간행되어 전반적인 문화유적 분포양상이 밝혀졌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동굴유적과 한데유적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동굴유적으로는 청원 두루봉동굴[5], 작은용굴유적[6], 청석굴유적[7]이 있으며, 한데유적으로는 청원 샘골유적[8], 문산유적[9], 소로리 유적[10], 노산리유적[11], 청주 봉명동유적[12], 율량동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미호천 상류지역인 진천지역에서 장관리유적[13]과 송두리유적[14] 등이 발굴조사 되어, 금강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구석기문화의 유물상을 살펴볼 수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문의면 가호리 아득이유적[15], 옥산면 환희리 내안마을유적[16], 강외면 쌍청리유적[17] 과 청주 상당산성 남문밖유적[18]이 있다. 쌍청리유적에서는 4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2기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凸字形 돌출부시설이 보이는 주거지도 조사되었다. 특히 연속된 압인무늬가 특징적으로 베풀어지고 독특한 기형의 토기가 출토되어 이른바 금강식토기로 설정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지로는 청원 궁평리유적[19], 내수리유적[20], 황탄리유적[21], 송대리유적[22]과 청주 내

---

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報告書(淸原郡)』;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 - 淸州市, 槐山郡』; 1986.『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調査報告 第 17集) : 金榮振, 朴相佾, 1990. 『淸原郡 文化遺蹟』(淸州大學校 博物館) : 이원복 외, 1992.『鎭川郡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淸州博物館) : 朴璜雨, 1993.『美湖川流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淸州博物館) : 禹鐘允, 1994.「금강유역의 선사유적, 유물(Ⅰ)」『年報』2 (忠北大學校 博物館) : 趙祥紀, 1994.「미호천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Ⅰ)」『年報』 3 (忠北大學校 博物館) :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4.『淸州科學産業團地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硏究所, 1993.『淸州市 文化遺蹟』.

3)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8.『文化遺蹟分布地圖 - 淸州市 』(調査報告 第 58集).

4) 淸州大學校 博物館, 2000.『文化遺蹟分布地圖 - 淸原郡 』.

5) 李隆助, 1983.『淸原 두루봉洞窟 舊石器遺蹟 發掘調査 報告書(1)』(忠北大學校 博物館).

6)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5.『청원 작은용굴유적』(調査報告 第105冊).

7)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淸原郡)』.

8) 李隆助, 1979.『大淸댐 水沒地區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9) 李隆助, 1981.『한국의 선사문화 -그 분석 연구』(탐구당).

10) 李隆助, 禹鐘允 편, 2000.『淸原 小魯里 舊石器遺蹟』(忠北大學校 博物館).

11)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2.『淸原 老山里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1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9.『淸州 鳳鳴洞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1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진천 장관리유적』.

14) 중원문화재연구원, 2004.『진천 송두리 구석기 유적 현장설명회 자료』.

15) 李隆助, 1979.『大淸댐 水沒地區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16) 朴璜雨, 1993.『美湖川 流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淸州博物館).

17) 申鍾煥, 1993.『淸原 雙淸里 住居址』(國立淸州博物館).

18)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硏究所, 1997. 『上黨山城 - 서장대 및 남문 외 유적지 조사보고』.

19) 李隆助 外, 1994. 『淸原 宮坪里 靑銅器遺蹟』(忠北大學校 先史文化硏究所).

곡동유적[23], 향정동, 외북동 유적[24], 비하동 유적[25], 가경3지구유적[26], 용암동유적[27], 봉명동유적[28]이 있다. 삼한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적으로는 청주 봉명동유적[29], 신봉동유적[30], 송절동유적[31], 가경4지구유적[32], 명암동유적[33], 용담동유적[34], 용암동유적[35], 청원 주성리유적[36], 송대리유적[37] , 상평리유적[38], 남촌리유적[39], 미천리유적[40] 등이 있다.

이 밖에 현재의 충북지역은 삼국시대 삼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관방유적이 있다. 특히 청원군 부용면 일원에는 1개면에 10여개의 산성유적이 밀집하고 있으며, 최근 고구려 산성인 남성곡산성이 발굴조사되어 고구려가 금강유역까지 진출하였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보은 삼년산성으로부터 진천 도당산성에 이르기까지 2~30리마다 신라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들이 서로 상망하고 있어 신라가 경주-상주-보은을 거쳐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대략을 알려주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지역에는 모두 36개의 산성이 분포하고 있으며, 관방유적으로 지금까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들은 먼저 청주시의 정북동토성[41], 우암산토성, 당차산토성[42], 부모산성[43], 상당

---

2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선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산청 강루리, 청원 내수리』.
21)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黃灘里遺蹟』(연구총서 제 10집).
22)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淸原 梧倉遺蹟』.
23) 車勇杰, 1986.「淸州 內谷洞遺蹟 發掘調査報告」『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24) 尹武炳, 1986.「淸州 香亭, 外北洞遺蹟 發掘調査報告」『위 책』.
25) 한국고고학회, 1974.「청원 비하리 출토 일괄유물」『고고학』 3 : 김성명, 신종환, 1993.『청주 비하동유적 발굴조사 보고서』(국립청주박물관).
26) 이융조, 2002.『청주지역 선사문화』(청주문화원).
2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淸原 龍岩遺蹟 Ⅰ~Ⅲ』.
28) 車勇杰 외, 2004.『淸州 鳳鳴洞遺蹟(Ⅲ)-Ⅳ地區 調査報告②』(忠北大學校 博物館) .
29) 車勇杰 외, 2002.『淸州 鳳鳴洞遺蹟(Ⅰ)-Ⅰ地區 調査報告』(忠北大學校 博物館) ; 2002.『淸州 鳳鳴洞遺蹟(Ⅱ)-Ⅳ地區 調査報告①』(忠北大學校 博物館).
30)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1982年度 調査』; 1990.『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1990年度 調査』: 金成明 외, 1993.「淸州 新鳳洞 B地區 2次 發掘調査 報告書」『考古學誌』5 (韓國考古美術史硏究所) : 車勇杰 외, 1995.『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忠北大學校 博物館) : 車勇杰, 趙祥紀 외, 1996.『淸州 新鳳洞 古墳群 - 1995年度 調査』(忠北大學校 博物館) : 車勇杰 외, 2002.『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 2000年度 調査』(忠北大學校 博物館) :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3.『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6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31) 車勇杰 외, 1995.『淸州 松節洞 古墳群』(忠北大學校 博物館) : 車勇杰, 趙祥紀 외, 1994.『淸州 松節洞 古墳群 1次年度('92)調査 報告書』: 車勇杰, 趙祥紀 외, 1995.『淸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93年度 發掘調査』(百濟文化開發硏究所, 忠北大學校 博物館).
32) 車勇杰 외, 2002.『淸州 淸州 佳景4地區 遺蹟(Ⅰ)』(忠北大學校 博物館) : 禹鐘允 외, 2004.『淸州 淸州 佳景4地區 遺蹟(Ⅱ)』(忠北大學校 博物館).
33) 國立淸州博物館, 2000.『淸州 明岩洞遺蹟(Ⅰ) - 1998年度 發掘調査報告書』.
_____, 2001.『淸州 明岩洞遺蹟(Ⅱ) - 1998年度 試掘 및 發掘調査 報告書』.
34) 國立淸州博物館, 2001.『淸州 龍覃洞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3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淸原 龍岩遺蹟 Ⅰ』.
3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淸原 主城里 遺蹟』.
3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淸原 梧倉遺蹟』.
38) 김병모, 1986.「청원 상평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충북대학교 박물관).
39)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2000.『남촌리 유적』.
40) 國立文化財硏究所, 1995.『淸原 米川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41)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1999.『淸州 井北洞 土城Ⅰ-1997년도 發掘調査 報告書』.

산성[44], 청주읍성[45]과 청원군의 남성곡산성[46], 소재산성[47], 낭비성[48], 구라산성[49], 양성산성[50], 저산성[51] 등이 있다.

이처럼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은 미호천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조사됨으로써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중부지방의 고고, 역사적인 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연혁

삼한시대의 청주, 청원지역은 마한의 국읍세력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력들은 토착의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토착적인 단위 정치체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청주, 청원지역에 먼저 진출한 세력은 백제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같은 문헌자료와 함께 백제시기의 청주 신봉동유적과 같은 고고학 자료를 들 수 있다.

이런 자료들로 볼 때 3세기경에 이르면 청주의 토착세력들은 백제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 가운데 거의 반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남아 자치적인 지배권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주를 포함한 충북지역은 삼국 항쟁기에 삼국간의 각축장이었다. 청주 정북동토성과 우암산의 산성, 그리고 부모산성을 비롯한 청원군의 여러 성터들이 백제시기의 역사를 간직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용면 지역에서 고구려유적이 발굴조사 됨으로써 고구려가 금강유역까지 진출하였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백제와 고구려에 이어 청주, 청원지역에 진출한 국가는 신라이다. 청주지역은 충북지방에서 백제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다가 진흥왕대 이후 신라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대세 속에서 6세기경 신라에 의해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 인근의 청원 문의(一牟山郡)가 이미 신라의 장악 하에 들어갔고 474년 이 곳의 양성산성(壤城山城)이 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의 미천리 고분군이 5~6세기에 해당되는 신라의 석곽묘임이 밝혀져 이를 뒷받침한다.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2002.『淸州 井北洞 土城Ⅱ-2000년도 發掘調査 報告書』.

4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43) 車勇杰 외, 1999.『淸州 父母山城 -發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44)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2.『上黨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車勇杰 외, 1997.『上黨山城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硏究所) : 車勇杰 외, 1999.『上黨山城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4.『上黨山城 - 城壁補修區間內 試, 發掘調査 報告書』.

45) 淸州大學校 博物館, 2001.『淸州邑城, 南石橋』.

46) 車勇杰 외, 2005.『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忠北大學校 博物館).

47) 車勇杰 외, 2005.『淸原 芙蓉面地域 山城』(中原文化財硏究院).

48) 車勇杰 외, 2001.『淸原 狼臂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硏究所).

49) 車勇杰 외, 2001.『淸原 謳羅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硏究所).

50) 車勇杰 외, 2001.『淸原 壤城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硏究所) : 車勇杰 외, 2001.『淸原 壤城山城 貯水池 發掘調査 略報告書』(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硏究所).

51) 車勇杰 외, 1999.『淸原 猪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硏究所).

통일신라시대의 청주지역은 신문왕 5년(685) 5소경의 하나인 서원소경이 설치됨으로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비중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때 평지의 도시성과 방어도시의 성격을 농후하게 띤 우리나라 전통적인 고대도시의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덕왕 18년(759)에는 서원경으로 개칭하였으며, 혜공왕 6년(770)에는 왕이 친히 서원경에 행차한 일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후삼국에 들어와 청주지역은 태봉과 후백제의 변경지역으로 또 한차례 중요 쟁패지역이 되었다. 청주 호족들은 처음에는 궁예의 기반세력이었지만 정차 왕건의 세력이 커지자 분열하였다. 그리하여 청주 호족들은 크게 친궁예세력과 친왕건세력으로 분열,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후삼국이 고려에 의해 통일되고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이들 청주세력은 점차 고려정부에 흡수되거나 토착향리층으로 변하여 더 이상 고려의 중앙정부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려광종 때 설치한 『용두사지철당간기』(국보 제 41호)에 의하면 김(金), 손(孫), 경(慶), 한(韓)씨 등의 10여 명의 시주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청주지역에는 한(韓), 이(李), 김(金), 곽(郭), 손(孫), 경(慶) 등 모두 12개의 토성세력이 존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고려초기의 청주지방은 이들 토성세력들이 연합하여 지배하던 호족연합적인 지배체제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청주지역은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보게 된다. 즉 태조 23년(940)에 지금의 명칭인 청주로 고쳤고, 이어 성종 2년(983) 외관을 파견하면서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 청주목은 그중의 하나였다. 또 성종 14년(995) 12목이 폐지되고 10도로 나누어 12주를 두게 되자 청주는 중원도에 속한 전절군(全節軍) 으로 불리는 절도사가 파견되었다.

현종 3년(1012)에 이를 폐하여 안무사(按撫使)로 하였고, 현종 9년(1018) 전국에 8목을 다시 설치할 때 청주는 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결국 청주라는 지명은 고려건국 초에 불리어진 이래, 그 행정구역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 청주목에 소속되어 있던 군현은 연산군(燕山郡 ; 지금의 청원군 문의면)과 목주군(木州郡 ; 지금의 천안시 목천)의 2개 군과 진주(鎭州 ; 진천군), 전의(全義 ; 연기군 전의읍), 청주, 도안(道安 ; 괴산군 도안면), 청당(靑塘 ; 괴산군 청안면), 연기(燕岐 ; 연기군), 회인(懷仁 ; 보은군 회남, 회북면)의 7개 현이고 1개의 영지사부(領知事府 ; 공주)와 홍주(洪州 ; 홍성군), 천안의 2개 지사군(知事郡), 그리고 2명의 현령관(縣令官)을 관할하였다. 그 밖에 속현은 청천현(靑川縣 ; 괴산군 청천면)이 있고 향은 2곳에 배속되어 주안향(周岸鄕 ; 대전 동면)과 덕평향(德坪鄕 ; 전의군)이며, 소는 초자소(椒子所 :청원군 초정)와 배음소(背陰所)의 2곳이고, 부곡은 오근부곡(吳根部曲 ; 청주시 오근장동), 석곡부곡(錫谷部曲 ; 청주시 석곡동), 조풍부곡(調豊部谷 ; 괴산군 청안면), 한신부곡(閒身部谷 ; 괴산군 청천면)의 4곳이다.

조선 초 청주지역은 이성계의 우호적이었던 경복흥(慶復興)과 개국 1등 공신이었던 정총(鄭摠), 정탁(鄭擢), 3등 공신 이었던 한상경(韓尙敬) 등을 배출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 태종대에 들어와 태종 8년(1408)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감사겸목제(監司兼牧制)를 시행하였을 때 도관찰사가 머무는 본영이 되어 충청도에서 으뜸가는 고을이 되었다. 이후 청주에는 충청감사가 목사를 겸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 3품의 목사, 종5품의 판관, 종6품의 교수가 각각 1인이 있었다. 세종 31년(1449) 감사

겸목제가 잠시 부활한 적이 있었다. 이후 세조 때에는 감사겸목제를 없애고 지방의 행정체제와 군사편제를 하나로 묶어 국방과 치안을 일원화시킨 진관체제가 성립하였다.

세조 원년(1455) 군익도를 정할 때 청주도는 중익에 청주, 진천, 문의, 연기, 회인, 보은, 청안을, 좌익에 옥천, 황간, 영동, 청산을 우익에 천안, 온양, 전의, 평택, 아산, 목천, 직산을 배정하였다. 그 후 세조 3년(1457)에 다시 진관체제를 정비할 때 청주진은 진천, 문의, 회인, 보은, 청산, 황간, 영동, 옥천, 청안을 제진으로 거느리도록 하였다. 이로서 청주는 청주권의 행정, 군사의 중심지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청주, 청원 지역은 몇 차례 행정구역의 개편을 맞게 된다. 고종 7년(1870) 청주는 서원현에서 청주목으로 복구되었다가, 같은 33년(1896)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청주는 청주군으로 개칭되면서 공주부에 소속되었다. 그에 따라 공주부 관찰사가 관할하는 27개 군의 하나로서 청주군에는 군수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아관파천 이후 성립된 신내각에서는 일본의 압제 하에 추진된 개혁에 대한 반발로 옛 제도로의 복귀가 이루어져 전국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로 변경되면서 충청북도란 행정구역이 등장하게 되었고, 청주는 공주부에서 빠져나와 충주와 함께 산하의 1등 군수 관할지역으로 편제되었다.

융희 2년(1908) 충주에 있던 관찰부를 청주로 이관하여 현 중앙공원 안에 있는 옛 관아를 청사로 사용하였고, 이어 1914년 조선 총독부령 제 111호에 의거 부(府), 군(郡), 면(面) 을 통합하였는데, 청주군은 청주면, 사주면, 북일면, 북이면, 미원면, 낭성면, 남일면, 남이면, 강서면,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오창면, 가덕면, 용흥면, 부용면, 양성면, 현도면으로 개편되었고, 1920년과 1935년 두 번에 걸쳐 사주면의 일부를 편입하여 1931년 청주읍이 생겨났다.

해방직후인 1946년에 청주읍이 청주부로 승격된 후 1949년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청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나머지 면은 청원군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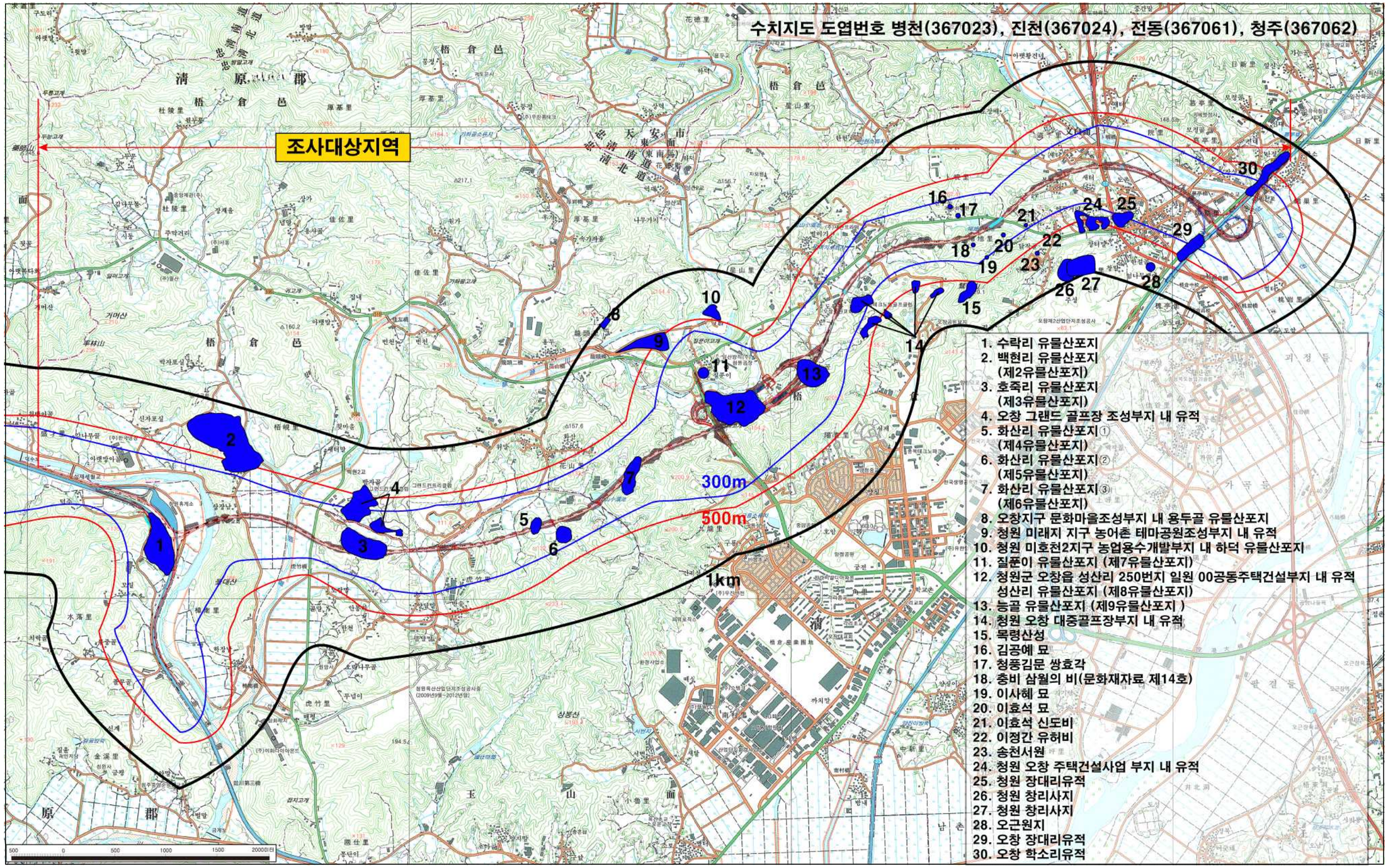

[지도 4] 조사대상지역 주변 유적분포도

Ⅲ. 조사내용

지표조사의 진행은 현지조사에 앞서 원활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에 예비,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 조사된 문헌자료와 문화재 관련 각종 보고서 등을 수집, 검토하여 조사대상지역과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문화유적의 양상과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단원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지표조사 대상지역은 물론 공사 진행시 훼손이 예상되는 주변지역까지 포괄하였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하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 조사하여 마무리하였다.

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지역과 주변에 분포하는 문화재를 확인하여 공사로 인한 직·간접 영향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유적 분포지도 등을 참조하여 현황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화재 조사결과, 조사지역의 경계로 부터 500m 이내에 도 지정문화재인 충비 삼월의 비(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 1995년 6월 30일 지정)가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시행 전 반드시 현상변경허가신청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 충비 삼월의 비는 본 사업경계로부터 약 8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도로 개설공사는 능선 반대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시 직·간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조사대상지역 500m 내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어 공사 시행시 직·간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나 주의를 요망한다. 조사대상지역에서 500m 이내에 자리한 유적은 아래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조사대상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500m 이내)

연번	유 적 명	위 치	시 대	유적 성격	이격 거리 (m)	비 고
1	충비 삼월의 비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6	조선	기념물	약 80m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현상변경 신청대상)
2	이효석 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7	조선	민묘	약 95m	
3	이효석 신도비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53-1	조선	신도비	약 250m	
4	이사혜 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 20-1	조선	민묘	약 250m	
5	김공예 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1	조선	민묘	약 390m	

연번	유 적 명	위 치	시 대	유적 성격	이격 거리 (m)	비 고
6	청풍김문 쌍효각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1	조선	정려	약 200m	
7	청원 장대리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324, 327	선사 ~삼국	유물 산포지	약 490m	
8	오창 학소리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학소리	청동기 ~조선	생활유적 무덤유적	STA 0+692. 4318	발굴조사 (중원문화재 연구원)
9	오창 장대리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청동기	생활유적	STA 0+395. 2272	
10	청원 오창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81	조선	유물 산포지	약 460m	
11	오창 대중골프장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산90임 일원	시대 미상	민묘	약 130m	발굴조사 (중원문화재 연구원)
12	능골 유물산포지 (제9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6+600. 0000	
13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00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제8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5+800. 0000	
14	질푼이 유물산포지 (제7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약 120m	
15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제6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4+600. 0000	
16	화산리 유물산포지② (제5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약 30m	
17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제4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3+400. 0000	
18	호죽리 유물산포지 (제3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호죽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1+700. 0000	
19	오창 그랜드 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백현리 일원	삼국 ~조선	유물 산포지	약 200m	
20	백현리 유물산포지 (제2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약 435m	
21	수락리 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산2-1임 일원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15+870. 0643	



[사진 1] 충비 삼월지비 및 청풍김씨 묘역



[사진 2] 이효석 신도비



[사진 3] 청풍김문 쌍효각



[사진 4] 성인문



[사진 5] 이인석 묘



[지도 5] 조사대상지역 위성사진(출처:naver 위성)

2. 고고, 역사분야

이번 조사는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로,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일원에 해당된다. 조사구간은 1,322,272㎡(연장 12.1km)이다.

조사지역이 속한 청원군 옥산면과 오창읍은 청원군의 북단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천안시 병천면, 진천군 문백면과 각각 맞닿아 있고, 동으로는 청원군 북이면, 서로는 천안시 수신면에 접한다. 조사지역은 차령산맥의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목령산(228m)을 비롯한 산악지형이 대부분이며, 산지 중앙으로 흐르는 용두천과 병천천 일대의 충적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주요 산물로 평야지에서는 양질미(특히 삼색미)가 유명하고, 구릉지의 완사면을 이용한 연초 고추재배와 낙농을 중심으로 가축사육을 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17번 국도에 의해 북으로는 진천군, 남으로는 청주와 연결되었으며, 국도인 진천~오창간 4차선 확포장공사로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지표조사는 현지조사에 앞서 1920년대 제작된 1:50,000 지형도를 참조, 과거지형을 파악하고 현재 지형도와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지형양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 청원군[5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53]> 등의 자료를 이용, 조사대상지역과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들을 검토한 후 조사지역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지역에 해당되는 옥산면 수락리에서 오창읍 도암리까지의 구간의 지형은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지와 산지 사이를 흐르는 하천을 따라 조성된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 100년간 눈에 띄는 지형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 508번 국도를 따라 대중골프장, 주택단지 등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통해 하천변 낮은 구릉지대에 원삼국~조선시대의 생활유적들이 분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조사지역의 종점부에 해당하는 오창읍 학소리와 장대리의 경작지 일원에서는 508번국도 건설과정에서 오창 학소리・장대리유적[54]이 발굴조사되어 청동기시대 전기~중기에 이르는 문화상을 확인한 바 있기에 주변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는 조사지역의 시점부(STA 0+000)에서 종점부(STA 12+100) 에 이르기까지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능선 사면과 경작지에 대한 육안조사 및 지형분석 등을 통해 매장유구의 분포가능성을 파악하였으며, 조사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사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조사대상지역의 시점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원휴게소 뒤편 옥산면 장남리와 백현리가 만나는 병천천 주변의 경작지 일원이며, 여기에서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오창읍 복현리를 지나 508번국도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장대리 주변 경작지 일원까지 면적 1,322,272㎡(연장 12.1km)이 이번 조사대상지역의 범위이다. 조사의 편의상 현지조사는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52) 淸州大學校博物館, 1999.『文化遺蹟分布地圖-淸原郡』.
53) http://www.gis-heritage.go.kr
54) 中原文化財硏究院, 2008,『梧倉 鶴巢里·場垈里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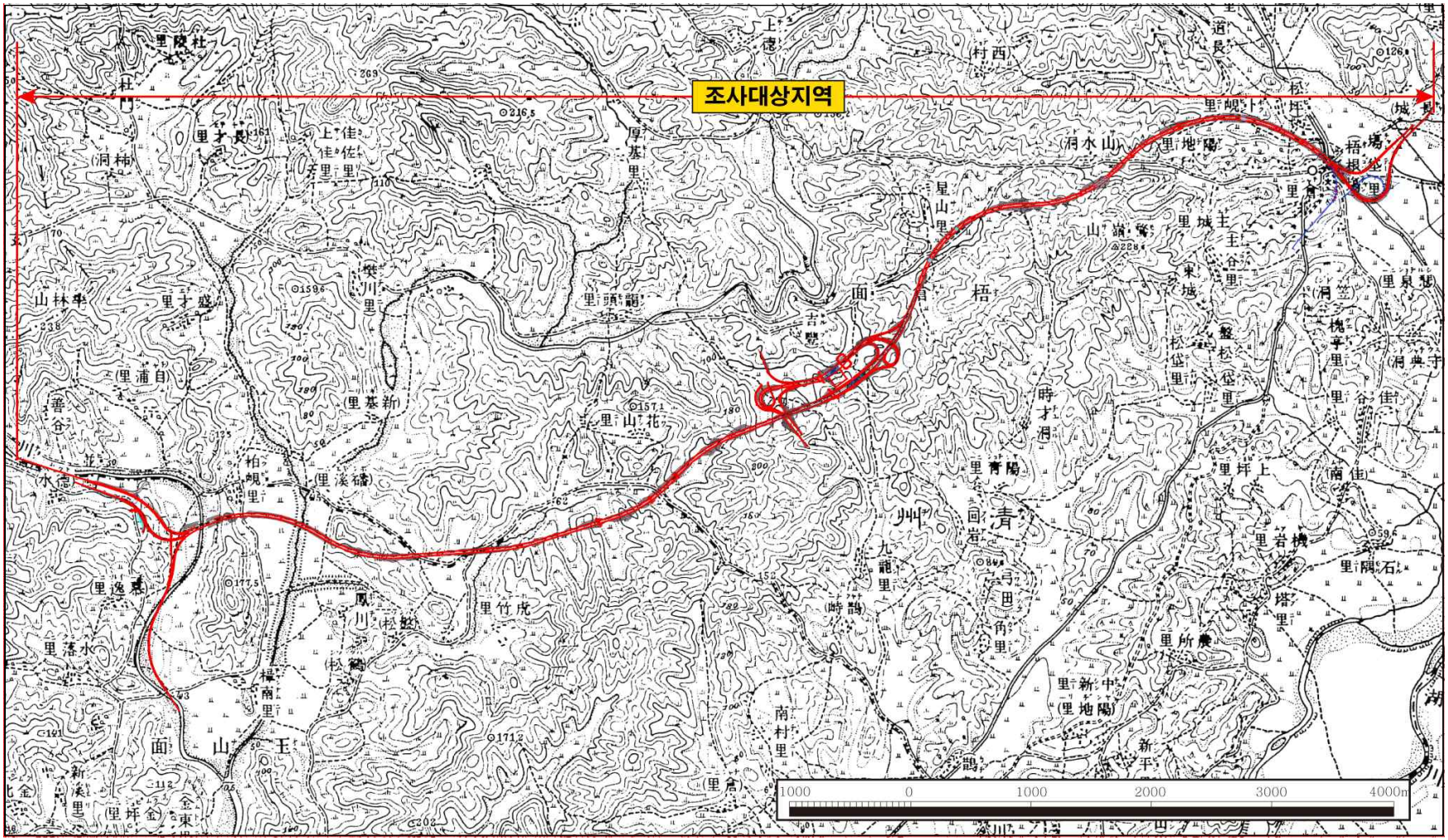

[지도 6]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920년대)

1) 제1구간 (STA 0+000~1+100)

제1구간은 조사대상지역의 시점인 청원휴게소에서부터 병천천과 용두천을 지나 오산가좌로와 만나는 지점까지이며, 하천 주변 충적대지에 조성된 경작지와 일부 구릉지역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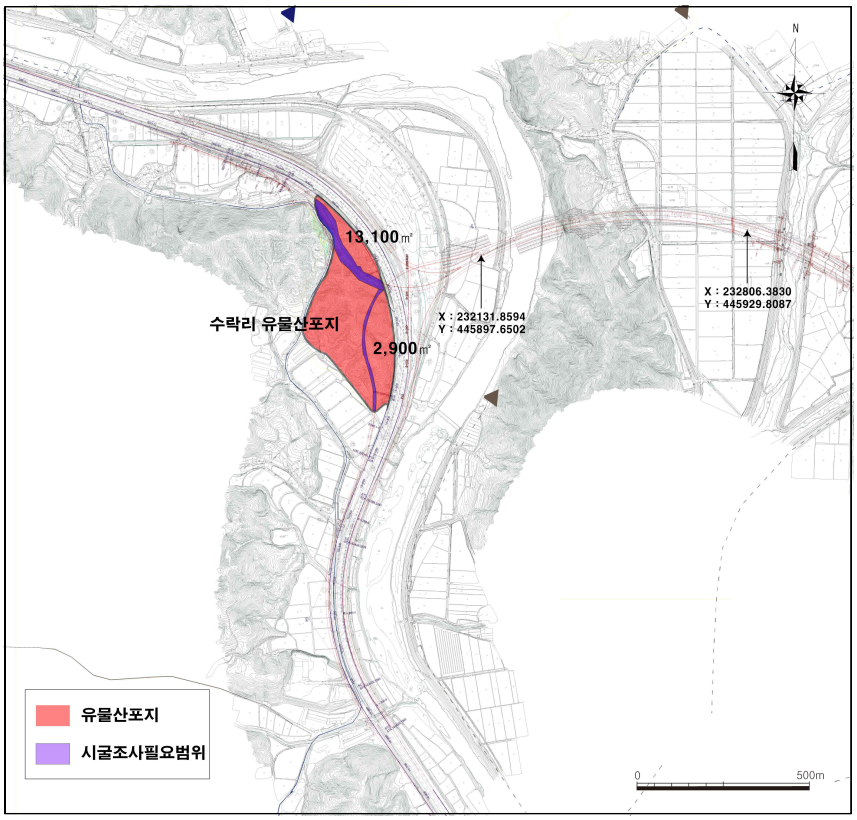

[지도 7] 제1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현지조사 결과 조사지역 내에서 유구나 유물 등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형상으로도 경지정리 등의 지형변화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매장문화재의 잔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0+300지점에 위치한 구릉은 경사가 심하고 능선의 폭이 좁아 매장문화재가 입지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뒤편에서는 수락리 유물산포지[55]가 보고된 바 있고, 이번 현지조사에서도 수락리 유물산포지 내 다수의 분묘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물산포지 범위 내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16,000㎡)에 대한 시굴조사를 진행하여 공사 시 일어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굴조사가 필요한 범위의 면적과 성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1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 범위 및 성격

구간	유물산포지	위치	성 격	시굴조사 대상면적
1구간	수락리 유물산포지 (106,936㎡)	경부고속도로 청원휴게소 분기점 건설구간	조선시대 분묘유적	13,100㎡
				2,900㎡

55)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사업 문화재 보완 지표조사 보고서』.

2) 제2구간 (STA 1+100~4+100)

제2구간은 호죽리와 화산리 일대의 비교적 완만한 구릉지대와 계곡부 및 하천 주변에 형성된 경작지로 구성된 지역이다. 1920년대에 작성된 지형도와 비교했을 때 이 지역은 현재까지 큰 지형변화가 없었으며, 과거에도 구릉 사면과 계곡부, 하천 주변에 조성된 경작지를 기반으로 한 취락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 호죽리 유물산포지 인근에서 찾아진 오창 그랜드 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56]은 원삼국~삼국시대의 생활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제기된 곳으로 이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거주하기 적합한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에 실시된 기존의 지표조사[57] 결과, 이 지역에서 총 3개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제3유물산포지는 이번 조사에서의 호죽리 유물산포지에 해당하며, 제4유물산포지는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제5유물산포지는 화산리 유물산포지②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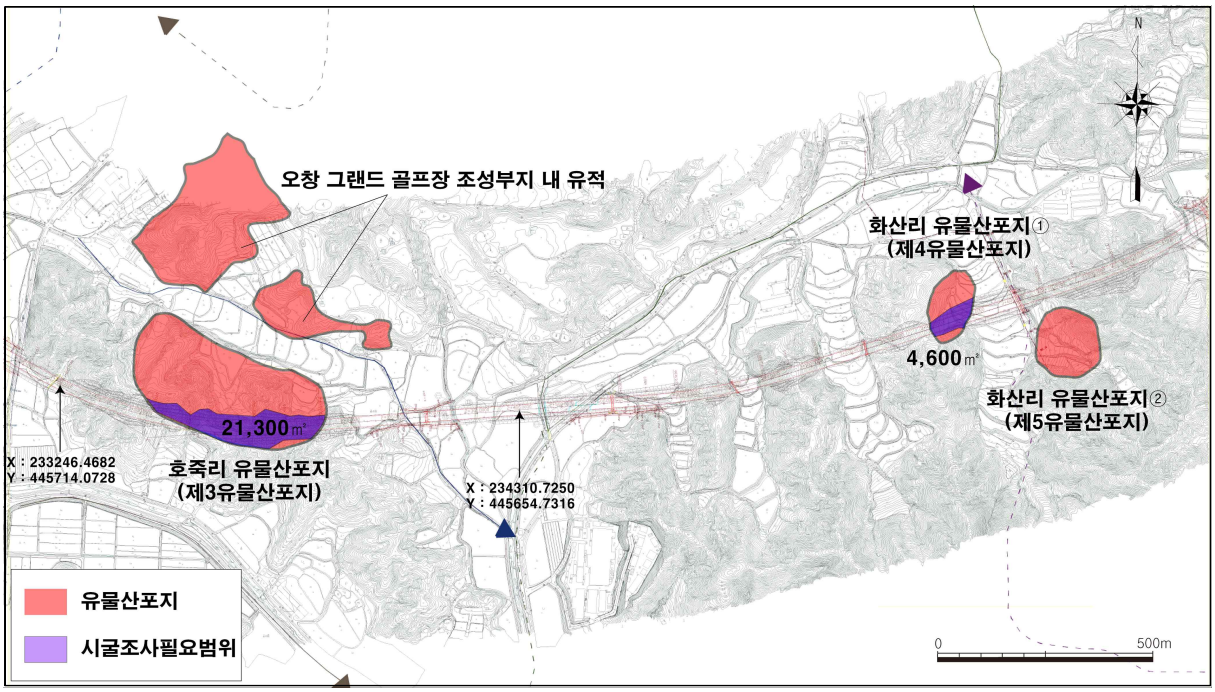

[지도 8] 제2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이번 조사에서도 호죽리 유물산포지에서 고려~조선시대의 토기편과 옹기편이 확인되어 이 지역에 과거 생활유적의 유존 가능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화산리 유물산포지①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유물 및 유구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유적이 입지하기 좋은 완만한 구릉 지형조건과, 기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공사 시행 전 이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공사에서 시굴조사가 필요한 범위와 유물산포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56)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오창 그랜드골프장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57)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청원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표 3] 2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 범위 및 성격

구간	유물산포지	위치	성 격	시굴조사 대상면적
2구간	호죽리 유물산포지 (85,129㎡)	STA 1+600~1+900	고려~조선시대 생활유적	21,300㎡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12,891㎡)	STA 3+400~3+500	조선시대 생활유적	4,600㎡

3) 제3구간 (STA 4+100~6+800)

제3구간은 대체로 구릉지형과 완만한 능선 사면부를 중심으로 한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540번 국도와 510번 국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유구나 유물 등 매장문화재의 잔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형분석에서도 대부분의 능선이 가파르고 높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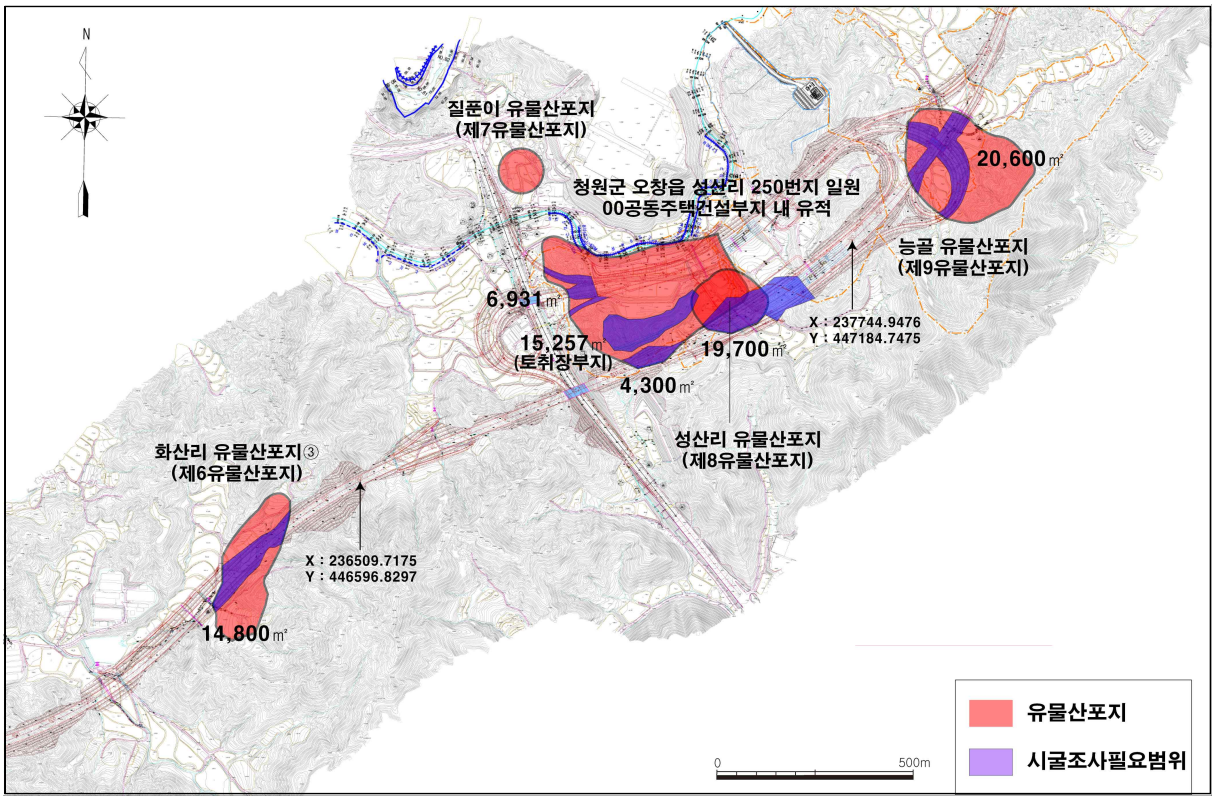

[지도 9] 제3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단, 화산소류지의 북동쪽 계곡부에 조성된 계단식 경작지와 주변의 완만한 능선 사면부를 포함하는 화산리 유물산포지③에서는 고려~조선기의 토기편이 다수 확인된 바 있고[58], 이번 조사에서도 지형분석결과 완만한 능선 사면부를 중심으로 한 생활유적의 잔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00공동주택건설 부지 내 유적[59]은 540번 국도 오른쪽에 위치한 넓은 구릉에 해당한다.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2005년에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백자편과 토기편이 수습되어 생활유적의 잔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번 현지조사 결과 이번 공사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건설 등으로 인해 지형 훼손이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매장유구의 잔존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일부 구간 및 토취장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잔존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성산리 유물산포지는 2004년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제8유물산포지[60]로 설정된 지역으로 STA 5+800지점 주변의 완만한 구릉 사면과 경작지를 포함하며 조선시대 생활유적의 잔존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이번 조사결과 STA 6+100지점 주변의 서쪽으로 길게 뻗은 완만한 능선상에서 민묘로 추정되는 유구 2기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지형상 분묘유적이 입지하기 적합하여 이 주변에 분묘유적이 추가로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표 4] 3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 범위 및 성격

구간	유물산포지	위치	성 격	시굴조사 대상면적
3구간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39,540㎡)	STA 1+600~1+900	고려~조선시대 생활유적	14,800㎡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00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102,328㎡)	STA 3+400~3+500	조선시대 생활유적	6,931㎡ 4,300㎡ 15,257㎡ (토취장부지)
	성산리 유물산포지 (22,410㎡)	STA 5+800~6+200	조선시대 생활유적 및 분묘유적	19,700㎡
	능골 유물산포지 (60,642㎡)	STA 6+500~6+700 분기점	조선시대 생활유적 및 분묘유적	20,600㎡

능골 유물산포지 역시 2004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 찾아진 유물산포지(제9유물산포지)로 조선시대 생활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 지역에서 백자편을 비롯

58) 중앙문화재연구원, 『앞 책』.
59) 중원문화재연구원, 2005,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00공동주택건설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60) 중앙문화재연구원, 『앞 책』.

한 조선시대 생활 관련 유물들을 확인하였고, 인근의 청풍김씨 묘역이 조성된 능선 하단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백자편 및 토기편이 수습되어 유적의 잔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현재에도 마을이 조성되어 있어 조선에서 근대에 이르는 생활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 공사구간 내 매장문화재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하여 공사 시 있을지 모르는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시굴조사가 필요한 범위와 그 성격은 위의 [표 4]에 정리하였다.

4) 제4구간 (STA 6+800~9+900)

제4구간은 목령산(129m)의 북쪽 사면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형이 가파르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환경적 요소로 인해 생활과 관련한 유적은 입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 현지 조사에서도 구간 내에 매장문화재의 잔존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능선 반대편의 남쪽 사면부에는 청풍 김씨와 전의 이씨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어 이번 조사대상지역 내에는 매장문화재의 잔존여부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접한 청풍김씨 묘역 내 위치한 '충비 삼월의 비(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가 공사구간으로부터 약 80m 이격되어 있어 공사시행 전 반드시 현상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 공사 구간의 반대편 능선 사면부에 입지하였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공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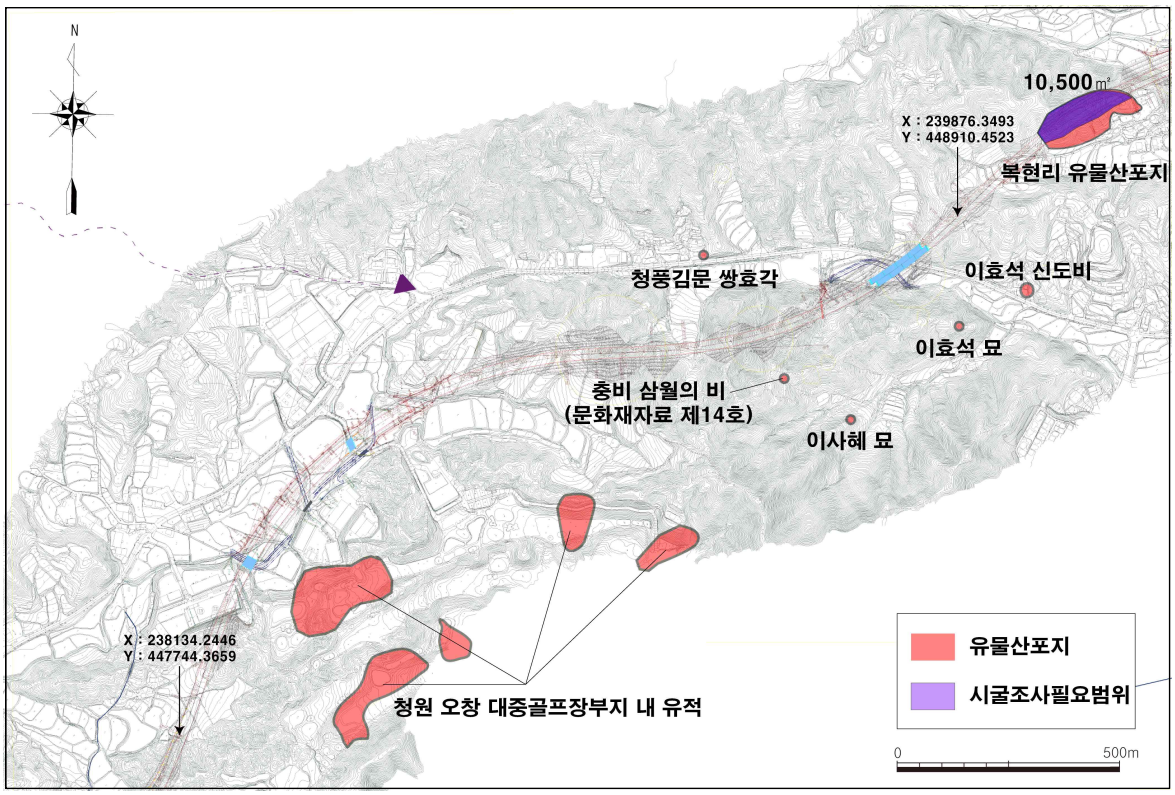

[지도 10] 제4구간 계획평면도 및 추가조사필요범위

이번 조사 결과, 복현리 복고개 일원은 완만한 사면이 남향으로 뻗어 있는 지형으로 이곳에서 다수의 토기편 및 백자편이 수습되어 고려~조선시대의 생활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인근의 청원 오창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유적[61]에서는 원삼국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의 잔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어 이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과거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구간 내에서 시굴조사가 필요한 범위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표 5] 4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 범위 및 성격

구간	유물산포지	위치	성 격	시굴조사 대상면적
4구간	복현리 유물산포지 (10,560㎡)	STA 9+600~9+800	고려~조선시대 생활 및 분묘유적	10,500㎡

5) 제5구간 (STA 9+900~종점부)

제5구간은 대부분의 지형이 미호천 주변의 충적대지에 조성된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경지정리가 되어 지형변경이 이루어졌고, 논 경작지의 특성상 지표조사 단계에서 유물이나 유구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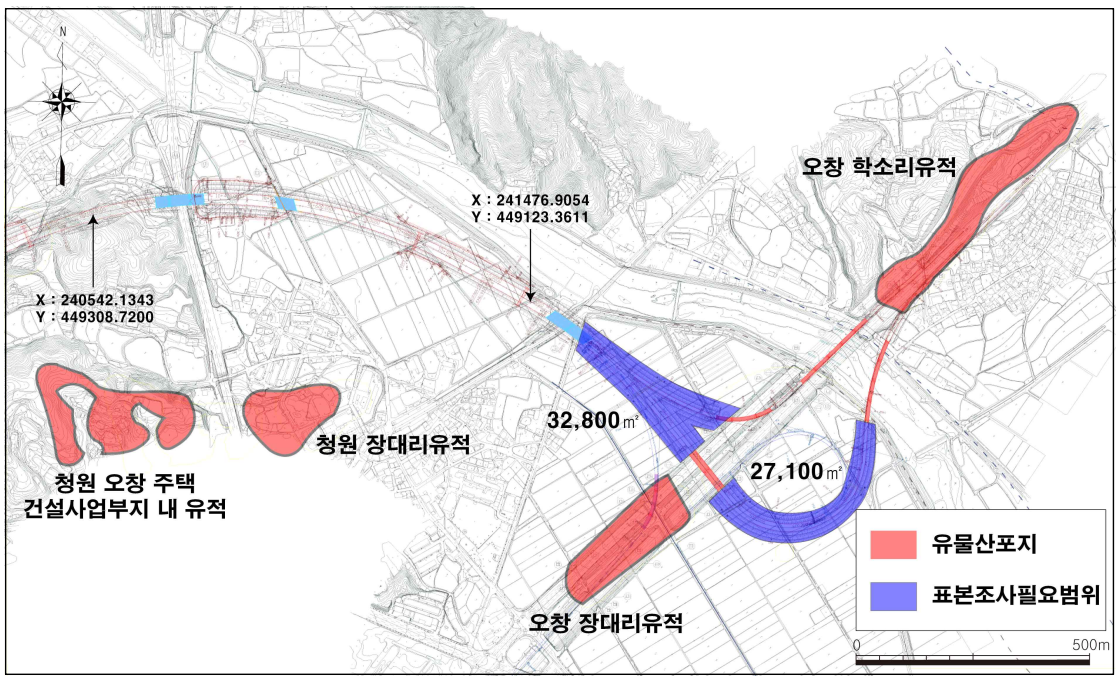

[지도 11] 제5구간 계획평면도 및 추가조사필요범위

61)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07.『청원 oo주택건설사업지구(오창 장대리 일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단, 종점부에는 508번 국도 건설공사 시・발굴조사된 오창 학소리유적과 장대리유적[62]이 매우 인접하여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청동기시대 생산 및 생활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오창 장대리유적의 경우 지형조건이 조사지역과 동일하고, 당시 취락의 구성 예로 볼 때, 미호천 주변 충적대지에 입지한 청동기시대 취락 또는 생산유적의 잔존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공사 시행 전 표본조사를 진행하여 유적의 존재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사 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5구간에서 표본조사가 필요한 범위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표 6] 5구간 내 표본조사 필요 범위 및 성격

구간	유물산포지	위치	성 격	표본조사 대상면적
5구간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59,900㎡)	STA 11+200~종점	청동기시대 생활 및 생산유적	32,800㎡
				27,100㎡

3. 자연마을 및 주요지명 조사

1) 옥산면(玉山面)

충청북도 청원군의 서쪽에 위치한 면이다. 면 소재지는 오산리이다. 면의 서부와 동부 지역에 산지가 발달하고 두 산지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중앙을 천수천(天水川)이 심한 곡류를 하면서 남류하여 미호천에 합류한다. 합류 지역 일대에 넓은 평야가 발달하고 있다. 현재 오산・덕촌・신촌 등의 15개 동리를 관할하고 있다.

조선 시대 청주목 서강외이면에 속했던 지역이다. 옥산은 면 소재지인 오산리의 중심 마을인 '오미'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즉 지명에서 '오미'는 흔히 '옥산'이나 '오산(烏山)'으로 표기된다. 이때 '玉'이나 '烏'는 '오'에 대한 음차표기이고, '산'은 '미'에 대한 훈차 표기이다. 이곳에서 면 이름은 옥산면으로 표기되었고, 법정 마을 이름은 오산리로 표기하고 있다.

『해동지도』에 서강외이면은 서남쪽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록서원(白鹿書院)과 동림사(桐林寺)가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청주)의 서강외이면에는 신원창(薪院倉)이 표기되어 있다. 『조선지도』의 서강외이면에는 소탄(所灘)이 표기되어 있고, 수신면 남쪽에는 금성창(金城倉)이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청주)에 의하면 서강외이면은 송산・신촌・어정・금성창 등의 18개 마을을 관할하였다. 『구한국행정구역일람』에 의하면, 1912년경 서강외이상면은 신촌・점촌・응봉촌 등의 35개 마을을 관할하였고, 서강외이하면은 청룡・모산・정척동 등의 30개 마을을 관할하였다. 1914년 옥산면으로 통합

62) 中原文化財硏究院, 『앞 책』.

・개칭되었으며 1949년 청주군에서 청원군으로 편제되어 오늘에 이른다.

(1) 수락리(水落里)

본래 청주군(淸州那) 서강외이상면(西江外二上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모일리(票速里)・수락리(水落里)를 병합하여, 수락리(水落里)라 명명하고 옥산면(玉山面)에 편입하였다.

- ○ 무중굴 : 수락리의 중심 마을이다. 마을 뒤[서쪽]에는 '차돌배기'란 산이 있는 데, 장마가 지면 이곳에 목포수를 형성한다.
- ○ 모일 : '무중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 분무골 : '무중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골짜기에 과거 풀뭇간[대장간]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불무골'은 지역에 따라서는 '야동(治洞)'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 ○ 치락골 : '무중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 가는골 : '무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 곡수고개(曲水) : '유터골' 남쪽에 있는 고개로, '유터골'에서 '곡수'로 갈 때 넘었다. 마을 이름 '곡수'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 농바골 : '무중골' 뒤[서쪽] '챔배기'와 '망덕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 농바위 : '무중골' 뒤[서쪽] '긋볕배기'와 '망덕산' 사이에 있는 바위.
- ○ 달지 : '모일' 앞[남동쪽]에 있는 논이다. '구레고개' 너머에 있다.
- ○ 당고개 : '분무골'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분무골'에서 금계리로 갈 때 넘었다. 서낭당이 있어 '당고개'로 부른다. 현재 2차선 포장도로가 되었다.
- ○ 덕수고개(德水-) : '모일' 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모일에서 사정2리 '덕수'로 갈 때 넘었다. 현재 2차선 포장도로가 되었다. 마을 이름 '덕수'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 망덕산 : '무중골' 뒤[서쪽]에 있는 해발 2715m의 산으로, 예전에 '망덕새가 있었다고 전하나 그 터를 알 수가 없다.
- ○ 매봉재 : '무중골' 동쪽 ';삼배기' 건너에 있는 산이다.
- ○ 모열고개 : '무중골'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무중골'에서 '모일'로 갈 때 넘었다. 마을 이름 '모일'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 바깥샘 : '무중골' 동쪽에 있는 샘이다. '바깥'과 '샘'으로 나뉘며 '마을 바깥쪽에 있는 샘'으로 풀이된다.
- ○ 부승골 : '모일'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 ○ 사라골(沙羅-) : '무중골' 뒤[서쪽] '차돌배기'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 잠장골 : '모일'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일'에서 사정2리 '덕수'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
- ○ 안산(案山) : '무중골' 남쪽에 있는 산이다.

○ 안샘 : ‘무중골’ 서쪽에 있는 샘으로, 지금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 양달말샘(陽-) : ‘무중골’의 ‘양달말’에 있던 바가지샘이다. 가정마다 샘을 파면서 없어졌다. 마을 이름 ‘양달말’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엄나무골 : ‘무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여미 : ‘모일’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과거 ‘수락휴게소’ 옆에 있던 들이나, 현재는 ‘수락휴게소’가 사라졌다. 경부고속국도 상행선 ‘청원휴게소’ 아래에 있다.
○ 여미둥범 : ‘모일’ 북동쪽 ‘여미’에 있는 웅덩이이다. 지금도 이 물로 농사를 짓는다. 들이름 ‘여미’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오앗가마 : ‘모일’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과거 주막이 있던 곳으로, ‘청원휴게소’ 밑이다.
○ 전자리 : ‘분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금계리로 가는 곳이다. 현재 청주곽씨(淸州郭民) 재실이 있다.
○ 철텃골 : ‘무중골’ 남쪽, ‘가는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름재 : ‘모일’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 지매가 : ‘무중골’ 동쪽, 경부고속국도 너머에 있는 들이다.
○ 치돌배가 : ‘무중골’ 뒤[서쪽]에 있는 산이다.
○ 천비논(千陣-) : ‘무중골’ 앞[남쪽]에 있는 들로, 수렁이 많다.

(2) 장남리(樟南里)

본래 청주군(淸州那) 서강외이상면(西江外二上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장남리(樟南里)와 북강외이면(北江外二面) 백현리 일부를 병합하여, 장남리(樟南里)라 명명하고 옥산면(玉山面)에 편입하였다.

○ 원장남(元揮南)/아랫장남(揮南)/하장남(下揮南) : 장남리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원장남’은 ‘장남리의 원 마을’을 뜻한다. 달리 아래에 있어 ‘아랫장남’ 또는 ‘하장남(下障南)’으로도 불린다.
○ 넘은들 : ‘원장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윗장남/상장남(上揮南) : 장남리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윗장남’이나 ‘상장남’은 ‘장남리 중 위에 있는 마을’을 뜻한다.
○ 잣고개/백현(1) : ‘윗장남’ 북쪽, ‘잣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잣고개’란 고개이름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구메방골 : ‘원장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인돌 모양의 큰 돌이 있다.
○ 넘은들샘 : ‘넘은들’ 서쪽에 있던 샘이다.
○ 돌간집 : ‘원장남’ 북쪽에 있던 집이다. 일제 때 이곳 산에서 돌을 채취하여 ‘용두천’ 제방을 쌓았다. 따라서 그때 돌을 캐기 위해 있던 집이다.
○ 뒷내 : ‘장내미’ 뒤[서쪽]에 흐르는 내로, ‘병천천’을 말한다.

○ 모롱고지 : ‘원장남’ 남쪽, 산기숨에 있는 모퉁이이다.
○ 물레방아거리 : ‘원장남’ 북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이곳에는 예전에 물레방아와 주막이 있었다.
○ 배나라 : ‘원장남’ 동쪽, ‘용두천’ 제방 가에 있는 들이다.
○ 보꼬질 : ‘원장남’ 북서쪽, ‘병천천’ 가에 있는 들이다. 봇물을 이용하여 농사짓는 곳이다.
○ 부엉이골 : ‘원장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엉이’와 ‘골’로 나뉘며, ‘부엉이가 사는 골짜기’로 풀이된다.
○ 북통 : ‘원장남’ 뒤[북쪽]에 있는 산이다. 동그란 모양이 마치 북처럼 생겼다.
○ 서낭당고개 : ‘원장남’ 북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원장남’에서 ‘보꼬실’이나 ‘구메방골’에 갈 때 넘었다. 참나무 고목 2그루가 있는 서낭당이었으나, 현재는 1그루만 남아 있다.
○ 수안들 : ‘원장남’ 서쪽에 있는 들로, 잡초가 우거진 벌 안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
○ 암내 : ‘장내미’ 앞[동쪽]에 흐르는 내로, ‘용두천’을 말한다.
○ 여기소 : ‘원장남’ 남쪽에 있는 못이다. ‘병천천’과 ‘용두천’이 합수하는 지점으로, ‘병천천’ 물이 돌아가는 모롱이라서 물살이 세고 깊었다. 현재 이 못은 경부고속국도가 개설되는 바람에 많이 메워졌다.
○ 용두천(龍頭川) : 충남 천안시 동면에서 발원하고 남류하여 오창면을 지나 옥산면 장남리에 서 ‘병천천’과 합쳐진 후 ‘미호천’ 본류에 합류한다. ‘용두천’은 이 천이 오창면 ‘용두리(龍頭里)’를 거쳐 흐르기에 붙은 이름이다.
○ 은골 : ‘원장남’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윗장남’과 경계를 이룬다.
○ 잣고개/백현(2) : ‘잣고개’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잣고개’에서 충남 천안시 병천면으로 갈 때 넘었는데, 현재 2차선 포장도로가 되었다.
○ 장남고개(韓南-) : ‘원장남’ 북서쪽, ‘서냥당고개’ 너머에 있는 고개이다. ‘원장남’에서 ‘보꼬실’이나 ‘구메방골’에 갈 때 넘었다. 마을 이름 ‘장남리’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장내미들 : ‘장내미’ 앞[남쪽]에 있는 들이다.

(3) 호죽리 (虎竹里)

본래 청주군(淸州那) 서강외이상면(西江外二上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반송리(盤松里)·봉천리(鳳川里)·학송리와 북강외이면(北江外二面) 화산리(華山里) 일부를 병합하여, 호죽리(虎竹里)라 명명하고 옥산면(玉山面)에 편입하였다.

○ 해평(1) : 호죽리는 오창읍 화산리(花山里)와 인접한 마을이다 따라서 화산리를 ‘윗범대’로, 호죽리를 ‘아랫범대’로 불러 왔다. 특히 ‘호죽리(虎竹里)’는 ‘아랫범대’의 ‘범대’에 대한 훈차표기이다. ‘범대’는 옛날 이곳에 범과 대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라 전한다.
○ 오리나뭇굴 : ‘무네미’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오리나뭇골’은 옛날 오리나무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

다. 지금은 수종(樹種) 개량으로 오리나무는 많지 않다.

○ 갱골 : ‘오리나뭇골’ 북쪽, ‘전냥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 한천동 : ‘갱골’ 북쪽 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한천동’은 찬 물이 나는 샘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이 마을에는 찬 샘이 2개가 있었는데 이 샘은 차면서도 수량이 풍부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다.

○ 골말 : ‘한천동’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도람말 : ‘골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바닷들/해평(2) : ‘해평’ 서쪽에 있는 큰 들이다. 바다같이 커서 ‘바다와 같은 들’이라는 뜻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 번답 : ‘도람말’ 북쪽에 있는 들로, 호죽리와 오창읍의 경계에 해당한다.

○ 색시골 : ‘해평’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색시가 위에서 굴러오는 돌에 깔려 죽었다 전한다.

○ 서낭당 : ‘한천동’ 동쪽에 있는 고개로, ‘한천동’에서 ‘안봉리’로 갈 때 넘었다. 과거 서낭당이 있었는데, 지금도 참나무가 남아 있다.

○ 아야골 : ‘해평’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원앙산 : ‘해평’ 남쪽에 있는 산이다. 금계리와 경계를 이룬다.

○ 임수골 : ‘도람말’ 앞[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철텃골 : ‘오리나무골’ 옆[동쪽] ‘안봉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한당골 : ‘해평’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안봉리(雅峰里) : ‘안봉산(雅峰山)’ 서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 음짓말t陰地-) : ‘안봉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음짓말’은 음지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양짓말t陽地-) : ‘음짓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짓말’은 양지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강촌(姜村) : ‘양짓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 통변[補邊] : ‘양짓말’ 옆[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 가장골 : ‘안봉리’ 앞[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까치말고개 : ‘강촌’ 동쪽에 있는 고개로, 강촌에서 오창읍 각2리 ‘까치말’로 갈 때 넘었다.

○ 다락골 : ‘강촌’ 북쪽, 산 너머에 있던 마을이다. 과거 절이 있던 곳이나, 현재는 절도 마을도 사라졌다.

○ 당마루 : ‘강촌’ 북쪽에 있는 들이다. 과거 절이 있었다.

○ 백단이 : ‘강촌’ 북쪽, ‘당마루’ 밑에 있는 들이다. 논에 모를 심으면 물이 부족해서 풀과 벼가 자라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논바닥이 하얗게 보인다고 전한다.

○ 사주봉 : ‘강촌’ 뒤[동쪽]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은 호죽리에서는 가장 높아 정상에 올라보면 사방이 다 잘 보인다.

○ 서번고개 : ‘강촌’ 동쪽에 있는 고개로, 강촌에서 소로리 ‘서번’으로 갈 때 넘었다.

○ 쉰다랭이 : ‘강촌’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안봉산(雅鳳山) : ‘안봉리’ 동쪽에 있는 산이다. 밑에 ‘호죽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학교는 폐교가 되었다. ‘안봉산’은 산 모양이 날아가는 기러기를 닮아 붙은 이름이다.

○ 정주골 : ‘강촌’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과거 사금을 채취하던 곳으로, 서낭당이 있었다.
○ 한천동고개 : ‘안봉리’ 서쪽에 있는 고개로 ‘안봉리’에서 ‘한천동’으로 갈 때 넘었다.

2) 오창읍(梧倉邑)

충청북도 청원군의 북부에 위치한 읍이다. 읍소재지는 장대리이다. 불당산(佛堂山)·취령산(鷲嶺山)·국사봉(國仕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경계로 서쪽에는 산지가 발달해 있고 동쪽에는 오창평야가 펼쳐진다. 동쪽 사면에는 미호천의 지류인 용두천이 흐르고 있어 평야를 형성한다. 동쪽에는 북쪽 진천에서 남류하는 미호천이 평야의 중심을 흐른다. 현재 여천·화산·유리 등의 34개 동리를 관할하고 있다.

조선시대 청주목의 북강외일면과 북강외이면에 속했던 지역이다. 작천(까치내) 즉 북강의 바깥에 위치하는 지역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청주)에 "오근원이 오근부곡 옛터에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오근창은 1669년(현종 10) 청주목사가 미호천 유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보관하기 위해 옛 오근원 터에 새로 지은 창고이다. '오창면' 지명은 '오근창'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근창은 전설에 의해 '오공창(蜈蚣倉)'으로도 불렸고, 청주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창'으로도 불렸다.

『여지도서』(청주)에는 북강외일면과 북강외이면 사이에 북창과 기암서원(機岩書院)이 표기되어 있고, 북강외일면의 남쪽에는 오근진(梧根津)이 표기되어 있다. 『조선지도』의 북강외일면과 북강외이면 사이에 북창이 표기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의 북강외일면에는 환희산과 작천(鵲川)이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청주)에 의하면, 북강외일면은 건천·화산·박지산·연방리 등의 33개 마을을 관할하였다. 1909년 북강외일면은 북강외일상면과 북강외일하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오창면으로 통합·개칭되었다. 1949년 청주군에서 청원군으로 편제되었고, 2007년 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1) 화산리 (花山里)

본래 청주군(淸州那) 북강외일상면(北江外一上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화산리(華山里) 일부를 가지고 화산리(花山里)라 명명하고 오창면(梧倉面)에 편입하였다. 오창면(梧倉面)은 2007년 1월 1일에 오창읍(梧倉邑)으로 승격하였다.

○ 윗말 : 화산리는 옥산면 호죽리와 인접한 마을이다. 예전부터 화산리와 호죽리를 합하여 ‘범대’로, 그 중 화산리는 ‘윗범대’로, 호죽리는 ‘아랫범대’로 불려왔다.
○ 아랫말 : 윗범대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가장골 : ‘윗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현재 ‘마을회관’ 뒤가 이에 해당한다.
○ 갈미봉 : ‘윗말’ 동쪽에 있는 산으로, 구룡리와 경계를 이룬다.
○ 갈미봉골 : ‘윗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갈미봉’ 밑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다낙골 : ‘윗말’ 남쪽에 있는 들이다.
○ 뱃골 : ‘윗말’ 남쪽, ‘다낙골’ 옆에 있는 들이다.

○ 바위배기 : ‘윗말’ 동쪽에 있는 산이다.
○ 빗골저수지(財水池) : ‘윗말’ 남동쪽 ‘빗골’ 위에 있는 방죽이다. 골짜기 이름 ‘빗골’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삼성봉 : ‘윗말’ 남쪽에 있는 산이다. 부모님 산소에 세 번씩 성묘했다거나. 세 정승이 날 좋은 자리가 있다거나, 골이 셋이 있다거나, 삼태성이 비쳤다거나, 세 성(姓)이 살았다거나 하는 유래담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삼성당’이란 지명이 있음을 볼 때 ‘삼성’은 ‘삼성당이 있던 곳’으로 풀이된다.
○ 삼성이 : ‘윗말’ 남쪽, ‘삼성봉’에 있는 들이다.
○ 생잣골 : ‘윗말’ 남동쪽, ‘빗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성산리 ‘질푼이’로 가는 길목이다.
○ 서낭고개 : ‘윗말’ 동쪽에 있는 고개이다. 과거 청주로 갈 때 넘던 고개로, 서낭당이 있었다.
○ 서번고개 : ‘윗말’ 남동쪽에 있는 고개로, 화산리에서 옥산면 소로리 ‘서번’으로 갈 때 넘었다. 마을 이름 ‘서번’으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산신바위(山神) : ‘윗말’ 동쪽, ‘바위배기’에 있는 바위이다. 이곳에서 정월 대보름날 산선제를 지낸다.
○ 안골 : ‘윗말’ 안쪽I복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욧골 : ‘윗말’ 서쪽에 있던 골짜기이다. 현재 ‘(주)청주컨트리클럽’ 부지로 편입되었다.
○ 장골 : ‘윗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골저수지 : ‘윗말’ 서쪽 ‘장골’에 있는 방죽이다. 골짜기 이름 ‘장골’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중구봉(重力峰) : ‘윗말’ 뒤[북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 157m이다. 아홉 봉우리로 되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청룡산(責龍山) : ‘윗말’ 동쪽에 있는 산이다.
○ 핫들 : ‘윗말’ 아래[남쪽]에 있는 들이다. ‘하’와 ‘들’이 사이시옷을 매개로 연결된 어형으로, ‘아래쪽에 있는 들’로 풀이된다.

(2) 성산리(星山里)

본래 청주군(淸州那) 북강외이면(北江外二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성산리(星山里)만으로 성산리(星山里)라 명명하고 오창면(梧倉面)에 편입하였다. 오창면(梧倉面)은 2007년 1월 1일에 오창읍(梧倉邑)으로 승격하였다.

○ 빌미기/별미기/별미/성산(星山) : 성산리의 중심 마을로, 오창 천안 도로의 북쪽 골짜기에 있다
○ 능골 : ‘빌미기’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능골’은 능을 쓸 만한 명당 터가 있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라는 것이다. 이 마을은 주로 청풍김씨(淸風金民)가 세거하는 집성촌인데, 실제로 청풍김씨의 오래된 묘도 여럿이 있다.
○ 질푼이/길풍 : ‘빌미기’ 남서쪽, ‘질푼이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질펀이’나 ‘질푼이’는 항아리처럼 우멍하기에 붙은 이름이다. 마을 앞들에 약수물당이 있는데,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전한다.
○ 검정산(-山) : ‘질푼이’ 남서쪽에 있는 해발 155m의 산이다.

○ 누에봉(-峰) : ‘빌미기’ 뒤[북동쪽]에 있는 산이다.
○ 두멍골 : ‘질푼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과거 긴 벼랑이 있어 ‘빌미기’란 마을 이름이 붙었다. 지형이 아늑하여, 예전에 군사들이 숨던 곳이라 전한다. 현재 ‘청주농고목장’이 들어 있다.
○ 둔터 : ‘빌미기’ 남쪽 도로 가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군사들이 머물던 곳이라 전한다.
○ 마검터(廳劍-) : ‘질푼이’ 동쪽 ‘두멍골’과 붙어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군사들이 ‘칼을 갈던 터’이라 전한다.
○ 배태재 : ‘질푼이’ 남쪽에 있는 고개로 ‘질푼이’에서 용두리로 갈 때 넘었다.
○ 번개들 : ‘빌미기’ 동쪽, ‘쇠비장골’ 아래에 있는 들이다.
○ 빌미기방죽 : ‘빌미기’ 동쪽에 있는 작은 저수지이다. 마을 이름 ‘빌미기’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삽테고개 : ‘질푼이’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질푼이’에서 용두리 ‘삼터1’로 갈 때 넘던 고개로, ‘삽테’를 거쳐 화산리 · 구룡리 · 용두리 등으로 갈 수 있다. 현재 ‘오창과학산엽단지’에 편입되어 포장도로가 되었다. 마을 이름 ‘삽테’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새잣골 : ‘빌미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잣골고개 : ‘벌미기’ 북쪽에 있는 고개로, ‘빌미기’에서 ‘새잣골’로 갈 때 넘었다. 골짜기 이름 ‘새잣골’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쇠비장골 : ‘빌미기’ 동쪽 목령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아가골 : ‘빌미기’ 남쪽, ‘능골’ 가기 전에 있는 골짜기이다. ‘
○ 안산(案山) : ‘빌미기’ 남쪽에 있는 산이다.
○ 안산고개(案山) : ‘빌미기’ 남쪽, ‘안산’에 있는 고개이다.
○ 어맹이 : ‘질푼이’ 남서쪽, ‘검정산’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용두리와 경계를 이룬다.
○ 윗샘 : ‘웃벌미기’에 있는 샘이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매년 정월 대보름에 고사를 지냈다.
○ 증산(簡山) : ‘벌미기’ 남서쪽에 있는 산으로, ‘능골’ 물과 ‘빌미기’ 물이 합쳐지는 곳이다.
○ 질푼이고개 : ‘빌미기’ 남쪽에 있는 고개로, ‘빌미기’에서 ‘질푼이’로 갈 때 넘었다. 현재 2차선포장도로가 되었다.
○ 질푼이들 : ‘질푼이’ 앞[남쪽]에 있는 들이다. 마을 이름 ‘질푼이’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질푼이물당 : ‘질푼이들’ 가운데에 있는 약물터이다. 위장병에 좋다고 한다. 들 이름 ‘질푼이들’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칠성봉(七星峰) : ‘능골’ 뒤[남서쪽]에 있는 산이다. 전언에 의하면, ‘칠성봉’은 일곱 봉우리로 되어 있어 붙은 이름이라 한다. 그러나 과거에 ‘칠성당(七星堂)’이 있어 붙은 이름이 아닌 가 추정한다. ‘칠성당’은 칠원성군(七元星君)을 주선으로 모신 당집을 뜻한다. 칠원성군은 북두의 일곱성군, 즉 탐랑성 · 거문성 · 녹존성 · 문곡성 · 염정성 · 무곡성 · 파군성의 일곱 선을 말한다.
○ 호골[虎谷] : ‘빌미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호골’은 ‘호랑이골’과 같은 뜻으로, ‘호랑이가 살던 골짜기’를 뜻한다.
○ 호골고개 : ‘빌미기’ 서쪽에 있는 고개로, ‘빌미기’에서 ‘호골’로 갈 때 넘었다. 골짜기 이름 ‘호골’

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안동네 : 성산2리는 '빌미기'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덕대'로 불린다. '

○ 나뭇갓재 : '안동네' 남쪽에 있는 마을로, 생성 역사가 100년을 넘지 않는다.

○ 마룻들 : '안동네' 남동쪽에 있는 큰 들이다.

○ 먹뱅이고개 : '나뭇갓재'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용두리 '먹뱅이'로 갈 때 넘던 고개로, 나무꾼들이 주로 이용했다. 들 이름 '먹뱅이'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사가장골 : '안동네'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쇠자국 : '안동네' 북동쪽 '사기장골' 밑에 있는 들이다. 마치 소 발자국과 같은 모양이다.

○ 장고개 : '안동네' 동쪽에 있는 고개로 '안동네'에서 오창장으로 갈 때 넘었다.

○ 지만들 : '안동네' 앞[동쪽]에 있는 들이다.

○ 질고개 ; '안동네' 남동쪽에 있는 고개이다.

(3) 복현리(卜峴里)

본래 청주군(淸州那) 북강외일하면(北江外一下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작성동(騙城洞)·서촌(西村)·송평리·복현촌(卜峴村) 일부를 병합하여 복현리(卜峴里)라 명명하고 오창면(梧倉面)에 편입하였다. 오창면(梧倉面)은 2007년 1월 1일에 오창읍(梧倉邑)으로 승격하였다.

○ 복고개(1)/원동네(元-) : 복현리 중앙, 고갯마루에 형성된 마을이다. '복고개' 북쪽에는 '새터'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과거 하천부지였다. 따라서 '복고개' 사람들은 북쪽 고개 너머도랑[현재 '새터' 마을 터]으로 빨래를 하러 오곤 했는데, 이 고개가 도랑과 연결되어 있는 까닭으로 '보고개'로 불렀고, 이것이 변하여 '복고개'가 되었다.

○ 분터골 : '복고개'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분터'는 '분토(初土)'의 모음 변동 어형으로, '쌀을 옳을 때에 섞는 희고 고운 흙'을 말한다. 이 '분토가 나는 골짜기가 '분토골'이고, 이것이 변하여 '분터골'이 된 것이다.

○ 새터/신촌{新村) : '복고개'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터'는 새로운 터에 조성된 마을이기에 붙은 이름이다. 이 마을은 과거 서쪽 '한고개' 쪽에서 물이 흘러 내려 토사가 쌓이던 하천 부지였다. 그러나 '복고개' 마을 터가 협소하여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마을이 조성되었다.

○ 독서골(讀書-)/서당골(書堂-) : '새터'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독서골도랑(讀書-) : '새터' 남쪽에 있는 도랑이다. '독서골'에서 흘러 내려 붙은 이름이다.

○ 독서골상봉(讀書-上峰) : '새터' 북서쪽, '독서골' 뒤에 있는 산이다. 골짜기 이름 '독서골'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복고개(2) : '새터' 남쪽에 있는 고개로 '새터'에서 '복고개(1)'로 갈 때 넘었다.

○ 서낭맹이 : '새터' 서쪽 '서낭당고개' 너머에 있는 들이다.

○ 철텃골/초서골(草塵) : '새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과거 이 골짜기에는 초서가 있었다.

○ 한고개/한현(閔峴) : ‘복고개’ 서쪽, ‘한고개’라는 고갯마루에 형성된 마을이다.
○ 각골 : ‘한고개(1)’ 서쪽에 있는 골짜기 이다.
○ 각골장등 : ‘한고개(1)’ 서쪽, ‘각골’에 있는 산등성이이다.
○ 구례 : ‘한고개(1)’ 앞, ‘양짓말’과 ‘음짓말’ 사이에 있는 들이다.
○ 구례넝골 : ‘한고개(1)’ 동쪽, ‘양짓말’ 너머에 있는 들이다.
○ 닥박골 : ‘한고개(1)’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물당고개 : ‘한고개(1)’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
○ 연암산(薰岩山) : ‘한고개(1)’ 남쪽에 있는 산이다. ‘연암’ 즉 ‘제비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지야집골 : ‘한고개(1)’ 서쪽, ‘각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기와집이 있었다 한다. ‘지야집’은 ‘기와집’의 방언형이다.
○ 평전(平田) : ‘한고개(1)’ 남쪽에 있는 밭이다. ‘평’과 ‘전’으로 나뉘며, ‘평평한 밭’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밭은 모양이 평평하다.
○ 한고개소류지(小潤池) : ‘한고개(1)’의 ‘양짓말’ 앞[남쪽]에 있는 방죽이다. ‘한고개(1)’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한고개(2)/서낭당고개 : ‘한고개(1)’ 동쪽에 있는 고개로, ‘새터’로 갈 때 넘었다. ‘한’과 ‘고개’로 나뉜다. ‘한’은 ‘하다[처’의 관형사형이니, ‘한고개’는 ‘큰 고개’로 풀이된다. 마을이름 ‘한고개’는 이 고개로 인해 붙은 것이다. 과거 서냥당이 있어 ‘서냥당고개’로도 불린다. 현재 2차선 포장도로가 되었다.

(4) 장대리(場垈里)

본래 청주군(淸州那) 북강외일하면(北江外一下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송계리(松溪里)·부곡동(富谷洞)·상조양(上朝陽)·장대리(場垈里)·송평리(松坪里)·복현촌(卜峴村) 일부를 병합하여 장대리(場垈里)라 명명하고 오창면(梧倉面)에 편입하였다. 오창면(梧倉面)은 2007년 1월 1일에 오창읍(梧倉邑)으로 승격하였다.

○ 장터(場-)/장대(場垈) : 장대리의 중심 마을로, 오창장이 서는 곳이므로 붙은 이름이다.
○ 소년골 : ‘장터’ 남동쪽에 있는 들이다.
○ 시장통(市場通) : ‘장터’ 중앙에 있는 장터이다. 지금도 예전처럼 5일장이 선다.
○ 양지편(陽地便) : ‘장터’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산지촌(山地村) : ‘양지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셋골 : ‘산지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셋골고개 : ‘산지촌’ 동쪽에 있는 고개로, ‘산지촌’에서 ‘셋골’로 갈 때 넘었다.
○ 암산(岩山) : ‘산지촌’ 앞[남쪽]에 있는 산이다. 산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어, 일제 때 바위를 깨던 곳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바위산’으로도 나타난다.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 문화재 보존대책(현황)

○ 역사, 고고(古考) 분야

[표 7] 조사 현황

총면적	사업시행 면 적	입회조사 면 적	발굴조사 면적			보존면적	
			시굴	표본	정밀	일부	이전
1,322,272㎡	1,128,384㎡	-	133,988㎡	59,900㎡	-	-	-

[표 8] 조사대상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500m 이내)

연번	유 적 명	위 치	시 대	유적 성격	이격 거리 (m)	비 고
1	충비 삼월의 비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6	조선	기념물	약 80m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현상변경 신청대상)
2	이효석 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7	조선	민묘	약 95m	
3	이효석 신도비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53-1	조선	신도비	약 250m	
4	이사혜 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20-1	조선	민묘	약 250m	
5	김공예 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1	조선	민묘	약 390m	
6	청풍김문 쌍효각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1	조선	정려	약 200m	
7	청원 장대리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324, 327	선사 ~삼국	유물 산포지	약 490m	
8	오창 학소리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학소리	청동기 ~조선	생활유적 무덤유적	STA 0+692. 4318	발굴조사 (중원문화재 연구원)
9	오창 장대리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청동기	생활유적	STA 0+395. 2272	
10	청원 오창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81	조선	유물 산포지	약 460m	
11	오창 대중골프장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산90임 일원	시대 미상	민묘	약 130m	발굴조사 (중원문화재 연구원)
12	능골 유물산포지 (제9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6+600. 0000	

연번	유 적 명	위 치	시 대	유적 성격	이격 거리 (m)	비 고
13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00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제8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5+800.0000	
14	질푼이 유물산포지 (제7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약 120m	
15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제6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4+600.0000	
16	화산리 유물산포지② (제5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약 30m	
17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제4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3+400.0000	
18	호죽리 유물산포지 (제3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호죽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1+700.0000	
19	오창 그랜드 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백현리 일원	삼국 ~조선	유물 산포지	약 200m	
20	백현리 유물산포지 (제2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약 435m	
21	수락리 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산2-1임 일원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15+870.0643	

2. 종합고찰 및 조사단의견

이번 조사는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로,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일원에 해당된다. 조사면적은 1,322,272㎡(연장 12.1km)이다.

조사지역은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지와 산지 사이를 흐르는 하천을 따라 조성된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100년간 눈에 띄는 지형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지조사결과, 기존에 실시된 지표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 및 분묘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7개의 유물산포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 외에도 1개의 유물산포지를 새롭게 찾아 **총 8개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조사지역의 종점부에 해당하는 장대리 일원은 인접한 오창 학소리·장대리유적의 발굴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취락 및 생산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표본 및 시굴조사가 필요한 범위와 면적은 [표 2~6], [지도 7~11]와 같다.**

이 외에 능선 정상부와 경사가 심한 사면부, 그리고 현재 논으로 이용 중인 지역에서는 유물 또는 유

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형상으로도 능선 정상부의 폭이 좁고 사면부의 경사가 급한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장유구의 분포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굴조사 및 표본조사 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지표상에 노출된 문화유적의 흔적과 지형적인 특징을 포함한 주변의 환경과 현상만으로 유적의 잔존가능성과 그 분포범위 등을 추정해야만 하는 조사 방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현지 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 문화유적의 흔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진행시 매장문화재가 노출된다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과 조사기관에 신고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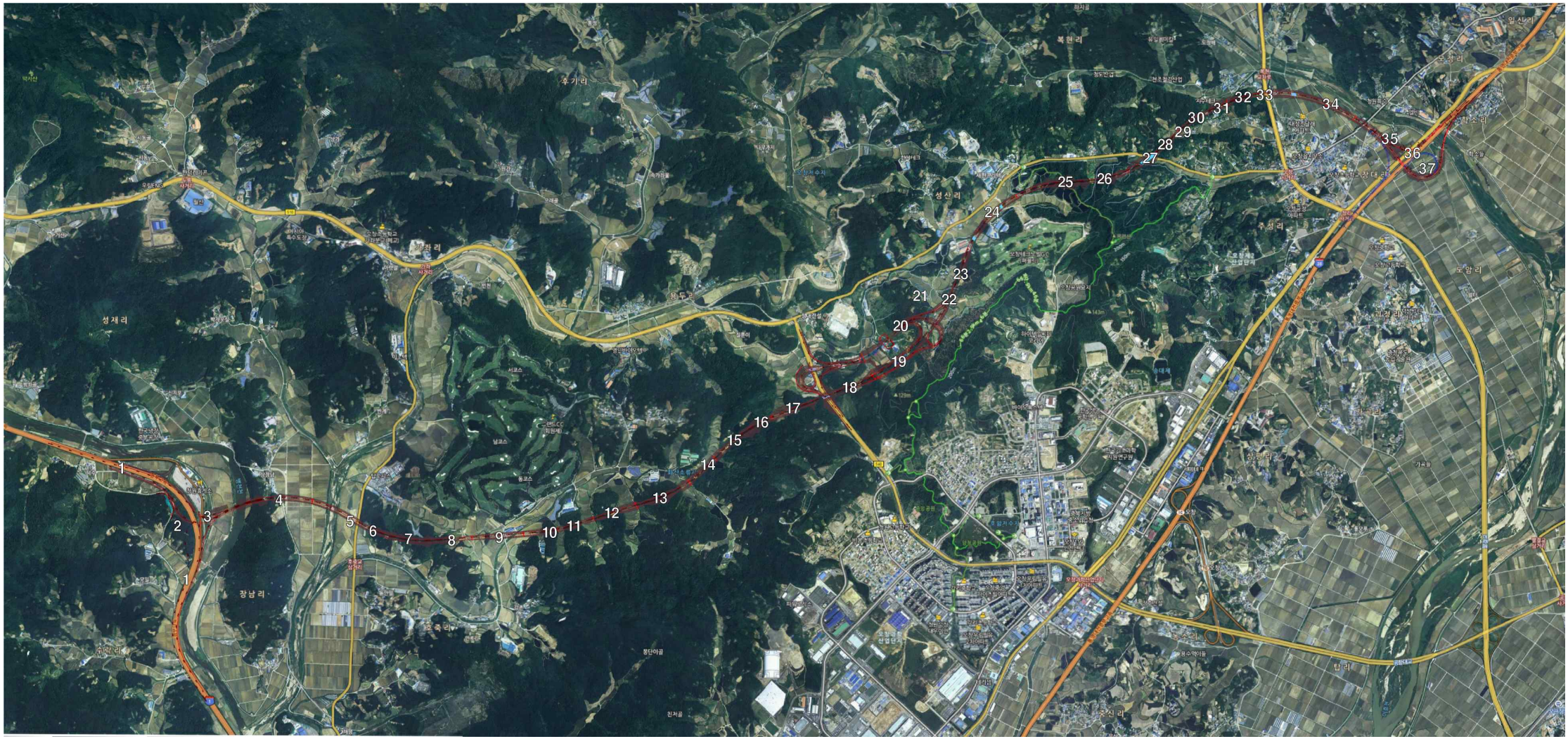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현 장 조 사 사 진



[사진 6] 청원휴게소 경부고속도로 분기점 전경(1)



[사진 7] 청원휴게소 경부고속도로 분기점 전경(1)



[사진 8] 수락리 유물산포지 전경(1)



[사진 9] 수락리 유물산포지 전경(2)



[사진 10] 청원휴게소 - 0+200 전경 (3)



[사진 11] 1+200 ~ 0+500 전경 (4)



[사진 12] 0+500 ~ 1+200 전경 (5)



[사진 13] 1+200 ~ 1+500 근경 (6)



[사진 14] 1+200 ~ 1+500 근경 (6)



[사진 15] 호죽리 유물산포지 전경 (7)



[사진 16] 호죽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7)



[사진 17] 2+0 ~ 2+500 원경 (8)



[사진 18] 2+600 ~ 2+700 전경 (9)



[사진 19] 2+700 ~ 2+800 근경 (10)



[사진 20] 2+800 ~ 2+900 근경 (11)



[사진 21]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전경 (12)



[사진 22]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전경 (12)



[사진 23] 3+700 ~ 4+0 원경 (13)



[사진 24] 3+700 ~ 4+0 원경 (13)



[사진 25] 4+100 ~ 4+500 원경 (14)



[사진 26] 4+100 ~ 4+500 근경 (14)



[사진 27]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근경 (15)



[사진 28]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수습유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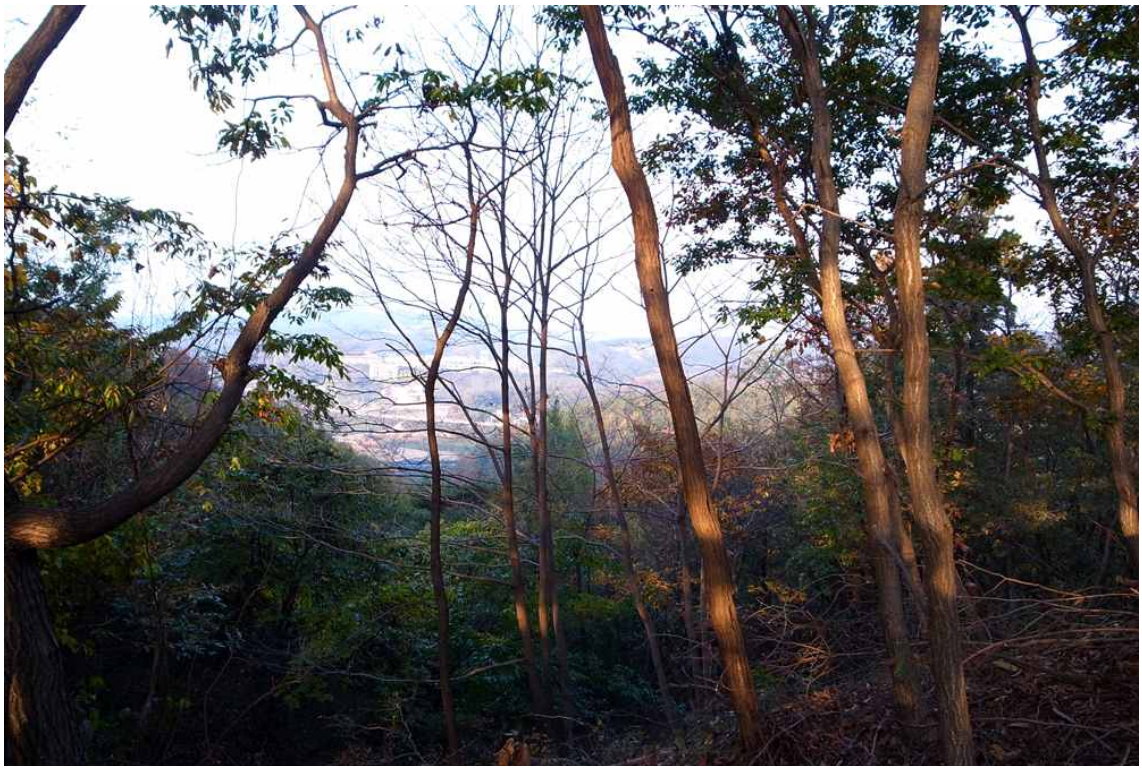

[사진 29] 4+800에서 바라 본 시점부 전경 (16)



[사진 30 5+100 계곡부 경작지 전경 (17)



[사진 31] 5+800에서 바라 본 성산리 유물산포지 (18)



[사진 32] 성산리 유물산포지 근경 (19)



[사진 33] 성산리 유물산포지 근경 (19)



[사진 34] 성산리 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원경 (20)



[사진 35] 청풍김씨 묘역 수습 유물 (21)



[사진 36] 능골 유물산포지 전경 (23)



[사진 37] 능골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23)



[사진 38] 7+900 주변 경작지 전경 (24)



[사진 39] 8+300 주변 경작지 전경 (25)



[사진 40] 8+300 능선 근경 (25)



[사진 41] 8+800 능선 근경 (26)



[사진 42] 목령산 북쪽 사면부 근경 (27)



[사진 43] 9+300 근경 (27)



[사진 44] 9+300 능선 정상부 근경 (28)



[사진 45] 9+400 경작지 근경 (29)



[사진 46] 복현리 유물산포지 근경 (30)



[사진 47] 복현리 유물산포지 근경 (31)



[사진 48] 복현리 유물산포지 근경 (31)



[사진 49] 복현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31)



[사진 50] 10+100 사면 근경 (32)



[사진 51] 10+200 사면 전경 (33)



[사진 52] 모정교 - 복현사거리 전경 (34)



[사진 53]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35)



[사진 54]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36)



[사진 55]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37)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table>
<tr><td rowspan="4">사업
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3">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td><td>사업기간</td><td colspan="2">2013년 8월~2017년 7월</td></tr>
<tr><td>사업지역</td><td colspan="6">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일원</td></tr>
<tr><td rowspan="2">면 적</td><td>전체사업면적</td><td colspan="2">1,322,272㎡(연장 12.1km)</td><td rowspan="2">사업목적</td><td colspan="2" rowspan="2">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td></tr>
<tr><td>지표조사면적</td><td colspan="2">1,322,272㎡(연장 12.1km)</td></tr>
<tr><td>사 업
시행자</td><td>기 관 명</td><td colspan="2">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주)</td><td>연락처</td><td colspan="2">Tel.070-4421-8690
Fax.02-512-3480</td></tr>
<tr><td rowspan="7">지표
조사</td><td rowspan="5">조사기관</td><td>고고·역사분야</td><td>(재)한국선사
문화연구원</td><td>책임조사원</td><td>손명수</td><td>조사원 이하</td><td>신승철 · 이신복</td></tr>
<tr><td>민속분야</td><td></td><td>책임조사원</td><td></td><td>조사원 이하</td><td></td></tr>
<tr><td>수중분야</td><td></td><td>책임조사원</td><td></td><td>조사원 이하</td><td></td></tr>
<tr><td>고건축분야</td><td></td><td>책임조사원</td><td></td><td>조사원 이하</td><td></td></tr>
<tr><td>자연문화재</td><td></td><td>책임조사원</td><td></td><td>조사원 이하</td><td></td></tr>
<tr><td>조사기간</td><td colspan="6">2012. 08. 29. ~ 2013. 01. 08.
(사전조사 3일, 현장조사 2.5일, 정리 및 분석 2.0일, 보고서 작성 5.0일)</td></tr>
<tr><td>조사비용
*계약금액
기 준</td><td colspan="6">고고, 역사 분야 15,400,000원 / 민속 분야 원 / 수중 분야 원 / 고건축 분야 원</td></tr>
<tr><td rowspan="10">조사
결과</td><td rowspan="2">주변문화재
조사결과
(500m 이내)</td><td>지정문화재
(21곳)</td><td colspan="5">충비 삼월의 비(약 80m 이격, 현상변경신청대상)</td></tr>
<tr><td>비지정문화재</td><td colspan="5">이효석 묘 · 신도비, 이사혜 묘, 김공예 묘, 청풍김씨 쌍효각,
청원 장대리유적, 오창 학소리유적 등</td></tr>
<tr><td colspan="2">사업부지 내
문화재 조사결과</td><td colspan="5">■ 유적 있음 □ 유적 없음</td></tr>
<tr><td rowspan="2">지상문화재</td><td>기존</td><td colspan="5">-</td></tr>
<tr><td>신규</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매장문화재</td><td>기존
(7건)</td><td colspan="5">수락리 유물산포지, 호죽리 유물산포지,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 ③,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oo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성산리 유물산포지, 능골유물산포지</td></tr>
<tr><td>신규
(2곳)</td><td colspan="5">복현리 유물산포지,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td></tr>
<tr><td rowspan="2">건축물</td><td>기존</td><td colspan="5">-</td></tr>
<tr><td>신규</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민속자료</td><td>기존</td><td colspan="5">-</td></tr>
<tr><td>신규</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조사기관
종합 의견</td><td colspan="6">현지조사결과, 조사지역은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지 지형과 계곡부 및 하천 주변에 조성된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100년간 눈에 띄는 지형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지역 내에서는 고려~조선시대의 생활 및 분묘유적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8개의 유물산포지를 확인하였으며, 오창 장대리유적 주변 충적대지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사 시행 전 이들 지역에 대한 시굴 및 표본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td></tr>
</table>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01월 08일

기 관 명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연번	② 문화재명	③ 소재지	④ 면적	⑤ 시대	⑥ 종류	⑦ 유적구분		조사의견			⑪ 비고
						기존	신규	⑧ 의견구분	⑨ 조사면적	⑩ 사유	
1	충비 삼월의 비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6	-	조선	비	∨		현상변경 신청대상	-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제14호)	
2	수락리 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106,936㎡	조선	유물 산포지 · 분묘	∨		시굴조사	16,000㎡	유물산포지 내 다수의 고묘확인함	
3	호죽리 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호죽리	85,129㎡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		시굴조사	21,300㎡	고려~조선 토기 · 옹기 편 수습됨	
4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12,891㎡	조선	유물 산포지	∨		시굴조사	4,600㎡	기존조사시 유물수습됨	
5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39,540㎡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		시굴조사	14,800㎡	고려~조선 토기편 수습됨	
6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oo공동주택건설 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102,328㎡	조선	유물 산포지	∨		시굴조사	26,488㎡	기조사시 백자편, 토기편 수습됨	토취장 부지 포함
7	성산리 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2,410㎡	조선	유물 산포지 · 분묘	∨		시굴조사	19,700㎡	유물산포지 내 다수의 고묘확인함	
8	능골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능골	60,642㎡	조선	유물 산포지	∨		시굴조사	20,600㎡	백자편 등 생활관련 유물 수습됨	
9	복현리 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복현리	10,560㎡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	시굴조사	10,500㎡	고려~조선 토기 · 백자 편 수습됨	
10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59,900㎡	청동기	유적 분포 추정지		∨	표본조사	59,900㎡	주변일대 청동기 유적 인접함, 입지조건상 청동기 유적 가능성 높음	

4.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결과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 주민설명회 결과 보고

광역도시도로과 이강녕 事('12.10.30)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추진현황)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공고**(9.21~10.30) 및 **주민설명회**(10.29) **개최**

○ 일 시 : 2012.10.29(월) 14:00~16:00

○ 장 소 : 청원군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

○ 참석자 : 청원군 박정희의원, 변재일의원 지역구 전해일 사무소장, 충청북도 도로과 정시영과장, 청원군 임종호 건설과장, 환경과 박명옥계장 등
유재준(상장남), 박재규(백현리), 청풍김씨 종친회 김숙영 등 지역주민 174명 참석

□ 이슈사항

○ **돛대산** 통과구간 **직선 및 터널화** 요구(상장남마을)

○ 종중부지 편입에 따른 **소작농 보상**대책 필요(서오창IC 청풍김씨)

○ **노선 우회** 요구(이종호, 이철한)

○ 편입부지중 **잔여지 보상** 및 **대토** 요구

□ **향후 대응계획**

○ **공청회** 요구 **방지**(11.7限)를 위해 주요 마을별 **접촉** 및 **설득**

□ **향후 일정계획**

○ '12.11.7(수) **주민의견 취합**

○ '12.12월中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공청회 요구 없을 時)

사 진 대 지





사 진 대 지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월) 14:00,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

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김의간	오창읍 성산리	김의간	
2	김진강	〃	[illegible]	
3	이병천	옥산면 장남리 139	[illegible]	
4	조성권	오창읍 장대리 324-6	[illegible]	
5	류재현	청주 용암동	[illegible]	
6	신수일	청원 백현리	[illegible]	
7	김창순	청원 옥산면 장남리 1-1	김	
8	김성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45-2	[illegible]	
9	박한미	우림2차 607, 1004호	[illegible]	
10	박종오	각리 우림 1차	[illegible]	
11	안원경	성산 277-9	[illegible]	
12	윤희현	충북도청 도로과	[illegible]	
13	이호	〃	O/C	
14	최미래	충북청원군 오창읍 210		
15	유원선	오창 백현리 138	[illegible]	
16	박정선	오창 창리	[illegible]	
17	이성원	옥산 장남리	[illegible]	
18	윤용구	청원 오창 각리	[illegible]	
19	최성주	옥산 조국리	[illegible]	
20	김인재	북편지 71-2	[illegible]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월) 14:00,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

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주)선일	선배 21-1	[illegible]	
2	김진우	오창 성산203	[illegible]	
3	이순녀	오창 가로리	[illegible]	
4	김상노	진천군 문백		
5	정영희	각리 중앙Ⓐ206-506	[illegible]	
6	김을영	오창 장대27-1	[illegible]	
7	김건영	백년리 134-4	[illegible]	
8	김명환	장대리 308-3	[illegible]	
9	이이섭	양청리 177-14	[illegible]	
10	이민세	장대리 321	[illegible]	
11	계애희	구룡리 408-1	[illegible]	
12	이명옥	각리 645-1 코아누Ⓐ307-1202	이명옥	
13		진천군 문백 [illegible]	박용식	
14	김형옥	각리 중앙하이크	김형옥	
15				
16				
17				
18				
19				
20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월) 14:00,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

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서순옥	오창읍 최산리 78	[illegible]	
2	[illegible]	〃 [illegible] 432-9	[illegible]	
3	윤옥녀	〃 409-18	[illegible]	
4	김 영애	〃 양청리 732-9	[illegible]	
5	이 상동	〃 [illegible]	[illegible]	
6	김 [illegible]	〃 [illegible] 304-1004	[illegible]	
7	이 재식	옥산 오산리 211-3	[illegible]	
8	한 [illegible]	오창읍 [illegible] 1[illegible]	[illegible]	
9	자 [illegible]	오창읍 양천리 773-5	[illegible]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 민 설 명 회 참 석 자 명 부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월) 14:00,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

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정 진평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63	[illegible]	
2	이 중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주공 A111-1502	[illegible]	
3	박 상래		백현리	
4	김 기옥		[illegible]	
5	이 숙희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45-2	[illegible]	
6	위 원근	오창구 동 405-2	[illegible]	
7	김 상희	오창. 양지 34-2	[illegible]	
8	이 중희	〃 134	[illegible]	
9	김 신희	〃 〃 18-2	[illegible]	
10	박 병순	〃 성산리 183-1	[illegible]	
11	강 정욱	성산리 302-2	[illegible]	
12	임 창주	성산리 303	[illegible]	
13	안 승철	성산리 144-3	[illegible]	
14	김 재은	우림차 A 111-1701	[illegible]	
15	권 영무	옥산면 장남리	[illegible]	
16	신 [illegible]	고려동 해대 A	[illegible]	
17	김 진 [illegible]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183-1	[illegible]	
18	장 영순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409-14	[illegible]	
19	박 혜숙	오창 [illegible] 대구 [illegible] A	[illegible]	
20	소 정복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97-1	소 정복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월) 14:00,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

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우영택		[illegible]	
2	정 춘	오창 하산 [illegible]	[illegible]	
3	김길환	우림그차 608동 1005	[illegible]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월) 14:00,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

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김해동	청원 오창읍 성산리	[illegible]	
2	김윤희	청원군 오창읍 일신리 284-2	[illegible]	
3	오병권	청원군 오창읍 리산 83	오병권	
4	이종배	오창읍 학소리 286-1	[illegible]	
5	박영준	오창읍 성산리 250	[illegible]	
6		복현 3구 중신읍	[illegible]	
7	전영숙	오창읍 각리 우렁2차	[illegible]	
8	이효순	각리 우렁2차 615-50	[illegible]	
9	김용원	오창읍 유리 480	[illegible]	
10	허명	옥산면 도곡리 147	허명	
11	박재규	오창읍 백련2구 141	[illegible]	
12	李[illegible]	梧金 [illegible]	[illegible]	
13	金植永	〃 복현리 166	[illegible]	
14	이광서	오창읍 성산1길 86	이광서	
15	연규호	장남리 19-1	연규호	
16	정순자	문의면 미천리 228-121	[illegible]	
17	김용희	오창읍 가좌리 178-1	[illegible]	
18	유명자	〃 각리 대우이안 7으로 08	[illegible]	
19	김현경	오창읍 양리리 [illegible]	[illegible]	
20	정운모	각리 637 중앙기로 19-1	[illegible]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월) 14:00,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

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오 광 교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46	[illegible]	
2	윤 영 자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46	윤 영 자	
3	김 한 용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66	[illegible]	
4	허분이	〃 오창읍 꿈양하이츠 2013동 404호		
5	유재준	〃 옥산면 장남리 7-4 우원 2차-612	[illegible]	
6	황 선 옥	청원군 오창과학단지 1604호	[illegible]	
7	최용근	오창읍 각리 645-1	[illegible]	
8	유윤식	성산리 27-1	[illegible]	
9	조 한 태	오전리	[illegible]	
10	정 주 상	장 남리 1-1	[illegible]	
11	반진용	청주상당 수동 168-12	[illegible]	
12	전 정 원	청천 백현	[illegible]	
13	배병제	외제 227	배병제	
14	전 옥 자	청원군 오창읍 중앙로 65 601동 1306호 우림2차 A	[illegible]	
15	오 대 석	오창읍 녹현리	[illegible]	
16	김 태 중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illegible]	
17	손 성 진	청주시 금천동	[illegible]	
18	김 영 권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6번지	[illegible]	
19				
20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월) 14:00,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

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홍정덕	충북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4H6	홍정덕	
2	조예숙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조예숙	
3	윤복상	〃 〃 우림 1차	윤복상	
4	차미옥	〃 〃 양청리 757-4 303	[illegible]	
5	도명수	〃 오창우림 Ⓐ 111동 604	도명수	
6	박병희	〃 양청리 757-4 303	박병희	
7	金泰稜	양청리 719-1 제	[illegible]	
8	이선재	오창리 각리 [illegible]	[illegible]	
9	이준호	우림1차 108동 1004호	[illegible]	
10	이숙재	코아루 303 1805	[illegible]	
11	김영숙	한라Ⓐ 809동 702호	[illegible]	
12	곽미국	중앙Ⓑ 201-1802	[illegible]	
13	최홍규	청주 용암1동 임광Ⓐ 102-704	[illegible]	
14	석진환	청원군 오창읍 백현		
15	김광복	청원군 오창읍 백현		
16	정동래	청원군 오창읍 백현		
17	서분예	청원군 오창읍 백현		
18	김현순	청원군 오창읍 백현		
19	성영식	오창읍 성산리		
20	은현서	〃	[illegible]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월) 14:00,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

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창 정숙	울장동 현대 APT H-804	[illegible]	
2	신주호	오창읍 여천2리 374	[illegible]	
3	한익순	오창읍 복현1리 198	한익순.	
4	한응수	오창읍 복현3구 162	한응수.	
5	金[illegible]	청주시 흥덕동 [illegible] A 101-1302	[illegible]	
6	최익준	오창읍 일신리 263-1	[illegible]	
7	정신훈	〃 여천리 488	[illegible]	
8	최 성[illegible]	〃 각리 637-1 한라Ⓐ 804-703	최성[illegible]	
9	유 신자	오창읍 각리 쌍용 904-1202	[illegible]	
10	윤현주	〃	[illegible]	
11	하상[illegible]	성산리 250번지	[illegible]	
12	김찬영	성산리 13[illegible]	[illegible]	
13	한 [illegible]	성산리 123-3	[illegible]	
14	이 일[illegible]	각리 [illegible] 우리 [illegible] 1[illegible]-1202	[illegible]	
15	이용빈	각리 645-1 코아누Ⓐ 303-1502	[illegible]	
16	오종호	오창읍 최산리 87	[illegible]	
17	이 [illegible]	[illegible] 3길 26	[illegible]	
18	오정호	오창읍 농소리	[illegible]	
19	박춘배	오창읍 창리 5리	[illegible]	
20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월) 14:00,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

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윤경희	청원군 오창읍 대우A 711-202	[illegible]	
2	곽성환	청주시 복대동 707-1P	[illegible]	
3	허경춘	오창읍 도암리 24-7	[illegible]	
4	엄명희	오창읍 복현리 20-11	[illegible]	
5	이종열	오창읍 양청리 773-5호	[illegible]	
6	이주경	오창읍 우림2차 617-1303	[illegible]	
7	김옥분	구리		
8	이미숙	한라Ⓐ 822/1603	[illegible]	
9	이숙자	오창읍 창리 46-4	[illegible]	
10	이숙희	〃 〃 46-4	이숙희	
11	박상래	청원군 오창 산146.		
12	김경산	〃 내수읍 세고리 161	김경산	
13	강장우	〃 오창읍 중앙A 207-9아	[illegible]	
14	정시영	충북도청 도로과	[illegible]	
15	장덕희	청원군 오창읍 우림Ⓐ 605/101	[illegible]	
16	권영석	〃 백천리 185-K	[illegible]	
17	정선자	〃 〃 8번리	[illegible]	
18	한상래	청주시 육량동 오성계	[illegible]	
19	김인국	〃	[illegible]	
20	신유철	오창읍 각리 647	[illegible]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월) 14:00,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

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유 영열	오창읍 갈리 코아루 340동 1601	[illegible]	
2	오 병섭	〃 화산리 89	[illegible]	
3	양 인석	모리 [illegible]	[illegible]	
4	김 진호	오창 백현리 903	[illegible]	
5	이 조기	청주시 산남 대원 2차 [illegible]	[illegible]	
6	정 천영	한라 ㉮ 807-1302	[illegible]	
7	윤 길동	한라 ㉮ 807-1302 [illegible]	[illegible]	
8	이 호길	오창우림1차 102-604	[illegible]	
9	이 [illegible]	오창읍 [illegible] 3-2	[illegible]	
10	김 인영	청주시 상당구 [illegible] 70	[illegible]	
11	신 용철	오창읍 모리 169	[illegible]	
12				
13				
14				
15				
16				
17				
18				
19				
20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

2013. 4

1. 사업의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 오창읍

○ 사 업 기 간 : 2013년 ~ 2017년(공용개시년도 2017년)

○ 사업시행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 승 인 기 관 : 국토해양부

○ 사 업 비 : 약 2,300억

■ 사업규모 및 도로제원

구 분		사업규모 변경내용	비 고
도로구분		지방지역 고속도로	
연장		12.1㎞	
차로수		4차로(본선 23.4m/연결로 11.7~23.4)	
설계속도		본선 : 100㎞/h, 연결로 : 40~60㎞/h	
주요구조물	교량	22개소/2,305m	
	생태이동통로	2개소(육교형)	
출입시설		JCT 2개소 / IC 1개소	
영업소		2개소(서오창본선영업소, 서오창IC영업소)	
유지관리사무소		1개소	서오창IC영업소 통합

구 분		단위	본 선 (2방향 4차로)	연결로 구간			
				JCT		IC	
				1방향1(2)차로	2방향2(4)차로	1방향1(2)차로	2방향2(3)차로
총폭원		m	23.4	8.1(11.7)	16.2(23.4)	7.6(11.2)	14.7(18.3)
차도		m	4×3.6 = 14.4	3.6 (2×3.6=7.2)	2×3.6=7.2 (4×3.6 = 14.4)	3.6 (2×3.6=7.2)	2×3.6=7.2 (3×3.6=10.8)
중앙분리대		m	3.0	–	3.0	–	2.5
길어깨	좌측	m	3.0	1.5	3.0	1.5	2.5
	우측	m	3.0	3.0	3.0	2.5	2.5

주) 1, 연결로 JCT구간 중앙분리대 3.0, 길어깨 3.0m, 그 외 구간 2.5m 적용
2. 연결로 JCT구간 중 2방향 4차로구간은 본선 횡단구성과 동일함
3. ( )는 JCT 외 구간 폭원 및 길어깨, 양방향 3차로 도로제원을 나타냄

■ 계획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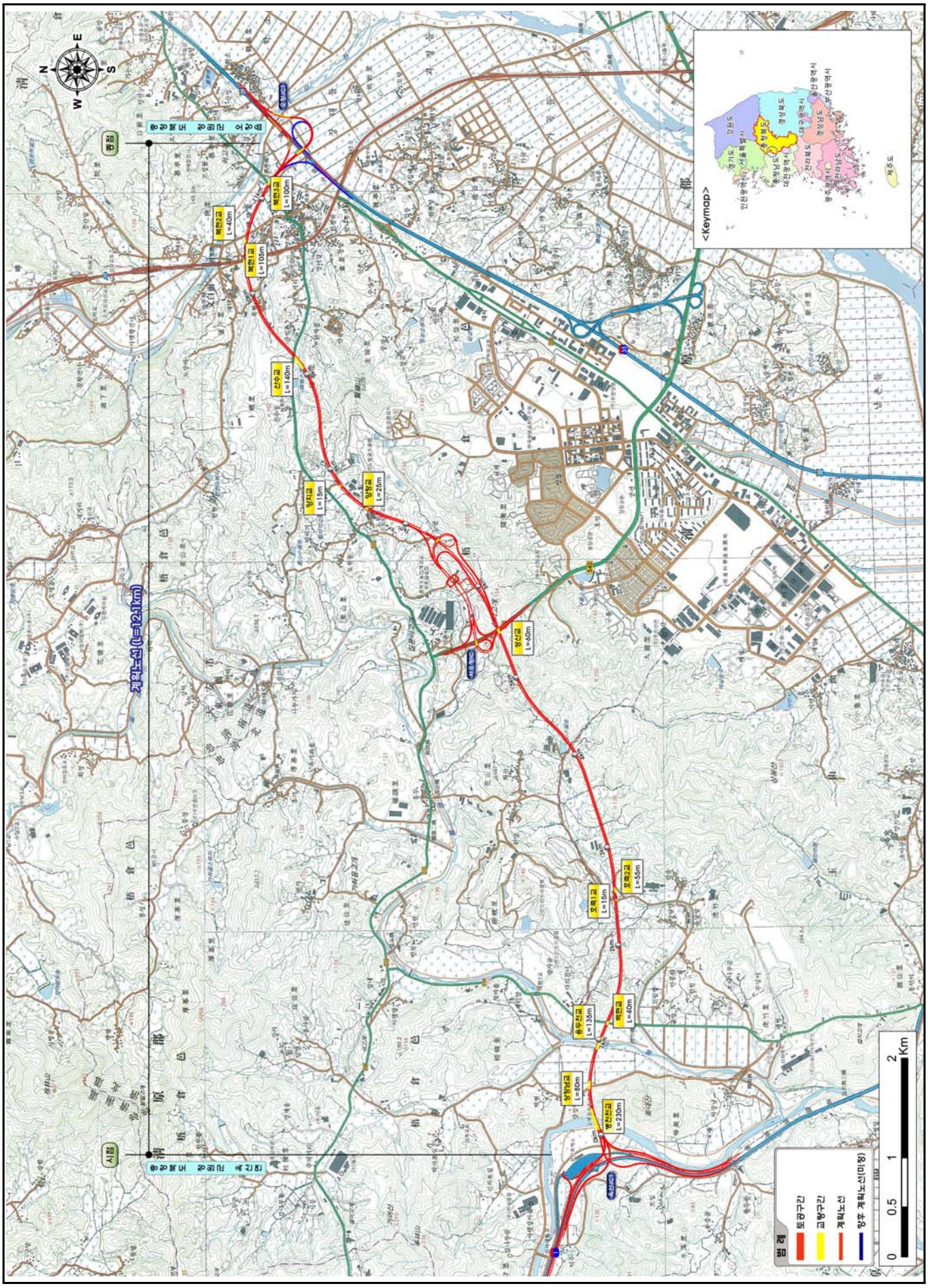

2. 주요 보완의견 반영사항

구 분	보 완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보완서 쪽
수 질	○ 수질오염총량 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 제3단계('16~'25)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제3단계 지역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한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누락되어 있음	○ 반영 -제3단계 지역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한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제시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득하였음 (청원군, 승인문서 사본 첨부)	p.27~29
지형 · 지질	○ 생태통로계획 -단절 능선축(만뢰지맥 등) 구간에 대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제시된 생태통로의 위치 및 규모를 검토한 결과 지형적 · 생태적 연결성에 있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생태통로의 위치를 능선축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조정하고 폭원을 최소 50m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반영한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부분반영 -지형적·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설치위치를 능선축으로 이동하고 이에 대한 세부 설치계획을 제시함 【 돛대산구간(STA.0+320) 】 -폭원 : 47m → 49m (증 2m) -생태통로의 폭원을 50m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조도순응을 위한 이격거리(480m)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게 되므로 설치 가능한 최대 폭원(49m)으로 계획함 【 만뢰지맥구간(STA.8+400) 】 -폭원 : 15m → 45m (증 30m) -만뢰지맥은 도로 등에 따른 단절 및 농경지기 훼손구간으로 지맥 및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45m)로 생태이동통로를 계획함	p.48~52
지형 · 지질	○ 지형훼손 최소화 -계획노선 주변으로 30m 이상의 대절토 구간(6개소)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만뢰지맥 통과구간인 STA.8+200~900에서 절토사면이 산정부에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형훼손이 우려됨.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면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면경사 완화방안을 적용하고 있어 절토사면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규모 절토사면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사면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부분반영 -30m 이상의 대규모 절토사면이 발생하는 구간(A~G, 6개소)에 대해 검토하여 제시함 ■ 대규모 절토사면 축소 (초안시 대비 5개소 감소) ·초안시 : 9개소 ·평가시 : 6개소 ·보완시 : 4개소 ■ 절토사면구배 적용 ·1:0.5~2.0 등 적정 사면구배 적용 【 2개소 (A, F구간) 】 ·STA.0+320(돛대산), 8+400(만뢰지맥)구간 능선축에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고 절토사면고 30m 이내로 조정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함 【 4개소 (B, C, E, G구간) 】 ·30m이내 절토사면 적용시 시종점부방향 성토부 높이가 약 3~8m 상향되어 추가 편입으로 인한 민원발생, 토취장 개발로 인한 대규모 환경훼손, 설계기준 위배 등이 예상됨.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면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면 높이를 0.8m~5.8m를 추가 축소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함	p.58~72

구 분	보 완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보완서 쪽
소음 · 진동	○ 공사시 소음 · 진동 저감방안 －계획노선 인근 정온시설중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소음도 재산출 및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	○ 반영 －계획노선 인근 정온시설에 대해 공사시 소음도를 재 예측하고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 평가시 정온시설 71개소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함 ·초과지역 : 47개소 (평가시 대비 3개소 증가) ■ 저감대책 수립 ·가설방음판넬 설치 : 44개소 (지형차폐지역 3개소 제외) ·추가 저감대책 : 47개 중 17개소 (투입장비 축소, 작업시간 조정 등)	p.92~137
	○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계획노선 부근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반영 －운영시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12개소)에 대해 소음도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 운영시 : 준공 후 3년까지 ■ 환경기준치(주간 65dB(A), 야간 55dB(A)) 초과여부 확인 ■ 민원발생지점 모니터링 실시	p.148~149
	－공사시 계획노선에서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넬 설치부에 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노선 구간별 공사기간에 따라 이동 설치하여 소음도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였음 ■ 소음모니터링 설치구간 ·대표 정온시설 : 18개소 ·가설방음판넬 상단 1개소 및 대표 정온시설 1개소에 소음자동측정망 설치	p.138~149
동 · 식물상	○ 통로박스 설치계획 －통로박스 설치지점에 대하여 고라니 등 중형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개방도 0.7 이상의 생태 통로박스 조성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반영 －계획노선내 고라니 등 중형 야생동물 서식현황을 추가 조사하여 서식이 확인된 지점을 대상으로 개방도 0.7이상의 생태통로박스 조성계획을 수립함 ■ 생태통로 : 4개소 추가 ·평가시 8개소 → 12개소 ■ 겸용생태통로 : 2개소 추가 ·평가시 0개소 → 2개소	p.84~91

구 분	보 완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보완서 쪽
경 관	○ 경관계획 -STA.300~400 구간은 남측의 돛대산과 북측의 산지가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시각적 연결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동 구간에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바 주변의 지형과 단차가 발생하거나 절토사면이 조망될 경우 경관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상기 구간은 최종조망점 10번을 선정하여 영향을 예측하였지만 상장남 마을의 가장 끝자리로 선정하고 있어 경관적 영향을 대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장남 마을의 진입도로와 주요 생산 및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을 추가 선정하여 예측하여야 함	○ 반영 -상장남마을(STA0+300~400) 진입도로와 마을을 대표하는 지점으로 추가 2개소를 선정하여 가시권분석, 경관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경관변화 예측을 실시함 ■ 예측결과, 돛대산 절토사면은 조망되지 않으며, 상장남교와 인접한 성토구간이 일부 조망되나 사면녹화 등으로 인하여 경관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p.150~157
	○ 교량계획 -계획노선중 STA.9+500~10+000 구간은 고성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복현마을과 분투골마을 등에서 복현천으로의 조망을 차단하고 있고, 또한 반대편의 새터마을과 연결도로가 있는 지역으로 하천 조망의 차단과 차폐감, 마을간 접근성 악화 등이 예상되므로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상기 구간에 대한 조망점 12번을 선정하여 경관변화를 예측하였지만 주요 경관영향이 발생하는 지역은 그 반대편에 입지하고 있는 복현 및 분투골 마을로 최종 조망점 선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분반영 -고성토로 인한 하천조망 차단, 마을 접근성 악화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관분석 및 소음분석을 추가 시행하였으며, 주변마을 접근성을 고려하여 통로암거 설치를 계획함 ■ 분투골마을, 복현마을에서 조망시 임야부 차폐지역에 도로가 위치하여 경관상의 영향은 미미함 ■ 새터마을, 분투골마을, 복현마을 주변 축사 5개소에 대해 운영시 차량소음 영향을 검토한 결과, 교량 설치시 토공(성토)구간보다 소음도가 약 4~6dB(A) 높게 나타나 축사시설 환경규제기준(60dB(A)) 초과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소음에 민감한 축사시설이 많은 새터마을 등 주변 마을에 대한 추가 환경피해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성토구간으로 계획함 -STA.9+500~10+000에 대해 복현마을 및 분투골마을 2개소에서 추가 경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시행전 복현마을, 분투골마을에서의 복현천 조망은 기존 임야부로 인해 차폐되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음 ■ 성토구간 주변 마을간 접근성을 고려하여 STA.9+500지점에 통로암거(4.5×4.5m)를 설치·계획함	p.158~166

■ 횡단면 생태통로 변경계획

구 분		돌대산 통과구간(STA.0+320)	만뢰지맥 통과구간(STA.8+440)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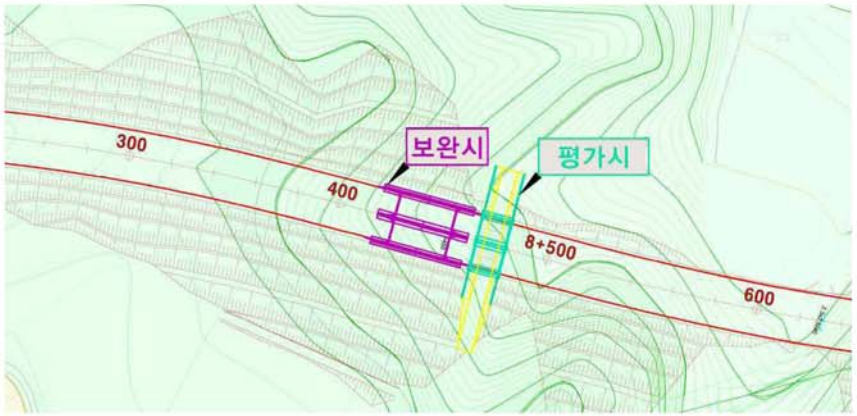
횡단	평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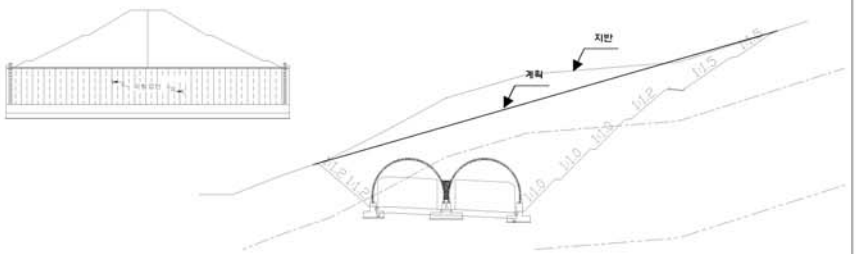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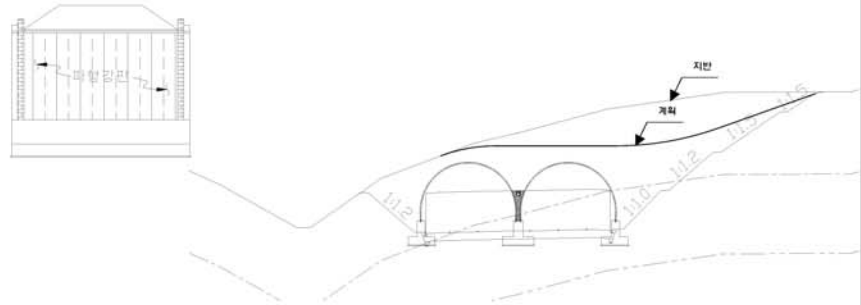
	장단점	◦ 생태적 연결성 최소 확보(폭원 47.0m) ◦ 사면 경사완화(1:1.0~1.5)로 사면 안정화 및 시각적 안정효과 ◦ 등산로 우회로 민원 예상	◦ 생태적 연결성 최소 확보(폭원 15.0m) ◦ 사면 경사완화(1:1.0~1.5)로 사면 안정화 및 시각적 안정효과 ◦ 만뢰지맥 복원(폭원 15.0m) 및 생태통로 역할 부여
	보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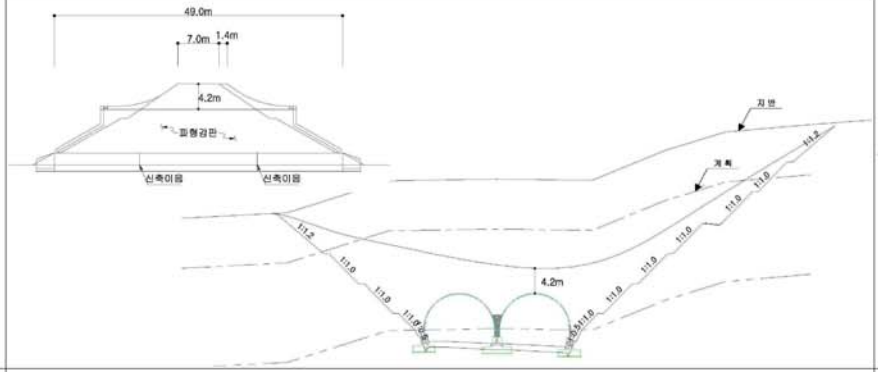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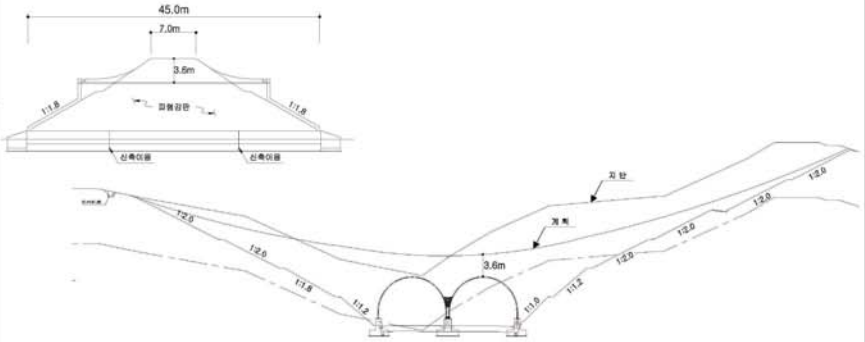
	장단점	◦ 생태적 연결성 확보 ◦ 능선축 복원(폭원 49.0m) 및 등산로 확보 ◦ 복토사면(높이 4.2m) 및 경사완화로 환경적 조화 ◦ 현 지형을 고려한 복토계획 수립으로 이질감 최소화	◦ 생태적 연결성 확보 ◦ 복토사면(높이 3.6m) 및 경사완화(1:1.0~1.2)로 사면 안정화 및 시각적 안정효과 ◦ 만뢰지맥 등 능선축 복원(폭원 45.0m) 및 생태통로역할, 현 지형을 고려한 복토계획 수립으로 이질감 최소화

■ 30m이상 절토사면구간 검토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A구간 (0+320)	▪ 돛대산구간(STA.0+320) 능선축 이동, 절토사면 발생으로 인한 지형훼손 최소화 ▪ 등산로, 생태축 연결성 확보, 상장남마을 주민 민원방지 ▪ 사면경사와 지형을 고려한 복토(약 4.0m 이상) ▪ 절토사면고 －평가시 37.8m → 생태이동통로 적용 ▪ 생태통로 폭원 변경 －평가시 47m → 보완시 49m (증 2m)	반 영 구 간 (2개소)
F구간 (8+400)	▪ 만뢰지맥구간(STA.8+400) 능선축 이동 ▪ 지맥복원 및 생태적 연결성 확보 ▪ 완만한 사면경사 및 복토로 지형훼손의 최소화 ▪ 절토사면고 －평가시 31.5m → 생태이동통로 적용 ▪ 생태통로 폭원 변경 －평가시 15m → 보완시 45m (증 30m)	
B구간 (3+880) C구간 (4+840)	▪ B, C구간의 절토사면고 30m 이내 계획시 －시종점 성토부 5.3m 상향→ 도로양측 19.7m의 농경지 추가편입 －종단변경으로 인하여 110만㎥이상의 부족토 추가발생 －추가 토취장 개발로 환경적 피해 추가 발생 예상 ▪ 절토사면고 적용 －평가시 B구간 : 34.0m → 보완시 32.8m (감 1.2m) C구간 : 40.2m → 보완시 34.4m (감 5.8m)	미반영 구 간 (4개소)
E구간 (서오창IC R-A 1+120)	▪ 서오창IC영업소와 연동되는 구간으로 현 계획상으로도 환경훼손을 최소화 계획 －설계기준 : 영업소광장부 : 3%, 연결로구간 : 7% 종단 적용 ▪ 30m이내 적용시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30m이내 절토사면고 반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최대 종단경사를 적용하여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절토사면고를 반영함 －절토사면고 : 평가시 36.4m → 보완시 35.2m (감 1.2m)	
G구간 (8+680)	▪ G구간의 절토사면을 30m 이내 계획시 －최대성토고가 7.6m 상향 → 도로양측 20m이상의 농경지 추가편입 －종단변경으로 인하여 92만㎥의 부족토가 추가 발생 → 토취장 추가개발 필요 －성토사면 증가로 복현마을, 분투골마을, 오창읍 주민들의 조망권 저해 ▪ 절토사면고 적용 －평가시 : 33.8m → 보완시 32.6m (감 1.2m)	

■ 마을간 연결로(통로암거) 및 조망점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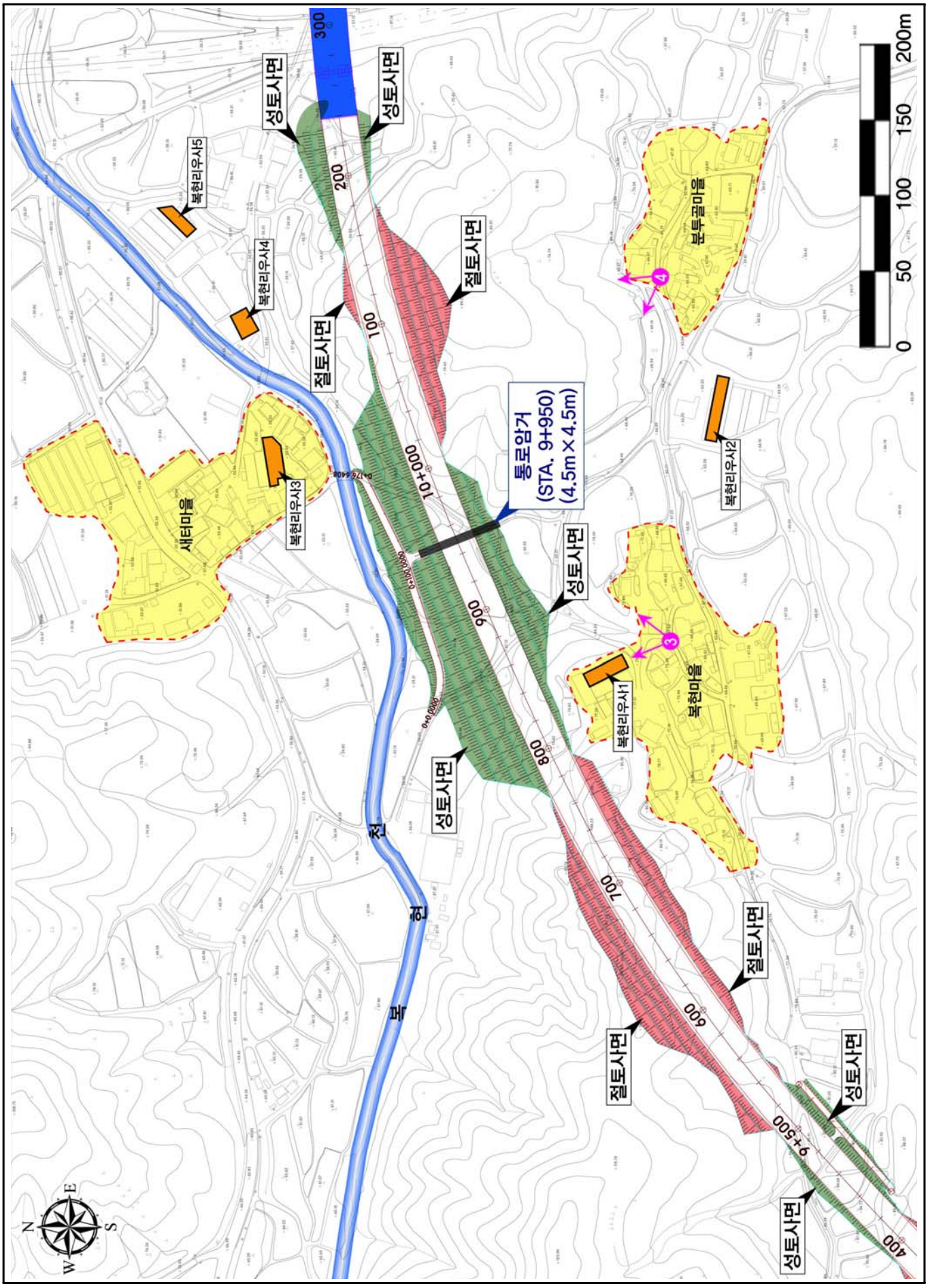

■ 복현마을, 분투골마을 경관영향 추가 분석

– 조망점3



– 조망점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 알림(옥산-오창)

1. 광역도시도로과-323(2013.04.25) 및 옥산오창 제2013-20(2013.04.04)의 관련입니다

2. 장관으로 부터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협의내용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옥산-오창)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무관대우 **한형동**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3. 5. 1. **서용옥**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873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564 팩스번호 042-670-3485 / hanhd@molit.go.kr / 비공개(5)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1.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1067호('13.4.24)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256호('13.4.4)의 관련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민인홍	시설사무관	이강녕	과장	전결 2013. 4. 25. 김영국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323 (2013. 4. 25.) 접수 도로공사과-757 (2013. 4. 25.)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내 용

<옥산-오창고속도로 민자사업>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 오창읍**

❍ **사업규모 및 주요 시설**

연장	차로	교량	생태통로	JCT	IC
12.1㎞	4차로	22개소	2개소	2개소	1개소

❍ **사업기간 : 2013~2017**

❍ **사업자(승인기관) :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국토교통부)**

Ⅰ. 총 괄

❍ 본 사업은 동·서축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인 옥산-오창고속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으로

- 각 항목별 검토의견과 저감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평가서에 제시된 예측자료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영향범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에 적용한 계획 및 조건 등의 변화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평가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환경영향조사 계획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시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동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당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대책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업승인기관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함

Ⅱ. 항목별 협의의견

1. 대기환경 분야

가. 대기질

❍ 공사시 세륜·세차시설은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공사용 도로와 기존 도로의 접속구간에 설치하고, 비산먼지의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지역에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대기환경기준치(년, 일, 시간)를 초과할 경우 고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계획노선 인접 주요 정온시설에 대하여는 사후 모니터링 결과 기준에 근접하거나 예측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등의 조치계획이 필요함

❍ 운영시 차량의 배기가스에 의한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오창 IC, JCT(옥산, 오창), 절·성토 사면부와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적정한 양의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여야 함

❍ 대기질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00m 이내 지역(10개 지점)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평가서에서 제시(194쪽)한 대로 공사시(토공시 토공구간 인접지역은 매시간별 측정) 및 운영시 분기 1회 조사하여야 함

나. 온실가스

❍ 평가서 207-208쪽에 의거 공사시 에너지 사용량 저감, 저탄소 재료의 사용 등 방안과 운영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개발 대비 선택대안의 감축효과 비교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함

2. 수환경 분야

가.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절토 지역은 산마루 측구, 평지 및 성토 지역은 가배수로 및 우수유입 방지둑 등을 선시공하고, 규모가 큰 침사지는 다단계로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침사지의 효율이 저하되어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경우 고분자응집제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하천구간에 대한 교량 공사시 일시적인 토사유출로 부유물질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공사구간 하류지역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가도설치 및 기초터파기 공사는 현장에 맞는 적정한 공법을 선정·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등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계획교량 주변하상의 유지(세굴 방지)를 위해 하상보호공을 적정하게 설치해야 함

❍ 계획노선 편입지역에 포함되는 관정은 지하수질의 오염이 예상되므로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따라 원상복구 및 되메움 방법 등으로 적정 처리하여야 함

❍ 도로구간, 교량구간, 영업소 등 불투수지역을 대상으로 평가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연형시설인 침투도랑 등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사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함

3.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 지역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통로박스 설치시 이용자가 빈번하거나

마을 인접지역 및 IC 또는 JCT 부근을 횡단하는 10m 이상의 통로박스에 대하여는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로의 특성, 지형조건 및 인근 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함

❍ 계획노선은 다수의 도로와 교차구간을 형성하면서 불용토지가 발생(특히 IC, JCT 구간 등 교통섬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용토지에 대한 조경계획 등의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양

❍ 지장물 철거작업 이전에 토양오염 개연성 지장물에 대한 토양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의 오염유무를 판단하고, 오염토양이 존재할 경우 오염토양 면적, 심도, 정화가 필요한 오염 토양량 산정 등 각 지장물별 구체적인 토양오염 정밀조사 계획(측정지점 개수, 위치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지형·지질

❍ 종단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대절토사면고(30m 이상) 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방안을 시행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 훼손된 절취부를 조기에 복원시킬 수 있도록 현지지형에 맞는 초본류, 관목·교목을 선정·식재하여야 함
-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유지, 토사 및 암석 비탈면의 보강을 위하여 지층상태 및 비탈면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선정·시공하고, 절·성토 지역 등의 집중호우에 의한 재난에 대비하여 사면안정화 방안(보완서 72-75쪽)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생태통로는 지형적,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능선축에 설치하고, 주변에 지형경사가 완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복토와 사면경사를 조정하여 실효성있게 설치하여야 함

- 생태통로 설치 : 돛대산(폭 49m) 및 만뢰지맥(폭 45m) 통과구간

❍ 부족토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한 토취장은 불필요한 지형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보완서 76쪽)하고,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최대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4.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 자연수종을 중심으로 이식대상 선정시 높은 고사율로 인한 가이식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생존율을 고려, 중·소형목의 입목에 적용하고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수목 재활용율을 높여야 함

- 계획노선 훼손수목 발생량에 비해 재활용율(2.71%)이 너무 낮으므로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시 추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통로 및 수로박스는 입·출구부에 유도 숲 조성, 통로 내부의 흙바닥 조성, 양서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수로바닥 수분유지 등 동물이동통로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시공하여야 함

- 특히 Road Kill 방지를 위한 대책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6)」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며, 유도울타리의 경우 목표종에 따라 침입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울타리 높이는 1.2-1.5m로 하되 종의 특성에 따라 더 높게 하여야 함

- 또한 수로 탈출시설은 소형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며 양서류의 집단이동 등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30m 간격으로 충분히 조성하고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고라니 등 중형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방도 0.7 이상의 생태통로 박스를 조성(보완서 85-86쪽)하여야 하며, 도로 특성에 따라 미확보시 지중강판 구조물로 변경하여 최대한 확장하여야 함

❍ 가로등 설치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도관리 및 조명갓 등을 설치하여 불빛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생태계 지역에는 야간 차량통행에 의한 불빛으로 산림성 조류의 산란 및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지역에서 법정보호종인 수달, 황조롱이 등이 확인되어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 및 식생자원의 불필요한 훼손을 저감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광역생태네트워크중 그린네트워크는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고, 블루네트워크는 교량을 설치하여 분지맥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고 일부 생태단절이 발생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는 통·수로 암거 등을 설치하여 네트워크 연결성을 높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법정보호종 및 주요 생물종에 대한 모니터링은 공사시 월 1회 실시하여야 함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 지장물중 철거시 발생하는 석면슬레이트 잔재물은 적정 처리하고 기존정화조,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거전에 정화조의 분뇨를 전량 수거 처리 하여야 함

❍ 임목폐기물은 성상별(줄기, 뿌리 등)로 분리 보관 및 건조한 후 목재, 나무제품 가공원료, 연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나. 소음·진동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장비분산투입 및 일일 작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저감토록 하여야 함

- 최종 저감방안 수립 후에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장남리우사3(보완서 127쪽)에 대하여는 작업시간 조정 등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시 제시하여야 함
- 저감계획 수립 후에도 기준에 근접한 일부 지역(KST, 복현리마을1 등) 및 민원발생 예상지역은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축사의 경우 소음저감 대책으로 작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인지능력이 제한적인 가축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므로 보완서(136-137쪽)에서 제시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발파 시 인근 주거지역, 축사 및 정밀기기공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발파를 토대로 장약량 최소화, 사전예고제 실시, 가설

토류벽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발파시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을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음·진동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합한 발파공법 선정 및 발파 설계를 시행하여야 함

❍ 영향지역내 정온시설에 대한 운영시 소음도 예측결과 방음벽 설치시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주요 영향지역인 가옥(교육시설) 및 축사 등에서 인지하는 체감도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음대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적극수렴·반영하여 소음피해 및 민원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사시 주요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넬 설치부에 소음자동측정망(18개소)을 이동·설치하고, 소음전광판에 표시된 소음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장 및 주변지역에 이동식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모니터링 결과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피해 및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기존 방음시설의 제원 변경, 추가 방음시설 설치, 주민협의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경관, 일조장해

❍ 각종 구조물(교량, 방음벽 등)의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디자인 적용과 아래의 내용을 반영한 경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각종 구조물(교량, 방음벽 등)설치시 후면 노출부의 H빔 돌출, 불규칙한 콘트리트 마감 등 경관 저해요인은 미장 강판 등을 이용 차폐

- 조경수는 주변지역의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선정·식재

- 돛대산 생태통로 설치구간은 자연스럽게 지형이 연결되도록 계획하여 경관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방음벽 및 교량설치로 인한 실질적인 일조장해 피해여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민원발생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Ⅲ.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요약)

1. 대기질

가. 공사시(평가서 182-191쪽)

❍ 가설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17개 지역)

❍ 세륜·세차시설 설치(7개소)

❍ 공사차량 속도 제한 및 규제 : 20㎞/hr이하 운행, 적재함 규제

❍ 주기적 살수실시(건기시 및 토공사 성수기 추가 살수)

❍ NO_2 저감을 위한 공사장비 분산투입 및 공회전 금지

나. 운영시(평가서 192-193쪽)

❍ 환경정화수종 식재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194-196쪽)

2. 온실가스

가. 공사시(평가서 207쪽)

❍ 에너지 사용량 저감, 저탄소 재료의 사용

나. 운영시(평가서 207-208쪽)

❍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탄소 흡수, 하이패스·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209쪽)

3. 수질

가. 공사시(평가서 272-293쪽)

❍ 우수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평가서 272-286쪽)

- 가배수로 설치 또는 물막이공 활용 배수시설 설치
- 침사지 설치(89개소) 및 침사지 효율증대 방안 강구

❍ 하천횡단 교량구간 저감대책(평가서 287-289쪽)

- 교량공사시 수질오염 저감대책(가도설치, 기초터파기, 오탁방지막 등)
- 교량공정별 부유물질 저감대책

· 하천 유로변경시 저감방안

· 교량 기초공사시 저감방안

· 교량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방안

❍ 공사시 지하관정 폐공 조치계획(평가서 290-291쪽)

❍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오수처리(평가서 292-293쪽)

- BOD, SS 각각 10㎎/L 이하로 처리

나. 운영시(평가서 294-310쪽)

❍ 시설물 운영에 따른 생활용수 및 생활오수 처리대책(평가서 294쪽)

- BOD, SS 각각 20㎎/L 이하로 처리

❍ 비점오염원 처리대책(평가서 294-310쪽)

- 노면부 및 교량부 자연형시설인 침투도랑 설치

다.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311-313쪽)

라. 수질오염총량 관련(보완서 27-47쪽)

4. 토지이용

가. 공사시(평가서 347-348쪽)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나. 운영시(평가서 349-363쪽)

❍ 계획노선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검토결과

❍ 지역간 단절방지 대책

- 주거지 및 농경지 단절 : 교량 22개소, 통로박스 25개소, 부체도로 40개소, 이설도로 2개소

- 수로 및 하천 단절 : 수로박스 11개소, 통수로 6개소, 수로파이프 54개소

5. 토양

가. 공사시(평가서 376-379쪽)

❍ 토양형질 변경으로 인한 토사유출 저감대책

❍ 투입장비로 인한 폐유발생 저감대책

❍ 현장투입 인부에 의한 발생분뇨 처리대책

❍ 지장물 철거시 처리방안

❍ 화약류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대책

나. 운영시(평가서 379쪽)

❍ 비점오염원 처리대책

다.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380-381쪽)

6 지형·지질

가. 지형훼손 최소화(평가서 471쪽)

❍ 절·성토구간 최소화(보완서 58-71쪽)

❍ 비탈면 기울기 조정

나. 능선축 보전방안(평가서 472쪽)

❍ 생태통로계획(보완서 48-57쪽)

다. 사토처리계획(평가서 472-473쪽)

❍ 토취장 계획(보완서 76-82쪽)

라. 토사유출 저감방안(평가서 474쪽)

❍ 우기를 피해 공사,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 설치

마. 지형개변지역 복구방안 및 활용방안(평가서 474-475쪽)

❍ 공사용 진입도로 및 현장사무소, 부체도로 설치로 인한 지형변화대책

바. 비옥토 처리대책 및 활용계획(평가서 475-476쪽)

사. 시추공 폐공처리대책(평가서 477쪽)

아. 사면보호대책(평가서 477-480쪽)

❍ 기후변화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안정화 방안(보완서 72-75쪽)

자.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481쪽)

7. 동·식물상

가. 육상, 육수식물

❍ 훼손수목 처리방안(평가서 574-579쪽, 보완서 83쪽)

- 재활용율 높이는 방안에 대한 추가 대책 강구

❍ 계획노선 식생피복계획(평가서 579-583쪽)

나. 육상동물

❍ 생태측구 설치방안(평가서 584-585쪽)

❍ 생태네트워크의 보전대책(평가서 585-598쪽, 보완서 84-91쪽)

- 생태통로 설치계획 : 육교형, 암거(박스형)형 설치방안

❍ 유도울타리 설치계획(안)(평가서 599-602쪽)

다. 육수동물

❍ 토사유출 저감방안, 교량공사 저감대책 수립(안)(평가서 603-605쪽)

라. 특정야생생물(법정보호종) 저감방안(평가서 606쪽)

마.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608쪽)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공사시(평가서 635-649쪽)

❍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평가서 635쪽)

❍ 폐유처리 대책(평가서 635-636쪽)

❍ 건설폐기물 처리(평가서 637-642쪽)

❍ 지정폐기물(잔류 유해물질) 처리대책(평가서 642-643쪽)

❍ 유해성폐기물(석면, 수은, PCBs 등 함유) 처리대책(평가서 643-648쪽)

❍ 임목폐기물 처리(평가서 648-649쪽)

나. 운영시(평가서 649-650쪽)

❍ 영업소 운영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

❍ 슬러지 처리방안, 도로변 폐토사류 처리방안

다.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651쪽)

9. 소음·진동

가. 공사시(평가서 743-770쪽, 보완서 111-137쪽)

❍ 건설장비 소음저감대책(평가서 743-762쪽)

- 일반적인 소음대책(평가서 743-745쪽)
- 공사장비 투입 최소화, 민원발생 방지대책(평가서 746쪽)
- 가설방음판넬 설치(평가서 746-751쪽, 보완서 114-124쪽)

- 투입장비 조절 및 작업시간대 조정(평가서 751-752쪽, 보완서 125-126쪽)
- 최종 저감방안 총괄(평가서 753-762쪽, 보완서 127-136쪽)

❍ 건설장비 진동저감대책(평가서 763쪽)

❍ 구조물 기초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저감대책(평가서 763-765쪽)

❍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평가서 765-770쪽)

나. 운영시(평가서 771-782쪽)

❍ 방음벽의 저감효과 산정(평가서 771쪽)

❍ 방음벽의 연장(길이) 산정(평가서 771쪽)

❍ 소음저감시설 설치계획(평가서 772-782쪽)

다.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783-785쪽, 보완서 138-149쪽)

10. 경관

가. 조경계획 수립(평가서 842-858쪽)

나. 절·성토시 비탈면 발생에 따른 경관변화 저감대책(평가서 859-862쪽)

다. 방음벽 설치에 따른 경관저감대책(평가서 863쪽)

11. 일조장해(평가서 921쪽)

12. 인구 및 주거(평가서 926쪽)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 공사시 및 운영시 -PM-10, NO_2 -유지목표농도(PM-10 80㎍/㎥, NO_2 50ppb) 준수여부 -환경영향저감시설 :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운영, 살수차 운행현황 등	• 영향예상 지점 (10개 지점)	•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공사시 및 운영시 1회/분기 (3일 연속측정) -토공시 토공구간 인접지역은 매시간별 측정
온실가스	• 공사시 -공사장비의 과부하 운행 및 불필요한 공회전·급정지·급가속 방지 대책 -공사시 저탄소 재료의 사용 확인 •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사용여부 확인	• 계획노선 내 -공사시 계획노선내 온실가스 발생구간(공사장비 사용구간) -공사시 저탄소 재료를 사용하는 공사구간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사용구간	• 현지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1회/반기
수질	• 공사시 -지표수 : BOD, SS등 16개항목 -하천통과교량 공사 지점 하천 상·하류 3개항목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5개항목 -지하수 : 23개항목 -토사유출 저감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점검 • 운영시 -영업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pH, BOD, SS, T-P, T-N)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입·유출수(pH, BOD, SS, T-P, T-N) -비점저감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점검	• 공사시 -현황조사지점 : 4개 지점 -하천통과교량(3개 하천) 공사지역 하천 상·하류 : 3개 지점(현황조사지점과 중복되는 3개지점 생략)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지점 : 1개 지점 -지하수질 현황조사 : 2개 지점 • 운영시 -영업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지점 : 1개 지점 -영업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출지점 : 1개 지점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 공사시 1회/분기 (조사지점별 월 조사 계획) • 운영시 1회/분기
토양	• 공사시 및 운영시 -Cd, Cu, As, Hg, Pb, Cr^{6+}, 유기인, CN, 페놀, TPH, 벤젠, 톨루엔, 에틸렌, 크실렌 -폐유저장소 적정 운영여부 -화약류 모니터링 계획	• 공사시 -현황조사지점(4개 지점) -서오창IC 휴게소 인근(1개 지점) -폐유저장소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지점 각 1개 지점 • 운영시 -현황조사지점(4개 지점) -서오창IC 유지관리사무소 인근(1개 지점)	• 현지조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공사시 1회/분기 • 운영시 1회/분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지질	• 공사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관리 -비탈면의 안정구배 유지 및 보호공법 시행 -비옥토수거 및 적치상태 확인 • 운영시 -비탈면의 안정구배 유지 및 보호공법 시행	• 계획노선 및 주변인접 영향권	• 현지조사	• 공사시 1회/분기 • 운영시 1회/반기
동·식물상	• 공사시 -식물상의 변화, 조사 -수목이식 현황 조사 -절·성토법면 녹화 조사 -육상동물상 현황, 영향 조사 -육수생물상 현황, 영향 조사 -법적보호종 현황, 영향 조사 -특히, 현지조사된 수달은 비상보전대책을 선 수립 후 정밀 모니터링실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현황 -생태통로 설치 상황 -공사구간별 분양이식 관리 및 현황조사 • 운영시 -식생복구지역의 천이 상황 -하천생물상의 동태 -특정야생생물의 동태 -생태통로 이용현황	• 훼손지역, 가이식장 • 식생조성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 공사시 (법적보호종 및 주요 생물종에 대해 월1회 모니터링) -식물상 : 3회/연 -동물상 : 4회/연 • 운영시 1회/반기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적법 처리여부 -발생 폐유류의 적정 처리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유해성폐기물(석면, 수은, PCBs등)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여부 -임목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여부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여부 -도로변(갓길포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여부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 공사시 1회/분기 • 운영시 1회/반기
소음·진동	• 공사시 -조사결과의 환경기준치 초과여부 -소음자동측정망 설치 및 관리 -공사시 저감방안이행여부 및 민원발생여부 -항타 및 발파시 소음·진동조사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관리여부 • 운영시 -환경기준치 초과여부 -방음벽 설치 및 관리여부 • 민원발생지점은 수시로 시행	• 공사시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12개소) -항타 및 발파시 주변 정온시설 • 운영시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12개소)	•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 공사시 1회/분기 (항타 및 발파시: 2회) • 운영시 1회/반기

Ⅳ. 행정사항

1. 사업승인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함)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되도록 조치하고,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를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부에 통보하여야 함

나.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부에 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이 사업계획에 반영(변경승인 등)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우리부에 통보하여야 함

라.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므로, 같은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일(인·허가일·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시 그 내용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 함

※ 붙임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식” 참조

마. 법 제3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자(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기관을 거쳐 우리부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 등의 변경사항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부와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의 사전검토 또는 우리부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의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착공한 날(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여야 함

마.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승인기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승인기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협의내용 반영 결과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장 위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3. 참고사항

작성요령

1. 사업계획 (승인)내용란에는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 승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협의내용 반영서류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설계도면·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반영할 사항이 아닌 내용인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명을 적으며,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3. 비고 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참고사항 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임을 시·도에 통보한 날짜 및 대상기관(부서명 포함)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자 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 송부

1. 광역도시도로과-670(2013.5.31)호 관련문서입니다.

2.「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대한 개선필요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제2013-10호) 1부. 끝.

도시광역교통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신경창	김진동	05/31 안석환

협조자

시행 도시광역교통과-887 (2013. 05. 31.) 접수 광역도시도로과-680 (2013. 05. 31.)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813 전송 044-201-5579 / startshin@molit.go.kr / 비공개(2,5)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 개선필요사항

일련번호 제2013-10호

1.사 업 명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사 업 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3.사업기간	2012년~2017년	4.수립대행자	(주)평화엔지니어링
5.사업위치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 충북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6.용 도	도로시설(고속도로)
7.사업규모	· 총연장 : 12.1km, 4차로(B=23.4m) · 출입시설 : 옥산 JCT, 서오창 IC, 오창 JCT · 영업소 : 본선 영업소, 서오창 IC 영업소	8.사업형태	개발형태 도로건설사업

9.교통수요

구 간	년 도	승용차	버스		트럭				계	비 고
			소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특수		
옥산JCT ~ 서오창IC	2019년	16,256	1,865	1,645	3,060	2,850	2,745	683	29,104	
	2023년	21,306	2,445	2,156	4,010	3,735	3,598	895	38,145	
서오창IC ~ 오창JCT	2019년	11,102	1,274	1,124	2,090	1,946	1,875	466	19,877	
	2023년	18,031	2,069	1,825	3,394	3,161	3,045	758	32,283	

10. 주차면수	도로사업으로 주차면수는 해당사항 없음

1. 교통 개선대책

구 분	개 선 방 안				
진출입지점과 연결되는 주변가로	•과업노선 주변 교통시설계획 반영 –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남이JCT ~ 천안JCT) : 2010.12 기본설계 완료 – 당진~천안 고속도로 신설계획(4차로) : 실시설계 진행중 •주변 교차로 신호현시 최적(안)제시 (3개소, 주기조정 및 보행시간 고려) – ① 가좌사거리(비보호 좌회전 적용), ② 질푼이삼거리, ③ 한전앞사거리 •질푼이삼거리 안전시설 및 우회전전용신호등설치				
설계제원	연장	설계속도	운영속도	폭원 및 차로수	주요시설 및 공종
	12.1km	100km/h	100km/h	23.4m (4차로)	교량 및 기타부대시설

주 1 : 음영부분은 사전검토보완('13.03) 사항임

주 2 : 음영부분 밑줄 굵은체는 수정의결검토보완('13.05) 사항임

구 분		개 선 방 안	
과업노선	구 분	형 식	시 설
	㉮옥산 JCT	• 준직결형 Y형식 -경부고속 도로와 접속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확장 기본설계안 반영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3개소 (L=290→294m, 305m, 670m, B=3.6m) -감속차로설치 3개소 (L=196m, 290m, 430m, B=3.6m) •운전자의 혼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입로 삭제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출로 설치 : 연결로에서 합류후 경부고속도로 유입으로 경부고속도로 교통안전성 및 지정체 완화 -가속차로설치 1개소(L=141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B"~"D" 확보 •청원휴게소 진입로, 오창방향 연결로에 대한 통합표지판 설치(5개소)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서울·대전 방향 문형식 표지(1개소), 노면표시 (3개소)설치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1,480m)
	㉯서오창 IC	•더블트럼펫형 -지방도540호선과 접속	•지방도 540호선과 접속계획으로 교통소통 및 접근성확보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4개소 (L=180m, 335m, 362m, 370m, B=3.6m) -감속차로설치 4개소 (L=160m, 205m, 210m, 340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A"~"C" 확보 •하이패스 안내표지 설치(3개소)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안내표지추가 설치(2개소)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1,235m)
	㉰오창 JCT	•직결형 (장래 트럼펫형 단계건설) -중부고속도로와 접속	•장래 동서5축 오창~울진구간 연계를 고려한 기본설계VE안 반영 (대전방향 연결로 - 장래 단계 건설)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1개소(L=365m, B=3.6m) -감속차로설치 1개소(L=220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C"~"D" 확보 •안내표지판 지명 통일(서울→천안)
	교통안전 및 기 타		•적정위치 및 위험구간에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본선 영업소 및 IC 영업소의 충분한 영업소 차로수 확보 -본선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IC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출구정보안내중심(지명) 고속도로 표지판체계 기준 적용 •내리막 경사구간, 대절토구간, 연결로에 종방향 그루빙 설치(L=6,985m) •IC 분류부 및 영업소에 충격흡수시설 설치(17개소) •오창JCT 대전방향 이용불가에 대한 정보제공(옥산JCT 부근 및 서오창IC 영업소에 설치된 VMS에 문자표출)
	지역분리 극복방안		•지역간 단절지점 연계시설 설치 - 부체도로 설치 : 40개소, 7,844.40m - 이설도로 설치 : 1개소, 259.0m - 통로박스 설치 : 30개소, 1,241.01m - 교량 설치 : 22개소, 2,387.0m

주 1 : 음영부분은 사전검토보완('13.03) 사항임

주 2 : 음영부분 밑줄 굵은체는 수정의결검토보완('13.05) 사항임

첨부 1. 수정의결보완서 및 종합개선안도 1부(별송).

2. 교통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 시행계획 1부. 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교통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을 송부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인)

2. 교통 개선대책의 시행계획

구 분		개 선 방 안	개소	연장 (m)	폭원 (m)	시행 시기	시행 주체	비용 부담
진출입 지점과 연결되는 주변가로		•과업노선 주변 교통시설계획 반영 –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남이JCT ~ 천안JCT) : 2010.12 기본설계 완료 – 당진~천안 고속도로 신설계획(4차로) : 실시설계 진행중 •주변 교차로 신호현시 최적(안)제시 (3개소, 주기조정 및 보행시간 고려) – ① 가좌사거리(비보호 좌회전 적용), ② 질문이삼거리, ③ 한전앞사거리 •질문이삼거리 안전시설 및 우회전전용신호등설치	– 3	–	–	사업 시행시	관할 관청	사업 시행자
과업노선	㉮옥산 JCT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확장 기본설계안 반영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3개소 (L=290→294m, 305m, 670m, B=3.6m) –감속차로설치 3개소 (L=196m, 290m, 430m, B=3.6m) •운전자의 혼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입로 삭제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출로 설치 : 연결로에서 합류후 경부고속도로 유입으로 경부고속도로 교통안전성 및 지정체 완화 –가속차로설치 1개소(L=141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B"~"D" 확보 •청원휴게소 진입로, 오장방향 연결로에 대한 통합표지판 설치(5개소)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서울대전 방향 문형식 표지(1개소), 노면표시(3개소)설치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1,480m)	– – 3 3 – – 1 – 5 – –	– – 1,269 916 – – 141 – – – 1,480	– – 3.6 3.6 – – 3.6 – –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서오창 IC	•지방도 540호선과 접속계획으로 교통소통 및 접근성확보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4개소 (L=180m, 335m, 362m, 370m, B=3.6m) –감속차로설치 4개소 (L=160m, 205m, 210m, 340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A"~"C" 확보 •하이패스 안내표지 설치(3개소)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안내표지추가 설치(2개소)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1,235m)	– – 4 4 – 3 2 –	– – 1,247 915 – – – 1,235	– – 3.6 3.6 – –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오창 JCT	•장래 동서5축 오창~울진구간 연계를 고려한 기본설계VE안 반영(대전방향 연결로 – 장래 단계 건설)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1개소(L=365m, B=3.6m) –감속차로설치 1개소(L=220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C"~"D" 확보 •안내표지판 지명 통일(서울→천안)	– – 1 1 – –	– – 365 220 – –	– – 3.6 3.6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교통안전 및 기 타	•적정위치 및 위험구간에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본선 영업소 및 IC 영업소의 충분한 영업소 차로수 확보 –본선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IC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출구정보안내중심(지명) 고속도로 표지판체계 기준 적용 •내리막 경사구간, 대절토구간, 연결로에 종방향 그루빙 설치(L=6,985m) •IC 분류부 및 영업소에 충격흡수시설 설치(17개소) •오창JCT 대전방향 이용률가에 대한 정보제공(옥산JCT 부근 및 서오창IC 영업소에 설치된 VMS에 문자표출)	– – – 17	– – – 6,985 –	– –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지역분리 극복방안	•지역간 단절지점 연계시설 설치 – 부체도로 설치 : 40개소, 7,844.40m – 이설도로 설치 : 1개소, 259.0m – 통로박스 설치 : 30개소, 1,241.01m – 교량 설치 : 22개소, 2,387.0m	40 1 30 22	7.844.4 259.0 1,241.0 2,387.0	– –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주 1 : 음영부분은 사전검토보완('13.03) 사항임

주 2 : 음영부분 밑줄 굵은체는 수정의결검토보완('13.05) 사항임

종합계획도 - 4공의분할완료('1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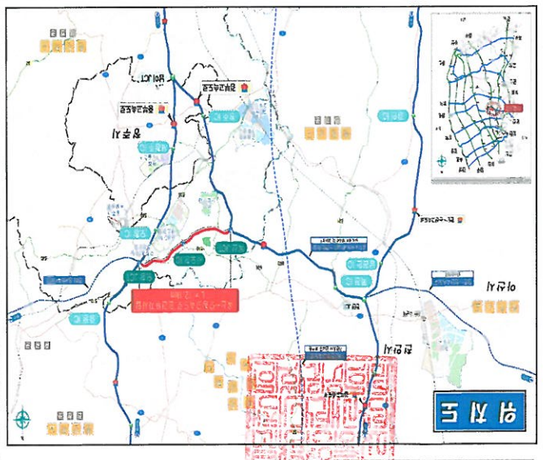

일 산 도

표준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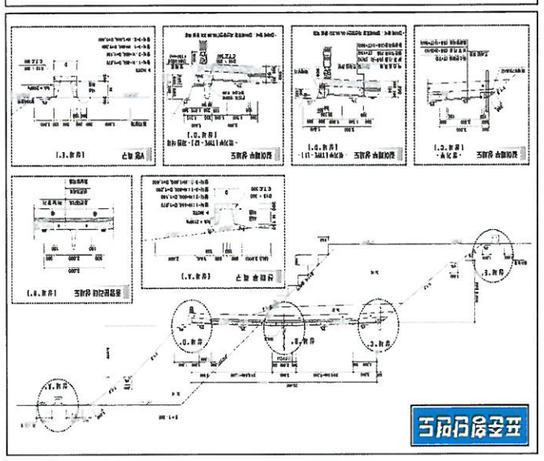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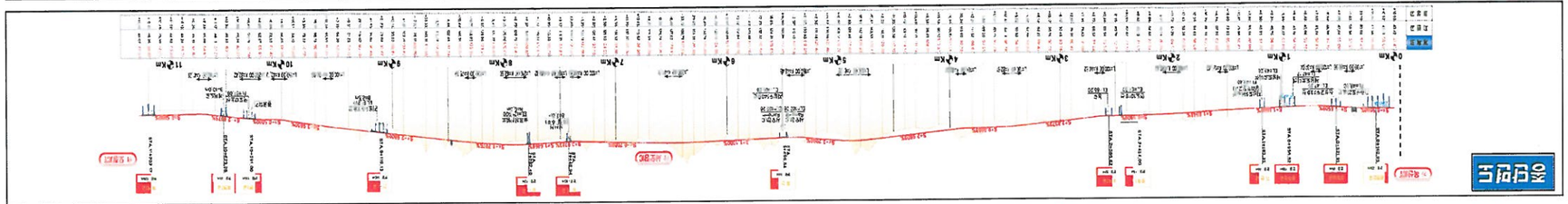

평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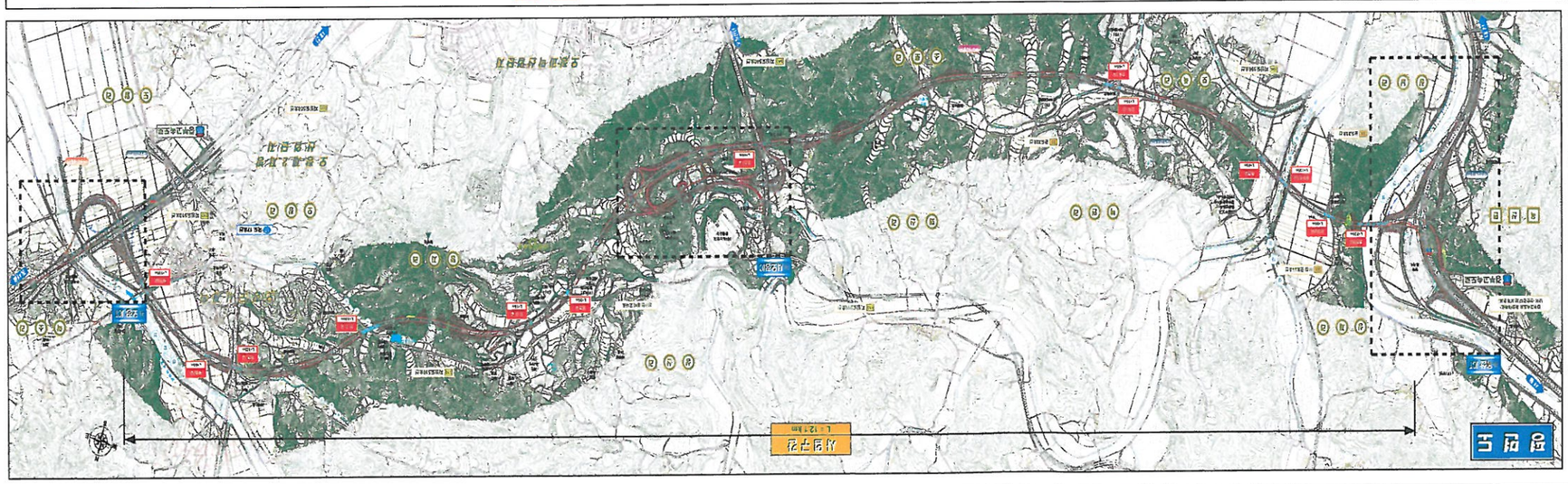

노선개요

구분	계획 및 설계	기존 및 현황
노선명	일산~포천 고속도로	일산~포천 고속도로
기점	일산JCT (IC-1)	일산JCT (IC-1)
종점	포천IC (IC-2)	포천IC (IC-2)
연장	12.1km	12.1km
설계속도	100km/h	100km/h
차로수	왕복 4차로	왕복 4차로
횡단구성	2.5m+3.5m+3.5m+2.5m	2.5m+3.5m+3.5m+2.5m

일반현황

구분	내용
사업명	일산~포천 고속도로 확장
사업기간	2015.03 ~ 2019.12
총사업비	3,250억원
시공사	대한건설(주) 외 3개사
감리사	한국엔지니어링(주)
교통량	일평균 42,000대
휴게소	1개소 (포천휴게소)
톨게이트	2개소 (일산, 포천)

범 례

구분	내용
노선	본선
교량	교량
터널	터널
휴게소	휴게소
톨게이트	톨게이트
IC	인터체인지
JCT	분기점
하천	하천
철도	철도
도로	국도
시군경계	시군경계

주요 시설물 현황

구분	명칭	위치	규모	비고
교량	일산대교	일산IC 인근	L=1,250m, W=24.5m	왕복 4차로
교량	포천천교	포천IC 인근	L=860m, W=24.5m	왕복 4차로
터널	송산터널	일산~송산 구간	L=1,420m, W=10.5m	왕복 2차로
휴게소	포천휴게소	포천IC 인근	부지 12,000㎡	주유소, 편의점
톨게이트	일산톨게이트	일산IC 내	8차로	하이패스 겸용
톨게이트	포천톨게이트	포천IC 내	6차로	하이패스 겸용
교량	송산교	송산IC 인근	L=640m, W=24.5m	왕복 4차로
터널	포천터널	포천IC 인근	L=2,100m, W=10.5m	왕복 2차로

공사 개요

구분	내용
공사명	일산~포천 고속도로 확장공사
공사기간	2015.03 ~ 2019.12 (57개월)
공사구간	일산JCT ~ 포천IC (12.1km)
시공사	대한건설(주) 외 3개사
감리사	한국엔지니어링(주)
총사업비	3,250억원
공정률	100% (준공)
준공일	2019.12.20
개통일	2019.12.27
비고	무사고 준공

교통량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평균 교통량	38,200	39,500	40,800	41,600	42,000
증가율	-	3.4%	3.3%	2.0%	1.0%
대형차 비율	18.5%	18.8%	19.0%	19.2%	19.3%
승용차 비율	81.5%	81.2%	81.0%	80.8%	80.7%
최대시간 교통량	3,820	3,950	4,080	4,160	4,200
첨두율	10.0%	10.0%	10.0%	10.0%	10.0%
방향분포	52:48	52:48	52:48	52:48	52:48
비고	개통				

공정 현황

구분	계획	실적	비고
착공	2015.03	2015.03	
토공	2016.12	2016.12	
교량	2017.06	2017.06	
터널	2017.12	2017.12	
포장	2018.09	2018.09	
부대공	2019.06	2019.06	
준공	2019.12	2019.12	
개통	2019.12	2019.12	

예산 현황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토공	820억	820억	0	
교량	1,150억	1,150억	0	
터널	680억	680억	0	
포장	210억	210억	0	
부대공	150억	150억	0	
보상	240억	240억	0	
합계	3,250억	3,250억	0	

안전 관리

구분	내용
안전관리자	3명
안전교육	월 1회
무재해	1,200일
사고	0건
비고	

환경 관리

구분	내용
소음	주간 70dB 이하
진동	65dB 이하
분진	살수차 운영
폐기물	적정 처리
비고	

유지관리 현황

구분	내용
관리주체	일산~포천 고속도로 관리단
관리인원	45명
순찰차량	6대
비고	

교통안전시설 현황

구분	내용
표지판	120개
노면표시	12.1km
가로등	240개
방호울타리	24.2km
비고	

휴게소 현황

구분	내용
명칭	포천휴게소
위치	포천IC 인근
부지	12,000㎡
주차면	승용 180, 대형 60
비고	

톨게이트 현황

구분	내용
명칭	일산톨게이트, 포천톨게이트
차로수	8차로, 6차로
하이패스	전 차로
비고	

교량 현황

구분	내용
명칭	일산대교, 포천천교, 송산교
연장	2,610m
폭원	24.5m
비고	

터널 현황

구분	내용
명칭	송산터널, 포천터널
연장	3,520m
폭원	10.5m
비고	

공사 현황

구분	내용
공사명	일산~포천 고속도로 확장공사
공사기간	2015.03 ~ 2019.12
공사구간	일산JCT ~ 포천IC
시공사	대한건설(주) 외 3개사
감리사	한국엔지니어링(주)
비고	

공정 현황

구분	계획	실적	비고
착공	2015.03	2015.03	
준공	2019.12	2019.12	
개통	2019.12	2019.12	
비고			

예산 현황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합계	3,250억	3,250억	0	
비고		

㈜옥산 JCT 상세도 (수정의결보완전-수정의결보완후-'13.05)

◈ 교통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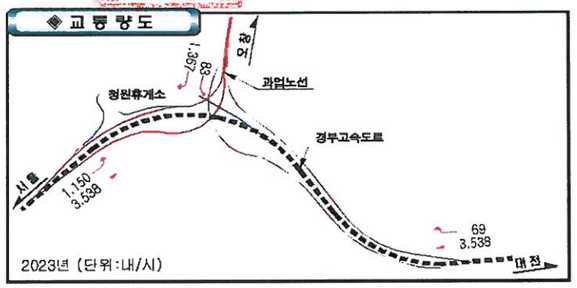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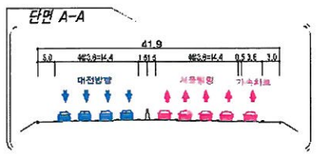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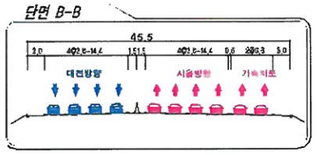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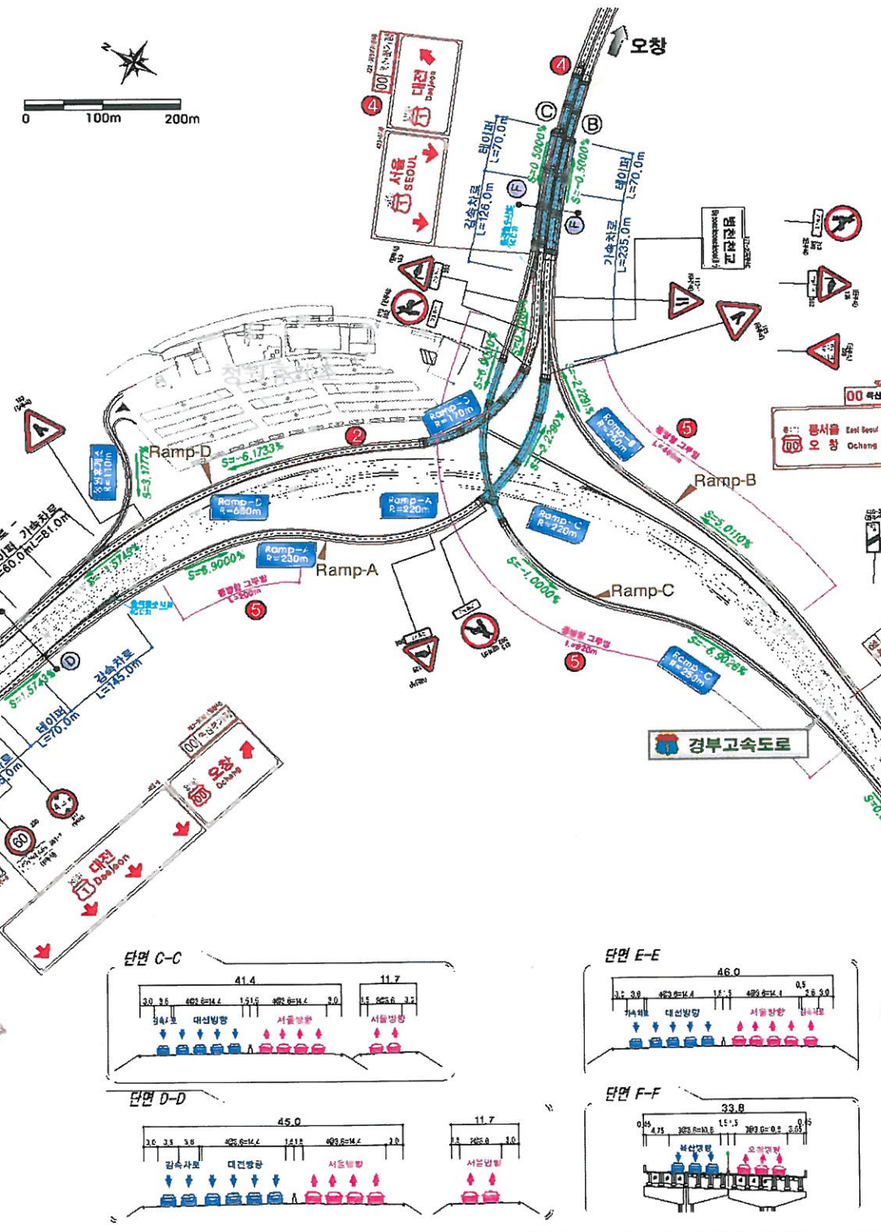

◈ 개 선 방 안

구 분	개 선 사 항
형 식	·준직결형 Y형식(입체교차로) - 경부고속도로와 접속
차량 동선 체계	·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확장 기본설계안 반영 ·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① - 가속차로 설치 3개소 (L=290m→ 294m, L=305m, L=670m, B=3.6m) - 감속차로 설치 3개소 (L=196m, L=290m, L=430m, B=3.6m) ② 운전자의 혼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입로 삭제 ·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출로 설치 : 연결로에서 합류후 경부고속도로 유입으로 경부고속도로 교통안전성 및 지정체 완화 - 가속차로 설치 1개소(L=141m, B=3.6m) ·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B" ~ "D" 확보
교통안전 및 기 타	③ 청원휴게소 진입로, 오창방향 연결로에 대한 통합표지판 설치(5개소)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④ 서울·대전방향 문형식 표지(1개소), 노면표지(3개소) 설치 ⑤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L=1,480m)

주 : 적색글씨 - 사전검토완('13. 03) 사항임

◈ 합분류 분석(2023년)

구분	형식	밀도비 (pcpkmpl)	LOS
본선 Ⓐ	분류	16.6	C
본선 Ⓑ	합류	9.5	B
접속 Ⓒ	분류	10.6	B
접속 Ⓓ	합류	19.2	D
접속 Ⓔ	합류	9.5	B
접속 Ⓕ	분류	11.6	B

◈ 연결로 차로수 산정(2023년)

방향	AADT (대/일)	용량 (pcph)	PDDHV (pcph)	차로수 소요	차로수 설계
Ramp-A	16,433	1,800	1,466	1	2
Ramp-B	993	1,800	89	1	1
Ramp-C	1,181	1,800	105	1	1
Ramp-D	19,538	1,800	1,743	1	2

나. 서오창 IC 상세도 [수정의결보완전-수정의결보완후-'13.05]

◈ 교통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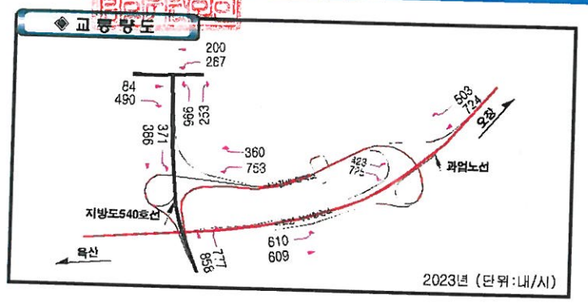

단면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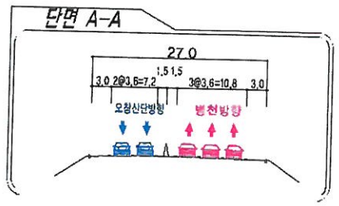

단면 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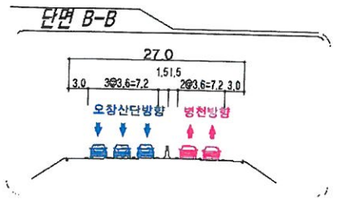

◈ 개 선 방 안

구 분	개 선 사 항
형 식	·더블트럼펫형(입체교차로) - 지방도 540호선과 접속
진출입 동선 체계	· 지방도540호선과 접속계획으로 교통소통 및 접근성 확보 ·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 가속차로 설치 4개소 (L=180m, L=335m, L=362m, L=370m, B=3.6m) - 감속차로 설치 4개소 (L=160m, L=205m, L=210m, L=340m, B=3.6m) · 본선 영업소 및 IC 영업소의 충분한 영업소 차로수 확보 - 본선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 IC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A" ~ "C" 확보
교통안전 및 기 타	● 하이패스 안내표지 추가설치(3개소) ●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안내표지추가 설치(2개소) ●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L=1,235m)

주 : 적색글씨 - 사전검토보완('13. 03) 사항임.

◈ 합분류 분석(2023년)

구분	형식	밀도비 (pcpkmpl)	LOS
본선 Ⓐ	분류	8.8	B
본선 Ⓑ	합류	9.5	B
본선 Ⓒ	분류	8.8	B
본선 Ⓓ	합류	13.9	C
접속 Ⓐ	분류	9.8	B
접속 Ⓑ	합류	9.9	B
접속 Ⓒ	분류	5.1	A
접속 Ⓓ	합류	11.0	B

◈ 연결로 차로수 산정(2023년)

방향	AADT (대/일)	용량 (pcph)	PDDHV (pcph)	차로수 소요	차로수 설계
Ramp-B	6,043	1,600	539	1	1
Ramp-C	8,721	1,800	778	1	1
Ramp-D	10,369	1,700	925	1	1
Ramp-E	7,185	1,800	641	1	1
Ramp-F	5,305	1,600	473	1	1
Ramp-G	10,765	1,700	960	1	2
Ramp-H	11,107	1,700	991	1	2
Ramp-I	5,141	1,700	459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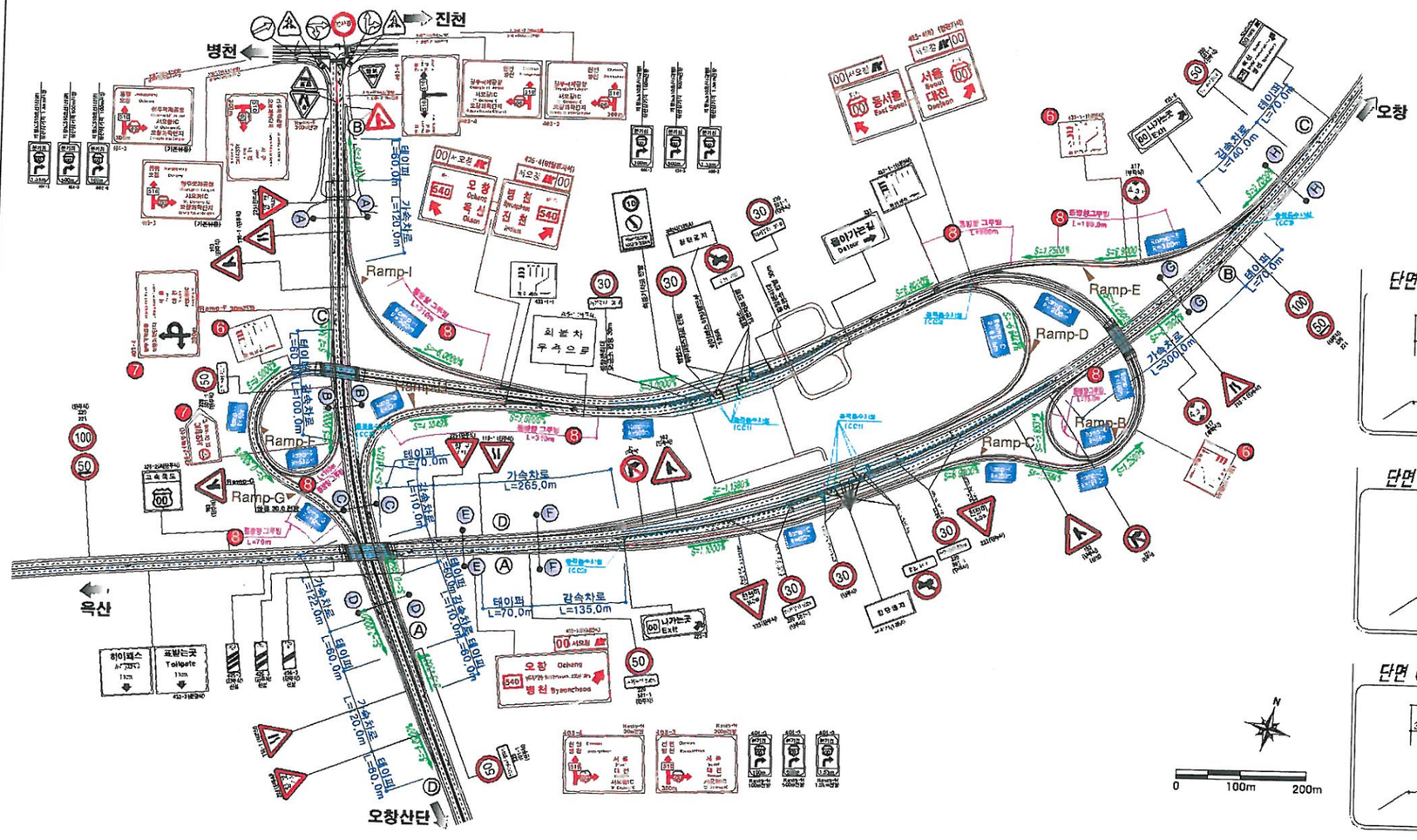

단면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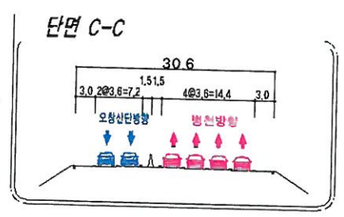

단면 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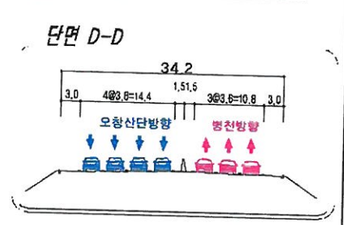

단면 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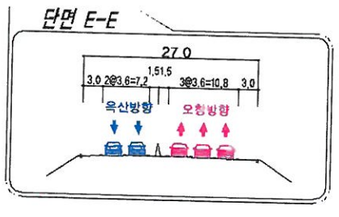

단면 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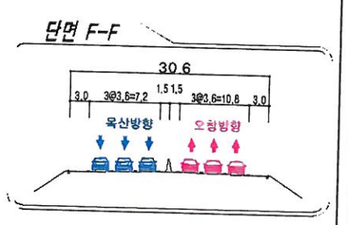

단면 G-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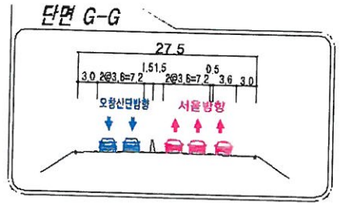

단면 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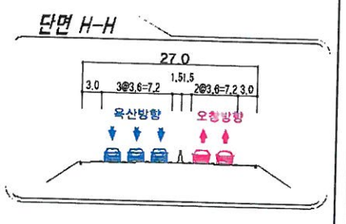

㉮ 오창 JCT 상세도 [수정의결보완전=수정의결보완후-'13.05]

◈ 교통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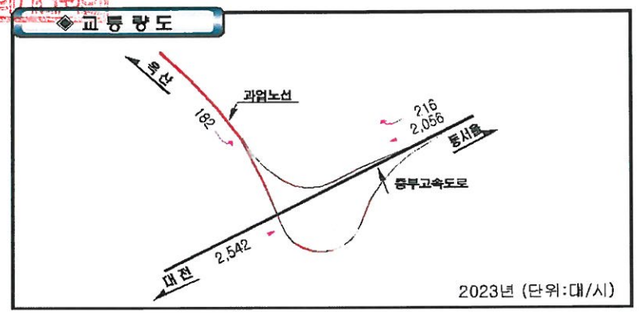



◈ 개 선 방 안

구분	개 선 사 항
형 식	·직결형(입체교차로),(장래트럼펫형 단계건설) – 중부고속도로와 접속
진출입 동선 체계	· 장래 동서5축 오창~울진간 연계를 고려한 기본설계VE안 반영 (대전방향 연결로 – 장래단계 건설) ·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 가속차로 설치 1개소 (L=365m, B=3.6m) – 감속차로 설치 1개소 (L=220m, B=3.6m) ·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C"~"D" 확보
교통안전 및 기 타	●안내표지판 지명통일(서울→천안)

주 : 적색글씨 – 사전검토보완('13.02) 사항임.

◈ 연결로 차로수 산정(2023년)

방향	AADT (대/일)	용 량 (pcph)	PDDHV (pcph)	차 로 수 소요	설계
Ramp-C	2,596	1,800	232	1	1
Ramp-D	3,086	1,800	275	1	1

◈ 합분류 분석(2023년)

구분	형식	밀도비 (pcpkmpl)	LOS
접속Ⓐ	분류	16.7	C
접속Ⓑ	합류	21.9	D

단면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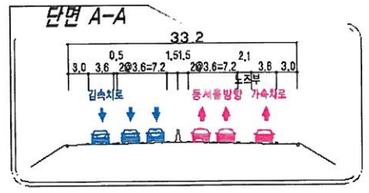

단면 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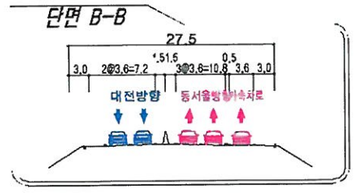

7. 사전재해영향평가심의 조치결과

옥산~오창 고속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 의 의 견 조 치 결 과

2013. 5

협의의견 조치결과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추가 의견 제시	○ 노선선정 -노선선정 검토시 재해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추가 검토하기 바람	○ 반영 -재해적 측면으로 하천재해, 호우재해, 사면재해 등에 대해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노선을 선정 ■ 하천재해 : 하천횡단 및 하천내 시설물설치 최소화 방안으로 노선을 선정 ■ 호우재해 : 토사유출량 최소화 노선 선정 후 임시침사지 계획 ■ 사면재해 : 산사태위험지구 통과 최소화로 사면재해 저감	(첨부#1)
	○ 소하천 이설 선형계획 -소하천 이설2개소에 대해서는 수충부(직각으로 꺾이는 부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형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 부분반영 -선형 재검토 결과 당초 직각인 수충부를 둔각으로 처리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 측면으로 유속 및 소류력 검토를 통하여 호안의 안정성을 확보. 【 성산천 】 ■ 당초 직각인 유로를 둔각으로 선형개량 하였으며 수충부 발생구간은 소류력 검토결과 12kg/㎡ 이하로 산정되어 허용소류력 16kg/㎡인 자연형 식생블럭으로 계획하였음. 【 양지천 】 ■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은 없으며 기존 직강하천과 곡률반경이 작은 구간을 개량하여 완만한 곡률과 자연스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형계획을 수립하였음.	(첨부#2)
	○ 양지천 -양지천 직상류에 저수지가 있고 여수로가 양지천으로 연결되어 있는바, 양지천 선형변경에 따른 도수처리(감쇄공설치)와 하상 및 법면 세굴방지 대책을 포함한 선형변경을 시키지 않는 방안은 없는지 추가 검토할 것	○ 반영 -기존유로를 유지할 경우 도로횡단암거 계획연장(L=165m), 유 · 출입부 단차(H=13m) 과다 발생으로 유지관리 및 유출부 세굴에 취약하여 유로 이설이 불가피하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03.7, 청원군)을 반영하여 계획하폭 및 통수단면 확보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 -기존 양지소류지 여수로 시설물(도수로, 감쇄공, 방수로)은 저촉되지 않으며, 여수로 끝단은 하상 세굴방지를 위한 바닥보호공을 추가 설치하였음.	(첨부#3)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추가 의견 제시	○ 하천기본계획 -하천내 교각설치에 따른 수리검토는 주변 상.하류 수위 영향인자(윤변, 경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증가하는 수위는 현재 수립중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 하천관리청과 협의 공문을 수록하기 바람	○ 반영 -하천내 교각설치에 따른 수리검토는 상·하류 수위 영향인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였고, 증가하는 수위(병천천 최대 5cm, 용두천·성암천 28cm)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천관리청과 협의함. ■ 협의 공문 첨부	(첨부#4)
	○ 배수관 유속 -배수관 유속은 적정유속(0.8~3.0m/s)을 지키고, 초과되는 경우는 유입구 및 유출구에 감쇄공 등을 설치하여 유속을 저감시킬 것	○ 반영 -협의의견에 따라 배수관 적정유속이 요구되는 28개소에 대하여 유속 저감시설을 계획하였음. ■ 수로보호공 : 14개소 ■ 감쇄공 : 10개소 ■ 침전조 : 4개소	(첨부#5)
	○ 개발후 홍수량산정 -개발후 홍수량 감소하였는바, 홍수량 산정을 재검토 하기바람	○ 반영 -개발후 홍수량은 적정하게 산정되었음 ※ 개발전 토지이용현황은 농경지 및 급경사 산지로 유출계수가 높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개발중에는 나지로 변경됨에 따라 유출계수가 감소하였고, 개발후에 절·성토사면에 대한 녹화를 실시하여 녹지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치되어 유출계수가 감소	(첨부#6)
	○ K값 적용 -토사유출량 산정시 현장 위치별로 지층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위치별 현장의 지층조건을 고려하여 K값을 적용할 것	○ 반영 -토사유출량 산정시 현장 위치별 지층조건을 고려하여 K(토양침식인자)값을 적용하였음.	(첨부#7)
	○ 산사태 위험지구 계측관리 -산사태 위험지구 계측관리는 개발중.후 철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측하기 바람	○ 반영 -산사태 위험지구 계측관리에 있어 개발중·후에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 개발중 : 계측시설 15개소 운영관리 · 지중계 : 5개소 · 지하수위계 : 5개소 · 프리즘타켓 : 5개소 ■ 개발후 : 운영 및 유지관리 수립계획서에 따라 관리	(첨부#8)
	○ 생태통로 위치 -생태통로 BOX 위치를 명확히 제시할 것(도면)	○ 반영 -생태통로(2개소) 위치를 도면에 제시하였음. (본선 STA. 0+320, 본선 STA. 8+440)	(첨부#9)

첨 부

첨 부 #1

▣ 노선비교검토

본 계획노선인 1안과 비교노선인 2안, 3안에 대하여 기술적 · 경제적 · 환경적 · 경관적 · 재해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비교 · 검토하였으며, 각 비교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안	2안	3안
계획노선	계획현황		■ 평산신씨종중묘지 우회통과 ■ 동서5축 3지JCT계획 ■ 오창읍 도시계획구역 우회통과	■ 평산신씨종중묘지 단절통과 ■ 동서5축 3지JCT계획 ■ 오창제2지방산업단지 저촉통과	■ 평산신씨종중묘지 단절통과 ■ 동서5축 3지JCT계획 ■ 오창제2지방산업단지 저촉통과
	연장		12.1㎞	10.7㎞	13.5㎞
	구조물	교량	22개소/2,414m	24개소/3,796m	22개소/2,646m
		터널	–	1개소/355m	2개소/645m
	사업비	공사비	2,000억원	2,047억원	1,940억원
		보상비	410억원	600억원	543억원
기술적 측면	도로기능성		■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의 동서5축 기능 수행 양호 ■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기능 수행	■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의 동서5축 기능 수행 보통 ■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기능 수행	■ 경부고속도로 중용구간 발생으로 동서5축 기능 저하 ■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기능 수행
	계획성		■ 옥산JCT 곡선부 접속으로 설치 불리 ■ 경부, 중부고속도로 연결연장 다소 증가(12.1㎞)	■ 옥산JCT 접속부 설치 양호 ■ 경부, 중부고속도로 연결연장 최소 (10.7㎞)	■ 옥산JCT 접속부 설치 양호 ■ 경부, 중부고속도로 연결연장 과다(13.5㎞)
	설계측면		■ 평면선형 양호 ■ 토공량 : 약 270만㎥(사토 0.6만㎥) ■ JCT/IC : 3개소(영업소 1개소)	■ 평면선형 양호 ■ 토공량 : 약 750만㎥(사토 150만㎥) ■ JCT/IC : 3개소(영업소 2개소)	■ 평면선형 양호 ■ 토공량 : 약 633만㎥(사토 33만㎥) ■ JCT/IC : 3개소(영업소 3개소)
경제적 측면			■ 사업비 저렴	■ 사업비 고가	■ 사업비 보통
환경적 측면	자연환경 분야		■ 녹지자연도 : 8등급지역 분포안함 ■ 생태자연도 : 2, 3등급 ■ 야생동물보호구역 : 약 4.8㎞이격 ■ 생태통로계획 : 2개소 ■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없음 ■ 연계성 없는 만뢰지맥 기개발지 통과로 환경훼손 최소	■ 녹지자연도 : 8등급지역 분포안함 ■ 생태자연도 2, 3등급 ■ 야생동물보호구역 : 약 4.6㎞이격 ■ 생태통로계획 : 없음 ■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없음 ■ 금북정맥의 줄기인 만뢰지맥 단절로 환경훼손 발생	■ 녹지자연도 : 8등급지역 분포안함 ■ 생태자연도 2, 3등급 ■ 야생동물보호구역 : 약 4.6㎞이격 ■ 생태통로계획 : 없음 ■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없음 ■ 금북정맥의 줄기인 만뢰지맥 단절로 환경훼손 발생
	생활환경 분야		■ 대기질 예측시 오염물질의 일시적 증가가 예상되나 환경기준이하로 예상됨 ■ 경부고속도로 JCT 교량에 의한 병천천 수위영향 최소화(하폭이 넓어 교각영향최소) ■ 그랜드 CC남측 우회통과(관계기관 협의) ■ 주요 정온시설 통과구간이 없음 ■ 지역단절 구간 : 없음	■ 대기질 예측시 오염물질의 일시적 증가가 예상되나 환경기준이하로 예상됨 ■ 경부고속도로 JCT 교량에 의한 병천천 수위영향 최대(하폭이 좁아넓어 교각영향최대) ■ 그랜드 CC남측 북측통과 ■ 주요 정온시설 통과구간(5개소)에서 소음영향 발생 ■ 지역단절 구간 : 2개소(신자포실마을, 문화마을)	■ 대기질 예측시 오염물질의 일시적 증가가 예상되나 환경기준이하로 예상됨 ■ 경부고속도로 JCT 교량에 의한 병천천 수위영향 최대(하폭이 좁아넓어 교각영향최대) ■ 그랜드 CC남측 우회통과(관계기관 협의) ■ 주요 정온시설 통과구간(2개소)에서 소음영향 발생 ■ 지역단절 구간: 1개소(신자포실마을)
	사회 · 경제 환경분야		■ 평산신씨 종중묘지 및 한국사(사찰) 우회로 민원해소 ■ 오창읍도시계획구역(생산녹지) 통과하여 접속→관계기관 협의완료	■ 평산신씨 종중묘지 단절 및 한국사 근접 통과로 민원 발생 ■ 오창제2지방산업단지 저촉으로 관계기관 민원발생	■ 평산신씨 종중묘지 단절 및 한국사 근접 통과로 민원 발생 ■ 오창제2지방산업단지 저촉으로 관계기관 민원발생
재해적 측면			■ 지방하천 횡단(병천천, 용두천, 성암천) 최소화 ■ 하천내 구조물설치 최소화 ■ 저지대를 통과하므로 절 · 성토사면 발생이 적고 사면재해, 토사재해 발생량이 적어 방재시설물 개소 및 규모가 적음.	■ 4개의 지방하천 횡단(병천천, 성재천, 용두천, 성암천) ■ 하천내 JCT설치에 따른 하천부지점용 및 통수단면 부족 야기 ■ 산악지역을 통과하여, 절.성토에 의한 사면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토사유출량 또한 증가하여 저감시설 규모 및 개수 증가	■ 3개의 지방하천 횡단(병천천, 성재천, 용두천) ■ 하천내 JCT설치에 따른 하천부지점용 및 통수단면 부족 야기
경관적 측면			■ 상장남마을 남측통과로 조망권 확보 ■ 청주농고목장 근접통과	■ 성재2리, 신자포실마을, 근접통과로 조망권 차단 ■ 문화마을 단절통과로 조망권 차단	■ 성재2리, 신자포실마을 근접통과로 조망권 차단
선정안			◎		
검토결과	■ 관계기관 의견 및 민원수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절토 및 만뢰지맥단절을 최소화, 시설물계획 최소화와 산업단지 저촉을 배제 및 주요 정온시설들의 단절방지하여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1안이 타당함			

▣ 노선 비교도



집단민원발생
산업단지우회요구반영
서울
경부고속도로
검토2안
검토3안
검토1안
옥산JCT 연결로
병천천내 설치
옥산 JCT
경부고속도로
병천천 제방도로
이용구간
그랜드 C.C
서오창IC영업소
서오창 IC
만뢰지맥단절
산업단지저촉
오창읍
도시계획구역
오창제2지방
산업단지
오창 JCT
중부고속도로
오창과학
산업단지
오창 IC
대전

첨 부 #2

▣ 하천이설(성산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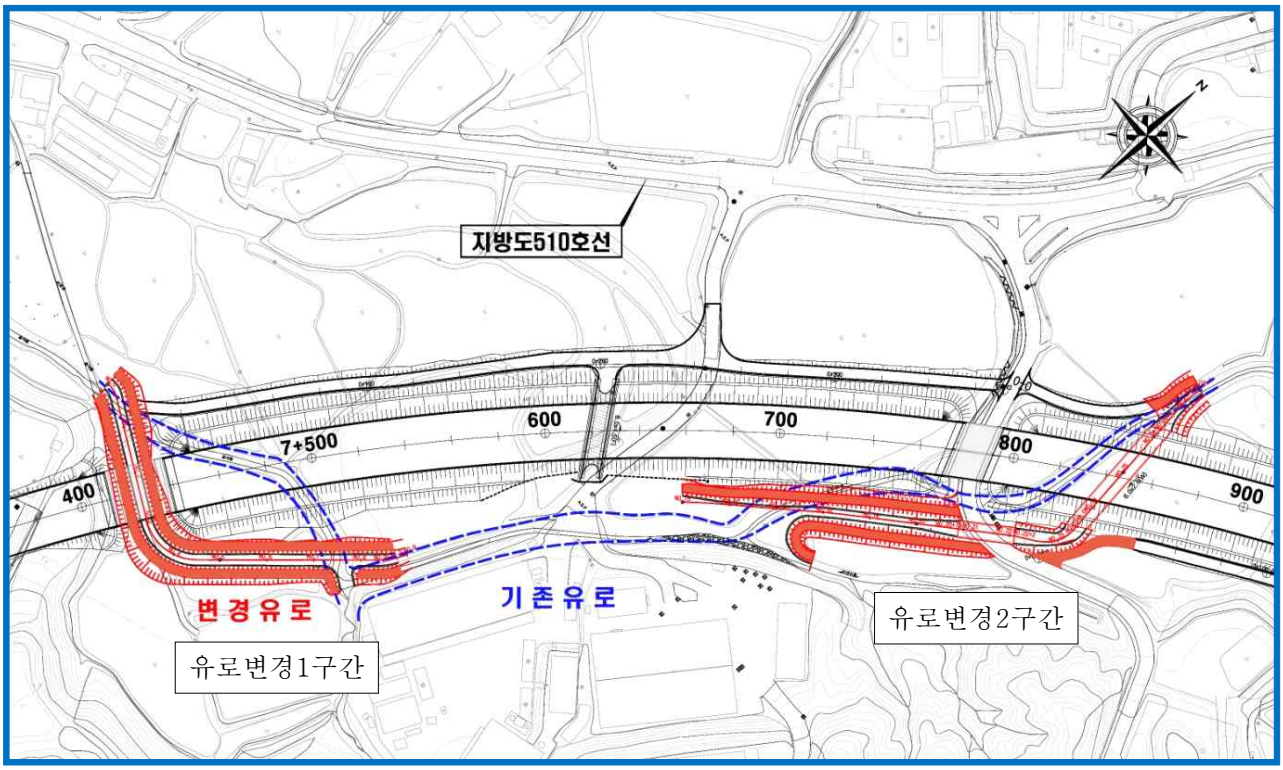

▣ 하천이설(양지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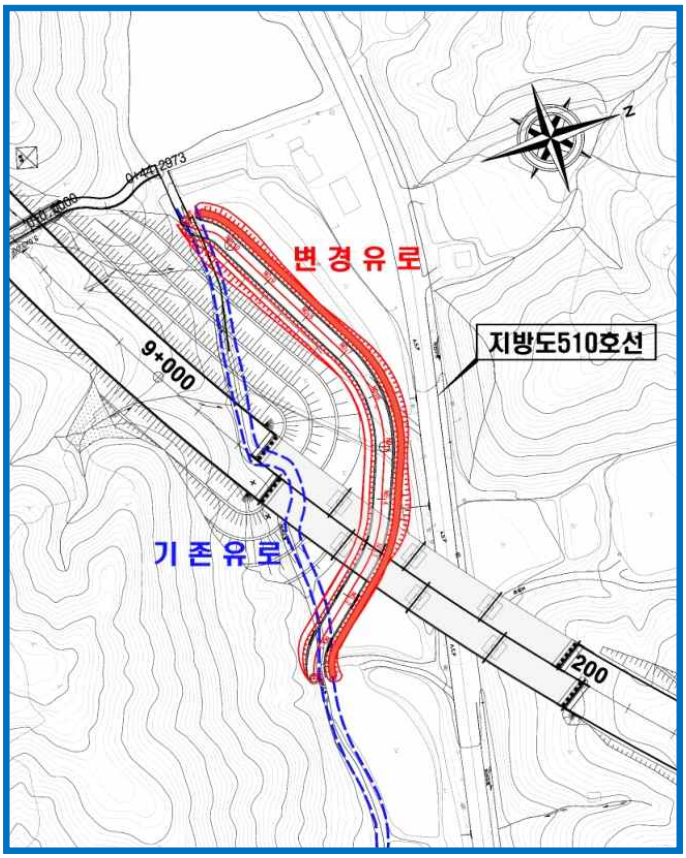

▣ 유로변경 검토안(성산천)

본 계획노선인 1안과 비교노선인 2안, 3안에 대하여 환경적 · 재해적 측면 등을 고려하고 하천관리청(청원군청)과 협의하여 최종 유로를 결정하였음.

구분			1안	2안	3안
현 황	평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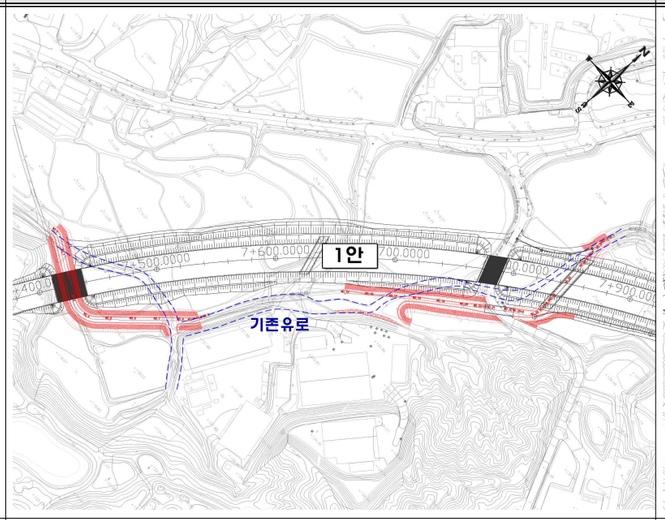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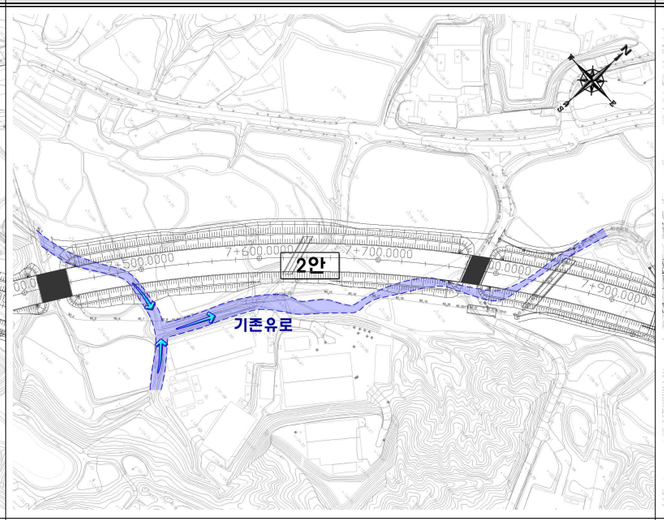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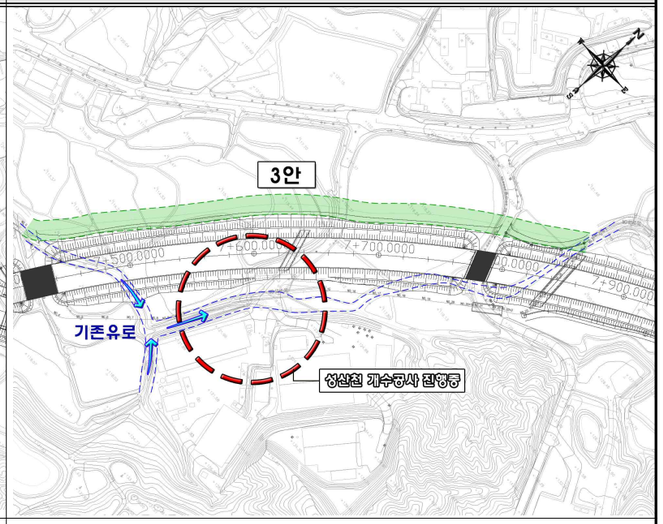
	제 원	유로연장(m)	L=550m	L=531m	L=454m
		경사(L/H)	L=550m, H=8.22m(S=1.4%)	L=531m, H=8.22m(S=1.5%)	L=454m, H=8.22m(S=1.8%)
환경적 측면			■ 개거(교량설치)에 의한 계획수립으로 환경성 양호 ■ 자연형 호안설치로 경관, 하천 접근성에 유리하며 여울, 소 등 생성에 의한 어류 및 수생생물 서식처 확보에 유리	■ 기존 도로선형을 유지하므로 복개가 불가피하며 연장 L=215m의 암거 필요 ■ 복개로 인한 하천접근성이 불리하며 일조량 감소에 의한 하천환경 악화	■ 우안측은 도로 비탈면 끝단으로 접근성에 불리하며 하천 직강으로 인한 빠른 유속으로 어류 및 수생식물 서식 및 부착에 불리 ■ 경관적 측면에서 불리
재해적 측면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계획하폭 및 통수단면 확보 ■ 직각인 유로를 둔각으로 선형개량 하였으며 한 지점에서 두 개 지류가 합류하여 수리적 불완전한 흐름을 제거 ■ 유속 및 소류력 검토를 통한 유수에 안전한 호안공법 선택 ■ 유지관리 측면에서 2안보다 유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계획하폭 및 통수단면 확보 ■ 직각인 유로 및 두 개 지류의 합류로 인한 흐름 불균형 발생 ■ 유지관리 측면에서 1안보다 불리	■ 하천 직강에 위한 유로단축 및 하상경사 변화에 따른 대체시설물(낙차공 등) 필요 ■ 성산천 개수공사 진행중이므로 일부구간 유로변경 불가 ■ 유속증가 및 하상경사의 급함으로 인한 하류하천 부담증가
채 택 안			◎		
검토결과			■ 환경적으로 경관, 하천접근성에 유리하며 직각인 유로를 둔각으로 선형개량하고 합류점의 불완전한 흐름을 제거한 1안이 타당함.(하천관리청과 협의완료)		

▣ 소류력 검토

〈성산천 소류력 검토〉(유로변경1구간)

측점 (No.)	거리 (m)	누 가 거 리 (m)	계 획 하상고 (EL.m)	계 획 홍수위 (EL.m)	계획제방고(EL.m)		유 속 (m/s)	소류력 (kg/㎡)
					좌안	우안		
NO.0	0	0	111.70	113.13	114.12	114.12	3.59	11.95
NO.1	20	20	111.97	113.39	114.20	114.20	3.59	11.92
NO.2	20	40	112.24	113.68	114.28	114.28	3.48	11.11
NO.3	20	60	112.51	113.93	114.53	114.53	3.59	11.94
NO.4	20	80	112.78	114.20	114.80	114.80	3.59	11.92
NO.5	20	100	113.05	114.47	115.07	115.07	3.59	11.91
NO.6	20	120	113.32	114.74	115.34	115.34	3.59	11.91
NO.7	20	140	113.59	115.02	115.62	115.62	3.59	11.97
NO.8	20	160	113.86	115.71	116.31	116.31	1.58	2.19
+15.5	15.5	175.5	114.13	115.74	116.34	116.34	2.53	6.04
NO.15	20	300	116.08	117.31	–	118.63	0.71	0.44
NO.16	20	320	116.46	117.74	–	119.09	1.05	1.08
NO.17	20	340	116.84	118.18	–	119.54	1.54	2.78
NO.18	20	360	117.22	118.61	120.00	120.00	3.26	10.55
NO.19	20	380	117.61	119.05	120.45	120.45	3.26	10.57
NO.20	20	400	117.99	119.48	120.91	120.91	3.27	10.62
+18	18	418	118.37	119.87	121.32	121.32	1.31	1.52
NO.23	20	460	119.13	120.54	121.96	121.86	3.26	10.54
+9	9	469	119.52	120.87	122.07	121.96	1.46	1.93
NO.27	16	540	120.66	121.84	122.82	122.83	3.28	10.67
+8.1	8.1	548.2	120.82	122.01	122.82	122.82	3.27	10.59

〈성산천 소류력 검토〉(유로변경2구간)

측점 (No.)	거리 (m)	누 가 거 리 (m)	계 획 하상고 (EL.m)	계 획 홍수위 (EL.m)	계획제방고(EL.m)		유 속 (m/s)	소류력 (kg/㎡)
					좌안	우안		
NO.0	0	0	74.86	76.58	77.18	–	3.51	11.79
NO.1	14.9	14.9	75.39	77.09	77.69	77.69	2.43	5.07
NO.2	20	34.9	76.09	77.55	78.16	78.16	3.40	10.72
NO.3	20	54.9	76.79	78.02	78.62	78.62	3.40	10.72
NO.4	20	74.9	77.5	78.73	79.33	79.33	3.41	10.77
NO.5	20	94.9	78.2	79.43	81.46	80.03	3.41	10.77
NO.6	20	114.9	78.79	80.02	82.39	80.62	3.40	10.73
NO.7	20	134.9	79.37	80.61	81.21	81.21	3.39	10.69
NO.8	20	154.9	79.96	81.2	81.8	81.8	3.41	10.77
NO.9	20	174.9	80.54	81.78	82.38	82.38	3.39	10.68
NO.10	20	194.9	81.13	82.45	83.05	83.05	3.39	10.66
NO.11	20	214.9	81.71	82.95	83.7	83.55	3.41	10.78

▣ 호 안

호안은 제방을 유수의 흐름에 의한 침식, 붕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것으로서 호안의 공법 및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 소류력 및 내구성이 검토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소류력은 유수가 윤변에 작용하는 마찰력으로서 호안재료의 충분한 중량 및 안정성이 요구되며, Schoklitsch가 발표한 호안재료에 대한 허용 소류력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설계 적용호안은 자연형 식생블럭으로 설계하였으며, 참고로 수로내에 소류력 계산식에 사용된 식과 Schoklitsch가 발표한 각종 호안에 대한 허용 소류력은 다음 표와 같다.

$$T = WRI = \frac{W}{C^2} V^2$$

여기서 T : 소류력 (kg/㎡)

W : 물의 단위중량 (kg/㎥)

R : 경심 (m)

I : 수면경사 혹은 에너지선의 경사

V : 평균유속 (m/sec)

C : Chezy 유속계수 $V = C\sqrt{RI}$

▣ 허 용 소 류 력

(단위 : kg/㎡)

호 안 의 종 류	허 용 소 류 력	비 고
1. 평떼 (張芝)	2.0	
2. 바자(柵工)안의 굵은 자갈	1.0	
3. 바자(柵工)안의 자갈	1.5	
4. 바자(유수에 병행 혹은 비스듬할 때)	5.0	
5. 섶호안	7.0	
6. 돌붙임(비탈 1:1, 두께 0.3m)	**16.0**	
7. 큰사석 (捨石)	24.0	
8. 공적석공 (空積石工)	60.0	
9. 콘크리트 벽	60.0	
10. 틀공	150까지	

주〕 자료출처 : 하천공학 (1973. 운문당)

첨 부 #3

▣ 양지소류지 전경사진







첨 부 #4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의의견 조치결과 송부

1. 충청북도 균형개발과-5144(2012.04.27), 청원군 건설과-12359(2012.05.08), 보병제37사단 작전참모처-917(2012.05.01)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귀 기관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협의의견 조치결과 1부(별도송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신자 충청북도지사(균형개발과장), 청원군수(건설과장), 보병 제[illegible]군처장)

사무관대	사무관대		전결 2013. 4. 4.
우 한형동	우 송창원	과장	서용욱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255 (2013. 4. 4.)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564 팩스번호 042-670-3485 / hanhd@mltm.go.kr /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미호천권역 하천통과 관련 협의 요청(옥산-오창)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노선이 미호천권역 지방하천(병천천, 용두천, 성암천) 구간을 통과하여 귀 과에서 용역중인 「미호천권역(2)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협의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협의 자료 1부(별도송부). 끝.

도 로 시 설 과 장

주무관	박준식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3. 4. 19. 서용옥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621 (2013. 4. 19.)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554 팩스번호 042-670-3485 / mjjs98@molit.go.kr /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하천횡단에 따른 협의의견 회신(미호천 권역 기본계획)

1. 도로공사과-621호(2013.4.19)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노선과 관련하여 우리 국에서 시행중인 하천기본계획(미호천 상류권역(II), 미호천-병천천 권역)과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과 하천기본계획과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이 필요하나, 현재 과업 진행상(초기단계) 자료 제공 및 적합여부 검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가 확정되는 시기('14.5)에 맞춰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하천통과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시고 하천설계기준·해설(국토교통부, '09)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끝.

하 천 국장

주무관	주무관	과장	전결 2013. 4. 24.
가필순	배상근	이명원	

협조자

시행 하천계획과-540 (2013. 4. 24.) 접수 도로공사과-710 (2013. 4. 24.)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312 팩스번호 042-670-3487 /pilgood7@molit.go.kr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미호천권역 하천통과 관련 협의요청 회신내용 알림(옥산-오창)

1. 하천계획과-540(2013.04.24) 및 옥산오창 2013-27(2013.04.18)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미호천권역 지방하천(병천천, 용두천, 성암천) 통과 구간의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하천기본계획 완료 시기에 맞추어 옥산-오창 사업에 이를 반영하여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신 공문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무관대우 한형동 사무관대우 송창원 과장 전결 2013. 5. 1. 서용욱
협조자
시행 도로공사과-872 접수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564 팩스번호 042-670-3485 / hanhd@molit.go.kr /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첨 부 #5

첨 부 #6

▣ 합리식의 유출계수

토지이용		기본유출계수	토지이용			유출계수
상업 지역	도심지역	0.70-0.95	차도및보도			0.75-0.85
	근린지역	0.50-0.70	지붕			0.75-0.95
주거 지역	단독주택	0.30-0.50	잔디	사질토	평탄지	0.05-0.10
	독립주택 단지	0.40-0.60			평균	0.10-0.15
	연립주택 단지	0.60-0.75			경사지	0.15-0.20
	교외지역	0.25-0.40		중토	평탄지	0.13-0.17
	아파트	0.50-0.70			평균	0.18-0.22
산업 지역	산재지역	0.50-0.80			경사지	0.25-0.35
	밀집지역	0.60-0.90	농경지	나지	평탕한곳	0.30-0.60
공원,묘역		0.10-0.25			거친곳	0.20-0.50
운동장		0.20-0.35		경작지	사질토 작물있음	0.30-0.60
철로		0.20-0.40			사질토 작물없음	0.20-0.50
미개발지역		0.10-0.30			점토 작물있음	0.20-0.40
도로	아스팔트	0.70-0.95			점토 작물없음	0.10-0.25
					관개중인답	0.70-0.80
	콘크리트	0.80-0.95		초지	사질토	0.15-0.45
					점토	0.05-0.25
	벽돌	0.70-0.85	급경사산지			0.40-0.80
			완경사산지			0.30-0.70

자료 : 하천설계기준·해설(2009, 한국수자원학회)

▣ 산정지점별 유출계수

〈 산정지점별 개발전 유출계수〉

산정지점	농경지	불투수지역	임야	나지	녹지	수면	계	유출계수
OS1	29584.7620	–	30466.1100	–	–	–	60050.8720	0.75
OS2	11414.8240	17672.9900	–	–	–	–	29087.8140	0.94
OS3	–	–	10128.5790	–	–	–	10128.5790	0.60
OS4	–	–	7086.8160	–	–	–	7086.8160	0.60
OS5	–	–	7448.9790	–	–	–	7448.9790	0.60
OS6	–	–	10585.4800	–	–	–	10585.4800	0.60
OS7	10655.4510	–	2129.3310	–	–	–	12784.7820	0.85
OS8	25906.6440	–	22234.5120	–	–	–	48141.1560	0.76
OS9	6612.2450	8972.9890	15306.0700	–	–	–	30891.3040	0.77
OS10	5002.5730	5979.5490	–	–	–	–	10982.1220	0.93
OS11	3398.4010	3916.2350	–	–	–	–	7314.6360	0.93
OS12	5908.7760	4227.6780	–	–	–	–	10136.4540	0.93
OS13	2941.0150	2886.7860	–	–	–	–	5827.8010	0.93
OS14	6266.1780	4256.2340	–	–	–	–	10522.4120	0.92
OS15	4073.9270	3542.1660	–	–	–	–	7616.0930	0.93
OS16	2243.4320	3509.8710	–	–	–	–	5753.3030	0.94
OS17	16053.3850	8442.0180	–	–	–	–	24495.4030	0.92
OS18	6279.7290	0.9470	3760.4090	–	–	–	10041.0850	0.79
OS19	–	–	16791.7650	–	–	–	16791.7650	0.60
OS20	10678.5800	–	–	–	–	–	10678.5800	0.90
OS21	11293.5030	–	–	–	–	–	11293.5030	0.90
OS22	9503.0890	–	–	–	–	–	9503.0890	0.90
OS23	7622.0910	–	–	–	–	–	7622.0910	0.90
OS24	53507.5140	–	–	–	–	–	53507.5140	0.90
OS25	7366.6390	–	–	–	–	–	7366.6390	0.90
OS26	3793.5820	–	30205.5730	–	–	–	33999.1550	0.63
OS27	3186.2140	–	21988.9740	–	–	–	25175.1880	0.64
OS28	1677.7460	–	22817.3120	–	–	–	24495.0580	0.62
OS29	4000.4640	–	–	–	–	–	4000.4640	0.90
OS30	5347.5310	–	–	–	–	–	5347.5310	0.90
OS31	9077.9600	–	–	–	–	–	9077.9600	0.90
OS32	5770.8530	–	–	–	–	–	5770.8530	0.90
OS33	19463.6370	–	41201.3930	–	–	–	60665.0300	0.70
OS34	6441.2440	–	–	–	–	–	6441.2440	0.90
OS35	4391.4120	–	–	–	–	–	4391.4120	0.90
OS36	–	–	11721.4290	–	–	–	11721.4290	0.60

산정 지점	농경지	불투수지역	임야	나지	녹지	수면	계	유출 계수
OS37	14710.1190	–	40843.0310	–	–	–	55553.1500	0.68
OS38	2959.3050	–	17768.6380	–	–	–	20727.9430	0.64
OS39	7869.0630	–	3622.0820	–	–	–	11491.1450	0.81
OS40	–	–	22089.7630	–	–	–	22089.7630	0.60
OS41	11008.6530	–	42941.4600	–	–	–	53950.1130	0.66
OS42	12276.2320	–	7005.8280	–	–	–	19282.0600	0.79
OS43	34239.0330	–	75492.0120	–	–	–	109731.0450	0.69
OS44	–	–	19408.6360	–	–	–	19408.6360	0.60
OS45	–	–	19524.9030	–	–	–	19524.9030	0.60
OS46	9180.9530	–	18706.1600	–	–	–	27887.1130	0.70
OS47	9294.8860	–	3581.7120	–	–	–	12876.5980	0.82
OS48	43686.0910	–	31420.9230	–	–	–	75107.0140	0.77
OS49	–	–	15326.5720	–	–	–	15326.5720	0.60
OS50	8208.6240	–	16201.0000	–	–	–	24409.6240	0.70
OS51	–	–	8882.6220	–	–	–	8882.6220	0.60
OS52	90784.3130	–	222532.9470	–	–	–	313317.2600	0.69
OS53	–	–	57689.4340	–	–	–	57689.4340	0.60
OS54	114913.8490	–	172801.2230	–	–	–	287715.0720	0.72
OS55	19428.1030	–	37496.3720	–	–	–	56924.4750	0.70
OS56	3597.1690	–	6125.3560	–	–	–	9722.5250	0.71
OS57	2773.6270	–	7596.1950	–	–	–	10369.8220	0.68
OS58	38865.8560	–	–	–	–	–	38865.8560	0.90
OS59	14912.1670	–	–	–	–	–	14912.1670	0.90
OS60	33366.1150	–	8365.3880	–	–	–	41731.5030	0.84
OS61	–	–	21859.4570	–	–	–	21859.4570	0.60
OS62	1919.6100	–	38952.2710	–	–	–	40871.8810	0.61
OS63	–	–	16136.4550	–	–	–	16136.4550	0.60
OS64	5237.9140	–	40781.3040	–	–	–	46019.2180	0.63
OS65	–	–	4957.2240	–	–	–	4957.2240	0.60
OS66	26427.9840	–	26983.5460	–	–	–	53411.5300	0.75
OS67	–	–	17480.9510	–	–	–	17480.9510	0.60
OS68	12321.4540	–	33151.9060	–	–	–	45473.3600	0.68
OS69	–	–	11860.9690	–	–	–	11860.9690	0.60
OS70	35130.5630	–	–	–	–	–	35130.5630	0.90
OS71	154505.0750	–	–	–	–	–	154505.0750	0.90
OS72	104286.1950	–	–	–	–	–	104286.1950	0.90
OS73	97907.4520	–	–	–	–	–	97907.4520	0.90
OS74	5354.0870	–	–	–	–	–	5354.0870	0.90
OS75	5216.1740	–	–	–	–	–	5216.1740	0.90
OS76	2271.8530	–	–	–	–	–	2271.8530	0.90

〈 산정지점별 개발중 유출계수〉

산정지점	농경지	불투수지역	임야	나지	녹지	수면	계	유출계수
OS1	21466.0480	–	8524.8960	30059.9280	–	–	60050.8720	0.71
OS2	3238.7930	2941.8130	–	22907.2090	–	–	29087.8150	0.67
OS3	–	–	6378.0240	3750.5550	–	–	10128.5790	0.60
OS4	–	–	2081.1040	5005.7120	–	–	7086.8160	0.60
OS5	–	–	3079.8500	4369.1290	–	–	7448.9790	0.60
OS6	–	–	7871.1030	2714.3770	–	–	10585.4800	0.60
OS7	2999.0670	–	804.0780	8981.6370	–	–	12784.7820	0.67
OS8	12979.7700	–	7976.3310	27185.0550	–	–	48141.1560	0.68
OS9	1414.9470	4689.4930	4134.0940	20652.7700	–	–	30891.3040	0.67
OS10	1175.7070	5541.9290	–	4264.4850	–	–	10982.1210	0.81
OS11	797.7970	3634.4830	–	2882.3560	–	–	7314.6360	0.81
OS12	2798.0870	3252.8870	–	4085.4800	–	–	10136.4540	0.80
OS13	1253.3490	2565.1760	–	2009.2770	–	–	5827.8020	0.82
OS14	3084.6140	3196.0000	–	4241.7990	–	–	10522.4130	0.80
OS15	1871.2080	3249.4630	–	2495.4220	–	–	7616.0930	0.83
OS16	2116.2460	3509.8710	–	127.1860	–	–	5753.3030	0.93
OS17	11732.0770	6889.7590	–	5873.5680	–	–	24495.4040	0.84
OS18	5922.6960	0.9470	3760.4090	357.0330	–	–	10041.0850	0.78
OS19	–	–	4732.4560	12059.3090	–	–	16791.7650	0.60
OS20	5108.9130	–	–	5569.6670	–	–	10678.5800	0.74
OS21	5742.4670	–	–	5551.0360	–	–	11293.5030	0.75
OS22	5466.2380	–	–	4036.8510	–	–	9503.0890	0.77
OS23	3683.7970	–	–	3938.2940	–	–	7622.0910	0.74
OS24	48297.7830	–	–	5209.7310	–	–	53507.5140	0.87
OS25	2793.6280	–	–	4573.0110	–	–	7366.6390	0.71
OS26	248.9040	–	19973.5610	13776.6890	–	–	33999.1540	0.60
OS27	234.3290	–	5097.5700	19843.2890	–	–	25175.1880	0.60
OS28	639.5140	–	9722.9440	14132.6000	–	–	24495.0580	0.61
OS29	651.2840	–	–	3349.1800	–	–	4000.4640	0.65
OS30	1933.9440	–	–	3413.5870	–	–	5347.5310	0.71
OS31	4240.6070	–	–	4837.3530	–	–	9077.9600	0.74
OS32	476.5480	–	–	5294.3050	–	–	5770.8530	0.62
OS33	7848.1480	–	35642.1820	17174.7000	–	–	60665.0300	0.64
OS34	3255.7240	–	–	3185.5200	–	–	6441.2440	0.75
OS35	1736.6980	–	–	2654.7140	–	–	4391.4120	0.72
OS36	–	–	3983.4290	7738.0000	–	–	11721.4290	0.60

산정 지점	농경지	불투수지역	임야	나지	녹지	수면	계	유출 계수
OS37	10660.5710	–	37064.0340	7828.5450	–	–	55553.1500	0.66
OS38	478.7250	–	14624.4310	5624.7870	–	–	20727.9430	0.61
OS39	778.6450	–	260.7590	10451.7410	–	–	11491.1450	0.62
OS40	–	–	6561.7530	15528.0100	–	–	22089.7630	0.60
OS41	7377.4090	–	35840.0710	10732.6330	–	–	53950.1130	0.64
OS42	1665.6710	–	4049.3030	13567.0860	–	–	19282.0600	0.63
OS43	14311.5140	–	71434.5940	23984.9370	–	–	109731.0450	0.64
OS44	–	–	9573.6150	9835.0210	–	–	19408.6360	0.60
OS45	–	–	6242.5390	13282.3640	–	–	19524.9030	0.60
OS46	350.9040	–	13659.3330	13876.8760	–	–	27887.1130	0.60
OS47	1524.8850	–	553.8060	10797.9070	–	–	12876.5980	0.64
OS48	22971.6490	–	22782.7010	29352.6630	–	–	75107.0130	0.69
OS49	–	–	8724.9790	6601.5930	–	–	15326.5720	0.60
OS50	4911.6910	–	10406.7420	9091.1910	–	–	24409.6240	0.66
OS51	–	–	653.3080	8229.3140	–	–	8882.6220	0.60
OS52	45951.3620	–	164658.4690	102707.4290	–	–	313317.2600	0.64
OS53	–	–	33209.1700	24480.2640	–	–	57689.4340	0.60
OS54	80382.8690	–	146160.9760	61171.2260	–	–	287715.0710	0.68
OS55	13473.3890	–	33385.2120	10065.8750	–	–	56924.4760	0.67
OS56	1126.6950	–	2568.8690	6026.9610	–	–	9722.5250	0.63
OS57	1375.3170	–	3919.0750	5075.4300	–	–	10369.8220	0.64
OS58	17155.7490	–	–	21710.1070	–	–	38865.8560	0.73
OS59	808–	–	–	6832.1670	–	–	14912.1670	0.76
OS60	12587.9810	–	3959.9050	25183.6170	–	–	41731.5030	0.69
OS61	–	–	8507.7240	13351.7330	–	–	21859.4570	0.60
OS62	772.5390	–	31240.1120	8859.2300	–	–	40871.8810	0.61
OS63	–	–	9296.3760	6840.0790	–	–	16136.4550	0.60
OS64	430.2460	–	28227.4750	17361.4970	–	–	46019.2180	0.60
OS65	–	–	886.0780	4071.1460	–	–	4957.2240	0.60
OS66	21683.9540	–	22109.6140	9617.9620	–	–	53411.5300	0.72
OS67	–	–	6323.1520	11157.7990	–	–	17480.9510	0.60
OS68	1474.1690	–	21611.8420	22387.3490	–	–	45473.3600	0.61
OS69	–	–	5634.8730	6226.0960	–	–	11860.9690	0.60
OS70	21416.3340	–	–	13714.2290	–	–	35130.5630	0.78
OS71	116683.9650	–	–	37821.1100	–	–	154505.0750	0.83
OS72	70463.2130	–	–	33822.9820	–	–	104286.1950	0.80
OS73	67242.2210	–	–	30665.2310	–	–	97907.4520	0.81
OS74	3307.5590	–	–	2046.5280	–	–	5354.0870	0.79
OS75	1509.3550	–	–	3706.8190	–	–	5216.1740	0.69
OS76	1308.0310	–	–	963.8220	–	–	2271.8530	0.77

〈 산정지점별 개발후 유출계수〉

산정지점	농경지	불투수지역	임야	나지	녹지	수면	계	유출계수
OS1	21466.0480	16317.5710	8524.8960	–	13742.3570	–	60050.8720	0.71
OS2	3238.7930	17723.0860	–	–	8125.9360	–	29087.8150	0.74
OS3	–	2072.7300	6378.0240	–	1677.8250	–	10128.5790	0.60
OS4	–	2278.0430	2081.1040	–	2727.6690	–	7086.8160	0.55
OS5	–	1660.0600	3079.8500	–	2709.0690	–	7448.9790	0.53
OS6	–	798.6800	7871.1030	–	1915.6970	–	10585.4800	0.55
OS7	2999.0670	3668.6160	804.0780	–	5313.0210	–	12784.7820	0.60
OS8	12979.7700	10217.1040	7976.3310	–	16967.9510	–	48141.1560	0.61
OS9	1414.9470	8276.7300	4134.0940	–	17065.5330	–	30891.3040	0.48
OS10	1175.7070	8823.6010	–	–	982.8130	–	10982.1210	0.88
OS11	797.7970	5716.0270	–	–	800.8120	–	7314.6360	0.87
OS12	2798.0870	4634.2800	–	–	2704.0870	–	10136.4540	0.74
OS13	1253.3490	3814.4750	–	–	759.9780	–	5827.8020	0.85
OS14	3084.6140	4521.5870	–	–	2916.2120	–	10522.4130	0.73
OS15	1871.2080	4961.5560	–	–	783.3290	–	7616.0930	0.87
OS16	2116.2460	3509.8710	–	–	127.1860	–	5753.3030	0.92
OS17	11732.0770	9019.6510	–	–	3743.6760	–	24495.4040	0.81
OS18	5922.6960	0.9470	3760.4090	–	357.0330	–	10041.0850	0.76
OS19	–	5222.6460	4732.4560	–	6836.6630	–	16791.7650	0.54
OS20	5108.9130	2451.0340	–	–	3118.6330	–	10678.5800	0.70
OS21	5742.4670	2729.7140	–	–	2821.3220	–	11293.5030	0.73
OS22	5466.2380	2536.0790	–	–	1500.7720	–	9503.0890	0.80
OS23	3683.7970	1822.4210	–	–	2115.8730	–	7622.0910	0.71
OS24	48297.7830	3284.8900	–	–	1924.8410	–	53507.5140	0.88
OS25	2793.6280	3114.9080	–	–	1458.1030	–	7366.6390	0.78
OS26	248.9040	6689.3860	19973.5610	–	7087.3030	–	33999.1540	0.59
OS27	234.3290	7838.3670	5097.5700	–	12004.9220	–	25175.1880	0.51
OS28	639.5140	7039.6630	9722.9440	–	7092.9370	–	24495.0580	0.59
OS29	651.2840	2149.3370	–	–	1199.8430	–	4000.4640	0.72
OS30	1933.9440	2487.7640	–	–	925.8230	–	5347.5310	0.80
OS31	4240.6070	2413.4270	–	–	2423.9260	–	9077.9600	0.72
OS32	476.5480	2404.5820	–	–	2889.7230	–	5770.8530	0.56
OS33	7848.1480	8931.1200	35642.1820	–	8243.5800	–	60665.0300	0.63
OS34	3255.7240	1956.0510	–	–	1229.4690	–	6441.2440	0.78
OS35	1736.6980	1551.7000	–	–	1103.0140	–	4391.4120	0.74
OS36	–	3558.1650	3983.4290	–	4179.8350	–	11721.4290	0.56

산정 지점	농경지	불투수지역	임야	나지	녹지	수면	계	유출 계수
OS37	10660.5710	4780.9690	37064.0340	–	3047.5760	–	55553.1500	0.67
OS38	478.7250	3219.1580	14624.4310	–	2405.6290	–	20727.9430	0.61
OS39	778.6450	3462.1500	260.7590	–	6989.5910	–	11491.1450	0.47
OS40	–	6231.1280	6561.7530	–	9296.8820	–	22089.7630	0.52
OS41	7377.4090	4142.9750	35840.0710	–	6589.6580	–	53950.1130	0.62
OS42	1665.6710	5525.5910	4049.3030	–	8041.4950	–	19282.0600	0.55
OS43	14311.5140	10169.3360	71434.5940	–	13815.6010	–	109731.0450	0.62
OS44	–	3261.9080	9573.6150	–	6573.1130	–	19408.6360	0.52
OS45	–	3613.6110	6242.5390	–	9668.7530	–	19524.9030	0.46
OS46	350.9040	5035.1490	13659.3330	–	8841.7270	–	27887.1130	0.54
OS47	1524.8850	5333.1180	553.8060	–	5464.7890	–	12876.5980	0.61
OS48	22971.6490	12499.5950	22782.7010	–	16853.0680	–	75107.0130	0.66
OS49	–	658.6730	8724.9790	–	5942.9200	–	15326.5720	0.45
OS50	4911.6910	4444.4460	10406.7420	–	4646.7450	–	24409.6240	0.65
OS51	–	3840.3680	653.3080	–	4388.9460	–	8882.6220	0.55
OS52	45951.3620	72581.2500	164658.4690	–	30126.1790	–	313317.2600	0.69
OS53	–	12250.5060	33209.1700	–	12229.7580	–	57689.4340	0.59
OS54	80382.8690	34033.2440	146160.9760	–	27137.9820	–	287715.0710	0.69
OS55	13473.3890	6892.3610	33385.2120	–	3173.5140	–	56924.4760	0.69
OS56	1126.6950	2714.2590	2568.8690	–	3312.7020	–	9722.5250	0.59
OS57	1375.3170	3537.1760	3919.0750	–	1538.2540	–	10369.8220	0.70
OS58	17155.7490	11516.9390	–	–	10193.1680	–	38865.8560	0.73
OS59	808–	4241.0510	–	–	2591.1160	–	14912.1670	0.79
OS60	12587.9810	10112.8340	3959.9050	–	15070.7830	–	41731.5030	0.63
OS61	–	4259.1790	8507.7240	–	9092.5540	–	21859.4570	0.50
OS62	772.5390	3624.3050	31240.1120	–	5234.9250	–	40871.8810	0.58
OS63	–	2359.9130	9296.3760	–	4480.1660	–	16136.4550	0.54
OS64	430.2460	6853.1390	28227.4750	–	10508.3580	–	46019.2180	0.56
OS65	–	2409.8350	886.0780	–	1661.3110	–	4957.2240	0.63
OS66	21683.9540	5765.4950	22109.6140	–	3852.4670	–	53411.5300	0.73
OS67	–	5625.4390	6323.1520	–	5532.3600	–	17480.9510	0.58
OS68	1474.1690	8974.5310	21611.8420	–	13412.8180	–	45473.3600	0.56
OS69	–	3312.9440	5634.8730	–	2913.1520	–	11860.9690	0.60
OS70	21416.3340	4523.2560	–	–	9190.9730	–	35130.5630	0.72
OS71	116683.9650	17344.4890	–	–	20476.6210	–	154505.0750	0.81
OS72	70463.2130	9280.9710	–	–	24542.0110	–	104286.1950	0.74
OS73	67242.2210	7750.0640	–	–	22915.1670	–	97907.4520	0.74
OS74	3307.5590	1210.0860	–	–	836.4420	–	5354.0870	0.80
OS75	1509.3550	1689.9280	–	–	2016.8910	–	5216.1740	0.64
OS76	1308.0310	–	–	–	963.8220	–	2271.8530	0.59

〈 개발전 · 중 · 후 유출계수 및 유출량 비교〉

산정 지점	면적(㎢)	강우강도(㎜/hr) (30년)	유출계수 (C)			유출량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
OS1	0.060	165.046	0.75	0.71	0.71	2.059	1.947	1.952
OS2	0.029	165.046	0.94	0.67	0.74	1.249	0.893	0.981
OS3	0.010	165.046	0.60	0.60	0.60	0.279	0.279	0.281
OS4	0.007	165.046	0.60	0.60	0.55	0.195	0.195	0.180
OS5	0.007	165.046	0.60	0.60	0.53	0.205	0.205	0.180
OS6	0.011	165.046	0.60	0.60	0.55	0.291	0.291	0.267
OS7	0.013	165.046	0.85	0.67	0.60	0.498	0.393	0.351
OS8	0.048	165.046	0.76	0.68	0.61	1.681	1.503	1.345
OS9	0.031	165.046	0.77	0.67	0.48	1.089	0.947	0.677
OS10	0.011	165.046	0.93	0.81	0.88	0.470	0.410	0.445
OS11	0.007	165.046	0.93	0.81	0.87	0.313	0.272	0.291
OS12	0.010	165.046	0.93	0.80	0.74	0.430	0.371	0.342
OS13	0.006	165.046	0.93	0.82	0.85	0.248	0.220	0.226
OS14	0.011	165.046	0.92	0.80	0.73	0.446	0.385	0.350
OS15	0.008	165.046	0.93	0.83	0.87	0.324	0.289	0.302
OS16	0.006	165.046	0.94	0.93	0.92	0.247	0.245	0.243
OS17	0.024	165.046	0.92	0.84	0.81	1.034	0.949	0.912
OS18	0.010	165.046	0.79	0.78	0.76	0.363	0.358	0.351
OS19	0.017	165.046	0.60	0.60	0.54	0.462	0.462	0.416
OS20	0.011	165.046	0.90	0.74	0.70	0.441	0.364	0.344
OS21	0.011	165.046	0.90	0.75	0.73	0.466	0.390	0.380
OS22	0.010	165.046	0.90	0.77	0.80	0.392	0.337	0.350
OS23	0.008	165.046	0.90	0.74	0.71	0.314	0.260	0.250
OS24	0.054	165.046	0.90	0.87	0.88	2.208	2.136	2.153
OS25	0.007	165.046	0.90	0.71	0.78	0.304	0.241	0.264
OS26	0.034	165.046	0.63	0.60	0.59	0.987	0.939	0.913
OS27	0.025	165.046	0.64	0.60	0.51	0.736	0.696	0.594
OS28	0.024	165.046	0.62	0.61	0.59	0.697	0.683	0.662
OS29	0.004	165.046	0.90	0.65	0.72	0.165	0.119	0.131
OS30	0.005	165.046	0.90	0.71	0.80	0.221	0.174	0.197
OS31	0.009	165.046	0.90	0.74	0.72	0.375	0.308	0.301
OS32	0.006	165.046	0.90	0.62	0.56	0.238	0.165	0.149
OS33	0.061	165.046	0.70	0.64	0.63	1.936	1.777	1.765
OS34	0.006	165.046	0.90	0.75	0.78	0.266	0.222	0.231
OS35	0.004	165.046	0.90	0.72	0.74	0.181	0.145	0.149
OS36	0.012	165.046	0.60	0.60	0.56	0.322	0.322	0.301
OS37	0.056	165.046	0.68	0.66	0.67	1.730	1.675	1.695
OS38	0.021	165.046	0.64	0.61	0.61	0.611	0.577	0.584
OS39	0.011	165.046	0.81	0.62	0.47	0.424	0.327	0.249
OS40	0.022	165.046	0.60	0.60	0.52	0.608	0.608	0.531
OS41	0.054	165.046	0.66	0.64	0.62	1.635	1.586	1.527
OS42	0.019	165.046	0.79	0.63	0.55	0.699	0.553	0.490
OS43	0.110	165.046	0.69	0.64	0.62	3.489	3.215	3.117

산정 지점	면적(㎢)	강우강도(㎜/hr) (30년)	유출계수 (C)			유출량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
OS44	0.019	165.046	0.60	0.60	0.52	0.534	0.534	0.461
OS45	0.020	165.046	0.60	0.60	0.46	0.537	0.537	0.411
OS46	0.028	165.046	0.70	0.60	0.54	0.893	0.772	0.685
OS47	0.013	165.046	0.82	0.64	0.61	0.482	0.375	0.358
OS48	0.075	165.046	0.77	0.69	0.66	2.667	2.382	2.264
OS49	0.015	165.046	0.60	0.60	0.45	0.422	0.422	0.318
OS50	0.024	165.046	0.70	0.66	0.65	0.784	0.739	0.723
OS51	0.009	165.046	0.60	0.60	0.55	0.244	0.244	0.223
OS52	0.313	165.046	0.69	0.64	0.69	9.867	9.251	9.868
OS53	0.058	165.046	0.60	0.60	0.59	1.587	1.587	1.554
OS54	0.288	165.046	0.72	0.68	0.69	9.495	9.020	9.059
OS55	0.057	165.046	0.70	0.67	0.69	1.833	1.751	1.804
OS56	0.010	165.046	0.71	0.63	0.59	0.317	0.283	0.264
OS57	0.010	165.046	0.68	0.64	0.70	0.323	0.304	0.333
OS58	0.039	165.046	0.90	0.73	0.73	1.604	1.305	1.299
OS59	0.015	165.046	0.90	0.76	0.79	0.615	0.521	0.541
OS60	0.042	165.046	0.84	0.69	0.63	1.607	1.321	1.198
OS61	0.022	165.046	0.60	0.60	0.50	0.601	0.601	0.497
OS62	0.041	165.046	0.61	0.61	0.58	1.151	1.135	1.094
OS63	0.016	165.046	0.60	0.60	0.54	0.444	0.444	0.397
OS64	0.046	165.046	0.63	0.60	0.56	1.338	1.272	1.183
OS65	0.005	165.046	0.60	0.60	0.63	0.136	0.136	0.144
OS66	0.053	165.046	0.75	0.72	0.73	1.833	1.767	1.788
OS67	0.017	165.046	0.60	0.60	0.58	0.481	0.481	0.467
OS68	0.045	165.046	0.68	0.61	0.56	1.420	1.271	1.161
OS69	0.012	165.046	0.60	0.60	0.60	0.326	0.326	0.325
OS70	0.035	165.046	0.90	0.78	0.72	1.450	1.261	1.159
OS71	0.155	165.046	0.90	0.83	0.81	6.375	5.855	5.747
OS72	0.104	165.046	0.90	0.80	0.74	4.303	3.838	3.518
OS73	0.098	165.046	0.90	0.81	0.74	4.040	3.618	3.305
OS74	0.005	165.046	0.90	0.79	0.80	0.221	0.193	0.197
OS75	0.005	165.046	0.90	0.69	0.64	0.215	0.164	0.153
OS76	0.002	165.046	0.90	0.77	0.59	0.094	0.080	0.062

• 개발전의 기존 토지이용 현황은 농경지 또는 급경사 산지로 유출계수가 높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발중에는 유출계수가 높은 기존 토지이용상태가 나지로 변경됨에 따라 유출계수가 감소하였음. 개발후에는 불투수면적이 발생하나 절 · 성토 사면에 대한 녹화를 실시하여 녹지 면적이 증가하므로 유출계수가 감소

첨 부 #7

▣ 토양침식인자 K (개발 전 · 중 · 후)

유역	면적	토양통	입경분포(%)					K(tonnes/ha/R)		평균 K값
			자갈	모래	극세사	이토	점토	Erickson	Wischmeir	
1	0.018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34
	0.015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0.017	함창	0.0	10.6	8.8	60.9	19.7	0.61	0.54	
	0.008	연곡	0.0	39.0	7.0	40.6	13.4	0.57	0.41	
	0.002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2	0.005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40
	0.005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0.012	함창	0.0	10.6	8.8	60.9	19.7	0.61	0.54	
	0.008	연곡	0.0	39.0	7.0	40.6	13.4	0.57	0.41	
3	0.010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20
4	0.007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20
	0.000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5	0.007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20
	0.001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6	0.009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20
	0.002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7	0.008	강서	–	–	–	–	–	0.66	0.53	0.53
	0.005	함창	0.0	10.6	8.8	60.9	19.7	0.61	0.54	
8	0.039	강서	–	–	–	–	–	0.66	0.53	0.51
	0.000	함창	0.0	10.6	8.8	60.9	19.7	0.61	0.54	
	0.008	연곡	0.0	39.0	7.0	40.6	13.4	0.57	0.41	
	0.000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1	낙동	0.5	52.6	24.1	17.6	5.7	0.34	0.38	
9	0.000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25
	0.019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9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002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02	낙동	0.5	52.6	24.1	17.6	5.7	0.34	0.38	
10	0.002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36
	0.009	낙동	0.5	52.6	24.1	17.6	5.7	0.34	0.38	
11	0.000	저수지	0.0	0.0	0.0	0.0	0.0	0.00	0.00	0.38
	0.007	낙동	0.5	52.6	24.1	17.6	5.7	0.34	0.38	
12	0.002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35
	0.008	낙동	0.5	52.6	24.1	17.6	5.7	0.34	0.38	
13	0.006	낙동	0.5	52.6	24.1	17.6	5.7	0.34	0.38	0.38
14	0.001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36
	0.009	낙동	0.5	52.6	24.1	17.6	5.7	0.34	0.38	
15	0.008	낙동	0.5	52.6	24.1	17.6	5.7	0.34	0.38	0.38
16	0.003	낙동	0.5	52.6	24.1	17.6	5.7	0.34	0.38	0.32
	0.001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002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17	0.009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29
	0.009	낙동	0.5	52.6	24.1	17.6	5.7	0.34	0.38	
	0.007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유역	면적	토양통	입경분포(%)					K(tonnes/ha/R)		K 값
			자갈	모래	극세사	이토	점토	Erickson	Wischmeir	
18	0.003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24
	0.006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1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19	0.009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18
	0.008	관악	–	–	–	–	–	0.05	0.08	
20	0.011	함창	0.0	10.6	8.8	60.9	19.7	0.61	0.54	0.54
21	0.011	함창	0.0	10.6	8.8	60.9	19.7	0.61	0.54	0.54
22	0.010	함창	0.0	10.6	8.8	60.9	19.7	0.61	0.54	0.54
23	0.008	함창	0.0	10.6	8.8	60.9	19.7	0.61	0.54	0.54
24	0.001	저수지	0.0	0.0	0.0	0.0	0.0	0.00	0.00	0.09
	0.049	신답	17.4	84.2	6.0	7.5	2.3	0.17	0.09	
	0.003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25	0.001	저수지	0.0	0.0	0.0	0.0	0.0	0.00	0.00	0.08
	0.006	신답	17.4	84.2	6.0	7.5	2.3	0.17	0.09	
26	0.001	신답	17.4	84.2	6.0	7.5	2.3	0.17	0.09	0.20
	0.030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004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27	0.025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20
	0.001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28	0.011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20
	0.014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29	0.001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28
	0.003	사라	0.0	30.8	2.4	55.3	11.5	0.57	0.44	
30	0.005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21
	0.001	사라	0.0	30.8	2.4	55.3	11.5	0.57	0.44	
	0.000	사라	0.0	30.8	2.4	55.3	11.5	0.57	0.44	
31	0.008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26
	0.000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001	사라	0.0	30.8	2.4	55.3	11.5	0.57	0.44	
32	0.005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26
	0.000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000	사라	0.0	30.8	2.4	55.3	11.5	0.57	0.44	
	0.000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33	0.050	청산	24.3	21.7	4.1	56.2	18.0	0.22	0.29	0.26
	0.003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4	신답	17.4	84.2	6.0	7.5	2.3	0.17	0.09	
	0.004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34	0.002	저수지	0.0	0.0	0.0	0.0	0.0	0.00	0.00	0.15
	0.001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1	신답	17.4	84.2	6.0	7.5	2.3	0.17	0.09	
	0.003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35	0.002	청산	24.3	21.7	4.1	56.2	18.0	0.22	0.29	0.27
	0.002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유역	면적	토양통	입경분포(%)					K(tonnes/ha/R)		K 값
			자갈	모래	극세사	이토	점토	Erickson	Wischmeir	
36	0.001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28
	0.001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37	0.016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27
	0.030	청산	24.3	21.7	4.1	56.2	18.0	0.22	0.29	
	0.010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38	0.021	청산	24.3	21.7	4.1	56.2	18.0	0.22	0.29	0.29
39	0.004	청산	24.3	21.7	4.1	56.2	18.0	0.22	0.29	0.27
	0.008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40	0.011	청산	24.3	21.7	4.1	56.2	18.0	0.22	0.29	0.27
	0.003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7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41	0.001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29
	0.052	청산	24.3	21.7	4.1	56.2	18.0	0.22	0.29	
	0.000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42	0.002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6
	0.015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2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0.001	청산	24.3	21.7	4.1	56.2	18.0	0.22	0.29	
43	0.071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6
	0.022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16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0.001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44	0.005	청산	24.3	21.7	4.1	56.2	18.0	0.22	0.29	0.26
	0.009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005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00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45	0.015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6
	0.003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02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46	0.001	청산	24.3	21.7	4.1	56.2	18.0	0.22	0.29	0.26
	0.016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000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10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47	0.012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6
	0.001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48	0.043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5
	0.006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7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014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05	수암	11.3	61.2	13.6	19.7	5.5	0.29	0.25	
49	0.014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6
	0.002	월곡	9.5	45.2	9.9	35.3	9.6	0.39	0.30	

유역	면적	토양통	입경분포(%)					K(tonnes/ha/R)		K 값
			자갈	모래	극세사	이토	점토	Erickson	Wischmeir	
50	0.000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24
	0.001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009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02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008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1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03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51	0.009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6
52	0.071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6
	0.005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017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9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04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005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00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2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53	0.000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1
	0.047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003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0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03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005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54	0.000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24
	0.137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027	옥천	0.9	41.9	7.3	36.1	14.7	0.45	0.31	
	0.063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013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01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24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21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003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55	0.030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22
	0.009	옥천	0.9	41.9	7.3	36.1	14.7	0.45	0.31	
	0.003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14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56	0.001	옥천	0.9	41.9	7.3	36.1	14.7	0.45	0.31	0.22
	0.004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05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57	0.000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0
	0.007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003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58	0.005	옥천	0.9	41.9	7.3	36.1	14.7	0.45	0.31	0.29
	0.015	지산	2.1	23.9	7.8	45.3	23.0	0.44	0.31	
	0.006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유역	면적	토양통	입경분포(%)					K(tonnes/ha/R)		K 값
			자갈	모래	극세사	이토	점토	Erickson	Wischmeir	
58	0.004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29
	0.004	오산	27.2	41.1	14.7	24.7	19.5	0.20	0.20	
	0.004	용지	4.6	17.0	3.0	54.3	25.7	0.55	0.35	
59	0.003	옥천	0.9	41.9	7.3	36.1	14.7	0.45	0.31	0.26
	0.007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005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60	0.005	예산	11.4	44.1	5.5	35.1	15.3	0.51	0.30	0.33
	0.001	옥천	0.9	41.9	7.3	36.1	14.7	0.45	0.31	
	0.009	예산	11.4	44.1	5.5	35.1	15.3	0.51	0.30	
	0.017	지산	2.1	23.9	7.8	45.3	23.0	0.44	0.31	
	0.002	용지	4.6	17.0	3.0	54.3	25.7	0.55	0.35	
	0.004	연곡	0.0	39.0	7.0	40.6	13.4	0.57	0.41	
	0.005	연곡	0.0	39.0	7.0	40.6	13.4	0.57	0.41	
	0.000	용지	4.6	17.0	3.0	54.3	25.7	0.55	0.35	
	0.000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61	0.013	예산	11.4	44.1	5.5	35.1	15.3	0.51	0.30	0.33
	0.004	용지	4.6	17.0	3.0	54.3	25.7	0.55	0.35	
	0.004	연곡	0.0	39.0	7.0	40.6	13.4	0.57	0.41	
62	0.009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9
	0.000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27	예산	11.4	44.1	5.5	35.1	15.3	0.51	0.30	
	0.005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63	0.011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7
	0.005	예산	11.4	44.1	5.5	35.1	15.3	0.51	0.30	
64	0.046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6
65	0.002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25
	0.002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01	사촌	1.8	26.2	5.3	42.3	25.2	0.34	0.26	
66	0.037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6
	0.002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3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10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0.001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67	0.007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6
	0.001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09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68	0.008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6
	0.013	예산	11.4	44.1	5.5	35.1	15.3	0.51	0.30	
	0.022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0.001	지산	2.1	23.9	7.8	45.3	23.0	0.44	0.31	
	0.002	사촌	1.8	26.2	6.3	42.3	25.2	0.34	0.26	
69	0.012	예산	11.4	44.1	5.5	35.1	15.3	0.51	0.30	0.30

유역	면적	토양통	입경분포(%)					K(tonnes/ha/R)		K 값
			자갈	모래	극세사	이토	점토	Erickson	Wischmeir	
70	0.000	백산	6.4	42.7	10.9	32.1	14.3	0.41	0.30	0.37
	0.003	안룡	3.8	42.0	28.0	24.5	5.5	0.65	0.45	
	0.002	안룡	3.8	42.0	28.0	24.5	5.5	0.65	0.45	
	0.008	예산	11.4	44.1	5.5	35.1	15.3	0.51	0.30	
	0.002	용지	4.6	17.0	3.0	54.3	25.7	0.55	0.35	
	0.004	강서	–	–	–	–	–	0.66	0.53	
	0.008	중동	3.7	47.8	20.9	27.0	4.3	0.66	0.43	
	0.007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71	0.028	석천	0.0	4.9	12.5	64.9	17.7	0.55	0.53	0.48
	0.073	강서	–	–	–	–	–	0.66	0.53	
	0.008	중동	3.7	47.8	20.9	27.0	4.3	0.66	0.43	
	0.010	중동	3.7	47.8	20.9	27.0	4.3	0.66	0.43	
	0.006	지산	2.1	23.9	7.8	45.3	23.0	0.44	0.31	
	0.002	연곡	0.0	39.0	7.0	40.6	13.4	0.57	0.41	
	0.008	예산	11.4	44.1	5.5	35.1	15.3	0.51	0.30	
	0.015	중동	3.7	47.8	20.9	27.0	4.3	0.66	0.43	
	0.004	상주	18.0	61.4	9.5	22.9	6.2	0.24	0.23	
72	0.001	남계	0.0	63.0	6.9	21.7	8.4	0.24	0.21	0.50
	0.043	석천	0.0	4.9	12.5	64.9	17.7	0.55	0.53	
	0.052	강서	–	–	–	–	–	0.66	0.53	
	0.002	중동	3.7	47.8	20.9	27.0	4.3	0.66	0.43	
	0.006	신답	17.4	84.2	6.0	7.5	2.3	0.17	0.09	
73	0.072	석천	0.0	4.9	12.5	64.9	17.7	0.55	0.53	0.41
	0.026	신답	17.4	84.2	6.0	7.5	2.3	0.17	0.09	
74	0.002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24
	0.001	하천범람지	0.0	0.0	0.0	0.0	0.0	0.00	0.00	
	0.001	연곡	0.0	39.0	7.0	40.6	13.4	0.57	0.41	
	0.001	하사	0.0	93.4	1.4	1.8	3.4	0.18	0.26	
75	0.002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13
	0.003	하천범람지	0.0	0.0	0.0	0.0	0.0	0.00	0.00	
	0.000	연곡	0.0	39.0	7.0	40.6	13.4	0.57	0.41	
76	0.001	삼각	11.4	56.3	3.5	30.0	10.2	0.46	0.26	0.33
	0.001	연곡	0.0	39.0	7.0	40.6	13.4	0.57	0.41	

첨 부 #8

▣ **비탈면 계측 및 유지관리**

가. 비탈면의 계측계획

1) 계측계획의 수립시 고려사항

•사전에 공사의 진척상황에 대응하는 계측계획을 수립 작성하고, 계측의 목적, 계측방법, 관리기준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해 둘 필요가 있음.

•주어진 모든 조건이나 각종 제약 중에서 문제가 되는 지반의 거동을 정확히 모니터링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기준치와의 비교와 실제의 지반 거동과의 해석, 검토 등의 결과 판정을 해야 함.

•토사비탈면의 변형이나 붕괴형태를 정확히 예상하고, 파악한 다음에 계측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그 목적에 맞는 계측기기의 선정이나 배치, 계측의 방법, 관리기준치 등을 검토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계측이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나 토사비탈면의 상황이 크게 변화되는 경우에는 계측내용의 재고를 하고 항상 적절한 계측관리가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함.

2) 계측계획의 목적

현장계측은 토사비탈면의 붕괴에 이르는 초기의 토사 변상현상을 계측기기로 파악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취해 토사비탈면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붕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서 실시.

주요평가사항

○ 변상기구나 규모의 조사, 해명	○ 비탈면의 안정성의 평가
○ 붕괴의 예지·예측	○ 대책공의 효과 판정
○ 안전확보(대피경보 등의 조치를 위해)	○ 시공관리(정보화 시공을 포함)

3) 계측대상 범위

•변상현상이 발생되거나 혹은 예상되는 범위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2차 붕괴의 파급이 예상되는 범위

•공사의 시공범위

4) 계측기기 및 계측항목

〈 계측기 항목 〉

계측기 항목	주요 계측 항목	응력개방현상	붕락현상	평면활동붕괴	쐐기변형붕괴	원호활동붕괴	복합활동붕괴	토플링	버클링
지표면 신축계	텐션부 부근의 머리부 변위량			○	○	◎	◎	○	
지반경사계	활동머리부·중간부·말단부의 표면경사량					◎	◎	△	
광파측거법	지표면 변위량(수평·수직성분)	○		△	△	△	○	○	△
소폭판측량	지표면 변위량(수평·수직성분)			△	△	△	△	△	
파이프변형계	활동면 위치의 검출과 변형누적경향			△	△	△	△		
삽입식 지중경사계	활동면 위치의 검출과 암괴이동량			○	○	○	◎	△	
고정식 지중경사계	활동면 위치의 검출과 암괴이동량			△	△	△	○		
지중신축계	활동면 위치의 검출과 암괴이동량			△	△	△	○	△	
다단식 지중신축계	활동면 위치의 검출과 암괴이동량			△	△	△	○	△	
지중변위계	지중변위량(수평·수직성분)	○		○	○	○	○	△	△
검지선식낙석감지기	낙석의 감지(사후검지)		◎						
전도스위치	지반, 암괴의 경사량(전도, 회전)							△	
GPS 측량	지표면 변위량(수평·수직성분)						△		
지하수위계	지하수 동태 관측과 비탈면 안정도의 검토	○		○	○	○	○	△	△
간극수압계	비탈면부근의 간극수압 측정			△	△	△	△		
우설량계	비탈면부근의 간극수압 측정	○	○	○	○	◎	◎	○	○
적설심계	우량데이타수집(비탈면안정과 강우의 관계)	△					△		
유량계	우량데이타수집(비탈면안정과 적설의 관계)						○		

(기호설명) ◎ : 가장 적합한 것
○ : 약간 적합한 것
△ : 적합한 케이스와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는 것 (시행·연구 단계의 것)
무기입 :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

5) 계측빈도 및 기간

계측빈도의 고려사항

•계측의 목적에 따라 가능한 한 자주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한편 그 경우에는 계측 작업에 노력을 요하는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비탈면의 변동상황, 위험도, 계측기기의 특성이나 내구성, 현지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
•보통비탈면에 변동현상이 발생하여 시공중의 작업원의 안전확보가 우선되는 경우나 강우시 등에는 치밀한 빈도로 하고 공사 완료후나 대책공 시공후 등의 경우에는 빈도를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하수위와 같이 그 피크치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피크치의 관측 누설을 막기위해 계측빈도는 밀실이 취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자기기록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암반붕괴나 비탈면의 활동이 호우, 융설, 지진 등의 자연요인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초의 계측계획으로 설정된 계측빈도에 구애받지 않고 계측빈도를 자주 실시한다.

계측기간의 고려사항

•계측의 기간은 비탈면의 변상 규모와 그 영향도, 보전대상 구조물의 중요도, 대책공의 유무, 공사의 진척도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암반비탈면의 변동 상황은 강우나 융설 등의 기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그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필요 최적 기간으로서 1년을 통하여 계측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계측개시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암반비탈면에 육안 확인이 되는 변상이 생긴 시기부터 개시한다.
② 사전의 현지답사, 암반 조사에서 불안정 혹은 위험 비탈면으로 판단된 경우
공사 시공 전부터 개시한다.
③ 대책공 시공 후부터 개시한다.
•계측의 완료시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암반비탈면의 변동이 계측되지 않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서 그 후 1년간 계측을 계속하고, 그 중간에 있어서도 변동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여 완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측항목별 계측빈도 〉

구 분	계 측 빈 도		
	시 공 직 후	1 ~ 3개월	3개월 이후
광파측거법	1회/3일	1회/1주	1회/1개월
지중경사계	1회/3일	1회/1주	1회/1개월
지하수위계	1회/3일	1회/1주	1회/1개월

6) 계측기기 배치 예

평면 활동붕괴에 대한 계측기기의 배치	쐐기 활동붕괴에 대한 계측기기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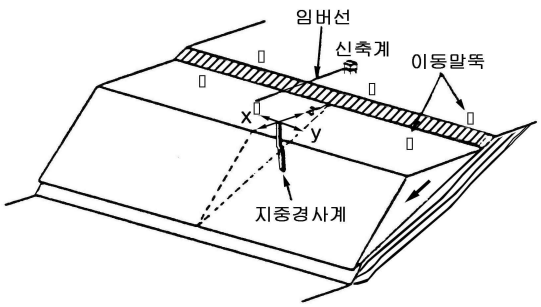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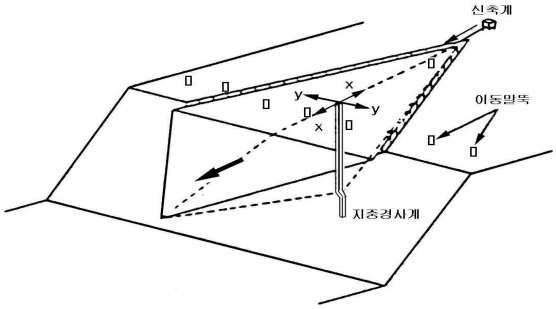

원호 활동붕괴에 대한 계측기기의 배치	토플링 활동붕괴에 대한 계측기기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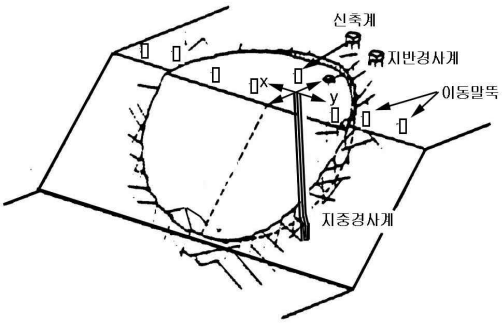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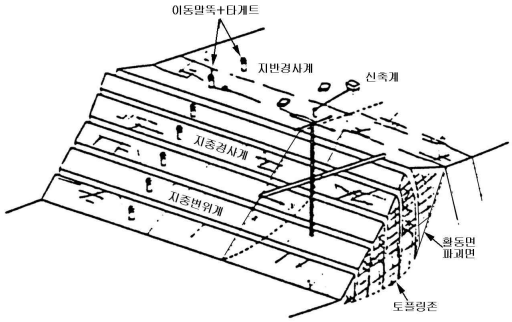

7) 계측기선정 및 계측수량

계측 및 수량 선정시 고려사항

- 토사비탈면의 변동 상황을 최소의 계측기기로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사비탈면의 변동 사항을 파악해야 함.
- 계측기기의 배치 밀도는 토사비탈면의 변상규모나 위험도에서 판단하여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
- 구체적인 계측기기의 배치에 대해서는 상세한 현지조사나 지질조사 등을 하여 변동 블록과 붕괴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계측기 설치항목 , 설치수량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계획하였으며 시공 중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재조정 하여야 한다.

〈 계측항목 및 계측수량 〉

선정계측기	측정항목	계측수량	비 고
광파측거의	지표면(낙석표면)변위량	구간별 1개소	–
지중경사계	지중변위량	구간별 1개소	–
지하수위계	수위변화 측정	구간별 1개소	–

8) 계측기 설치위치

깎기 비탈면 계측구간은 대절토 구간 중 IC/JCT 구간과 산사태 위험지구 통과구간을 원칙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구 분		적용구간 (STA.)	대표단면 (STA.)	비탈면 최대 높이(m)	비탈면 지층현황	비 고
본 선	1구간	0+300～0+370	0+340(오창)	39.3	토사, 리핑, 발파	
	6구간	3+740～3+920	3+880(오창)	33.0	토사, 리핑	
	7구간	4+820～4+870	4+840(오창)	39.1	토사, 리핑, 발파	
서오창IC	R-A	1+060～1+186	1+120 좌측	37.1	토사, 리핑, 발파	
	R-C	0+500～0+700	0+660 우측	32.8	토사, 리핑, 발파	

9) 계측관리기준

〈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의 관리 기준치 〉

구 분	대응구분 / 계기구분과 계측치		점검·주의 또는 관측강화	대책의 검토	경계·응급대책	엄중경계 ·일시대피
시공중 계 측	광파측거의	지표면의 변위속도	5이상 (㎜/10일)	5～50 (㎜/5일)	10～100 (㎜/일)	100이상 (㎜/일)
	삽 입 형 지중경사계	활동면 부근 변위속도	1이상 (㎜/10일)	5～50 (㎜/5일)		
	지하수위계	지하수위 변동	0.5～ (m/일)	1 이상 (m/일)		
유 지 관 리 계 측	광파측거의	지표면의 변위속도	10이상 (㎜/30일)	5～50 (㎜/5일)	10～100 (㎜/일)	100이상 (㎜/일)
	삽 입 형 지중경사계	활동면 부근 변위속도	1이상 (㎜/10일)	5～50 (㎜/5일)		
	지하수위계	지하수위 변동	0.5～ (m/일)	1 이상 (m/일)		

나. 시공중 비탈면 유지관리

1) 시공관리 개요

•깎기 비탈면의 시공시에는 시공 중 조사, 관찰(Face Mapping), 계측을 실시하여 실제 굴착되는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계 및 시공법을 변경할 필요 있음

•일반적으로 설계단계에서 지질조사에 의한 지층단면과 굴착에 의해 드러나는 실제 비탈면의 지층구성 상태와는 차이점이 많은 경우가 흔하므로 다음 흐름도의 과정에 의해 시공계획시의 조건이나 제반조건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반조사 및 재해석을 실시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함.

2) 비탈면 절취시 유의사항

•비탈면의 절취 작업시 예기치 못한 요인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비탈면 및 상부토층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함

•균열의 유·무

•우수에 의한 균열의 발생 유무

•부석, 전석의 유무

•풍화의 상황

•붕락정도

•절리, 층리의 방향성과 그 진행

•용수위치와 상황

3) 시공중 깎기비탈면의 보호

•일부 지반은 지층 속에 강도가 높은 상태로 존재하더라도 대기 중에 노출되면 급속하게 강도저하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응력이 해방됨과 동시에 건습의 반복 등 직접적인 기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비탈면 붕괴의 요인일 될 수 있으므로 비탈면 보호공법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함

•비탈면 보호공 시공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강우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함.

4) 급속한 굴착에 의한 변형 및 지하수위 변화

•깎기 공사 중 예상 밖의 장소에서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토괴의 이동에 의한 균열은 소단이 있는 콘크리트나 배수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임시 변형 관측계를 설치하여 동태관측을 수행해야 함

•비탈면에 용출수가 있거나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에서 급속시공을 할 경우 비탈면붕괴 가능성 검토

•깎기 전후의 지하수위는 안정상태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심층부에 과잉 간극수압이 비탈면 활동에 기여하는 상태가 되므로 시공 중에 지하수위 변화를 관측해야 함.

5) 시공중 비탈면 보강방안

•비탈면안정해석결과 불안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보강공법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 안정성 확보

- 토사비탈면 : 비탈면 경사완화, 네일링공법, 억지말뚝, 배수공설치 등
- 암반비탈면 : 비탈면 경사완화, 록볼트공법, 록앵커공법, 낙석방지망 공법 등

다. 시공후 비탈면 유지관리

1) 비탈면 유지관리 방법

•시공 후의 비탈면유지관리는 축적된 계측 Data와 경험의 축적에 의해 안정성을 평가

•유지관리 준비작업은 시공시점에서 시작된 조사자료와 시공스케치를 보존하여 비탈면 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비탈면 대장에는 위치, 보호공법 종류, 대책공법 종류 등 필요 항목을 기재하여 비탈면 점검시 관찰상황을 추가 기재하되 주의 관찰이 요구되는 구간은 Check해 두고 유지관리를 실시

•비탈면의 불안정 요인이 관찰될 경우에는 현장 긴급조치를 하고 전문 기술자에게 안정성 분석을 의뢰함.

•낙석 및 낙석제거,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울타리의 상태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

•공사비 절검과 점검로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점검로는 도수로와 인접하여 설치하며 점검시 안전에 유의함.

2) 중점관리구간 선정 및 점검

① 중점관리구간 선정

•비탈면 불안정으로 인해 보강공법을 적용시킨 구간

•대절토 비탈면 구간

•산사태 위험지구 통과 구간

•불안정 요인을 갖는 지형·지질 조건의 비탈면 구간

〈 중점관리구간 〉

구 분		적용구간 (STA.)	대표단면 (STA.)	비탈면 최대 높이(m)	비탈면 지층현황	선정사유
본 선	1구간	0+300~0+370	0+340(옥산)	39.3	토사, 리핑	SoilNail, 산사태 1등급
	2구간	1+420~1+580	1+520(옥산)	22.8	토사, 리핑	산사태 1등급
	6구간	3+740~3+920	3+880(오창)	33.0	토사, 리핑	SoilNail, 산사태 1등급
	7구간	4+710~4+820	4+780(오창)	40.3	토사, 리핑	SoilNail보강
		4+820~4+870	4+840(오창)	39.1	토사, 리핑, 발파	SoilNail, 산사태 1등급
		4+790~4+910	4+840(옥산)	31.1	토사, 리핑, 발파	SoilNail 보강
	9구간	5+550~5+750	5+660(옥산)	20.0	토사, 리핑, 발파	RockBolt보강
	13구간	8+240~8+290	8+240(옥산)	25.0	토사, 리핑	SoilNail 보강
		8+300~8+440	8+400(옥산)	30.4	토사, 리핑	대절토 구간
		8+660~8+700	8+680(오창)	32.5	토사, 리핑	대절토 구간
		8+730~8+830	8+780(오창)	22.6	토사, 리핑, 발파	깎기부 옹벽
서오창IC	R-A	0+980~1+060	1+020 좌측	29.1	토사, 리핑, 발파	RockBolt보강
		1+060~1+186	1+140 좌측	32.0	토사, 리핑, 발파	RockBolt, 산사태 1등급
	R-C	0+500~0+700	0+660 우측	32.8	토사, 리핑, 발파	산사태 1등급

2) 점검방법

- 일반적인 점검 외에도 우기시나 동절기 등 붕괴현상이 집중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험성이 내포되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재해로 발달되지 않도록 조치해 두고, 필요에 따라 상세한 조사를 수행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점검방법은 관리기간에 따라 다양하지만 다음 표와 같이 그 빈도를 정해 실시하여야 함

구 분		점 검 내 용	빈 도
일 상 점 검		•차량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비탈면 상황을 관찰	1일 1회
정 기 점 검	정기점검A	•걸어서 접근하여 관리구간 전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	1년 1회
	정기점검B	•걸어서 접근하면서 관리구간 전체 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	1년 1회
임 시 점 검		•일상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실시 일상점검에 의한 평가, 판정이 곤란할 경우 및 이상 기후 직전 혹은 통보에 의해 점검	필요에 따 라

첨 부 #9

8.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심의 조치계획

옥 산 ~ 오 창 고 속 도 로 민 간 투 자 사 업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심의 조치계획

2013. 05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심의 조치계획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2013. 5

옥산오창고속도로(주)

구 조 분 야

공정식 위원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구 조	공 정 식	

설계심의 사전의견 조치계획

□ 건 명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공정식	1. 오창 JCT교의 경우 직선교이며 경간장을 고려하고 JCT 부근의 환경을 고려할 때 랜드마크적 형식의 교량보다는 주변환경 순응적이고 경제적인 PC 거더 주형 형태의 교량이 적합하다 판단됨	1. 주변경관이 개활지로 주변환경에 순응적인 개량형 PSC 거더교로 계획하였고 구조물 자체의 재료색채를 고려한 순응적인 색상을 적용하였음	반 영 (별첨 #1)
	2. 오창교는 직선부 고속 도로 주행 시 지속적으로 관찰되게 되며 주형의 높이가 2.6m로 둔탁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시각보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슬림화를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2. 두꺼운 거더를 시각적으로 슬림화하기 위하여 방호벽 외측에 가로로 분절하는 라인패턴을 넣어 두꺼운면을 시각적으로 경량화하였음. 또한, 주행자의 시야각을 분석하여 구조물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경간구성으로 위압감을 저감하였음	반 영 (별첨 #2)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구 조	공 정 식	

설계심의결과 조치내용

□ 건 명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공정식	1. 옥산JCT교의 경우 곡선교이며 경간장을 고려하고 JCT부근의 지형 및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주변환경 순응적이고 경제적인 강박스 주형 형태의 교량이 적합하다 판단됨 - 기존 강박스 교량의 스터드 형식을 개선한 형태의 원안이 실적은 많지 않으나 관련 연구결과 성능에 문제가 없고 전형적인 강박스 거더교에 비하여 경제적이므로 원안대로 추천함	1. 옥산JCT교는 경부고속도로확장(남이~천안간, 6차로 → 8차로)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순응적인 기존 강박스 교량을 개선한 형식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음	반 영
	2. 대상 교량 자체의 곡선교 특성 및 고속 도로 주행 시 곡선을 따라 변화하는 관찰점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교량의 색상은 상이한 색상 또는 패턴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2. 옥산JCT는 의견대로 상이한 색상 및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는 디자인으로 반영하였음	반 영 (별첨 #1)

이희현 위원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구 조	이 희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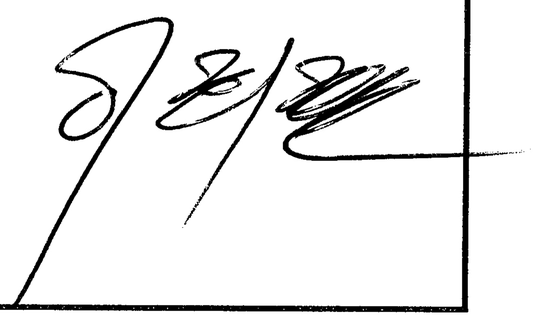

설계심의결과 조치내용

□ 건 명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이희현	1. 하부교각 직경을 축소하여 경관성 및 시공성등을 향상 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1. 오창JCT내 타교량과 동일하게 교각직경을 2.0m로 축소 반영하였음	반 영 (별첨 #1)
	2. 가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료 제시 바랍니다.(인상높이, 작업반경, 크레인 용량, 안전율, 시공중 안정성등)	2. 오창JCT Ramp-A교의 상부가설조건을 반영하여 가설계획 적정성 검토를 공사관리계획서에 수록하였음	반 영 (별첨 #2)
	3. BICON 거더의 우수성에 관한 공인기관 검증자료 제시 바랍니다	3.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일반과제인 "PS강선 및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을 이용한 PSC교량 구조개발" 보고서를 제시하였음	반 영 (별첨 #3)
	4. 도면의 시공 순서도는 본 교량에 맞게 재작성바랍니다	4. 오창JCT Ramp-A교의 현황에 맞게 시공순서도를 재작성하였음	반 영 (별첨 #4)
	5. 보강토 옹벽 하부지반 상태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 바랍니다	5. 보강토옹벽이 설치되는 하부지반은 쌓기부 노체다짐(90%) 구간으로, 외적 · 내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검토하였음 (쌓기재 물성치 단위중량 19kN/m^3, 점착력 15kPa, 내부마찰각 30° 적용하였음)	반 영 (별첨 #5)

설계심의 사전의견 조치계획

□ 건 명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이희현	6. 하부구조 및 기초 시공시 계측의 필요성 여부검토 바랍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계측은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계측빈도, 방법등 상세한 계획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6. 교량기초는 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입말뚝으로 지지층인 풍화암에 근입하여 상부하중을 직접 지지하도록 계획하였음. 시공중 인접도로의 거동을 확인하여 안정성을 확보 할수 있도록 계측계획을 반영하였음	반 영 (별첨 #6)
	7. 교각부 받침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바랍니다	7. 본 교량에 적용된 BICON거더는 거더연속이 아닌 슬래브 연속화로 교각부 받침개수 축소는 불가능한 형식임	원안적용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구 조	이 희 현	

설계심의결과 조치내용

□ 건 명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이희현	1. 램프교 가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료 제시 바랍니다.(크레인 용량, 안전율, 시공중 안정성 등)	1. 크레인 가설시 용량 ,안전율 및 시공중 안정성에 대한 단계별 가설계획을 공사관리계획서에 수록하였음	반 영 (별첨 #1)
	2. 곡선교이므로 콘크리트 타설 순서에 따라 시공중 및 완공후 부반력 발생 여부 검토 자료 제시 바랍니다	2. 옥산JCT Ramp교는 완공후 부반력이 발생치 않으나, 옥산JCT Ramp-C교의 측경간이 짧아 콘크리트 타설순서에 따라 시공중 및 완공후 부반력 발생 여부 검토자료를 계산서에 수록하였음	반 영 (별첨 #2)
	3. 면진 받침 적용 사유 및 설계 방법 기술 바랍니다	3. 면진받침 적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며, 일반받침과의 비교 검토내용을 제시하였음	반 영 (별첨 #3)
	4. SEB거더의 우수성에 관한 공인기관 검증자료 제시 바랍니다	4. SEB거더의 구조거동을 실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립 충주대학교에서 수행한 “SEB거더의 정적 휨시험” 보고서(2011.11)을 제시하였음	반 영 (별첨 #4)
	5. 가시설 계측은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계측빈도, 방법등 상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5.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계측계획을 수립하고, 계측빈도, 방법 등을 시방서에 명기하였음	반 영 (별첨 #5)

철근콘크리트 분야

임부호 위원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철근 콘크리트	임 부 호	

설계심의 사전의견 조치계획

□ 건 명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임부호	1.공통사항 기본 및 실시설계시 검토된 교량에 대한 형식 비교안 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때의 교량 형식 및 연장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비교안 작성이 필요함 -형식,특징,시공성,경제성,조형미,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비교안 작성	1. 기본 및 실시설계시 검토된 교량에 대한 비교안을 작성하여 연장변경 사유 및 형식선정에 대한 비교검토를 보고서에 수록 하였음	반 영 (별첨 #1)
	2. 교량 상부공 가설계획에서 시공시 사고우려와 교속도로 통행 차단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설 대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공사구간 전 순차별 공사안내 표지판 게시 및 신호수를 배치하며 교속도로 전면차단시간은 거더당 10분내외로 하여 민원발생 최소화할 예정이며 상부가설시 낙하물방지책등 안전시설 설치로 안전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공사관리계획서에 명기하였음	반 영 (별첨 #2)
	3. 현 설계인 BICON 거더교의 경우 형고가 2.6m로 조형미가 다소 저하되는바, 형고를 줄일수 있는 콘크리트 강합성 거더 계열의 상부형식 대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콘크리트 강합성거더 계열과 상부형식검토 결과 형고가 줄어 다리밑 공간이 증가하나 주변환경이 개활지로서 조형미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원안 적용 하였음	원안적용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철근 콘크리트	임 부 호	

설계심의결과 조치내용

□ 건 명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임부호	1. 공통사항 기본 및 실시설계시 검토된 교량에 대한 형식 비교안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때의 교량 연장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비교안 작성이 필요함	1. 기본 및 실시설계시 검토된 교량에 대한 비교안을 작성하여 연장변경 사유 및 형식선정에 대한 비교검토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 실시설계시 경부고속도로확장(남이~천안간,6차로→8차로)을 고려하여 연장 변경하였으며 비교안을 작성하였음	반 영 (별첨 #1)
	2. 옥산JCT Ramp-A교 강교 단면 검토시의 부재규격과 설계도면의 규격이 상이함 - SPLICE 7 상부 종리브 개수 상이 (구조계산서:120×12,5개, 설계도면:120×12,2개) - SPLICE 11 상부플랜지 두께 상이 (구조계산서:12mm, 설계도면:10mm)	2. 강교 단면 검토시 부재규격과 설계도면의 규격이 상이한 부분을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음 - SPLICE 7는 구조계산서를 120×12,2개로 수정하였음 - SPLICE 11은 구조계산서를 10mm로 수정하였음	반 영 (별첨 #2)
	3. 옥산JCT Ramp-A교 강상형 상세도에서 환기구 위치가 현장이음부와 간섭이 되므로 재조정이 필요함	3. 환기구위치를 조정하여 현장이음부와 간섭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음	반 영 (별첨 #3)
	4. 옥산JCT Ramp-A교 맨홀(작업구멍)의 위치가 누락	4. 주형 내부작업시 비계등의 반입을 위한 맨홀(작업구멍) 설치가 시공성에서 유리하므로 맨홀위치를 추가하였음	반 영 (별첨 #4)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임부호	5. 옥산JCT Ramp-A교 단지점부(A1,A2)의 지점부 보강재와 종리브와의 설치 순간격이 협소하여 용접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보완이 필요함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참조)	5. 단지점부(A1,A2)의 지점부 보강재의 간격을 조정하였음	반 영 (별첨 #5)
	6. 옥산JCT Ramp-C교 결로수 집수구와 맨홀(작업구멍)이 간섭되어 재조정이 필요함	6. 결로수 집수구의 위치를 조정하였음	반 영 (별첨 #6)
	7. 옥산JCT Ramp-C교 강상형상세도 F11 단면이 강상형 단면도 F11단면과 상이함 (B-Flange 보강여부)	7. F11단면은 B-Flange가 보강되는 단면으로 강상형 단면도를 수정하였음	반 영 (별첨 #7)

최장환 위원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철근 콘크리트	최 장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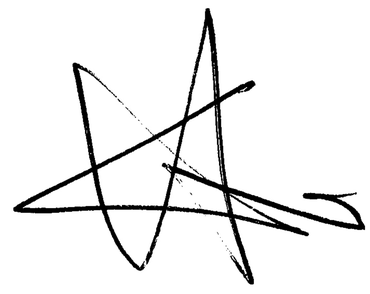

설계심의 사전의견 조치계획

□ 건 명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최장환	1. 오창 JCT 교량도 야간경관 효과측면에서 LED 조명을 상부거더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1. 본 교량의 입지조건은 주변에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순응형이므로 가급적 조명이나 디자인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주변에 묻히도록 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적용이 불가피함	원안적용
	2. RAMP-A 가설시 2대의 크레인을 사용하므로 크레인 로드게이지를 이용한 인양계획을 표시하기 바람 (각 크레인의 적용하중을 명시하기 바람)	2. 크레인 로드게이지를 이용한 인양계획을 공사관리계획서에 명기하였음	반 영 (별첨 #1)
	3. 가설시 사용장비 및 인양하중(약850톤)으로 인한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반보강 및 지침을 도면과 시방서에 상세히 명기하기 바람	3. 가설시 크레인 및 인양중량을 고려하여 부등침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공사관리계획서에 명기하였음	반 영 (별첨 #1)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철근 콘크리트	최 장 환	

설계심의결과 조치내용

□ 건 명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최장환	1. 교각 형상을 평이한 T형 교각으로 계획하였는바 경관성을 고려하여 코핑을 곡선형태로 검토바람	1. 교각 측면과 주행자의 시선방향이 동일하여 교각형상을 변경하여도 곡선형상을 인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곡선형태보다 시공성 측면에서 유리한 원안을 적용였음	원안적용
	2. RAMP 교량의 경관 설계 측면에서 LED 조명을 상부 거더에 설치하여 야간 경관 효과를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바람.(가로등과 연계된 야간 자동 개폐시스템 적용)	2. 본 교량의 경관등급은 순응형으로 가급적 조명이나 디자인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주변에 묻히도록 연출하는 것이 유리하여 원안적용이 불가피함. 또한 LED 탈락 등을 고려할 때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LED 조명 미설치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원안적용
	3. 옥산 JCT RAMP-A의 경간구성이 65+ 65+ 50 = 180.0M로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측경간의 50M를 삭제하고 토공구간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3. 옥산JCT Ramp-A교는 청원휴게소 부지를 최대한 간섭하지 않도록 부지외측으로 교대(A2) 위치를 선정하고 경간구성을 하였기에 측경간을 삭제할 수 없어 원안적용이 불가피함	원안적용
	4. 옥산 JCT RAMP-C의 경간구성이 60+ 70+ 60+ 30 = 220.0M 연속경간으로 30M 구간의 교대부가 부반력이 예상되는바 경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옥산JCT Ramp-C교의 시공중 및 완공중의 부반력 검토 내용을 계산서에 수록하고 시공중 슬래브 타설순서를 도면에 명기하였음	반 영 (별첨 #1)
	5. 가설시 사용 장비가 650톤 C/C으로 자중 및 인양무게를 고려시 지반의 부등침하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지반보강 및 지침을 도면과 시방서에 상세히 명기하기 바람	5. 가설시 크레인 및 인양중량을 고려하여 부등침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공사관리계획서에 명기하였음	반 영 (별첨 #2)

시 공 분 야

지홍근 위원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시 공	지 홍 근	

설계심의 사전의견 조치계획

□ 건 명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지홍근	1. 고속도로 횡단하는 상부가설 단계별 크레인 배치계획 수립이 필요함	1. 상부가설단계별로 가설계획도를 작성하여 시공중 안전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공사관리계획서에 반영하였음	반 영 (별첨 #1)
	2. Ramp-A교 P1 교각 하부시공시 지방도 510 호선과 중부고속도로의 사면거동에 따른 도로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수립 검토 필요	2. P1 교각의 말뚝기초는 진동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입말뚝으로 지지층인 풍화암에 근입하여 상부하중을 직접 지지하도록 계획하였음. 시공중 인접도로의 거동을 확인하여 안정성을 확보 할수 있도록 계측계획을 반영하였음	반 영 (별첨 #2)
	3. 상부가설시 교통차단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검토 바람	3. 공사구간 전 순차별 공사안내 표지판 게시 및 신호수 배치로 운전자 경각심 고취 하겠으며, 시공전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대책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공사관리계획서에 수록하였음	반 영 (별첨 #3)

설계심의 사전의견 조치계획

□ 건 명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지홍근	4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후 종방향 거더의 구속으로 일정 간격의 횡방향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양생방법을 검토 바람	4. 상부슬래브 타설 후 양생포를 도포하고 거푸집 탈형시까지 충분한 습윤양생을 통하여 횡방향 균열을 억제하도록 양생방법을 공사관리계획서에 수록하였음	반 영 (별첨 #4)
	5. 오창JCT는 오창읍 구시가지에서 조망점을 추가로 분석하여 경관현황 및 조망특성을 반영한 순응형 교량임을 검토 바람	5. 오창읍 구시가지의 조망점을 추가로 지정하고 해당 지점에서의 조망을 검토하였음	반 영 (별첨 #5)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시 공	지 홍 근	

설계심의결과 조치내용

□ 건 명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지홍근	1. 고속도로 횡단하는 곡선교량으로서 인양시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정확히 검토하여 인양포인트 및 상부가설단계별 크레인 배치계획 수립이 필요함	1. 곡선교의 거더 인양시 거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4개 지점으로 인양하도록 계획하고, 상부가설 단계별 크레인 배치계획을 공사관리계획서에 수록하였음	반 영 (별첨 #1)
	2. Ramp-A교와 Ramp-C교가 중첩되어 단계별 상부 가설계획을 세밀히 검토바람	2. RAMP-A교와 RAMP-C교가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상부가설계획을 공사관리계획서에 수록하였음	반 영 (별첨 #1)
	3. Ramp-A교 P1교각 하부시공시 고속도로와 간섭이 되는데 이에 대한 수립 필요	3. 옥산JCT Ramp-A교는 경부고속도로확장(남이~천안간, 6차로 →8차로) 후 시공하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함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구간과 P1은 시공중 간섭이 발생치 않으나, 가시설 및 근접안전시설을 설치하는등 안전시설 계획에 대해 공사관리계획서에 수록하였음	반 영 (별첨 #2)
	4. 상부가설시 교통차단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검토 바람	4. 공사구간 전 순차별 공사안내 표지판 게시 및 신호수 배치로 운전자 경각심 고취 하겠으며, 시공전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대책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공사관리계획서에 수록하였음	반 영 (별첨 #2)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지홍근	5.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종방향 거더의 구속으로 일정간격의 횡방향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양생방법을 검토 바람	5. 상부슬래브 타설 후 양생포를 도포하고 거푸집 탈형시까지 충분한 습윤양생을 통하여 횡방향 균열을 억제하도록 양생방법을 공사관리계획서에 수록하였음	반 영 (별첨 #3)
	6. 교량하부 통과시 위압감,개방감 검토를 위해 상.하행선, 청원휴게소 진입로 등에 대한 주행 시뮬레이션 검토 바람	6. 교량하부 통과시 위압감, 개방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하행선의 시뮬레이션과 앙각기준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별첨 #4)

디자인 분야

최종석 위원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디 자 인	최 종 석	

설계심의결과 조치내용

□ 건 명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ㅇ심의위원 최종석	1. 색채디자인 관련 표기는 전부 KS(한국산업표준)에 맞추어 먼셀기호를 병기하도록 요망	1. 심의도서의 모든 색채표기는 KS에 맞추어 먼셀과 매뉴얼상의 NCS체계를 병행 표기하였음	반 영
	2. 모든 디자인 시방서에는 재질, 마감상태, 컬러등을 명기하도록함(컬러칩은 프린트물이 아닌 별도의 색견본 준비요망)	2. 심의도서의 디자인은 재질, 마감, 컬러등을 명기하였음 심의 당일 색견본을 지참토록 하였음	반 영
	3. 디자인 투시도는 고해상도로 A1 크기이상으로 출력하여 Detail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망	3. 고해상도의 A1 출력물로 제시하였음	반 영
	4. 기존 설치된 도로변의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은 형태, 컬러 등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Simulation이 될 수 있도록 요망	4. 기존 설치된 시설에 대한 형태, 컬러를 반영하여 조치하였음	반 영 (별첨 #1)
	5. 옥산JCT교와 오창JCT교의 디자인은 2개안을 구분하여 따로 발표 요망	5. 옥산JCT와 오창JCT의 디자인을 구분하여 도서를 수정하겠음	반 영
	6. 옥산 JCT 3개 교량의 컬러를 통일하여 적용하되, 현장사진을 배경으로 simulation 요망, 명도를 약간 낮추어 제시 요망, 거더부분의 컬러와 상부의 2tone컬러의 경우 상부가 밝게 검토요망	6. 옥산 JCT 3개 교량의 컬러를 통일하고, 현장사진을 배경으로 simulation을 조치하고, 명도를 약간 낮추어 상부가 밝게 보이도록 조치하였음	반 영 (별첨 #1)
	7. 스텐레스 지주의 상부예각 삭제요망 - 금속소재는 모두 무광처리 요망	7. 상부예각의 디자인을 삭제하였고 무광으로 제시하였음	반 영 (별첨 #2)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디 자 인	최 종 석	

설계심의결과 조치내용

□ 건 명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ㅇ 심의위원 최종석	1. 색채디자인 관련 표기는 전부 KS(한국산업표준)에 맞추어 먼셀기호를 병기하도록 요망	1. 심의도서의 모든 색채표기는 KS에 맞추어 먼셀과 매뉴얼상의 NCS체계를 병행 표기하였음	반 영
	2. 모든 디자인 시방서에는 재질, 마감상태, 컬러등을 명기하도록함(컬러칩은 프린트물이 아닌 별도의 색견본 준비요망)	2. 심의도서의 디자인은 재질, 마감, 컬러등을 명기하였음 심의 당일 색견본을 지참토록 하였음	반 영
	3. 디자인 투시도는 고해상도로 A1 크기이상으로 출력하여 Detail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망	3. 고해상도의 A1 출력물로 제시하였음	반 영
	4. 기존 설치된 도로변의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은 형태, 컬러 등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Simulation이 될 수 있도록 요망	4. 기존 설치된 시설에 대한 형태, 컬러를 반영하여 조치하였음	반 영 (별첨 1)
	5. 옥산JCT교와 오창JCT교의 디자인은 2개안을 구분하여 따로 발표 요망	5. 옥산JCT와 오창JCT의 디자인을 구분하여 도서를 수정하겠음	반 영
	6. 스텐레스 지주의 상부예각 삭제요망 - 금속소재는 모두 무광처리 요망	6. 상부예각의 디자인을 삭제하였고 무광으로 제시하였음	반 영 (별첨 2)

이홍구 위원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디 자 인	이 홍 구	

설계심의결과 조치내용

□ 건 명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ㅇ 심의위원 이홍구	1. 교량의 전체 색 명도가 밝지 않게 해주세요. - 밝은 색을 넓어지면 더 밝아 집니다.	1. 명도를 밝지않게 조정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별첨 #1)
	2. 3개의 교량색을 통일해주세요	2. 3개의 교량색을 통일하였음	반 영 (별첨 #1)
	3. (3)안을 중심으로 하되, 교대보다 거더를 어둡게 할 것	3. (3)안을 중심으로 제시된 색중 가장 어두운 색(S3005-Y50R)으로 조정하였음	반 영 (별첨 #1)
	4. 투석방지망의 경우 무광처리, 상부 모서리를 뾰족하지 않게	4. 투석방지망은 무광처리 및 상부 모서리를 뾰족하지 않게 디자인을 변경하였음	반 영 (별첨 #2)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디 자 인	이 홍 구	

설계심의결과 조치내용

□ 건 명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ㅇ심의위원 이홍구	1. 중부고속도로와 지방도 510호선에서 볼 때 교량의 높이가 낮아 보이는 이유로 교량 전체가 위압적으로 보일 수 도 있습니다	1. 주행시 발생하는 위압감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호벽 외측에 가로로 분절하는 라인패턴을 넣어 두꺼운면을 시각적으로 경량화하였음 시야각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의한 주행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경간구성으로 설계하였음	반 영 (별첨 #1)
	2. 교량의 거더를 알루미늄 판넬로 커버하여 전체적인 위압감을 해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2. 판넬로 외부를 감싸는 디자인은 당초에 검토하였으나 교량의 볼륨감은 증가하여 위압적인 느낌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고속도로의 특성상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방적인 타입의 형식이 보다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적용이 불가피함	원안적용 (별첨 #2)
	3. 투석방지망의 경우 무광처리, 상부모서리를 뾰족하지 않게	3. 투석방지망은 무광처리 및 상부 모서리를 뾰족하지 않게 디자인을 변경하였음	반영 (별첨 #3)

내 부

박중규 위원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내 부	박 중 규	

설계심의 사전의견 조치계획

□ 건 명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박중규	1 오창분기점 거더거치(700톤 하이드롤릭 크레인)시 크레인 전도등에 문제가 없도록 P1 임시성토 지반지지력이 확보될수 있도록 하기바람	1. 가설시 크레인 및 인양중량을 고려하여 지반의 지지력 및 부등침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공사관리계획서에 명기하였음	반 영 (별첨 #1)
	2. 중부고속도로 상부(램프A교) 및 인접(램프 C,D교) 통과구간의 교량색채는 교량상호간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1안이 바람직	2.. 의견에 따라 반영하였음	반 영 (별첨 #2)
	3. 투석방지망은 향후 유지관리 및 미관(흙탕물)등을 감안하여 디자인1안으로 하되,가급적 염화물피해가 적은 재질 사용 검토	3. 의견에 따라 디자인은 1안을 반영하되 염화물 피해가 적은 재질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반 영 (별첨 #3)

심 의 위 원 확 인 서

□ **심의안건**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위 안건의 심의(2013. 4. 23)결과에 대한 요청부서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분 야	심 의 위 원	서 명
내 부	박 중 규	

설계심의결과 조치내용

□ 건 명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심의위원 박중규	1. 강교의 개구부(충복식)는 향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최대한 확대(ρ=0.4미만)하는 방안 검토 (대상 : 램프A, C교)	1. 강교의 개구부(충복식)는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최대한 확대(ρ=0.4미만)하여 반영하였음	반 영 (별첨 #1)
	2. 램프C교 A2는 앞채움 토사가 경부고속도로로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램프C교 A2의 좌측 앞성토는 지형조건(계곡부)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종평면도의 앞성토를 수정하였음	반 영 (별첨 #2)
	3. 램프A교 교각부 I.P 거더는 구조적 안정성측면 (하중균등분배)을 감안하여 가로보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3. 하중 균등분배를 위하여 I.P거더의 상부 2중플랜지 구간을 지점부 인근 첫 번째 가로보를 지난 지점까지 적용하였으며, 두 번째 가로보에서 공중 결합시 상부 2중 플랜지 부분의 현장용접 및 볼트체결의 시공성을 고려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로보 중간까지는 2중 플랜지를 적용하고 이후 단면을 변화시켜 두 번째 가로보에 연결하도록 계획하였음	반 영 (별첨 #3)
	4. 램프A, C교는 고속도로 본선 곡선반경과 휴게소 조망권을 고려할 때 교량상호간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1안이 바람직	4. 심의 결과에 따라 3안을 중심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음	반 영 (별첨 #4)
	5. 램프A교 P1의 교량점검시설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향후 본선으로 돌출되어 보일수 있어 확장 시 미관을 고려하여 동 시설 범위를 계획하시기 바람	5. P1의 교량점검시설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선으로 돌출되어 보이지 않도록 확장 시 미관을 고려한 시설 범위를 검토하였음	반 영 (별첨 #5)
	6. 투석방지망은 향후 유지관리 및 미관(흙탕물)등을 감안하여 디자인 1안으로 하되, 가급적 염화물 피해가 적은 재질사용 검토	6. 의견에 따라 디자인은 1안을 반영하되 염화물 피해가 적은 재질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반 영 (별첨 #6)

9. 설계자문회의 조치결과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설계자문회의 조치결과

2013. 05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총괄표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분 야	자문위원	자문(심의) 의견수	조 치 결 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도 로	이 태 옥	10	10	-	-
	박 용 성	7	7	-	-
지 반	조 영 삼	6	6	-	-
	정 대 석	6	5	-	1
교 통	정 일 호	4	4	-	-
구 조	방 명 석	6	6	-	-
	정 찬 묵	5	5	-	-
시 공	피 태 희	6	6	-	-
	고 현 길	8	8	-	-
도로안전	김 택 천	4	3	-	1
환 경	배 병 욱	3	3	-	-
	김 정 곤	11	11	-	-
계		76	74	-	2

도로분야 이태옥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도로분야 이태옥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10	10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선계도상 설계기준(5) 포장 편에 AASHTO 설계법과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03.10)로 명기되었으나 도로 포장 통합 지침, 도로 포장 구조 설계 요령(2011.11 국토교통부)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람.	1. 설계도상 해당내용을 수정하였음	반영	별첨#1

확인자 : 도로분야 이태옥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2. 본 노선의 시점부 옥산 JCT는 기존 경부 고속도로의 2중 S커브 곡선 구간에 접속되는 지점에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 시 관련기관과 협의는 하였으나 실시설계 최종단계에서의 변경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하고, 또한 곡선부 주행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수 있도록 부대안전시설 (미끄럼방지포장, 속도규제, 추락방지시설 등)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보완하시기 바람.	2. 옥산 JCT 사업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확장(남이~천안간)을 고려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후 실시설계를 수행하였고, 경부고속도로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유출입부 접속단 위치를 변경하였음. 추후 남이~천안 확장사업의 실시설계(2013년 3월 착수)와 관련한 상세 협의 후 필요시 부대안전시설을 수정, 보완 하겠음	반영	
3. STA.0+320, STA 8+440 생태이동 통로는 절취지역 파형강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골간격이 크므로 -복토 후 기초 옹벽 배면 외측에 종방향으로 배수계획이 없어, 향후 지표수에 의한 붕괴위험이 많이 발생되므로 배수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며, -뒷채움 재료 및 다짐은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시방서" 배수공편에 노상다짐이 아닌 SB-1 다짐으로 시공되도록 되어 있어, -도면 및 시방서를 수정 보완하시기 바람.	3. 파형강판 배면으로 유도배수층 (모래, T=20cm) 을 설치하고, 옹벽 배면의 종방향으로 아연도 유공관(D200)을 배치하여 지표수에 대한 배수처리를 하였으며, 뒷채움 재료를 노상다짐에서 SB-1으로 변경하여 도면 및 시방서를 수정하였음	반영	별첨#2

확인자 : 도로분야 이태옥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 결과	
4. STA.0+500~0+780 외 2개소의 높은 쌓기 구간 본선 선형이 곡선 구간에 설계되었으므로 외측부와 내측부 도수로 계획을 동일한 간격으로 설계하였으나, 내·외측 구간 간격을 집수 형태 및 집수량에 따라 간격이 조정되도록 수정하시기 바람.	4. 본선 STA.0+500~0+780 및 STA.10+600~10+900 지점에 설치된 도수로 중 곡선부 외측에 설치한 도수로 STA.0+685(좌), 0+735(좌) 2개소를 삭제하였음	반영	별첨#3
5. STA.3+860 대철취 구간 소단측구에서 유도된 물은 산마루 측구나 도수로 등으로 유도되도록 하여야 하나, 본 구간은 비탈면으로 자연처리 되로록 계획되어 유출부 배수계획을 연장시켜 비탈면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수정하시기 바람.	5. 소단측구에서 발생되는 유량을 기존 계곡부 쪽으로의 원활한 유출이 가능토록, 소단측구 연장을 추가로 계획 하였음	반영	별첨#4

확인자 : 도로분야 이태옥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6. STA 4+720, STA 5+100 구간 높은 2단 쌓기(H=10m이상) 지역으로 차량 충돌 시 낙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고려하여 1단 가드레일보다 설계기준에 의거 2단 가드레일 형식으로 수정 보완하시기 바람.	6. 충돌 시 낙하위험을 사전 방지토록 2단 가드레일을 수정 보완하였음	반영	별첨#5
7. STA 8+600~10+220 구간 본선 종단경사가 S=2.98%, S=3.98%로 급한 내리막 경사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운전자의 안정성 및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그루빙 및 교통안전시설, 속도 규제 등으로 설계되도록 부대시설도에 보완 수정하시기 바람.	7. 운전자의 안정성 및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그루빙을 계획하였으며 차간거리 및 속도규제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수정하였음	반영	별첨#6
8. 옥산 JCT R-A지점 리도202호선 대절취구간에 이설도로를 계획하였으나 종단경사가 10%로 급경사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마을 주민이 이용시 안전하게 주행할수 있도록 난간 및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시기 바람.	8. 급경사 종단구간 마을주민의 안전 주행을 위해 급경사 표지판 2개소, 서행표지 1개소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였음	반영	별첨#7

확인자 : 도로분야 이태옥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9. STA.9+560, STA.9+890지점 횡배수관 Ø1,000m/m 계획하였으나, 경사가 급해 유출부 침식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침식 방지 및 월류되지 않도록 수정 보완하시기 바람	9. STA.9+560, 9+890은 V형 측구와 접속됨으로 침식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STA. 9+890은 기존 소하천으로 직접 합류됨으로 월류 방지시설은 불필요하고 STA.9+560지점은 수로보호공을 설치하여 월류를 방지하였음	반영	별첨#8
10. 옥산JCT 및 STA.11+030 외 2개소 구간의 보강토 옹벽 설치 높이가 H=7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어, 설계 및 시공 지침에 의거 옹벽 배면 상단 U형 측구 설계가 반영되도록 보완하시기 바람.	10. 옥산JCT 및 STA.11+030 을 포함하여, 보강토 옹벽 상단의 배면에는 U형측구를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9

도로분야 박용성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도로분야 박용성 위원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7	7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사업노선의 일부구간에 산마루측구 설치시 동물유도휀스 및 비탈면점검로 등의 후속공종에 의하여 측구 터파기시 원지반 훼손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속도로 개통초기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절토비탈면 배수시설 개선방안(2012.9한국도로공사)」에 의거 배수 종평면도 상에 산마루측구 형식(V형 및 L형)을 구분하여 표기하기 바랍니다.	1. 산마루측구 설치시 지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V형 및 L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였고, 배수 종평면도에 산마루측구 형식을 V형 및 L형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반영	별첨#1
2. 서오창IC 영업소 하부 요금징수원들을 위한 통로박스 집수정에 최종 배수가 연결되지 않아 배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수처리 계획을 추가 검토 바랍니다.	2. 집수정에서 발생한 유량을 외부로 유출하기 위한 배수관을(D600)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처리 하였음	반영	별첨#2

확인자 : 도로분야 박용성 위원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3. 부체도로 #14 시점부(본선 STA.4+060)가 상당히 큰 침전조(13×7)와 근접하고 있어 도로이용자의 안전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전시설을 추가 검토 바랍니다.	3. 부체도로 #14 시점부에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드레일을 추가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3
4. 생태통로(본선 STA. 8+440) 설치시 생태통로 쌓기부 사면이 깎기부 L5 측구와 중첩되는 바 깎기부 L5 측구가 단절되지 않도록 배수처리 검토를 바랍니다.	4. 소단측구와 생태통로 쌓기부 사면이 중첩되는 지점에 종배수관을 설치하여 원활한 소단 배수가 가능토록 배수처리 하였음	반영	별첨#4
5. 옥산JCT Ramp-A,D 하부 덕수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통로박스와 연결되는 부체도로 #1, #2 좌우측으로 회전시 사각지대가 형성되므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바랍니다.	5.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5

확인자 : 도로분야 박용성 위원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6. 오창JCT 옥산→진천방향 직결로 통행안전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계획 - 본선 주행차로 연결로 직접접속으로 급격한 설계속도 및 선형조건변화(V=100 → 60km/hr, R=160m)로 통행안전이 우려되므로 운전자로 하여금 사전인지와 안전한 정도로 운행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계획하기 바람. - 본선주행차로 축소구간(장래 청주방향 연결로접속 단절)은 안전한 정도의 차로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이구간을 계획하고, 이탈차량이 안전한 정도로 감속정지 또는 차로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계획하기 바람. (특히 야간주행 시 교통안전사고 위험성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가로조명 시설 및 전광표지, LED 조명 시선유도시설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 (설계도면 부대시설도 R-B-017)	6. 오창JCT Ramp-A 시점부 통행안전성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음 - 설계속도 변경 및 선형조건변화에 대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고려한 속도규제 및 서행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음 - 본선 주행차로 축소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가 설치하였으며, 다만 LED 조명설치는 초기 투자비 측면에서 불리하여 추가 설치는 곤란하였고, 야간주행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및 가로 조명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6

확인자 : 도로분야 박용성 위원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7. 서오창IC Ramp-G, H 기존사면(지방도) 절토구간은 사면보강계획과 절토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 (기존도로와 접하여 대규모 및 일반발파로 계획되어 발파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제어발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횡단면도 P. 83~95)	7. 서오창IC Ramp-G, H 기존사면(지방도540호선)의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절토구간의 횡단을 수정하였으며, 일부 대규모 및 일반발파 계획은 암석굴착(착암기) 계획으로 변경하고, 지방도540호선 주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암파쇄방호시설을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7

토질분야 조영삼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토질분야 조영삼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6	6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설계지반정수 산정시 적용된 지반정수 값은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보고서에 명기바람(시험값인지? 문헌 및 기존 적용사례의 평균값인지?)	1. 항목별 설계지반정수 산정방법과 근거를 보완하여 지반조사보고서에 명기하였음	반영	별첨#1
2. 비탈면 보호 공법 적용시 깎기비탈면중 토사 보강구간(적용구배 1:1.2~1.5)식생기반재취부의 두께를 5cm로 적용한바 이는 적용구배 및 인접 보강 풍화암에 적용한 식생기반재취부의 두께(5cm)등을 고려할 경우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 바람.	2. Soil Nailing 으로 보강한 토사 및 풍화암 비탈면은 보강재의 노출을 방지하고 조속한 녹화를 위하여 식생기반재 취부공법(t=5cm)를 적용하였으나, 토사 보강구간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식생기반재의 취부두께를 3cm로 하향 적용하였음	반영	별첨#2
3.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대한 Data 및 영구앵커의 안정성 검토에 대한 Data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 바람.	3.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대한 Data 및 영구앵커의 안정성 검토에 대한 Data를 추가하였음	반영	별첨#3

확인자 : 토질분야 조영삼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4. 옥산 JCT Ramp-A교, C교, 병천천교, 상장남교, 서오창 IC Ramp-A2교, 복현2교의 경우 동일 교량내에서 지지기반이 동일하나 지지기반내 근입된 말뚝의 길이가 서로 상이한 바 확인바람.	4. 동일한 지지 기반내 말뚝의 근입깊이가 서로 상이한 교량은 근입 깊이의 적정성을 추가검토 하여 말뚝길이를 최적화 하였음	반영	별첨#4
5. 용두천교 P1 및 호죽2교의 경우 지지기반이 상당한 깊이로 말뚝이 근입되어 있어 지지력은 충분한바 근입깊이 또는 말뚝의 수량 등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용두천교 P1 및 호죽2교는 지지력은 충분하나 말뚝 본체의 전단응력과 휨응력의 안전율이 90% 수준으로 수량 축소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고, 말뚝길이는 수평방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beta L>2.5$) 계획하였음	반영	별첨#5
6. 오창 JCT RAMP -A교 교대2의 경우 지지력은 풍화암으로 검토되었으나, 도면(지질주상도(1))의 경우 풍화암에 근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확인바람.	6. 도면(지질주상도) 작성 오류로 수정, 보완하였음	반영	별첨#6

토질분야 정대석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토질분야 정대석 위원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6	5	-	1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교량기초 오창 JCT R-D교의 P1과 P4는 직접기초로 계획되어 가시설 굴착깊이가 8.74m~10.0m로 매우 깊으므로, 말뚝기초로 변경하고 가시설 굴착 깊이를 최소화 하여 시공 중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바람.	1. 오창 JCT R-D교의 P1과 P4는 교량기초와 가시설 계획을 변경하여 시공중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반영하였음	반영	별첨#1
2. 지반조사 본선 STA.8+000~9+000 약 1Km 구간은, 깎기 높이가 높고 연장이 긴 구간이나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시공 시 지층조건과 비탈면경사 등 설계 유효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대책공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확인조사 및 비탈면 안정성 검토 비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바람.	2. 토지소유주의 민원으로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본선 STA. 8+000~9+000 구간은 탄성파탐사를 실시하여 지층을 구분하고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반영하였음. 또한 시공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절취시 비탈면 안정성을 재분석하여 설계경사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관련내용을 설계도서에 보완하여 명기하였음	반영	별첨#2

확인자 : 토질분야 정대석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3. 비탈면 STA.8+780 에 계획된 깎기부 옹벽은 미관이 불량하고 운전자에게 위압감을 형성하므로, 다양한 대책공법들을 비교, 검토하기 바람.	3. STA.8+780 에 계획된 깎기부 옹벽은 비탈면 인근 문화재(충비삼월의 비)와 이격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으며, 대책공법 비교,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보완하였음	반영	별첨#3
4. 기타구조물 파형강판 구조물 (생태이동통로, 통로, 수로)의 구조계산서가 누락되었으므로 추가하여 기초의 지지력 및 침하량 등 안정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대책공법을 추가하기 바람	4. 파형강판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수록하였고 기초의 지지력과 침하량 등 안정성을 검토하여, 필요 구간에 기초지반 치환 등 대책공법을 반영하였음	반영	별첨#4
5 기타 지반조사 및 실내·외 토질시험 등 조사자의 실명제 도입	5. 지반조사 및 실내·외 토질시험 결과에 조사자의 실명을 기입하여 지반조사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였음	반영	별첨#5
6. 서오창 IC 영업소 인근 폐합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태양열광판 설치로 향후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검토 (자문시 추가의견)	6. 서오창IC 주변 부지는 자생수목본 이식장으로서 공사 후 원상복구 녹지공간 대상이며 환경영향평가시 자생수목 활용률을 높여 식재하라는 협의의견이 있어 녹지공간 외 다른 용도의 부지활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등) 미적용 대상임	원안적용	별첨#6

교통분야 정일호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교통분야 정일호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4	4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교통안전법 제34조에 의거 5km이상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임. 경과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인 경우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할 것	1. 개정된 교통안전법(2012.9) 시행에 관하여 경과규정 등을 고려한 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여부를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와 협의한 결과, 본 사업은 교통안전법 개정 전 실시설계 착수사업으로 분류되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으로 대체하였음	반영	별첨#1
2. 옥산JCT 서울 및 대전방향 램프(Ramp-D, C)의 진출 방식이 도로이용자의 일반적인 통행습관과 다르게 좌진출 형식으로 되어있어, 이용자의 혼선이 우려되므로 진출방식 적정성을 재검토 바람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시 옥산JCT를 이용하는 교통량의 서울방향 교통량 비율이 9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방향 교통량을 본선 개념으로 계획하였으며, 주교통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전방향 연결로를 고속도로 기본원칙인 우방향 연결체계로 계획하였음 진출방식 변경관련과 관하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와 재협의 후 최종 형식을 선정하겠음	반영	별첨#2

확인자 : 교통분야 정일호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3. 오창JCT는 서울방향 연결로만 계획되어 있고 대전방향은 장래에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동서5축과 연계하여 전방향 연결에 대하여 검토바람.	3. 기본설계시 대전방향 연결로가 계획되었으나, 대전방향 이용교통량의 경우 50대/시(2033년) 수준으로 매우 적은 수준인 바, 기본설계VE(2009. 12) 수행 및 실시협약 협의 과정에서 대전방향 연결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 되었음 또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시 장래 본 과업노선과 연계되는 동서5축 계획고속도로의 접속위치가 현재 불확실하여 대전방향 연결로를 본 계획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추후 동서5축 접속위치 및 장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전방향 연결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사항으로 전방향 연결로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실시계획승인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와 재협의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겠음	반영	별첨#3
4. 부대시설도(15) 옥산JCT Ramp-A STA.0+120 통로BOX의 경우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의 추가가 필요하므로 검토바람.	4. 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4

구조분야 방명석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구조분야 방명석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6	6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HD박스교량 ; 슬래브 타설 전 상태, 즉 세그멘트 조립 후 연속거더 상태에서 정모멘트부(Half Deck 콘크리트 상부플렌지)는 일반 강박스연속거더보다 자중이 커져서 정모멘트가 커지고 이에 따라서 박스크기가 커져서 오히려 비경제적이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	1. 슬래브 타설 전 상태에서의 정모멘트부 단면의 경우 일반 강박스거더에 비하여 자중은 크지만, Half Deck과 강재거더의 합성으로 추가 강성을 확보하므로 박스의 크기가 커지지는 않으나,일반 강박스와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였음	반영	별첨#1
2. HD박스교량 ; 곡선부에서 Half Deck과 박스복부연결부에 작용하는 수평력 및 연결방법 검토 필요	2. Half Deck과 박스와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비틀림에 의한 수평전단력을 구하여 두 부재를 연결하는 전단연결재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였음	반영	별첨#2

확인자 : 구조분야 방명석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3. 개량형 BH거더 ; 복부두께가 작은 중간정착구의 할열/파열 파괴 및 정착구 후방의 인장파괴의 위험성에 비하여 중간 정착 및 긴장은 그 효과가 한정된 것 아닌가 검토 필요	3. 중간정착구의 할열/파열에 대한 보강은 시방규정에 따라 보강철근을 배치하였으며, 중간정착구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중간정착구 후방부분의 인장파괴 위험성에 대한 3D 해석을 실시하여 계산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별첨#3
4. 개량형 BH거더 ; 단부정착과 중간정착의 긴장순서에 따라서 중간긴장력 손실이 없는지와, 중간긴장재 긴장 시 좌우 불균형 때문에 복부균열을 방지할 대책을 시방서에 검토 필요	4. 단부의 3개소 긴장작업 후 중간정착부 2개소의 긴장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긴장순서에 따른 손실에 대해 구조계산시 검토하였으며, 긴장작업중 2개의 잭을 이용하여 좌우정착구를 동시긴장하는 방법으로 긴장시 좌우불균형을 최소화하고 관련내용을 설계도서에 추가하였음	반영	별첨#4
5. BiCon 교량 ; 보고서에 제시된 Post-Compression에 의한 압축력은 없는 것 아닌지 검토 필요	5. 강연선과 강봉이 동시에 긴장되는 일체 긴장 정착 시스템으로 강연선 및 강봉에 도입되는 힘에 대한 성능실험을 하였으며, 실제 시공시 계측을 통하여 강봉에 도입되는 압축력을 관리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하였음	반영	별첨#5
6. BiCon 교량 ; Post-Compression에서 축력 없이 편심모멘트만 도입하면 보 하연에 Post-Compression 효과 없이 인장응력 만 커지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6. 일체긴장정착시스템의 적용을 통하여 강연선 및 강봉에 도입되는 힘에 대한 성능실험결과를 제시하고, 실제 시공시 도입되는 압축력에 대한 계측을 통하여 인장응력 발생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하였음	반영	별첨#6

구조분야 정찬묵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구조분야 정찬묵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5	5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설계보고서의 허용응력등 제설계기준은 최근의 도로교 설계기준 2010에 맞추어 수정필요	1. 강재의 허용응력등 제설계 기준을 도로교 설계기준 2010에 맞추어 수정하였음	반영	별첨#1
2. 병천천교는 교량내 폭원의 변화가 있으므로 빔교량으로 설계시 세밀한 구조검토 필요	2. 교량폭원의 변화를 고려하여 구조해석 격자모델을 방사형 배치로 검토하여 계산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별첨#2
3. 곡선반경이 적은 교량에서 강박스로 설계시 부반력발생 가능성에 대한 확인 필요하고, 오창JCT 램프-D교의 경우 유지관리목적의 잭업을 위한 잭업보강재와 수직보강재의 간섭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바람	3. 곡선반경이 적은 교량에서의 시공중 및 완공후 부반력 발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계산서에 수록하였으며, 오창JCT 램프-D교 시종점측에 있는 잭업보강재는 용접거리 확보 및 수직보강재와 간섭이 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였음	반영	별첨#3

확인자 : 구조분야 정찬묵 위원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4. 새터마을의 경우 성토체에 의한 조망권에 대한 민원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검토바람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 성토사면에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여 상세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5. 본 과업에 적용되는 BH거더교는 실적이 충분치 않으므로 시공시 세심한 공사관리 필요	5. BH거더교의 시공시 주의사항을 관련 설계도서에 명기하여 세심한 공사관리를 수행토록 하였음	반영	별첨#4

시공분야 피태희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시공분야 피태희 위원 (서명) 피태희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6	6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 횡단교량은 단계별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안전대책을 검토바람	1. 고속도로 횡단교량의 상부가설 단계별 시공계획 및 교통 안전대책을 공사관리계획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별첨#1
2. 하천 횡단교량은 하부시공 및 상부 빔 가설 시 가축도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계획을 제시바람	2. 하천횡단교량의 가축도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별첨#2
3. 옥산JCT 램프교는 곡선교이므로 콘크리트 타설순서에 따라 시공 중 및 완공 후 부반력 발생 여부 검토 바람	3. 옥산JCT 램프교의 시공 중 및 완공 후 부반력 발생 여부를 검토하여 계산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별첨#3

확인자 : 시공분야 피태희 위원 (서명) 피태희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4. 가설 시 사용장비 및 인양하중으로 인한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반보강 및 지침을 명기하기 바람	4. 가설시 크레인 및 인양중량을 고려하여 부등침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하였음	반영	별첨#4
5. PSC 빔 제작장 계획과 빔 보관 및 가설 시 전도방지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명기바람	5. 빔 제작장 부지확보와 빔 가설시 전도방지에 대한 대책을 설계도서에 명기하였음	반영	별첨#5
6.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도로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자동세륜시설 설치등 환경관리 계획을 반영바람.	6.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공사시에는 살수차 운행, 세륜세차시설(7개소), 가설방진망 설치, 방진덮개, 차속규제(20km/h제한), 유지목표농도 설정, 도로청소차 운행 등 환경관리계획을 반영하였음	반영	

시공분야 고현길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시공분야 고현길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8	8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비교노선검토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 비교노선 중 검토1안으로 적용하였음	반영	
2. 세부선형검토 대안노선의 종단선형이 다소 주행쾌적성 측면에서 불리하나, 순성 및 깎기사면고 최소화에 의한 검토안의 사업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세부선형 중 검토안으로 추진하였음	반영	
3. 돛대산 통과구간 비교검토 생태통로 설치로 돛대산 등산로 복원, 추가 이격에 의한 상장남마을 소음 민원 완화, 자연환경훼손 최소화가 가능한 검토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비교안 중 검토1안으로 적용하였음	반영	

확인자 : 시공분야 고현길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4. 옥산JCT검토 공사비 측면에서는 불리하나 관계기관협의가 용이하며, 경부고속도로 교통안전성 확보 및 청원휴게소 이용자 혼란 완화를 고려하여 검토 안이 우수함.	4. 비교안 중 검토안으로 적용하였음	반영	
5. 서오창IC검토 공사비는 다소 고가이나 산지훼손이 적고 관계기관 기협의 및 상대민원, 환경훼손 최소화 측면에서 유리한 검토1안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5. 비교안 중 검토1안으로 적용하였음	반영	
6. 오창JCT검토 검토 안은 주방향 교통안전성이 양호하고 중부고속도로 성암천교 구간 장래 6차로 양측 확장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경제적, 환경적측면에서 유리한 검토안이 우수함.	6. 비교안 중 검토안으로 적용하였음	반영	
7. 영업소 영업체계 비교검토 사회경제적측면을 고려하고 관리재정적측면에서 유리한 폐쇄식 영업체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사회·경제적 및 관리제정 측면을 고려하여 폐쇄식 영업체계를 적용하였음	반영	

확인자 : 시공분야 고현길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8. 비탈면 보강공법 검토 암질 및 여건에 따라 각 보강공법을 구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8. 비탈면 보강공법은 상세지표지질조사와 시추조사,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지형조건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으나, 조사 및 시험의 한계성과 지층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시공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위치 확인조사 및 Face Mapping을 실시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재검토하고, 설계경사 및 보강공법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시공시 확인조사 계획을 설계도서에 보완하겠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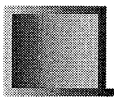

도로안전분야 김택천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계획

확인자 : 도로안전분야 김택천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4	3	-	1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옥산JCT • 도면 : 부대시설도 [15] • 위치 : 청원휴게소 유출부 STA.0+245~0+330 • 내용 : 변속차로(가속차로) 길이에 대한 설계기준 검토 및 보완필요(보완내용 : 변속차로 길이 조정 및 관련 차로의 속도관련 부대시설 등)	1. 청원휴게소 진출로(40km/h)와 옥산JCT Ramp-D(60km/h)의 변속차로의 길이는 설계기준에 부합하게 적용되어 길이조정이 불필요하나,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속도규제 관련 교통안전시설 1개소(STA.0+060, 우)를 추가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1
2. 청원휴게소 이설 진출로 • 도면 : 평면 및 종평면도 [15] • 위치 : 청원휴게소 유출부 STA.0+000 • 내용 : 청원휴게소 진출로의 평면선형의 곡선완화를 위해 기존 유출부 근처(현재)가 아닌, 본선 인접지역에 대한 검토 여부	2. 경부고속도로 인접지역으로 휴게소 유출부를 설치할 경우, 현재의 휴게소 동선체계에 혼란을 가중 시킬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현 위치로 계획되었음	원안적용	별첨#2

확인자 : 도로안전분야 김택천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3. 서오창IC • 도면 : 부대시설도[16] • 위치 : Ramp-B 0+080 인근 Ramp-C 0+660 인근 Ramp-D 0+100 인근, 0+260 인근 • 내용 : 각 지점별 평면곡선의 반지름에 맞는 속도규제관련 교통안전시설 보강 필요	3. 각각의 위치에 속도규제관련 교통안전시설 총 4개소를 보강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3
4. 오창JCT • 도면 : 부대시설도 [17], 부대시설도 [14] • 위치 : 부대시설도 [17] Ramp-D 0+000 이전 본선구간 중 부대시설도 [14] STA.11+000~11+100중 위 두 지점은 동일지점임. • 내용 : 본선 차로중 2차로중 1차로가 없어짐에 대한 도로정보를 사전 인지하여,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완료하고 Ramp-D에 진입할 수 있는 시설 보강 필요	4.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속도규제 및 서행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 설치하였음	반영	별첨#4

환경분야 배병욱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분야 배병욱 위원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3	3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노선 주변에 축사시설이 산재되어 있는바, 공사 중 및 운영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1.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축사시설의 환경목표기준은 70→60dB(A)로 강화 설정하여 목표기준 달성을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공사시 및 운영시 가설방음판넬, 방음벽설치 및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목표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하였음 - 또한,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시 대표정온시설에 소음자동측정망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계획이며, 민원 발생시 추가 모니터링 계획, 방음판넬 제원조정, 환경관리인원 운영, 축사 임시이동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확인자 : 환경분야 배병욱 위원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2. 적극적인 토사유출 방지대책이 필요함. 특히 하천 횡단구간에 적절한 비점오염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하천 횡단구간 공사시 부유토사의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물막이, Sheet Pile, 오탁방지막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3. 도로 구간 내 초기우수 등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필요함	3.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도로, 교량, 영업소 등 불투수층 전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하였음, 시설의 유지관리와 LID(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여 저감시설은 자연형시설(침투도랑)을 선정하였음 - 또한, 본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으로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반영	

환경분야 김정곤 위원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분야 김정곤 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심의) 의견수	조치결과		
	반영	수정·보완	원안적용
11	11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1. 동식물 서식 보호를 위해 형질 변경, 절토 시 기존 토양의 활용방안 검토 (5-702 이하)	1.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유기물 함양이 높은 임야지역의 비옥토(표토 약 0.15m) 약 3만㎥을 확보하여 보관후 가이식장 및 녹지 조성시 활용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2. 기존 수종의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재계획 수립 시 반영 검토 (이식이 용이하고 지역환경에 적합한 경관수종(5-699이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우선적으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적 가치(비오톱 보호)측면에서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자생수종 중 생존율을 고려하여 중·소형(흉고직경 15㎝ 이하)의 상수리나무, 소나무 등을 이식 계획하였으며, 가이식장을 조성하여 관리후 식재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확인자 : 환경분야 김정곤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3.특히 생태통로 조성시 경관적 식재보다는 기존 식재현환을 반영하여 동식물의 지형,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할 것	3.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생태통로 상부식재는 자연성이 높은 자연수종을 선발하여 다층구조(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층)로 식재 계획하였으며, 교목은 현지 자생수종인 이식수목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4. 녹지가 단절되는 부분(교량 등)에 도로 측면에 인공지반 녹지 조성 검토	4.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인공지반녹지 조성은 교량의 설계변경 및 구조검토를 요하며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반영	
5. 수목 선정시 지역적 경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탄소흡수력이 높은 수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 및 보완	5.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이산화탄소 저장과 흡수능력이 우수한 은행나무, 느티나무등을 선정하여 배식계획 하였음	반영	
6. 여름철 폭염, 홍수, 가뭄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계획시 LID(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한 설계 및 시설 설치를 권장 함 (도로변 투수시설, 불투수 면적 최소화, 빗물활용 시설 등)	6.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LID(저영향개발)기법의 최대한 고려하여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도로, 교량, 영업소 등 불투수층 전역을 대상으로 자연형시설(침투도랑)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7. 갑작스런 폭우 등 최근 기상이변 피해사례 등을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도로계획 수립	7.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폭우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낙석방지망 설치구간에 등나무를 식재조치 하였음	반영	

확인자 : 환경분야 김정곤 위원 (서명)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조치결과		비 고
	내 용	적용결과	
8. 수종선정 및 배치 계획 시 계절별 색채를 고려하여 도로변 녹지색채경관을 검토	8.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계절별 경관을 연출하기 위하여 여름철 녹음경관을 위해 느티나무와 방음벽설치구간에는 담쟁이덩굴을 식재하였고, IC주변에 가을철 대표적 경관수종이며 환경정화수종인 은행나무를 식재하여 경관성과 환경정화능력을 도모하였음	반영	
9. 가로수는 여름철 그림자를 형성하고, 반대로 겨울철엔 그림자 형성을 통해 도로가 얼거나, 얼어있는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선정 및 배치할 것	9.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배식계획에 있어 그림자 형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낙엽성 수종을 주로 식재하였으며 식재간격 또한 이격하여 그늘로 인한 결빙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식계획 하였음	반영	
10. 도로 주변에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10.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거하여 재생에너지의 경우 운영 및 유지관리측면에서 불리하여 배제하였으나 서오창IC 부근에 LED를 적용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추구하였음	반영	
11. 경부고속도로와 접속하는 구간은 곡선부에 위치하므로 주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부대시설의 추가설치 검토 (자문시 추가의견)	11. 옥산 JCT 사업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확장(남이~천안간)을 고려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후 실시설계를 수행하였고, 추후 남이~천안 확장사업의 실시설계(2013년 3월 착수)와 관련한 상세 협의 후 필요시 부대안전시설을 수정, 보완 하겠음	반영	

10. 실시계획 승인관련
관계기관 협의내용 조치계획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관련 관계기관 협의내용 조치계획

2013. 8.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관련 관계기관 협의내용 조치계획

2013. 8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 목 차 -

◈ 총 괄 표 …… 1

1. 국 토 교 통 부 …… 2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3
3. 보은국토관리사무소 …… 4
4. 국 방 부 …… 4
5. 농림축산식품부 …… 5
6. 산 림 청 …… 5
7. 문 화 재 청 …… 6
8. 충 청 북 도 …… 6
9. 청 원 군 …… 10
10. 한 국 도 로 공 사 …… 15

◈ 관련근거 #1~#9

◈ 별첨 #1~#4

- 관 련 근 거 목 차 -

1.	국토교통부	#1	광역도시도로과-1387 (2013.08.08)	•경부고속도로 접속방안 관계기관 회의결과
		#2	도시광역교통과-887 (2013.05.3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 알림
2.	환경부	#3	국토환경평가과-1067 (2013.04.2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회신
3.	문화재청	#4	발굴제도과-915 (2013.01.29)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4.	소방방재청	#5	재해영향분석과-1099 (2013.03.29)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회신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하천계획과-540 (2013.04.24)	•하천횡단에 따른 협의의견 회신(미호천 권역 기본계획)
6.	충청북도	#7	치수방재과-12065 (2013.07.05)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협의의견 회신
7.	청원군	#8	문화체육과-30567 (2012.12.27)	•충비삼월의비 현상변경 허가 통지
8.	한국도로공사	#9	기획조정실-3611 (2012.10.25)	•노선계획(안) 검토의견 통보
		#10	충청본부 도로팀-1071(2013.05.09)	•설계심의 결과 통보
9.	기타	#11	관련지침	•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03.23)

- 별 첨 목 차 -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 병천천 홍수월류구간 홍수 월류 방지시설

2. **보은국토관리사무소** #2 복현1교 P2 설치구간 기존 부체도로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3. **충 청 북 도** #3 소하천 이설구간 바닥보호공 현황

4. **한 국 도 로 공 사** #4 청원휴게소내 한국도로공사 자산등록 수목 현황

총 괄 표

지자체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국토교통부	●남이~천안 확장사업(6→8차로) 실시설계와 관련한 한국도로공사 세부협의 요청 등 1건	☞관계기관 회의결과(광역도시도로과-1387, '13.8.8)에 따라 남이~천안 확장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될 경우 세부 협의를 추진하겠음.	반 영 1 미반영 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현재 수립중인 미호천권역 하천기본계획 확정시('14.05) 재협의 요청 등 4건	☞미호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확정시 재협의 하겠음.	반 영 4 미반영 0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복현1교 교각(P2)이 국도17호선 통로박스와 연결된 부체도로에 저촉되어 공사시행시 도로차단이 불가피하므로, 교각위치 조정 등 재검토 요청 등 3건	☞부체도로 임시 이설계획을 수립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반 영 3 미반영 0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의 제한사항 준수 요청 등 4건	☞관련법 제10조의 제한사항을 초과하는 구간은 없음.	반 영 4 미반영 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및 농지전용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심사의견서 작성 후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제출기간을 준수하여 제출 요청 등 3건	☞이행하겠음.	반 영 3 미반영 0
산림청	●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와 협의 요청 등 1건	☞충청북도와 협의하겠음.	반 영 1 미반영 0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절차 우선 이행 요청 등 2건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였음.	반 영 2 미반영 0
충청북도	●서오창IC 옥산JCT→오창JCT 방향 진출로 도로표지에 청주국제공항 표기 요청 등 25건	☞표기하겠음.	반 영 25 미반영 0
청원군	●충비삼월의비 허간기간내 착/준공 신고 요청 등 46건 ※도로구역결정 관련 회신 18건 포함	☞이행하겠음.	반 영 40 미반영 6
한국도로공사	●현재 진행중인 남이~천안확장 실시설계 반영 요청 등 26건	☞관계기관 회의결과(광역도시도로과-1387, '13.8.8)에 따라 남이~천안 확장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될 경우 세부 협의를 추진하겠음.	반 영 24 미반영 2

관 계 기 관　협 의 의 견　및　조 치 계 획

국토교통부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국토정책과 도시정책과 건축기획과 주택정책과 토지정책과 국토정보정책과 건설경제과 기술정책과 수자원정책과 교통정책조정과 물류정책과	ㅇ조치계획 제출일 현재 의견 없음.	-	
도로정책과 -1987 (2013.07.04)	ㅇ옥산-오창 고속도로와 접속되는 경부고속도로와 남이-천안 구간 확장사업(6→8차로) 실시설계(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진행중으로 사업간 사업시기 상이에 따른 사업비 중복 등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세부협의 필요.	ㅇ경부선 남이~천안 확장 실시설계는 '13.03월 착수하여 '14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본 사업 실시계획에 반영은 불가하였으며. ㅇ옥산-오창 실시계획은 남이~천안 확장공사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그간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연결로 접속구간 선형을 조정하였고, 남이~천안 확장구간 선시공 또는 동시 시공을 전제로 하여 계획하였음. ㅇ관계기관 회의결과(광역도시도로과-1387, '13.8.8)에 따라 남이~천안 확장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될 경우 세부 협의를 추진하겠음.	
간선도로과 도로운영과 첨단도로환경과 철도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기획총괄과	ㅇ조치계획 제출일 현재 의견 없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로계획과 도로공사과	ㅇ조치계획 제출일 현재 의견 없음	-	
하천계획과 -1949 (2013.07.03)	ㅇ옥산~오창 사업노선 중 지방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설치를 위하여는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미호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함 *교량통과 지방하천 : 병천천, 용두천, 성암천(과업범위 내) *횡단교량 : 병천천교(병천천), 용두천교(용두천), 오창JCT R-C교 및 R-D교(성암천) ㅇ현재 과업 진행상(초기단계) 교량 계획에 필요한 수문자료(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 제공 및 적합여부 검토 곤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가 확정되는 시기('14.05)에 맞춰 재협의 *하천설계기준·해설(국토교통부, '09)에 적합하게 계획	ㅇ미호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가 확정되는 시기('14.05)에 재협의하겠음. ※기 협의사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540(2013.04.24) "미호천권역 하천통과 관련 협의요청 회신내용 알림(옥산-오창)"	
	ㅇ또한, 교량 설치로 인해 병천천 등 3개 하천의 수위 상승이 발생하나 대책 방안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수위 상승에 따른 기성제방의 보강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관리청인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조치	ㅇ충청북도 치수방재과와 협의하여 수위 상승구간에 홍수를 대비한 월류방지 시설을 반영하였음. ※관련공문: 충청북도 치수방재과-12065, (2013.07.05) 참조 *계획하폭내 교량구조물 설치로 인한 수위가 상승될 영향권내 제방보축<파라펫 등>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으므로 별도 의견은 없음	별첨#1
하천공사과 (하천계획과) (-1949) (2013.07.03)	ㅇ별도 의견 없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1843, 2013.07.03)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보수과	ㅇ 세부실시설계를 시행할 경우 단계별 재협의	ㅇ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이며, 추가협의 요청시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ㅇ 복현1교 교각(P2)이 국도17호선 통로박스와 연결된 부체도로에 저촉되어 공사시행 시 도로차단이 불가피하므로, 교각위치 조정 등 재검토	ㅇ 부체도로 임시 이설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별첨#2
	ㅇ 옥산~오창 고속도로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 검토.	ㅇ 주요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반영하였음.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5170, 2013.07.09)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시설기획환경과	ㅇ 우리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해당지역은 공군 17전투비행단 비행안전 6구역에 해당되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시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음대비(방음시설 등) 필요	ㅇ 고도제한(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 허용)을 초과하는 구간은 없음.	
	나.항공기 소음에 기인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항공기 소음 발생 가능성 고지 필요.	ㅇ 이행하겠음.	
	다.'나' 사항을 위반하여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ㅇ 이행하겠음.	
	라.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항 2·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함. (관할부대 담당자 : 17전투비행단 군보담당 043-210-2105)	ㅇ 사전협의하였음. ※'13.7.19 담당자(군보담당 임경은) 협의결과 오창JCT 일부구간이 비행안전구역 외곽 포함되나 군사시설 보호법 저촉시설은 아닌 것으로 확인함.	

◢농림축산부 (농지과-1733, 2013.07.08)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농지과	ㅇ 국토교통부에서 협의 요청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귀 시·도(시장·군수 포함)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농지법 및 농지전용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심사의견서를 작성 후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제출기간을 준수하여 우리부에 제출(전자결재 시스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겠음. ※청원군→충북도(7/15) ※충북도→농림부(8/30 예정)	
	ㅇ 귀 시·도에서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작성시 필요한 농지전용협의요청서와 협의자료는 농지전용시스템에 게시하였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지전용협의요청서(별지20호 서식)와 농지전용시스템의 전용농지명세서 면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의 농지관리 담당이 수정하고 심사의견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원군과 협의요청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시스템상 면적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심사의견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였음.	
	ㅇ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관리부서가 농지전용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ㅇ 조치하였음.	

◢산림청 (산지관리과-4033, 2013.07.10)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산지관리과	ㅇ「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산지면적 50만㎡ 이상 ~ 200만㎡ 미만(보전산지 3만㎡ 이상 ~ 100만㎡ 미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산지면적 50만㎡ 미만(보전산지 3만㎡ 미만)】에게 협의 권한이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으니, 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충청북도와 협의하였음.	

◢문화재청 (발굴재도과-6026, 2013.06.24)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발굴제도과	가.「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후 우리 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 통보한 문화재보존대책(발굴제도과-915, 2013.01.29, 붙임 참조)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ㅇ 이행하겠음. ※관련공문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915(2013.1.29) "청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부지 문화재 보전대책 통보"	
	나.향후 사업추진 시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74조(준용규정)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우선 이행.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였음. ※관련공문 : 청원군 문화체육과-30567(2012.12.27) "청원 충비 삼월의 비 주변 고속도로 건설 현상변경 허가 통지 알림"	

◢충청북도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균형개발과-6447 (2013.06.24)	ㅇ「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 받으려면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도로, 완충녹지, 교통광장에 대하여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 처리되오니 그 이외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인 청원군수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람.	ㅇ 실시계획 승인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협의하였음. ㅇ 의제처리 이외 시설을 청원군수와 협의하겠음.	
기업유치지원과-7300 (2013.06.26)	ㅇ 본 사업구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없음.	-	
농업정책과-7483 (2013.06.28)	ㅇ 농지전용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 요구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별표1)에 의거 구비서류 제출.	ㅇ 제출하였음.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로과-9925 (2013.07.05)	ㅇ 동서5축(당진~울진) 고속도로 오창(청주국제공항)~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구간은 대통령공약사업에 포함되어 20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충북·경북도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오창JCT는 장래 동서5축 오창(청주국제공항)~울진 구간 연계를 고려한 연결로 계획 수립.	ㅇ 동서5축 오창~울진 구간은 향후 계획구간으로, 계획 수립시 원활한 연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	
	ㅇ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음·진동, 경관 등의 저감방안 강구 및 오창읍 구도심(장대리, 모정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강구.	ㅇ 환경영향평가시 구도심 구간에 대한 소음·진동, 경관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관련공문 :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1067(2013.04.24)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회신"	
	ㅇ 서오창IC 옥산JCT→오창JCT 방향 진출로 도로표지(본, 예고표지)에 청주국제공항 표기.	ㅇ 표기하겠음. ※관련규정 :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13.3.23) 제3조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참고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이나 인터체인지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호수·명승고적·주요관광지 등 친숙한 지명은 사용 가능	
	ㅇ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지방도의 상급 도로로 도로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도로시행허가 대상은 아니나, 연결도로 또는 접속구간 도로공사 시행시 미리 우리 도와 협의하여야 함.	ㅇ 접속구간 공사 시행시 충청북도와 사전협의하겠음.	
	ㅇ 충청북도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 다만,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상매입 하여야 함.	ㅇ 이행하겠음.	
문화예술과 -3146 (2013.07.01)	ㅇ 충비삼월의비 문화재현상을 허가하였으니 허가기간내 착/준공 신고를 하여야 함	ㅇ 이행하겠음.	
	ㅇ 공사중 문화재의심 유구/유물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야 함	ㅇ 이행하겠음.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치수방재과 -12065 (2013.07.09)	<하천분야>		
	ㅇ 계획하폭 내 교량구조물 설치로 인한 수위가 상승될 영향권내 제방 보축(파라펫 등)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으므로 별도 의견은 없으나 ㅇ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미호천-병천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하폭 내 병천천교 설치계획을 포함, 계획홍수위를 산정 반영하고,	ㅇ 반영하겠음.	
	ㅇ 실시설계에 반영된 기설제방고 보축 계획에 대하여 향후 동 권역의 하천기본계획 완료시 계획홍수위와 비교·분석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변경 설치하시기 바람.	ㅇ 하천기본계획 확정시 보완하겠음.	
	<소하천분야>		
	ㅇ 본 실시계획에 포함된 소하천(양지, 성산, 수락)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청인 청원군 소하천 담당부서와 협의하시고,	ㅇ 협의하였음.	
	ㅇ 실시계획에 반영된 이설계획구간(양지천 548.15m, 성산천 214.93m)의 기존 소하천과 연결되는 상하류 구간은 재해에 상당히 취약한 구간으로 호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ㅇ 이설구간에 식생호안블럭과 사전재해영향평가 심의조치사항(바닥보호공)을 반영하였음. ※관련공문 :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1099(2013.03.29) "에 의거 수충부 세굴방지를 위해 바닥보호공을 추가 반영하였음.	별첨#3
	<기타>		
	ㅇ 우리도 치수방재과-9469(2013.05.27)호로 기 협의한 협의의견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제시한 조치계획과 같이 반듯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행하겠음.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ㅇ『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산지전용 협의 신청한 국토간선도로망 동서5축의 선도사업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 보완 요구하오니 제출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9948 (2013.07.01)	ㅇ 보완사항 -산지의 이용계획에 시설물 설치계획이 포함될 경우 시설 배치계획 1부. -입목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1부.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1부. ※토사량 5만㎥이상 반출할 경우 별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ㅇ 제출하였음. ㅇ 제출하였음. ㅇ 제출하였음. ㅇ 제출하였음. ㅇ 제출하였음. ㅇ 제출하였음. ㅇ 제출하였음.	
교통물류과 -12613 (2013.07.05)	ㅇ 별도의견 없음	-	
관광항공과	ㅇ 조치계획 제출일 현재 의견 없음	-	
환경정책과			

청원군(건설과-22090, 2013.07.09)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사회복지과	ㅇ부지내 무연분묘 발생시 반드시 무연분묘개장허가를 득하여야 함.	ㅇ이행하겠음.	
문화체육과	ㅇ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대책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ㅇ이행하겠음.	
농정과	ㅇ토지조서 상이로 인하여 토지조서 재작성 및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재검토 (토지조서 재작성에 따라)	ㅇ이행하였음.	
산림과	ㅇ보전임지(임야) 면적이 3ha 이상으로 충북도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야 함.	ㅇ협의하였음.	
	ㅇ사업지중에 현재 생육중인 가로수가 편입될 경우 산림과의 승인을 얻어 시행자 부담으로 이식하거나 제거하여야 함(제거시 보상비 부담).	ㅇ이행하겠음.	
환경과	ㅇ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하여 이행에 철저 기할 것.	ㅇ이행하겠음.	
	ㅇ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	ㅇ이행하겠음.	
	ㅇ환경영향평가시 기 할당하였으나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편입면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오염물질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재협의 할 것.	ㅇ이행하겠음.	
건설과	ㅇ오창읍 소재지 주변 주민은 소재지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옥산면 주민은 돛대산 구간을 터널로 시공하여 달라며 현 노선을 반대. ㅇ계획노선이 오창읍 오창1,2과학단지 및 오창소재지를 감싸고 도는 형상으로 읍소재지 주거지역과 근접하여 주민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향후 오창읍 소재지 확장 등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창읍 소재지를 우회하여 산악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주고, 옥산면 장남리 돛대산이 지역 명산으로 터널 설치로 사업계획 수정 필요함.	ㅇ본 사업구간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으로 오창제2지방산업단지로 인하여 오창읍 도시계획 경계지역으로 노선계획을 우회하였음. ㅇ돛대산 구간을 터널로 통과할 경우 옥산JCT~터널간 안전운전을 위한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하여 터널통과는 곤란함. -노선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마을과 이격거리를 추가확보 하였고, 터널형 생태통로와 방음벽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을 추가하였음.	미반영
	ㅇ도로구역 결정관련 협의사항은 자료가 늦게 송부되어(2013.6.27) 협의시간 부족으로 협의 연장 필요.	ㅇ도로구역결정고시 관련 협의서류를 제출하였음.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과	ㅇ 지역지구(군계획시설 등) 지정시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도로법제24조2(주민 등의 의견청취)1항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ㅇ 군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지정 효력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됨으로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야하며, 고시와 동시에 KLIS 및 LURIS에 등재 하여야 함.	ㅇ 등재하겠음.	
	ㅇ 오창읍 소재지 뒤쪽을 통과하는 부분은 생산녹지지역으로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에 의거 완충녹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해 보완할 것.	ㅇ 보완하겠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의 의제를 위한 협의서류를 재구성하여 제출할 것.	ㅇ 제출하였음.	
재난안전과	ㅇ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임. 하천, 소하천 점용은 별도 허가 득할 것.	ㅇ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이행하였으며, 하천·소하천 점용은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하였음. ※관련문서 :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1099(2013.03.29)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회신"	
상수도사업소	ㅇ 기존 급수체계가 유지되도록 대체시설 확보하여야 함	ㅇ 이행하겠음.	
	ㅇ 도로건설로 인하여 향후 상수도공급 수요지역에 단절이 예상되는 경우 횡단관로 및 공동구 등을 설치하여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ㅇ 청원군 상수도 공급계획이 확정될 경우 협의하여 보완하겠음.	
	ㅇ 사업시행시 우리 사업소와 별도 협의할 것.	ㅇ 협의하겠음.	
	ㅇ 사업시설내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도 시설이 존재하는 바 대체시설 필요함.	ㅇ 이행하겠음.	
	ㅇ 사업시행전 선 협의 필요(굴착시 직원 입회).	ㅇ 협의하겠음.	
	ㅇ 사업시행중 상수도시설 손괴시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복구 및 손괴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함.	ㅇ 이행하겠음.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하수도사업소	ㅇ 기협의(하수도사업소-9859(2013.5.9)) 의견을 준수할 것.	ㅇ 이행하겠음.	
축산과	ㅇ 초지전용협의완료(3필지/141,830㎡).	ㅇ 이행하였음.	
경제투자과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 없음.	-	
오창읍	ㅇ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였고, 국토계획에 불필요한 도로임.	ㅇ 본 사업은 국가 상위계획인 국토간선 도로망계획중 동서5축에 해당되며, 사업구간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선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청원·청주와 천안·당진을 연결하여 지역간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함.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12.10.29), 공고·공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미반영
	ㅇ 현 노선대로 고속도로 개설시 오창읍 소재지 발전에 저해 요인이며, 주민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주민의 의견보다 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도로는 불필요함.	ㅇ 오창읍 도시계획 외곽으로 노선을 계획하여 오창읍 개발계획 저촉을 최소화 하였으며, 경기 서남부 천안·당진 지역과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미반영
옥산면	ㅇ 2012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일부개정)의 예외규정을 반영할 것.	ㅇ 예외규정에는 부득이한 경우 충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터널내 제한적인 차로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ㅇ 예외규정의 적용은 적절한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돛대산 구간의 경우 적절한 통과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돛대산을 터널로 통과할 경우 옥산 JCT~터널간 차로변경을 위한 이격거리 부족으로 운전자 안전 확보 가 불가함.	미반영
	ㅇ 곡선을 직선으로, 돛대산구간을 터널로 고속도로 개설할 것.	ㅇ 돛대산 구간을 터널로 통과할 경우 옥산JCT~터널간 안전운전을 위한 이격거리 확보 불가로 터널설치 곤란.	미반영
	ㅇ 마을과 70m안에 고속도로 개설시 주민과 협의 하여야하는 규정을 지킬 것.	ㅇ 마을과 이격거리 70m 규정은 대기환경 관리목표를 반영하라는 관련규정으로서 환경청 협의시 해당지역에 환경저감시설을 적용하여 운영하 는 것으로 기 반영되었음.	미반영

청원군(건설과-26403, 2013.08.19) [도로구역결정관련 추가회신]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산림과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녹지로 결정되는 구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녹지를 확보하고 조성하여야 함.	ㅇ 절·성토 법면에 녹화를 계획하여 녹지를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구간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ㅇ 산지관리법 -보전임지(임야) 면적이 3ha 이상으로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허가사항으로 충청북도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야 함.	ㅇ 이행하였음.	
	ㅇ 삼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가로수) -사업지중에 현재 생육중인 가로수가 편입될 경우 청원군 산림과의 승인을 얻어 시행자 부담으로 이식하거나 제거(제거시 보상비 있음) 하여야 함	ㅇ 이행하겠음.	
건설과	ㅇ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원군 소관 국유재산이 사업부지내 편입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편입되어 기능을 상실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전환 등을 협의 할 것.	ㅇ 협의하겠음.	
	ㅇ 편입되는 도로법상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 주민 통행로 등에 대하여 대체도로(부체도로 등)를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것.	ㅇ 이행하겠음.	
	ㅇ 편입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및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농업용 관정 등)이 사업부지내 편입시 인근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시행 경지정리지역 내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편입되어 기능을 상실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전환 등 을 충청북도와 협의할 것.	ㅇ 협의하겠음.	
	ㅇ 편입되는 비법정 시설물(농로, 세천 등)에 대하여 대체시설 설치 및 기존 비법정시설, 인프라 시설에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ㅇ 이행하겠음.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과	ㅇ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동시에 한국토지정보(KLIS)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시과로 통보하여야 함.	ㅇ 이행하겠음.	
	ㅇ 오창읍 소재지 일대 녹지지역을 경유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완충녹지를 최소 폭 10M 이상으로 계획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매입 및 조성하도록 입안서를 다시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함.	ㅇ 절·성토 법면에 녹화를 계획하여 녹지를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구간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재난안전과	ㅇ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에 한함)시 사업규모 2km 이상인 경우 공사 시행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	ㅇ 협의하였음. ※관련문서 :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1099(2013.03.29)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회신"	
재무과	ㅇ 의견없음.	-	
상수도사업소	ㅇ 도로시설이 상수도시설과 중첩되는 경우 기존 급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ㅇ 이행하겠음.	
	ㅇ 도로시설물로 인하여 급수지역이 분리되거나 차단되어 수소시설물의 연속설치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공동구 및 상수도관로등을 설치하여 향후 수요에 대비하여야 함.	ㅇ 이행하겠음.	
	ㅇ 사업시행시 세부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와 협의 하여야 함.	ㅇ 협의하겠음.	
	ㅇ 수도시설을 손괴 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원인자 비용 부담하여야 함.	ㅇ 이행하겠음.	
하수도사업소	ㅇ 오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하며, 폐쇄시에는 폐쇄 신고를 하여 주변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행하겠음.	
	ㅇ 사업구간 내 공공하수도 시설이 저촉되는 구간은 공사 전 우리 사업소에 이설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ㅇ 이행하겠음.	
	ㅇ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준공도면, 공사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공사 준공전 완료확인을 득하여야 함.	ㅇ 이행하겠음.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2394, 2013.07.05)

관련부서	협의의견	검토의견	비고
기획조정실	□연결협의 추진경위		
	ㅇ '12.04 : 실시설계 협의(대전청→도공) ㅇ '12.05 : 실시설계 협의의견 회신(도공→대전청) -설계기준에 위배되는 옥산분기점 접속위치 재검토 필요 *분기점 곡선반경 기준 및 휴게소와 이격거리 기준 위배 -중복 요금 민원 방지 위해 이부요금제를 거리요금제로 전환 필요 -서오창IC영업소와 서오창본선영업소 간 통행료 비등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오창IC영업소의 경부선 및 중부선 진출입 차로 분리 필요 ㅇ '12.08 : 협의의견 검토결과 통보 (대전청→도공) -옥산분기점 천안방면 연결로 접속방법 변경 -그 외 주요 협의의견 불수용 ㅇ '12.10 : 협의의견 재검토 요청(도공→대전청) -기존 협의의견('12.05)을 준수하여 재검토 요구		
	□실시계획 검토의견		
	1.분기점 설계 관련		
	ㅇ 청원휴게소에 분기점을 계획하여 설계기준 위배* 및 청원휴게소 관리·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대책 강구 필요 *출입시설 - 휴게소 간 이격거리 : (기준) 2km, (확보) 1km이하	ㅇ 옥산분기점 연결로 계획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였음. ※관련공문 :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3611(2012.10.25) -천안방향 연결로 : 휴게소 진출로와 합류 후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협의(안) 동의 -남이방향 연결로 : 교통안전 및 이용객 혼란 방지를 위하여 곡선구간을 벗어나서 연결로 접속 및 휴게소 진입부와 이격거리 확보 필요 ⇒청원휴게소와 남이방향 연결로 노즈간 이격거리 연장 (410m에서→1,045m) ㅇ 옥산JCT와 청원휴게소간 거리는 접속단간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완료 (도시광역교통과-887, 2013.05.31) ※유사사례 : 남해선 장지IC/함안휴게소 등이 있음 ㅇ 관계기관 회의결과(광역도시도로과-1387, '13.8.8)에 따라 남이~천안 확장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될 경우 세부 협의를 추진하겠음.	

관련부서	협의의견	검토의견	비고
기획조정실	-휴게소 진입로 주변에 횡단 교량과 교각이 다수 설치됨에 따라 휴게소 건물 시인성 저해 및 소음 등으로 민자 휴게소인 청원휴게소의 영업 손실 예상 *청원휴게소는 화물차 운전자의 수면공간 및 쉼터 제공이 주 역할 -일평균 화물차 이용량 10000여대 중 휴게텔 이용객 2500여명 이간 수면차량 200여대 *연결로 교량위치가 휴게소 내 생태테마파크와 인접하여 소음·진동에 민감한 파충류의 번식력 저하와 폐사 예상	ㅇ관계기관 회의결과(광역도시도로과-1387, '13.8.8)에 따라 남이~천안 확장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될 경우 세부 협의를 추진하겠음.	
	-옥산~오창 → 경부선 이용차량은 청원휴게소 이용 불가로 민원 예상	ㅇ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시 운전자의 혼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방향 연결로상 청원휴게소 진입로 삭제 의결	미반영
	ㅇ경부선 남이~천안 확장사업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연결로 계획 필요 -현재 경부선 확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옥산분기점 구간의 선형개량이 예정되어 현 접속(안)대로 접속할 경우 경부선 확장 공사시 연결로 전면 재시공 필요	ㅇ관계기관 회의결과(광역도시도로과-1387, '13.8.8)에 따라 남이~천안 확장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될 경우 세부 협의를 추진하겠음.	
	ㅇ아울러 경부선 남이~천안 확장사업 착공 지연에 대비하여 단계건설이 가능한 연결로 계획 필요 -다만, 곡선반경이 매우 작고 시거가 미확보된 배향곡선 구간에 분기점 유출부를 휴게소 입구와 인접 설치하는 계획은 이용자 혼란 및 교통사고 빈발이 예상되어 지양 필요	ㅇ관계기관 회의결과(광역도시도로과-1387, '13.8.8)에 따라 남이~천안 확장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될 경우 세부 협의를 추진하겠음. ㅇ옥산분기점 연결로 계획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였음. ※관련공문 :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3611(2012.10.25) ㅇ옥산JCT와 청원휴게소간 거리는 접속단간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완료(도시광역교통과-887, 2013.05.31) ※사례: 남해선 장지IC/함안휴게소 등	
	ㅇ기존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시행한 설계 및 공공디자인 심의 의견 반영 필요	ㅇ설계성과품 및 디자인심의 결과를 반영하였음 ※관련공문 : 충청본부 도로팀-1071 (2013.05.09) "설계심의 결과통보"	
	-경부선 남이~천안 확장설계 반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 시 우리공사에 심의 재요청 필요	ㅇ옥산JCT 계획 변경시 이행하겠음.	

관련부서	협의의견	검토의견	비고
기획조정실	ㅇ 신설도로와 연계된 기존 고속도로 안내표지판 변경계획 반영 필요	ㅇ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거 교통안내표지판 보완계획을 반영하였음. ※관련공문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887(2013.05.31)	
	2.영업체계 관련		
	ㅇ 재정-민자 연계 이용시 기본요금 이중부과 문제로 통행료 체계 재검토 필요	ㅇ 실시협약에 의거 개통전 최초통행료 산정시 요금체계 및 징수요금을 주무관청과 협의할 예정임.	
	ㅇ 서오창IC 영업소 차로를 분리하지 않아 서오창IC 이용자와 서오창 본선영업소 이용자간 비등가 통행료 발생으로 민원 및 요금체계 혼란 예상됨	ㅇ 서오창IC영업소 차로분리시 고속도로 본선 및 일반도로와 연결로 설치가 불가하여 곤란하였음. ㅇ IC영업소와 본선영업소간 비등가 요금은 두 영업소 모두 도로공사 요금부과기준인 입구·출구 영업소간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부과하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ㅇ 부득이한 경우 경부선과 중부선 연결로에 영상인식장치를 설치하여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나 적용성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	
	ㅇ 향후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민자법인에서 부담해야 함	ㅇ 상기 내용으로 재정구간 요금을 부과하면 비등가 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며, 민원 발생시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ㅇ 이밖에 현재 우리공사에서 검토중인 영상인식 장치를 통한 재정-민자 통합요금정산시스템 구현 시('16. 4 예정) 연계방식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	ㅇ 한국도로공사 요금징수정책 확정시 적용방안 강구하겠음.	
	3.공사시행 관련		
	ㅇ 기존 고속도로 접속구간에 대해서는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며 충청본부와 사전 협의 요망	ㅇ 협의하겠음.	
	ㅇ 횡단교량 가설 시 교통처리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후 거더 거치 최소 1개월 전 충청본부와 사전 협의 필요	ㅇ 협의하겠음.	
	4.유지관리 관련		
	ㅇ 유지관리 경계는 연결로 변속차로 변이구간 시종점으로 함	ㅇ 이행하겠음.	

관련부서	협의의견	검토의견	비고
기획조정실	ㅇ청원휴게소 진출로(서울방향) 이설로 인해 발생되는 폐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가 환경복원 시행 필요	ㅇ충청북도 치수방재과 협의시, 기존 청원휴게소 진출로(서울방향)는 병천천 하천관리용 도로로 활용할 수 있어 존치가 적정하며, 수목식재 등은 제방을 약화시킬 수 있어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	미반영
	ㅇ횡단교량에는 투석방지망을 설치하고 교량하부 미관을 고려한 주기적인 유지관리 계획 수립 필요	ㅇ설계성과품 및 디자인심의 결과를 반영하였음 ※관련공문 : 충청본부 도로팀-1071 (2013.05.09) "설계심의 결과통보"	
	5.부대시설 관련		
	<전기시설>		
	ㅇ옥산 및 오창분기점 본선부 가로등 설치계획 누락으로 보완 필요	ㅇ조도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경부선 및 중부선 접속부 일부 구간에 가로등 설비를 추가 반영하겠음. -다만 오창분기점 Ramp-B, E는 장래 계획이므로 반영하지 않음.	
	ㅇ오창분기점은 장래 동서5축 연결을 고려한 전기 설계 필요 -인입전주~분전반까지 케이블, 분전반 예비회로, 예비배관 및 횡단배관, 맨홀 등 *오창분기점 향후 설치 예정 연결 : Ramp-B, Ramp-E	ㅇ장래 동서5축 연결시 지장이 없도록 전기설계를 보완하겠음.	
	<조경시설>		
	ㅇ기존 고속도로 및 휴게소 구간 수목의 이식·복구계획 수립, 비용 반영	ㅇ천안지사(이용직 과장) 합동조사(2013.08.01) 결과를 토대로 활용방안을 수립하겠음. ※합동조사시, 청원휴게소 여유녹지에 본 이식을 협의하였으며, 이식수량 및 이식계획은 세부 협의예정	별첨#4
	ㅇ분기점 램프 곡선 내측구간 시거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위치 조정	ㅇ반영하겠음.	
	ㅇ준공 후 유지관리를 고려한 본선 구간 관목식재 위치 수정 검토	ㅇ반영하겠음	

관련부서	협의의견	검토의견	비고
기획조정실	**6.기타**		
	ㅇ경부선 남이~천안 확장 실시설계시 옥산~오창간 교통량을 반영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교통량 자료 협조 요청	ㅇ교통량 자료를 제공하겠음.	
	ㅇ교통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연계정보 : CCTV, VDS(실시간 30초 자료), TCS(실시간) 등	ㅇ연계시시템 구축하였음.	
	ㅇ상시 교통량 조사를 위한 교통량 조사 장비 설치	ㅇ교통량 조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2012-252, 2012.9.21)에 따른 상시 조사 장비를 반영하였음.	
	ㅇITS 시설 구축 공사 전 최신 기술 및 공법 등을 고려한 재설계 필요	ㅇ반영하겠음.	

관 련 근 거

관련근거 #1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산-오창) 경부고속도로 접속방안 관계기관 회의결과

1. 우리 부 광역도시도로과-1374호('13.8.6)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구간)의 접속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3.8.7(수) 개최한 관계기관 회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기관별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의결과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도로정책과장, 한국도로공사사장, 옥산오창고속도로㈜ 대표이사

사무관대우	민인홍	기술서기관	유병수	과장	전결 2013. 8. 8. 김영국
협조자					

시행 광역도시도로과-1387 (2013. 8. 8.)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03 팩스번호 044-201-5591 / mininong@korea.kr / 대국민 공개

[옥산-오창] 경부고속도로 옥산JCT 접속방안 관련 회의결과

'13.8.8(목) 광역도시도로과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3.8.7(수)** 10:30 /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

○ **참석자** : 광역도시도로과 유병수書 등 2인, 도로정책과 정양기事, 한국도로공사 조사팀 박건태 부장, 옥산오창고속도로㈜ 김진욱 팀장, 삼보기술단 안만홍 부장

2 회의결과

○ **(실시계획)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옥산~오창의 옥산JCT 설치계획**은 그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대로 승인**

○ **(승인조건)** 경부선 **남이~천안 확장공사**(R=700)와의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옥산~오창 실시계획 승인조건 부여**

- 남이~천안 확장공사의 실시설계('14.9월)가 확정될 경우 옥산~오창 사업시행자는 도공과 협의하여 옥산JCT 설치계획을 수정

- 옥산~오창 사업시행자는 타 감액사항을 발굴하여 총사업비 증액 없이 「옥산JCT 설치계획 수정(안)」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 **(도공협조)** 도공은 **옥산-오창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남이~천안 확장공사**의 옥산JCT 접속구간은 **'16년초까지 조기 착공**

- 남이~천안 확장공사의 옥산JCT 접속구간이 '16년초까지 未착공될 경우 「옥산JCT 설치계획 수정(안)」은 재검토

- 「옥산JCT 설치계획 수정(안)」을 위한 필요한 환경·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은 도공이 남이-천안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수행

3 향후계획

○ **옥산-오창 실시계획 승인**('13.9월) 및 **착공**('13.10월)

관련근거 #2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자 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 송부

1. 광역도시도로과-670(2013.5.31)호 관련문서입니다.

2.「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대한 개선필요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제2013-10호) 1부. 끝.

도시광역교통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신경창	김진동	05/31 안석환

협조자

시행 도시광역교통과-887 (2013. 05. 31.) 접수 광역도시도로과-680 (2013. 05. 31.)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813 전송 044-201-5579 / startshin@molit.go.kr / 비공개(2,5)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 개선필요사항

일련번호 제2013-10호

1.사 업 명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사 업 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3.사업기간	2012년~2017년	4.수립대행자	(주)평화엔지니어링
5.사업위치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 충북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6.용 도	도로시설(고속도로)
7.사업규모	· 총연장 : 12.1km, 4차로(B=23.4m) · 출입시설 : 옥산 JCT, 서오창 IC, 오창 JCT · 영업소 : 본선 영업소, 서오창 IC 영업소	8.사업형태	개발형태 도로건설사업

9.교통수요

구 간	년 도	승용차	버스		트럭				계	비 고
			소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특수		
옥산JCT ~ 서오창IC	2019년	16,256	1,865	1,645	3,060	2,850	2,745	683	29,104	
	2023년	21,306	2,445	2,156	4,010	3,735	3,598	895	38,145	
서오창IC ~ 오창JCT	2019년	11,102	1,274	1,124	2,090	1,946	1,875	466	19,877	
	2023년	18,031	2,069	1,825	3,394	3,161	3,045	758	32,283	

10. 주차면수	도로사업으로 주차면수는 해당사항 없음

1. 교통 개선대책

구 분	개 선 방 안				
진출입지점과 연결되는 주변가로	•과업노선 주변 교통시설계획 반영 –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남이JCT ~ 천안JCT) : 2010.12 기본설계 완료 – 당진~천안 고속도로 신설계획(4차로) : 실시설계 진행중 •주변 교차로 신호현시 최적(안)제시 (3개소, 주기조정 및 보행시간 고려) – ① 가좌사거리(비보호 좌회전 적용), ② 질푼이삼거리, ③ 한전앞사거리 •질푼이삼거리 안전시설 및 우회전전용신호등설치				
설계제원	연장	설계속도	운영속도	폭원 및 차로수	주요시설 및 공종
	12.1km	100km/h	100km/h	23.4m (4차로)	교량 및 기타부대시설

주 1 : 음영부분은 사전검토보완('13.03) 사항임

주 2 : 음영부분 밑줄 굵은체는 수정의결검토보완('13.05) 사항임

구 분		개 선 방 안	
과업노선	구 분	형 식	시 설
	㉮옥산 JCT	• 준직결형 Y형식 -경부고속 도로와 접속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확장 기본설계안 반영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3개소 (L=290→294m, 305m, 670m, B=3.6m) -감속차로설치 3개소 (L=196m, 290m, 430m, B=3.6m) •운전자의 혼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입로 삭제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출로 설치 : 연결로에서 합류후 경부고속도로 유입으로 경부고속도로 교통안전성 및 지정체 완화 -가속차로설치 1개소(L=141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B"~"D" 확보 •청원휴게소 진입로, 오창방향 연결로에 대한 통합표지판 설치(5개소)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서울·대전 방향 문형식 표지(1개소), 노면표시 (3개소)설치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1,480m)
	㉯서오창 IC	•더블트럼펫형 -지방도540호선과 접속	•지방도 540호선과 접속계획으로 교통소통 및 접근성확보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4개소 (L=180m, 335m, 362m, 370m, B=3.6m) -감속차로설치 4개소 (L=160m, 205m, 210m, 340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A"~"C" 확보 •하이패스 안내표지 설치(3개소)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안내표지추가 설치(2개소)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1,235m)
	㉰오창 JCT	•직결형 (장래 트럼펫형 단계건설) -중부고속도로와 접속	•장래 동서5축 오창~울진구간 연계를 고려한 기본설계VE안 반영 (대전방향 연결로 - 장래 단계 건설)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1개소(L=365m, B=3.6m) -감속차로설치 1개소(L=220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C"~"D" 확보 •안내표지판 지명 통일(서울→천안)
	교통안전 및 기 타		•적정위치 및 위험구간에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본선 영업소 및 IC 영업소의 충분한 영업소 차로수 확보 -본선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IC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출구정보안내중심(지명) 고속도로 표지판체계 기준 적용 •내리막 경사구간, 대절토구간, 연결로에 종방향 그루빙 설치(L=6,985m) •IC 분류부 및 영업소에 충격흡수시설 설치(17개소) •오창JCT 대전방향 이용불가에 대한 정보제공(옥산JCT 부근 및 서오창IC 영업소에 설치된 VMS에 문자표출)
	지역분리 극복방안		•지역간 단절지점 연계시설 설치 - 부체도로 설치 : 40개소, 7,844.40m - 이설도로 설치 : 1개소, 259.0m - 통로박스 설치 : 30개소, 1,241.01m - 교량 설치 : 22개소, 2,387.0m

주 1 : 음영부분은 사전검토보완('13.03) 사항임

주 2 : 음영부분 밑줄 굵은체는 수정의결검토보완('13.05) 사항임

첨부 1. 수정의결보완서 및 종합개선안도 1부(별송).

2. 교통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 시행계획 1부. 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교통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을 송부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인)

2. 교통 개선대책의 시행계획

구 분		개 선 방 안	개소	연장 (m)	폭원 (m)	시행 시기	시행 주체	비용 부담
진출입 지점과 연결되는 주변가로		•과업노선 주변 교통시설계획 반영 –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남이JCT ~ 천안JCT) : 2010.12 기본설계 완료 – 당진~천안 고속도로 신설계획(4차로) : 실시설계 진행중 •주변 교차로 신호현시 최적(안)제시 (3개소, 주기조정 및 보행시간 고려) – ① 가좌사거리(비보호 좌회전 적용), ② 질문이삼거리, ③ 한전앞사거리 •질문이삼거리 안전시설 및 우회전전용신호등설치	– 3	–	–	사업 시행시	관할 관청	사업 시행자
과업노선	㉮옥산 JCT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확장 기본설계안 반영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3개소 (L=290→294m, 305m, 670m, B=3.6m) –감속차로설치 3개소 (L=196m, 290m, 430m, B=3.6m) •운전자의 혼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입로 삭제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출로 설치 : 연결로에서 합류후 경부고속도로 유입으로 경부고속도로 교통안전성 및 지정체 완화 –가속차로설치 1개소(L=141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B"~"D" 확보 •청원휴게소 진입로, 오장방향 연결로에 대한 통합표지판 설치(5개소)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서울대전 방향 문형식 표지(1개소), 노면표시(3개소)설치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1,480m)	– – 3 3 – – 1 – 5 – –	– – 1,269 916 – – 141 – – – 1,480	– – 3.6 3.6 – – 3.6 – –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서오창 IC	•지방도 540호선과 접속계획으로 교통소통 및 접근성확보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4개소 (L=180m, 335m, 362m, 370m, B=3.6m) –감속차로설치 4개소 (L=160m, 205m, 210m, 340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A"~"C" 확보 •하이패스 안내표지 설치(3개소)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안내표지추가 설치(2개소)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1,235m)	– – 4 4 – 3 2 –	– – 1,247 915 – – – 1,235	– – 3.6 3.6 – –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오창 JCT	•장래 동서5축 오창~울진구간 연계를 고려한 기본설계VE안 반영(대전방향 연결로 – 장래 단계 건설)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가속차로설치 1개소(L=365m, B=3.6m) –감속차로설치 1개소(L=220m, B=3.6m)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C"~"D" 확보 •안내표지판 지명 통일(서울→천안)	– – 1 1 – –	– – 365 220 – –	– – 3.6 3.6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교통안전 및 기 타	•적정위치 및 위험구간에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본선 영업소 및 IC 영업소의 충분한 영업소 차로수 확보 –본선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IC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출구정보안내중심(지명) 고속도로 표지판체계 기준 적용 •내리막 경사구간, 대절토구간, 연결로에 종방향 그루빙 설치(L=6,985m) •IC 분류부 및 영업소에 충격흡수시설 설치(17개소) •오창JCT 대전방향 이용률가에 대한 정보제공(옥산JCT 부근 및 서오창IC 영업소에 설치된 VMS에 문자표출)	– – – 17	– – – 6,985 –	– –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지역분리 극복방안	•지역간 단절지점 연계시설 설치 – 부체도로 설치 : 40개소, 7,844.40m – 이설도로 설치 : 1개소, 259.0m – 통로박스 설치 : 30개소, 1,241.01m – 교량 설치 : 22개소, 2,387.0m	40 1 30 22	7.844.4 259.0 1,241.0 2,387.0	– – – –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주 1 : 음영부분은 사전검토보완('13.03) 사항임

주 2 : 음영부분 밑줄 굵은체는 수정의결검토보완('13.05) 사항임

종합계획도 - 4공의분할완료('1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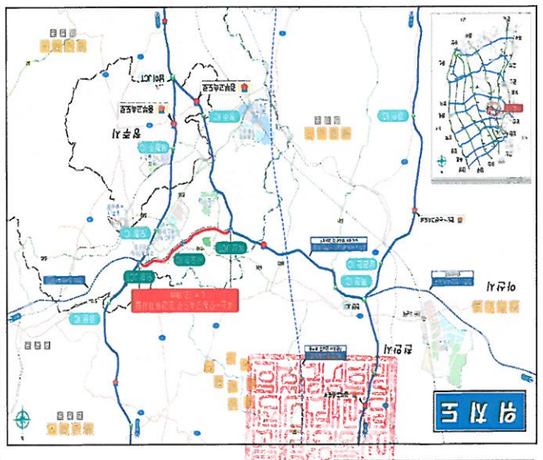

일 산 도

표준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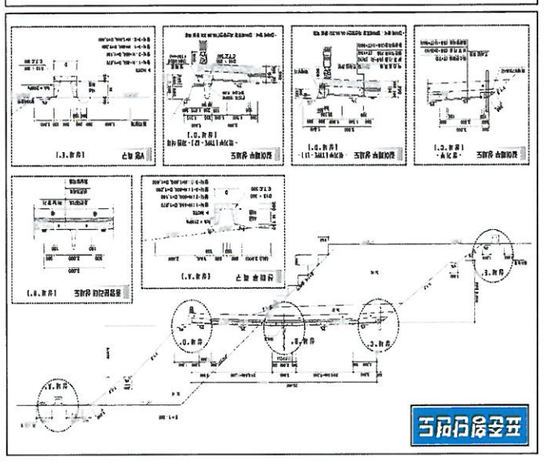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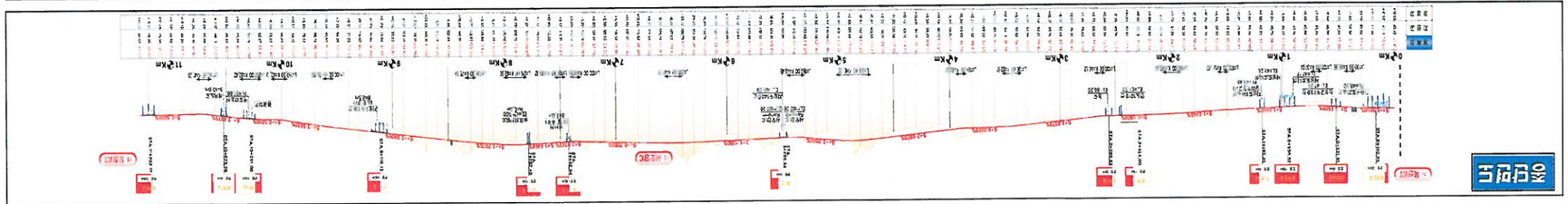

평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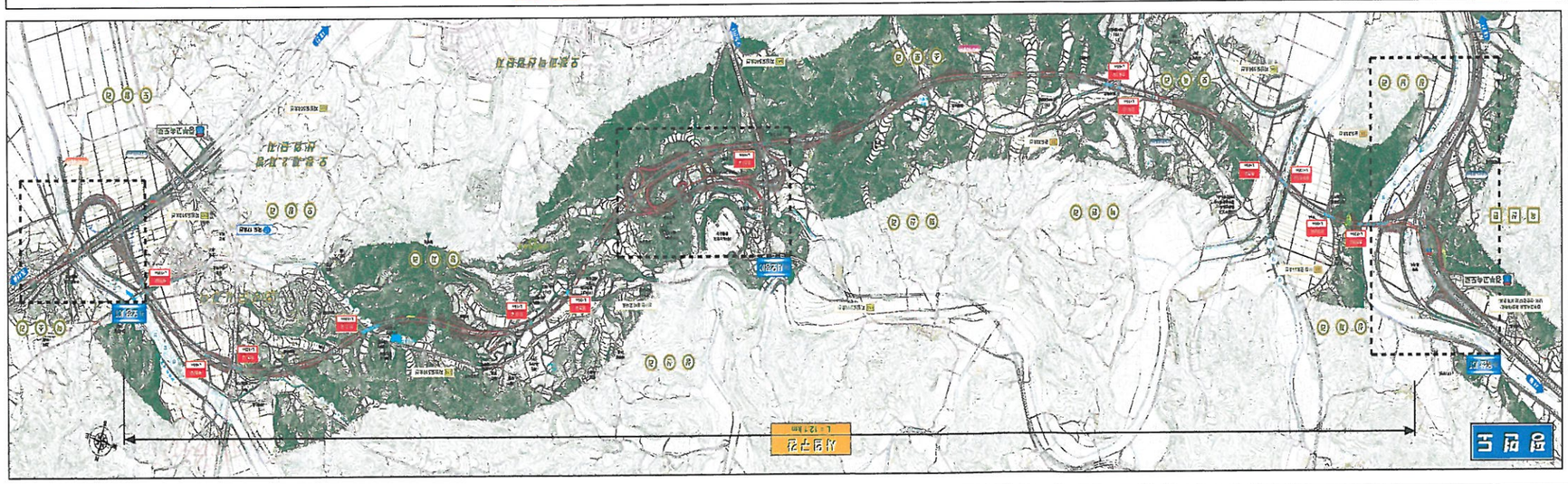

노선개요

구분	계획 및 설계	기존 및 현황
노선명	일산~포천 고속도로	일산~포천 고속도로
기점	일산JCT (IC-1)	일산JCT (IC-1)
종점	포천IC (IC-2)	포천IC (IC-2)
연장	12.1km	12.1km
설계속도	100km/h	100km/h
차로수	왕복 4차로	왕복 4차로
횡단구성	2.5m+3.5m+3.5m+2.5m	2.5m+3.5m+3.5m+2.5m

일반현황

구분	내용
사업명	일산~포천 고속도로 확장
사업기간	2015.03 ~ 2019.12
총사업비	3,250억원
시공사	대한건설(주) 외 3개사
감리사	한국엔지니어링(주)
교통량	일평균 42,000대
휴게소	1개소 (포천휴게소)
톨게이트	2개소 (일산, 포천)

범 례

구분	내용
노선	본선
교량	교량
터널	터널
휴게소	휴게소
톨게이트	톨게이트
IC	인터체인지
JCT	분기점
하천	하천
철도	철도
도로	국도
시군경계	시군경계

주요 시설물 현황

구분	명칭	위치	규모	비고
교량	일산대교	일산IC 인근	L=1,250m, W=24.5m	왕복 4차로
교량	포천천교	포천IC 인근	L=860m, W=24.5m	왕복 4차로
터널	송산터널	일산~송산 구간	L=1,420m, W=10.5m	왕복 2차로
휴게소	포천휴게소	포천IC 인근	부지 12,000㎡	주유소, 편의점
톨게이트	일산톨게이트	일산IC 내	8차로	하이패스 겸용
톨게이트	포천톨게이트	포천IC 내	6차로	하이패스 겸용
교량	송산교	송산IC 인근	L=640m, W=24.5m	왕복 4차로
터널	포천터널	포천IC 인근	L=2,100m, W=10.5m	왕복 2차로

공사 개요

구분	내용
공사명	일산~포천 고속도로 확장공사
공사기간	2015.03 ~ 2019.12 (57개월)
공사구간	일산JCT ~ 포천IC (12.1km)
시공사	대한건설(주) 외 3개사
감리사	한국엔지니어링(주)
총사업비	3,250억원
공정률	100% (준공)
준공일	2019.12.20
개통일	2019.12.27
비고	무사고 준공

교통량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평균 교통량	38,200	39,500	40,800	41,600	42,000
증가율	-	3.4%	3.3%	2.0%	1.0%
대형차 비율	18.5%	18.8%	19.0%	19.2%	19.3%
승용차 비율	81.5%	81.2%	81.0%	80.8%	80.7%
최대시간 교통량	3,820	3,950	4,080	4,160	4,200
첨두율	10.0%	10.0%	10.0%	10.0%	10.0%
방향분포	52:48	52:48	52:48	52:48	52:48
비고	개통				

공정 현황

구분	계획	실적	비고
착공	2015.03	2015.03	
토공	2016.12	2016.12	
교량	2017.06	2017.06	
터널	2017.12	2017.12	
포장	2018.09	2018.09	
부대공	2019.06	2019.06	
준공	2019.12	2019.12	
개통	2019.12	2019.12	

예산 현황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토공	820억	820억	0	
교량	1,150억	1,150억	0	
터널	680억	680억	0	
포장	210억	210억	0	
부대공	150억	150억	0	
보상	240억	240억	0	
합계	3,250억	3,250억	0	

안전 관리

구분	내용
안전관리자	3명
안전교육	월 1회
무재해	1,200일
사고	0건
비고	

환경 관리

구분	내용
소음	주간 70dB 이하
진동	65dB 이하
분진	살수차 운영
폐기물	적정 처리
비고	

유지관리 현황

구분	내용
관리주체	일산~포천 고속도로 관리단
관리인원	45명
순찰차량	6대
비고	

교통안전시설 현황

구분	내용
표지판	120개
노면표시	12.1km
가로등	240개
방호울타리	24.2km
비고	

휴게소 현황

구분	내용
명칭	포천휴게소
위치	포천IC 인근
부지	12,000㎡
주차면	승용 180, 대형 60
비고	

톨게이트 현황

구분	내용
명칭	일산톨게이트, 포천톨게이트
차로수	8차로, 6차로
하이패스	전 차로
비고	

교량 현황

구분	내용
명칭	일산대교, 포천천교, 송산교
연장	2,610m
폭원	24.5m
비고	

터널 현황

구분	내용
명칭	송산터널, 포천터널
연장	3,520m
폭원	10.5m
비고	

공사 현황

구분	내용
공사명	일산~포천 고속도로 확장공사
공사기간	2015.03 ~ 2019.12
공사구간	일산JCT ~ 포천IC
시공사	대한건설(주) 외 3개사
감리사	한국엔지니어링(주)
비고	

공정 현황

구분	계획	실적	비고
착공	2015.03	2015.03	
준공	2019.12	2019.12	
개통	2019.12	2019.12	
비고			

예산 현황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합계	3,250억	3,250억	0	
비고		

㈜옥산 JCT 상세도 (수정의결보완전-수정의결보완후-'13.05)

◈ 교통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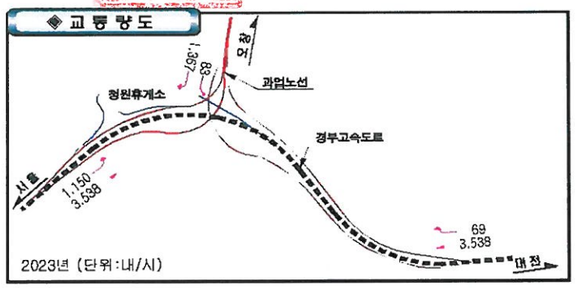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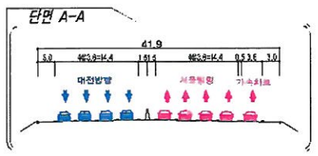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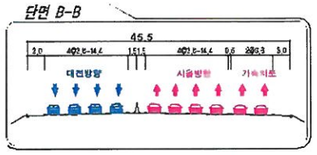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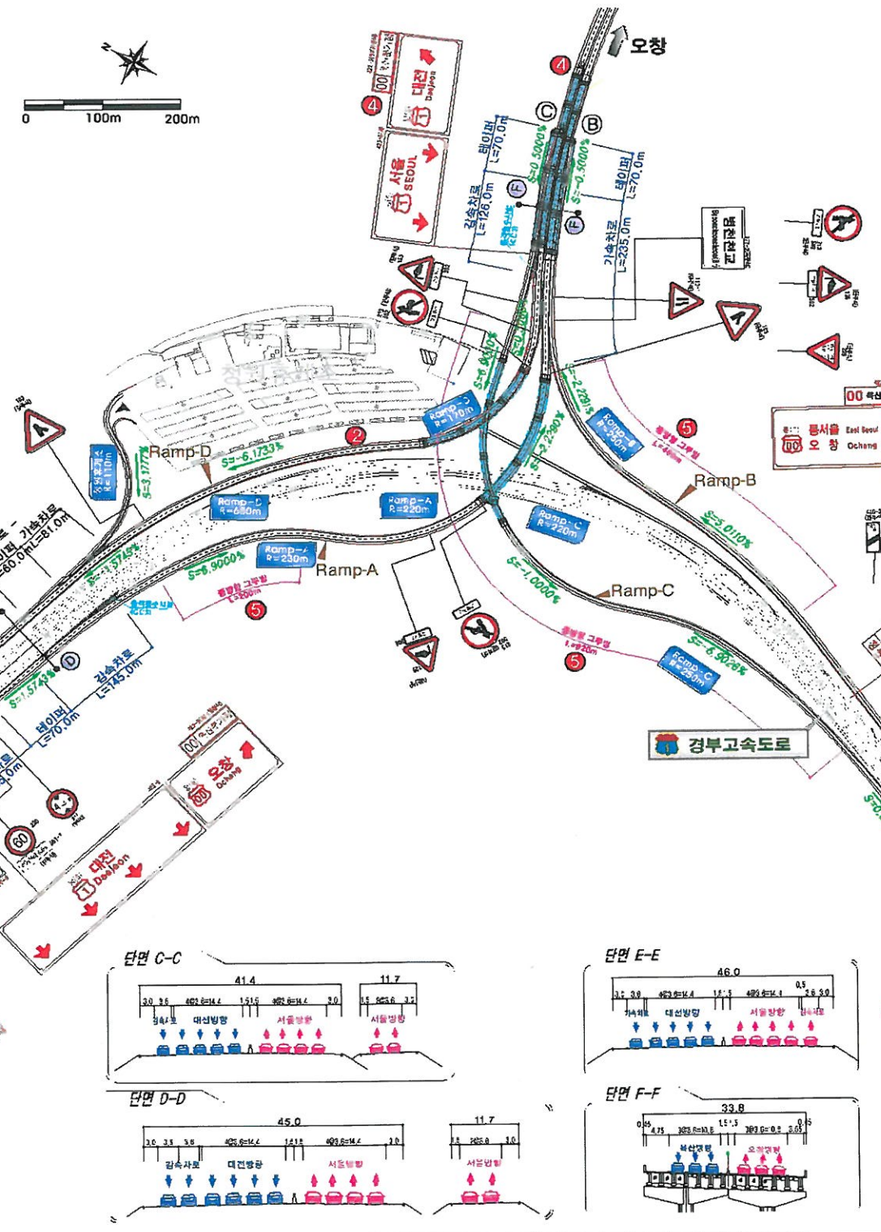

◈ 개 선 방 안

구 분	개 선 사 항
형 식	·준직결형 Y형식(입체교차로) - 경부고속도로와 접속
차량 동선 체계	·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확장 기본설계안 반영 ·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① - 가속차로 설치 3개소 (L=290m→ 294m, L=305m, L=670m, B=3.6m) - 감속차로 설치 3개소 (L=196m, L=290m, L=430m, B=3.6m) ② 운전자의 혼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입로 삭제 · 서울방향 연결로상에 청원휴게소 진출로 설치 : 연결로에서 합류후 경부고속도로 유입으로 경부고속도로 교통안전성 및 지정체 완화 - 가속차로 설치 1개소(L=141m, B=3.6m) ·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B" ~ "D" 확보
교통안전 및 기 타	③ 청원휴게소 진입로, 오창방향 연결로에 대한 통합표지판 설치(5개소)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④ 서울·대전방향 문형식 표지(1개소), 노면표지(3개소) 설치 ⑤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L=1,480m)

주 : 적색글씨 - 사전검토완('13. 03) 사항임

◈ 합분류 분석(2023년)

구분	형식	밀도비 (pcpkmpl)	LOS
본선 Ⓐ	분류	16.6	C
본선 Ⓑ	합류	9.5	B
접속 Ⓒ	분류	10.6	B
접속 Ⓓ	합류	19.2	D
접속 Ⓔ	합류	9.5	B
접속 Ⓕ	분류	11.6	B

◈ 연결로 차로수 산정(2023년)

방향	AADT (대/일)	용량 (pcph)	PDDHV (pcph)	차로수 소요	차로수 설계
Ramp-A	16,433	1,800	1,466	1	2
Ramp-B	993	1,800	89	1	1
Ramp-C	1,181	1,800	105	1	1
Ramp-D	19,538	1,800	1,743	1	2

나. 서오창 IC 상세도 [수정의결보완전-수정의결보완후-'13.05]

◈ 교통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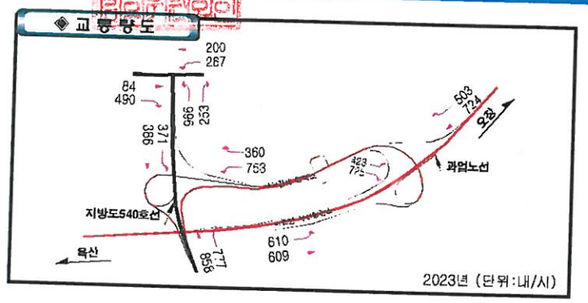

단면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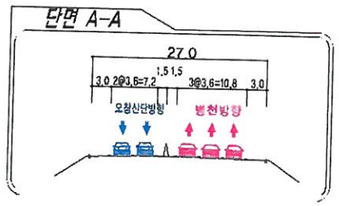

단면 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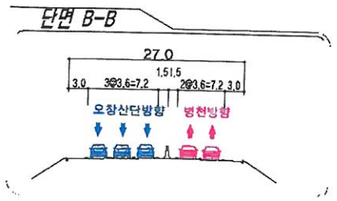

◈ 개 선 방 안

구 분	개 선 사 항
형 식	·더블트럼펫형(입체교차로) - 지방도 540호선과 접속
진출입 동선 체계	· 지방도540호선과 접속계획으로 교통소통 및 접근성 확보 ·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 가속차로 설치 4개소 (L=180m, L=335m, L=362m, L=370m, B=3.6m) - 감속차로 설치 4개소 (L=160m, L=205m, L=210m, L=340m, B=3.6m) · 본선 영업소 및 IC 영업소의 충분한 영업소 차로수 확보 - 본선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 IC 영업소 : 하이패스 2차로, 일반차로 4차로 ·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A" ~ "C" 확보
교통안전 및 기 타	● 하이패스 안내표지 추가설치(3개소) ●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안내표지추가 설치(2개소) ●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L=1,235m)

주 : 적색글씨 - 사전검토보완('13. 03) 사항임.

◈ 합분류 분석(2023년)

구분	형식	밀도비 (pcpkmpl)	LOS
본선 Ⓐ	분류	8.8	B
본선 Ⓑ	합류	9.5	B
본선 Ⓒ	분류	8.8	B
본선 Ⓓ	합류	13.9	C
접속 Ⓐ	분류	9.8	B
접속 Ⓑ	합류	9.9	B
접속 Ⓒ	분류	5.1	A
접속 Ⓓ	합류	11.0	B

◈ 연결로 차로수 산정(2023년)

방향	AADT (대/일)	용량 (pcph)	PDDHV (pcph)	차로수 소요	차로수 설계
Ramp-B	6,043	1,600	539	1	1
Ramp-C	8,721	1,800	778	1	1
Ramp-D	10,369	1,700	925	1	1
Ramp-E	7,185	1,800	641	1	1
Ramp-F	5,305	1,600	473	1	1
Ramp-G	10,765	1,700	960	1	2
Ramp-H	11,107	1,700	991	1	2
Ramp-I	5,141	1,700	459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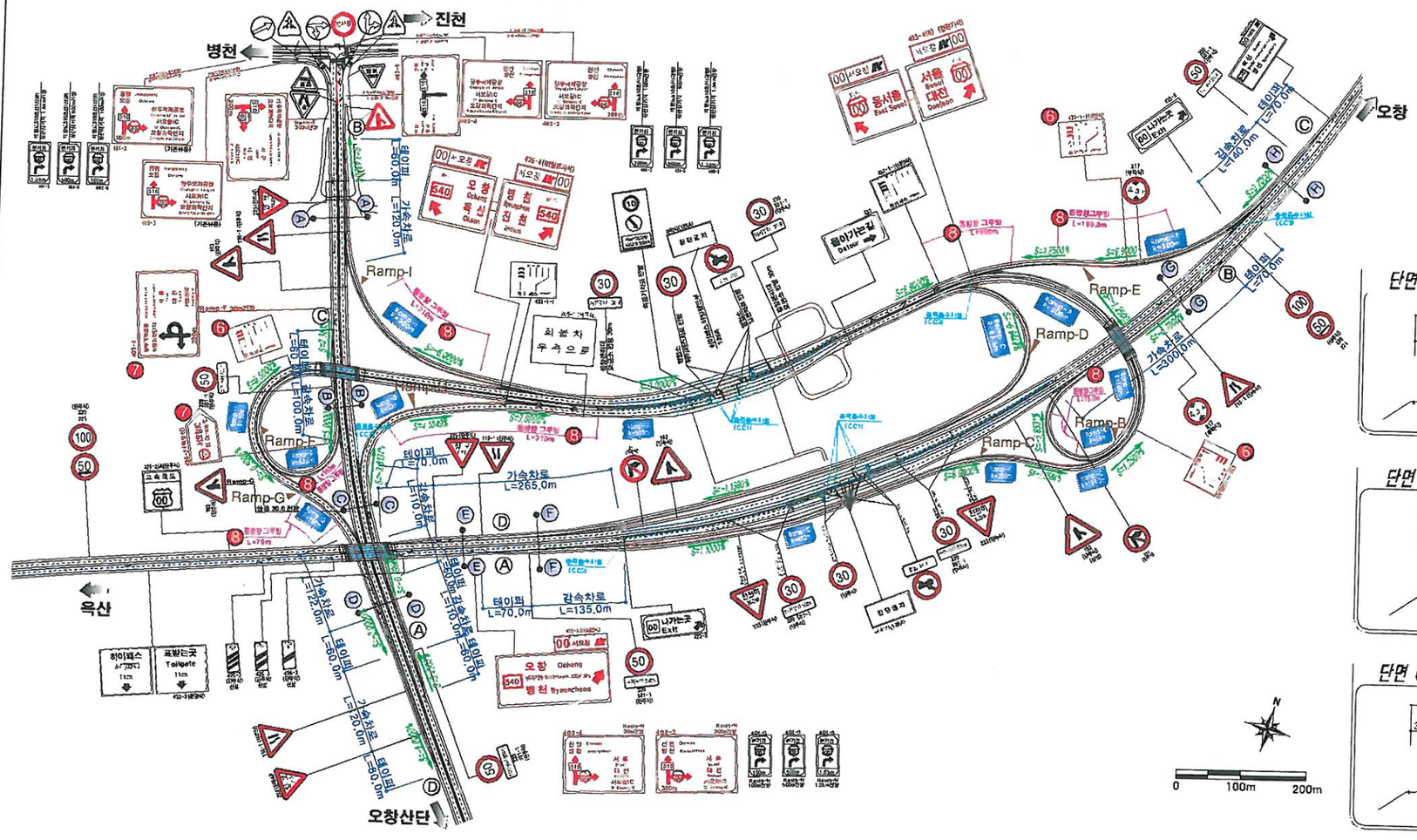

단면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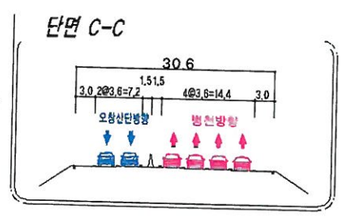

단면 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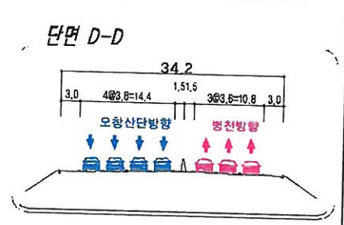

단면 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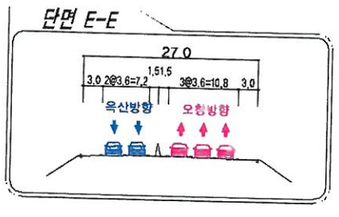

단면 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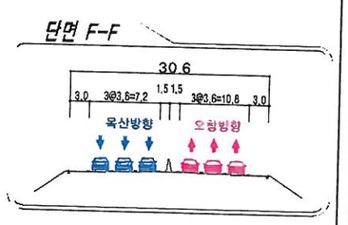

단면 G-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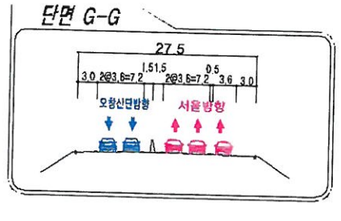

단면 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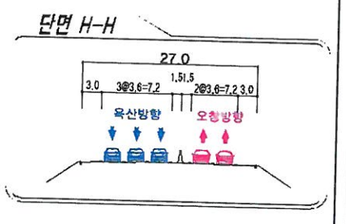

㉮ 오창 JCT 상세도 [수정의결보완전=수정의결보완후-'13.05]

◈ 교통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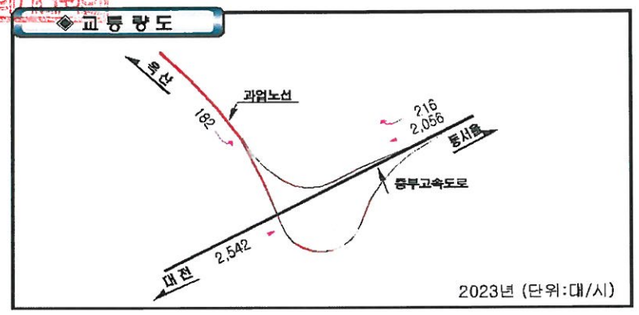



◈ 개 선 방 안

구분	개 선 사 항
형 식	·직결형(입체교차로),(장래트럼펫형 단계건설) – 중부고속도로와 접속
진출입 동선 체계	· 장래 동서5축 오창~울진간 연계를 고려한 기본설계VE안 반영 (대전방향 연결로 – 장래단계 건설) · 적정수준의 가감속차로 설치 – 가속차로 설치 1개소 (L=365m, B=3.6m) – 감속차로 설치 1개소 (L=220m, B=3.6m) · 연결로 합분류 서비스수준 "C"~"D" 확보
교통안전 및 기 타	●안내표지판 지명통일(서울→천안)

주 : 적색글씨 – 사전검토보완('13.02) 사항임.

◈ 연결로 차로수 산정(2023년)

방향	AADT (대/일)	용 량 (pcph)	PDDHV (pcph)	차 로 수 소요	설계
Ramp-C	2,596	1,800	232	1	1
Ramp-D	3,086	1,800	275	1	1

◈ 합분류 분석(2023년)

구분	형식	밀도비 (pcpkmpl)	LOS
접속Ⓐ	분류	16.7	C
접속Ⓑ	합류	21.9	D

단면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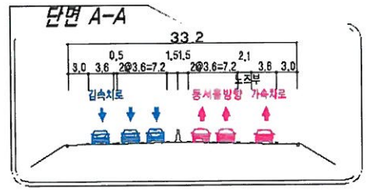

단면 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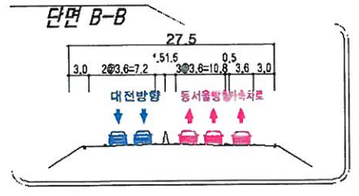

관련근거 #3

환 경 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회신

1. 광역도시도로과-194('13.01.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에서 협의요청한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법 제30조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내용의 반영결과를 우리부(국토환경평가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생태계 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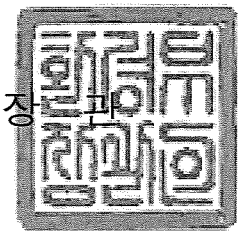

환경사무관	조상대	과장	전결 2013. 4. 24. 박찬갑
협조자			

시행 국토환경평가과-1067 (2013. 4. 24.) 접수 광역도시도로과-307 (2013. 4. 24.)

우 427-72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환경평가과 / http://www.me.go.kr

전화번호 044-201-7294 팩스번호 044-201-7304 / jd3874@me.go.kr / 대국민 공개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내 용

<옥산-오창고속도로 민자사업>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 오창읍**

❍ **사업규모 및 주요 시설**

연장	차로	교량	생태통로	JCT	IC
12.1㎞	4차로	22개소	2개소	2개소	1개소

❍ **사업기간 : 2013~2017**

❍ **사업자(승인기관) :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국토교통부)**

Ⅰ. 총 괄

❍ 본 사업은 동·서축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인 옥산-오창고속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으로

- 각 항목별 검토의견과 저감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평가서에 제시된 예측자료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영향범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에 적용한 계획 및 조건 등의 변화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평가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환경영향조사 계획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시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동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당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대책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업승인기관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함

Ⅱ. 항목별 협의의견

1. 대기환경 분야

가. 대기질

❍ 공사시 세륜·세차시설은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공사용 도로와 기존 도로의 접속구간에 설치하고, 비산먼지의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지역에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대기환경기준치(년, 일, 시간)를 초과할 경우 고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계획노선 인접 주요 정온시설에 대하여는 사후 모니터링 결과 기준에 근접하거나 예측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등의 조치계획이 필요함

❍ 운영시 차량의 배기가스에 의한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오창 IC, JCT(옥산, 오창), 절·성토 사면부와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적정한 양의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여야 함

❍ 대기질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00m 이내 지역(10개 지점)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평가서에서 제시(194쪽)한 대로 공사시(토공시 토공구간 인접지역은 매시간별 측정) 및 운영시 분기 1회 조사하여야 함

나. 온실가스

❍ 평가서 207-208쪽에 의거 공사시 에너지 사용량 저감, 저탄소 재료의 사용 등 방안과 운영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개발 대비 선택대안의 감축효과 비교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함

2. 수환경 분야

가.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절토 지역은 산마루 측구, 평지 및 성토 지역은 가배수로 및 우수유입 방지둑 등을 선시공하고, 규모가 큰 침사지는 다단계로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침사지의 효율이 저하되어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경우 고분자응집제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하천구간에 대한 교량 공사시 일시적인 토사유출로 부유물질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공사구간 하류지역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가도설치 및 기초터파기 공사는 현장에 맞는 적정한 공법을 선정·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등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계획교량 주변하상의 유지(세굴 방지)를 위해 하상보호공을 적정하게 설치해야 함

❍ 계획노선 편입지역에 포함되는 관정은 지하수질의 오염이 예상되므로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따라 원상복구 및 되메움 방법 등으로 적정 처리하여야 함

❍ 도로구간, 교량구간, 영업소 등 불투수지역을 대상으로 평가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연형시설인 침투도랑 등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사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함

3.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 지역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통로박스 설치시 이용자가 빈번하거나

마을 인접지역 및 IC 또는 JCT 부근을 횡단하는 10m 이상의 통로박스에 대하여는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로의 특성, 지형조건 및 인근 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함

❍ 계획노선은 다수의 도로와 교차구간을 형성하면서 불용토지가 발생(특히 IC, JCT 구간 등 교통섬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용토지에 대한 조경계획 등의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양

❍ 지장물 철거작업 이전에 토양오염 개연성 지장물에 대한 토양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의 오염유무를 판단하고, 오염토양이 존재할 경우 오염토양 면적, 심도, 정화가 필요한 오염 토양량 산정 등 각 지장물별 구체적인 토양오염 정밀조사 계획(측정지점 개수, 위치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지형·지질

❍ 종단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대절토사면고(30m 이상) 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방안을 시행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 훼손된 절취부를 조기에 복원시킬 수 있도록 현지지형에 맞는 초본류, 관목·교목을 선정·식재하여야 함
-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유지, 토사 및 암석 비탈면의 보강을 위하여 지층상태 및 비탈면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선정·시공하고, 절·성토 지역 등의 집중호우에 의한 재난에 대비하여 사면안정화 방안(보완서 72-75쪽)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생태통로는 지형적,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능선축에 설치하고, 주변에 지형경사가 완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복토와 사면경사를 조정하여 실효성있게 설치하여야 함

- 생태통로 설치 : 돛대산(폭 49m) 및 만뢰지맥(폭 45m) 통과구간

❍ 부족토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한 토취장은 불필요한 지형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보완서 76쪽)하고,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최대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4.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 자연수종을 중심으로 이식대상 선정시 높은 고사율로 인한 가이식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생존율을 고려, 중·소형목의 입목에 적용하고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수목 재활용율을 높여야 함

- 계획노선 훼손수목 발생량에 비해 재활용율(2.71%)이 너무 낮으므로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시 추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통로 및 수로박스는 입·출구부에 유도 숲 조성, 통로 내부의 흙바닥 조성, 양서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수로바닥 수분유지 등 동물이동통로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시공하여야 함

- 특히 Road Kill 방지를 위한 대책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6)」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며, 유도울타리의 경우 목표종에 따라 침입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울타리 높이는 1.2-1.5m로 하되 종의 특성에 따라 더 높게 하여야 함

- 또한 수로 탈출시설은 소형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며 양서류의 집단이동 등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30m 간격으로 충분히 조성하고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고라니 등 중형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방도 0.7 이상의 생태통로 박스를 조성(보완서 85-86쪽)하여야 하며, 도로 특성에 따라 미확보시 지중강판 구조물로 변경하여 최대한 확장하여야 함

❍ 가로등 설치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도관리 및 조명갓 등을 설치하여 불빛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생태계 지역에는 야간 차량통행에 의한 불빛으로 산림성 조류의 산란 및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지역에서 법정보호종인 수달, 황조롱이 등이 확인되어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 및 식생자원의 불필요한 훼손을 저감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광역생태네트워크중 그린네트워크는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고, 블루네트워크는 교량을 설치하여 분지맥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고 일부 생태단절이 발생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는 통·수로 암거 등을 설치하여 네트워크 연결성을 높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법정보호종 및 주요 생물종에 대한 모니터링은 공사시 월 1회 실시하여야 함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 지장물중 철거시 발생하는 석면슬레이트 잔재물은 적정 처리하고 기존정화조,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거전에 정화조의 분뇨를 전량 수거 처리 하여야 함

❍ 임목폐기물은 성상별(줄기, 뿌리 등)로 분리 보관 및 건조한 후 목재, 나무제품 가공원료, 연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나. 소음·진동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장비분산투입 및 일일 작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저감토록 하여야 함

- 최종 저감방안 수립 후에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장남리우사3(보완서 127쪽)에 대하여는 작업시간 조정 등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시 제시하여야 함
- 저감계획 수립 후에도 기준에 근접한 일부 지역(KST, 복현리마을1 등) 및 민원발생 예상지역은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축사의 경우 소음저감 대책으로 작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인지능력이 제한적인 가축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므로 보완서(136-137쪽)에서 제시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발파 시 인근 주거지역, 축사 및 정밀기기공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발파를 토대로 장약량 최소화, 사전예고제 실시, 가설

토류벽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발파시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을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음·진동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합한 발파공법 선정 및 발파 설계를 시행하여야 함

❍ 영향지역내 정온시설에 대한 운영시 소음도 예측결과 방음벽 설치시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주요 영향지역인 가옥(교육시설) 및 축사 등에서 인지하는 체감도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음대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적극수렴·반영하여 소음피해 및 민원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사시 주요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넬 설치부에 소음자동측정망(18개소)을 이동·설치하고, 소음전광판에 표시된 소음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장 및 주변지역에 이동식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모니터링 결과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피해 및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기존 방음시설의 제원 변경, 추가 방음시설 설치, 주민협의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경관, 일조장해

❍ 각종 구조물(교량, 방음벽 등)의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디자인 적용과 아래의 내용을 반영한 경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각종 구조물(교량, 방음벽 등)설치시 후면 노출부의 H빔 돌출, 불규칙한 콘트리트 마감 등 경관 저해요인은 미장 강판 등을 이용 차폐

- 조경수는 주변지역의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선정·식재

- 돛대산 생태통로 설치구간은 자연스럽게 지형이 연결되도록 계획하여 경관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방음벽 및 교량설치로 인한 실질적인 일조장해 피해여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민원발생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Ⅲ.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요약)

1. 대기질

가. 공사시(평가서 182-191쪽)

❍ 가설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17개 지역)

❍ 세륜·세차시설 설치(7개소)

❍ 공사차량 속도 제한 및 규제 : 20㎞/hr이하 운행, 적재함 규제

❍ 주기적 살수실시(건기시 및 토공사 성수기 추가 살수)

❍ NO_2 저감을 위한 공사장비 분산투입 및 공회전 금지

나. 운영시(평가서 192-193쪽)

❍ 환경정화수종 식재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194-196쪽)

2. 온실가스

가. 공사시(평가서 207쪽)

❍ 에너지 사용량 저감, 저탄소 재료의 사용

나. 운영시(평가서 207-208쪽)

❍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탄소 흡수, 하이패스·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209쪽)

3. 수질

가. 공사시(평가서 272-293쪽)

❍ 우수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평가서 272-286쪽)

- 가배수로 설치 또는 물막이공 활용 배수시설 설치
- 침사지 설치(89개소) 및 침사지 효율증대 방안 강구

❍ 하천횡단 교량구간 저감대책(평가서 287-289쪽)

- 교량공사시 수질오염 저감대책(가도설치, 기초터파기, 오탁방지막 등)
- 교량공정별 부유물질 저감대책

· 하천 유로변경시 저감방안

· 교량 기초공사시 저감방안

· 교량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방안

❍ 공사시 지하관정 폐공 조치계획(평가서 290-291쪽)

❍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오수처리(평가서 292-293쪽)

- BOD, SS 각각 10㎎/L 이하로 처리

나. 운영시(평가서 294-310쪽)

❍ 시설물 운영에 따른 생활용수 및 생활오수 처리대책(평가서 294쪽)

- BOD, SS 각각 20㎎/L 이하로 처리

❍ 비점오염원 처리대책(평가서 294-310쪽)

- 노면부 및 교량부 자연형시설인 침투도랑 설치

다.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311-313쪽)

라. 수질오염총량 관련(보완서 27-47쪽)

4. 토지이용

가. 공사시(평가서 347-348쪽)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나. 운영시(평가서 349-363쪽)

❍ 계획노선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검토결과

❍ 지역간 단절방지 대책

- 주거지 및 농경지 단절 : 교량 22개소, 통로박스 25개소, 부체도로 40개소, 이설도로 2개소

- 수로 및 하천 단절 : 수로박스 11개소, 통수로 6개소, 수로파이프 54개소

5. 토양

가. 공사시(평가서 376-379쪽)

❍ 토양형질 변경으로 인한 토사유출 저감대책

❍ 투입장비로 인한 폐유발생 저감대책

❍ 현장투입 인부에 의한 발생분뇨 처리대책

❍ 지장물 철거시 처리방안

❍ 화약류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대책

나. 운영시(평가서 379쪽)

❍ 비점오염원 처리대책

다.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380-381쪽)

6 지형·지질

가. 지형훼손 최소화(평가서 471쪽)

❍ 절·성토구간 최소화(보완서 58-71쪽)

❍ 비탈면 기울기 조정

나. 능선축 보전방안(평가서 472쪽)

❍ 생태통로계획(보완서 48-57쪽)

다. 사토처리계획(평가서 472-473쪽)

❍ 토취장 계획(보완서 76-82쪽)

라. 토사유출 저감방안(평가서 474쪽)

❍ 우기를 피해 공사,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 설치

마. 지형개변지역 복구방안 및 활용방안(평가서 474-475쪽)

❍ 공사용 진입도로 및 현장사무소, 부체도로 설치로 인한 지형변화대책

바. 비옥토 처리대책 및 활용계획(평가서 475-476쪽)

사. 시추공 폐공처리대책(평가서 477쪽)

아. 사면보호대책(평가서 477-480쪽)

❍ 기후변화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안정화 방안(보완서 72-75쪽)

자.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481쪽)

7. 동·식물상

가. 육상, 육수식물

❍ 훼손수목 처리방안(평가서 574-579쪽, 보완서 83쪽)

- 재활용율 높이는 방안에 대한 추가 대책 강구

❍ 계획노선 식생피복계획(평가서 579-583쪽)

나. 육상동물

❍ 생태측구 설치방안(평가서 584-585쪽)

❍ 생태네트워크의 보전대책(평가서 585-598쪽, 보완서 84-91쪽)

- 생태통로 설치계획 : 육교형, 암거(박스형)형 설치방안

❍ 유도울타리 설치계획(안)(평가서 599-602쪽)

다. 육수동물

❍ 토사유출 저감방안, 교량공사 저감대책 수립(안)(평가서 603-605쪽)

라. 특정야생생물(법정보호종) 저감방안(평가서 606쪽)

마.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608쪽)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공사시(평가서 635-649쪽)

❍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평가서 635쪽)

❍ 폐유처리 대책(평가서 635-636쪽)

❍ 건설폐기물 처리(평가서 637-642쪽)

❍ 지정폐기물(잔류 유해물질) 처리대책(평가서 642-643쪽)

❍ 유해성폐기물(석면, 수은, PCBs 등 함유) 처리대책(평가서 643-648쪽)

❍ 임목폐기물 처리(평가서 648-649쪽)

나. 운영시(평가서 649-650쪽)

❍ 영업소 운영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

❍ 슬러지 처리방안, 도로변 폐토사류 처리방안

다.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651쪽)

9. 소음·진동

가. 공사시(평가서 743-770쪽, 보완서 111-137쪽)

❍ 건설장비 소음저감대책(평가서 743-762쪽)

- 일반적인 소음대책(평가서 743-745쪽)
- 공사장비 투입 최소화, 민원발생 방지대책(평가서 746쪽)
- 가설방음판넬 설치(평가서 746-751쪽, 보완서 114-124쪽)

- 투입장비 조절 및 작업시간대 조정(평가서 751-752쪽, 보완서 125-126쪽)
- 최종 저감방안 총괄(평가서 753-762쪽, 보완서 127-136쪽)

❍ 건설장비 진동저감대책(평가서 763쪽)

❍ 구조물 기초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저감대책(평가서 763-765쪽)

❍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평가서 765-770쪽)

나. 운영시(평가서 771-782쪽)

❍ 방음벽의 저감효과 산정(평가서 771쪽)

❍ 방음벽의 연장(길이) 산정(평가서 771쪽)

❍ 소음저감시설 설치계획(평가서 772-782쪽)

다.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783-785쪽, 보완서 138-149쪽)

10. 경관

가. 조경계획 수립(평가서 842-858쪽)

나. 절·성토시 비탈면 발생에 따른 경관변화 저감대책(평가서 859-862쪽)

다. 방음벽 설치에 따른 경관저감대책(평가서 863쪽)

11. 일조장해(평가서 921쪽)

12. 인구 및 주거(평가서 926쪽)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 공사시 및 운영시 -PM-10, NO_2 -유지목표농도(PM-10 80㎍/㎥, NO_2 50ppb) 준수여부 -환경영향저감시설 :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운영, 살수차 운행현황 등	• 영향예상 지점 (10개 지점)	•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공사시 및 운영시 1회/분기 (3일 연속측정) -토공시 토공구간 인접지역은 매시간별 측정
온실가스	• 공사시 -공사장비의 과부하 운행 및 불필요한 공회전·급정지·급가속 방지 대책 -공사시 저탄소 재료의 사용 확인 •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사용여부 확인	• 계획노선 내 -공사시 계획노선내 온실가스 발생구간(공사장비 사용구간) -공사시 저탄소 재료를 사용하는 공사구간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사용구간	• 현지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1회/반기
수질	• 공사시 -지표수 : BOD, SS등 16개항목 -하천통과교량 공사 지점 하천 상·하류 3개항목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5개항목 -지하수 : 23개항목 -토사유출 저감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점검 • 운영시 -영업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pH, BOD, SS, T-P, T-N)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입·유출수(pH, BOD, SS, T-P, T-N) -비점저감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점검	• 공사시 -현황조사지점 : 4개 지점 -하천통과교량(3개 하천) 공사지역 하천 상·하류 : 3개 지점(현황조사지점과 중복되는 3개지점 생략)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지점 : 1개 지점 -지하수질 현황조사 : 2개 지점 • 운영시 -영업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지점 : 1개 지점 -영업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출지점 : 1개 지점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 공사시 1회/분기 (조사지점별 월 조사 계획) • 운영시 1회/분기
토양	• 공사시 및 운영시 -Cd, Cu, As, Hg, Pb, Cr^{6+}, 유기인, CN, 페놀, TPH, 벤젠, 톨루엔, 에틸렌, 크실렌 -폐유저장소 적정 운영여부 -화약류 모니터링 계획	• 공사시 -현황조사지점(4개 지점) -서오창IC 휴게소 인근(1개 지점) -폐유저장소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지점 각 1개 지점 • 운영시 -현황조사지점(4개 지점) -서오창IC 유지관리사무소 인근(1개 지점)	• 현지조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공사시 1회/분기 • 운영시 1회/분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지질	• 공사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관리 -비탈면의 안정구배 유지 및 보호공법 시행 -비옥토수거 및 적치상태 확인 • 운영시 -비탈면의 안정구배 유지 및 보호공법 시행	• 계획노선 및 주변인접 영향권	• 현지조사	• 공사시 1회/분기 • 운영시 1회/반기
동·식물상	• 공사시 -식물상의 변화, 조사 -수목이식 현황 조사 -절·성토법면 녹화 조사 -육상동물상 현황, 영향 조사 -육수생물상 현황, 영향 조사 -법적보호종 현황, 영향 조사 -특히, 현지조사된 수달은 비상보전대책을 선 수립 후 정밀 모니터링실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현황 -생태통로 설치 상황 -공사구간별 분양이식 관리 및 현황조사 • 운영시 -식생복구지역의 천이 상황 -하천생물상의 동태 -특정야생생물의 동태 -생태통로 이용현황	• 훼손지역, 가이식장 • 식생조성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 공사시 (법적보호종 및 주요 생물종에 대해 월1회 모니터링) -식물상 : 3회/연 -동물상 : 4회/연 • 운영시 1회/반기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적법 처리여부 -발생 폐유류의 적정 처리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유해성폐기물(석면, 수은, PCBs등)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여부 -임목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여부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여부 -도로변(갓길포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여부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 공사시 1회/분기 • 운영시 1회/반기
소음·진동	• 공사시 -조사결과의 환경기준치 초과여부 -소음자동측정망 설치 및 관리 -공사시 저감방안이행여부 및 민원발생여부 -항타 및 발파시 소음·진동조사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관리여부 • 운영시 -환경기준치 초과여부 -방음벽 설치 및 관리여부 • 민원발생지점은 수시로 시행	• 공사시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12개소) -항타 및 발파시 주변 정온시설 • 운영시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12개소)	•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 공사시 1회/분기 (항타 및 발파시: 2회) • 운영시 1회/반기

Ⅳ. 행정사항

1. 사업승인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함)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되도록 조치하고,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를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부에 통보하여야 함

나.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부에 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이 사업계획에 반영(변경승인 등)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우리부에 통보하여야 함

라.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므로, 같은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일(인·허가일·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시 그 내용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 함

※ 붙임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식” 참조

마. 법 제3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자(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기관을 거쳐 우리부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 등의 변경사항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부와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의 사전검토 또는 우리부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의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착공한 날(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여야 함

마.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승인기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승인기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협의내용 반영 결과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장 위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3. 참고사항

작성요령

1. 사업계획 (승인)내용란에는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 승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협의내용 반영서류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설계도면·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반영할 사항이 아닌 내용인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명을 적으며,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3. 비고 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참고사항 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임을 시·도에 통보한 날짜 및 대상기관(부서명 포함)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관련근거 #4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문화재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부지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1.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오창읍 도암리 일원 「청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제1차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2013.01.25) 심의결과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 추진에 반영(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시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되거나 조사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수락리 유물산포지 등은(133,988㎡, 「대상범위 지표조사보고서 참조)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법령이 정한 철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또한 사업대상지 중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일대에 대해서는 유적 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없이 표본조사(59.900㎡, 조사범위는 지표조사보고서 참조)를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상기 표본조사로 인해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o 표본조사 결과 유구가 미확인된 경우 별도의 보존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라. 지표조사에서 유구,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구역은 별도의 보존조치가 필요치 않음.

o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청에 신고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바. 향후 사업계획 변경(구역 및 면적)이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 보존대책을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이 건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발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은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반드시 반영하여 매장문화재의 사전보호 및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청원군수(문화체육과장),옥산오창고속도로(주)

학예연구사	최인화	학예연구관	이은석	발굴제도과장	전결 01/29 윤순호	

협조자

시행 발굴제도과-915 (2013.01.29.) 접수 문화체육과-2503 (2013.01.29.)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www.cha.go.kr

전화 042-481-4953 /전송 042-481-4959 / uriina@nricp.go.kr / 공개

관련근거 #5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소 방 방 재 청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회신

1. 귀 부에서 협의 요청한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대한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의견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결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회신 1부. 끝

소 방 방 재 청

주무관	기술서기관	재해영향분석과장	방재관리국장	03/29
김기용	강옥륜	최규용	김계조	

협조자

시행 재해영향분석과-1099 (2013. 03. 29.) 접수 광역도시도로과-49 (2013. 04. 01.)

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207호 / http://www.nema.go.kr
전화 02-2100-5228 전송 02-2100-5489 / zpdlfnql@korea.kr / 비공개(5)

2013. 3

[개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사전재해영향성 협의 의견서

NEMA

소 방 방 재 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서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재협의)』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본 건은 1. 9 위원회 개최시 재작성되어 3. 26 재심의한 사업임

1. 재검토 사항 조치결과 확인 : 보완완료

검토의견	조치결과 및 계획	반영 여부	비고
▪ 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대상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산지, 농경지, 배수체계, 저수지 등)	▪ 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대상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반영	P.5-53 ~5-55
▪ 본 개발사업과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추가 검토할 것	▪ 도로, 택지/산업단지, 하천, 민원 등 관련계획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후 장래계획에 부합하는 현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P.3-102 ~3-116
▪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위험지구 검토 등 저감방안 제시	▪ 호우재해(횡배수시설 저감시설) : PIPE(60개소), 암거(14개소) ▪ 토사유출방지시설 – 임시침사지 : 71개소(최소 18㎡) – 가배수로 : 76개소 ▪ 사면 및 지반재해방지시설 – 사면완화 : 18개소 – 녹화공법(식생기반재 취부공법, t=5.0~10.0cm) : 61개소(전구간) – Soil Nailing : 4개소	반영	P.3-114 ~3-116 P.4-5,6,10

검토의견	조치결과 및 계획	반영 여부	비고
▪ 재해유형별(지반·사면재해 등)로 세부적인 취약성평가와 저감대책 제시	▪ 하천재해 : 세굴보호공 (50~100cm 규격의 사석) ▪ 호우재해(횡배수시설 저감시설) : PIPE(60개소), 암거(14개소) ▪ 토사유출방지시설 - 임시침사지 : 71개소(최소 18㎥) - 가배수로 : 76개소 ▪ 사면 및 지반재해방지시설 - 사면완화 : 18개소 - 녹화공법(식생기반재 취부공법, t=5.0~10.0cm) : 61개소(전구간) - Soil Nailing : 4개소	반영	P.5-2~5-52
▪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위치 선정 사유, 도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본 계획대상지역의 개발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유출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토사를 동반한 홍수의 흐름을 저류하여 미세한 토립자를 침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임시저류지겸 침사지를 설치하였음. 각 소유역에서는 개발중에 임시침사지를 통하여 토사유출량의 증가를 저감한 후 유역외부로 유출되도록 유역의 최종 유출부에 계획하였으며 소유역내 우수가 임시침사지(71개소)를 통과한 후 사업대상지구 하류로 유출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 적절한 크기의 가배수로(76개소)를 적절히 배치하였다.	반영	P.5-5~5-20
▪ 본 개발사업 노선선정에 터널계획 노선을 포함 비교·검토하고, 최종안 채택 사유를 수록할 것	▪ 관련기관 협의 및 민원을 반영하여 현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깎기고 30m 이상 5개소 지점에 별도 터널설치 검토결과, 대부분 편측 30m 깎기고 발생구간으로 터널시공에 필요한 최소 토피고(1.5~2.0D) 미확보로 토공 깎기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P.3-102~3-116 P.1-15~1-20

검토의견	조치결과 및 계획	반영 여부	비고
■ 하천이설 2개소에 대한 상하류 영향, 빈도설정, 교각설치에 따른 세굴 등의 수리검토를 추가할 것	■ 하천이설 2개소에 대하여 상하류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이설전과 이설후 수위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또한 빈도설정과 관련하여 기존 상하류에 현재 개수공사가 진행중이며 그것에 맞춰 빈도를 설정하였음. 교각설치에 따른 세굴 등의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블록적용 검토하였으나 현장 암이 풍부하여 기존 규격 약 30 cm인 사석규격을 50 ~ 100 cm로 상향 조정하여 블록과 비슷한 규모로 적용하였음	부분 반영	P.4-26~4-31 P.5-3
■ 사업노선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세부적으로 산사태발생 위험을 검토하고 재해저감방안 제시	■ 기준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7개 구간 – 경사완화 및 비탈면보강(Soil Nailing) – 비탈면 녹화를 위한 식생기반재 취부공법(t=5.0~10.0cm) ■ 산사태 위험지구를 통과하는 8개 구간 – 비탈면 높이가 30m 이상인 5개구간 :시공중 비탈면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반 거동을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계측계획 반영 – 공용 중에는 전체 8개 구간을 중점관리 구간으로 선정하여 임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	반영	P.4-8~4-11, P.4-197~4-201 P.5-43~5-51 P.6-13~6-14
■ 배수암거 및 통로암거의 연장이 길어(L=70m 이상)만관흐름, 토석류 등에 의한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수문·수리모형 재검토 제시	■ 본 횡배수관 설치시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통수단면의 20%를 추가 확보하였음 ■ 용도별 검토결과, 70m 이상 설치되는 곳은 평야지 용수용 6개소, 녹지대 배수용 2개소, 산지부 배수용 4개소 등 총 12개소가 발생함 ■ 평야지 용수용 6개소 및 녹지부 배수용 2개소는 유지관리로 토석류 유입에 의한 재해위험에 영향은 없음	부분 반영	P.3-102~3-116 P.1-15~1-20

	■ 산지부 배수용 4개소는 지형 분석결과, 완만한 평계곡, 경작하는 평계곡의 소유역으로서 산사태 위험지구 1,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본 사업구간 횡배수관 설치부는 토석류 및 유송잡물의 유입에 의한 재해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별도 검토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배수체계도를 제시할 것	■ 노선선정시 대부분 기존 배수체계를 준용하였으며, 과업노선 계획에 따른 배수체계도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P.4-61

2. 추가의견 제시

□ 예측재해 저감대책에서

○ 노선선정 검토시 재해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추가 검토하기 바람.

○ 소하천 이설 2개소에 대해서는 수충부(직각으로 꺽이는 부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형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 양지천 직상류에 저수지가 있고 여수로가 양지천으로 연결되어 있는바, 양지천 선형변경에 따른 도수처리(감쇄공 설치 등)와 하상 및 법면 세굴방지 대책을 포함한 선형변경을 시키지 않는 방안은 없는지 추가검토할 것

○ 하천내 교각설치에 따른 수리검토는 주변 상·하류 수위 영향인자(유변, 경심 등)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증가되는 수위는 현재수립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 하천관리청과 협의 공문을 수록하기 바람

○ 배수관 유속은 적정유속(0.8~3.0m/s)을 지키고, 초과되는 경우는 유입구 및 유출구에 감쇄공 등을 설치하여 유속을 저감시킬 것

○ 개발후 홍수량 감소하였는바, 홍수량산정을 재검토하기 바람

○ 토사유출량 산정시 현장 위치별로 지층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위치별 현장의 지층조건을 고려하여 K값을 적용할 것

○ 산사태위험지구 계측관리는 개발중·후 철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측하기 바람

○ 생태통로 BOX 위치를 명확히 제시할 것(도면)

□ **본 과업에 대하여**

○ 본 검토보고서와 협의의견은 시공시 실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계획(실시설계보고서, 설계서, 시방서 등)에 모두 보완 반영하여 인·허가를 받아 주시고, 제시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현장에 맞는 이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 관리하시기 바람

○ 사업시행자는 사업 착공전 재해저감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준공전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전 협의의견 변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람

○ 본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끝.

관련근거 #6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하천횡단에 따른 협의의견 회신(미호천 권역 기본계획)

1. 도로공사과-621호(2013.4.19)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노선과 관련하여 우리 국에서 시행중인 하천기본계획(미호천 상류권역(II), 미호천-병천천 권역)과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과 하천기본계획과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이 필요하나, 현재 과업 진행상(초기단계) 자료 제공 및 적합여부 검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가 확정되는 시기('14.5)에 맞춰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하천통과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시고 하천설계기준·해설(국토교통부, '09)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끝.

하 천 국장

주무관	주무관	과장	전결 2013. 4. 24.
가필순	배상근	이명원	

협조자

시행 하천계획과-540 (2013. 4. 24.) 접수 도로공사과-710 (2013. 4. 24.)

우 300-723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http://dcmo.molit.go.kr

전화번호 042-670-3312 팩스번호 042-670-3487 /pillgood7@molit.go.kr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관련근거 #7

- 160만 도민이 행복한「함께하는 충북」-

충 청 북 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Bio Valley & Solar Valley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도로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협의의견 회신

1. 광역도시도로과-806(2013. 6. 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간선도로망 동서5축의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하천분야

- 계획하폭내 교량구조물 설치로 인한 수위가 상승될 영향권내 제방 보축(파라펫 등)에 대하여는 실시 설계에 반영하였음으로 별도 의견은 없으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미호천-병천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의 계획하폭내 병천천교 설치계획을 포함, 계획홍수위를 산정 반영하고
- 실시설계에 반영된 기설제방고 보축 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동권역의 하천기본계획완료시 계획홍수위와 비교·분석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변경 설치하시기 바람.

○ 소하천분야

- 본 실시계획에 포함된 소하천(양지, 성산, 수락)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청인 청원군 소하천 담당부서와 협의하시고
- 실시계획에 반영된 이설계획구간 [(양지천(548.15m), 성산천(214.93m)] 의 기존소하천과 연결되는 상하류 구간은 재해에 상당히 취약한 구간으로 호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기 타

- 우리도 치수방재과-9469(2013.5.27.)호로 기 협의한 협의의견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제시한 조치계획과 같이 반듯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주무관 오철영 재난방재팀장 박노철 치수방재과장 전결 2013. 7. 5. 권봉억

협조자 주무관 손기용 주무관 김종식 하천정비팀장 이천호 하천계획팀장 출장

시행 치수방재과-12065 (2013. 7. 5.) 접수 광역도시도로과-1056 (2013. 7. 5.)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http://www.cb21.net

전화번호 220-4312 팩스번호 220-4319 / ocy2236@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관련근거 #8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

청 원 군

수신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 귀하

(경유)

제목 청원 충비삼월의 비 주변 고속도로 건설 현상변경 허가 통지 알림

1. 충청북도 문화예술과-18354(2012.12.26)호 관련입니다.

2.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소재 문화재자료 제14호「충비 삼월의 비」주변 고속도로건설 위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후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제1분과, 2012. 12.20) 결과 "가결"되어 다음과 같이 허가되었기 알려드리니, 허가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받는 자 : 옥산옥창고속도로(주)(서초구 강남대로 525)

나. 허 가 사 항 : 고속도로건설(세부사항 허가서 참조)

3. 행정사항 :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40조(신고사항)에 따라 착공·준공 신고가 기한 내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 1부. 끝

청 원 군 수

★주무관 이나경 관광시설담당 연규성 문화체육과장 전결 12/27 오영택

협조자

시행 문화체육과-30567 (2012.12.27.) 접수

우 360-70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 / http://www.puru.net
전화 043)251-3283 /전송 043)251-3289 / mjlee1238@korea.kr / 공개

<앞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

허가 받는자	성 명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주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J타워 13층				
대상 문화재	종 별	문화재자료	지정번호	제14호	명 칭	충비 삼월의 비
	소재지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산16번지				
허가 사항	개 요	고속도로 건설				
	위 치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산16번지 일원				
	내 용	○ 고속도로건설 - 폭원 : 23.4m(왕복 4차로) - 통과구간 : 517m				
	허가 기간	허가일로부터 ~ 2017. 6.30				
허가 조건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충 청 북 도 지 사 인

(관인생략)

<뒷면>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허가이오니 다른 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40조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다음 각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허가사항 및 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을 경우
   다. 공사 및 기타의 사유로 도지정문화재 및 주변 경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허가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에는 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기간 내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신고하여야 합니다.
7. 발굴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문화재에 영향이 있을시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시·군 문화관광과 및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에 신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합니다.
8. 관계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시장군수의 지도 및 감독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003
MH
2012 12/27 11:16 FAX 3276

관련근거 #9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 국 도 로 공 사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경유)
제목 옥산~오창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검토의견 통보

1. 도로공사과-5688호(2012.08.29)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실시설계 노선계획(안)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 임 : 검토의견 1부. 끝.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도로조사팀	도로조사팀	팀(부)장	팀장	2012. 10. 25.
조형준	**전준태**	**이창봉**	**설운호**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3611 (2012. 10. 25.) 접수 도로공사과-7071 (2012. 10. 25.)

우 461-7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 http://www.ex.co.kr/

전화번호 02-2230-4189 팩스번호 02-2230-4303 / naraguyo / 대국민 공개

『민원만족도 조사(발신자 :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응답해 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협의 검토의견

□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 접속위치 관련

○ 천안방면 연결로

- 휴게소 진출로와 합류 후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협의(안)에 동의**

○ 남이방면 연결로

- 접속위치가 곡선(R=600) 구간으로 분기점 설치 기준에 위배되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연결로가 휴게소 진입로와 근접하여 이용객 혼란 발생이 우려되므로 **협의(안)에 부동의**

☞ 교통안전 및 이용객 혼란 방지를 위하여 **곡선구간을 벗어나서 연결로 접속** 및 **휴게소 진입부와 이격거리 확보** 필요

□ 영업시설 설치 관련

○ 재정~민자 연계 이용 시 최저요금 또는 기본요금의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금제 검토 필요

○ 서오창IC 차로 미분리(경부선 및 중부선방향)에 따라 향후 연결되는 노선 실제 이용구간 식별 불가로 민원 등 통행료 수납 시 문제 소지 있음

○ 향후 위 사항에 대한 제반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민자법인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관련근거 #10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수신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경유)
참 조 :
제 목 : 설계심의 결과 통보(옥산JCT교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1. 우리공사 기술심사처-1060호(2013.05.08) 및 옥산오창 제2013-14호(2013.03.18)의 관련입니다.

2.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경부선 316.6k 및 중부선 264.8k 상부횡단 교량에 대한 성과품 및 디자인 심의결과를 통보하오니 조치계획을 2013. 6. 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소요 비용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공문 사본 1부.
2. 심의 소요비용 산출내역 1부. 끝.

충 청 본 부

도로팀 **김영남** 도로팀 **김기현** 팀장 전결 **김낙륭**

시행 도로팀-1071 (2013.05.09.) 접수
우 306-8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79-2번지 / http://www.ex.co.kr/
전화 042-630-7263 전송 -- / gwanggaeto@ex.co.kr / 공개

'주소 하나로 빠르고 편리한 생활, 이제 도로명 주소입니다.'

문서출력 : 충청본부 도로팀 / 김영남 / 2013-05-10 10:06:11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 국 도 로 공 사

수신자 : 충청본부장
(경유)
참 조 : 충청지역 도로팀
제 목 : 설계심의 결과통보[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1. 기술심사처-745(2013.04.09), 도로처-1160(2013.03.28) 및 충청본부 도로팀-626(2013.03.25)호의 관련입니다.

2.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계획을 2013. 6. 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설계심의 결과통보서 1부.
2. 설계심의 의견서 1부. 끝.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기술심의팀 **손혁기** 기술심의팀 **유준석** 팀장 **정연권** 처장 전결 **홍두표**

시행 기술심사처-1060 (2013.05.08.) 접수 도로팀-1062/4707 (2013.05.08.)
우 461-7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 http://www.ex.co.kr/
전화 031-779-5493 전송 031-779-4199 / littleprince79@ex.co.kr / 공개
공람 도로팀 **김영남** 도로팀 팀장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안　건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외 1개소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 심의결과

- 1호
  -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 조건부채택
  -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디자인(교량) : 조건부(3안)
  - ·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디자인(투석방지망) : 조건부(1안)
- 2호
  -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 조건부채택
  - ·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디자인(투석방지망) : 조건부(1안)

[설계심의 의견서 내용을 참조하여 반영하고,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붙　　임 : 1. 설계심의 의견서 1부.
2. 심의위원 확인서 양식 1부.　끝.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고려대학교

직위 : 교수

위원 : 공 정 식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 옥산 JCT교의 경우 곡선교이며 경간장을 고려하고 JCT 부근의 지형 및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주변환경 순응적이고 경제적인 강박스 주형 형태의 교량이 적합하다 판단됨 - 기존 강박스 교량의 스터드 형식을 개선한 형태의 원안이 실적은 많지 않으나 관련 연구결과 성능에 문제가 없고 전형적인 강박스 거더교에 비하여 경제적이므로 원안 대로 추천함. 2. - 대상 교량 자체의 곡선교 특성 및 고속 도로 주행 시 곡선을 따라 변화하는 관찰점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교량의 색상은 상이한 색상 또는 패턴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씨티씨(주)

직위 : 대표이사

위원 : 이 희 현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램프교 가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료 제시 바랍니다. (크레인 용량, 안전율, 시공중 안정성 등) 2. 곡선교이므로 콘크리트 타설 순서에 따라 시공중 및 완공후 부반력 발생 여부 검토 자료 제시 바랍니다. 3. 면진 받침 적용 사유 및 설계 방법 기술 바랍니다. 4. SEB거더의 우수성에 관한 공인기관 검증자료 제시 바랍니다. 5. 가시설 계측은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계측빈도, 방법등 상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주)한국종합기술

직위 : 전 무

위원 : 임 부 호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공통사항 기본 및 실시설계시 검토된 교량에 대한 형식 비교안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때의 교량 연장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비교안 작성이 필요함.	설계 일반보고서 (P5-183)
2. 옥산 JCT RAMP-A교 1)강교 단면 검토시의 부재규격과 설계도면의 규격이 상이함. - SPLICE 7 상부 종리브 갯수 상이 (구조계산서:120X12,5개, 설계도면:120X12,2개) - SPLICE 11 상부플랜지 두께 상이 (구조계산서:12mm, 설계도면:10mm)	구조계산서(Ⅰ) P476,P494 설계도면 1.046,1.049
2)강상형 상세도에서 환기구 위치가 현장이음부와 간섭이 되므로 재조정이 필요함.	설계도면 1.026,1.028,1.042 ,1.044
3)맨홀(작업구멍)의 위치가 누락	강상형상세도
4)단지점부(A1,A2)의 지점부 보강재와 종리브와의 설치 순간격이 협소하여 용접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보완이 필요함.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참조)	설계도면 1.022,1.038,1.039 1.055,1.067,1.110
3. 옥산 JCT RAMP-C교 1)결로수 집수구와 맨홀(작업구멍)이 간섭되어 재조정이 필요함.	설계도면 2.037,2.057
2)강상형상세도 F11 단면이 강상형단면도 F11단면과 상이함.(B-Flange 보강여부)	설계도면 2.043,2.063,2.114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주) 동일기술공사

직위 : 부 사 장

위원 : 최 장 환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교각 형상을 평이한 T형 교각으로 계획하였는바 경관성을 고려하여 코핑을 곡선형태로 검토바람. 2. RAMP 교량의 경관 설계 측면에서 LED 조명을 상부 거더에 설치하여 야간 경관 효과를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바람.(가로등과 연계된 야간 자동 개폐시스템 적용) 3. 옥산 JCT RAMP-A의 경간구성이 65+65+50 = 180.0M로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측경간의 50M를 삭제하고 토공구간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4. 옥산 JCT RAMP-C의 경간구성이 60+70+60+30 = 220.0M 연속경간으로 30M 구간의 교대부가 부반력이 예상되는바 경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가설시 사용 장비가 650톤 C/C으로 자중 및 인양무게를 고려시 지반의 부등침하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지반보강 및 지침을 도면과 시방서에 상세히 명기하기 바람.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 대우건설

직위 : 상무

위원 : 지 홍 근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고속도로 횡단하는 곡선교량으로서 인양시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정확히 검토하여 인양포인트 및 상부가설단계별 크레인 배치계획 수립이 필요함 2. Ramp-A교와 Ramp-C교가 중첩되어 단계별 상부 가설계획을 세밀히 검토바람. 3. Ramp-A교 P1교각 하부시공시 고속도로와 간섭이 되는데 이에 대한 수립 필요. 4. 상부가설시 교통차단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검토 바람. 5.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후 종방향 거더의 구속으로 일정간격의 횡방향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양생방법을 검토 바람. 6. 교량하부 통과시 위압감,개방감 검토를 위해 상.하행선, 청원휴게소 진입로 등에 대한 주행 시뮬레이션 검토 바람.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도로처

직위 : 부 장

위원 : 박중규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설계심의 의견 - 강교의 개구부(충복식)는 향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최대한 확대(ρ=0.4미만)하는 방안 검토 (대상 : 램프A, C교) - 램프C교 A2는 ~~향후 토사가~~ 경부고속도로로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도면번호 2.003) - 램프A교 교각부 I.P 거더는 구조적 안정성측면(하중균등분배)을 감안하여 가로보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2. 공공디자인 심의의견 - 램프A, C교는 고속도로 본선 곡선반경과 휴게소 조망권을 고려할 때 교량상호간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1안이 바람직 - 램프A교 P1의 교량점검시설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향후 확장 시 미관을 고려하여 동 시설 범위를 계획하시기 바람. - 투석방지망은 향후 유지관리 및 미관(흙탕물) 등을 감안하여 디자인 1안으로 하되, 가급적 염화물 피해가 적은 재질사용 검토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디자인

소속 : 홍익대학교

직위 : 교수

위원 : 최 종 석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색채디자인 관련 표기는 전부 KS(한국산업표준)에 맞추어 먼셀기호를 병기하도록 요망 2. 모든 디자인 시방서에는 재질,마감상태,컬러등을 명기하도록함(컬러칩은 프린트물이 아닌 별도의 색견본 준비요망) 3. 디자인 투시도는 고해상도로 A1크기이상으로 출력하여 Detail을 이해할수 있도록 요망 4. 기존 설치된 도로변의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은 형태 컬러등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Simulation이 될수있도록 요망 5. 옥산JCT교와 오창JCT교의 디자인은 2개안을 구분하여 따로 발표 요망 6. 옥산JCT 3개 교량의 컬러를 통일하여 적용하되, 현장사진을 배경으로 simulation 요망, 명도를 약간 낮추어 제시 요망, 거더부분의 컬러와 상부의 2tone 컬러 경우 상부가 밝게 검토요망 7. 스텐레스 지주의 상부예각 삭제요망 - 금속소재는 모두 무광처리 요망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1호)	경부선 316.6k 횡단 옥산JCT교 디자인

소속 : 성신여자대학교

직위 : 교수

위원 : 이 홍 구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교량의 전체 색 명도가 밝지 않게 해주세요. - 밝은 색을 넓어지면 더 밝아집니다. 2. 3개의 교량색을 통일해주세요. 3. (3)안을 중심으로 하되, 교대보다 거더를 어둡게 할 것 4. 투석방지망의 경우 무광처리, 상부 모서리를 뾰족하지 않게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고려대학교

직위 : 교수

위원 : 공 정 식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오창 JCT교의 경우 직선교이며 경간장을 고려하고 JCT 부근의 환경을 고려할 때 랜드마크적 형식의 교량보다는 주변환경 순응적이고 경제적인 PC 거더 주형 형태의 교량이 적합하다 판단됨 2. 오창교는 직선부 고속 도로 주행 시 지속적으로 관찰되게 되며 주형의 높이가 2.6m로 둔탁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시각보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슬림화를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씨티씨(주)

직위 : 대표이사

위원 : 이 희 현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하부교각 직경을 축소하여 경관성 및 시공성 등을 향상 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2. 가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료 제시 바랍니다. (인상높이, 작업반경, 크레인 용량, 안전율, 시공중 안정성등) 3. BICON 거더의 우수성에 관한 공인기관 검증 자료 제시 바랍니다. 4. 도면의 시공 순서도는 본 교량에 맞게 재작성 바랍니다. 5. 보강토 옹벽 하부지반 상태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 바랍니다. 6. 하부구조 및 기초 시공시 계측의 필요성 여부 검토 바랍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계측은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계측빈도, 방법등 상세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교각부 받침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주)한국종합기술

직위 : 전 무

위원 : 임 부 호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공통사항 기본 및 실시설계시 검토된 교량에 대한 형식 비교안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때의 교량 형식 및 연장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비교안 작성이 필요함. - 형식,특징,시공성,경제성,조형미,유지관리 측면을 고려려한 비교안 작성	설계 일반보고서 (P5-183)
2. 교량 상부공 가설계획에서 시공시 사고우려와 고속도로 통행 차단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설대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설계도면 가설계획도
3. 현 설계인 BICON 거더교의 경우 형고가 2.6m로 조형미가 다소 저하되는바, 형고를 줄일수 있는 콘크리트 강합성 거더 계열의 상부형식 대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설계도면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주) 동일기술공사

직위 : 부 사 장

위원 : 최 장 환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오창 JCT 교량도 야간 경관 효과 측면에서 LED 조명을 상부 거더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2. RAMP-A 가설시 2대의 크레인을 사용하므로 크레인 로드게이지를 이용한 인양계획을 표시하기 바람. (각크레인의 적용 하중을 명시하기 바람.) 3. 가설시 사용장비 및 인양하중(약 850톤)으로 인한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반보강 및 지침을 도면과 시방서에 상세히 명기하기 바람.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 대우건설

직위 : 상무

위원 : 지 홍 근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고속도로 횡단하는 상부가설 단계별 크레인 배치계획 수립이 필요함 2. Ramp-A교 P1 교각 하부시공시 지방도 510 호선과 중부고속도로의 사면거동에 따른 도로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수립 검토 필요. 3. 상부가설시 교통차단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검토 바람. 4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후 종방향 거더의 구속으로 일정간격의 횡방향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양생방법을 검토 바람. 5. 오창JCT는 오창읍 구시가지에서 조망점을 추가로 분석하여 경관현황 및 조망특성을 반영한 순응형 교량임을 검토바람.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설계성과품 및 디자인

소속 : 도로처

직위 : 부 장

위원 : 박중규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설계심의 의견 - 오창분기점 거더거치(700톤 하이드롤릭 크레인)시 크레인 전도등에 문제가 없도록 P1 임시 성토 지반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공공디자인 심의 의견 - 중부고속도로 상부(램프A교) 및 인접(램프C, D교) 통과구간의 교량색채는 교량상호간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1안이 바람직 - 투석방지망은 향후 유지관리 및 미관(흙탕물) 등을 감안하여 디자인 1안으로 하되, 가급적 염화물 피해가 적은 재질사용 검토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디자인

소속 : 홍익대학교

직위 : 교수

위원 : 최 종 석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색채디자인 관련 표기는 전부 KS(한국산업표준)에 맞추어 먼셀기호를 병기하도록 요망 2. 모든 디자인 시방서에는 재질,마감상태,컬러등을 명기하도록함(컬러칩은 프린트물이 아닌 별도의 색견본 준비요망) 3. 디자인 투시도는 고해상도로 A1크기이상으로 출력하여 Detail을 이해할수 있도록 요망 4. 기존 설치된 도로변의 가로등과같은 시설물은 형태 컬러등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Simulation이 될수있도록 요망 5. 옥산JCT교와 오창JCT교의 디자인은 2개안을 구분하여 따로 발표 요망 6. 스텐레스 지주의 상부예각 삭제요망 - 금속소재는 모두 무광처리 요망	

설계심의의견서

안 건 (2호)	중부선 264.8k 횡단 오창JCT교 디자인

소속 : 성신여자대학교

직위 : 교수

위원 : 이 홍 구

1. 검토의견

검토의견	비 고
1. 중부고속도로와 지방도 510호선에서 볼 때 교량의 높이가 낮아 보이는 이유로 교량 전체가 위압적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2. 교량의 거더를 알루미늄 판넬로 커버하여 전체적인 위압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3. 투석방지망의 경우 무광처리, 상부모서리를 뾰족하지 않게	

관련근거 #11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 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23호, 2012.4.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상징그림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10] 1. 기본원칙 및 7. 시설물별 표기의 예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각각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 전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안내지명"이란 안내의 목적으로 도로표지에서 사용되는 행정구역명, 시설물명, 도로명 등을 말한다.
3. "원거리 안내지명"이란 도로상의 운전자가 진행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원거리에 있는 안내지명을 말한다.
4. "근거리 안내지명"이란 도로상의 운전자가 진행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근거리에 있는 안내지명을 말한다.
5. "보조표지"란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및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에 규칙에 따라 제작, 설치 및 관리하는 도로표지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와 출구정보 중심의 고속국도 도로표지는 제외한다.

② 사도 등 그 밖의 도로의 경우에도 도로이용자에게 일관된 도로정보체계를 안내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2장 도로표지의 설계 등

제4조(도로표지 기본계획) ① 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표지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하기 위한 도로표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수립절차 및 포함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관내 모든 도로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배치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로표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로표지를 설계하여야 한다.

③ 도로표지 기본계획 수립시 도로망도는 도로표지를 설치·보완할 대상도로의 구간과 이와 접속·연결되는 도로를 포함하고, 도로망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의 등급별로 작성하며 도로, 도로변 시설물, 주요 지명 및 시설물명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제5조(도로표지의 설계) ① 도로관리청은 시인성(視認性)과 판독성이 뛰어난 도로표지를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글자, 기호 등의 전체 배치를 고려하여 도로표지를 설계하여야 한다.

③ 도로표지의 테두리, 교차로형태, 방위, 화살표의 노선번호 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도로표지에서 시설물을 안내할 경우에는 도로이용자가 그 의미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로 공통된 상징그림(Pictogram)을 시설물명과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안내지명 선정의 기본원칙) ① 규칙 제3조에 따른 안내지명은 해당 노선을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지역 또는 시설물 중에서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안내지명은 교통량이 많은 다른 도로의 안내지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지명의 선정방법) ① 방향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은 별표 4에 따라 선정하고, 이정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 및 거리는 별표 5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안내지명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7의 일반국도 안내지명과 달리 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8과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안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지명을 해당 도로의 도로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표지의 글자 표기) ①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별표 9, 영문은 별표 10, 한자는 별표 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광지표지에 한글, 영문과 함께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자 병기가 필요한 대상지명, 표지규격, 표기방법, 설치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표지의 재료 및 제작 등

제9조(표지판의 재료 및 제작) ①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플라스틱)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알루미늄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③ 밴드는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④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6각 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⑤ 표지판 제작시에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지판은 난반사 등에 의한 시인성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⑥ 표지판은 반사지 부착면의 이물질과 기름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반사지의 부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⑦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되,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최대 30c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⑧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⑨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⑩ 판과 판을 연결하여 채널식으로 표지판을 제작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널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 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루미늄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루미늄 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

⑪ 지주와 결합되지 않은 보조표지판은 제작 및 운반시 굴곡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지판 뒷면에 H형강 등으로 가조립하여 안전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주의 재료 및 제작) ①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및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②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각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주는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④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을 할 경우에는 지하 매설부분에만 30cm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주는 곧아야 되고 내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⑥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⑦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⑧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⑨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⑩ 볼트, 너트,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⑪ 알루미늄 압출형재를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하여 조립할 경우 형재와 형재 사이를 완전 밀착하여 틈이 생

기지 않도록 기계장치 등으로 조치한 후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⑫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기초의 재료 및 제작) ① 기초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재료에 따른 시공방법 등은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가 전도, 활동, 회전, 부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를 구조계산을 거쳐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는 부식과 변질 등의 열화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반사지의 재료 및 제작) ①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에 따르며, 도로표지에 관한 입사각 및 관측각에 대한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② 반사지를 도로표지에 사용할 때에는 바탕면에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 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③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면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10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상징그림 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한다. 자세한 과정은 별표 13과 같다.
⑤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24℃, 상대습도 65%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시험 및 감독) ① 표지판, 지주 및 반사지의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노출시험 또는 KS A 3507에서 정하는 인공내후성 시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탈리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접착후 10년동안 최초 반사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 제작업체가 규칙과 이 지침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모든 재료가 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한 제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 설치공사에 사용될 반사지에 대하여 도로표지 설치업체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료공급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료공급승인신청서에는 공공시험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4장 도로표지의 설치 등

제14조(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도로관리청은 도로이용자가 도로표지의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에 따라 각 도로별로 별표 14와 같이 도로표지를 설치한다.

제15조(도로표지의 설치장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및 교통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표지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1. 도로표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을 배려하여야 하며, 별표 15에 따라 시인거리, 판독거리, 운전자의 행동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경우에는 녹음기에 장애가 되어 시거확보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설안내표지 점용신청이 있을 때에도 기존의 도로표지에 대해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3. 교차점 부근에는 도로표지와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안전하게 교차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교차로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교차로 부근을 피하고 운전자의 시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표지 설치시 유의사항)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시설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의 지주를 보도 등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 보존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연도주민의 거주생활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시가지내에서 교차로간의 거리가 근접하여 방향예고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생략할 수 있다.
6. 오르막길 및 내리막길에서는 도로의 경사에 따라 규칙 별표 3에 따른 도로표지 설치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7. 표지판을 육교 등의 도로부속물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육교가 도로에 대하여 직각이 아니더라도 표지판은 차량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램프나 교각 부분에 도로표지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고 지주와 연결할 수 있는 철근이 적절한 길이로 나와 있어야 한다.

제17조(도로표지의 설치형식) ① 도로표지는 규칙 별표 2에 따라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부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구체적인 설치형식은 별표 16과 같다.
② 지방지역의 도로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복주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표지 설치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도로주변에 건물·지장물 등이 있어 시인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4차로 이상 도로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해 도로표지의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편지식 또는 현수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시지역의 도로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편지식 또는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시인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단주식 또는 복주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고속국도의 도로표지는 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라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왕복 4차로 이상의 고속국도에서는 문형식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왕복 2차로 고속국도에서는 편지식, 복주식 등 지형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⑤ 설치장소 주위에 육교 등이 있어 도로표지 내용에 따라 부착식으로 설치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차로별로 교통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⑥ 도로표지는 일면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보조표지는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교차로의 도로표지 설치) 진행방향의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등급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표지의 종류와 설치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제19조(관광지표지의 설치 등) ① 해당 도로 주변의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한 관광지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향표지에 보조표지 형식으로 설치하거나 방향표지에 관광지 안내문안을 병기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 주변의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는 별표 18과 같다.
③ 도로관리청이 관광지를 안내하는 경우 규칙 제14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안내의 범위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다.
④ 관광지표지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광지표지(표지번호 406) 또는 갈색바탕의 보행인표지(표지번호 411)의 형식으로 설치한다.
⑤ 관광지를 방향표지에 보조표지 형식으로 안내하는 경우 해당 관광지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주변의 1개 방향표지에 1개 보조표지만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방향표지에 관광지 안내문안을 병기하는 경우에는 갈색바탕의 사각형 안에 표기한다. 다만, 해당 관광지가 관광지의 안내기능보다 도로상의 주요 안내지명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갈색바탕의 관광지안내 표기방법에 의하지 않고 일반 안내지명의 표기방법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한자병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예 : 남대문 등)
⑦ 고속국도의 경우 해당 출구의 500m 전방에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광지명과 해당 출구명 및 출구번호를 병기한다.
⑧ 고속국도에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는 해당 출구로부터 반경 15km 범위내에 있는 관광지로 한정하며, 여러 관광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시설물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조명장치) 도로표지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그 설치방식은 별표 19와 같다.
1. 결로 또는 안개가 잦은 곳
2.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3.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4. 기존 도로표지를 이용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

제5장 도로표지의 관리 등

제21조(도로표지의 유지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표지판에 부착된 자동차 매연, 오물 등을 수시(월 1회 이상)로 제거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은 세제와 헝겊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야 한다.

③ 지주에 녹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거한 부분은 녹방지용 페인트 도장 후 소정의 페인트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표지판에 부착된 반사지가 퇴색되어 야간 반사기능이 저하(최초 반사성능의 80% 이하)되었을 때에는 퇴색된 반사지는 제거하고 새 반사지를 붙여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이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위치 및 표기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
2. 설치된 표지판의 높이가 규칙 별표3의 설치기준과 적합한 지의 여부
3. 설치된 도로표지가 기울어져 있는 지의 여부
4. 표지판의 야간 반사 상태
5. 도로표지의 분실 또는 훼손여부
6. 그 밖의 도로표지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제22조(각종 대장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도로표지대장에 도로표지 세부정보를 정확하게 입력·갱신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에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각각 입력하여 관리하며, 안내할 지명을 3개 등급(중요지, 준중요지, 주요지)으로 구분하여 선정한 후, 도로의 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진행방향별로 작성한다.

제23조(자료 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도로표지의 설치 및 정비 현황을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표지 설계내용 적정성 검토결과를 실제 도로표지 설치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결과를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도로관리청별 세부지침) 도로관리청은 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표지의 제작·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4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별 첨

별 첨 # 1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병천천 홍수벽설치 표준횡단면도

(좌안 : NO.81~NO.86, 우안 : NO.83+66~NO.86)

평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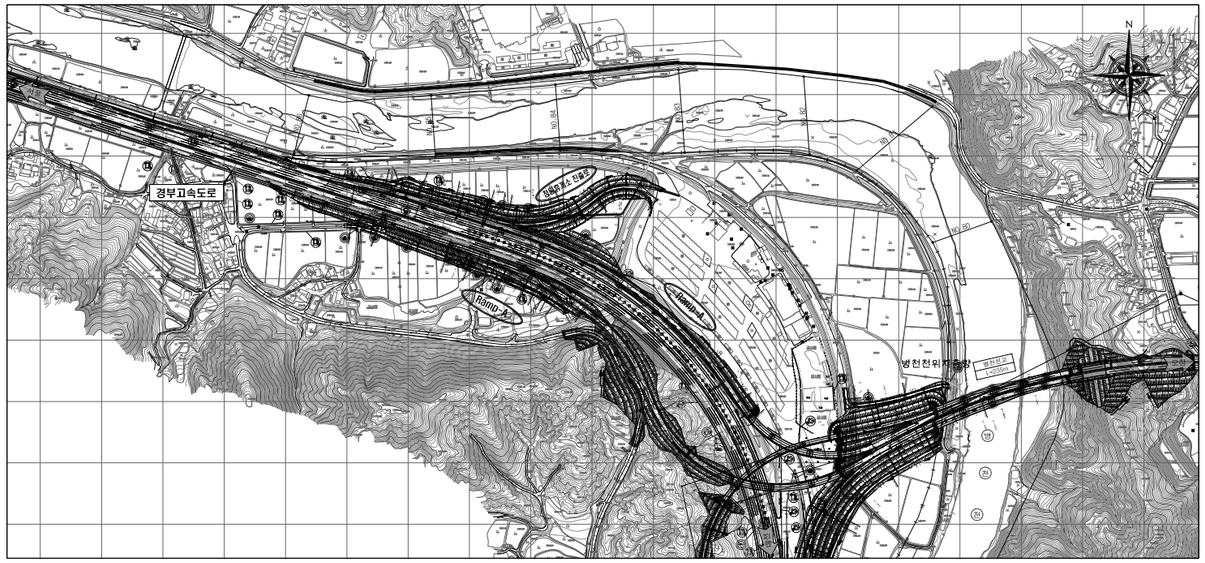

상세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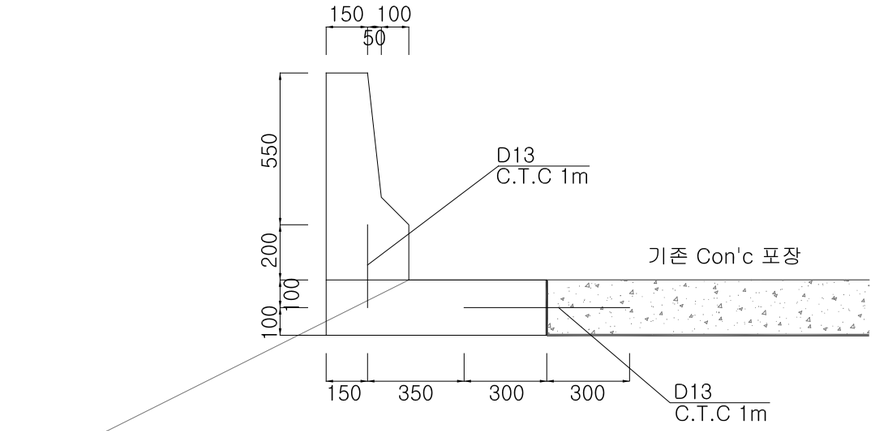

표준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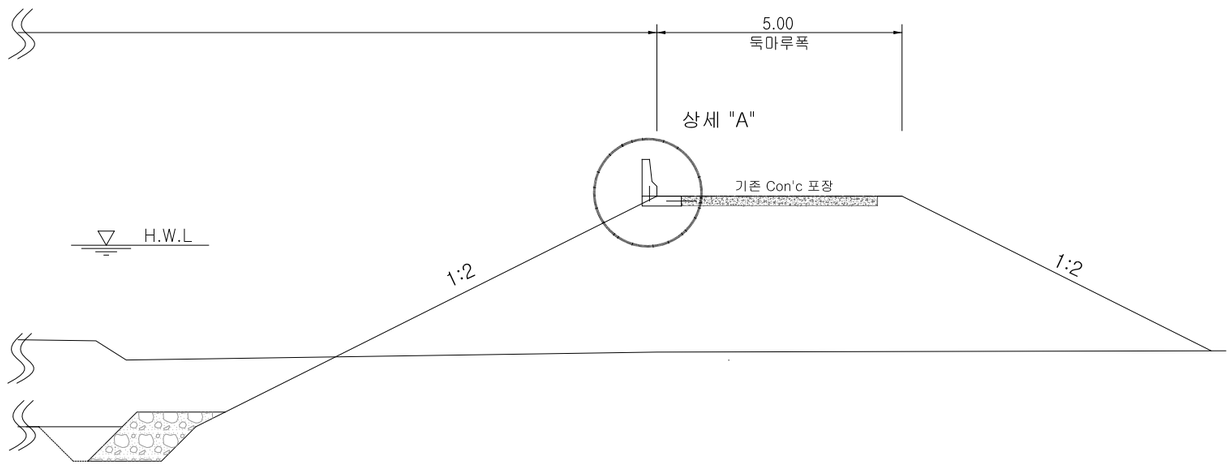

재 료 표

1M당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콘크리트	3종Φ40m/m	M^3	0.3237	
거푸집		M^2	1.8028	
철 근	D-13	TON	0.0009	ADD 3%
터파기		M^3	0.1400	
되메우기		M^3	0.0025	

NOTE

현지여건에 따른 수위상승량을 고려하여 시공자는 시공전
현지여건을 고려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감리)원의 확인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주 무 관 청	사 업 시 행 자	사 업 명	설 계 일 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 계 자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9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 선 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 용 관	이 창 호	홍수벽설치 표준횡단면도	1:5,000	5-050

별 첨 #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사중 임시도로 계획도(4)

(복현1교(통행로) 교통처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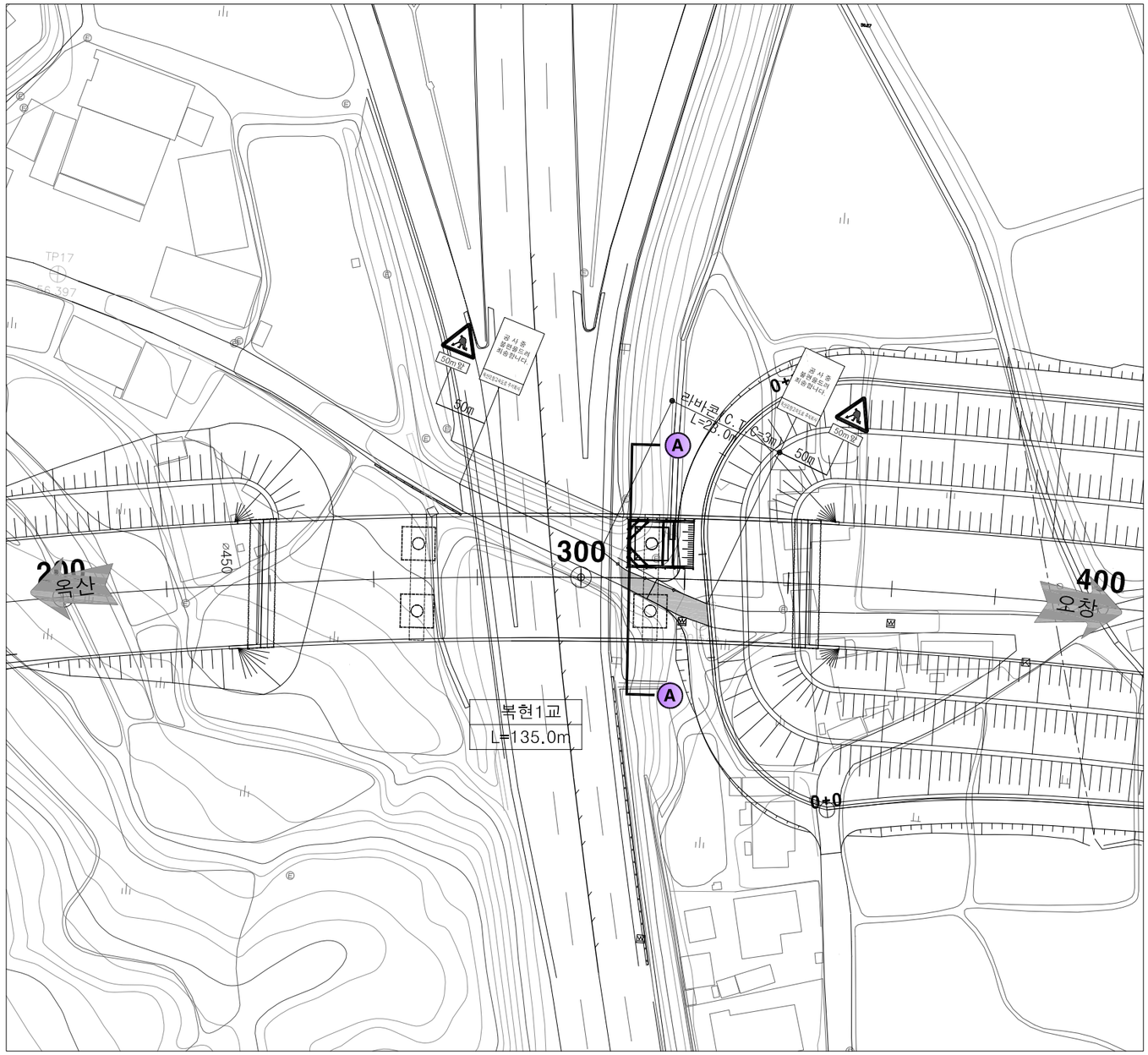

NOTE

▷ 1단계 교통처리
- 복현1교 공사구간을 총 3단계로 교통처리
- 1단계 : 복현1교 옥산방향 교각 시공 시 가시설에서 0.5m 거리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시 공
- 공사중 안전시설(교통표지판, 라바콘등)설치

단면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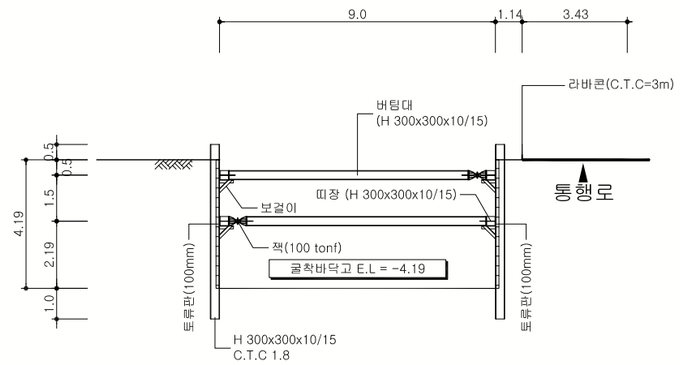

공사중 안전간판 설치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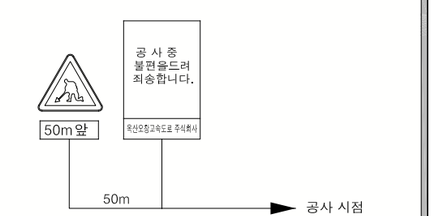

주 무 관 청	사 업 시 행 자	사 업 명	설 계 일 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 계 자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9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 선 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 용 관	이 창 호	공사중 임시도로 계획도(4)	1 : 500	5-021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사중 임시도로 계획도(5)

(복현1교(통행로) 교통처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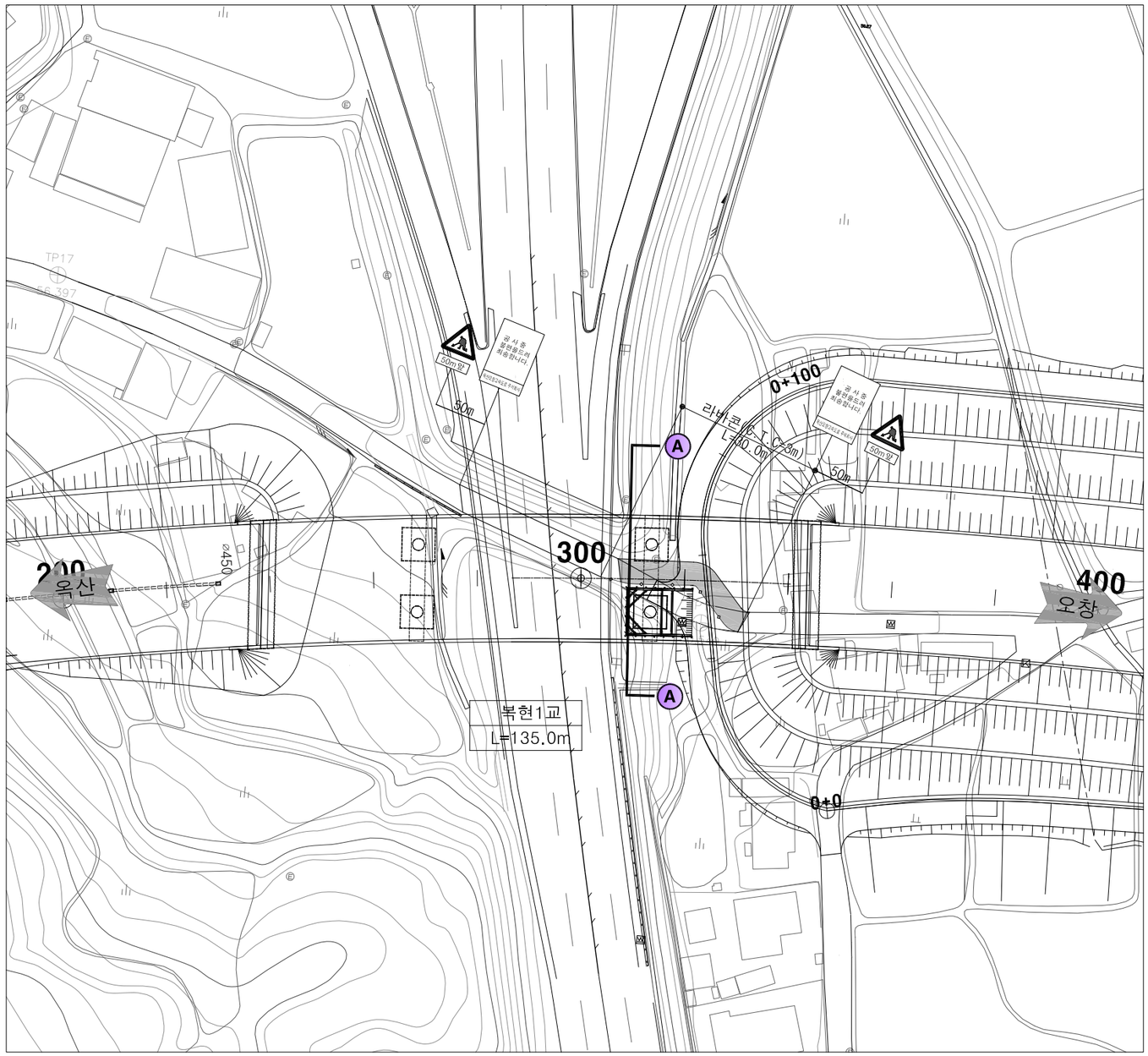

NOTE

▷ 2단계 교통처리
- 복현1교 공사구간을 총 3단계로 교통처리
- 2단계 : 복현1교 오창방향 교각 시공 시 가시설을 우회하는 가도설치
  복현1교 오창방향 교각 시공 시 가시설에서 0.5m 거리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시 공
- 공사중 안전시설(교통표지판, 라바콘등)설치

단면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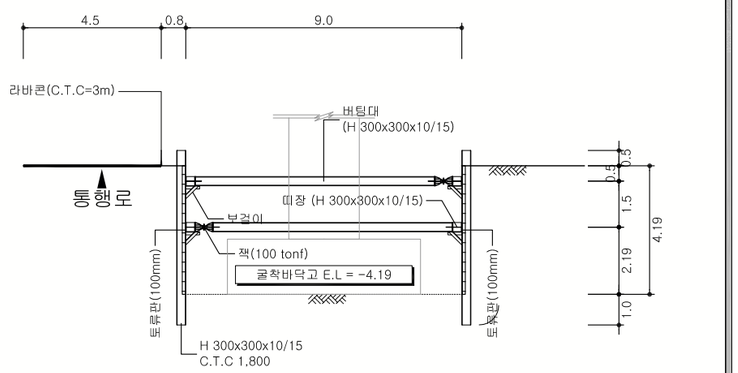

공사중 안전간판 설치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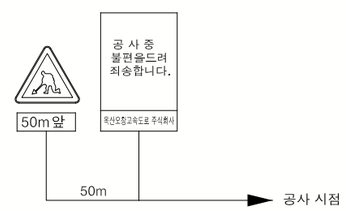

주 무 관 청	사 업 시 행 자	사 업 명	설 계 일 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 계 자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9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 선 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 용 관	이 창 호	공사중 임시도로 계획도(5)	1 : 500	5-02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사중 임시도로 계획도(6)

(복현1교(통행로) 교통처리(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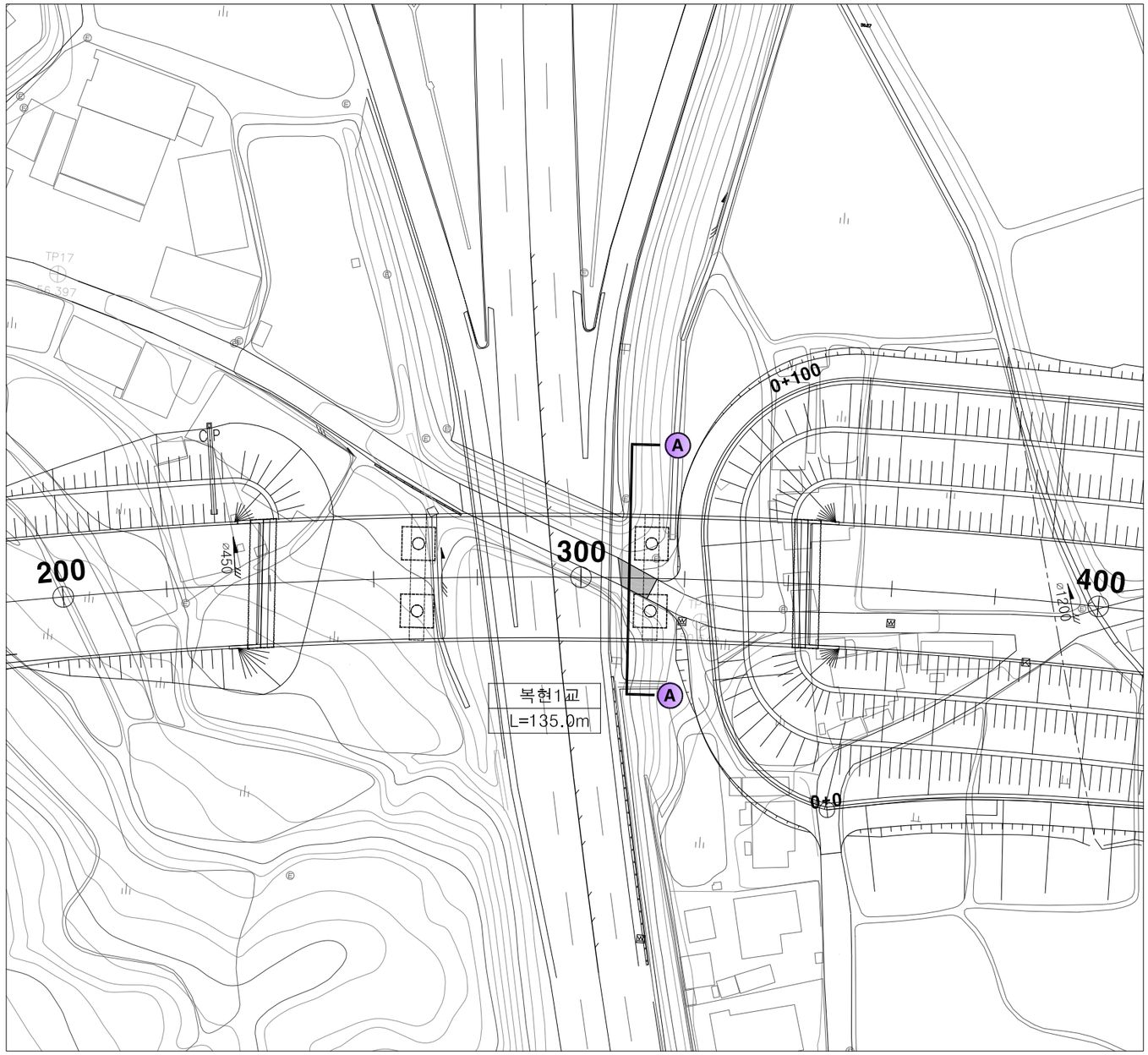

NOTE

▷ 3단계 교통처리
- 복현1교 공사구간을 총 3단계로 교통처리
- 3단계 : 가시설 철거 후 통행로 복구 및 부체도로 계획과 연결

▷ 시 공
- 공사중 안전시설(교통표지판, 라바콘등) 철거

단면 A-A(STA.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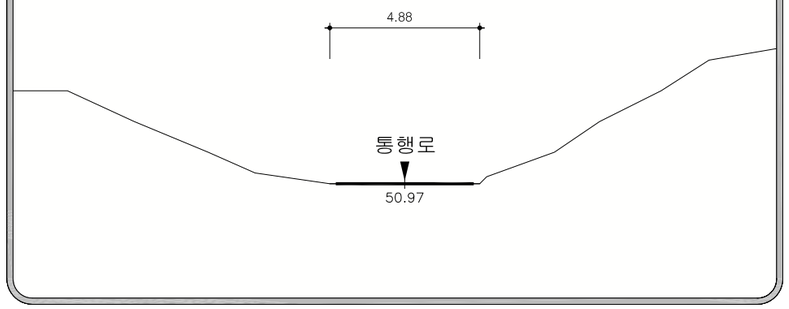

주 무 관 청	사 업 시 행 자	사 업 명	설 계 일 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 계 자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9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 선 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 용 관	이 창 호	공사중 임시도로 계획도(6)	1 : 500	5-023

별 첨 # 3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호 안 상 세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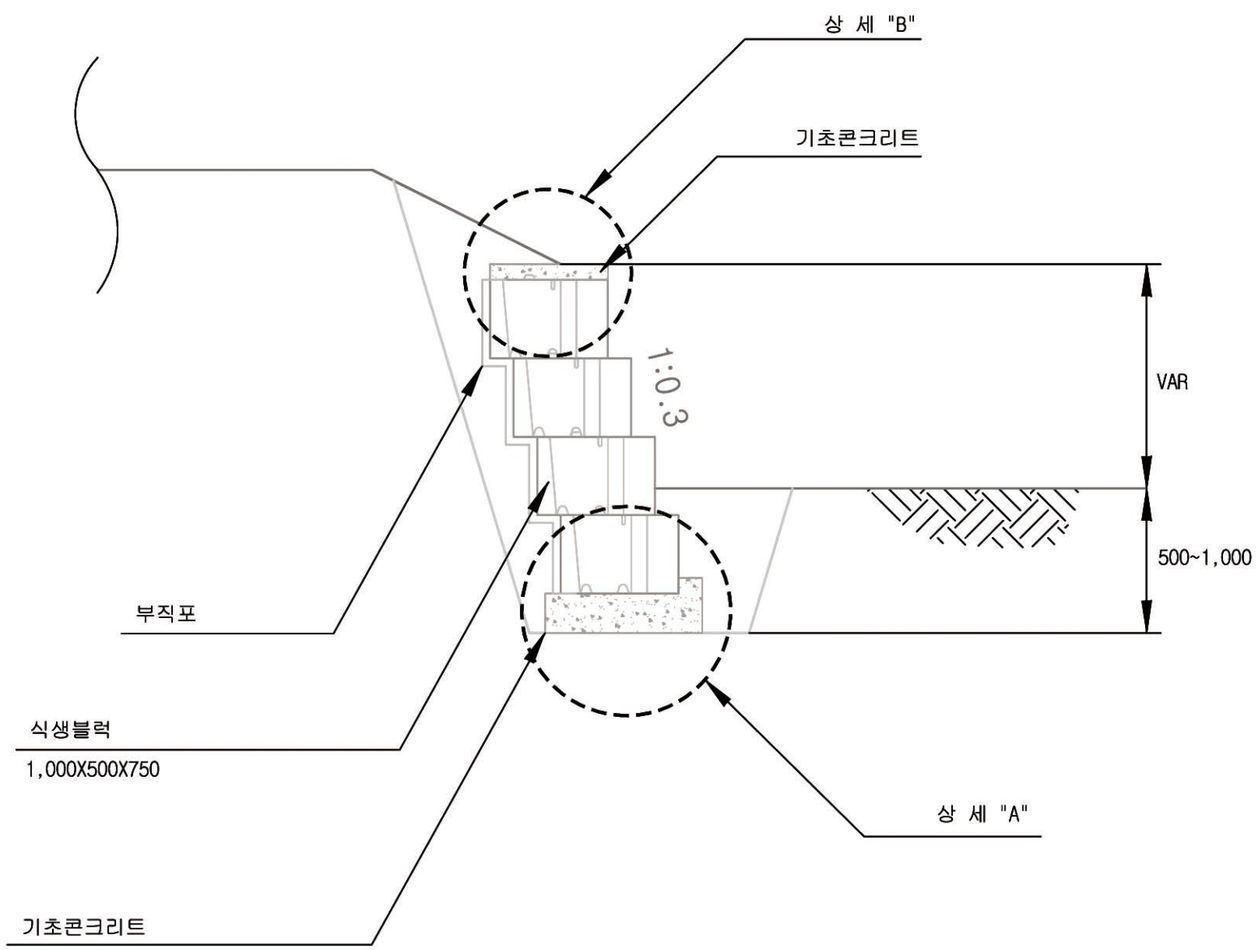

상 세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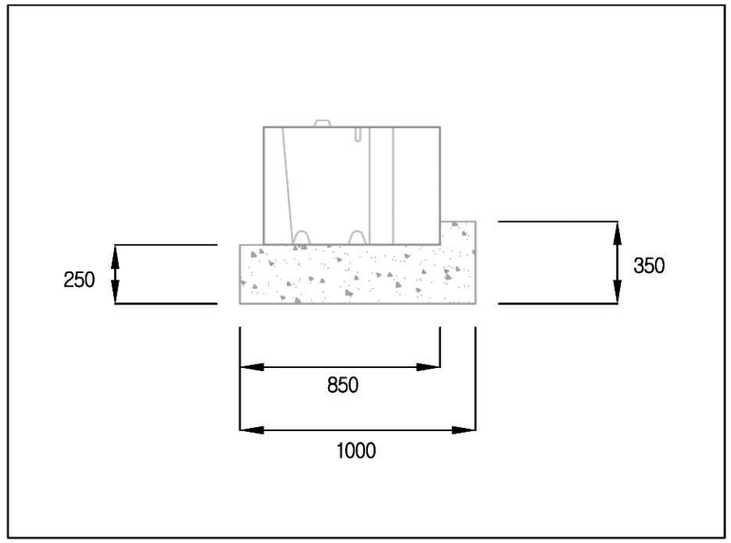

상 세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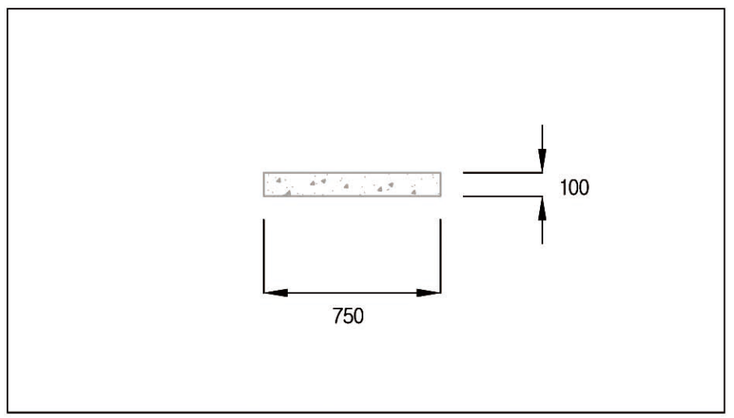

주 무 관 청	사 업 시 행 자	사 업 명	설 계 일 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 계 자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9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 선 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 용 관	정 의 혁	호 안 상 세 도	NONE	3-061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 하 천 이 설 계 획 평 면 도 (1)

성 산 천 1 구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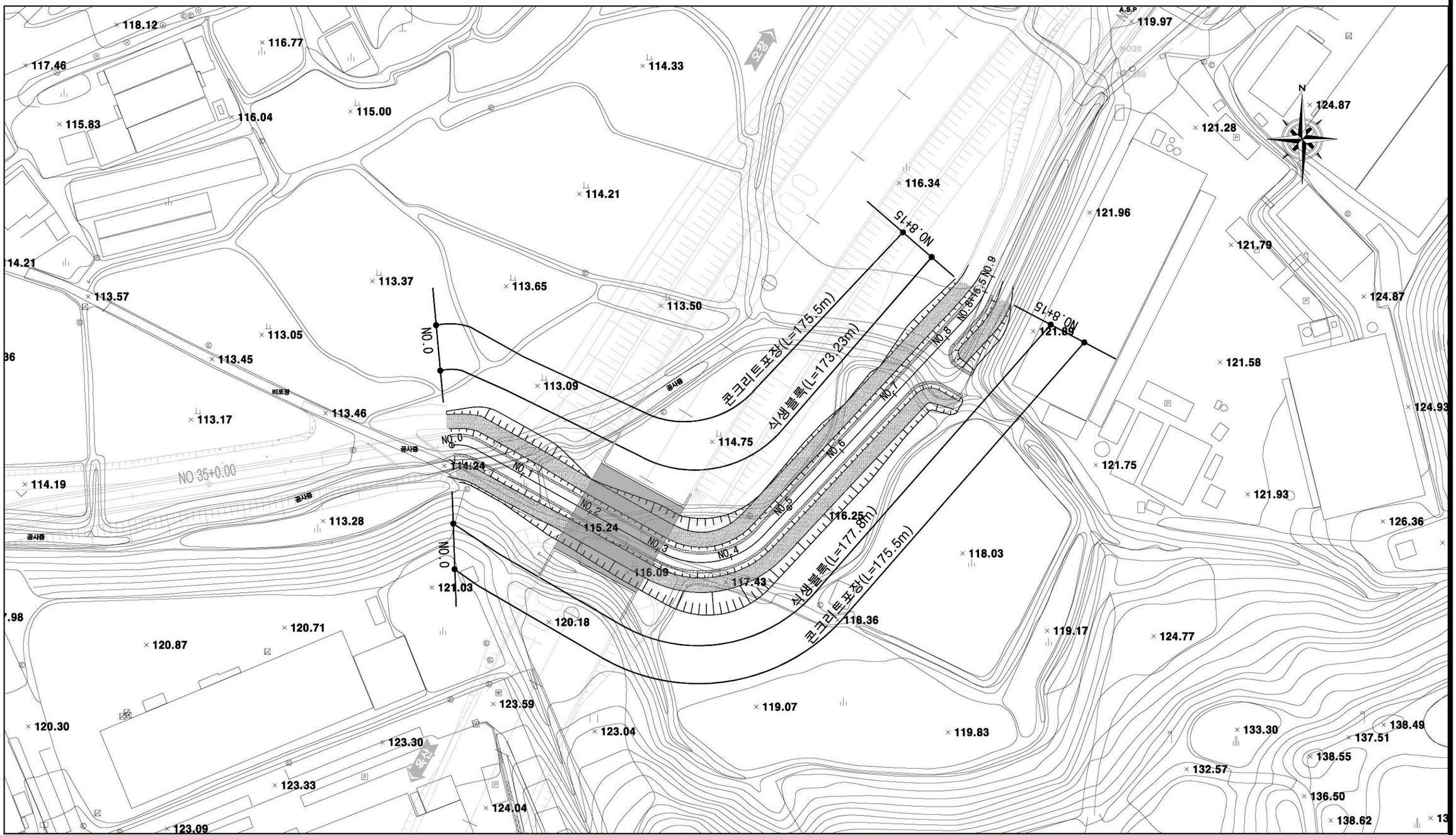

주 무 관 청	사 업 시 행 자	사 업 명	설 계 일 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 계 자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9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 선 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 용 관	정 의 혁	소하천이설계획평면도(1)	1:500	3-044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 하 천 이 설 계 획 평 면 도 (2)

성 산 천 2 구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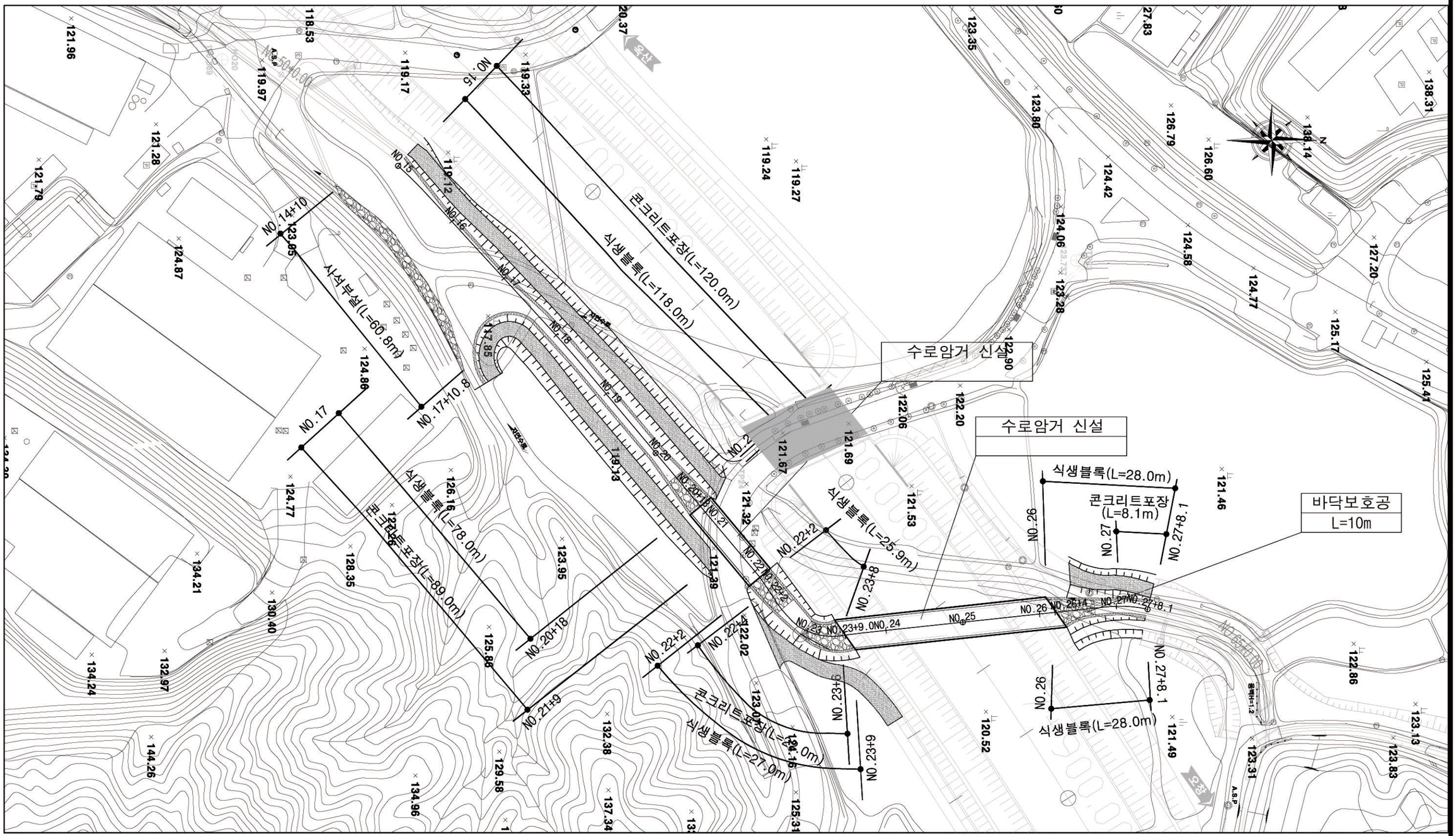

사업관리청	사업시행자	사업명	설계일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계자	도면명	축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9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 선 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 용 관	정 의 혁	소하천이설계획평면도(2)	1:500	3-045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 하 천 이 설 계 획 평 면 도 (3)

양 지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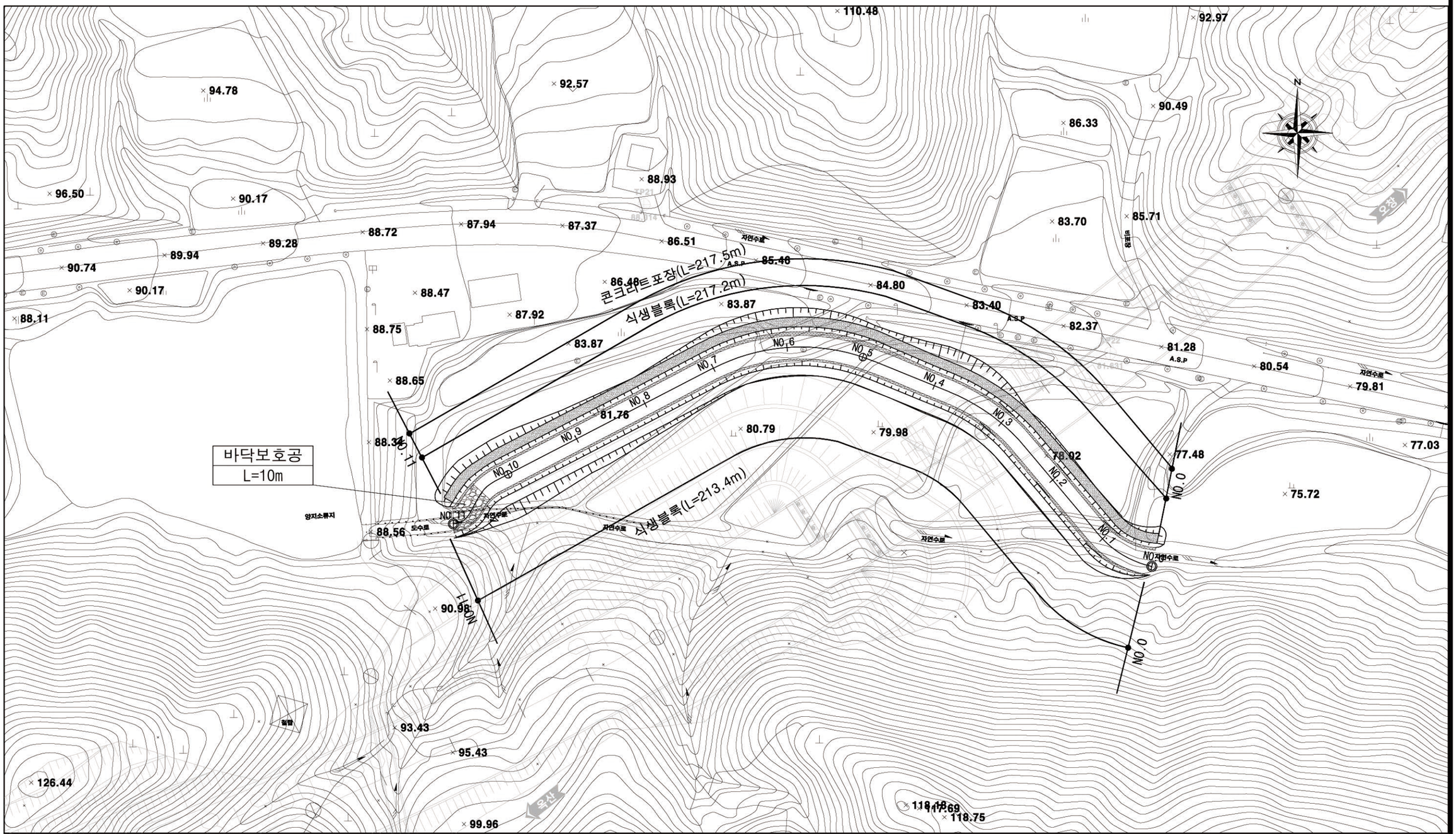

주 무 관 청	사 업 시 행 자	사 업 명	설 계 일 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 계 자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9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 선 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 용 관	정 의 혁	소하천이설계획평면도(3)	1:500	3-046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 하 천 이 설 횡 단 면 도 (1)

성산천 1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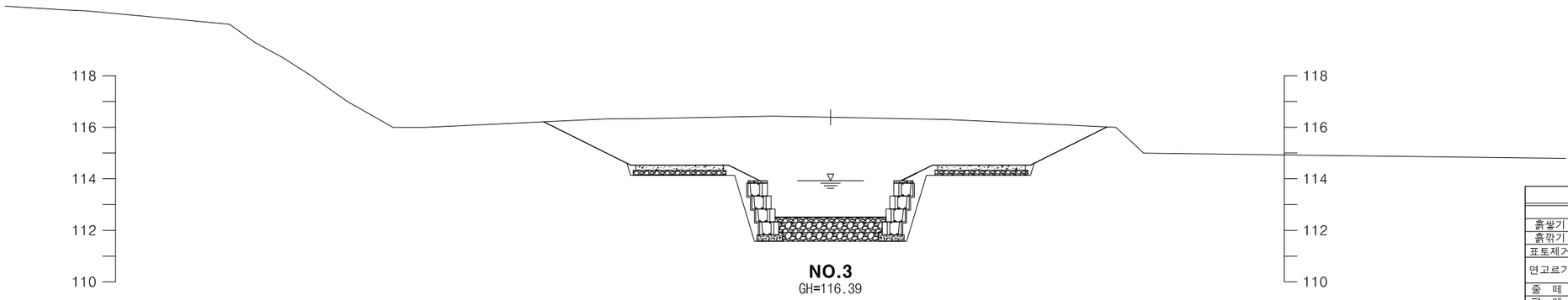

NO.3			
항목		단위	수량
흙쌓기	토 사	㎥	-
흙깎기	토 사	㎥	44.53
표토제거	답외구간	㎡	-
면고르기	성 토	㎡	-
	절 토	㎡	2.88
줄 떼		㎡	2.68
평 떼		㎡	7.08
터파기		㎥	9.65
되메우기		㎥	3.51
콘크리트포장		㎥	1.36
밑다짐		㎥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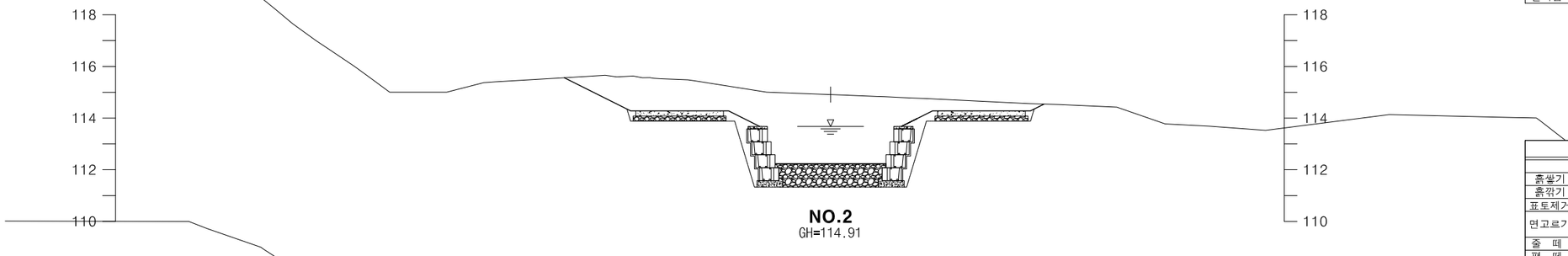

NO.2			
항목		단위	수량
흙쌓기	토 사	㎥	-
흙깎기	토 사	㎥	23.97
표토제거	답외구간	㎡	-
면고르기	성 토	㎡	-
	절 토	㎡	4.10
줄 떼		㎡	2.68
평 떼		㎡	3.45
터파기		㎥	9.58
되메우기		㎥	3.46
콘크리트포장		㎥	1.36
밑다짐		㎥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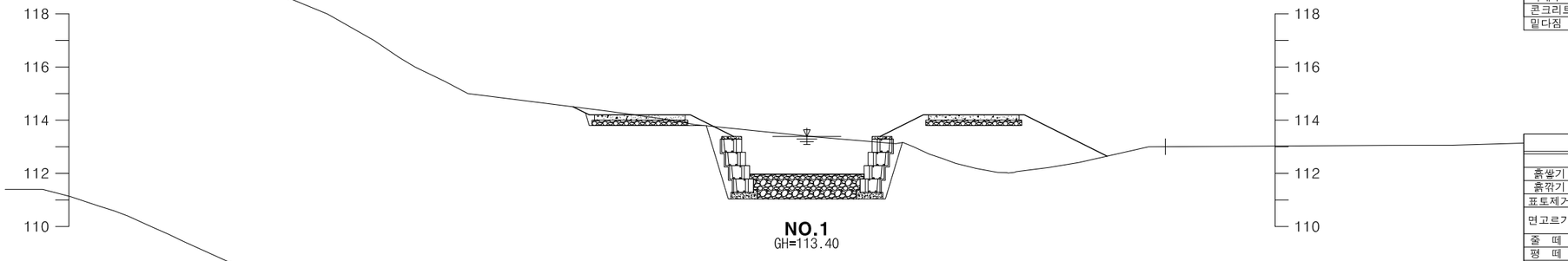

NO.1			
항목		단위	수량
흙쌓기	토 사	㎥	10.62
흙깎기	토 사	㎥	7.47
표토제거	답외구간	㎡	10.38
면고르기	성 토	㎡	-
	절 토	㎡	2.55
줄 떼		㎡	3.62
평 떼		㎡	4.15
터파기		㎥	7.17
되메우기		㎥	2.83
콘크리트포장		㎥	1.36
밑다짐		㎥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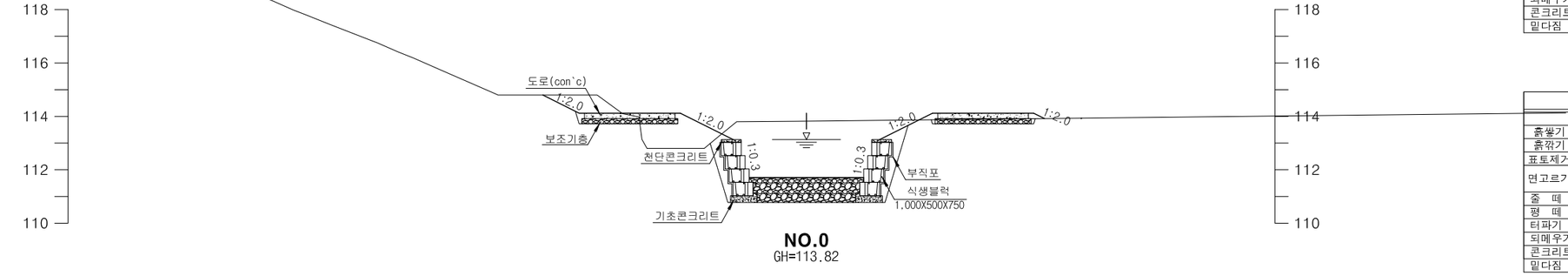

NO.0			
항목		단위	수량
흙쌓기	토 사	㎥	2.84
흙깎기	토 사	㎥	12.68
표토제거	답외구간	㎡	8.42
면고르기	성 토	㎡	-
	절 토	㎡	2.72
줄 떼		㎡	4.42
평 떼		㎡	1.51
터파기		㎥	7.77
되메우기		㎥	3.02
콘크리트포장		㎥	1.36
밑다짐		㎥	3.64

사 업 관 리 청	사 업 시 행 자	사 업 명	설 계 일 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 계 자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6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 선 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 용 관	정 의 혁	소 하 천 이 설 횡 단 면 도 (1)	1:100	3-049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 하 천 이 설 횡 단 면 도 (4)

성산천 2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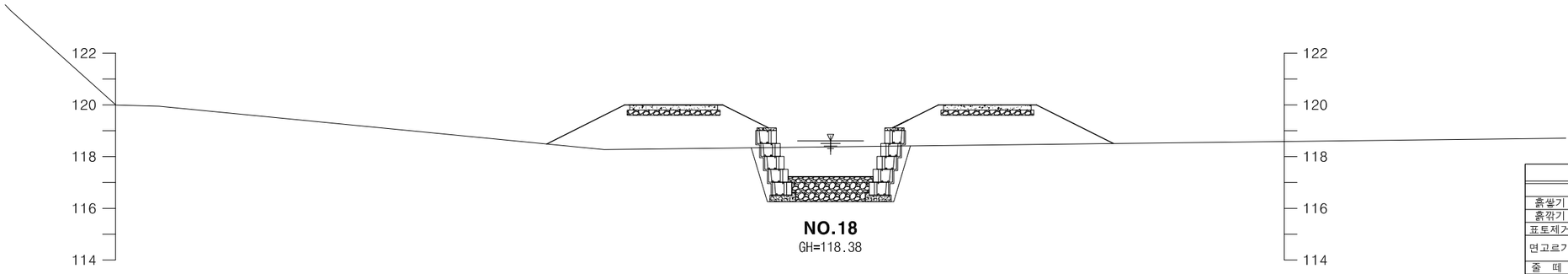

NO.18
GH=118.38

NO.18			
항목		단위	수량
흙쌓기	토 사	㎥	18.93
흙깎기	토 사	㎥	4.34
표토제거	답외구간	㎡	15.80
면고르기	성 토	㎡	1.30
	절 토	㎡	2.38
줄 떼		㎡	3.98
평 떼		㎡	6.72
터파기		㎥	5.63
되메우기		㎥	2.46
콘크리트포장		㎥	1.36
밑다짐		㎥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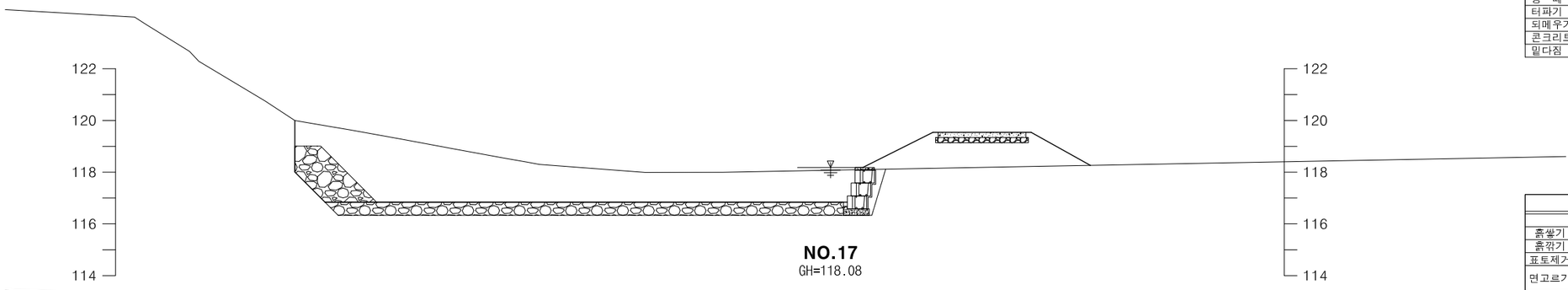

NO.17
GH=118.08

NO.17			
항목		단위	수량
흙쌓기	토 사	㎥	7.28
흙깎기	토 사	㎥	38.70
표토제거	답외구간	㎡	7.94
면고르기	성 토	㎡	-
	절 토	㎡	1.28
줄 떼		㎡	3.04
평 떼		㎡	2.63
터파기		㎥	2.07
되메우기		㎥	0.79
콘크리트포장		㎥	0.68
밑다짐		㎥	1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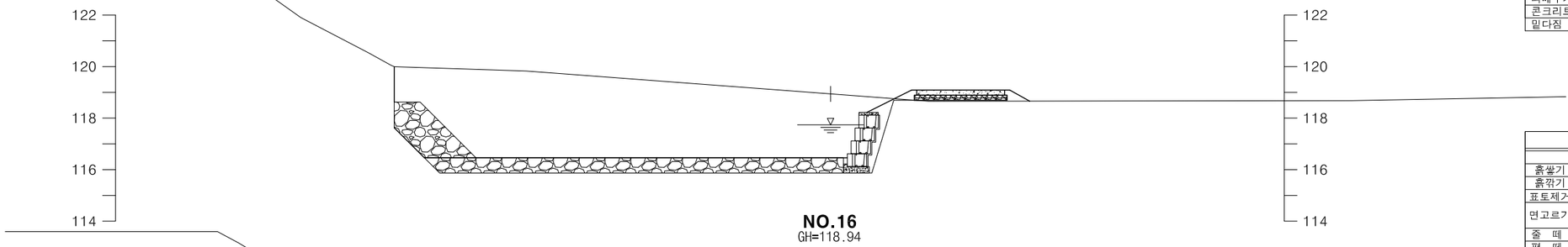

NO.16
GH=118.94

NO.16			
항목		단위	수량
흙쌓기	토 사	㎥	0.53
흙깎기	토 사	㎥	56.93
표토제거	답외구간	㎡	5.25
면고르기	성 토	㎡	-
	절 토	㎡	1.72
줄 떼		㎡	1.95
평 떼		㎡	0.89
터파기		㎥	2.99
되메우기		㎥	1.31
콘크리트포장		㎥	0.68
밑다짐		㎥	1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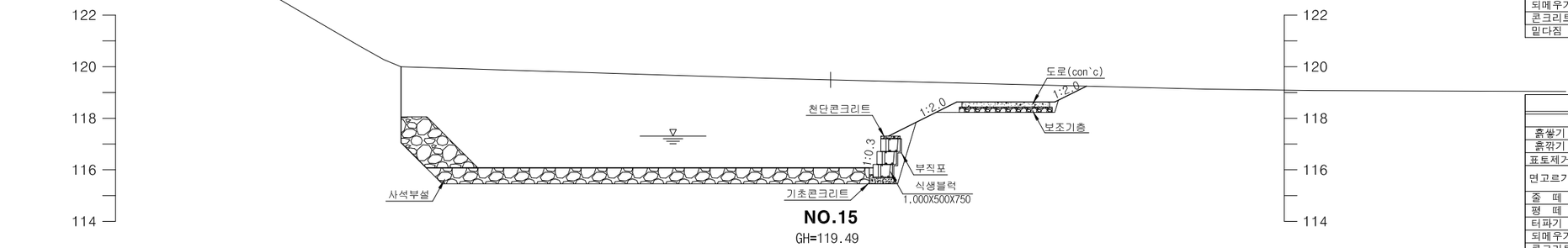

NO.15
GH=119.49

NO.15			
항목		단위	수량
흙쌓기	토 사	㎥	-
흙깎기	토 사	㎥	76.87
표토제거	답외구간	㎡	-
면고르기	성 토	㎡	-
	절 토	㎡	1.17
줄 떼		㎡	2.95
평 떼		㎡	1.38
터파기		㎥	2.79
되메우기		㎥	1.44
콘크리트포장		㎥	0.68
밑다짐		㎥	13.90

사 업 관 리 청	사 업 시 행 자	사 업 명	설 계 일 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 계 자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6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 선 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 용 관	정 의 혁	소 하 천 이 설 횡 단 면 도 (4)	1:100	3-05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 하 천 이 설 횡 단 면 도 (8)

양 지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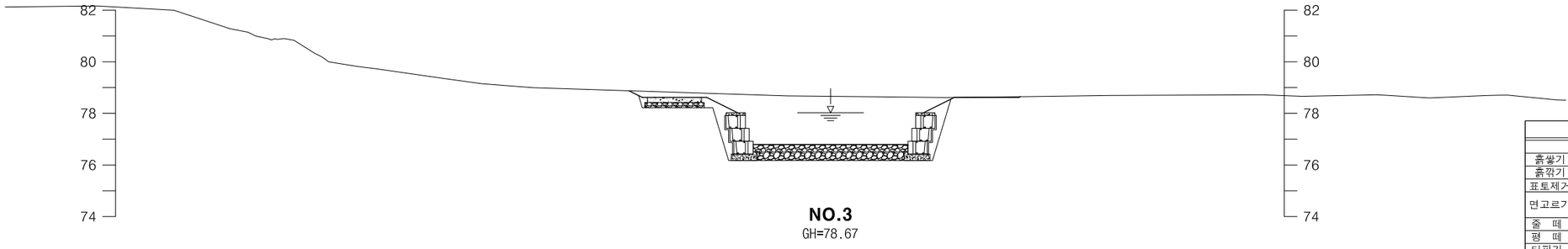

NO.3
GH=78.67

NO.3			
항목		단위	수량
흙쌓기	토 사	㎥	-
흙깎기	토 사	㎥	14.27
표토제거	답외구간	㎡	-
면고르기	성 토	㎡	-
	절 토	㎡	2.34
줄 떼		㎡	2.68
평 떼		㎡	0.58
터파기		㎥	6.05
되메우기		㎥	2.47
콘크리트포장		㎡	0.42
밑다짐		㎥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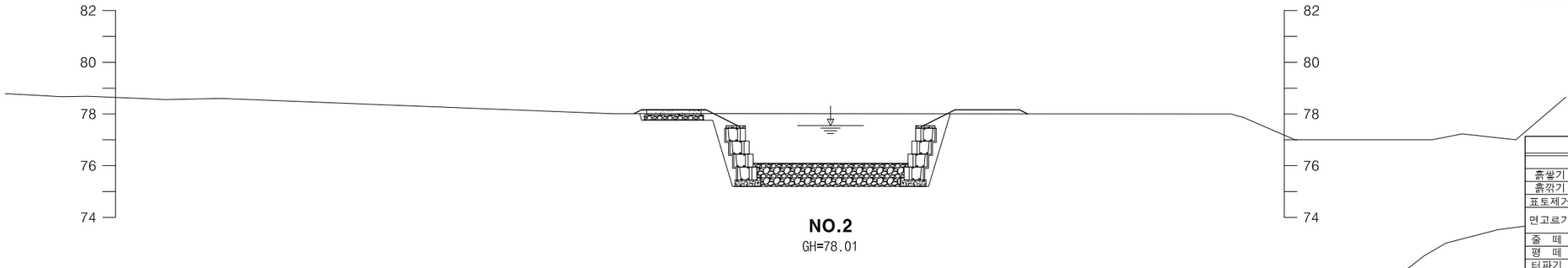

NO.2
GH=78.01

NO.2			
항목		단위	수량
흙쌓기	토 사	㎥	0.54
흙깎기	토 사	㎥	13.38
표토제거	답외구간	㎡	2.99
면고르기	성 토	㎡	-
	절 토	㎡	2.78
줄 떼		㎡	2.74
평 떼		㎡	0.69
터파기		㎥	7.01
되메우기		㎥	3.13
콘크리트포장		㎡	0.42
밑다짐		㎥	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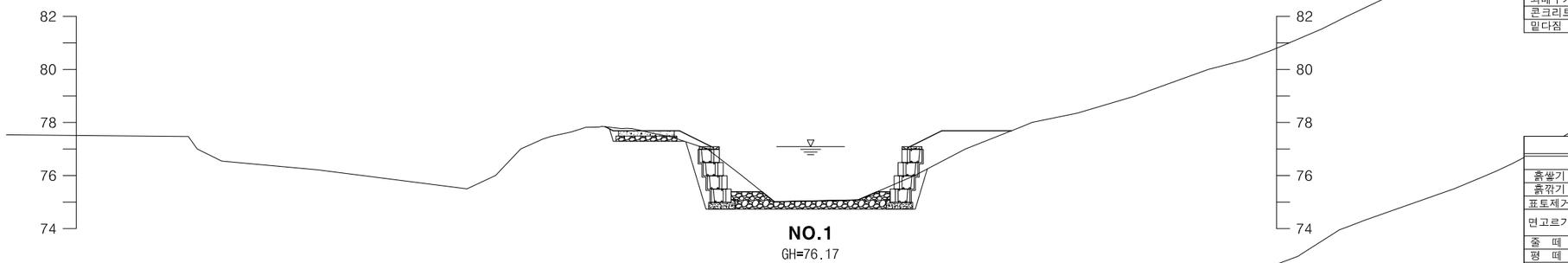

NO.1
GH=76.17

NO.1			
항목		단위	수량
흙쌓기	토 사	㎥	3.54
흙깎기	토 사	㎥	0.99
표토제거	답외구간	㎡	3.90
면고르기	성 토	㎡	0.94
	절 토	㎡	2.31
줄 떼		㎡	2.68
평 떼		㎡	0.34
터파기		㎥	5.23
되메우기		㎥	1.96
콘크리트포장		㎡	0.42
밑다짐		㎥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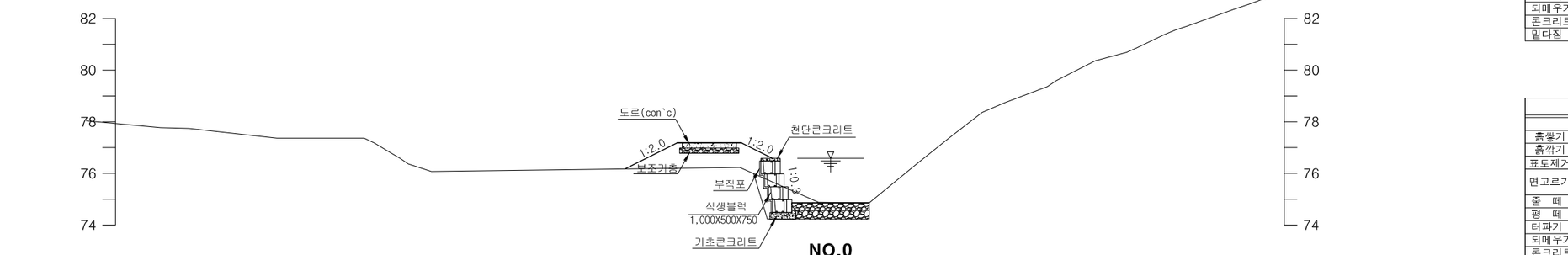

NO.0
GH=76.00

NO.0			
항목		단위	수량
흙쌓기	토 사	㎥	3.87
흙깎기	토 사	㎥	0.34
표토제거	답외구간	㎡	4.98
면고르기	성 토	㎡	0.69
	절 토	㎡	0.99
줄 떼		㎡	1.34
평 떼		㎡	2.25
터파기		㎥	1.94
되메우기		㎥	0.81
콘크리트포장		㎡	0.42
밑다짐		㎥	1.83

사 업 관 리 청	사 업 시 행 자	사 업 명	설 계 일 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 계 자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6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 선 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 용 관	정 의 혁	소 하 천 이 설 횡 단 면 도 (8)	1:100	3-056

별 첨 # 4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청원휴게소 지장수목처리 조치결과
(한국도로공사-충청본부 및 천안지사)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목 차

❑ 위 치 도

1. 사업목적

2. 사업범위

3. 추진경위 및 계획

4. 관련 추진경과

5. 지장수목 조사결과

6. 지장수목 조치결과

위 치 도

OKSAN-OCHANG
OKSAN – OCHANG HIGH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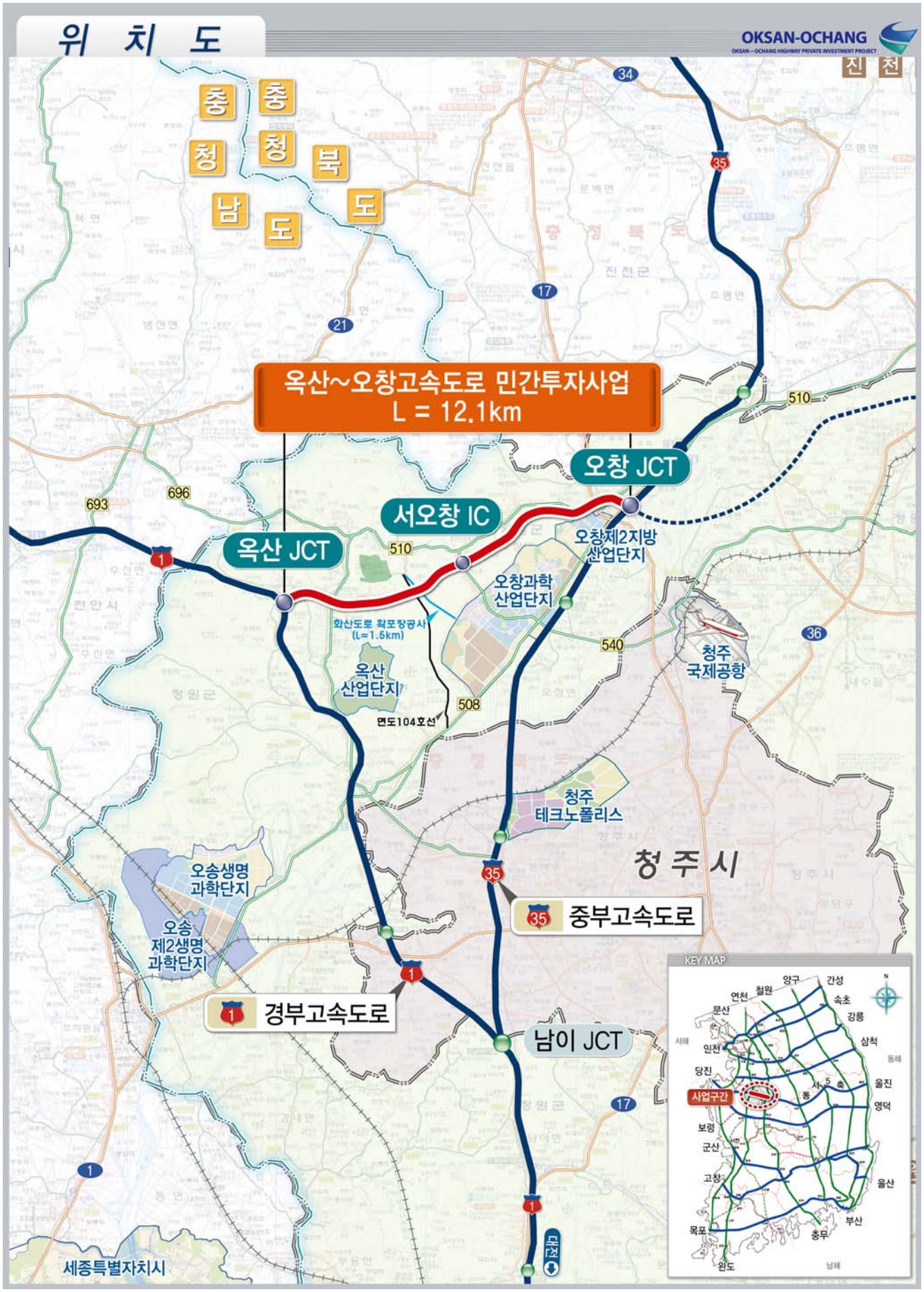

1. 사업목적

- ❍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 동서 5축(당진~천안~옥산~오창~영주~울진)의 구축
- ❍ 동서5축의 조기건설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지역의 중추공항(Hub-Airport)으로 육성
- ❍ 아산만권과 대전·청주권간 생산, 물류, 교류 기반조성 확대로 지역간 균형 발전
-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

2. 사업범위

사 업 명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출입시설	JCT 2개소 / IC 1개소
도로구분	지방지역 고속도로(100km/hr)	영업소	서오창본선영업소 /서오창IC영업청원군소
연 장	12.1km (왕복 4차로)	공사기간	4년(착공일로부터 48개월)
시설현황	교량 : 22개소/2,414m	주무관청	국토해양부
총사업비	1,894억원 (2004. 9 불변금액, 보상비 제외)	사업시행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

3. 추진경위 및 계획

- 2004.11. :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지에스건설 컨소시엄 → 국토해양부)
- 2008.05. :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국토해양부)
- 2008.1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12.01. : 실시협약체결(국토해양부 광역도시과)
- 2012.03. : 실시설계 착수
- 2012.04.12 : 관계기관 노선협의 요청(대전청 도로계획과-3404)
- 2012.05.18 : 노선협의의견 제출(기획조정실-1715)
- 2013.06.14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협의요청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806)
- **2013.07.05 : 실시계획승인신청서 검토의견 제출(기획조정실-2394)**
  ⇒(옥산)분기점구간 기존 고속도로 및 휴게소 구간 수목조사 및 이식 복구계획 수립, 비용 반영 요청
- **2013.08.08 : 경부고속도로 접속방안 관계기관 회의 개최 및 결과 통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1387)
  ⇒남이~천안 확장공사 실시설계 후 세부협의 추진
- 2013.09. : 실시계획승인(예정)

4. 관련 추진경과

- 2013.07.15~16 : 1차 지장수목 현황조사(옥산오창)
- 2013.08.01 : 2차 지장수목 현황조사(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옥산오창)
- 2013.08.05 : 3차 지장수목 현황조사(옥산오창)
- 2013.08.21 : 지장수목 현장검수(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 2013.08.26 : 지장수목 설계도 검수(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 2013.08.27 : 지장수목 이식계획 협의(한국도로공사 시설처 조경팀)
- 2013.08.28 : 지장수목 이시계획 현장 검수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천안지사)
- 2013.09.02 : 지장수목 이시계획도 검수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천안지사)

※지장수목 이식계획은 장래 남이~천안 확장공사 실시설계(R=700m)에 근거함

5. 지장수목 조사결과(별첨#1 참조)

구분	품명	단위	규격	수량	비고
상록교목	소나무	주	B6~B16	98	
	스트로브잣나무	주	B10~B12	153	
	상록교목 합계	주		251	
낙엽교목	갈참나무	주	B8~B16	46	
	단풍나무	주	B4~B10	13	
	메타세퀘이아	주	B16~B20	10	
	왕벚나무	주	B10~B6	34	
	이팝나무	주	B4~B12	101	
	자귀나무	주	B14	4	
	중국단풍	주	B6	11	
	산딸나무	주	B8	24	
	복자기	주	B6	6	
	버드나무	주	B10	4	
	낙엽교목 합계	주		253	
교목합계		주		504	
낙엽관목	조팝나무	주	H1.2	1,290	
관목합계		주		1,290	

6. 지장수목 조치결과(별첨#2 참조)

일자	협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시설처 조경팀 (2013.08.27)	•지장수목은 가식에 따른 고사율 증가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 청원휴게소 유휴지 및 사면등 식재가능 공간에 이식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충청본부, 천안지사등과 협의하여 이식계획 수립요망	•지장수목은 청원휴게소 녹지대중 식재가능한 유휴공간에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충청본부 시설팀 (2013.08.28)	•지장수목의 이식은 가이식을 거치지 않고 훼손위치에서 휴게소 중앙분리녹지대의 사면 및 녹지대내 유휴공간에 조사된 전수량을 이식계획하는 것으로 함	•조사된 지장수목은 전수량을 훼손위치에서 휴게소내 유휴녹지공간에 이식계획하였음	반영
	•스트로브잣나무 153주는 기존 사면상부에 식재된 스트로브잣나무 식재열에 맞추어 휴게소 내측 사면부에 식재요망	•스트로브잣나무는 사면 상부 식재열에 맞추어 휴게소 내측 사면부에 이식계획 하였음	반영
	•이팝나무는 101주는 중앙분리녹지대 내측 사면하단부에 식재요망	•이팝나무는 중앙분리녹지대 내측 사면하단부에 이식계획하였음	반영
	•소나무 98주는 기존 소나무 식재군락 주변의 유휴공간에 식재요망	•소나무는 기존 소나무 식재군락 주변부 유휴공간에 이식계획 하였음	반영
	•갈참나무 또한 기존 참나무가 식재된 사면에 연계하여 식재요망	•갈참나무는 참나무 식재사면에 연계하여 이식계획하였음	
	•왕벚나무 34주는 휴게소 내측 녹지전면부 식재요망	•왕벚나무는 휴게소 내측 녹지전면부에 이식계획하였음	반영
	•단풍나무, 메타세퀘이아, 자귀나무, 중국단풍, 조팝나무등은 휴게소 내측 녹지대 유휴공간에 식재요망	•단풍나무.메타세퀘이아.자귀나무,중국단풍,조팝나무등은 중앙분리녹지대 유휴공간에 식재계획하였음	반영
		•이식공사시 원지반상태 및 지하매설물등으로 식재위치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위치를 변경하겠음	

별 첨 #1

조 경 식 재 계 획 도 (15)

(청원휴게소 지장수목현황표)

◆ 식재수량표(청원휴게소 지장수목)

구분	기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상록교목		소나무-이식	B16	주	13	
		소나무-이식	B14	주	23	
		소나무-이식	B12	주	13	
		소나무-이식	B10	주	13	
		소나무-이식	B8	주	19	
		소나무-이식	B6	주	17	
		스트로브잣나무-이식	B12	주	65	
		스트로브잣나무-이식	B10	주	88	
		상록교목합계		주	251	
낙엽교목		갈참나무-이식	B16	주	10	
		갈참나무-이식	B14	주	10	
		갈참나무-이식	B12	주	16	
		갈참나무-이식	B10	주	6	
		갈참나무-이식	B8	주	4	
		단풍나무-이식	B10	주	2	
		단풍나무-이식	B6	주	3	
		단풍나무-이식	B4	주	8	
		메타세쿼이아-이식	B20	주	4	
		메타세쿼이아-이식	B16	주	6	
		버드나무-이식	B10	주	4	
		복자기-이식	B6	주	6	
		산딸나무-이식	B8	주	24	
		왕벚나무-이식	B6	주	33	
		왕벚나무-이식	B10	주	1	
		이팝나무-이식	B12	주	2	
		이팝나무-이식	B8	주	2	
		이팝나무-이식	B6	주	63	
		이팝나무-이식	B4	주	34	
		자귀나무-이식	B14	주	4	
		중국단풍-이식	B6	주	11	
		낙엽교목합계		주	253	
		교목합계		주	504	
낙엽관목		조팝나무-이식	H1.2	주	1,290	
		낙엽관목합계		주	1,290	
		관목합계		주	1,290	

사업관리청	사업시행자	사업명	설계일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계자	도면명	축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9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선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용관	최일훈	조경식재계획도(15)	NONE	L-019

별 첨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 경 식 재 계 획 도 (14)

(청원휴게소 지장수목현황)

S = 1:2,000 0 10 20 40 60M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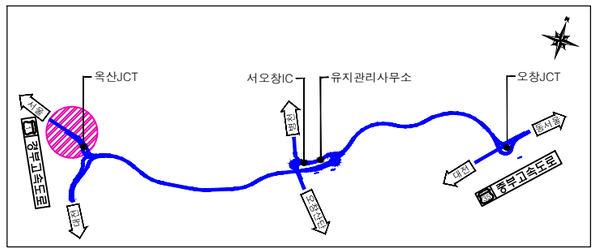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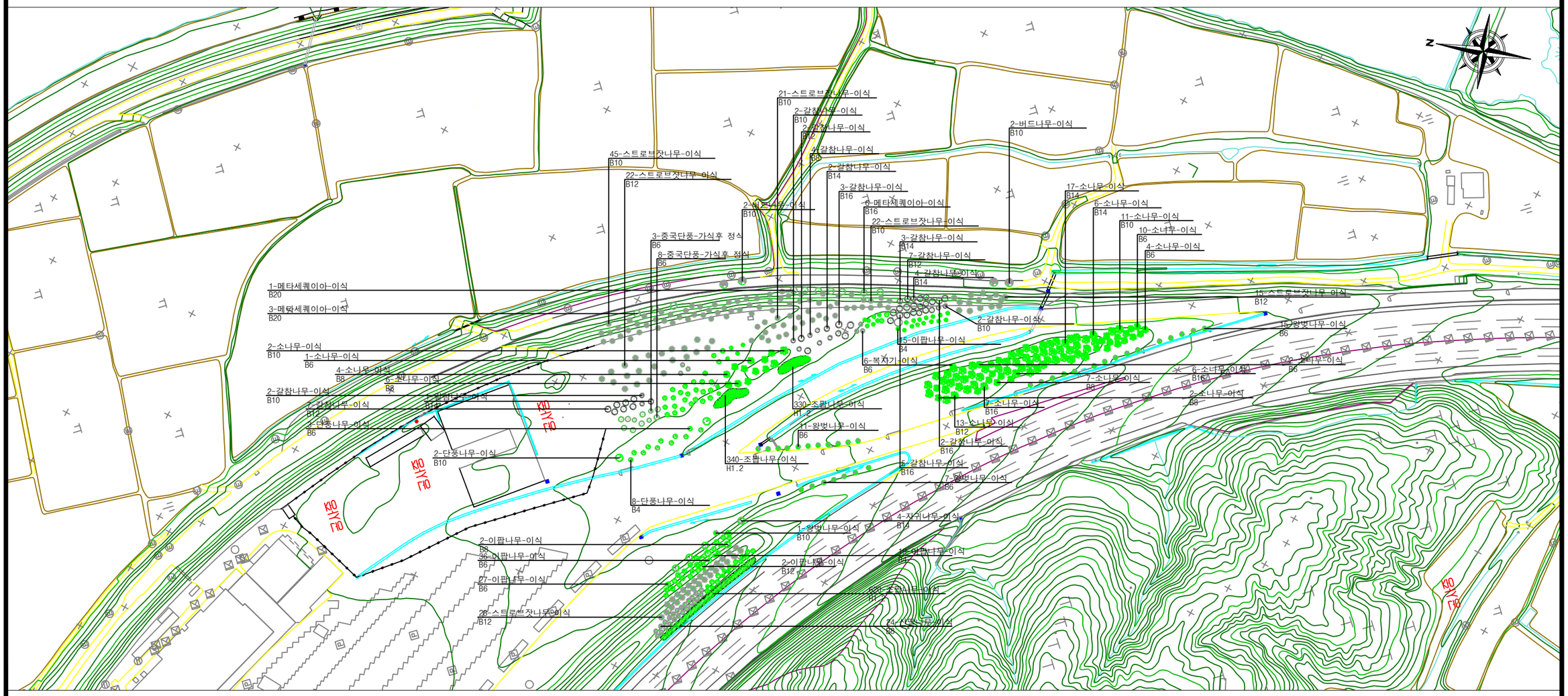

사 업 관 리 청	사 업 시 행 자	사 업 명	설 계 일 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 계 자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9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 선 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 용 관	최 일 훈	조 경 식 재 계 획 도 (14)	1:2,000	L-018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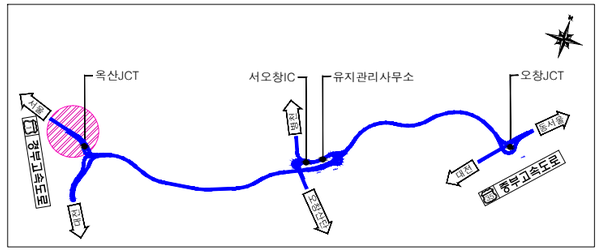

조 경 식 재 계 획 도 (16)

(청원휴게소 지장수목 이식계획도)

S = 1:2,000 0 10 20 40 6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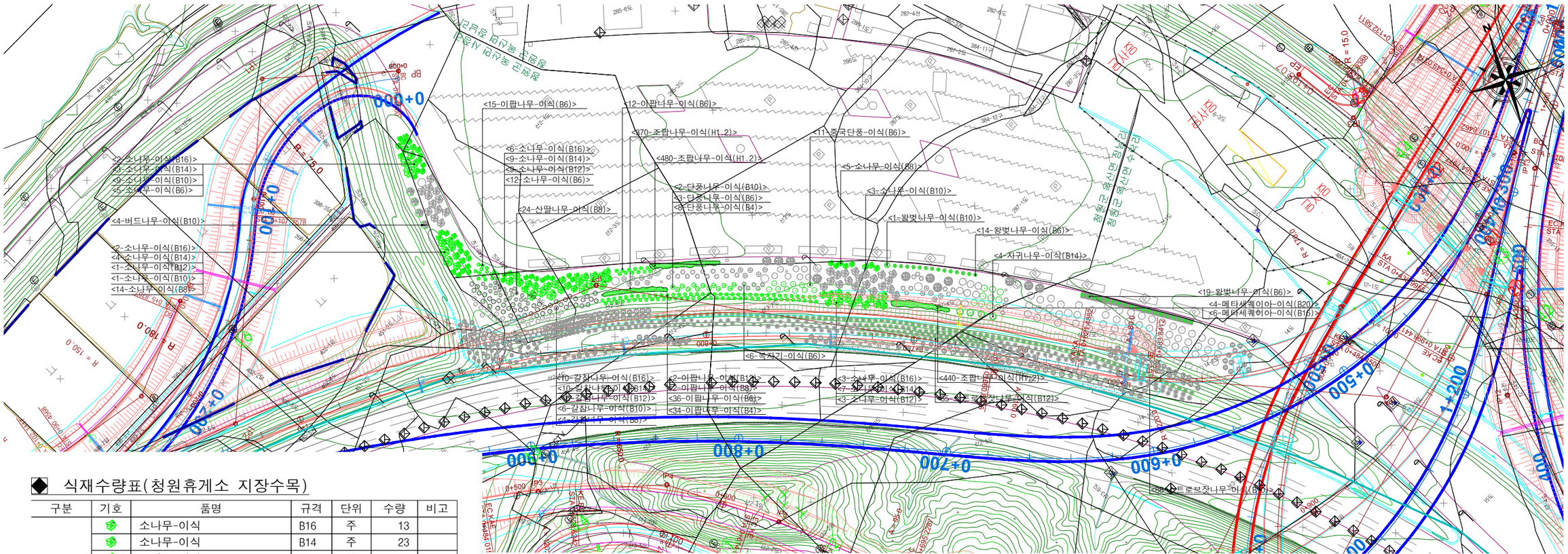

식재수량표(청원휴게소 지장수목)

구분	기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상록교목		소나무-이식	B16	주	13	
		소나무-이식	B14	주	23	
		소나무-이식	B12	주	13	
		소나무-이식	B10	주	13	
		소나무-이식	B8	주	19	
		소나무-이식	B6	주	17	
		스트로브잣나무-이식	B12	주	65	
		스트로브잣나무-이식	B10	주	88	
		상록교목합계		주	251	
낙엽교목		갈참나무-이식	B16	주	10	
		갈참나무-이식	B14	주	10	
		갈참나무-이식	B12	주	16	
		갈참나무-이식	B10	주	6	
		갈참나무-이식	B8	주	4	
		단풍나무-이식	B10	주	2	

구분	기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낙엽교목		단풍나무-이식	B6	주	3	
		단풍나무-이식	B4	주	8	
		메타세쿼이아-이식	B20	주	4	
		메타세쿼이아-이식	B16	주	6	
		버드나무-이식	B10	주	4	
		복자기-이식	B6	주	6	
		산딸나무-이식	B8	주	24	
		왕벗나무-이식	B6	주	33	
		왕벗나무-이식	B10	주	1	
		이팝나무-이식	B12	주	2	

구분	기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낙엽교목		이팝나무-이식	B8	주	2	
		이팝나무-이식	B6	주	63	
		이팝나무-이식	B4	주	34	
		자귀나무-이식	B14	주	4	
		중국단풍-이식	B6	주	11	
		낙엽교목합계		주	253	
		교목합계		주	504	
		조팝나무-이식	H1.2	주	1,290	
낙엽관목		낙엽관목합계		주	1,290	
		관목합계		주	1,290	

사업관리청	사업시행자	사업명	설계일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설계자	도면명	축척	도면번호
국토교통부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13. 9	도로 및 공항기술사 양선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이용관	최일훈	조경식재계획도(16)	1:2,000	L-020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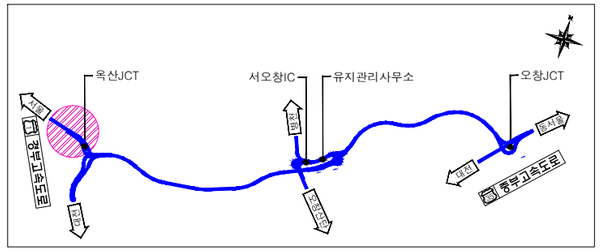

조 경 식 재 계 획 도 (17)

(청원휴게소 수목이식 복구계획도)

S = 1:2,000 0 10 20 40 60M

